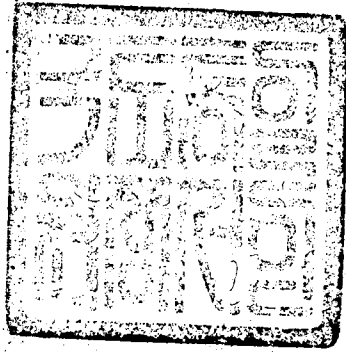


北韓概要



國 土 統 一 院

머 리 말

분단된 우리 조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南과 北이 서로 상대를 대하는 길은 알다시피 對話가 아니면 오로지 侵略일 수밖에 없다. 서로가 진실로 平和로운 統一을 원한다면, 우선 문을 열고 각기의 사정을 있는 대로 서로 털어 놓으면서 무릎을 맞대고 의논하는 도리 밖에 없을 터이다. 문을 잠그어 두고 자기 사정을 일체 비밀에 부쳐둔 채 平和統一을 하고자 한다면 그 眞意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이 까닭에 우리는 北韓의 공산 독재 정권이 자기 사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또 北韓 동포들로 하여금 南韓과 外國의 실정을 모르게 하는 密閉政策을 쓰고 있는 限, 과연 그들이 말하는 平和統一이 무엇인지 그 眞意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까닭에 근래 줄곧 對話를 거부하고 사실상 分斷을 長期化시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平和統一의 진실한 출발은 서로의 접촉이 아닐 수 없고, 상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철두철미 平和統一의 입장이며, 그러므로 對話와 交流를 열렬히 希求하고 있다.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北韓의 實情을 알아야 되고 平和統一에 대한 彼我間의 문제점을 미리 연구해 두어야 하겠다.

더구나 40년이 가깝도록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생긴 자연적인 異質化도 있거니와 동시에 북한 정권의 공산주의 체제화와 특이한 人間改造運動으로 인한 人爲的 異質化의 면이 뚜렷해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순식간에 同質化되려니 하는 소박한 생각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간 國土統一院은 祖國의 平和統一이라는 民族의 使命感 아래 平和統一의 앞날이 결국은 멀지 않아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에서 北韓의 정치 체제는 물론이요, 北韓 동포의 생활 실태를 객관적으로 알아보려고 무던히 애써 왔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국민 모두가 北韓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압으로써 平和統一에 대한 主導力을 장악하고 北韓 동포에게 平和와 統一을 힘차게 소리쳐서 그들이 平和統一의 광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國土統一院은 갖고 있는 北韓 資料를 內容의 客觀性을 尊重한다는 기준에서 體系的으로 要約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내어 놓게 되었다.

同書는 1978年 12월에 初版이, 1979年 12월에 改正版이 나온 이래 1983年 12월에 지난 3年동안 변해 온 北韓의 實相을 다시 정리하여 세번째의 修正·補完版을 發刊하게 된 것이다.

1983年 12月

일러두기

① 本文中 機關, 團體, 地名, 人名 등 固有名稱과 用語는 加급적 北韓에서 사용되는 그대로 表記하였다.

② 本文과 圖表에서는 <註> 또는 <出處>로서 北韓에서 出刊된 資料名을 明記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國內外 研究機關의 推定資料를 使用하였다.

③ 軍事分野는 그 特殊性 때문에 省略에 부친 部分이 많고 概括的인 것만을 적었다.

④ 資料篇에서는 北韓에서 發表된 原文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⑤ 人物, 圖表 등은, 最近의 資料를 근거로 作成한 것이다.

⑥ 北韓에서 發表되는 統計나 數値는 疑問點이 많으며(예컨대 北韓은 15년간이나 公式的으로 人口를 發表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이용된 推計值에 관해서는 다소 異論의 餘地가 있을 수 있다.

차 례

政治	7
政治理念	9
主體思想	9
思想教養事業	10
主體思想의 形成過程	11
主體思想의 內容	12
革命觀	14
社會主義建設：3 大革命	14
南朝鮮革命	17
世界革命	18
政治體制	20
朝鮮勞動黨	20
形成過程	21
性格變化	22
黨 勢	26
組織體系	28
中央機關	30
地方機關	34
黨의 外廓團體	35
黨의 運用體系	36
政權機關	37
人民共和國의 樹立	39
社會主義憲法 採擇	41
政權機關의 組織	42

特殊機能 組織	55
政治權力	58
金日成體制 強化	58
派閥鬭爭	58
金日成 崇拜運動	61
指導層의 變化	62
指導層의 人物交替	62
權力承繼	67
背 景	67
金正日 登場過程	68
經 濟	71
經濟體制	73
社會主義經濟體制의 基盤構築	73
土地改革의 農業의 集團化	73
產業의 國有化	76
管理體制	78
管理組織	78
計劃體制	78
農業管理	80
工業管理	84
經營方式	87
獨立採算制	87
社會主義競爭運動	88
經濟循環	90
流通秩序	90
價 格	91
貨 幣	92
經濟政策과 經濟計劃	94

經濟政策の 基本路線.....	94
自力更生 原則	94
重工業 優先政策	95
國防・經濟併進政策.....	95
經濟計劃の 實施	96
部門別 現況.....	101
國民所得	101
財政・金融	103
財 政	103
金 融	107
農・水產業	108
農 業	108
水產業	116
鑛・工業	117
採取工業	117
冶金工業	118
機械工業	119
化學工業	120
電力工業	121
建材工業	123
紡織工業	123
輸送・通信	124
輸 送	124
通 信	128
貿易・對外協力	128
貿 易	128
受援・借款	132
社 會	135
人 口.....	137



人口政策	137
人口現況	138
住民生活.....	140
家 庭.....	140
家族制度의 變化.....	140
女性의 地位.....	142
結婚·離婚	145
出產·育兒	148
衣·食·住	151
所得·消費	156
時期別 政策.....	156
勞動者 賃金.....	157
農場員 分配.....	159
物 價	161
風 俗.....	163
冠婚喪祭	163
名 節	166
民 俗	167
信 仰.....	168
勞動·保健	170
勞 動.....	170
保健·醫療	173
社會統制와 逸脫.....	176
成分 및 階層構造	176
住民統制	178
政治思想的 統制.....	178
經濟的 統制.....	178
社會的 統制.....	179
家庭生活 統制.....	180

社會的 逸脫.....	181
教育·文化.....	185
教育.....	187
教育政策	187
學校教育	187
教育制度	187
教員養成	192
教育內容	193
黨教育	194
社會教育	194
研究機關	195
文化.....	197
言語	197
文學·藝術	199
文藝政策	199
文藝團體	200
文學	202
美術	204
音樂	204
映畫·演劇	205
報道·出版	207
新聞	207
通信	208
放送	208
出版	210
體育.....	211
體育政策	211
指導·養成機關	212

競 技	213
文化施設	215
軍 事	219
軍形成斗 性格.....	221
形成過程	221
人民軍의 性格.....	224
軍事政策斗 戰略	226
軍事政策	226
軍事戰略	228
軍事組織體系	231
軍事機構	231
軍隊內 政治組織	234
軍事編制	236
軍事現況	240
兵役 及 訓練	240
兵器生產	241
兵力 及 裝備	243
豫備兵力	245
軍事同盟	248
外 交	251
對外政策	253
政策基調	253
國際政治觀	253
政策目標 及 方向	253
地域別 特性.....	255
政策變化過程	256

對外活動.....	261
政策決定 및 執行機構.....	261
地域外交	265
對中蘇外交	265
對東歐外交	270
對第3世界外交	271
對西方外交	276
UN 外交.....	278
經濟外交	281
修交現況	282
對外宣傳	288
宣傳方向	288
宣傳機關	289
宣傳內容 및 方式	290
親北團體	292
朝總聯	299
統 一	303
統一政策	305
統一政策의 基調.....	305
南韓觀	305
統一觀	306
對南革命의 基本戰略：統一戰略	307
社會主義 基地建設強化.....	308
南韓內의 革命力量強化.....	309
國際的 力量斗의 連帶性 強化.....	310
統一方案	311
統一方案의 變遷.....	311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315

南北對話	322
南北赤十字會談	323
南北調節委員會	326
南北變則對坐	328
南北韓 卓球協會 代表會議	331
南北韓 總理會談 實務代表 接觸.....	334
80年代 以後 北韓의 南北對話 態度	337
資 料	343
〈조선로동당 규약〉	34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36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	37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	38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 교양법〉.....	392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398
北韓 主要年表.....	426
北韓 人名錄.....	447
北韓 圖表	



政 治

政治理念

主体思想

오늘날 北韓에서는 <金日成 主體思想>이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되고 있다.

1980년 6차 당대회시 개정한 勞動黨 規約과 1972년 채택된 社會主義 憲法에서는 자기 金日成 主體思想을 黨이나 國家活動의 유일한 指導的 指針으로 삼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 黨規約 전문: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①
- 사회주의 헌법 제4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北韓에서 <主體>가 公式的으로 거론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이며, 1970년대에 와서 이른바 <主體思想>으로 理論的 體系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主體思想>은 처음 소련으로부터 수입된 공산주의의 북한내 이식과 정착,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각종 <思想敎養事業>의 전개와 병행해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① 1970.11. 5차당 대회시 개정·채택된 黨規約에서는, “조선로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思想教養事業

北韓에서의 <思想教養事業>은 解放以後 政權樹立 前까지의 <建國思想總動員運動>과 그후의 <共產主義教養>, <革命傳統教養> 등으로 모든 事業에 우선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最近에는 <은 사회의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위한 <根本方途>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다.②

첫째, 建國思想總動員 時期는 1946年 土地改革을 비롯한 重要産業 國有化 등 이른바 <民主改革>이란 이름으로 <反帝·反封建·民主 革命課業을 完遂>하고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의 初期段階에 들어선 時期였다.

이 時期에는 政權의 樹立과 각 分野에서의 社會主義 改革의 促進을 위한 住民의 參與意識과 思想意識을 고취하는 것이 思想教養事業의 주요 內容이었다. 따라서 이때는 共產主義가 전면에 내세워지지 않고 <反帝·反封建·民主思想>이 強調되었다.

둘째, 1950年代 後半까지는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와 社會主義的 基礎建設>이 본격적으로 着手된 時期였다.

이와같은 理由로 이 時期에는 社會主義的 改革을 推進하기 위하여 思想教養事業의 內容으로 大衆의 社會主義的 意識과 黨性提高가 強調되었다.

셋째, 1960年代 初까지는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가 完成되고, 社會主義制度가 確立된 時期>였다.

그리고 이와같이 確立된 社會主義制度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社會主義建設을 推進해 나가기 위해서 思想教養事業의 內容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 世界觀>과 集團主義精神, 勞動愛護精神, 革命精神과 같은 <共產主義的 道德品性>이 요구되었다.

넷째, 1960年代末까지는 <社會主義의 더 높은 發展段階>로 規定된 時期로 社會主義建設의 總路線으로 <千里馬運動>이 社會全

② 6차 당대회(1980.10)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일성은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은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로동신문(1980.10.12))

分野에 걸쳐 진행되었다.③

이 시기에는 金日成 唯一體制 確立과 關聯하여 <黨의 唯一思想 體系確立>이 強調되고 金日成 家系偶像化와 함께 <主體思想에 基礎한 政治思想的 統一>이 高唱되었다.

다섯째, 1970年代 末까지는 이른바 <社會主義 完全勝利>의 過渡期的 段階로 思想革命·技術革命·文化革命的 遂行을 위한 <3大革命小組運動>과 <3大革命 붉은기 爭取運動>이 시작된 時期이다.

이때부터 金正日 後繼體制 基盤構築을 위해 <代를 이은 革命>, <革命世대의 繼承>이 강조되고 <金日成 主體思想>이 黨의 唯一한 理念으로서 모든 活動의 指導의 指針이 되었다.

여섯째, 1980年 以後는 <社會主義 完全勝利>의 段階로 金正日 에 의한 權力承繼作業의 公式化와 함께 <은 社會의 主體思想化가 革命的 總的 任務>로 提示되었다.

主體思想의 形成過程

북한에서 <主體>가 거론되기는 1955年 勞動黨 宣傳煽動員 大會에서 김일성이 <思想에서의 主體>를 力說한데서 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④

黨 事業에서 <主體>確立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戰後 復舊建設 時期에 金日成이 黨內 反對派들의 挑戰으로 말미암아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걸쳐 黨이 政策을 樹立하고 貫徹해 나가는 데서 심각한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事정과 관련된다.

韓國의 北韓問題 專門家들 間에는 北韓에서 <主體>를 내세운 것이 黨內 宗派分子에 대한 肅清을 통한 金日成體制的 確立에 보다 根本的인 目的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시 주체확립 문제는 金日成이 반대파의 입장을 약화시킴으로

③ ④ 4차 당대회(1961.9)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일성은 <공산주의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결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일성 저작선집 3권(명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180.

④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명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라는 論文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김일성이 1930년 6월 카툰에서 진행된 共靑 및 反帝靑年同盟 지도자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처음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政治理念

씨 자신의 權力 基盤을 강화하기 위해 當面 思想事業 방향을 제시하는데 국한되었었다. 그 후 中·蘇간의 理念紛爭의 격화로 말미암아 國際共產主義運動 대열 내에 <현대 수정주의(一名 左右傾기회주의)>가 대두되자, 김일성은 <主體>를 對內외의 政治名分으로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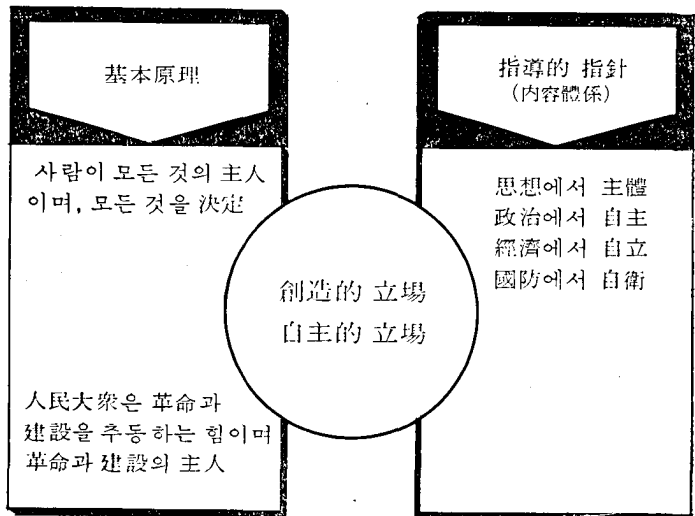
北韓이 思想·政治·經濟·國防·外交의 諸領域을 <主體思想>의 내용 체계로 綜合化·理論化시킨 것은 1970年代에 와서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른바<主體思想>을 현시대 노동계급의 “영생불멸의 지도이념”이라고 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앞서는 것으로 자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金正日 後繼體制가 公式化된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主體思想의 內容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主體思想>



는 原理에 基礎하여 <역사의 주체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인민 대중에게 귀착시키고 있다. ⑤ 北韓의 勞動黨 理論家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革命과 建設에서 <주인다운 태도>, 즉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기본적요구>로 하는 思想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지도적 지침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구현하는 것이며,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는 지도적 지침은 <인민 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北韓은 이러한 <主體思想>을 모든 분야에 걸쳐 指導 理念化하

〈主體思想〉의 內容體系 形成過程

內 容	提 起 時 期	背 景
思想에서의主體	黨 煽動員大會 (1955. 12. 28)	○ 스탈린의 死亡 ○ 黨內 國內派 肅清
經濟에서의自立	黨 中央委員會 12月全員會議 (1956. 12. 11)	○ 對外援助 減少(5個年 經濟計劃 樹立 蹉跌) ○ 黨內 反金日成運動 高潮
政治(內政)에서의 自主	黨 中央委員會 12月全員會議 (1957. 12. 5)	○ 共產圈內 個人崇拜 反對運動 ○ 黨內 中共派, 蘇聯派 打倒
國防에서의自衛	黨 中央委員會 4期 5次 全員會議(1962. 12. 10)	○ 中·蘇紛爭의 發展과 美·蘇 共存 摸索 ○ 韓國의 軍事革命
政治(外交)에서의 自主	第2次 黨 代表者會議 (1966. 10. 5)	○ 中·蘇紛爭의 擴大 ○ 非同盟 運動의 發展
綜合體系化	黨 中央委員會 4期 16次 全員會議(1967. 6. 28) 第5次 黨大會 (1970. 11. 12)	○ 金日成 1人 支配體制의 確立 ○ 金日成 個人崇拜運動의 展開

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외에서는 <하나마나한 이야기> 또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버나드·크리셔기, “김일성의 격리병동”, 뉴스위크(1979. 10. 15)

여 <유일사상 교육체계>의 확립을 통해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예컨대, 세계 각국에 조직되어 있는 <주체사상 研究小組>⑥ 의 에 이들 소조 활동을 통제·조정하는 통할기구로 국제 및 지역별 <주체사상 연구소>를 설립하여⑦ 主體思想에 대한 국제적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金日成과 金正日 <勞作>을 現地語로 발간하여 金日成의 <위대성> 및 金正日 後繼體制의 當爲性 부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主體思想의 선전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非同盟 국가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蘇聯·中共 등과 같은 共產主義 국가들에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革 命 觀

혁명觀에 있어서는 <北韓에서의 社會主義·共產主義建設>과 <南朝鮮革命> 그리고 <世界革命>이라는 세 가지 革命課業間의 關係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革命的 <民族的 任務>와 <國際的 任務>⑧를 同時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北韓에서의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은 <남조선혁명>을 위한 <基地>를 강화하는 것이 되며, 동시에 그것은 또 <世界革命의 一部分>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社會主義建設：3大革命

이론바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에 관한 理論>은 共產主義 社會에 도달할 때까지는 革命段階 區分과 매개 혁명단계의 특징과 임무

⑥ 최초의 주체사상연구 해외조직은 1969년 4월 15일 김일성의 57회 생일을 계기로 말리에서 결성된 고등사범학교 학생들의 <김일성로각 연구소조>이다.

⑦ 주체사상 연구의 국제적 조직으로는 1978.4. 일본에 설립된 <주체사상 국제연구소>가 있으며, 지역별 조직으로는 1978.2. 코스타리카에 설립된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 연구소>와 1980.9. 인도에 설립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 연구소>가 있다. 조선중앙년감 (1981) p.280

⑧ 주체사상연구소, 김일성의 주체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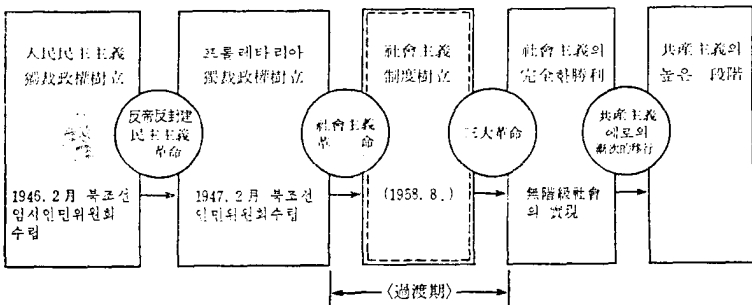
에 따르는 革命的 <目標>, 그리고 <戰略的 課業>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社會主義 革命論의 특징은 프롤레타리아 政權이 수립되어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이후부터 <社會主義制度가 樹立>되고, 나아가 無階級 社會가 實現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까지를 過渡期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까지 과도기 단계에 있어서의 혁명목표로는 <物質的 要塞>와 함께 <思想的 要塞>의 占領이 제시되고 있다.

<物質的 要塞의 占領>이란 <社會主義의 物質 技術的 土臺>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며, <思想的 要塞의 占領>이란 <인사회를 革命化, 勞動階級化>하여 사람들의 思想을 共產主義的으로 改造하는 것을 의미한다.

革命的 段階區分



北韓은 그와같은 過渡期段階에 있어서의 革命目標 達成을 위해서 사상, 기술, 문화의 이른바 <3대혁명>의 수행을 당면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3大革命이라 함은 思想革命, 技術革命, 文化革命 등 세가지 革命을 뜻하는데, 오늘날 北韓에서는 노동뿐만 아니라 교육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주민이 이를 기본행동원칙으로 삼고

⑨ 철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있다.^⑩

3大革命 中에서는 思想革命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며, 이를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왜냐 하면, 思想革命은 社會全體를 革命化, 勞動階級化하는 <人間改造事業>이며, 동시에 혁명적 열의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政治事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도기단계>에 있어서 思想革命은 人間改造事業에 집중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노동계급의 혁명화>, <농민의 노동계급화·혁명화>, <인텔리의 혁명화·노동계급화>를 의미하고 있다.^⑪

이와 같은 思想革命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당 조직은 물론 政權機關, 勤勞團體, 敎育·文化·保健機關 등 모든 조직이 動員 活用되며, 組織을 통한 각종 學習과 文學·藝術을 통한 <群衆敎養 改造事業> 등의 方法이 이용되고 있다.

思想革命의 중요성 때문에 모든 分野의 活動에서는 政治事業의 先行이 강조되고 있다.

技術革命은 共產主義 社會로 넘어가기 위한 <물질적 요새 점령>이라는 內容의 革命으로서 <낡은 技術을 새 기술로 바꾸고 손노동을 機械化·半自動化·自動化하기 위한 鬭爭>을 뜻하며,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줄인다는 데 그 당면 목표를 세우고 있다^⑫

이러한 목표를 내세우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는 계속되는 經濟計劃에 따른 <긴장된 勞力事情>을 푸는데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

오늘날 金日成은 <일군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보수주의·사대주의·기술신비주의·경첩주의>를 오늘날 技術革命을 가로막는

⑩ 北韓憲法 제11조, 36조, 사회주의로동법 9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6차 당대회(1980. 10)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⑪ 사상혁명, 은 사회의 혁명화·로동계급화에 관한 김일성의 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⑫ 北韓憲法 제25조, 사회주의 로동법 제7조, 6차 당대회(1980. 10.)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장애로 간주하고, 이것을 打破하는 것이 기술혁명 수행에서 나서는 선차적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文化革命은 노동계급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基本的인 革命課業의 하나로 <근로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文化技術이란 근로자들이 노동시 필요한 기술적 지식, 예컨대 化學肥料의 施肥, 트랙터 利用과 管理 方法 등을 말한다. 生産文化와 生活文化는 生産活動과 日常生活에 있어 환경위생경화와 秩序 確立을 內容으로 하고 있으며 社會主義 生活樣式을 北韓社會內에 뿌리박는 데 目的이 있다.

오늘날 북한은 이러한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 추진을 위해 <3大革命小組運動>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全黨·全人民的 次元에서 <3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과 <숨은 영웅 모범따라 배우기 運動> <80년대 속도 창조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南朝鮮革命

北韓은 <南朝鮮革命>을 이른바 <南朝鮮革命的 2段階 方式>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완수>를 위한 지역혁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성격을 <人民民主主義 革命>으로 규정하고 있다.

<南朝鮮革命>의 목표는 현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非共產系列까지 일단 참가시키는 새로운 <民主聯合政府> 형태의 <人民政權>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1 단계 혁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력량> 강화의 戰略的 構想은 우선 남한에 <마르크스·레닌主義黨>⑩을 건설하며, 그 주위에 노동자, 농민을 결속시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고 <보조력량>⑪을 동원하는 <統一戰線> 형성을 통하여 <反革命勢力>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⑩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일 혁명당을 지칭(로동신문 1979.8.25)

⑪ <보조력량>에는 국군병사 및 중하층 장교가 포함된다.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0) p. 118

〈統一戰線形成〉은 下層 統一을 위주로 하면서 上層 統一을 밀접히 결합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⑮ 즉 統一戰線의 대상인 南韓內의 政黨·社會團體와 제휴 합작을 실현하는 데서 그 대상 政黨·社會團體內의 하층 군중들과 〈下層 統一戰線〉을 형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政黨·團體內 支配層과의 〈上層 統一戰線〉을 형성하여 上·下를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 政黨과 社會團體들을 하나씩 하나씩 統一戰線團體에 흡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방침하에, 主客觀의 정세에 맞게 政治鬭爭과 經濟鬭爭, 合法鬭爭과 非合法鬭爭,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 작은 규모의 투쟁과 큰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가지 투쟁 형태와 투쟁방법을 결합하며,^⑯ 모든 투쟁은 〈主權〉을 쟁취하는 〈결정적 투쟁〉의 준비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南韓에서 〈人民政權〉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平和的 方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暴力的 方法〉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世界革命

이른바 〈사회주의 역량과 민족해방운동, 노동운동 및 민주주의 운동〉을 그 기본 〈動力〉으로 하고 있는 世界 革命은 전 한반도의 共產化를 위한 대외적 환경으로서의 〈국제혁명력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된다. 왜냐하면 〈전세계적 범위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개별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의 公산화를 위한 중요한 〈고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世界 革命觀에서는 그 基本戰略으로서 反美鬭爭을 〈세계 모든 혁명력량〉의 先次的 課業으로 규정하고, 〈현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 제국주의에 대한 공격집중〉과 〈반미투쟁의 중요한

^⑮ 김일성 선집 4권(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0) p.62.

^⑯ 김일성, “5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1970.10.4)

고리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反對를 당면한 鬪爭 目標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鬪爭 目標의 達成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반제 반미 공동행동과 반제 반미 통일전선 형성>에 모든 <반제 반미 역량>이 집중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의 단결>이 實現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⑩

⑩ 주체사상 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세계혁명 이론(평양 : 사회과학 출판사, 1975)
1980. 10. 당 6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일성은 “현시기 세계 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역량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동신문(1980. 10.)

政治體制

朝鮮勞動黨

北韓 政治體制的 특징은 한마디로 1黨獨裁體制, 1人首領支配體制다 할 수 있다.

첫째로, 정권기관이나 각종 정치조직에 대한 〈首領과 黨的 領導〉가 강조되며, 국가기관이나 각종 政治組織은 黨的 지도와 영도 밑에 事業해야만 하는 이른바 〈黨國家的 性格〉을 뚜렷이 하고 있다.

북한의 勞動黨 이론가들은 〈주권을 잡은 勞動階級이 사회에 대한 政治的 領導〉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는 반드시 〈수령〉에 의해 유일적으로 領導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또 〈수령, 黨, 계급, 대중이 하나의 全一體를 이루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 아래서 黨은 〈최고 형태의 혁명조직〉으로서 〈혁명의 참모부〉이며 〈總導적인 領導力量〉으로, 그리고 근로단체 등과 같은 각종 정치 조직들은 〈당의 外廓 단체〉로서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引傳帶〉이며, 광범한 대중의 〈사상교양 조직〉이라고 그 성격을 정의하고 있다.

둘째로, 혁명과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령〉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에 대해 지위에 있어서는 절대적 지위로, 역할에 있어서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死活的 意味를 갖는 중요한 문제로 설명하여 〈首領의 唯一的 領導〉를 강조하는 김일성 1인 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즉 〈수령〉은 프롤레타리아 당과 국가를 창건지도하며 당의 혁명전통과 지도사상을 제시하는, 다시 말해서 〈당의

최고 영도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의 총체를 영도하는 최고뇌수)이며 당과 대중을 통일 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라고 한다.⑮

따라서 이러한 <수령>의 영도적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은 곧 당의 영도를 거부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는 <반혁명적 책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形成過程

오늘날 北韓에서는 <朝鮮勞動黨>의 創建日을 1945年 10月 10日로 公式化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로는 1945年 10月 10日부터 13日까지 平壤에서 개최된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會議 마지막 날(10月 13日) 채택한 <政治路線과 조직강화에 관한 決定書>에 따라 창설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북조선 노동당>의 모체가 됐던 것이다.⑯

이렇게 <分局>創建 初期만 해도 <조선 공산당>의 <서울 中央>은 인정되고 있었다.

<分局>은 다시 美·蘇共同委員會가 임시정부 조직을 위한 協議對象政黨, 社會團體의 자격문제에 관한 제 5호 성명을 발표(1946年 4月 18日)한 것을 계기로 1946年 4月末경 <北朝鮮共產黨>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이어 同年 8月 29日에는 中國 延安에서 평양으로 돌아온 <朝鮮獨立同盟>系를 中心으로 지식층, 小市民層을 망라하고 있던 <朝鮮新民黨>과 合黨, <北朝鮮勞動黨>으로 發足を 보게 되었다.

<北朝鮮勞動黨>은 1948年 8月 <人民共和國> 政權樹立을 위하여 <南朝鮮 勞動黨>과 <聯合中央委員會>를 구성하였고⑰ 이어 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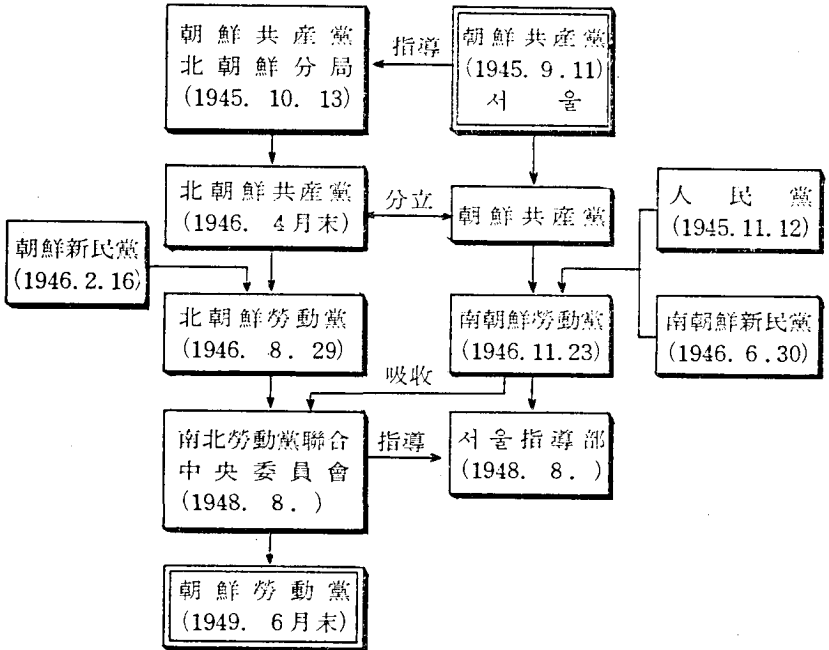
⑮ 정치 용어사전(평양 : 사회과학 출판사, 1970) p.196.

⑯ 조선중앙연감(1949) p.715; 당시 北韓地域駐屯 蘇聯軍(25軍)의 軍事委員會 委員이었으며, 아·아·로마넝코 후임으로 蘇聯軍<民政機構> 責任者로 服務했던 엔·게·레베데브(당시계급 : 少將)는 同分局이 蘇聯軍司令部 및 <民政機構>와 밀접한 협력을 하였다고 回顧하고 있다. 엔·게·레베데브, “遂行하여야 할 義務를 意識하며”, 웨·베·박, 에스·에스 수술리나 共編, 朝鮮의 解放(모스크바 : 蘇聯邦科學 아카데미 東邦學研究所, 1976) p.93.

⑰ 조선노동당 역사 교재(평양 : 조선노동당 출판사, 1964) p.228.

權樹立 以後 1949年 6月 30日, 南·北勞動黨은 <1國 1黨> 原則에 따라 <조선로동당>으로 統合되었다.

朝鮮勞動黨 形成過程



性格變化

<조선로동당>은 창당 이래 性格上 많은 變化를 겪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黨의 性格變化는 특히 黨의 理念, 目標나 傳統에 대한 定義 그리고 組織의 運營과 黨員構成의 變化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理念·目標: 黨의 理念, 目標에 관한 變化는 歷代黨規約의 變化過程에서 알아볼 수 있다.

1, 2次 黨大會에서 채택한 黨規約에서는 黨의 理念을 마르크스·레닌主義로 규정하면서 투쟁목표에 대해서는 다만 統一政府 수

럼으로만 규정했다.

그러다가 1956年 4月 3次 黨大會 규약에서는 共產主義 사회 건설이 최종 목표임을 밝히었고 1961年 9月 4次 黨大會 규약에서는 黨이 이른바 <항일 무장투쟁에서 이룩한 혁명 전통의 계승자>임을 명백히 하였다.

3次 黨大會 규약부터 마르크스·레닌主義와 혁명 전통이 접목되기 시작한 黨의 이념은 1970年 11月 5次 黨大會 규약에서는 마르크스·레닌主義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指導理念 및 目標의 變遷過程

規 約	理 念 傳 統	當 面 目 標
北朝鮮勞動黨 (1) 創立大會 (46.8)	마르크스·레닌주의	○ 統一政府의 樹立
北朝鮮勞動黨 (2) 2次 大會 (48.3)	마르크스·레닌주의	○ 統一政府의 樹立
南北勞動黨 (3) 合黨大會 (49.6)	마르크스·레닌주의	○ 統一政府의 樹立
3次 黨大會 (4) (56.4)	마르크스·레닌주의 + 조 선인민의 革命傳統	○ 社會主義制度의 樹立 (대내) ○ 反帝·反封建 民主主義 革命(한반도)
4次 黨大會 (5) (61.9)	마르크스·레닌주의 + 항 일무장투쟁의 革命傳統	○ 社會主義制度의 強化發 展(대내) ○ 反帝·反封建 民主主義 革命(한반도)
5次 黨大會 (6) (70.11)	마르크스·레닌주의 + 金 日成 主體思想	○ 社會主義의 승리보장, (대내) ○ 民族解放과 人民民主 主義革命수행(한반도)
6次 黨大會 (7) (80.10)	金日成 主體思想	○ 社會主義 勝利(대내) ○ 민족해방과 인민민주 주의 혁명완수(한반도)

出 處 : (1) 박창욱, “북조선 로동당 규약해설”, 근로자, (1949.3.), pp.43~46 및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북조선 로동당 출판사, 1946), (2)~(7) 각 당대회 규약.

김일성 <主體思想>으로 바뀌었고, 1980년 10월 6次 黨大會 규약에서는 김일성 <主體思想>만이 유일한 黨의 이념으로 명문화 되었다.

노동당은 6次 黨大會 규약에서 <은 社會의 主體 思想化>를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산주의 건설에 最終 目標를 두어 왔으나, 소위 <當面目標>에서만은 대내외 환경에 따라 변화를 보여 왔다. 統一 戰線의 구축을 통한 統一政府 수립에서 출발하여 대내적으로는 社會主義 제도수립·강화 또는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 보장과 함께 전 한반도에서의 反帝·反封建 民主主義革命 또는 민

組織·運營體系의 性格變化過程(中央)

黨大會	指 導 機 關	黨責任者	會議開催期間
1, 2 次 黨大會	黨大會→黨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常務委員會	政治委員會委員長	黨大會：1년에 1회 中央委員會：3個月에 1회
合黨大會 (49. 6)	黨大會→黨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組織委員會	全黨委員長	黨大會：1년에 1회, 中央委員會：3個月에 1회이상
3 次 黨大會	黨大會→黨中央委員會→常務委員會와 組織委員會	中央委員會委員長	黨大會：4년에 1회 中央委員會：4個月에 1회이상
4 次 黨大會	黨大會→黨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秘書局	中央委員會委員長	黨大會：4년에 1회 中央委員會：6個月에 1회이상
5 次 黨大會	黨大會→黨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秘書局	中央委員會總秘書	黨大會：4년에 1회 中央委員會：6個月에 1회이상
6 次 黨大會	黨大會→黨中央委員會→政治局→秘書局	中央委員會總秘書	黨大會：5년에 1회* 中央委員會：6個月에 1회이상

* 당 대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는 유보규정을 두고 있음.

族解放과 人民民主主義 革命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反帝·反美 統一戰線 형성으로 그 목표를 바꾸어 왔다.

○ 組織의 運營：黨組織의 運營에 있어서는 時間이 흐를수록 會議을 통한 黨員들의 合意보다는 金日成을 頂點으로 한 少數集團의 下向式 指示에 따른 운영체제로 바뀌어져 왔다. 초기에는 黨大會와 中央委員會의 權限이 크게 중요시되어 黨大會는 每年 1回(規約上), 中央委員會는 3個月에 1회씩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현재는 黨大會는 5년에 1回, 中央委員會는 6個月에 1회개최토록 되었다.

1956年 3次 黨大會부터 中央委員會보다는 政治委員會^㉑가 그 權限이 커졌으며, 1966年 10月の 黨代表者會議에서 <秘書局>制가 신설됨에 따라 모든 黨의 운영이 金日成의 指示를 받는 <秘書局> 中心으로 行해지게 되었다.

○ 黨員構成：黨員構成의 變化는 <勞農黨>의 性格을 지향해 왔다.

黨員 構成上의 획기적인 變化가 있었던 것은 動亂中이었다. 이 期間中에는 黜黨·戰死 등으로 인한 많은 黨員 감소가 있었던 反面, 1950年 7月부터 1952年 11月까지의 期間 동안에 約 45萬名에 달하는 대대적인 黨員 增加가 있었다. 당시 金日成은 전 黨원 중 약 40%가 新입 黨원이었으며 그중 半 이상이 文盲者였다고 밝히고 있다.^㉒ 따라서 黨員의 量的인 成長에 따른 質적 저하가 문제되었으며, 黨員에 대한 政治敎養事業의 강화 필요성이 강조 되기도 하였다.

그후 이러한 문제점과 필요성은 黨의 入黨節次와 黨원의 義務를 強化하는 政策으로 나타났다. 3次黨大會부터 候補黨員制를 신설하여 “黨員으로 入黨할 것을 희망하는 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후보黨원의 후보 年限을 經過하여야 한다.”

㉑ 1980. 10. 6차 당대회에서 <정치위원회>는 그 이름이 <정치국>으로 바뀌었다.

㉒ 김일성, “2기 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52. 12. 15) 보고”, 김일성 저작선집, 1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7.) p. 372.

黨員構成의 變化

區分 時期	構 成 比 (%)						
	勞動者	貧農	中農	富農	事務員	學生	商人, 企業家, 自由業者, 其他
1945. 10	30	34			36		
1946. 8	20	50.5	29.5				
1948. 3	20.2	52.8	27				
1950. 7	21.2	54.7	7.5	0.3	11.4	1.0	3.9
1952. 12	22.2	57.4	3.9	0.1	12.5	1.4	2.5
1956. 1	22.6(1)	56.8	3.7		13		3.9
1961. 9	30						

出處: 각 당대회시 중앙위원회 사업보고, 김일성 연설 및 <조선중앙년감>을 근거로 작성.

(1) 4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는 17.3%로 언급.

고 규정하였으며, 4次黨大會부터는 入黨保證人의 黨年限을 당시까지 1年으로 되어 있던 것을 2年으로 늘림으로써 入黨節次를 강화시켰다.

黨員의 義務強化를 위해서는 4次黨大會부터 黨員의 黨生活, 黨會議參加, 討議 등 黨員의 活動을 규정하였던 것이 5次大會에 와서는 여기에 黨學習까지 義務條項으로 추가하였다.

黨員構成에 관해서는 1956年 1月 發表한 이래 지금까지 公式的인 發表가 없다.

黨 勢

創黨 初期 <朝鮮勞動黨>은 4,530명을 가진 前衛組織으로 출발하였으나 <朝鮮新民黨>과의 合黨大會인 <北朝鮮勞動黨創立大會>를 계기로 급속히 黨員을 增加시킴으로써 <大衆의 政黨化>를 꾀하였다.

1952年 12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5次 전원회의> 때에는 100만 당원을 확보하고, 약 5만 개의 세포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1961年 9月 1日 現在 당원수를 1,311,563名, 細胞數를 65,000

黨 員 增 加 趨 勢

時 期	黨 員 數	黨 細 胞 數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3次擴大執行委員會 (1945. 12)	4, 530	
北朝鮮勞動黨 創立大會 (1946. 8)	366, 000	12, 000
北朝鮮勞動黨 2次大會 (1948. 3)	725, 762	28, 000
朝鮮勞動黨 中央委 2期 5次 全員會議 (1952. 12)	1, 000, 000	48, 933
朝鮮勞動黨 3次大會 (1956. 4)	1, 164, 945	58, 259
朝鮮勞動黨 4次大會 (1961. 9)	1, 311, 563	65, 000
朝鮮勞動黨 創建 20週年(1965. 10) (1)	1, 600, 000	
朝鮮勞動黨 創建 25週年(1979. 10) (2)	1, 600, 000	
1972. 8 (3)	2, 000, 000	
1978. 1 (4)	2, 000, 000	약 200, 000
朝鮮勞動黨 6次大會 (1980. 10) (5)	약 3, 000, 000	약 300, 000

出處 : 各黨大會 中央委 事業報告, 金日成 演說 및 <조선중앙년감>

(1) 로동신문(1965. 10. 10)

(2) 로동신문(1970. 10. 10)

(3) 로동신문(1972. 8. 29)

(4) 로동신문(1978. 1. 29)

(5) 당 5기 19차 전원회의(1979. 12. 18) 당대표자 선출비용(당원 1,000명 당 권의권자 1명)을 근거로 작성한 추계치임.

獨로 公式發表한 以來 지금까지 당세에 관한 公式的인 통계 발표는 없으나, 1980年 10月 6次 黨大會에 총 322명이 당대표 (결의권대표 : 3,062명, 발의권 대표 : 158명)가 참석한 것으로 미루어 약 300만 정도로 추계된다.

이것을 기준으로 1개 세포당 당원을 15명으로 잡는다면(당 규약상에는 5~30명) 약 20만개 정도의 黨細胞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되며, 당원의 인구대비는 17.00%(북한 인구를 1,769만명으로 추계할 경우)에 이른다.

그런데 최근년의 이와 같은 당원수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대해 한국의 대다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金正日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3大革命小組員 중심의 戰後世代 엘리트들의 대거 입당 그리고 사회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및 업무의 복잡화로 당원의 비율

政治體制

확대를 통해 각종 機關과 工場, 企業所들에 대한 당의 지도·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組織體系

黨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의 原則〉下에 모든 地域別, 部門別로 階序의 組織을 가지며, 그 組織原理는 下級黨 組織은 上級黨 組織을 선거하고, 上級黨 조직은 하급당 조직의 사업을 지도 겸임한다는데에 기초하고 있다. 現 勞動黨의 조직체계는 5次 黨大會에서 채택된 당규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6次 黨大會 규약에 의거 일부 개편되었다.

당조직의 最高지도기관은 全黨의 경우는 黨大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의 경우는 해당 黨代表會이다. 당대회와 당대회 또는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간에는 당중앙위원회와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遂行한다.

軍隊내에는 각종 單位에 당조직을 가지며, 군내내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 직속하에 조직되어 있다. 軍隊內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批准을 받아 駐屯地域의 각종 당위원회에 政治 및 軍事幹部를 委員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必要에 따라 직속으로 주요 政治·經濟·軍事機關에 政治局(예컨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조직하며, 이 정치국들은 해당 機關에 조직된 黨委員會의 執行部로서 機能을 遂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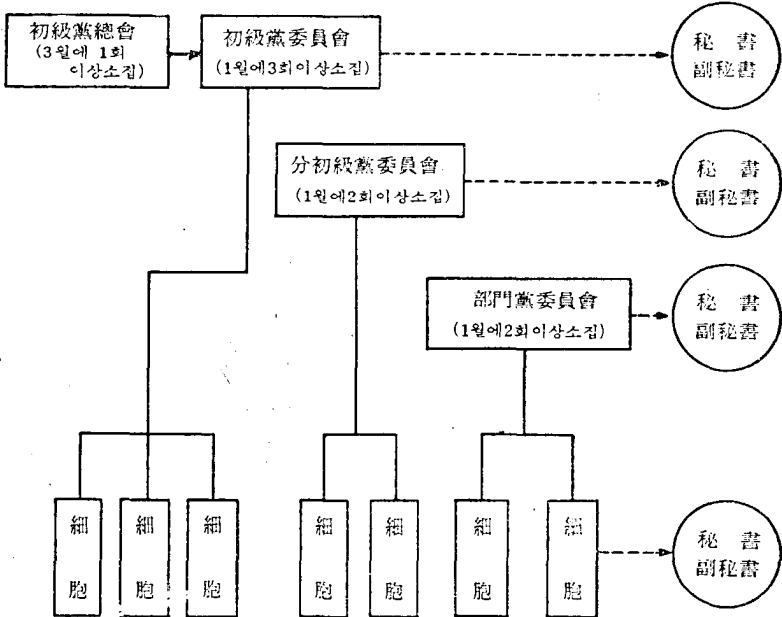
당의 基層組織은 〈당원 생활의 據點〉, 〈당의 전투 단위〉로 정의되는 〈당세포〉이다. 黨細胞는 당원 5~30名인 單位에서 조직되며, 특수한 경우는 例外도 있다.

이러한 黨細胞의 上級組織으로 〈初級黨委員會〉가 있으며 同〈初級黨委員會〉는 당원이 31名 이상인 單位에서 조직하고, 必要에 따라 1年 임기의 〈執行委員會〉를 선거한다. 당원 31名 이상인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는 초급당위원회와 당세포 중간에 〈部

門(마을) 黨委員會)를 조직할 수 있으며, 초급당위원회와 부문(마을) 당위원회의 중간형태로 <分初級黨委員會>를 조직할 수 있다.

당원 3명 미만의 단위에는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責任者로 하여 <黨小組>를 조직할 수 있다.

黨基層組織形態



中央機關

○ 黨大會：黨大會는 形式上으로 勞動黨의 최고기관이다. 黨規約에는 黨大會를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召集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必要에 따라서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黨大會는 ① 黨中央委員會 및 중앙검사위원회 活動의 總和, ② 黨綱領과 規約의 採擇 및 修正補完, ③ 黨路線과 政策 및 戰略戰術의 基本문제 결정, ④ 당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사위원회의 선거와 같은 事業을 遂行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事實상 당중앙위원회

또는 정치국 決定事項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당대회의 代表者 선거절차와 選出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決定하며, 다음 級の 黨組織인 道(直轄市) 黨代表會, 市(區域)·郡黨代表會에서 選出하도록 되어 있다.

1980年 10月 개최된 6차 黨大會 대표자 선출비율을 보면 黨員 1,000명에 決議權 代表者 1명, 候補黨員 1,000명에 發言權 代表者 1명으로 되어 있다.②

黨大會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 개최되었으나, 당 규약상 規定한 대로 열린 일이 없다. 6次 黨大會도 1970年 11月 5次 黨大會가 개최된지 10년만에 열리었다.

黨大會開催現況

黨大會	開催日字	代表數	代表構成
北朝鮮勞動黨創立大會	1946. 8. 28 ~30	801	勞動者: 183 農民: 157 事務員: 385 其他: 76
北朝鮮勞動黨 2次大會	1948. 3. 27 ~30	999 (이중 2名不參)	勞動者: 466 農民: 270 事務員: 234 其他: 29
朝鮮勞動黨 3次大會	1956. 4. 23 ~29	916 (이중 2名不參)	勞動者: 439 農民: 192 事務員: 246 其他: 39
朝鮮勞動黨 4次大會	1961. 9. 11 ~18	1,657 (이중 3名不參)	勞動者: 944 農民: 451 事務員: 191 其他: 71
朝鮮勞動黨 5次大會	1970. 11. 2 ~13	1,734(1)	
朝鮮勞動黨 6次大會	1980. 10. 10 ~14	3,220(2)	

出處: 各 黨大會 代表資格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1) 발언권만 갖는 대표 137명 포함.

(2) " " " 158명 "

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5기 19차 전원회의 결정", 로동신문 (1979. 12. 13).

黨 中央委員會는 黨大會와 大會 사이에 黨의 路線과 政策 또는 戰略戰術에 관한 긴급한 문제를 討議·決定하기 위해 <당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 실제로 黨 大表者會議가 소집된 예는 3차 당대회와 4차 당대회 사이인 1958년 3월과 4차 당대회와 5차 당대회 사이인 1966년 10월 두차례 뿐이다.

○ 中央委員會：中央委員會는 黨大會와 黨大會 사이의 모든 黨 事業을 管掌하는 당조직의 最高指導機關이다. 中央委員會는 政治局과 政治局 常務委員會, 總秘書와 秘書를 選舉하고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組織한다.

중앙위원회는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數는 당대회에서 決定한다. 중앙위원회의 후보위원은 發言權만 가지며, 준 후보위원은 <生産勞動에 직접 참가하는 核心黨員>에서 選出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은 당 대회에서 선출되나, 위원중 缺員이 생겼을 때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후보위원 중에서, 또는 별도의 規則과 절차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黨員中에서 補選하며, 중앙위원회 위원의 除名도 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결정한다.

歷代 黨中央委 全員會議 討議案件 (1982.12 現在)

期	開催 回数	討議된案件						
		黨內 問題	對內 政治 問題	對南關 係, 統 一問題	對外 關係	經濟 問題	軍事 問題	社會 問題
1期('46. 8~'48. 3)	12	10	3	1		2		
2期('48. 3~'56. 4)	17	10	4	2	3	7	1	
3期('56. 4~'61. 9)	15	7	1		4	20		1
4期('61. 9~'70. 11)	20	8	3	1	1	20	2	5
5期('70. 11~'80. 9)	19	7	4	2	1	17		3
6期('80. 10~)	6	2	1			8		

出處：〈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중앙위원회는 6개월에 1회이상 <전원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과 지방의 黨·政機關 및 經濟機關 등의 책임 일꾼들이 참가하는 <확대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그간 전원회의에서 취급토의된 안건을 보면, 5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경제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1957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5~7개년 계획 등의 中長期經濟計劃의 실시와 관련이 있다.

○ 政治局 :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의 사이에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黨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사실상의 최고 핵심 부서이다.

政治局은 1946년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에 이어 개최된 1기 1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회로 처음 조직되었으며, 1956년 3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회로 일시 개칭되었다가 1961년 4차 당대회 이후 다시 정치위원회로 불려지면서 정치위원회 내에 <常務委員會>가 새로이 조직되었으나 5차 당대회에서 이를 폐지시켰다. 그후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에서는 정치위원회를 <정치국>으로 다시 개칭하고, 정치국 내에 <상무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秘書局 : <中央委員會 秘書局>은 幹部問題, 黨內問題, 其他 黨면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토의 결정하고, 그 결정의 執行을 조직 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위원회의 各 部器를 日常的으로 지휘 감독하는 黨의 中樞機關이다. 뿐만 아니라, 秘書局은 정치 체제 전반에 걸쳐 黨의 지도·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비서국은 1966년 10월 黨4期 14次 中央委 全員會議의 결정에 따라 中央委員會에 設置되었다.

○ 軍事委員會, 檢閱委員會 :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의 각급 부대에 설치된 당조직 全體를 唯一的으로 嚮導하는 군사부문의 최고 黨 정책 결정기구로서 軍에 대한 黨의 指導를 보장해 주는 中央 通路이다. 그리고 黨의 군사정책을 토의 결정

하며, 軍需産業과 군사력 강화를 위한 事業을 조직 지도한다.

중앙위원회에 군사위원회가 組織된 것은 1962年 12月 4期 5次 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國防力 強化에 관한 決定을 채택한 후부터이다.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反黨·反革命的 宗派 行爲를 하거나 당의 노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 규율을 위반한 당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의 규율문제와 관련된 道(直轄市) 당 위원회의 提議 및 당원의 申訴를 심의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創黨大會 규약에는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黨大會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차 당대회부터는 중앙위원회 지시밑에서 사업을 하고 그 구성원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검열위원회를 중앙위원회의 직접 지도하에 둔 이유는 당의 최고지도 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의 機能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中央檢查委員會 : 중앙검사위원회는 당대회에서 選舉하여 구성되며, 黨의 財政 經理事業을 검사하는 機能을 맡고 있다.

地方機關

道(直轄市) 黨과 市(區域)·郡黨 등 各級 地方黨 조직체제는 당 중앙지도기관의 조직 원칙에 준하고 있다.

地方黨 代表會는 3년에 1回 召集키로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 있도록 하였다. 地方黨 代表會에서는 해당 地方 黨委員會와 검사위원회 및 上級黨 會議에 對한 代表를 選舉하고 당해 지방당위원회와 검사위원회 事業을 총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各級 地方黨 위원회는 執行委員會, 책임비서와 비서를 選舉하고 秘書處, 군사위원회 및 검열위원회를 조직한다.

各級黨 執行委員會는 1개월 2회이상 소집하며 全員會議과 全員會議사이 에 黨委員會의 名義로 黨內事業을 조직 집행하며 行政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地方 黨委員會의 主要任務는 다음과 같다.

- 1) 黨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黨의 唯一思想 體系를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 2) 黨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해야 하며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黨 주위에 결속시켜야 한다.
- 3) 근로 대중들이 자기 임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 4) 勞農赤衛隊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전투태세를 완비하며 군사 동원사업을 보장한다.

道(直轄市) 黨위원회는 하급당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하며, 市(區域)·郡黨위원회는 초급당조직 집행기관의 강화 및 그 기능과 역할의 향상을 위해 그들을 지도·幫助한다.

黨의 外廓團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53조에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정치단체나 조직들은 <조선로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정당으로는 이른바 <조선로동당>의 <友黨>으로 1945年 11月 3日에 창립된 <조선사회민주당>②과 1946年 2月 8日에 창립된 <天道教 靑友黨>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실제적인 정당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대남비난 성명 발표시나 통일문제 등 남북관계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시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이름 뿐인 정당들이다.

또한 북한 발표의 각종 성명에서는 이러한 정당 외에도 많은 사회단체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② 1981.1. 개최된 <조선민주당> 6차 당대회에서 <조선사회민주당>으로 개칭.

예컨대, <근로대중의 조직>으로 불리우는 근로단체로는 <조선적업총동맹>과 <조선 농업근로자 동맹>,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및 <조선 민주여성동맹> 등을 존속시키고 있는데 이들 사회단체들은 <조선 로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引傳帶>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幫助者>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재북평화통일 추진협의회> 등과 같은 위장 평화통일 단체를 비롯하여 세계평화와 반제·반식민주의 투쟁을 하는 인민들과의 연대성 표방의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원회>와 <세계 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그리고 위장 종교단체로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및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를 명목상 존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통일노선 선전과 反韓·反美 선전 선동 활동을 위해 이름만 존재하는 노동당의 前衛組織들이다.

勤勞 大衆團體의 現況

단	체	창립일	맹원수
직업총동맹		1945. 11. 30	약 240만(71. 12. 현재) ⁽²⁾
농업근로자동맹		1965. 3. 27	약 140만(82. 12. 현재) ⁽³⁾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¹⁾		1946. 1. 17	약 400만(81. 10. 현재) ⁽⁴⁾
민주여성동맹		1945. 11. 18	약 270만(71. 10. 현재) ⁽⁵⁾

出處: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1) 1964. 5. 12일부터 <조선 민주청년동맹>을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으로 개칭. (2) 로동신문(1971. 12. 5). (3) 1982. 12. 15 농근맹 위원장 김이훈의 사업총화보고. (4) 로동신문(1981. 10. 21). (5) 로동신문(1971. 10. 6)

黨의 運用體系

勞動黨의 運用은 黨政策의 決定 및 執行과 黨幹部에 대한 人力管理 및 黨員에 대한 敎養을 基本으로 하고 있다.

黨政策은 한마디로 金日成의 敎示와 그 具現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黨政策의 決定은 形式上 各級黨委員會의 會議形式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각급당 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가로 성립되며, 會議의 決定은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會議에서 채택된 제반 政策은 사실상 秘書制를 根幹으로 하여 집행되고 있다. 중앙에는 秘書局을, 지방에는 秘書處를 두어 해당 黨委員會의 各部署들을 통괄케 하고 있다. 中央委員會의 秘書局에는 總秘書와 9명의 秘書, 그리고 地方 당위원회의 秘書處에는 責任秘書와 수명의 秘書가 있으며, 〈行政·生産單位〉에 있는 基層組織인 초급당 위원회와 黨細胞에는 秘書와 副秘書가 있다.

黨幹部에 대한 효율적인 人力管理를 위해서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幹部養成 및 再教育體系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黨 教育機關으로는 중앙에 市(區域)·郡黨 부장급 이상을 입교대상으로 하는 〈김일성 고급 당학교〉가 있으며, 各道에는 共產大學, 各郡에는 郡黨學校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김일성 고급 당학교〉의 경우 강습반, 기본반, 재직반, 연구원반 등 1개월~5년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모든 당간부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각급 再教育機關에서 적어도 한달씩 교육을 받는 것이 義務化 되어 있다²⁵⁾

이밖에 당의 路線과 政策宣傳을 위한 선전·선동 매체로 〈로동신문사〉와 〈로동당출판사〉가 있는데, 이들은 당원들과 근로대중에 대한 사상교양과 함께 당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政權機關

北韓에서는 국가의 계급적 본질과 使命을 강조하면서 〈人民共和國〉은 〈勞·農同盟〉에 기초한 〈人民政權〉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²⁵⁾ “당간부 양성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6권(조선로동당 출판사, 1974.) pp. 136~152.

〈정권〉의 지위는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 가장 포괄적인 引傳帶〉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政治體制에 있어서 〈政權은 首領의 혁명사상을 實現하는 정치기구〉로서, 그리고 〈당의 路線과 政策의 執行者〉로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날 北韓의 公式理論은 이와 같은 역할을 遂行하는 〈政權機

統治權行使의 法的形式

機 關	形 式
主 席	命 令
最高人民會議	憲法, 法令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 定
中央人民委員會	政令, 決定, 指示
政 務 院	決定, 指示
部·委員會	指 示
地方人民會議	決 定
地方人民委員會	決定, 指示
道(直轄市)經濟指導委員會	決定, 指示

關〉의 기능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 1) 反革命的 要素 등에 대한 독재를 수행하는 〈鎮壓의 機能〉
- 2) 社會에 대한 法的 制裁를 수행하는 〈統制的 機能〉
- 3) 思想革命과 文化革命을 추진하는 〈文化教養的 機能〉
- 4)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經濟組織的 機能〉
- 5) 革命的 국제적 임무를 수행하는 〈對外的 機能〉²⁶⁾

이러한 정권기관의 기능은 주로 各級 機關의 法的 權利行使 形式으로 표현된다.

²⁶⁾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에 관한 김일성의 사상(평양 : 사회과학 출판사, 1971.) pp.273~263.

人民共和國의 樹立

오늘날 北韓에서는 公式的으로 1948年 9月 9日을 政權 창건 일로 記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방 직후부터 북한지역에서는 소련軍의 占領下에서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政權>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착착 進行돼 왔었다.

그 첫 作業은 1945年 8月 27日 <평남 인민정치위원회>의 조직을 비롯한 各地方 <人民委員會>의 조직이었다. 同年 10月 8日에는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부의 주재로 평양에서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가 소집되고, 10月 28日에는 <북조선 5도 행정국>이 정식 發足되었다. ②

이듬해인 1946年 2月 8日, 평양에서 개최된 <북조선 민주주의 각 정당·사회단체, 각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에서는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관의 양해 밑에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의 創設을 決定하였다.

그런데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同年 3月 5日 공포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北韓地域의 <中央行政機關>이었으나, 소련군사령부에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사전에 提出하여, 소련군 사령부의 포고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는 點에서 사실상 獨自性이 없었다.

이어 1946年 11月 3日에는 北韓 全域에 걸쳐 道·市·郡 人民委員會 選舉를 實施하여 3,459名의 人民委員을 選出하였는데, 北韓은 당시 총유권자 4,516,120명중 4,501,813명이 투표 총 유권자의 99.6%가 투표에 參加하였다고 發表하였다.

1947年 2月 17日부터 19日까지 3日間에 걸쳐 各道·市·郡人

② 同會議에 參席하였던 이·엘·키스차코프(當時 北韓駐屯 蘇聯 第26軍司令官·大將)는 이 會議에서 最初로 北韓地域內 5道 人民委員會를 統合하는 單一組織에 對한 決定이 이루어졌다고 回顧하고 있다. 이·엘·키스차코프, “第26軍의 戰鬪行路”, 웨·베·박, 에쓰·에쓰·수슬리나 共編, 朝鮮의 解放(모스크바: 蘇聯科學 아카데미 東邦學研究, 1976.) p. 52.

民委員會 및 各政黨·團體 代表 1,157名이 參席한 가운데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대회>가 개최되었고, 同大會에서 선출한 代의원 237명으로 <북조선 인민회의>가 構成되었다. <북조선 인민회의>는 2月 21~22日 이틀간 제 1차 會議를 열고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조직을 결성하였다.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金日成을 委員長으로 하여 總 22名의 成員으로 構成되었는데, 그 政黨별 構成은 <북조선 로동당>이 16名, <조선 민주당>이 2名, <천도교 청우당>이 2名, 무소속이 2名으로 事實上 <북조선 로동당> 일색이었다.

오늘날 北韓에서는 當時의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最初の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 탄생>^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美·蘇 共同委員會가 결렬되고 1947年 11月 유엔총회가 유엔 감시하의 南北韓 총선거 실시와 선거를 監視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設置를 결의하자 <人民共和國> 수립을 서두르게 되었다.

1947年 11月 18~19日에는 <北朝鮮人民會議 3次會議>가 開催되어 <조선 임시 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同委員會는 12月 20日 憲法草案을 확정하였다.

이듬해 1948年 2月 6日부터 개최된 <북조선 인민회의 4차 회의>에서는 임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심의, 동헌법 草案을 2月 13日 <전체 인민토의>에 회부하고 <인민토의>를 거친 헌법초안을 審議하기 위해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회의>를 3月 중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4月 28日에는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회의>가 소집되었고, 동 특별회의에서는 이른바 2개월 간에 걸친 <인민토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憲法 修正 草案을 逐條審議,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으로 정식 채택하였다.

이어 7月 9~10日에는 <북조선 인민회의 5차회의>가 소집되

㉔ 조선로동당 역사교과(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4) p.201.

어 〈인민공화국 헌법〉의 실시를 결정하는 한편,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중앙선거 위원회의 조직 문제 등을 〈북조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북조선 인민회의 5차회의〉의 결정에 따라 同年 8月 25日에는 북한 최초의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총 21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는데, 당시 북한은 등록된 총 유권자 4,526,065명 중 99.97%인 4,456,621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8.49%의 찬성율을 보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翌月 9月 2日부터 10일까지 9日間 평양에서는 북한 지역에서 선출된 대의원 212명 외에 소위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에서 선출되었다는 대의원 360명을 포함한 총 572명의 대의원 중 528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 1차회의〉가 진행되었다.²⁹⁾

이 최고인민회의 제 1차 회의에서는 〈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작성된 憲法草案을 심의 채택한데 이어, 〈북조선 인민위원회〉로부터 〈정권을 위양〉받고 9月 9日 金日成을 首相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결정하였다.

社會主義憲法採擇

1948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한 이래 수차례 걸쳐 部分的인 개정을 가해 오다가, 1972年 12月 27日 개최된 최고 인민회의 5기 1차 회의에서는 종래까지의 〈人民民主主義 憲法〉을 폐기하고, 전문 11장 149조로 된 새로운 〈社會主義 憲法〉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社會主義 憲法〉의 특징은 한 마디로 社會主義制度를 法的으로 安着시키고, 〈프롤레타리아獨裁〉를 강화한다는 이름 아래 主席中心의 국가기관 체계를 制度化한 것이다.

²⁹⁾ 최고 인민회의 제 1차 회의 중요 문헌집(평양, 1948) pp.283~287, 남한 대표로 발표된 360명 중 66명은 姓만 밝혀진채 김○○ 등으로 발표하였다. 조선중앙년감(1949) pp.14~17.

새로운 <社會主義 憲法>에서는 국가의 性格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명문화하고, 主權은 <노동자·농민·병사·근로 인텔리>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과 舊憲法 간의 두드러진 차이의 하나는 국가 기관 체제이다. 새로운 <社會主義 憲法>에서는 <國家首班> 또는 <國家主權을 代表>하는 <主席>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中央人民委員會>를 신설하였고, 총래의 <內閣>을 단순한 <行政的 執行機關>인 <政務院>으로 바꾸었다. <地方政權機關>도 지방의 각급 <行政委員會>를 신설함으로써 <主權의 指導機關>과 <行政的 執行機關>의 二元的 體系를 이루었으나, 1981年 9月 道(直轄市) 經濟指導委員會의 신설과 함께 각급 지방행정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해당 인민위원회에 이양하고 행정위원회를 폐지하였다.

國家機關의 性格變化

新 憲 法		舊 憲 法	
機 關	性 格	機 關	性 格
主 席	國家首班 國家主權의 代表	首 相	政府의 首席
最高人民會議	最高主權機關	最高人民會議	最高主權機關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最高人民會議 常設機關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最高人民會議 休會中 最高主權機關
中央人民委員會	國家主權의 最 高指導機關		
政 務 院	最高主權機關의 行政的 執行機關	內 閣	國家主權의 最高執行 機關
地方人民會議	地方主權機關	地方人民會議	地方主權機關
地方人民委員 會	當該人民會議休 會中地方主權機 關, 該當人民會 議의 執行機關	地方人民委員 會	該當人民會議의 執行機 關 地方의 國家行政機關
道(直轄市) 經濟指導委員 會	道(直轄市)主權 機關의 經濟關 係業務執行機關		

政權機關의 組織

모든 국가기관의 조직 및 운영은 이른바 <民主主義 中央集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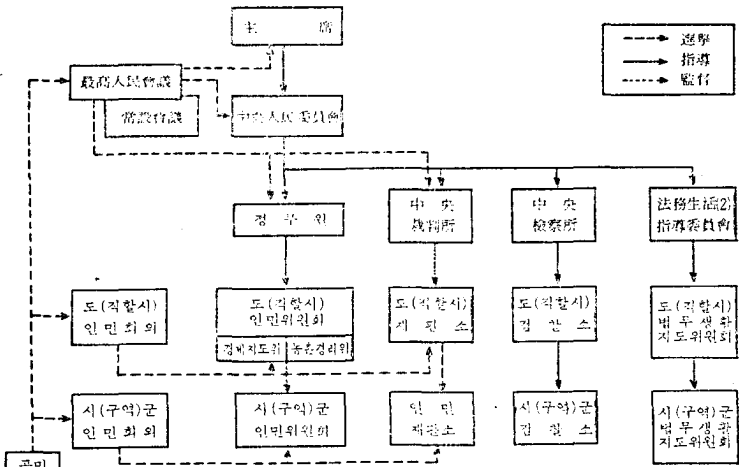
制)의 原則에 立脚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9 조). 北韓은 이러한 原則이 <上部의 지도와 下部의 創意性을 결합시키는> 이상적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形式的인 민주주의적 선거 절차와 上命下服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國家機關은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主權機關>과 <行政的 執行機關>, 그리고 그 活動의 지역적 관할 범위에 따라 <中央政權機關>과 <地方政權機關>으로 나누어진다.

○ 主席: 主席制는 김일성 1인 지도체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사회주의 헌법에서 신설된 제도로 <主席>은 4年 임기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나 <主席>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召喚權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憲法上 主席의 地位는 ① <國家의 首班>으로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외에 ②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로, ③ <全般的 武力의 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 委員長>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政權機關 組織體系 (1)



註: (1) 憲法規定에 依據 作成.
 (2) 1977年 12月 最高人民會議 6期 1次會議의 김일성 演說로 설치가 확인됨.
 出處: (1) 憲法規定에 依據 作成.
 (2) 1977年 12月 最高人民會議 6期 1次會議의 김일성 演說로 설치가 확인됨

국가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절대 權力者적 지위로서 憲法上 明示된 主席의 權限은 다음과 같다.

- 1) 중앙인민위원회에 대한 직접 지도
- 2) 政務院會議의 召集·指導
- 3) 一切의 武力의 指揮 統率
- 4) 최고인민회의의 法令, 中央人民委員會 政令 및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의 公布와 主席 命令의 發布
- 5) 特赦權의 行使
- 6) 條約의 批准 및 廢棄
- 7) 外國 使臣의 信任狀 및 召喚狀의 接受
- 8) 最高人民會議에 副主席, 中央人民委員會 書記長 및 委員, 政務院 總理,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선거, 召喚을 提議
- 9) 最高人民會議에 議案을 提出
- 10) 中央裁判所, 中央檢察所의 事業 監督

그리고 主席을 補佐하는 통상 2~3명의 副主席을 두고 있는데, 副主席은 主席의 提議에 의하여 最高人民會議에서 選출된다.

○ 最高人民會議: 最高人民會議는 헌법상 立法權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명목상의 權限을 갖는 形式的 追認機關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에 1명의 비율로 選출되는 임기 4년의 代의원으로 구성되며, ⑩ 상설회의와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등 3개위원회를 두고 헌법상 규정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1) 憲法 및 法令의 채택 수정
- 2)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 3) 主席의 選舉
- 4) 주석의 제의에 의거 副主席, 中央人民委員會 書記長 및 委員, 政

⑩ 1954.10.30 헌법개정 이전까지의 최고인민회의의 代의원 임기는 3년이었으며 代의원 選출비율도 1~2기까지는 인구 5만에 1명 비율이었다.

務院 總理,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選舉 및 召喚

-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의 선거 및 소환
- 6)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및 소환과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 및 해임
- 7) 人民經濟發展計劃의 承認
- 8) 國家豫算의 承認
- 9) 戰爭과平和에 관한 문제의 결정

歷代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選舉

期別	選舉 日	代議員 數(名)	投票率/ 贊成率(%)	任期 (年)	備 考
1	1948. 8. 25	572	99.97/98.49	9	人口 5 萬에 1 名 選出(造作 된 南韓出身 代議員 360名 包含) 憲法上 任期 3 年 (후백합 투표)
2	1957. 8. 27	215	99.99/99.92	5	憲法上 任期 4 年 (후백합 투표)
3	1962. 10. 8	383	100/100	5	人口 3 萬에 1 名 選出 (단일합 투표)
4	1967. 11. 25	457	100/100	5	人口 3 萬에 1 名 選出 (단일합 투표)
5	1972. 12. 12	541	100/100	5	人口 3 萬에 1 名 選出 (단일합 투표)
6	1977. 11. 11	579	100/100	5	人口 3 萬에 1 名 選出 (단일합 투표)
7	1982. 2. 28	615	100/100		人口 3 萬에 1 名 選出 (단일합 투표)

出處 :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 북한에서의 선거는 단일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인데, 초기의 <후백합 투표>는 찬성은 백합에, 반대는 흑합에 투표하도록 된 제도이며, <단일합 투표>는 투표함은 하나이나 찬반만을 기재하여 투표하도록 된 제도이다.

最高人民會議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定期會議과 대의원 1/3이상의 요청과 常設會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가 있으며, 會期는 통상 2~3일로 회의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회의에서의 법령과 결정은 참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나 <헌법의 채택·수정>에는 전체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最高人民會議는 후회중의 업무를 대행할 <상무기관>으로 의장 부의장(2명), 사무장, 의원(15명)으로 구성되는 <最高人民會議

歷代最高人民會議 開催現況

期 別	任 期(年)	會議召集回数(回)	會議開催日總數(日)
1	9	13	55
2	5	11	32
3	5	7	22
4	5	6	18
5	5	7	30
6	5	5	15
7		3	5

出處：〈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常設會議〉를 두고 있으며,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 1) 最高人民會議 休會中 제기된 법안의 심의 결정
- 2) 최고인민회의 休會中 現行法令의 修正
- 3) 現行 法令의 해석

歷代 最高人民會議 討議案件

期	開催 日數	討議된 案件					計
		政治 問題	經濟 問題	社會 文化 問題	對南關係· 統一問題	對外 關係	
1期(1948. 9. 2~1957. 9. 17)	13	7	13	2	2	5	29
2期(1957. 9. 18~1962. 10. 21)	11	1	8	3	2	2	16
3期(1962. 10. 22~1967. 12. 13)	7	10	7	1	1	2	21
4期(1967. 12. 14~1972. 12. 24)	6	6	8		1	1	16
5期(1972. 12. 25~1977. 12. 14)	7	6	7	3	2		18
6期(1977. 12. 15~1982. 2. 27)	15	2	5	2			9
7期(1982. 2. 28~현재)	5	4	2				6
계	64	36	50	11	8	10	115

- 4) 最高人民會議의 召集
- 5) 최고인민회의의 代의원 선거사업 실시
- 6) 地方人民會議 代議員 선거사업 조직
- 7)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參審員의 선거 및 召喚

○ 中央人民委員會 : <중앙인민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에 따라 신설된 형식상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首位>인 주석의 직접 지휘·감독 통제하에 사업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 인민위원회는 主席과 主席의 제의로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選出·召喚되는 임기 4년의 副主席,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며^⑪, 부문별위원회로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⑫,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이상 헌법상에 명시), 법제위원회^⑬와 경제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그런데 중앙인민위원회는 실제적으로 그 人的構成에 있어서 위원들의 대부분이 당 정치국위원, 비서, 정무원총리, 부총리 등과 같은 당의 핵심간부나 정무원의 고위간부를 겸하고 있어 黨·政協議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고 지시를 내리는 등의 입법 기능외에 다음과 같은 헌법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1) 국가의 대내외 政策樹立
- 2) 정무원, 지방인민회의 및 지방 인민위원회 事業의 指導
- 3) 裁判·檢察機關 事業의 指導
-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의 指導
- 5)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法令, 主席 命令, 중앙인민위원회 政令·決定·指示의 執行狀況 감독 및 그에 위반된 국가기관의 결정·지시 폐기
- 6) 政務院의 部 設置 및 廢止

⑪ 1972년 12월 當時 25명으로 構成되었으나 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회의에서 15명으로 축소되었다.

⑫ 勞動新聞(1977. 4. 29)

⑬ 勞動新聞(1978. 5. 22)

- 7) 정무원 부총리, 各部長 및 其他 정무원 成員들의 임명 및 해임(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거)
- 8) 大使와 公使의 임명 및 召喚
- 9) 주요 군사 간부의 임명 및 해임, 將領軍事칭호의 수여
- 10) 훈장·명예 칭호·군사 칭호 및 外交職級의 제정, 훈장·명예칭호 수여
- 11) 大赦 實施
- 12) 行政區域의 改編
- 13) 有事時 戰時狀態와 動員令의 宣布

○ 政務院：〈政務院〉은 舊憲法上的의 〈內閣〉을 改稱한 것이지만 종래의 〈內閣〉과는 성격이 다르며, 그 權限과 역할도 크게 축소되었다.

종래의 內閣이 〈國家主權의 最高집행기관〉으로 정의되었던 것과 달리, 政務院은 〈최고 주권기관의 行政的 집행기관〉으로 定義되고 있으며,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지도하에 사업하도록 되어 있다.

政務院은 主席의 제의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총리와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中央人民委員會가 임명하는 부총리, 부장(위원장)들과 그밖의 成員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정무원은 사업 집행을 위해 政務院 成員 전원으로 구성되는 〈全員會議〉와 총리, 부총리, 기타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으로 구성되는 〈常務會議〉를 두고 있으며, 결정을 채택하고 지시를 발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헌법상의 任務와 權限을 가지고 있다.

- 1) 各部,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 및 도경제지도위원회 사업의 지도
- 2) 정무원 직속기관의 설치 및 폐지
- 3) 國家의 人民經濟計劃 作成 및 執行對策 수립
- 4) 국가예산 편성 및 執行對策 수립
- 5) 공업, 농업, 대내외 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사업의 조직 지도

- 6) 화폐 및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수립
- 7)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 사업의 수행
- 8)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이익 보호 및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 9)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위배되는 국가관리 기관의 결정과 지시의 폐기

지금의 第7期 政務院은 1982年 4月 5日 소집된 최고인민회의의 第7期 1次會議에서 총래의 12個 委員會, 18個 部에서, 14個 委員會, 16個 部 1個院으로 대폭 개편되었는데, 이와같은 대폭적인 정무원 조직의 개편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와 같은 政權保衛機關을 정무원에서 분리 개편한 점으로 이는 金日成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金正日이 保衛機關을 직접 장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무원은 최고인민회의의 第7期 1次會議에서의 대폭적인 조직개편 뒤에도 몇 차례의 부분적인 개편작업을 거친 결과 현재는 13個 委員會, 20個 部, 1個院의 총 34個 部署로 구성되어

歷代 政務院(內閣)의 構成

期 別	總 理 (首相)	副 總 理 (副首相)	部 長(相) 및 院 長	委 員 長	事 務 長
1기(1948. 9)	1	3	17	1	
2기(1957. 9)	1	6	24	2	
3기(1962. 10)	1	8	22	5	
4기(1967. 12)	1	8	30	6	
5기(1972. 12)	1	6	15	7	
6기(1977. 12)	1	6	21	7	1
7기(1982. 4)	1	13	17	14	
(1983. 12. 현재)	1	7	21	13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 5기(1972. 12.) 이전은 수상, 부수상, 상의 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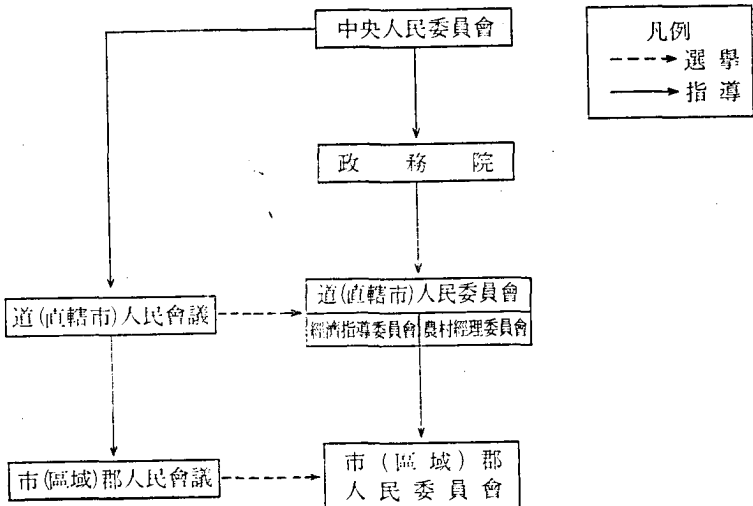
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부서로는 외교부, 국가계획위원회, 채취공업위원회, 광업부, 석탄공업부, 기계공업위원회, 무역위원회, 수산위원회, 교통위원회, 농업위원회, 건재공업부, 임업부, 경공업위원회, 과학원, 인민봉사위원회, 문화예술부, 무역부, 전력공업부, 체신부, 자원개발부, 대외경제사업부, 금속공업부, 노동행정부, 보건부, 재정부, 육해운부, 자재공급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건설위원회, 건설부, 국토 및 도시관리위원회, 철도부, 화학공업부, 교육위원회가 있다.

○ 地方政權機關 : 지방정권 기관으로는 各道(直轄市), 市(區域) 郡人民會議과 人民委員會, 그리고 道(直轄市) 經濟指導委員會가 있다.

종래까지는 1954年 10月 30日 채택된 <지방주권기관 구성법>에 따라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를 <지방주권기관>으로 정의하고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기관>으로 정의해 왔었다.

그후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행정적 집행기관인 각급 지

地方政權機關 組織體系



방행정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 주권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졌다. 그러나 1981年 9月 道(直轄市) 經濟指導委員會의 신설과 함께 각급 지방행정위원회를 폐지, 해당지방인민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각급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방주권 기관으로서의 기능외에 舊憲法上の 집행기관적 기능을 다시 가지게 되었는데, 지방정권 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道(直轄市) 人民會議와 市(區域)·郡 人民會議는 각각 임기 4

歷代 人民會議 選舉

選 舉 日	代 議 員 數			
	道·直轄市	市·區域·郡	里·邑·勞 動者區 ⁽¹⁾	面 ⁽²⁾
1949. 3. 30	689	5,164		
1949. 11. 24~25				13,354
1949. 12. 3			56,113	
1956. 11. 20 ⁽³⁾			54,279	
1956. 11. 27	1,009	9,346		
1959. 2. 28		9,759	53,882	
1963. 12. 3	2,517	14,303	70,250	
1967. 11. 30	3,305	18,673	84,541	
1972. 12. 12	3,185	24,784		
1975. 2. 27		23,833		
1977. 3. 4	3,244	24,268		
1979. 3. 11		24,247		
1981. 3. 5	3,705	24,191		
1983. 3. 6		24,562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 (1)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채택으로 폐지.
- (2) 1952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폐지.
- (3) 1954년 10월 30일 지방주권기관 구성법 채택 이후 인민위원회를 인민회의로 개칭.

년과 2년의 代議員으로 구성되어 中央人民委員會의 지도 아래 사업을 하며, 당해 지방의 <인민경제 발전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는 외에 해당 인민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및 재판소(판사, 인민참심원)를 선거, 소환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地方人民會議은 이와 같은 憲法上에 규정된 권한과 임무의 수행을 위해 매년 1~2회의 정기회의와 代議員 1/3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데, 회의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채택된 결정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各級 地方人民委員會에 대해 살펴보면, 地方人民委員會는 당해 행정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통제 기능과 함께 1981년 지방정권 기관의 개편으로 종래 地方行政委員會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방의 국가행정기관과 당해지방인민

行政區域現況

(1982. 12 현재)

區分	數	備考
道	9	平南, 平北, 慈江, 兩江, 黃南, 黃北, 咸南, 咸北, 江原
特別市	1	平壤
直轄市	3	開城, 清津, 南浦
市	17	
區域	34	
區	152	
邑	152	
里·洞	4,181	
勞動者區	233	

※ 慈江道는 1949. 1. 13일 平北과 咸南의 一部地域을 합쳐, 兩江道는 1954. 10. 30일 咸南과 咸北, 慈江의 一部地域을 합쳐 新設되었다. 而 行政單位는 1955년 12월 이후 폐지되었다.

회의의 집행기관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지방인민위원회는 당해 인민회의소집 및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 실시와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의 지도, 당해 지역내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사업을 감독 통제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외에 당해 지방행정 사업을 조직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의 보다 오히려 상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1981年 9월에 新設된 道經濟指導委員會의 경우는 그 임무와 권한에 대한 발표가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동위원회의 성격으로 미루어 지방인민 경제발전계획의 추진 등 주로 당해 지방의 경제관계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司法 및 檢察機關 :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하에서 사법 및 검찰기관은 <당과 국가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 규정되고 있다.

北韓도 외견상 자유주의 국가와 비슷한 사법기관의 체계를 채택, 중앙에는 중앙재판소, 도에는 도재판소, 市·郡에는 보통 2~3개 市·郡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인민재판소가 있으며, 이밖에도 군사재판소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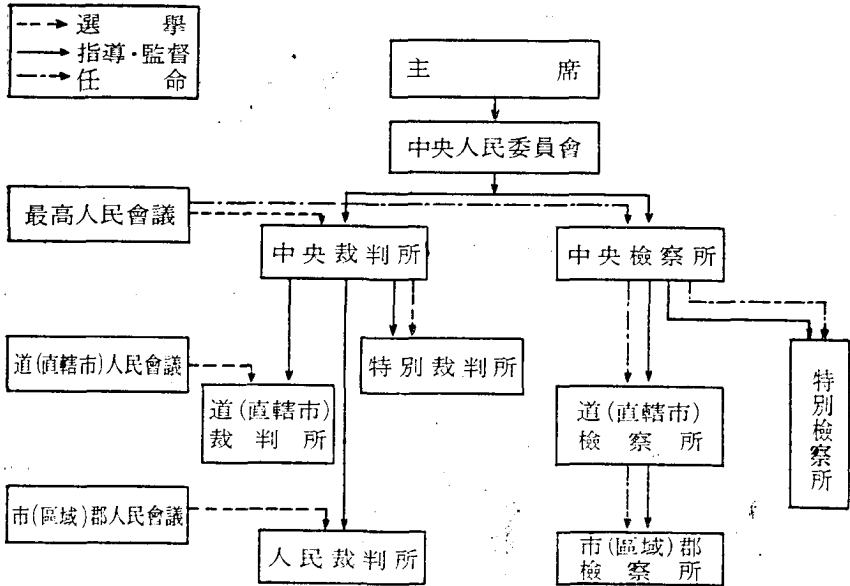
이들 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당해 지방인민회의에서 각각 선출되는 判事 및 人民參審員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은데, 예외적으로 특별 재판소만은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하는 판사와 해당〈軍務者會議〉등에서 선출되는 人民參審員으로 구성된다.

재판은 3級 2審制를 원칙으로 判事 1명(특별한 경우 3명), 人民參審員 2명이 수행하나 통상 單審으로 끝나며,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中央裁判所가 모든 재판업무를 감독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성 또한 보장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檢察機關에 대해 살펴보면, 검찰기관도 중앙검찰소,

道(直轄市) 검찰소, 市(區域)·郡 검찰소로 이루어지는 사법기관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경우는 판사와는 달리 중앙 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을 하며, 검찰업무 또한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지도를 받는 중앙 검찰소의 <통일적지도>하에 모든 하급검찰소는 상급검찰소에 복종해야 하는 中央集權의 檢事同一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司法·檢察機關體系



北韓은 이러한 司法·檢察機關 외에 1970년대초 주민들에게 이른바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조하면서 사회에 대한 법적 통제와 준법요양 등의 임무수행을 위해 행정체계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사법 및 검찰기관과는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두고 있다. ㉔

㉔ <法務生活 지도위원회>의설치는 1977년 12월, 6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김일성 연설로 확인되었다. 법무생활 지도위원회가 중앙과 각 지방 단위에 <국가기관>으로 조직된 사실은 <근로자(1978.7)>에서 확인되었다.

김억락,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인” 근로자(1978.7) p.28.

그런데 각급 법무생활지도 위원회는 인민위원장, 당책임비서, 사회안전부장, 인민위원회 법무담당 부위원장 등 당해지역 지도간부급 5~6명으로 구성되는 準司法機關의 성격을 가진 協議體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및 경제 사범에 대한 징계처벌 및 책벌방침 결정

2) 김일성 교시를 비롯하여 각종 규정 및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차이로 야기되는 각 기관간의 분류 및 오류사항 등에 대한 유권 해석

特殊機能組織

北韓은 黨規約 또는 헌법상에 명시되지 않은 특수한 機能을 遂行하는 組織體系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特殊組織들은 1970年代 초반 金日成·金正日을 中心으로 하는 새로운 權力體系 確立을 위하여 設置 또는 규정되었으며, 오늘날 北韓體制의 主要 統制裝置로서 그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 國家保衛部: 국가보위부는 1973年 金日成 1人體制 유지를 위한 정치 사찰을 목적으로 정무원 부서인 사회안전부의 기능 중 정치 보위부문만을 독립시켜 새로이 설치된 기구로, 1982年 4月 5日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 회의에서의 중앙국가기관 개편시 人民武力部 및 社會安全部와 같이 黨機構로 개편되면서 그 이름도 <국가정치보위부>에서 <국가보위부>로 개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機關은 社會安全部와 같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직접적인 집행기관으로서 行政體系에 따라 中央으로부터 道·市(區域)·郡은 물론, 人民軍과 같은 特殊機關에 까지도 一元的 體系로 組織되어 있다.

그리고 每期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는 새로운 중앙국가기관을 구성 발표하기 마련인데, 국가보위부만은 일체 비밀에 부쳐 공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자를 비롯한 그 인

적 구성의 변동에 대해서는 알길이 없으며, 다만 종래에는 중앙 인민위원회의 관장하에 있었으나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 이후 金正日의 직접 관장하에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3大革命小組: 1972年 社會主義憲法에 3大革命을 規定(第 11, 25, 36條)한 以後 이를 추진하기 위한 組織으로 1973年 2月 당정치위원회 확대회의의 결정에 따라 3大革命小組를 發起해 各급 생산단위에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小組〉는 黨일군·國家 經濟機關 일군·大學生·大學敎員·工場企業所의 技術者·科學者 등 미혼남녀로 構成되며, 單位小組는 지도 대상에 따라 20~50名의 人員으로 組織되어 現在 小組員의 총수는 수만 명에 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당 중앙〉인 金正日의 직접 지도 밑에 人民經濟部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文化機關·各급 學校에까지 파견되어 기존의 黨 組織과 더불어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사상혁명소조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보급과 이행을, 技術혁명소조는 技術적 낙후성 분석과 새기술 혁신의 시도를, 그리고 文化혁명소조는 文化시설면의 낙후성 개선을 그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小組運動은 “革命的 軍중로선으로부터 出發한 것이며,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徹底히 實現한 것으로 政治思想的 지도와 과학기술적 지도를 결합하고,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大衆을 적극 발동함으로써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새로운 形式의 革命的 指導方法”이라는 것이다.

小組운동은 표면적으로 黨中央의 친위대·근위대로써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鬪爭으로 오래된 幹部들이 가지고 있는 保守主義·經驗主義·要領主義·機關本位主義·官僚主義 등을 改造하기 위한 思想鬪爭에 目的을 두고 있으나^⑤ 실질적으로는 이를 김정

⑤ 손병찬, “3대혁명 소조원들은 당의 로선관철에 끝없이 충성한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근로자(1977. 11.) p. 20

일의 후계체제 구축과 연관된 체제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1980年 10月 6차 당대회시 3大革命 小組員 중심의 전후세대의 대거입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④

④ <정치권력>편의 '권력승계' 항을 참조.

政治權力

金日成体制強化

派閥鬭爭

北韓의 지도층은 처음에는 해방전의 공산주의 운동 또는 抗日鬭爭 經歷과 地域的 出身을 달리하는 파벌들 간의 〈聯立〉 形態를 취하고 있었다.

초기 北韓의 指導層을 구성하고 있던 파벌로는 金日成系를 除外하고, 國內에서 地下共產黨 운동을 했던 〈국내파〉, 中國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 귀국하여 〈조선신민당〉으로 규합되었던 〈중국파〉, 그리고 소련에서 共產主義 教育을 받고 解放後 소련군의 진주에 뒤따라 귀국한 〈소련파〉가 있었다.

해방 직후 金日成(本名 金成柱)은 북한 주둔 소련군의 후원을 받아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되었으나 事實上 뚜렷한 政治的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⑩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반대파 또는 잠재적인 적대세력에 대한 肅清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派閥鬭爭의 첫 희생자는 〈국내파〉 인물들로 金日成은 이미 정권수립 이전부터 〈국내파〉의 유력한 인물들을 〈과경적오류〉, 〈중파주의자〉, 〈영웅주의자〉라고 비판하였었다.

이와같이 시작된 파벌투쟁은 정권수립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⑩ 1945. 10. 13 개최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 1차 확대위원회에서는 金鎭範이 책임비서로 선출되었으며, 동년 12. 17 개최된 분국 제 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비로서 김일성이 분국 책임비서로 선출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휴전후의 南勞黨系에 대한 숙청을 비롯하여 1950년대 중·후반에 걸쳐 실시된 중국·소련파의 숙청과 1960년 후반의 甲山派 및 군부에 대한 숙청이다.

남로당계에 대한 숙청은 실패로 끝난 6·25 남침전쟁의 수습을 圍繞한 권력 투쟁으로써 6·25 남침전쟁 실패로 인해 조성된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남로당계를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었다.

金日成은 1952年 12月 당 중앙위원회 2期 5次 全員會議를 시발로 1955年 12月까지 남로당계의 지도급 인물들인 박헌영, 이승엽, 이강국, 임화 등을 <美帝의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단죄하는 일대 숙청을 단행한 것이다.

歷代 黨政治委員會 및 政治局 派閥構成

黨大會	委員數		派 閥 構 成			
			김일성파	중국파	소련파	국내파
1차(46.8)	정	5	1	2	1	1
2차(48.3)	정	7	2	3	1	1
3 차 (56.4)	정	11	5	2	2	2
	후 보	4	1	1	1	1
4 차 (61.9)	정	11	7	1	1	2
	후 보	4		1		3
2차대표자회의 (66.10)	정	15	11	1	2	1
	후 보	12	10	1	1	
5 차 (70.11)	정	11	11			
	후 보	4	4			
6 차 (80.10)	정	19	19			
	후 보	15	15			

出處: 각 당대회 때 발표된 정치위원회 출신 배경, 경력, 김일성파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성.

이후 계속된 남로당계 잔당에 대한 숙청에 이어 김일성은 또다시 중국 및 소련파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1956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에서는 軍需工業을 위주로 한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과 함께 동년 2월에 개최된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 이후 공산권내에서의 개인 숭배 반대와 스탈린 格下運動의 여파로 反金日成運動이 고조됨에 따라 김일성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김일성은 1956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국파> 및 <소련파>에 의한 反金日成運動의 좌절을 계기로 중·소 대립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김두봉, 최창익, 박창욱 등 <중국파> 및 <소련파>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金日成은 1958년 3월 제1차 당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숙청 작업을 일단락 짓는 한편, 전국적으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반대파의 기반을 일소하는 등 1人支配體制의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남로당계와 <중국파> 및 <소련파>에 대한 숙청작업을 마무리지은 金日成은 1960년대 들어와서는 自派에 대한 숙청에 착수하였다.

金日成은 1967년 3월 당 중앙위 第4期 15次 全員會議에서 박금철과 이효순 등 自派內 甲山系 黨僚들을 反黨·宗派分子로 몰아 숙청한데 이어 1969년 1월에는 人民軍黨 第4期 4次 會議를 개최하여 허봉하, 김창봉 등을 黨 唯一思想 체계문란 등의 죄목으로 숙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70년 11월에 개최된 5차 당대회 이후부터 북한의 지도층은 완전히 김일성 일파로 一色化 되었다.

그러나 1973년 9월 金正日의 등장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實弟인 김영주를 비롯하여 김동규, 이용무, 유장식 등 권력 세습을 반대하는 당료 및 군부에 대한 숙청이 또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반대파에 대한 숙청은 金正日 後繼體制 기반의 확대·

공고화와 관련 계속되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金日成崇拜運動

공산국가에 있어서 支配者에 대한 <개인숭배>는 常例로 되어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특히 그 程度가 심하다. 오늘날 북한에서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 운동의 실태는 개인에 대한 <英雄化>의 단계를 넘어서 <神格化>에로까지 진전되고 있다.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 운동이 本格化된 것은 金日成에 대한 反對 세력이 除去되고 1人 支配體制의 기반이 구축된 1958년부터였다.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 운동은 金日成 個人에 대한 과장된 찬양과 象徵적작, 思想教育, 선전 등의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金日成에 대한 경칭과 찬양의 修辭는 무려 180여 자에 이르는 장광설이 되고 있다.

또한 近代史, 특히 우리 민족의 항일독립운동사는 完全히 金日成 一家의 족벌사, 金日成의 <혁명투쟁사>로 改作 날조되고 있으며 신문, 잡지 심지어 學校 教科書, 학술 서적 등 모든 출판물들은 개인 숭배를 위한 선전 수단이 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운동의 내용은 우선 김일성을 <抗日革命鬪士>, <朝鮮의 解放者>로서의 이미지를 浮刻시키는 努力으로부터 出發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른바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②라는 전투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책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학습의 기본 교본이며 <聖典>처럼 되어 있다. 그 內容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한 예는 김일성의 部隊가 15年間 10만여 회의 戰鬪를 통하여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10만회의 전투라면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워

^②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는 朴成哲, 金東奎, 崔賢, 林春秋 등 항일빨치산투쟁을 전개했다는 94명이 집필, 총 12권(3,222面)으로 되어 있으며 1959.5에 최초로 노동당 역사 연구소에서 출간되었음.

도 1일 平均 20여 회의 戰鬥을 한 셈이 된다.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 운동은 또 그를 모든 權威와 能力的 最上位로 묘사함으로써 北韓住民에게 <卓越한 領導者>의 이미지를 부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⑩

김일성을 <마르크스·레닌>을 능가하는 <위대한 사상가>로, 정치·경제·사회·문학·예술의 <이론가>로 추켜세우는가 하면 주민들이 먹고 입고 일하는 것 까지도 <수령님의 은혜>로 생각하도록 강요되고 있으며, 심지어 자연과학의 논문에서까지 김일성의 語錄을 인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더우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김일성에 대한 個人崇拜 운동은 <혁명가문> 조작을 위해 그의 家系와 金正日의 偶像化로 이어지고 있는데, 선조와 외가친척은 물론 전처인 김정숙까지도 항일혁명 투사로 날조하여 공식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으며, 그의 가족들의 활동장소를 遺跡地化 하고 烈士陵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개인숭배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指導層의 變化

指導層의 人物交替

北韓의 지도층은 경직된 少數集團을 이루고 있다. 政治指導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정치위원(후보위원포함) 및 비서를 역임한 인물은 1차 당대회부터 6차 당대회까지 48명,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던 인물은 338명이며, 政權機關의 경우도 주석 부주석·중앙인민위원·총리(수상)·부총리(부수상)를 역임한 인물은 50명, 部長(相)·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은 117명에 지나지 않는다.

더우기 이들이 거의 모두다 黨·政權機關의 직책을 겸직했던 점

^⑩ 일례로 북한은 김일성 찬양의 노래를 만들어 김일성을 신과 같은 존재로 떠받들고 있으며, 평양시내 곳곳에 김일성의 전신상이나 흉상이 산재해 있다. 에드윈·레인폴드, “북한 방문기”, Time, (1979. 5. 28)

歷代 黨政治委員會(局)委員 및 秘書變化

黨大會	委員 및 秘書	連任	候補에 昇進	新任	再選	3選	4選	5選	6選	7選
1 차	정	5								
2 차	정	7	5		2	5				
3 차	정	11	1		10		1			
	후 보	4			4					
4 차	정	11	10	1		9		1		
	후 보	4	3		1	3				
2차 대표자 회의	정	15	9	1	5	1	7		1	
	후 보	11	2		9	1	2			
	비 서	11								
5 차	정	11	5	3	3	2		2		1
	후 보	4	1		3		1			
	비 서	10	4		6	4				
6 차	정	19	8	1 ⁽¹⁾	10	3	3 ⁽²⁾		1	1
	후 보	15	1		14	1 ⁽³⁾		1		
	비 서	10	2		8	1	1			

出處 : 각 당대회시 발표 명단을 근거로 작성.

※ 재선, 연임 등의 구분은 당대회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선출된 것은 고려하지 않았음.

(1) 2차 대표자회의에서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 당대회에서 탈락되었던 1명임.

(2) 4차 당대회와 2차대표자 회의에서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 당대회에서 탈락되었던 1명 포함.

(3) 2차 대표자회의에서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 당대회에서 탈락되었던 1명임.

을 감안하면, 해방이후 현재까지 북한을 통치해 온 政治指導層의 변화는 실제 300명 내외의 소수집단 내에서의 교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소수의 경직된 집단내에서의 상호교체의 빈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6차 당대회 이후 당정치위원(후보위원 포함)은 21%, 당비서는 50%가 교체되었으며, 특히 중앙인민 위원

歷代 黨中央委員會 委員變化

黨大會	中央委員	連任	候補에 서昇進	新任	2 選	3 選	4 選	5選	6選
1 차	정	43							
	후보	—							
2 차	정	67	29		38	29			
	후보	20			20				
3 차	정	71	29	5	35	19 ⁽¹⁾	12		
	후보	45	3		42	3			
4 차	정	85	27	11	47	15	7	5	
	후보	50	1		49		1		
5 차	정	117	29	15	72	19	8 ⁽²⁾	1	2
	후보	55	6		49	6			
6 차	정	145	70	11	61	54 ⁽³⁾	12	5 ⁽⁴⁾	2
	후보	103	15	6 ⁽⁵⁾	81	16 ⁽⁶⁾			

出處 : 각 당대회서 발표명단.

- (1) 1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2차 대회에서는 탈락되었던 2명 포함.
- (2) 2차, 3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4차 당대회에서 탈락했던 1명 포함.
- (3) 3차, 4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 당대회에서 탈락했던 2명 포함.
- (4) 1차, 2차, 3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4차, 5차 당대회에서 탈락했던 1명 포함.
- (5) 4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 당대회에서 탈락했던 3명과 5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이었던 2명 포함.
- (6) 3차 당대회에서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 당대회에서 탈락했던 1명 포함.

회 위원은 1년 남짓한 사이에 구성원의 20%가 교체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로동당>은 6차 당대회이후 적지않은 간부의 교체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보도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 정치국위원 및 비서명단은 다음과 같다.

□ 政治局

(常務委員) 김일성, 김정일, 김 일, 오진우,

(委員) 김일성, 김정일, 김 일, 오진우, 박성철, 임춘추, 이종욱, 서 철, 김영남, 연형묵, 강성산, 김중린, 오백룡, 오극렬, 전문섭, 김 환, 백학림, 최영림, 서운석, 허 담.

(候補委員) 현무광, 전병호, 공진태, 최 광, 계응태, 정준기, 김두남, 정경희, 이근모, 강희원, 조세웅, 김강환, 이선실, 홍성남, 안승학, 홍성룡, 김복신.

□ 秘書局

(總 秘書) 김일성

(秘 書) 김정일, 김영남, 연형묵, 김중린, 현무광, 안승학, 황장엽, 서판히, 허정숙. 채희정,

또한 政權機關의 인물도 1982年 4月 5日 최고인민회의 제 7기 1차 회의에서 改選된 이래 다소의 변동은 보이고 있는데 현재 확인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 主席

(主 席) 김일성

(副 主席) 김일, 박성철, 임춘추

□ 中央人民委員會

(委員) 김일성, 김일, 박성철, 이종욱, 오진우, 임춘추, 서 철, 김 환, 오백룡, 최영림, 현무광, 이근모, 강희원, 윤기복, 이용익

(書記長) 이용익

□ 政務院(13개위원회 20개부 1개원)

(總 理) 이종욱

(副總理) 강성산, 허 담, 공진태, 최 광, 정준기, 홍성룡, 김 환

외 교 부 허 담

국가계획위원회 홍성룡

채취공업위원회	홍시학
광업부	(불명)
석탄공업부	(불명)
기제공업위원회	이자방
무역위원회	공진태
수산위원회	최광
농업위원회	김창주
교통위원회	김희일
임업부	동민광
전제공업부	김창호
경공업위원회	김복신
과학원	(불명)
인민봉사위원회	임형구
문화예술부	이창선
무역부	최정근
전력공업부	이지찬
채신부	김영채
자원개발부	고정식
대외경제사업부	정송남
금속공업부	최만현
노동행정부	윤서
보건부	박명빈
재정부	윤기정
육해운부	오성렬
자재공급부	김태극
국가과학기술 술위원회	최재우
국가건설위원회	김응상
건설부	조철준

국토 및 도시 리 위 원 회	박임태
철 도 부	최덕홍
화 학 공 업 부	맹태호
교 육 위 원 회	최태복

□ 司法・檢察機關

중앙 재판 소장	방학세
중앙 검찰 소장	한상규

□ 最高人民會議

의 장	양형섭
부 의 장	손성필, 여연구
자격심사위원장	임춘추
예산심의위원장	김 환
법안심의위원장	윤기복
(사 무 장)	김이훈

權力承繼

背 景

1970년에 들어와서 北韓에서는 새로운 世代의 社會的 登場과 함께 <代를 이은 革命>과 <革命偉業의 繼承>을 강조하면서 공공연히 金日成以後 後繼體制의 준비 작업이 추진되어 왔다.

北韓에서 後繼問題가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0年 11월에 개최된 黨 5次大會 이후로 이는 <빨치산 출신>으로 불리우는 舊革命幹部들의 年老化에 따른 필연적인 戰後世代의 登場에서 비롯된 것이다.

1971年 6월에 개최된 社勞靑 6次大會 演說에서 金日成은 “革命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世代는 바뀌어 해방후 세대들이 나

라의 主人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革命의 代를 이어 나갈 수 있게 해야한다”^⑩고 주장 이른바 <革命承繼論>의 입장을 밝혔었다.

또한 1971년의 <근로자> 7호에 게재된 論說에서도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革命偉業은 아들이 함으로써 代를 이어가면서 實現될 수 있다”^⑪는 주장을 통해 後繼世襲의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北韓의 이와 같은 後繼世襲 必然性주장은 金日成 없는 <金日成主義>를 유지하고 金日成의 死後에 金日成에 대한 格下運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金日成體制와 金日成死後體制的 동질성 유지를 바라는 金日成 개인의 정치적 욕구에서 그 배경을 찾아 볼 수 있다.

金正日登場過程

일반적으로 金正日이 金日成의 후계자로 浮上하기 시작한 것은 1973年 9월에 개최된 黨中央委員會 비공개회의에서 黨中央委員會 秘書局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 비서로 선출되면서 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후계자 응립운동이 적극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4年 2월에 개최된 黨中央委員會 5기 8차 전원회의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⑫. 특히 1975年 10月頃 부터는 金正日이 후계자로 그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출판물등에서 공포하기에 이른 事例가 있다^⑬.

그간 北韓은 이같은 金正日의 後繼體制 구축을 위한 작업의

⑩ 1971.6.24 社勞靑 6차대회의에서의 金日成의 연설 “청년들은 代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조선중앙년잡(1972) p.285.

⑪ “모든 청년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자.” 근로자 7호 (1971.7) p.15.

⑫ 5期 8次 全員會議에서는 “모든 힘을 社會主義 건설사업에 총동원할 데 대하여”라는 議題를 討議하고 6개년 계획을 75年 10月 당창건 30주년 기념일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결정했는데, 그 후 速度戰運動이 展開되는 등 새로운 變革의 징후를 찾아볼 수 있으며, 全員會議가 끝나자마자 조직담당 비서인 김영주를 부총리로 진보 발령했다.

⑬ “.....우리 당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首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조종련간부학습제강(1972.2)

일환으로 3大革命小組運動을 통해 黨의 지방급 간부들은 물론 中央委員會의 간부들도 상당수 金正日의 측근인물로 交替시켰다.

그리고 이상의 過程을 거친 金正日의 後繼體制 구축 작업은 마침내 1980年 10월에 개최된 黨 6次大會에서 金正日이 黨中央委員會 政治局常務委員·秘書·軍事委員으로 선출됨으로써 공식화 되었다.

최근에는 그간 <黨中央>, <嚮導의 해발>등으로 金正日을 지칭하던 것을 그의 實名을 사용한 공식활동을 보도함으로써 그를 중심으로 한 唯一的指導體系의 확립과 지도자상 부각을 통한 後繼權力承繼者로서의 이미지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金正日의 後繼體制 구축작업은 政治權力承繼와 관련된 부자간의 권력세습으로서 對內外的 적지 않은 抵抗을 받고 있어서 일종의 名分危機에 빠져 있다고 판단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經濟

經濟體制

社會主義經濟體制的 基盤構築

北韓에서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主義的 改造는 1946년부터 着手하여 12年만인 1958년에 끝났다.

1946年 2월에 조직된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는 <民主改革>이라는 名分으로 無償沒收·無償分配의 原則에 의한 土地改革과 工場·鑛山·鐵道·逕信·銀行 등 主要産業을 國有化하였다.

1947년부터는 産業에서의 國유화 部門을 계속 증대시키는 한편, 농업부문에서는 國營 農·牧場 등을 확대시켜 社會主義的 改造를 積진적으로 실시해 나갔다.

그러다가 1953년 休戰後부터 社會主義의 建設이 본격화됨에 따라 農業의 集團化와 個人商工業의 社會主義化를 더욱 強行하여 不過 4~5年만에 社會主義的 改造를 完成시켰다.

土地改革과 農業의 集團化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는 1946年 3월에 <土地改革 法令>을 公布하고, <無償沒收·無償分配>①에 의한 土地改革을 實施했다. 北韓農地 총면적 約 200萬 町步 中 100餘萬町步의 土地가 무상으로 沒收되었으며, 90餘萬 町步가 貧農·小作人들에게 無상으로 分配되었다.② 그 결과 小作制가 소멸되고, 自營으로 대부분 전환되었으며, 一部 土地가 國有化되었다.

① 조선로동당 력사 교재(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4) p. 16.

② 조선중앙년감(1949) p. 71.

沒收土地內容

內 容	町 步	比 率(%)
日本國 및 日本人 所有地	100,500	9.5
朝鮮人民의 反逆者所有地	21,683	2.1
大·小 地主의 所有地	913,000	87
教會 및 僧院의 所有地	14,855	1.4
總 計	1,050,038	100

出處 : 조선중앙년감 (1949) p. 71

※ 김일성선집, 제 1 권(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0) p. 63에는 總沒收土地 1,000,325 정보로 표시.

土地分配內容

對 象	戶 數	町 步
貧 農	17,137	22,387
土地 없는 小作人	442,975	603,407
土地 적은 小作人	260,501	345,974
他郡에서 自耕하는 農民	3,911	9,622
總 計	724,522	981,390

出處 : 조선중앙년감(1949) p. 72.

※ 북한의무성 발표(1969.11)에는 인민위원회 보유지 18,935정보가 추가되었음

그후 土地灌溉管理令 發効(1946.9), 國營農牧場의 規模 擴張 (1949.12), 農機械賃耕所 設置(1950.2) 등을 거쳐 휴전 후인 1953 月 8日에 열린 노동당 제 6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는 1954 年부터 농업협동조합을 組織할 것을 決定했다.③

黨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함에 있어서 세 가지 형태를 規 定했다.④

第 1 形態는 固定的인 勞力協助班

第 2 形態는 出資한 노동과 土地에 의하여 分配를 實施하는 半 社會主義的 形態

③ 김일성선집, 4 권(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0) p. 21.

④ 정치경제학, 하권(학우서방, 1967) p. 66~67.

第3形態는 土地·농기구 등 生産手段을 통합하여 노동의 量과 質에 의해 分配하는 完全한 社會主義的 形態.

이 세 가지 形態中 農民들의 實情에 따라 適當한 것을 選擇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53年 末부터 1954年 初에 걸쳐 1個郡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이 예비적 단계를 거쳐 1954年 부터는 集團化 운동이 본격적으로 展開되었다. 1956年 4月에 개최된 노동당 3차 대회에서는 1次 5個年計劃期間에 集團化를 完成시킬 것을 決定한 바 있으며, 이러한 黨 決定에 따라 집단화의 속도는 매우 가속화 되었다.

그리하여 集團化를 着手한지 不過 5年만인 1958年 8月에 集團化가 完成되어 全農家가 協同組合에 加入되었다.

당시의 농업협동조합 수는 13,309個所였으며, 平均 80戶의 농가로 조직되었다. 耕地面積에서는 1個 組合當 130町步였다.

그러다가 1958年 10月 協同組合을 里單位로 統合하게 됨으로써 3,843個 組合으로 그 數가 줄어드는 反面, 한 個의 協동조합은 平均 300戶와 500町步로 그 規模가 커졌다.

그 후 1961年 11月 郡(區域) 人民委員會로부터 農村經理에 代

農 業 的 集 團 化

年 度	農業協同組合 總 數(個所)	協同組合에 加入한 農 家 戶 數		協同組合에 編入된 耕 地 面 積	
		戶 數	總農家戶數 에대 한比率 (%)	耕地面積 (千町步)	總耕地面積 에대 한比率 (%)
1953	806	11,879	1.2	11	0.6
1954	10,098	332,662	31.8	576	30.9
1955	12,132	511,323	49.0	885	48.6
1956	15,825	864,837	80.9	1,397	77.9
1957	16,032	1,025,106	95.6	1,684	93.7
1958	3,843	1,055,015	100.0	1,791	100.0
1963	3,732	1,066,896	100.0	1,837	100.0

出處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경제발전 통계집, p.18.

한 指導機能을 分離시켜 전문적 農業 指導機關인 郡(區域) 農業 協同組合 經營委員會를 組織하고, 郡內에 있는 농기계작업소·농 기계공장·灌溉管理所·자재공급소·가축방역소 등을 直接運營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62년부터 오늘의 協同農場 經營體制가 確立되었으며, 또한 농업 協동조합을 協동농장으로 改稱하게 되었다.

産業의 國有化

1946年 8月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主要産業國有化 法令을 發表하여 日本國과 日本人의 個人 및 法人 등의 所有와 이룬바 朝鮮 人민의 反逆者 소유로 되어 있는 일체의 工場·企業所·광 산·발전소·철도·운수·체신·은행·상업 및 문화기관을 國有 化하는 조치를 취했다.⑤

그 결과 全體産業의 90% 以上인 1,034個所의 산업시설이 社會主義的 所有로 轉換되었다.⑥

한편 個人이 經營하는 小規模 工場·企業所와 商業에 대해서는 6·25前은 물론, 休戰後까지도 生活必須品의 원활한 生産과 流通을 위해 장려·이용·제한하는 정책을 적절히 구사하여 이들을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였다.

한편 資本主義的 形態의 商工業 발달을 위해 6·25동란 이후 적지 않은 個人商工業을 사회주의적으로 改造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같이 세가지 形態를 活用했는데,

第1 形態는 都市의 手工業者들을 生産協同班化

第2 形態는 中小 商工業者들의 生産手段과 자금을 통하여 공동 경리를 운영하는 半社會主義的 形態

⑤ 조선로동당 역사교과(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4) p. 167.

⑥ 조선중앙년감(1949) p. 73.

※ 정치경제학(하)(학우서방, 1967) pp. 89~92. “로동당은 1947년에 수공업자들로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그들의 개인 경리를 사회주의적 협동경리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과 수공업의 협동화를 농촌부터 시작하여 점차 도시로 이행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1947년 9월에 발족한 생산협동조합은 1949년에 조합수가 20배 이상으로 한 조합당 조합원수는 1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으며, 1949년부터 1952년간에 조합수는 567개에서 579개로, 조합원수는 108%로 늘어났다.”

第3形態는 生産手段의 共同所有로 된 完全한 사회주의적 형태 등이다.

이와 같은 黨의 方針과 過程을 거쳐서 農業集團化의 完成과 때를 같이하여 手工業과 資本主義의 商工業의 協同化도 1958年 8月에 完成되었다.

이같은 改造政策은 수공업자들을 협동경리의 튼튼한 기반 위에 세운다는 구실하에 기업가·상인들이 協同組合에 大量으로 加入하도록 誘導하였던 것이다.

개인 상공업을 社會主義的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노동당이 取한 重要한 方針의 하나는 경제형태의 개조를 人間改造과 밀접히 결합시켜서 推進한 점이다.

工業總生産額의 經濟形態別 構成

(單位: %)

年度 \ 區分	1946	1949	1956	1959	1960	1963
工業總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중						
社會主義經濟形態	72.4	90.7	98.0	100.0	100.0	100.0
(國營)	(72.4)	(85.5)	(89.9)	(89.5)	(89.7)	(91.2)
(協同經營)	(—)	(5.2)	(8.1)	(10.5)	(10.3)	(8.8)
小商品經濟形態	4.4	1.5	0.7	—	—	—
私資本主義經濟形態	23.2	7.8	1.3	—	—	—

出處: 조선중앙년감(1964) p.171.

小賣商品 流通額의 所有形態別 構成

(單位: %)

區分 \ 年度	1946	1949	1953	1956	1957	1959
國營 및 協同團體商業	3.5	56.5	67.5	87.3	87.9	100
個人商業	96.5	43.5	32.5	12.7	12.1	0

出處: 조선중앙년감(1959) p.355.

管理體制

管理組織

北韓의 경제관리는 政·經 不可分의 原則下에서 黨의 全般的인 지도와 통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62년부터 실시된 <大安의 事業體系> 이후 공장 운영이 <工場黨委員會>의 集團的 指導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관리에 있어서 黨의 參與 幅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⑦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의 실시과정에서 官僚機構는 數的으로 계속 增大되고 복잡화 되었으며, 1960年代 末에는 政務院의 總部署數가 40餘個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과거의 產業別 細分化에 따른 갖가지 生産管理의 非效率性을 줄이고자 一部부서를 統·廢合한 바 있으며, 1983年 8月 現在 政務院의 總部署數는 34個로, 其中 29個部署가 經濟關聯部署이다.⑧ 3級以上 中央의 工場·企業所에 대한 計劃·監督·統制는 政務院 經濟關係委員會 및 部가 實施하고 名級 地方工場·企業所에 대해서는 名道·郡 人民委員會가 實施한다. 한편 1981年 9月을 前後하여 新設된 道經濟指導委員會는 中央 및 地方工場·企業所의 生産活動 全般에 關해 直接指導와 管理를 行하고 있다.⑨

농업부문의 경제관리는 중앙의 農業委員會가 道 農村經理委員會와 郡 協同農場 經營委員會를 指導·統制하는 한편, 國營農·牧場 및 農業部門 關係 企業所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計劃體制

經濟計劃의 作成과 執行狀況에 대한 감독 등은 중앙의 國家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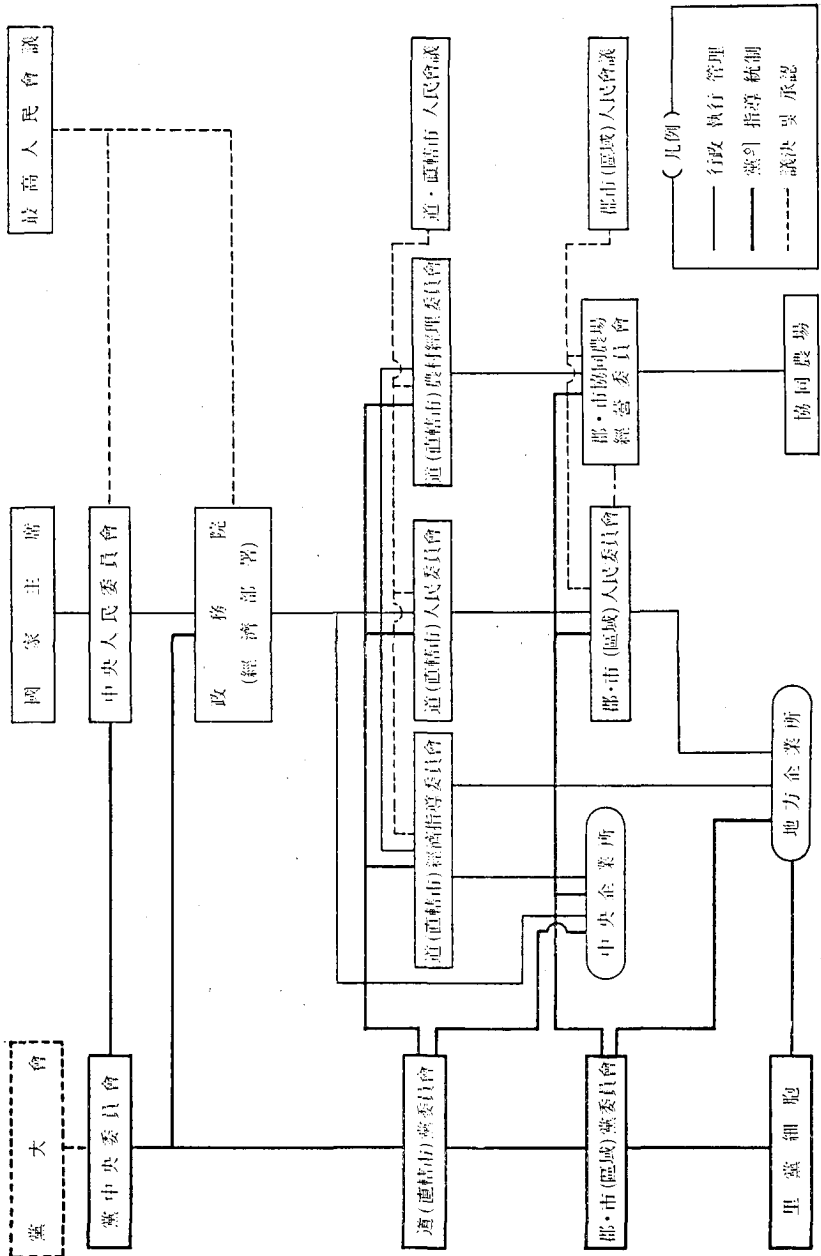
⑦ 조선중앙년간(1971) p. 13.

⑧ 國土統一院, 北韓現況圖表, (1983. 8).

※ 1983. 9. 13. 中央放送.

⑨ 上同

北韓經濟管理體系



劃委員會를 中心으로 하여 道·市·郡 및 工場·企業所에 이르기까지 一元化된 體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전분야에 걸쳐 黨의 政策을 計劃化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任務로 하고 있다.

1965年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강조된 이래, 종래의 道·市·郡計劃委員會 이외에 국가계획위원회 直屬의 地區 計劃委員會와 中央工場·企業所에 계획부를 設置함으로써 계획체계의 集權化를 더욱 強化시켰다.

政務院의 各部 및 委員會들도 자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계획 수치는 一元的으로 國家計劃委員會로 集結되어 統制와 調整을 받게 되어 있다.

한편 구체적 계획작성과정을 보면^⑩, 主席과 黨中央委員會에 의해 결정된 기본 정책을 놓고 국가계획위원회는 <細部 草案>을作成하여 政務院 各部·委員會와 地區 計劃委員會에 下達한다.

이에 의해 上記機關은 <自體 草案>을作成하여 하부 기관에 下達하고, 各工場·企業所는 <豫備 數字>를作成·上報하며, 국가계획위원회는 이를 참고로 3~5萬種의 指標를 구체화한 <計劃 草案>을作成·下達한다.

末端 經濟單位는 이에 의거, <計劃 草案>을作成·上報하며, 國家計劃委員會는 최종적으로 <計劃數字>를作成하여 黨中央委員會의 기준을 얻은 後 10月頃에 國家法으로서 公布·示達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展望計劃의 法令化는 最高人民會議에서 확정된다.^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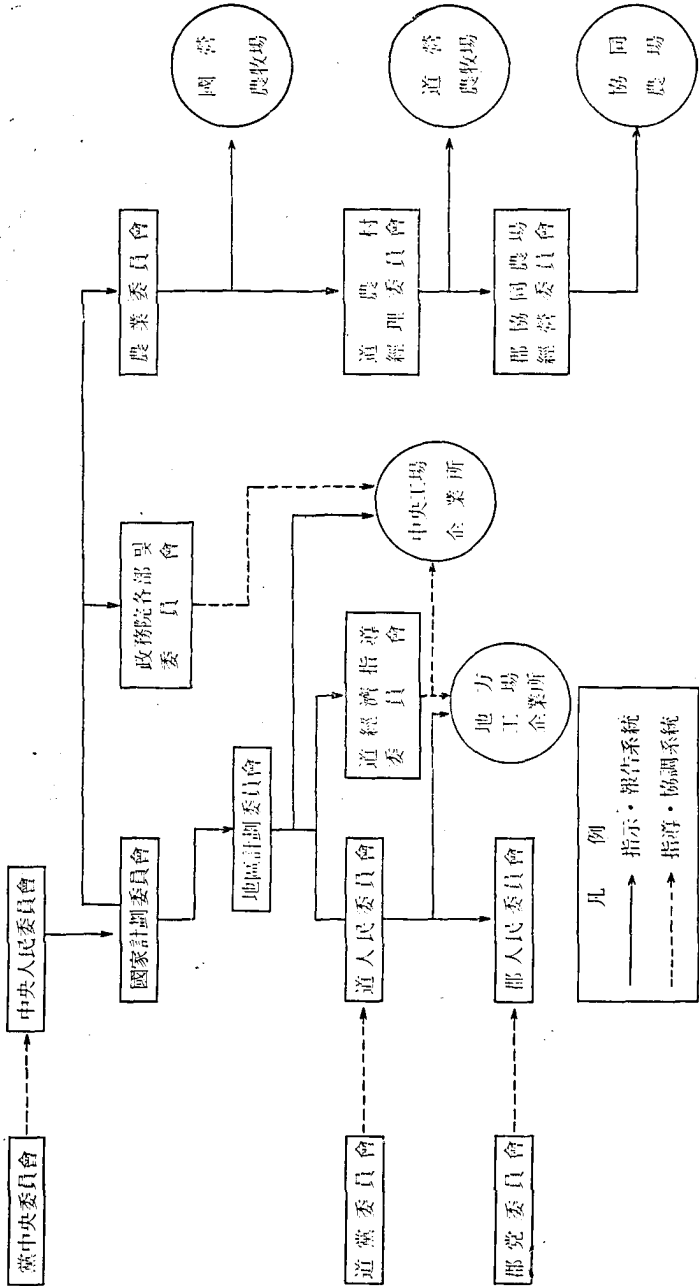
農業管理

社會主義的 농업 관리체제에는 社會主義的 所有의 두 가지 所有形態, 즉 國家的 所有와 協同的 所有가 있다. 국가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國營 農·牧場, 國營 農機械作業所, 國營 灌

⑩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3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0) pp.582~608.

⑪ 北韓憲法, 제76조.

經濟計劃作成體系



概管理所 등이며, 協同의 所有는 협동농장을 들 수 있다.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은 農業全分野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農業 構成面에 있어서는 협동농장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⑩

管理體制를 보면, 처음에는 郡人民委員會 農村經理部에서 郡內의 농업전반을 장악하여 行政方式으로 지도 관리하였다.

그 결과 官僚主義·獨斷主義 등이 팽배되었으며, 郡人民委員會 委員 自體의 指導力量 부족과 지도 간부의 低水準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계획수립·기술·자재공급·노동행정·재정활동 등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⑪

그리하여 1961年 12月 김일성의 平南 속천군 現地指導에서의 <敎示>에 따라 종래의 郡人民委員會에서 농촌경리부를 분리시켜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다.⑫

1962年 末부터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를 농촌경리의 末端單位로 하여 道에는 道 農村經理委員會, 中央에는 農業委員會와 一元의 으로 연결시켰다. 전문적 농업 지도기관이자, 농업 기업소의 성격을 띤 同委員會는 郡內 협동농장 및 농업부문의 國家企業所를 總括的으로 管理 운영하게 되었다.

改編된 농촌 관리체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농업관리의 基本方向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당위원회 的 集體的 指導下에 정치사업을 앞세운 농촌 지도
- 2) 郡單位로 工業的·企業的 方法에 의한 農村管理
- 3) 中央集權的 一元化體系의 原則 反映

또한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에 나타난 農村經理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 1) 郡 單位로 企業的·統合的인 管理 : 郡內 협동농장들의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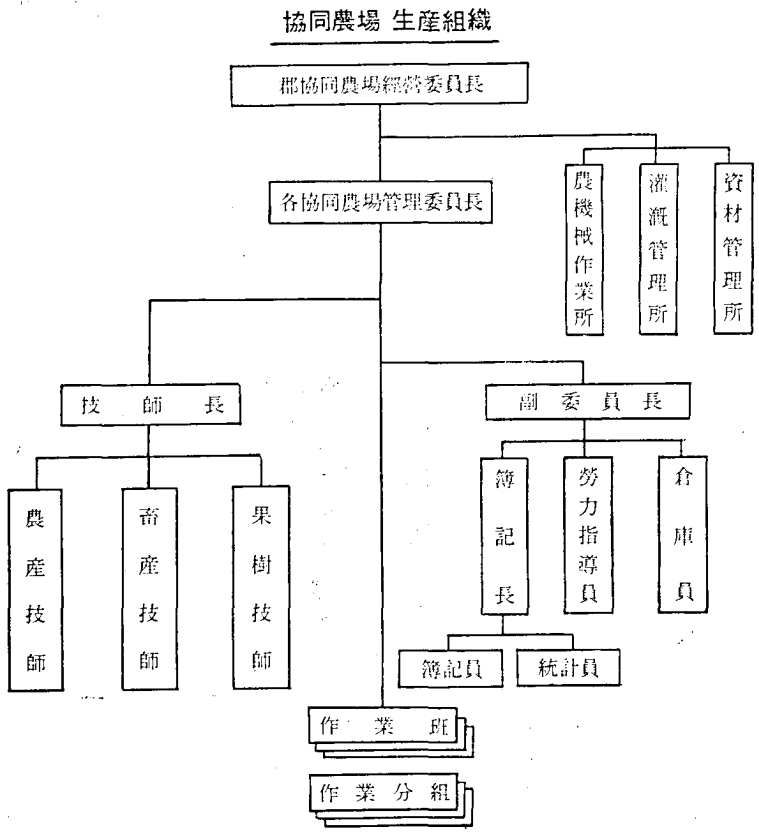
⑩ 정치경제학, 하권(학우서방, 1967) pp.366~367.

⑪ 김일성저작선집, 4권(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pp.31~75.

⑫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 2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0) pp.144~

의 生産活動과 기업소의 재정활동 등 모든 기업활동을 總括的, 具體的으로 지도

- 2) 협동경리에 대한 國家的 指導協助의 강화 : 郡內의 농기계 작업소·농기계 수리공장·가축방역소 등 국가 기업소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郡 협동경리 전반에서 經濟組織性을 提高시키고, 郡單位인 獨立採算制를 實施할 準備을 갖춘다.



※ 1962. 12. 22의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조직할 데 관하여” 내각결정 제157호의 내용과 최근원남기순자의 증언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임.

協同農場의 生産組織에서의 기본형태는 作業班이며, 일정한 耕地, 勞動力 및 生産道具를 가지고 부과된 生産과제를 年間을 통하여 遂行한다. 作業班 내에는 몇 개의 分組가 있으며 分組單位로 作業를 한다.

作業班은 협동농장의 生産 규모와 自然부락, 地域的 條件에 따라 農산작업반, 축산작업반 및 농기구 수리반 등으로 조직된다. 其他 生産部門은 小規模의 경우는 作業班內에 分組로 소속시키고 규모가 큰 경우는 專門作業班을 組織한다.

협동농장의 決算分配는 勞力日數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노력일은 농장원들이 공동경리에 投下한 勞働을 말하며 個個 農場員이 차지하는 分配 몫이 얼마나 되는가를 밝혀 주는 尺度이다.

分配에 있어서 作業班 優待制가 實施되고 있는데 이 制度는 作業반에 부과된 目標을 초과 수행하였을 경우 그 초과 生産분을 해당 作業반원에게 나누어 주는 制度이다.

1960年代 중반부터는 作業班 優待制와 함께 分組管理制가 實施되고 있는데 分組管理制란 일종의 都給制로 일정한 作業량을 分組別로 할당하는 제도이다.

工業管理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主義的 所有에 기초하는 공장·기업소는 그 所有形態에 따라 國營 公營기업소와 協동단체 기업소로, 官廳에 따라 中央工業企業所와 地方工業企業所로 나뉜다.^⑤

〈社會主義 工業企業所〉는 國家의 唯一的 계획하에 生産과 作業을 하는 工業의 經營單位이다.

工業企業소의 生産組織은 生産 技術적 특성과 生産의 專門化 및 協동화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工業企業所에는 工場, 作業반들이 조직된다.

本來 工業管理에 있어서는 支配人 唯一管理制를 擇하였는데, 이

^⑤ 경제사전, 1권(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0) p. 157.

는 支配人에게 경제관리운영의 모든 問題를 決定하고 처리하여 責任지게 하는 經濟管理 運營方法이었다.

그런데 唯一管理制는 생산협의회, 기술협의회 등 行政的 및 社會的 形式을 통하여 集體性은 있으나 本質에 있어서는 책임자 한 사람에게 의한 管理인 것이다.

그러므로 唯一管理制는 官僚主義와 機關本位主義 같은 個人的 獨斷과 主觀이 介入될 수 있으며, 企業管理에 大衆의 직접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것이 지적되기에 이르렀다.^⑩

이러한 問題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1961年 12月 김일성의 大安진기공장 現地指導에서 제시된 <大安의 事業體系>이다.

1962년부터 실시된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하의 경영으로 轉換된 工業管理體系로서 다음과 같은 原則을 내세우고 있다.^⑪

1) 당의 지도적 역할 강화와 經濟的 刺戟보다 政治·道德的 刺戟을 앞세우는 정치사업의 優先

2) 工場·企業管理 운영에서 <工場黨委員會>의 집체적 토의와 지도 및 당간부·支配人의 生産現場 지도의 강화가 포함된 軍중로선의 貫철

3) 中央集權化된 계획적 관리, 독립 채산제의 實施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구체적 內容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장당위원회의 集體的 指導體系하에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공장당위원회에 黨幹部·行政幹部·支配人·技師長·기술자·생산 핵심당원이 참여한다.

2) 집중적인 生産指導體系로서 계획작성, 生産 및 기술 지도사

^⑩ 경제사전, 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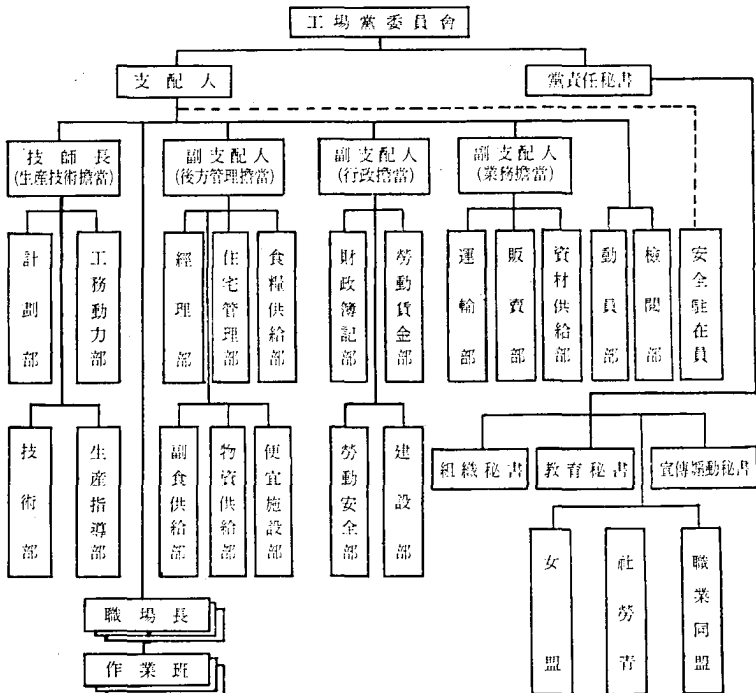
^⑪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2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0) pp.86~132, p.423. 그 외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 이론(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5) pp.227~234.

업은 技師長의 責任下에 遂行하며, 資材供給事業, 後方 供給事業 등 工場관리全般에 대한 行政·경제 활동은 支配人의 責任下에 遂行한다.

3) 중앙집권적인 자재 공급체계로서 各部管理局→工場·企業所→職場→生産現場 順으로 생산을 조직 지도하는 上級機關이 자재를 責任供給한다.

4) 總合의 후방 공급체계로서 지금까지 勤勞 大衆의 生活問題는 기업관리와 무관한 것으로 취급되어 副食物 供給조차 매우 부진하게 된 실정을 打開하기 위해 勞動者區 經理委員會를 設置하고, 工場 後方供給副支配人을 委員長으로 임명하여 근로자의 물질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工場·企業所生産組織



經營方式

獨立採算制

국영 기업소의 모든 單位들에서 獨立採算制가 實施되고 있다. 이 制度를 도입한 이유로서는 자본주의적 상품 화폐관계가 존속하며, 個人利己主義·機關本位主義·地方本位主義 사업 태도가 尙存하는 가운데 노동기피 현상과 국가 재산의 소홀한 관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소에 대한 계획적 지도와 <원에 의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勞力·資材·資金의 節約, 非生產的 支出의 감소, 기업소의 수익성 保障을 위해서 <獨立採算制>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獨立採算制를 실시하는 데는 다음의 原則이 요구되고 있다.^⑩

먼저 당 정책과 國家 要求에 의한 管理이어야 하며, 국가 계획의 무조건적 실행, 기업 운영에서 生産大衆의 참여와 政治事業이 先行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중앙 집권적인 계획적 관리, 기업소의 경영상 융통성, 상품·화폐 관계의 적절한 배합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政治·道德的 刺戟과 物質的 刺戟이 옹계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獨立採算制의 기업적 측면을 보면,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부터 안에서 각 국영 기업은 銀行 信用의 이용과 독자적인 <簿記 밸런스>를 보유하며, 물자 구입과 판매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한다. 사업 평가에 貨幣指標를 활용하며, 國家計定 利益金을 공제한 남은 몫은 기업소의 경영상태 改善과 종업원들의 물질생활 提高에 활용한다.

그리고 독립 채산제 운영에 있어 <千里馬作業班運動·三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을 강화하고 <직장 작업반 우대제>를 실시한다.

^⑩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0) pp. 146~147.

한편 독립채산제의 [統制] 측면을 보면, 기업소의 勞賃資金·賞金·企業所 基金의 積立 規模 등 모든 경제 관리를 正確히 規定化하고 고정재산 관리 이용을 制度化하며 재정 의무 수행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統制를 實施한다.

또한 月別·分期別·指標別로 國家計劃의 엄격한 실행을 감독·통제하는 한편 기업소의 경영활동과 근로자의 노동에 대해서도 모든 項目과 지표별로 매달·매분기마다 물질적·정치적 평가를 실시한다.

독립 채산제는 공업·농업·유통 분야 외에 郡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까지도 擴大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1973年 9 月の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는 독립 채산제의 正確한 實施에 대해 再強調한 바 있다.¹⁹⁾

社會主義競爭運動

一般的으로 共產國家에서는 근로자의 勞動生產能率을 높이기 위해 社會主義 競爭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競爭은 個人別·作業分組別·作業班別·職場別·工場企業所 또는 協同農場別로 進行되는데 競爭의 주되는 條件은 賦課된 生産課題를 얼마만큼 超過 完遂하느냐에 있다.

北韓에에서의 社會主義 競爭運動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조금도 늦춰지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1946年 12月부터는 <建國思想 總動員運動>이라는 경제 건설과 사상 개조를 동시에 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운동에서는 國家財産 애호·노동규율 강화·원가절하·기술습득 등이 강조되었다.

이 운동은 그 後 <증산돌격대운동>으로 구체화되었고, 3·1節 增産競爭, 5·1節 增産競爭, 常時 증산 돌격대 등의 경쟁운동으로 擴大되었다.²⁰⁾

¹⁹⁾ 조선중앙년감(1974) pp. 152~153.

²⁰⁾ 조선중앙년감(1949) p. 97.

戰後에는 1954年初부터 3個年 復舊計劃과 함께 <복구돌격운동>, <民靑 巡廻優勝旗 쟁취운동> 등이 展開되었다.

그러다가 사회주의 경쟁운동이 本格的으로 전개된 것은 1956年 12月 黨 全員會議 이후부터이다. ②

즉, 노동강화를 통한 生産増大의 도모는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을 共產主義思想으로 敎養, 改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천하는 方案으로서 <千里馬運動>을 내세웠다.

黨의 총노선으로 採擇된 이 운동은 1959年 3月부터는 <千里馬 作業班運動>으로 심화되었으며, 1961年 8月까지 200萬名 以上の 근로자가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③

<千里馬作業班運動>은 <千里馬運動>이 내세운 모든 근로자의 共產主義的 敎養 改造를 바탕으로 작업반 단위로 責任을 지우게 함으로써 兩者를 有機的으로 結合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운동의 범위는 공업·농업·건설·보건·과학·교육 등 모든 領域을 포괄하며, 中心課業으로는 사람과의 事業<思想革命>, 설비·자재와의 사업<技術革命>, 책(당 학습교재, 김일성 저서 등)과의 사업<文化革命>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④

1975年 末부터는 <3大革命 붉은旗 쟁취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오래 전부터 金日成과 당중앙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돌린 검덕광산과 청산리 협동농장에서 1975年 12月 1日과 2日에 자기 길기대회를 가짐으로써 발단되었다. ⑤

이 운동이 發端된 것은 革命과 建設에서 질박하게 제기된 諸問題들의 해결과 金日成의 주체사상의 要求대로 3大革命을 심화

② 김일성저작선집, 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101. 같은 책, 제 4권 p.115.

③ 김일성저작선집, 5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p.53, p.426.

※ 민주조선(1965.7.17)에는 1965년 6월말 현재 87만 3천명의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학생을 망라한 23,000개의 작업반이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받았다 함.

④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0) pp.321~354.

⑤ 로동신문(1975.12.2), 근로자(1976.1.) pp.12~17.

발전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운동은 종래의 <千里馬作業班運動>과 같이 작업반을 기본 단위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기업소·농장 등 보다 넓은 단위와 領域에서 展開되고 있다. 이 운동의 中心課業은 <千里馬運動>과 <速度戰>의 요구를 구현하고 기왕의 <천리마 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을 높은 段階에서 발전시켜 社會 全分野를 共產主義要求에 맞게 改造하자는 데 있다.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1982年 7月 9日 <金築製鐵所>의 권기모임을 始發로 하여 소위 <80年代速度 創造運動>을 金正日의 主導下에 積極展開하고 있다. 이 運動은 종래의 千里馬運動과 速度戰을 加味하여 作業成果를 最上의 水準으로 끌어올려 第2次 7個年計劃, 社會主義經濟建設 10大 展望目標 및 4大 自然改造事業 등 80年代에 遂行해야 할 各種 經濟開發計劃을 自力으로 推進하여 經濟活路를 찾으려는데 그 主目的을 두고 있다.

經濟循環

流通秩序

北韓經濟에서의 流通도 生産과 소비를 連結시키는 重要한 手段이지만 자본주의 국가의 流通秩序처럼 市場經濟의 原理에 따라 自律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計劃經濟原則에 따라 全體의 으로 中央에서 계획되고 통제된다.②

유통의 계획에 있어서는 공업과 농업의 併進의 發展과 都市와 農村의 隔差解消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地域間의 경제적 連繫을 重視하고 있다.

모든 生産手段이 國有化되어 있으며, 個人所有는 소비품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소유 형태는 크게 國家的 所有와 協同의 所有 및 個人所有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下에서

② 경제사전, 1권(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0) p. 626.

의 상업 형태를 소유 형태 및 거래 當事者를 기준으로 分類하여 보면 국영기업소 상호간의 商品流通, 국영기업소와 협동조합간의 상품유통, 국영기업소와 個別 근로자간의 상품유통, 협동조합과 個別 근로자간의 상품유통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㉔ 여기서 特記할 것은 機資材 供給計劃과 협동 생산계획에 따라 국영기업소들 사이에 授受되는 生産手段은 去來의 目的이 될 수 없으나 상품적 성격을 띠는 만큼 상품 유통의 形態, 즉 상업적 형태로 去來되는 것이다. ㉕

商業의 形態를 그 主體에 따라 分類하면 국영상업, 협동단체 상업, 農民市場 및 社會給養企業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㉖

국영상업은 공업 상품의 都賣를 獨占할 뿐만 아니라, 小賣도 큰 比重을 차지한다. 협동단체 상업은 협동농장 상업, 생산협동조합 상업, 수산협동조합 상업 등으로 區分되는데, 그 중 협동농장 상업이 가장 활발하다. 이발소, 목욕탕, 각종 修理所들은 모두 協同團體商業에 屬한다. 농민시장에서는 協同農場 또는 個人이 生産한 잉여농산물, 축산물 및 家內手工藝品 등이 去來되고 있다.

價 格

價格이라 함은 商品의 價値를 화폐로 表現한 것이며 價値는 그 商品을 生産하는 데 投下된 <사회적 필요노동> ㉗에 의해 決定된다고 한다. ㉘

상품의 가격 결정기준을 보면 먼저 中央當局에서 勞動生産性提高, 原價低下計劃, 原資材消費水準, 先進의 소비생활 기준, 농산물의 수매가격 결정, 개별적 노동시간과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

㉔ 정외경제학, 하권(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67) p. 413.

㉕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0) p. 18.

㉖ 상업독본(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9) pp. 35~37.

㉗ <사회적 필요노동>이란 '일정한 생산산물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이 부하하는 평균 노동량 시간을 단위로 계산한 것'이다.

정외 경제학(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67) 참조. |

㉘ 상업독본(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9) p. 112.

의 모순 극복 등 경제 여건의 諸基準을 정한다.

各級 생산 기업소에서는 이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中央計劃 當局에 의해 총괄적으로 公定된다.^{①①}

商品의 價格이 결정되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價格表가 作成되며, 여기에는 가격의 종류, 생산 원천 및 생산 기업소명, 제품명, 가격 번호, 규격과 규격 번호, 引受條件, 가격을 定한 기관명, 價格決定日字 등이 밝혀진다.^{①②}

한편 黨은 가격을 의식적으로 造作하여 需要와 供給을 조절하기도 한다.

貨 幣

화폐는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表現해 주는 一般的 等價物의 役割을 가진 특수한 상품으로 보며 가치 척도, 流通, 支拂 등 一般的인 화폐의 機能을 인정하고 있다.^{①③}

그러나 화폐의 기능이 價格政策의 任意的 造作으로 인하여 실제의 가치를 反映하지 못하고 單純한 교환 進표로서의 기능만을 遂行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폐의 유통량은 유통 가능한 상품 가격의 총액과 화폐의 회전 속도에 의하여 決定된다.

화폐의 流通은 現金流通과 無現金流通의 두 가지 方式으로 나누어지는데, 현금유통은 機關·企業所·個人이 市場에서 소비품을 구입할 때 利用되며 無現金流通은 機關·기업소 상호간에 原料·資材·設備 등 생산수단을 구입한 경우 開設된 은행 계정간의 差減決濟에 의하여 행해진다.^{①④}

따라서 北韓에서의 모든 機關, 企業所, 協同團體들은 은행에

①① 정치경제학, 하권(동경:학우서방, 1967) pp.295~302.

①② 경제사전, 1권(평양:사과과학 출판사, 1970) p.7.

※ 그러나 이미 共產諸國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과 같이 價格의 計劃化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북한에서도 가격은 현실과 유리되어 계획경제 운영과 資源配分에서의 차질, 消費者 分配條件의 악화 등 심각한 諸問題를 惹起하고 있다.

①③ 정치경제학, 하권(학우서방, 1967) p.303.

①④ 경제사전, 1권(평양:사과과학 출판사, 1970) p.686.

口座가 開設되어 있어, 이에 의하여 生産手段의 支拂去來를 하고 있는데, 이 無現金流通의 比重은 사회 총거래 중 현금유통에 비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를 反映하는 利率의 水準은 계획 당국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定해지며, 그 利子는 國家의 中央集權的 純所得 또는 企業所 純所得으로 귀속된다.

經濟政策과 經濟計劃

經濟政策의 基本路線

自力更生 原則

經濟體制를 社會主義의 으로 改造하면서부터 自力更生의 原則을 堅持해 왔다.

經濟體制를 社會主義의 으로 改造하는 것 그 자체를 革命遂行으로 보는 北韓은 自力更生의 原則을 社會主義의 혁명의 基本정신으로 하여 自體의 힘으로 새 社會를 建設하며, 革命의 終局적 승리를 達成해야 한다고 主張한다.^⑤ 이는 自立的民族經濟의 建設路線으로 이어지며, 生産수단에 대한 國內需要를 基本적으로 자체에서 充足시키고 技術革命과 擴大再生産의 物質적 조건을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⑥

그러나 이러한 自力更生原則은 國際分業의 利點을 度外視하게 되어 必然的으로 閉鎖的인 經濟體制를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國內需要의 모든 물자를 자체내에서 해결하려는 閉鎖的 경제체제의 固守는 先進技術과 海外資本의 導入을 源泉的으로 封鎖함으로서 經濟成長의 限界를 노정시켰고 나아가 軍需産業과 關聯된 重工業 優先 政策을 固守함으로서 産業間의 不均衡을 더욱 深化시켰다.

그런데, 70年代에 들어와서 內資에 의한 경제개발의 限界를 느

⑤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3) p. 5.

⑥ 우리당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3) p. 2.

北韓은 對外貿易의 擴大에 注力하였으나, 開放體制로의 轉換 없이 對外經濟協力を 推進하였기 때문에 소기의 成果를 거둘 수 없었다.

따라서 1980年代에는 점차 政策的 關心이 自力更生原則의 固守로 다시 轉回^㉞되고 있다.

重工業 優先政策

北韓에서는 産業部門을 공업·농수산업·基本建設·交通運輸·通信·商業 등으로 區分하고, 이 중에서 물질적 生産의 주도적, 결정적 역할을 하는 部門을 工業·農業·基本建設部門이라고 하며, 특히 공업은 生産力 發展과 경제 구조에서 重要的 的의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工業은 生産力의 重要的 部門으로, 生産의 〈骨根體系〉를 이루는 노동 도구를 生産하고, 물질적 富의 生産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특히 重工業은 전체 산업구조에서 가장 重要的 역할을 한다.^㉞

重工業은 一次産業과 경공업의 뒷받침 위에서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發展하는데, 北韓에서는 이와 같은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經濟體制를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는 初期과정에서 부터 무리하게 重工業 優先政策을 追求하여 왔다.

北韓이 스탈린 時代의 소련과 比較할 때 그 歷史的 背景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重工業 優先政策을 固守한다는 사실은 獨自의 경제정책의 不在속에 소련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모방 答습한 結果라 하겠다. 결국 重工業 優先政策은 軍需産業 育成과 聯關되어 武力 赤化統一政策의 公言과 더불어 정권기반 構築의 方便으로 이용되어 심각한 산업 불균형과 經濟沈滯를 감수하면서 까지도 계속 追求되고 있는 것이다.^㉞

國防·經濟併進政策

1962年 12月 노동당 제 4期 5次 全員會議에서 4大軍事路線을

^㉞ “1978년 신년사” 노동신문, (1978.1.1).

^㉞ 인민경제 부문구조와 경제발전 속도(평양: 사회과학원 출판사, 1965) p.6.

^㉞ 평화통일 (국토통일원, 1978) p.98.

採擇하고^④, 60年代 中盤期에 共產圈의 이념 분쟁과 中·소 분쟁의 격화에 따라 〈國防에서의 自衛〉를 제창하면서, 經濟發展을 지연시키더라도 軍事力을 한층 強化해야 한다고 하여 국방 建設과 경제建設의 併進政策이 추진된 것이다.

經濟力 強化와 軍事力 強化를 동시에 追求한다는 政策은 1966年 10月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宣言되었고, 勞動黨全員會議에서 採擇된^④ 以後 現在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1966년까지 예산에서 軍사비가 차지하는 比重을 約 10% 정도로 發表하던 것을 1967~1971년까지 30% 이상으로 발표하면서 相對的으로 人民經濟費의 比重을 낮게 策定하였던 것이다.^④

經濟發展과 軍사력 強化를 동시에 추구하려면, 必然的으로 국민경제 생활의 消費部門을 抑制시키기 때문에 오늘날 北韓住民의 소비생활 窮乏 現狀은 무리한 重工業 優先政策과 國防·經濟 併進政策의 계속적인 推進의 結果라 하겠다.

經濟計劃의 實施

경제계획은 1947년부터 實施되었다. 당시는 短期計劃으로서 1947年과 1948年은 모두 年間計劃으로 끝났으며, 1949년에는 2個年計劃에 들어 갔다.

2個年計劃은 日帝의 식민지적 遺産인 산업의 跛行的 性格을 除去하고, 各部門의 生産을 급속히 늘릴 目標을 세웠으나 6·25動亂으로 인해 中斷되었다.

다음에는 戰前 수준으로 경제를 복구하는 戰後復舊 3個年計劃과 社會主義工業化의 기초를 구축하는 5個年計劃이 實施되었다.

1954年 4月 最高人民會議 第7次 會議에서 채택된 戰後復舊 3

④ 로동신문(1962.12.16)

④ 로동신문(1966.10.8)

④ 참조: 본서 경제부문별 현황중 재정 부문을 보면, 군사비의 변화를 자세히 알 수 있음.

經濟計劃의 目標와 實績

計 劃	課 業	計 劃 目 標	實 績
1次 1個年計劃 ⁽¹⁾ (1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企業所復舊操業 • 國營商工業擴大 • 生産의 急速한 保障과 生活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業總生産: 1946年比 약 2倍 • 糧穀收穫高: 1946年比 30萬톤增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業總生産: 1946年比 70%提高 • 糧穀收穫高: 1946年比 17萬톤增産
2次 1個年計劃 ⁽²⁾ (1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業의 偏頗性克服 • 生産品의 質提高 및 原價切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業總生性: 1947年比 41%增加 • 糧穀收穫高: 1947年比 13.5%增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業總生産: 1946年比 2.6倍 • 糧穀收穫高: 280萬8,552톤
2個年計劃 ⁽³⁾ (1949~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落後된 産業과 農業의 發展 • 朝鮮全域의 經濟復舊土臺造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營産業總生産: 1948年比 194% • 糧穀總生産: 1946年比 158%(쌀잡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營産業總生産: 計劃比 102.9%('49) • 糧穀總生産: 279萬5,231톤('49)
戰後復舊 3個年計劃 ⁽⁴⁾ (195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戰前水準 到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1953年比 75%增加 • 工業總生産: 2.6倍 • 糧穀收穫高: 1949年 대비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1953年比 160% • 工業總生産: 2.8倍 • 機械金屬工業成長率: 47.5%⁽⁹⁾ • 노동 생산 성장율: 196%⁽⁹⁾ • 糧穀收穫高: 1946년 對比 126%
5個年計劃 ⁽⁵⁾ (1957~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業化의 基礎構築 • 衣食住問題 基本的 解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約: 2.2倍 • 工業總生産: 2.6倍 • 糧穀收穫高: 376萬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2.2倍 • 工業總生産: 3.5倍 • 기계·금속공업성장율: 46.9%⁽⁹⁾ • 노동생산성성장율: 140%⁽⁹⁾ • 糧穀收穫高: 380.3萬톤
7個年計劃 ⁽⁶⁾ (196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技術改革과 文化革命 수행 • 住民生活의 劃期的 向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2.7倍 • 工業總生産: 3.2倍 • 糧穀收穫高: 600—700萬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未發表 • 工業總生産: 3.3倍 • 기계·금속공업성장율: 18.4%⁽⁹⁾ • 노동생산성성장율: 147.5%⁽⁹⁾ • 糧穀收穫高: 未發表
6個年計劃 ⁽⁷⁾ (197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技術革命 促進 • 사회주의 物質·技術의 土臺 공고화 • 勤勞者를 힘든 勞動에서 解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1.8倍 • 工業總生産: 2.2倍 • 糧穀收穫高: 700—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1.7~1.8倍 • 工業總生産: 2.5倍 • 기계·금속·성장율: 19.1%⁽⁹⁾ • 노동생산성성장율: 155%⁽⁹⁾ • 糧穀收穫高: 800萬톤(1976년 발표)

經濟政策과 經濟計劃

計 劃	課 業	計 劃 目 標	實 績
2次 7個年計劃 ⁽⁸⁾ (1678~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民經濟의 主體化 • 現代化·科學化 促 • 進 • 社會主義經濟土臺強 • 化 • 住民生活向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 1.9倍 • 工業總生産 : 2.2倍 • 糧穀收穫高 : 1,000萬噸 	

出處 : 연도별〈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 (1)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보고(1947.2.19).
 - (2) 북조선인민위원회의 4차회의(1948.2.6).
 - (3) 1948년 계획실행 총결과 1949~1950 2년개년계획 법령.
 -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1954.4.23).
 - (5) 당 3차 대회 보고(1956.4.23).
 - (6) 당 4차 대회 보고(1961.9.11).
 - (7) 당 5차 대회 결정서(1970.11.12).
 - (8) 최고인민회의 6기 1차 회의(1977.12.15).
 - (9) 엠·에·트리구베코, 〈북한의 경제〉, 소년방 과학 아카데미, 세계 사회주의체제 경제연구소, 나우카출판사, 동방문화 편집국(모스크바: 1977)
- ※ 1차 7개년계획과 6개년 계획의 노동생산성 성장율은 前 成長率에 의거 算出된 것임 (上揭書).
- ※: 공업총생산 중 기계제작 비중은 1944년부터 1975년까지 1.6%에서 31.4%로 향상(上揭書).

個年計劃은 생산 수준을 戰前 1949年 수준으로 높일 것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期間中 中·蘇의 원조 등에 힘 입어 石炭·시멘트·목물 등이 계획에 미달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4個月 早期 達成되었다고 發表하였다.^④

1957년부터 착수한 5個年計劃은 社會主義經濟의 工業基盤構築과 주민의 衣食住問題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同計劃은 戰後復舊 3個年計劃과 마찬가지로 中共, 蘇聯 및 他共産圈의 支援에 힘입어 計劃期間을 1年 앞당겨 目標을 早期 達成하였다. 同期間中에 國民所得은 2.2배, 工業生産은 3.5배로 各各倍加成長하게 되어 北韓經濟가 가장 높게 成長한 時期로 評價되고 있다.

1961년부터는 5個年計劃에서 構築된 工業基盤을 더 한층 鞏固·發展시키고 住民生活의 向上을 目標로 7個年計劃을 着手하였다.

그러나 1961年 7月的 쿠바사건을 계기로 北韓은 自力에 의한

④ 로동당 제 3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 총결보고(1956.4.23).

防衛의 必要性을 절감하여 4大 軍事路線을 채택하고 軍事部門에 대한 投資를 增大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또한 中蘇의 理念的 紛爭激化에 따른 對北韓支援의 激減으로 計劃達成에 큰 差跌을 빚게 되었다.

따라서 1966年 10月 黨代表者會議에서는 計劃期間을 3年間 연장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당초의 計劃目標에는 미달하였다.

1971년부터는 3大 技術革命遂行과 産業의 體質改善을 目標로 6個年計劃에 着手하였다. 同計劃 期間中에는 計劃의 적극적인 推進을 위해서 西歐로부터의 先進技術과 裝備의 導入에 注力하였다. 그러나 外債難에 봉착함으로써 결국 目標達成이 不可能하게 되자 1975年 8月을 기하여 同計劃을 早期 完遂했다고 發表하고 미진부문에 대해서는 2年間の 완충기를 두고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계획기간을 1年間 연장수행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78년부터 着手된 第2次 7個年計劃에서는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標榜하고 1977년에 비하여 國民所得 1.9倍 工業總生産 2.2倍 알곡 1,000萬톤 등을 주요 目標로 提示하고 있다. 그러나 目標年度를 1年 앞둔 現時點에서 알곡을 除外한 모든 部門에서 극히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實情

80年代 10大展望 目標

區 分	單 位	'89年 目標值	備 考
電 力	億KWH	1,000	成分含量基準時 164
石 炭	萬 噸	12,000	
강 철	"	1,500	
有 色 金 屬	"	150	
化 學 肥 料	"	700	
시 멘 트	"	2,000	粗穀基準
織 物	億 m	15	
알 곡	萬 噸	1,500	
水 產 物	"	500	
墾 拓 地	萬 頃 步	30	

出處：조선노동당 제 6次大會 金日成報告, 1980. 10. 10

經濟政策과 經濟計劃

임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은 1980年 10月 〈로동당 제 6차 대회〉 보고에서 第 2次 7個年計劃 目標值의 2倍 以上에 達하는 80年代 10大展望 目標를 提示했다.

部門別現況

國民所得

北韓에서는 현재 總量指標로서 〈社會總生産〉과 〈國民所得〉을 사용하고 있으며, 前者는 〈一定 期間에 생산된 物質的 富의 總體〉로서, 後者는 〈社會 總生産 중 소비된 生産手段을 補償한 나머지 部分〉으로서 定義되고 있다.^⑭ 〈社會 總生産〉이 通常 概念인 國民 총생산(GNP)과 다른 점은 生産 單位間에 거래된 中間財 費用이 포함되어 있는 反面, 用役 生産額을 除外(수송, 통신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北韓 概念의 〈國民所得〉은 減價償却費와 中間財 費用을 제외하고 있으나 生産단위 간의 去來時에 부과되는 去來收入金(間接稅 해당)이 포함되며, 用役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⑮

北韓은 1965년까지 〈사회 총생산액〉과 〈국민소득〉을 發表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1人當 국민소득에 대해서만 간혹 언급하고 있다.

各國의 專門研究機關은 北韓의 GNP와 1人當 GNP를 추계하고 있으나 推計方式의 차이와 換率 適用의 差異에 따라 推定額이 一致되지 않고 있다.

^⑭ 정치경제학, (하)(동경: 학우서방, 1967) pp. 464—466. 여기서는 社會總生産을 總社會生産物로 표시.

^⑮ 따라서 北韓의 국민소득을 通常概念의 國民所得(NI)으로 환산하자면, 去來 收入金を 제외하고 用役生産額을 가산해야 한다.

^⑯ THE EUROPA YEARBOOK (1978), Vol. 11, p. 173에 표시된 美貨(\$)와 北韓貨(원)의 비율(1977년도 기준): Basic Rate <1: 0.978>, Tourist Rate <1: 2.128>, Trade Rate <1: 3.363>

지금까지 北韓은 1人當 GNP 를 1962년에 417원(北韓貨)^㉞, 1966년에 500원^㉞, 1967년에 580원^㉞, 1970년에 605원^㉞, 1974년에 1,029원^㉞으로 각각 발표한 바 있다. 각기관이 推計한 北韓의 GNP 와 1人當 GNP 를 보면 다음과 같다.

北韓의 GNP 와 1人當 GNP

年度	北韓發表 (國民所得)		美國政府機關 (1975年價格)		韓國研究機關 (經常價格)(A)		韓國研究機關 (經常價格)(B)	
	GNP	1人當 GNP	GNP	1人當 GNP	GNP	1人當 GNP	GNP	1人當 GNP
1974		(1,025원)	100億弗	590弗	73億弗	452弗	75億2千萬弗	464弗
1978					91.9億弗	541弗		

北韓의 1人當 GNP

〈北韓發表〉

年度	1人當 GNP(원)	根 據
1946	64.44(1)	'67年度 所得 580원은 '46年比 9倍
1949	132(1)	'67年度 所得 580원은 '49年比 4.4倍
1962	416.66(2)	'66年度 所得 500원은 '62年比 1.2倍
1966	500(2)	最高人民會議 4期 1次會議 報告(1967.12.16)
1967	580(2)	最高人民會議 4期 1次會議 報告(1967.12.16)
1970	605.73(3)	'70年 所得은 '46年比 9.4倍
1974	1,020.69(4)	'74年 所得은 '70年比 1.7倍
"	1,000弗(4)	工業熱誠者大會('75.3.4)
1979	1920弗(5)	金日成 新年辭 1980.1.1
1982	2200弗(6)	1983.9.12 金佑鍾(對外文化連絡協會副委員長) 日本記者와의 會見(每日新聞 '83.9.13)

出處: (1) 조선중앙년감, 1970, p.276.

(2) " , 1968, p.2.

(3) " , 1974, p.242.

(4) " , 1976, p.30,371.

(5) 國土統一院 推計值 720弗(1,292원 北韓貨)

(6) " " 736弗(1,494원 北韓貨)

㉞ 조선중앙년감(1968) p.2.

㉞ 조선중앙년감(1974) p.242.

㉞ 조선중앙년감(1976) p.371. 1974년의 1인당 국민소득 1,029원을 여행자 교환 비율(1\$: 2.128 원)을 適用 換算하면 483\$이 된다.

財 政

生産手段이 社會的 所有로 되어 있고, 모든 財貨와 서비스가 중앙계획 기관의 統制下에 生産되고 配分되는 북한에서 財政機能은 모든 경제 활동의 中樞가 되고 있다.

北韓의 財政은 中央 및 지방기관의 豫算收支와 社會化된 企業의 財務 · 銀行信用 · 社會保險 · 國民所得 全般에 걸쳐 中樞的 機能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계획의 編成에 있어서도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國民所得이 예산을 통해 분배되며, 예산은 <경제의 균형적 · 계획적 발전, 축적과 분배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예산체제는 1972년까지 統合豫算體系를 유지하여 중앙 예산에 道 · 市 · 郡의 地方豫算이 포함되어 있었다. 總豫算中에서 地方豫算이 1964년에는 44%로까지 높아진 적이 있었다.

1975年 최고인민회의의 5기 5차회의 보고에 의하면 1973년부터 이미 새로운 형태의 地方豫算制를 실시하고 있었는데^㉞ 이 제도는 地方 財政需要를 地方 自體財源으로 조달하고, 地方工業 발전에 의해 道單位로 消費材를 自給自足하도록 하는 方針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1978년 12월에는 <地方豫算制> 규정을 채택하여 法制化하였다.

지방예산의 중요한 資金源으로는 地方工業 · 社會給養 · 便宜奉仕事業의 收益금이 되고 있다. 이러한 地方豫算制는 一定額의 지방예산 剩餘分을 中央에 上納하게 함으로써 財源調達을 순조롭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㉟

北韓의 歲入構造는 社會主義經理收益金, 住民稅, 對外援助 等

㉞ 조선중앙년감(1976) p. 333.

㉟ 조선중앙년감(1976) p. 333. "1975년에는 지방예산에서 남은 돈 4억 1,700여만원을 중앙예산에 들여 놓았다."

으로 構成되어 그중 社會主義經理收益金이 대부분을 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5年 以後부터는 社會主義經理收入만을 稅入源으로 하고 있다. 社會主義經理收益金은 去來收入金, 協同團體 所得稅 國家企業利益金 등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그중 거래수입금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去來收入金은 일종의 間接稅로서 주로 消費財에 부과되나 서비스와 일부 中間財에도 賦課되고 있다.

去來收入金은 소요 資源의 조달 外에 消費財의 소비억제, 總需要와 供給의 均衡要因으로도 기능을 수행한다.

歲出構造를 보면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사비, 기관관리

財政規模의 趨勢 (單位: 北韓貨 萬원)

邑分 年度	歲入額	歲出額	歲出內容			
			人民經濟費	社會文化費	軍事費	機關管理費
1949	20,301	19,657	8,308			
1953	52,727	49,597	23,990	5,597	7,524	4,793
1955	108,157	100,619	75,345	8,510	6,190	6,451
1958	152,914	132,141			6,356	7,448
1961	240,000	233,800	170,790	50,033	5,845	7,131
1965	357,384	347,613	236,376	68,422	27,809	15,006
1968	502,370	481,289	235,350	82,913	155,938	8,663
1970	623,220	600,269	284,087	119,394	186,083	10,805
1971	635,735	630,168	278,379	144,467	195,982	11,340
1972	743,030	738,861	409,932	187,807	125,606	15,516
1973	859,931	831,391	475,554	210,344	128,034	17,459
1974	1,001,525	967,219	551,393	239,792	155,722	20,312
1975	1,158,630	1,136,748	650,688	225,761	186,427	23,872
1976	1,262,583	1,232,550	691,828	308,301	206,537	425,884
1977	1,378,900	1,334,920	768,171	339,131	209,582	28,033
1978	1,565,730	2,474,360	845,087	363,888	234,423	30,962
1979	1,730,132	1,730,132	1,092,127	417,016	262,980	38,531
1980	1,813,923	1,883,691	1,119,159	441,106	275,019	58,407
9981	2,068,400	2,033,300	1,223,241	471,83	300,928	47,548
1982	2,268,000	2,221,160	1,363,914	489,446	325,288	42,512

出處: 各年度別 豫決算 報告書.

비 등으로 大分되고 있다.

인민경제비는 1970年代 以前까지는 세출 예산의 50% 내지 70%로서 기록이 심하나 1971年 以後에는 대략 57~58%의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사회문화비도 1970年代에는 平均 17%이었으나 1972年 이후는 23~24%線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軍事費는 15%內外, 機關 管理費는 대체로 2%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경제비는 社會化된 기업과 경제기관에 대한 支出費로서 투

歲 出 構 成 比

(單位：%)

年 度	構 成 比	人 民 經 濟 費	社 會 文 化 費	軍 事 費	機 關 管 理 費
1953		48.4	11.3	15.2	7.6
1955		74.9	9.5	6.1	6.7
1957		70.5	18.2	5.3	6.0
1961		73.0	21.4	2.5	3.1
1963		74.0	21.5	1.9	2.6
1964		69.5	20.6	5.8	4.1
1965		68.0	19.7	8.0	4.3
1966		68.5	17.2	10.0	4.2
1967		49.9	17.5	30.4	2.2
1968		48.9	17.3	32.4	1.8
1969		47.5	19.7	31.0	1.8
1970		47.3	19.9	31.0	1.8
1971		44.2	22.9	31.1	1.8
1972		55.5	25.4	17.0	2.1
1973		57.2	25.3	15.4	2.1
1974		57.0	24.8	16.1	2.1
1975		57.2	24.3	16.4	2.1
1976		56.2	25.0	16.7	2.1
1977		56.8	25.4	15.7	2.1
1978		57.3	24.7	15.9	2.1
1979		58.5	24.1	15.2	2.2
1980		59.4	23.4	14.6	2.6
1981		60.2	23.2	14.8	1.8
1982		61.4	22.0	14.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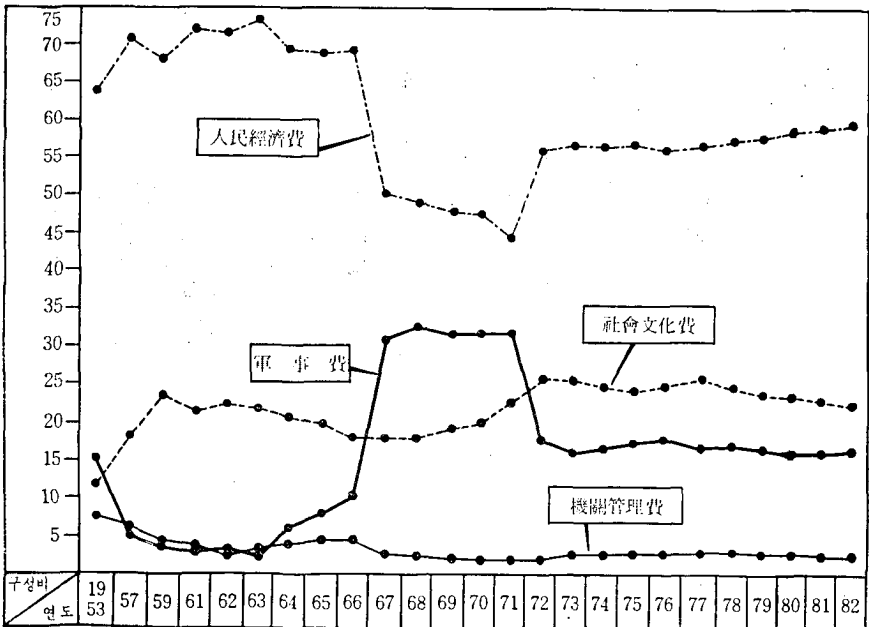
出處：各 年 度 別 豫 決 算 報 告 書.

部門別現況

자 대상은 공업·농업·수송·통신·건설 등이나 重工業과 같은 戰略産業에 집중 투자가 강조되어 왔다. 總工業投資額中 중공업과 경공업의 比率를 보면, 1960年代 이전에 중공업이 81~85%, 1960年代 이후는 64~74%로 나타나고 있으며, 1970年에도 공업 건설 투자액의 88.8%가 중공업 기지 확대 강화에 투자되었다.②

세출부문의 構成比中에서 가장 起伏이 심한 것은 군사비로서 北韓은 1950年代와 1960年代에 걸쳐 계속적으로 군비증강에 노력하여 왔으며, 이미 金日成은 1970年 11月 5次당大會에서와 1978年 9·9節 行事에서 4大 군사로선의 完成을 公言한 바 있다.③

歲出 構成의 趨勢



② 각 년도별 <조선중앙년감> 및 노동신문(1971.4.14일자) <최고인민회의 4기 5차회의 보고>.

③ 노동당 제 5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70.11.2).

別表의 세출 구성비를 보면 4大 軍事路綫을 採擇하여 本格的으로 軍備增強을 시도하던 1963年의 군사비 比重이 1.9%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던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세출 구성에서 군사비의 比重이 1966년까지는 10% 미만 이다가 1967년부터 1971년까지는 30%를 상회하였으나 南北對話가 시작된 1972년부터 다시 급격히 하락하였다. 歲出構成比의 추세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民經濟費와 軍事費의 構成比가 서로 相關關係를 이루고 있음은 軍事費의 상당액이 人民經濟費에 은폐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金 融

北韓의 은행제도는 1964年 3월에 개편되어 中央銀行·産業銀行·貿易銀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中央銀行은 화폐 발행, 現金流通의 調節, 現金出納 業務, 無現金決濟의 組織, 예산의 出納, 政權機關·企業 등에 대해 流通資金을 供給한다.

産業銀行은 협동농장, 각 부문의 경제 기관, 기업에 대한 短期貸付·보험·저금사업·개인 송금 업무, 협동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도와 통제 업무를 취급한다.

貿易銀行은 國際決濟業務, 支拂 및 保證業務, 무역 기관에서의 外貨獲得과 支拂에 대한 信用業務를 취급한다.

<원에 의한 統制>라고 불리는 은행의 통제 기능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나, 住民들의 은행 利用은 매우 微微하다. 모든 企業은 中央銀行이나 專門銀行에 口座를 開設하며, 거의 모든 支拂이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現金의 支拂, 價格, 貸金率 등 現金運用에 전반적 통제를 가하며, 단기 신용의 供與過程을 통하여 企業間, 企業內의 物的·貨幣的 資源의 계획적 이용에 대한 統制를 加한다.

북한은 資金調達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價格과 생산 원가의乖離, 지나치게 細部化된 계획의 非現實性과 硬直性, 物的 刺戟의 不足과 소비의 선택이 排除된 生産, 黨과 官僚에 의한 경제관리 등의 非金融的 要因으로 인하여 금융의 效率性은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農 · 水産業

農 業

1958年 8月 農業集團化가 완성된 後 農業發展을 위한 첫 조치로서 <靑山里精神과 靑山里方法>을 내세웠다.

1960年 2月 金日成은 靑山里 協同農場을 現地指導 한 後 지도 간부들의 판로주의적 작용이 심화하는 것을 지적하고, 上部가 下部를 도와주는 立場에서 올바른 지도를 해야 한다는 內容의 <교시>를 했는데, 이 때에 말한 金日成의 연설이 훗날 <靑山里精神, 靑山里方法>이라는 하나의 典型的인 事業方法으로 되었으며, 憲法에서까지 이를 規定하게 되었다.

그 後 1964年 2월에 열린 黨 4期 8次 全員會議에서는 農村의 技術 · 文化 · 思想革命을 內容으로 하는 <농업 강령>⑤을 發表하

耕地面積

(單位: 千町步)

年 度	耕 地 面 積
1946	1,860(논: 388, 밭: 1,472)
1949	1,983(논: 467, 밭: 1,516)
1956	1,899(논: 491, 밭: 1,408)
1960	1,913(논: 510, 밭: 1,403)
1963(1)	1,996(논: 583, 밭: 1,413)
1976(2)	2,000(논: 700, 밭: 1,300)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1.

(2) 조선중앙방송(1976. 11. 8).

※ 1963年 以前은 과수원 면적 등을 포함.

※ 韓國研究機關推計: 1976年 現在 畝62.1萬町步, 田 146.5萬町步

※ 國土統一院推計: 1982年 現在 畝 63.5萬町步, 田 146.9萬町步

⑤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로 발표됨. 조선중앙년감(1975) p. 12.

였다. 이 강령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水利化·電氣化·機械化·化學化가 추진되었으며, 1974년에는 田畠의 水利化와 農場의 電氣化가 完成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 밖에 農業發展을 위한 措置로서 自然改造를 들 수 있다.

1976年 10月 2日, 黨 第5期 第12次 全員會議에서는 <自然改造 5大方針>이라는 것을 決定하고 穀物增産을 위한 長期的인 自然改造事業에 着手하였다.

5大方針이란 1) 밭 灌溉의 完成, 2) 土地整理·土地改良, 3) 다락밭 建設, 4) 治山 治水, 5) 간석지 개간 등이다.

이 決定에서는 2~3年 內에 40萬町步의 밭 灌溉건설, 15萬町步의 다락밭 造成, 하루에 400mm의 폭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江·河川 整理, 10萬町步의 干瀉地 개간 등을 主要 課業으로 提示했다.

그러나 同 事業의 推進이 어려워지자 1981年 10月 黨 6期 4次 全員會議에서는 <4大自然改造 事業>의 展開를 決定하고 4大 建設課業을 提示하여 食糧難打開을 爲한 農耕地 擴張을 爲하여 住民들을 督勵하고 있다.

4大 自然改造 事業이란 1) 1988년까지 30萬 町步의 干瀉地開墾, 2) 20萬정보의 새땅찾기, 3) 1985년까지 南浦閘門建設, 4) 태천발전소 건설을 말한다.

○水利化: 7個年計劃 期間에는 灌溉施設의 擴張工事, 畝물 뽑기 工事와 江·河川 整理事業, 植樹 造林事業 등에 역점을 두어 水利化體系를 確立하였다. 이 期間에 岐陽 灌溉工事, 靑丹 灌溉工事を 끝내고, 압록강 灌溉工事와 신계 灌溉工事を 着手하였다. 그리고 채소 밭에 분수식 관개체계를 導入하였다.

6個年計劃 期間에는 <만풍호>와 <은파호>, <연탄저수지>, <평원저수지>를 비롯하여 總 117個의 貯水池를 새로 建設했으며, 40萬 町步에 해당하는 밭을 관개화하였다.

2次 7個年計劃에서는 나머지 18萬町步의 밭 관개를 1978年 4

월까지 끝내어 과일 밭과 팥 밭에 이르기까지 관수 체계를 導入할 計劃이었다. 그 밖에 江·河川建設, 中·小河川整理, 海岸防堤, 물빠기 공사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 예견되고 있다.

○機械化: 農村的 기계화는 1950年代 후반기부터 着手했으며 1958년에 기양 트랙터工場에서 트랙터가 生産됨으로써 협동농장에 普及되기 始作했다.

7個年計劃 期間에는 농기계 公廠의 擴張과 농기계 作業소를 2倍 以上으로 增大시켰다. 1970年代에 와서는 모내는 기계가 다량 보급되고, 트랙터 臺數도 상당히 增加되었다.

平地帶에서는 논밭갈이·씨레질·김매기·비료주기·탈곡·운반작업 등이 대부분 기계화되고, 모내기의 기계화만 남은 과제로 되었다.

2次 7個年計劃에서도 트랙터와 화물 자동차의 臺數를 계속 증가시켜 機械化 水準을 높일 것을 計劃하고 있다.

농업기계화 실태가 트랙터와 같은 大型 농기계 등만으로 劃一

農業의 機械化 水準 ()은 總保有 臺數

年度	區分	耕地 100町步當트랙터臺數 (15馬力換算)	自動車 臺數
1953		(764)	
1956		0.13	
1960		0.65	(759)
1963(1)		0.9	(2,200)
1970(2)		2.97	(4,857)
1977(3)		5~6	(20,000)
1978(4)	평지 6대, 산간지대 5대		100정보당 1,
1979(5)	평지 7대, 산간지대 6대		
1984		10(目標值)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3) p.322.

(트랙터는 총 보유대수를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계산).

(2) 1970. 11. 5차 당대회 보고에서 1960년대에 比한 증가율 발표.

(3) 1977. 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회의 보고.

(4) 1078. 4. 최고인민회의 제 6기 2차 회의 보고.

(5) 1980. 10. 6차 당대회 김일성보고.

化學肥料 施肥量

(單位 ; kg)

年 度	町 步 當 施 肥 量
1949	131
1956	113
1960	160
1963(1)	300
1970	512(2)(논 : 674, 밭 : 478)(3)
1975(4)	1,000
1977(5)	논 : 1,300, 옥수수 밭 : 1,200
1979(6)	1,500

出處 : (1) 1963년 이전은 조선중앙년감(1964) p.322.

(2) 조선중앙년감(1971) p.5.

(3) 조선중앙년감(1971) p.221.

(4) 6개년계획 총화에 대한 중앙통신 보도.

(5)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 회의보고(1977.12).

(6) 1980.10. 6次黨大會 金日成보고.

※ 그런데 화학비료에서 주축이 되고 있는 질소질 비료의 경우 질소 함량이 20% 내외인 유안이 대부분이며 유안은 산성비료라는 결점이 있음. 또한 시비량도 정보당 1,300kg을 성분톤으로 따지던 정보당 260kg에 불과함.

化되어 있기 때문에 營農에서의 효율과 능률면에서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化學化 : 7 個年計劃 期間에 化學肥料 施肥量은 1960年에 비해 3.2倍로 增加되어 논에는 町步當 674kg, 밭에는 町步當 478kg 으로 높아졌다.

6 個年計劃 期間에 化學肥料를 町步當 1 톤 以上으로 施肥할 것을 목표로 책정한 결과 1977年에는 논과 밭에 1,300kg의 化學肥料를 施肥할 수 있는 能力을 갖게 되었다.

2次 7 個年計劃에서는 논·밭 町步當 化學肥料의 施肥量을 2 톤 以上으로 提高시키고 磷肥料와 加里肥料의 比重을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

○電氣化 : 1967年 末에 농촌 98.2%, 농가의 86.1% 전기가 가설되어 모든 里에 電氣가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농업의 動力化에 따른 電力消耗量도 增加되고 있다.

○穀物生産：穀物生産 提高를 위한 주요 조치로서는 1964年 2月 黨 中央委員會 第4期 8次 全員會議에서 채택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라고 볼 수 있다.

이 테제(강령)에서 강조된 것은 農村에서 思想革命, 技術革命, 文化革命을 추진시켜 곡물 생산을 最大限으로 增大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테제가 發表된 후 농촌의 모든 勞力을 곡물 증산에 集中시켰다.

특히 水利化·機械化·電氣化·化學化·土地改良·耕地擴張 등이 강력히 추진되어,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곡물 생산의 增加를 가져오게 되었다.

北韓에서는 곡물 增大의 가능성이 옥수수 생산에 있음을 강조하고, 1970年代 후반기부터는 옥수수에 대한 <영양단지 가식법>을 導入하게 되었다.

그밖에 곡물 증산을 위해 品種改良과 農作的 集約化 그리고 適地適作, 適期適作的 原則下에 作物配置를 하며, 病虫害防止에 注力하고 있다.

북한에서 곡물생산량 발표시에 사용하고 있는 穀物の 概念은 粗穀일 뿐만 아니라 薯類도 포함되며, 統計處理時 田畝의 立苗 상태에서 集計를 하기 때문에 精穀으로 곡물생산고를 계산하려면 立苗 計算上의 差異分 約 20%를 除하고 平均 精米率 約 70%를 適用시켜야 하며 統計値와 實生産値間의 오차 20%를 감해야 한다.

따라서 1982年 알곡생산량 950萬톤을 精穀으로 환산하면 約 426萬屯이 된다.

○果樹：1950年代에 果樹業 발전을 위해 野山을 개간하여 約 6萬 8千町步의 果樹園을 새로 造成했다.

7 個年計劃期間에는 송화果樹農場(果樹面積 7千町步)을 비롯한 大型화된 果樹園地를 造成했다.

6 個年計劃 期間에는 果樹 面積이 30萬町步로 확장되었으며, 2次 7 個年計劃 期間에는 果實 生産量을 150萬톤 以上으로 增大시

町步當 穀物收穫高

年度	區分	目 標	實 績
1956(1)		논벼 : 3.4톤 밭곡식 : 1.1톤	
1961(2)		논벼 : 4톤 옥수수 : 2.5톤	
1967(3)		논벼 : 4~5톤 옥수수 : 2.5~3톤	
1975			논벼 : 5.9톤 옥수수 : 5톤(4)
1976(5)		논벼 : 5.3톤 옥수수 : 4.2톤	
1979(6)		논벼 : 7.2톤 옥수수 : 6.5톤	

- 出處 : (1) 건후 3개년 계획 목표(1954.4.).
 (2) 1차 5개년계획목표(1958.6).
 (3) 7개년 계획목표(1961.9).
 (4) 6개년 계획 총화에 대한 중앙통신 보도(1975.9).
 (5) 6개년 계획목표(1970.11).
 (6) 1980.10. 6次蕪大畝 金日成報告.

穀物總生産高

(單位 : 萬噸)

年 度	總 生 產 高
1946	190
1949	265
1953	233
1956	287
1960(1)	380
1961(2)	483
1962~1964(3)	500
1974(4)	700
1975(5)	770
1976(6)	800 以上
1977(6)	850 "
1979(7)	900
1980(8)	950
1984(목표치)	1,000

- 出處 : (1) 1960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1961) p.332.
 (2) 조선중앙년감 (1962) p.230.
 (3) 조선중앙년감 1963년판, p.221, 1964년판, p.170, 1965년판, p.152.
 (4) 조선중앙년감(1975) p.191.
 (5) 조선중앙년감(1977) p.305.
 (6) 1977.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회의 보고.
 (7) 1980.4. 최고인민회의 제 6기 4차회의 보고.
 (8) 1983.4. 최고인민회의 제 7기 2차회의 보고.

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果 樹 面 積

(單位：千町步)

年 度	面 積
1946	25
1949	21
1956	16(13.5) ⁽³⁾
1960	52(82) ⁽⁴⁾
1963(1)	98
1976(2)	300

出處：〈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1.

(2) 1977. 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 차회의 보고.

'79년 9월 중국 신화통신사 대표단의 방문기에도 30만 정보로 발표(로동신문 79. 10).

(3), (4) ()의 수치는 조선중앙년감(1961) p. 335에 표기된 것임.

과 일 生 産 量

(單位：千噸)

年 度	生 産 量
1960(1)	160
1970(2)	320
1974	480
1976	704
1984	1,500(目標值)

出處：〈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0. 9. 7개년 계획목표치를 1960년의 3 배인 50만톤으로 발표.

(2) 1970年 以後는 1960년 생산량에 대한 倍數 比率을 計算한 것임.

○畜産：1960年代에 國營畜産과 協同農場 畜産 그리고 個人副業畜産을 배합하는 畜産政策을 실시하여 協同農場의 各 畜産作業班에서는 年 2 噸 以上, 各農家에서는 100kg 以上의 肉類를 生産하게 했다. 한편, 萬景臺·용성 닭공장을 비롯하여 70餘個의 닭工場을 새로 建設했다.

6 年計劃期間에는 1 萬噸 규모의 돼지 목장을 平壤에 建設하고, 咸興·淸津 등 主要都市에 2~5千噸 規模, 各郡에는 500噸 규모의 牧場을 新設토록 計劃되었다.

肉 類 生 産

(單位 : 千噸)

年 度	生 産 量
1949(1)	34
1953(1)	28
1956(1)	32
1960(2)	89.7
1963(1)	105.7
1974(3)	264
1975(4)	428~535
1976(5)	550
1984(목표치)	800~900

出處 : (1) 1949년도 생산량에 대한 倍數比率을 適用 推計(조선중앙년감 1964, p. 323).

(2) 1961.9. 7개년 계획 목표를 1960년도의 3.9배인 35萬噸으로 발표.

(3) 조선중앙년감(1975) p. 349.

(4) 조선중앙년감(1976) p. 326.

(5) 1977.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회의 보고<연간 55萬噸의 육류 생산능력 토대 마련>

卵 類 生 産

(單位 : 100萬個)

年 度	生 産 量
1949	34
1953	35
1956	65
1960	125
1963(1)	155
1970(2)	700
1974(3)	1,260
1976(4)	2,268

出處 :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1964) p. 323.

(2) 1970.11. 5차 당대회 보고.

(3) 6개년계획 실적에 대한 중앙통신 보도.

(4) 1977.12.16 최고인민회의 제 6기 제 1차회의 보고.

2次 7個年計劃 期間에는 종래의 <國家畜産과 協同農場 畜産>을 기본으로 하면서 농촌 주민들이 個人副業畜産을 배합하는 畜産政策을 계속 촉구해 나가며, 大規模 畜産團地를 새로 造成시켜 생산량 150萬噸 以上을 계획하고 있다.

部門別現況

한편 사료문제가 심각하여 草地造成面積의 擴大나 自然生 사료의 채취에 力點을 두면서 소·돼지 등 큰 가축보다는 개·緬羊·山羊 등의 양육에 더 置重하고 있다.

牛 乳 生 產 (單位:톤)

年 度	生 產 量
1949	790
1953	490
1956	570
1960	11,900
1963(1)	27,500
1970	110,000(2)
1976	60,000(3)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1964) p.323.

(2) 1961.9. 7개년계획 目標值.

(3) 1970.11. 6개년계획 目標值.

水 産 業

6 個年計劃 期間에 魚群 探查, 最新 漁撈技術의 강화, 漁具의

漁 獲 高 (單位:千톤)

年 度	生 產 量
1949	273
1953	122
1956	365
1960	465
1963(1)	640
1970(2)	900
1975	1,460(3)
1979	2,000(4)
1984	2,700(目標值)(5)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1964) p.323.

(2) 1970年 以後는 6개년계획 目標值와 實績 遂行率에 의한 계산.

(3) 水産物 總量 약 170萬톤.

(4) 1980.3.21 전국수산물관리회 보고.

(5) 水産物 總量 350萬톤.

多樣化·輕量化 등을 촉진했으며, 金策·新浦·元山港을 遠洋漁業 基地로 만들고 河川·湖水·貯水池 등과 淺海·干潟地 등을 利用한 양식·양어 사업을 강화했다. 또한 漁船의 大型化·現代化·萬能化 方針에 따라 3,750톤級の 트롤선과 5천톤級の 냉장 운반선을 建造했다.

2次 7個年計劃에서는 東海에서 遠洋漁業을 發展시키고, 西海에서는 中漁·小漁業을 發展시키며, 고기배의 現代化·萬能化를 實現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鑛·工業

採取工業

炭鑛은 咸鏡北道의 北部인 阿吾地 古乾原 一帶와 西海岸 一帶에 散在되어 있다.

6個年計劃 期間에는 德川·西倉·金野青年炭鑛 등을 소련의 기술 및 施設支援으로 새로 開發했으며, 安州·古乾原·前川炭鑛 등을 現代의 施設로 改建했다.

2次 7個年計劃期間에는 安州중합탄광을 확장하여 大燃料 基地化할 계획이며, 그밖에 일신·학동 地帶 등에 새로운 炭鑛 開發을 추진하고 있다.

鐵 및 非鐵金屬鑛山에 있어서는 6個年計劃期間中 茂山·成興·檢德·笏洞·殷栗·萬德·龍陽·大榆洞·甲山·萬年·端川 등 既存 鑛山の 시설 擴張에 注力했다.

2次 7個年計劃 期間에는 茂山광산을 磁鐵精鑛 1,000萬屯水準으로 施設을 擴張하고^㉞, 德成·西海里·檢德·端川地區의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北韓은 석탄 생산량을 別表와 같이 發表하고 있으나 國土統一院에서 推計한 바로는 1982年末 現在 石炭生産量은 3,345萬 屯으

㉞ 1977.12.6. 최고인민회의 제 6기 제 1차회의 이종욱 보고.

로 評價되고 있다.

石 炭

(單位: 萬噸)

年 度	生 產 量
1946	127
1949	400.5
1953	70.8
1956	390.8
1960	1,062
1963	1,404.3 ⁽¹⁾
1968	2,300 ⁽²⁾
1970	2,750 ⁽³⁾
1975	4,950 ⁽⁴⁾
1977	5,000 ⁽⁵⁾
1979	6,000 ⁽⁶⁾
1984	7,000~8,000(目標值)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1964) p. 320.

(2) 조선중앙년감(1969) p. 221.

(3) 조선중앙년감(1971) p. 3.

(4) 조선중앙년감(1976) p. 322.

(5) 조선중앙년감(1978) p. 281.

(6) 1980. 10. 第6次 당대회 金日成보고.

冶金工業

鐵鋼工業에서 代表的인 工場으로는 松林에 있는 黃海製鐵聯合企業所, 平南道の 降仙제강연합기업소, 淸津市の 金策제철소, 淸津제강소, 金策市の 城津제강소가 있다.

1969년에는 <4.13제철소>가 신설되었으나, 6 個年計劃 期間에는 既存施設에 대한 技術改善과 시설 확장에 注力하였다.

2次 7 個年計劃 期間에는 소련의 원조로 金策製鐵所의 대규모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기존의 제철·제강 시설에 대한 自動化·半自動化·産業텔레비전화 및 원격조종화 등 생산시설의 現代化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입용 코크스炭을 代替할 수 있는 燃料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시설 改修作業도 併行하고 있다.

김책제철소는 대형 용광로와 冷間壓延職場 등 240萬톤^㉔ 能力의 시설확장을 目標로 하여 왔으나 그 능력이 140萬톤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1983年 8月 金日成의 現地指導가 있는 후부터는 600萬톤 규모로 擴張할 것을 目標로 제시하고 있다.

製鍊施設로서는 動亂 중에 파괴되었던 南浦·興南·文坪 제련소가 1960年代에 들어와서 복구되었다.

2차 7개년 계획기간 중 端川地區에 새로운 大規模의 製鍊所와 北倉에 2萬屯能力의 알미늄 工場이 건설 중에 있다.

鐵 鋼 生 產

(單位：千噸)

年 度	鋼	鐵	銑 鐵 · 粒 鐵
1946		5	3
1949		144	166
1953		4	—
1956		190	231
1960		641	853
1961		775	931
1963(1)		1,022	1,159
1970		2,200(2)	1,894~2,056(5)
1975		3,300(3)	3,220~3,496(5)
1976		4,000(4)	—
1984(목표치)		7,400~8,000	6,400~7,000

出處：〈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1964) p. 320.

(2) 조선중앙년감(1971) p. 239.

(3) 조선중앙년감(1976) p. 322.

(4) 1977. 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회의 보고(생산 능력).

(5) 6개년계획 目標과 實績 遂行率(1975. 9 중앙통계국 발표)에 依據 推計.

※ 國土統一院推計：1982年 現在 鋼鐵 400萬噸.

機械工業

주요한 機械工場으로서는 熙川工作機械·熙川精密機械·龍城機械·龜城鑛山機械·北中機械·樂元機械·羅南炭鑛機械·大安電機·平壤電機·朱乙電機·金鍾泰電氣機關車·勝利自動車·金星트

㉔ 1979년 8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조·소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조인된 것임. 모스크바 방송(1979. 10. 9).

트랙터工場 등 各種 機械工場들과 淸津·元山·金策·南浦·新義州 등의 造船所가 있다.

第2次 7年計劃 期間中에는 소련의 원조로 大型플랜트生産 工場인 <大安重機械工場>을 新設한 것 이외에는 기존시설의 生産 能力을 提高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으며 主要生産 目標로서는 年 간 工作機械 5萬臺·트랙터 4萬5千臺 생산과 10萬噸급·船舶 建造를 내세우고 있다.

機械工業生産

區分 年度	工作機械	트랙터 (15馬力換算)	自動車
1960	3,951	3,002	3,111
1963(1)	—	3,033	4,022
1970(2)	12,500	17,100	10,000(目標值)
1973(2)	30,000	21,210	24,000(目標值)
1977(3)	30,000	30,000	—
1984(目標值)	50,000	45,000	—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1964) p.320.

그중 1950년의 공작기계 생산량은 7개년 계획 목표치를 逆算.

(2) 6개년계획 목표치와 실적의 수행율에 의거 계산.

(3) 1977.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회의 보고.

化學工業

化學工業의 특징은 석탄계열의 기초화학공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 점차 石油化學系列로의 전환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化學工場으로는 本宮化學, 阿吾地化學, 淸水化學, 明洞化學이 있고 最近에 가동되기 시작한 石油化學 계열의 工場으로는 勝利化學, 烽火化學, 그리고 青年化學이 있다.

肥料생산은 '70年代 초기까지는 주로 興南肥料 工場에 依存해 왔으나 1976年 青年化學工場의 新設로 生産能力이 物量基準으로 300萬噸, 性分含量으로는 71萬噸으로 높아졌으나 磷肥料의 生産 比重이 높다.

화학섬유 및 합성수지 등은 함흥의 2.8비날론 聯合企業所, 新義州의 화학섬유공장, 청진의 화학섬유공장과 1981년에 신설된 함흥모빌론 공장 등에서 年間 약 10萬噸을 生産하고 있다.

農藥·染料·가성소다·카바이트 등은 本宮化學을 비롯한 기초 화학 공장에서 生産하고 있으며, 順川製藥·平壤製藥·咸興製藥·나남製藥 등에서는 기초 의약품을 生産하고 있다.

肥 料 生 産 (單位: 千噸)

年 度	生 産 量
1946	156
1949	401
1956	195
1960	561
1963	853(1)
1970	1,500(2)
1975	3,000(3)
1978	3,690(4)
1984	5,000(目標值)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1964) p. 320.

(2) 조선중앙년감(1971) p. 232.

(3) 1977. 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 회의 보고.

(4) 평양방송(1979. 2. 22.)

※ 1978년의 생산량 수치는 중량 톤이므로 이를 성분톤(물동량 기준 1/5)으로 환산하면 77.8만톤에 불과함.

電力工業

發電施設은 解放前에 建設된 鴨綠江 中流의 水豊發展所를 비롯하여 長津江·赴戰江·虛川江·富寧·金剛山 發電所 등이 있었는데, 이들 發電所들은 動亂中에 一部 破壞되었으나 휴전 후에 다시 복구되었다.

5 個年計劃 期間인 1959년에 禿魯江發電所가 建設되었으며, 7 個年計劃 期間에는 天摩·內中里·江界 및 雲峰發電所 등의 水力發電所와 平壤火力 發電所가 建設되었다.

6 個年計劃 期間에는 西頭水·熙川 第 1 號 水力發電所 및 北倉,

部門別現況

雄基·南興(淸川江)에 各各 火力發電所를 새로 建設하였다.

第2次 7個年計劃의 6次年度인 1983年 現在 大同江水力 發電所를 完工하였고 涓原水力, 熙川水力 등의 水力發電所와 淸津火力, 金策火力, 咸興火力 등의 火力發電所를 建設 중에 있다.

1982年末 現在 發電施設容量은 521萬 kW에 달하며 水力和 火力의 發電量比率은 종래의 水力優位로부터 벗어나 5: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㉔

계절에 따라 심하게 변하는 降水量의 差異로 因해 발전량의 변동이 심하여 이것이 産業의 生産불균형 현상을 크게 나타나게 했다. 이러한 현상을 없애고 동시에 북한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底熱炭을 쓸 수 있는 底熱炭用 火力發電所를 건립하여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廢熱과 餘熱을 生産공장이나 주택난방용으로 사용할 필요에서 水力발전소보다 火力발전소의 建設을 서둘렀

電力生産(發電量) (單位: 百萬kW/H)

年 度	發 電 量
1946	3,934
1949	5,924
1953	1,017
1956	5,100
1960	9,139
1963	11,766(1)
1970	16,500(2)
1975	28,600(3)
1978	31,460(4)
1984	56,000~60,000(目標值)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1964) p.32.

(2) 조선중앙년감(1971) p.3.

(3) " (1976) p.323.

(4) 1979年 김일성 신년사.

※ 1978년 發電量을 314억kW/H로 발표하고 있으나 발전시설 용량506만 kW(수력 54%, 화력 46%)에 평균 최대 설비이용율을 계산하여도年間 發電量이 307억kW/H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임.

㉔ 로동신문(1977. 12. 17).

던 것이다.

建材工業

主要 시멘트工場으로는 2.8마동·부례산·勝湖里·球場·海州·川內里·고무산 시멘트工場 등을 들 수 있다. 6個年計劃 期間에는 기존 공장들의 施設을 擴張하고 生産能力을 높이는 한편, 300萬噸 能力의 順川시멘트 工場을 새로 가동시켰다.

板유리 生産공장으로는 南浦板유리 工場과 利原板유리 工場이 있는데 第2次 7個年計劃 期間에 南浦板유리 工場의 生産能力提高를 위해 壓延유리 職場이 增設되었다.

1982年末 現在 北韓의 시멘트 生産量은 年 870萬톤이고 板유리 生産은 年 1,000萬m²로 推定되고 있다.

시멘트 (單位:千톤)

年 度	生 産 量
1946	103
1949	537
1953	27
1956	597
1960	2,285
1963	2,526(1)
1970	4,000(2)
1975	6,830(3)
1977	8,000이상(4)
1978	10,560(5)
1984	12,000~13,000(目標值)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1964) p.320.

(2) 조선중앙년감(1971) p.233.

(3) 6개년 계획의 목표와 실적의 수행율로 계산.

(4) 1977.12.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 보고.

(5) 1979.2.22 평양방송 보도인 前年比 增加率 123%에 의거 계산.

紡織工業

代表的인 紡織工場으로는 平壤綜合紡織·惠山亞麻紡織·新義州·龜城·開城 紡織工場들이 있다.

部門別現況

7 個年計劃 中에는 威興毛紡織 工場을 비롯한 새로운 工場이 건설되어 毛織物·亞麻織物까지 生産할 수 있게 되었으며, 各地 方에서 編織物 工場들이 新設되었다.

6 個年計劃 期間에는 9 月紡織工場과 沙里院방직공장이 새로 建設되었고, 平壤綜合紡織工場에 化學섬유방직 설비가 增設되었다.

2 次 7 個年計劃 期間에는 기존설비를 現代化·高速化하여 生産能力을 提高시킬 것과, 아닐론 방직공장의 建設과 피복공장들의 近代化를 계획하고 있다.

1982年末 現在 6 億m의 織物을 生産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織 物 (單位: 千m)

年 度	生 產 量
1946	2,691
1949	12,842
1953	21,623
1956	77,080
1960	189,659
1963	227,187(1)
1970	400,000(2)
1976	580,000(3)
1977	600,000이상(4)
1984	800,000(目標值)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년 이전은 조선중앙년감(1964), p. 320.

(2) 조선중앙년감(1971) p. 234.

(3)(4) 1977. 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회의 보고.

※ 직물생산 실적발표는 그 단위가 넓이(m²)가 아니라 길이(m)이며, 폭을 발표치 않기 때문에 확실한 직물 생산실적을 알 수가 없다.

輸 送 · 通 信

輸 送

輸送部門은 90% 以上을 日帝時 建設된 鐵道輸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鐵道網 擴張에 注力해 왔다.

1960年代는 平壤~淸津, 平壤~新義州 간을 비롯한 850km의 電鐵化를 추진시켜 基本幹線이 電鐵化되었고, 淸津~羅津, 平山~伊川間 등 300餘km 區間의 철도를 새로 부설했다.

6 個年計劃 期間에는 淸津~茂山, 淸津~羅津, 平壤~麻洞間 380km 를 電鐵化했으며, 伊川~洗浦間 鐵道가 新設되어 東西間의 直通線이 平壤~高原間 外에 또 하나 생긴 셈이 된다.

그밖에 南新義州~덕현間, 은파~철광間, 용천~다사도間 등 總 471km의 鐵道가 새로 건설되고, 海州~은빛間, 信川~長淵間의 狹軌를 廣軌로 改造했다.

2次 7 個年計劃 期間에는 1,600km를 電鐵化^㉔하고, 現在 江界~惠山~茂山間의 鐵道建設을 推進하고 있다.

1982年末 現在 北韓의 鐵道總延長은 4,380km이고 이중 電鐵化區間은 2,600km로서 鐵道總延長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道路의 總延長은 20,775km로서 대부분이 포장되지 않은 道路인데, 完全 포장된 高速化道路 및 幹線道路는 971km에 不過하나 南浦~平壤, 平壤~元山 간의 고속도로가 1979년에 開通됨으로써 高速道路 총연장은 240km에 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東西間의 輸送難은 어느 程度 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金日성이 '75~79年 新년사에서 계속 輸送難 打開를 강조한 것을^㉕ 보면 地形·地勢로 인한 北韓의 輸送隘路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海運部門은 1970年 以後 대형 貨物선의 建造로 인해 多少 向上되어 貨物 輸送량이 1970年 對比 1.7倍로 增加되었다.

그러나, 港灣施設의 未備와 船舶의 不足으로 輸送 全般에서 海運의 比重은 極히 적은 實情이다. 1982年末 現在 항만능력은 300萬톤에 불과하다.

輸送手段에서 特異한 것은 <三化輸送>^㉖으로서 이중 가장 큰

㉔ 5次黨大會報告.

㉕ 각 연도별 로동신문(1.1.)

㉖ 三化輸送은 官, 벨트 콤파어, 삭도를 이용하는 수송.

主要 鐵道網 現況

鐵 路 名	區 間	延長(km)	驛數	備 考
平 釜 線	平壤—開城	199.3	23	평양—마동간 電鐵化
平 義 線	平壤—新義州	224	31	1964년 電鐵化完工
平 羅 線	平壤—羅津	819	113	1972년 全區間 電鐵化
滿 浦 線	順川—滿浦	299	38	순천—고안간 電鐵化
平 德 線	平壤—長上	165.1	29	1979년 全區間 電鐵化
平 北 線	定州—清水	120	12	
平 南 線	平壤—南浦	55.2	10	전철화 공사중
平 安 線	南浦—溫泉	34.7	10	
黃海青年線	沙里院—장방	97.7	14	
銀 波 線	鐵波—長淵	79.8	16	1973년 廣軌化
白 川 線	海州—은빛	64.4	15	1971년 廣軌化 완공
青年伊川線	平山—洗浦	163	15	1972년 全區額 완공
江 原 線	高原—平康	142.6	24	
端 豐 線	端川—洪君	80.3	11	
咸 南 線	여해진—檢德	63.5	13	全區間 電鐵化
白頭山青年線	吉州—惠山	141.7	20	全區間 電鐵化
咸 北 線	輸城—羅津	316.1	46	
茂 山 線	古茂山—茂山	57.9	11	청진·무산간 電鐵化
白 茂 線	白岩—茂山	191.7	29	狹 軌
新 興 線	咸興—赴戰	91.7	21	"
長 津 線	五老—泗水	58.5	13	"
江 界 線	江界—狼林	57.0	12	
鐵 嶺 線	水橋—西海里	59	10	1973.9 완공
多 獅 島 線	龍川—多獅島	23.1	5	
德 峴 線	南新義州—德峴	48.9	4	1971.4 완공
雲 峰 線	滿浦—雲峰	42	6	1959년 신설
鹽 州 線	南新義州—鹽州	28.7	4	
高原炭鍾線	屯田—장동	19.6	3	1968年 電鐵化
三 池 淵 線	普天—이명수	56.2	10	狹軌, 1958년 신설
白頭林鐵線	渭淵—大坪	90.8	10	狹軌, 1958以前 新設
价 川 線	新安州—价川	29.5	4	
八 院 線	龜城—八院	63.7	8	
甕 津 線	海州—웅진	40.4	10	
殷 山 線	殷山—무진터	41	6	
釜 浦 線	웅진—釜浦	30	5	1976년 廣軌化
龍 岡 線	龍岡—麻永	17	4	
松 林 線	黃州—松林	18.1	2	

鐵 路 名	區 間	延長(km)	驛數	備 考
大 安 線	江西—大安	12	1	
博 川 線	孟中里—博川	9.3	2	1974년 신설
北 青 線	新北青—德城	19.4	4	
康 德 線	康德—輸城	15.2	4	휴전후 신설
會寧炭鍾線	會寧—遊仙	11.7	4	
洪 儀 線	洪儀—豆滿江	9.5	1	1963년 신설
灰 岩 線	阿吾地—梧鳳	10.4	3	
古 乾 原 線	新乾—古乾原	10	1	

註：北韓에서 사용하는 鐵路名 · 區間 適用

主要 道路網 現況

路 線		主要經由地	延長(km)	路幅(m)	備 考
幹	平 壤~元 山	平山 沙里院	172	15	高速道路
	開 城~新義州	平壤 安州	402.3	4.9~7.3	排水良好
	高 城~隱 城	元山 咸興	867.2	2.7~7.3	清价 以北 傾斜 甚함
	平 壤~元 山	北青 清津 會寧	196.4	3.7~4.9	勾配 및 커브 甚함
線	安 州~滿 浦	津川 陽德	291.3	3.7~4.9	球場以內勾配 커브 甚함
	沙里院~海 州	成川 熙川	約 72.5	5.2~7.6	大體로平坦함
	新義州~古茂山	江界 楚山	861.0	2.7~6.1	大部分 勾配 커브 甚함
1 級	定 州~朔 州	龜城	99.8	4.6~6.1	勾配 甚함
	元 山~休戰線	高山 金化	143.2	4.6~5.5	勾配 甚함
	清 津~元汀里	羅津	112.7	4.6~7.3	
	平 壤~南 浦	江西			高速道路
	平 壤~原平里	順川 孟山	241.5	3.7~7.3	大體로 勾配 甚함
	順 川~義 州	价川 龜城	約 193.8		
	金 川~休戰線	伊川 平康	149.7	3.7~6.1	勾配 甚함
	開 城~海 州	白川 延安	約 88.4	6.1	平坦함
	平 壤~兔 山	延山 新溪	141.6	3.1~5.5	一部勾配甚함
	平 山~陽 德	新溪 谷山	144.8	2.7~4.9	勾配 甚함
北 青~惠 山	豐山 甲山	186.4	2.7~4.9	勾配 甚함	
載 寧~猪島里	安岳	46.6	5.5~7.6	平坦함	
熙 川~陽 德	寧遠 孟山	約 58.0			

部門別現況

比重을 가진 索道(케이블카)는 52個 炭·鑛山에 280km가 設置되어 있고, 管輸送(pipe-line)은 淸津~茂山間 精鑛 輸送管, 新義州~博川에 이르는 送油管 등 218km이며, 벨트콤베아 施設은 은울광산·점덕광산 등에 約 20km가 設置되었다.

2次 7個年計劃 期間에는 茂山~淸津 사이에 精鑛 輸送管 第2段階 工事와 나프샤 수송관 공사를 비롯한 새 수송관 建設을 推進하고 있다.

通 信

7個年 計劃期間에 各里 單位까지 電話 架設을 끝냈으며, 全地域의 有線放送化를 實現했다.

6個年 期間에는 電話路線의 延長과 市內 電話回線의 增大 및 無線放送 出力을 倍로 擴大시켰다.

1971~1976년 기간에 全國의 텔레비전化를 꾀하였다.

第2次 7個年계획 기간에는 電信, 電話施設 등의 增大와 現代化에 주력하고 있다.

1982年末 현재 電話加入者數는 평양의 경우 1萬회선이 架設·運營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貿易·對外協力

貿 易

北韓의 貿易은 무역부 산하의 國營商社와 그 밖에 協同貿易商社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實質的으로는 長期 通商協定에 의해 約定된 貿易議定書를 기초로 한 國營貿易이 中心이 되고 있다.

貿易政策의 특징은 國家計劃委員會의 事前計劃에 기초하여 相對國과의 協商을 통해 品目別 쿼터를 査定하는 雙務的 性格이 강하다는 점이다.

年度別 무역 추세를 보면, 해방 이후 現在까지 大部分 貿易 赤

字를 보여 왔다. 대체적으로 1960年代까지의 貿易 赤字幅 比重은 10% 内外였으며, 1970年代에는 20~30%로 그 比重이 늘어났다.

1960年代의 輸出 增加率は 8.5%, 輸入 增加率は 21.9%를 보이고 있으며, 1970年代에 들어와서도 계속 輸入 增加率が 높으나 1975년부터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次 7個年計劃이 시작되는 1978년부터 다시 上昇勢를 보이고 있으며 貿易 赤字幅도 증대하고 있는데, 赤字幅이 가장 큰 時期는 南北對話 以後 1974年度이고, 그 후 外債 事情의 惡化로 무역규모가 줄어들다가 1978年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다.

對外貿易收支推移

(單位: 1,000弗)

年 度	貿易總額	輸 出 額	輸 入 額	貿易收支
1971	866,011	301,933	564,078	-262,145
1972	1,038,650	398,950	639,700	-240,750
1973	1,340,400	497,700	842,700	-345,000
1974	1,980,300	677,200	1,303,100	-625,900
1975	1,906,638	813,957	1,092,681	-278,724
1976	1,486,900	658,100	828,800	-170,700
1977	1,530,000	680,000	650,000	-30,000
1978	2,080,000	1,020,000	1,060,000	-40,000
1979	2,790,000	1,360,000	1,430,000	-70,000
1980	3,300,000	1,470,000	1,830,000	-360,000
1981	2,870,000	1,260,000	1,610,000	-350,000
1982	3,300,000	1,500,000	1,800,000	-300,000

出處: 國土統一院綜合推計值

地域別 貿易構造를 보면, 1963년까지는 共產圈의 貿易 比重이 總貿易量의 90% 以上을 차지하였으나, 1965년에는 88.9%로 1969년에는 72.7%로 하락하였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地域別 構造 變化가 일어나 對西方圈 貿易增加率が 上昇 추세를 보였으며, 1974년에는 53.6%로 共產圈 貿易比重을 앞섰다. 그러나, 1975년부터는 다시 對共產圈 무역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部門別現況

北韓 무역에서 소련의 比重은 매우 높아서 1980年度の 對蘇 輸入額은 4億 5千 310萬弗이며, 輸出額은 4億 3千 730萬弗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70年度 以後의 對蘇貿易에서 黑字를 보인 것은 1978年과 1979年の 2個年度에 불과한 데 이것은 對蘇負債의 償還問題와 關聯하여 소련측이 輸入을 늘려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① 日本과는 1974年 全體輸出入의 약 22%를 차지했으며, 점차 늘어나 1976년에는 對先進國 수출의 47.8%를 점하였다.

1980年度の 對日 수입액은 3億 7,430萬弗, 수출액은 1億 8,000萬弗에 이르러 貿易規模가 크게 增大되고 있는데, 이는 對日負債의 尙殘問題와 關聯하여 日本측이 수입을 늘리고 北韓은 2次 7個年計劃 수행에 必要한 기술, 장비 도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②

對共產圈中 東歐貿易은 1956년에 처음 交易이 이루어진 對東獨貿易이 가장 比重이 높고, 기타 國家들과는 큰 기복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서방권과의 무역은 계속 赤字인 가운데서 수입량은 증가 추

地域別 貿易構造

(單位: 100萬弗)

年 度	合 計	共 產 圈	比率(%)	自 由 國	比率(%)
1971	866	734	84.8	132	15.2
1972	1,039	796	76.6	243	23.4
1973	1,340	820	61.2	521	38.8
1974	1,980	918	46.4	1,062	53.6
1975	1,907	1,032	54.1	875	45.9
1976	1,487	984	66.2	503	33.8
1977	1,407	886	63.0	512	37.0
1978	1,951	1,167	59.8	784	40.2
1979	2,585	1,500	58.0	1,085	42.0
1980	3,179	1,683	52.9	1,496	47.1

出處: 國土統一院 綜合推計值.

① 소련 무역성 계획 경제국 <소련의 대외무역>誌.

② 일본 대장성 통관 통계.

北韓・소련貿易 現況

(單位：1,000弗)

年 度	貿易總額	輸 出 額	輸 入 額	貿易收支
1971	502,600	135,800	366,800	-231,000
1972	458,400	154,900	303,500	-148,600
1973	480,600	179,300	301,300	-122,000
1974	453,600	196,800	256,800	-60,000
1975	468,500	209,700	258,800	-59,100
1976	400,700	158,300	242,400	-84,100
1977	446,000	223,000	224,000	-1,000
1978	552,700	294,700	258,000	+36,700
1979	749,800	390,900	358,900	+32,000
1980	890,400	437,300	443,100	-5,800

出處：1971~'78：소련의 <對外貿易>誌 各月報。
1979~'80：日本の <코리아評論> 82.1月號。

北韓・日本貿易 現況

(單位：1,000弗)

年 度	貿易總額	輸 出 額	輸 入 額	貿易收支
1971	59,000	30,000	29,000	+1,000
1972	131,000	38,000	93,000	-55,000
1973	172,000	72,000	100,000	-28,000
1974	361,000	109,000	252,000	-143,000
1975	246,000	65,000	181,000	-116,000
1976	168,000	72,000	96,000	-24,000
1977	192,000	67,000	125,000	-58,000
1978	290,000	107,000	183,000	-76,000
1979	436,000	152,000	284,000	-132,000
1980	554,000	180,000	774,000	-194,000

出處：1971~'78：通關通覽 <韓國・北朝鮮要覽> 1978, 世界政經調查會編 p. 500.
1979~'80：國土統一院 綜合推計值。

세를 보여 왔다. EEC 國家中 서독과의 거래가 늘고 있다. 開發
途上國의 경우는 對香港 수출이 높고, 對말레이시아·필리핀 수
출이 늘고 있다.

北韓의 수출품은 철광석·비철금속 등 주로 一次產品이었으나,
1960년에 들어와 수출 시장의 多邊化를 모색하면서, 半製品 수출
을 증가시키는 한편, 重化學工業이나 軍需工業에 필요한 資材導

入에 주력하였다.

1970年代에 와서는 기계, 플랜트 등 資本財를 대대적으로 수입하였는데 西方圈 先進諸國을 資本財 輸入市場으로 하면서 半製品에서 完製品 수출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출주종품은 鉛·亞鉛·마크네샤크랑크 등의 鑛物과 農水産物(쌀) 등 주로 1次 産品이고 輸入의 主種은 機械類·플랜트類 등의 完製品이다.

구체적으로地域別 輸出入 商品 構造를 보면, 對아시아·中近東·아프리카에는 기계류·금속 제품·농기구·섬유제품 등 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원료·곡물·생고무·목재 등을 수입하고 있다.

對소련의 수출품에는 압연 강재·합금·크랭카·미곡 등 原資材와 中間材가 70% 이상이며, 수입품에는 原油·석유제품. 기계류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對東歐貿易을 보면 철강·기계·공구 등의 半製品을 수출하고, 精密機器와 특수기계·베어링 등을 수입하고 있다.

日本 등 西方圈과는 工業 原料·半製品·農産物을 수출하고 기계·플랜트 등 資本財를 수입하고 있다.

受援·借款

解放 이후 소련·中共·東歐에서 無償援助 16億 8,752萬弗과 有償援助 13億 1,448萬弗 도합 30億 3,700萬弗의 원조를 받았는데 소련이 50.5%, 중공이 31.8%를 부담하였다.

시기별로는 1950年~1960年 기간에 總援助額의 40%가 집중되었으며, 有償 援助 중 91%가 償還이 면제되었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 COMECON^㉔의 對西方圈 貿易赤字는 더욱 커지게 되었고^㉕ 이로 인해 對北韓援助가 中斷되자 北韓은 외화 조달의 多邊化를 시도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㉔ 소련·동독·폴란드·불가리아·헝가리·루마니아·체코 등 7개국.

㉕ 1976 년말 COMECON의 對西方圈 무역 적자는 450억불이며, 그중 소련이 200억불에 달함. Le Nouvel Economiste, (1977. fév., 28 Paris) p.36.

供與國別 受授現況(1945—1976)

(單位：萬弗)

國 家 別	金 額	比 率(%)
소 련	153,473	50.5
중 공	96,700	31.8
기타공산국가	53,527	17.7
總 計	303,700	100.0

出處：國土統一院 綜合推計值.

借款導入現況

(單位：萬弗)

年 度	소 련(%)	OECD(%)	計(%)
1970	8,700(96.6)	300 (3.4)	9,000(100)
1971	25,000(93.6)	1,700 (6.4)	26,700(100)
1972	15,000(42.3)	20,400(57.7)	35,400(100)
1973	10,900(22.5)	37,500(77.5)	48,400(100)
1974	12,000(23.0)	40,000(77.0)	52,000(100)
1975	18,600(43.3)	24,300(56.7)	42,9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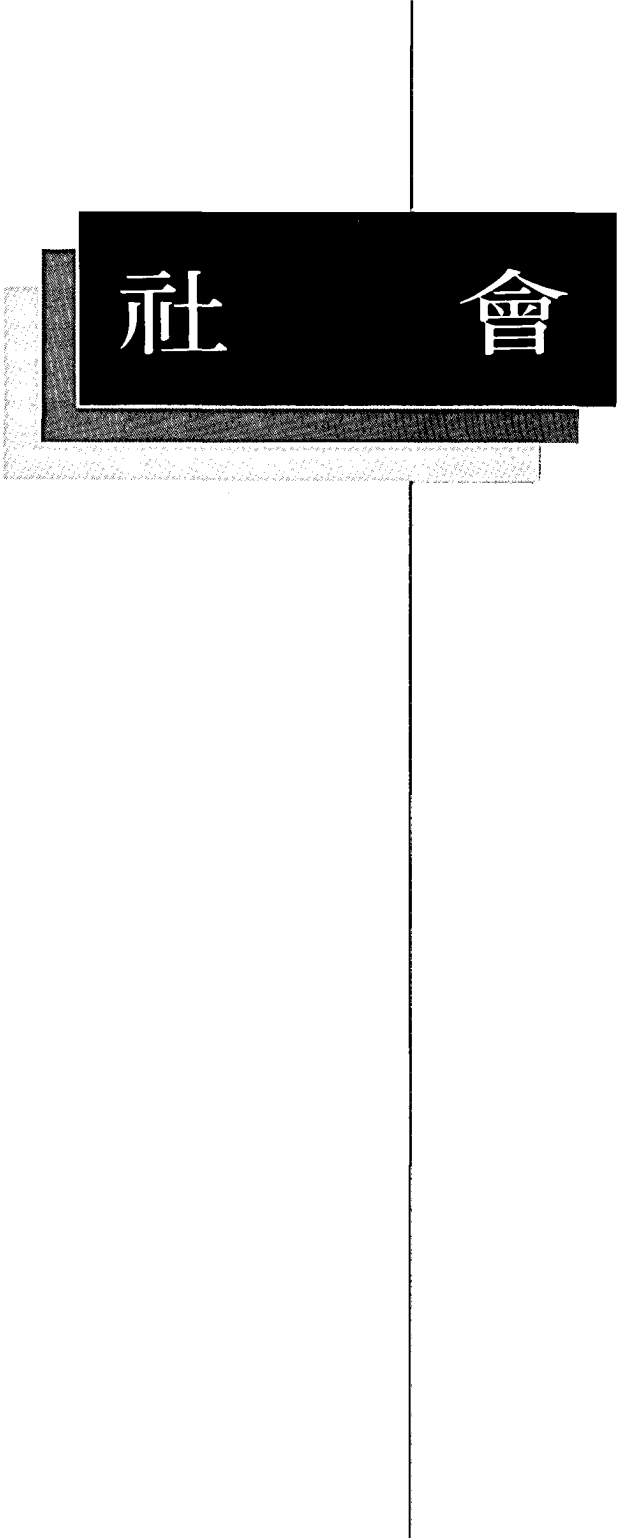
出處：韓國研究機關 資料.

※ 1971~1975(5年間) 總計 21億 4,400萬弗 借款導入(소련에서 9億 200萬弗, OECD에서 12億 4,200萬弗).

그리하여 소련에 치우쳤던 종래의 對外 經濟協力은 1972年부터 OECD 諸國으로부터 借款을 대거 도입하기 시작하게 되어 점차 OECD,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한편, 北韓은 1970年代에 들어와서 資本, 設備財의 과도한 도입과 수출의 부진이 겹치게 되어, 무역 규모에 비해 債務額이 커지게 되었으며 延滯額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西方諸國으로부터의 자본도입이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⑤

⑤ 1978.2. 현재 債務額은 21億 7,000만弗(소련 9億弗을 제외한 대부분은 서방권), 延滯額은 5억 1,480萬弗(韓國研究機關 資料).



社 會

人 口

人口政策

解放後부터 6.25에 이르는 期間에는 北韓地域의 住民들이 대거 南下하였고, 戰爭으로 인한 人的 損失이 컸으므로 人口의 많은 減少現象을 가져 왔다.

그러므로 休戰後부터는 人口增加를 위한 社會政策을 강력히 推進해 왔다. 그 例로서 出產補助金 支給, 雙兒出產의 경우 특별 상여금 지급, 產前·產後의 휴가제 실시, 母性에 대한 勞動時間의 短縮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勞動力 確保를 目的으로 1959年末부터는 在日同胞를 北送하기 시작했고, 在滿同胞에게도 귀환을 중용했다.①

그러다가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產兒制限 政策으로 轉換하면서 한편으로 유아 사망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건강 관리에 따른 平均壽命을 높이는 데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②

人口 이동에 있어서는 農村의 기계화가 추진되고, 産業施設이 擴張됨에 따라 相對的으로 農村人口는 감소되는 반면에 都市 및 勞動者의 人口가 漸次的으로 增加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勞動力 配置가 中央으로부터의 一元化된 體系에 의해 計劃的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自然發生的인 社會的 移動은 있을 수 없다.

① 1959~82년까지 86차례 걸친 北送인원은 총 93,310名.

② 북한은 1981年 現在の 平均壽命을 74歲나 된다고 믿을 수 없는 발표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 (1982), p.246.

人口現況

北韓發表 人口統計

年 度	總 人 口	增加率(%)	性別構成(%)	
			男	女
1946年末	9,257,000	—	50	50
1949年末	9,622,000	2.25	49.7	50.3
1953. 12. 1	8,491,000	0.7	46.9	53.1
1956. 9. 1	9,359,000	1.34	47.8	52.2
1959. 12. 1	10,392,000	2.73	48.3	51.7
1960年末	10,789,000	2.8	48.4	51.6
1963. 10. 31(1)	11,568,000	2.99	48.7	51.3
1967(2)	1,040만			
1968(3)	1,076만			
1970(4)	1,380~90만			
1974(5)	1,680만			
1975(6)	1,640만			
1978(7)	1,720만以下			
1979(8)	1,720만以下			

出處：(1) 이상은 조선중앙년감(1964년판) p.316.

(2) 조선중앙년감(1968년판) p.180.

“總人口의 1/4인 260萬名이 공부……”에 의거 逆算.

(3) 조선중앙년감(1969년판). p.226.

總人口의 1/4인 269萬名이 공부……”에 의거 逆算.

(4) 로동신문(1970.11.3), 5차 당대회 보고중 工產品 增 생산량에 대한 1인당 생산량 발표에 의거 逆算.

(5) 조선중앙년감(1975년판) p.337.

“總人口의 1/3인 560萬名이 全般的 11年制 義務教育에……”에 의거 逆算.

(6)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186. 金日成의 日本 毎日新聞과의 인터뷰중 “인구의 절반 이상인 820만명이 공부……”에 의거 逆算.

(7) 로동신문(1978.9.10), 北韓政權樹立 30周年記念 金日成報告中 “總人口의 절반이 넘는 860萬名이 공부……”에 의거 逆算.

(8) 로동신문(1979.9.9), 北韓政權樹立 31周年記念 朴成哲 報告中 “人口의 절반이 넘는 860여만명이 공부……”에 의거 逆算.

北韓總人口 推計

年 度	總 人 口	年 度	總 人 口
1964	12,020,000	1972	14,693,995
1965	12,252,000	1973	15,052,546

1966	12,583,590	1974	15,419,869
1967	12,924,175	1975	15,796,185
1968	13,273,999	1976	16,158,149
1969	13,633,311	1977	16,528,422
1970	14,002,369	1978	16,907,196
1971	14,344,007	1979	17,294,661
1980	17,691,092	1981	18,081,952
1982	18,489,640		

出處：前後年度間의 人口增加率에 依據 算出한 國土統一院 推計值.

性別, 年度別 人口推計(1982年)

年 齡	男	女
0~4	1,256,434	1,203,607
5~9	1,168,418	1,123,870
10~14	1,118,313	1,078,527
15~19	1,043,230	992,867
20~24	941,565	895,677
25~29	697,039	699,358
30~34	570,429	592,200
35~39	546,961	576,308
40~44	490,217	532,795
45~49	392,076	434,630
50~54	287,004	329,554
55~59	244,122	254,861
60~64	158,918	201,686
65~69	120,069	158,292
70~74	78,686	112,336
75~79	42,017	65,294
80이상	31,317	51,000
總 計	9,186,815	9,302,825

出處：前後年度間의 人口增加率에 依據 算出한 國土統一院 推計值.

住民生活

家 庭

家族制度的變化

北韓의 家族制度는 經濟의 社會主義的 改革과 密接히 結付되어 變化되어 왔는데, 크게 3段階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의 改革은 男女平等의 實際的 實現을 그 中心課題로 삼았으며, 그러기 위해 家庭에서 封建적인 遺習을 청산하고 婚姻과

家族制度的變化過程

첫 段階
1945~1953

家族中心의 經濟活動 維持
封建的 遺習 清算
婚姻과 離婚의 自由保障

둘째 段階
1954~1960

家族中心의 經濟活動으로부터 社會的
經濟活動으로 轉換

세째 段階
1961~現在

社會的 經濟活動 強化
社會主義的 人間 生産
家庭의 革命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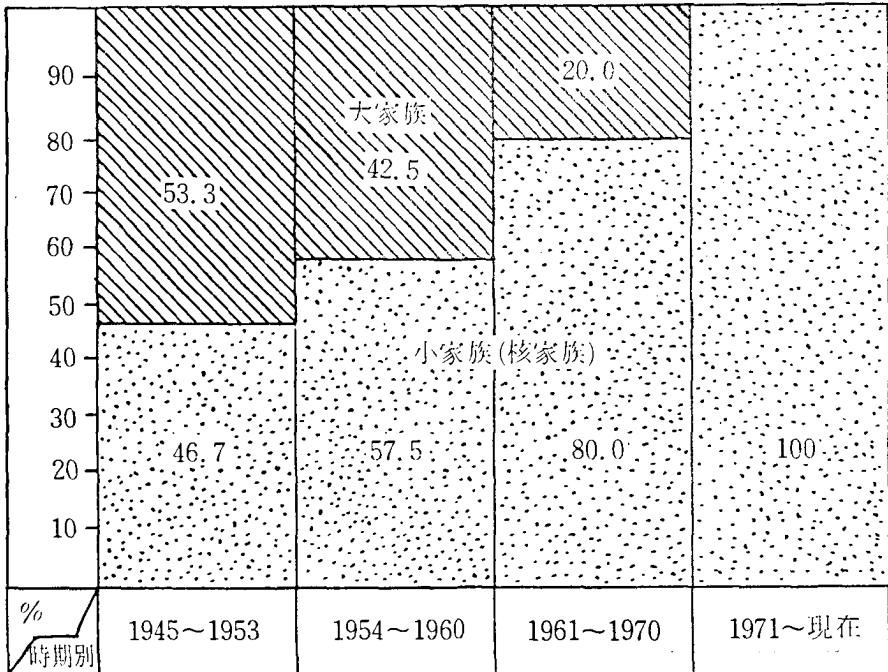
離婚의 자유를 法的으로 보장하는 조치③를 취했다.

둘째 단계에는 農業의 集團化를 비롯한 個人商工業의 抹殺 등 社會主義的 改革으로 인해 家族 中心의 經濟活動이 不可能하게 됨에 따라 家族成員은 자기 個人的으로 社會的 經濟活動에 참가하게 되었다.

세째 단계에는 둘째 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經濟的 生産을 增大시키는 한편, 社會主義的 人間을 만들어내고 家庭을 革命化하는 것이 주된 과제로 등장했다.

家庭의 革命化問題는 1968年 3月 2日 <全國烈士家族 및 榮譽

家族形態의 變化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③ 1946. 7. 30. 복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4호로 <男女 平等에 대한 法令> 발표.

軍人家族大會^④에서 처음으로提起되었으며, 1970年 5次 黨大會에서 다시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家族成員들은 夫婦·兄弟이기에 앞서 <思想的 同志>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⑤

이러한 家族制度的 變化와 더불어 社會主義 工業化가 추진되고 경제의 分業化가 심화됨에 따라 本來의 大家族制度는 점차 小家族化되어 갔다. 1960年代까지는 一部 農村地域에 大家族制의 흔적이 있었는데,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家族中心의 經濟的 基盤과 家父長的 位階秩序의 破壞도 大家族制度의 崩壞를 가져 왔고 여기서 社會構造의 變質과 아울러 새로운 家族概念, 즉 社會主義的 家族概念이 발을 붙이게 되었다.^⑥

女性の地位

北韓의 女性은 男子와 平等하게 政治·經濟·社會活動에 參與하고 있으며, 子女養育 및 家事的 社會責任化로 인해 女性들은 과거와 같은 家庭의 일이나 전통적 義務로부터 점차 解放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社會主義憲法> 第62條에서는 女性에 대한 政策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1970年 11月 黨 5次大會에서는 <女性들을 부엌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決定을 채택한 바 있으며, 그 後,

—食品加工工業의 發展

—家庭用 電子製品의 生産增大와 세탁소 설치^⑦

—탁아소, 유치원시설 擴張과 모든 어린이의 社會的 養育.

④ 로동신문(1968. 3. 2)

⑤ 로동신문(1977. 3. 11)

⑥ 李兌榮, 北韓의 女性에 關한 研究(국토통일원, 1979),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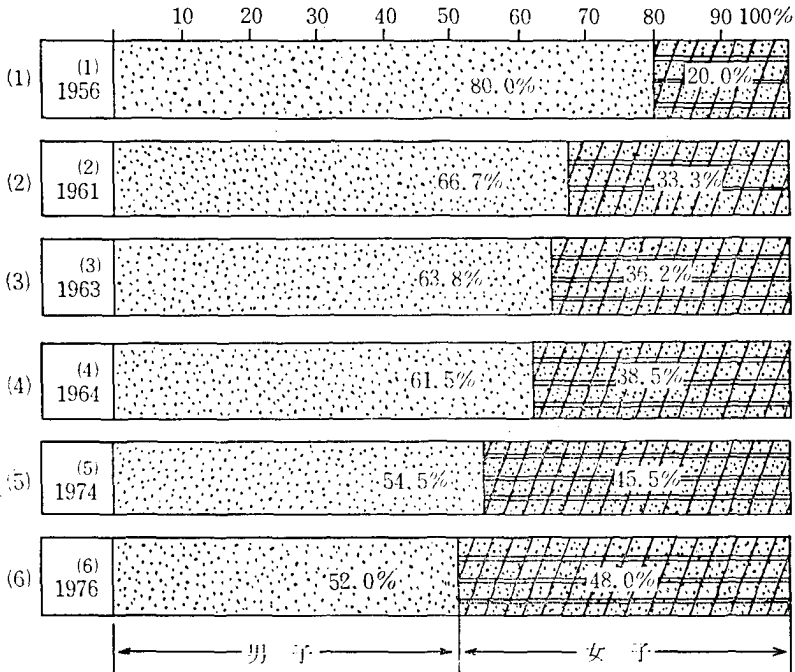
⑦ 平壤市는 1個洞에 1, 2個의 세탁소가 있다고 한다. 로동신문(1979. 10. 14).

—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女性들의 6時間 노동제 實施 등의 措施가 취해짐에 따라 女性들의 직장 진출이 현저하게 增大되었다.

女性들의 職場進出에 대해 女性同盟 委員長인 金聖愛는 1976年 7月 23日 男女平等權法令 發表 30周年記念 報告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법령으로 우리 여성들은 부엌 일과 어린이를 키우는 일에서 해방되어 정치·경제·문화 등 각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지

勞働力の 男女比率



出處 : (1) 조선중앙년감(1961년판) p. 116.

(2) 조선중앙년감(1962년판) p. 264.

(3)~(4) 조선중앙년감(1965년판) p. 164.

(5) 조선중앙년감(1975년판) p.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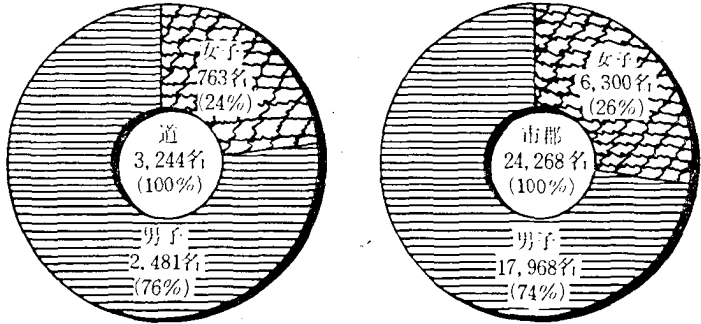
(6) 노동신문(1976. 7. 30).

歷代最高人民會議 女性 代議員 比率

期	代議員總數	女性代議員數	比 率(%)
1(1948)	572	69	12.1
2(1957)	215	27	12.6
3(1962)	383	35	10.9
4(1967)	457	73	16
5(1972)	541	113	20.8
6(1977)	579	120	20.8(1)
7(1982)	615	91	15(2)

出處 : 조선중앙년감에 의거 작성.
 (1) 평양방송(1978.8.18).
 (2) 로동신문(1982.7.2)

地方 人民會議 男女 代議員 比率(1977)



※ 男女平等權 法令發表 30周年記念 報告會에서 김성애는 郡인민회의로부터 최고 인민회의에 이르는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 수의 33%를 여성이 차지한다고 보고, 로동신문(76.7.30).

위를 갖게 됐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 로력 구성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나 된다.

수많은 여성들이 공장 지배인,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등 책임있는 위치에서 일하고 있고, 수백만을 헤아리는 여성들이 공장과 농촌 그리고 과학·교육·보건·문학예술·편의봉사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江原道 元山市의 경우 職業女性이 모두 5만명인데, 이 숫자는 勞動力을 가진 전체 여성의 80%에 해당되며, 그 중 간부급에 있는 여성이 2,700여명이나 된다.⑧

結婚 · 離婚

結婚과 離婚은 처음부터 男女平等權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當事者의 自由意思라는 原則이었으나 한편으로는 結婚의 登錄이 婚姻의 형식적 조건임을 法的으로 규정했다. 婚姻을 國家登錄制로 한 것은 이 등록을 통하여 이른바 <소망스럽지 못한 家族形成>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結婚年齡은 法的으로 女性은 만17歲, 男性은 만 18歲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傳來의 早婚風習이 禁止되었다.⑨ 그러나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婚姻年齡은 法的 下限線보다 훨씬 늦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軍服務年限이 길뿐만 아니라 服務中에는 結婚이 許容되지 않고 있으며, 大學生活에서도 結婚은 거의 不可能한 形便에 있기 때문이다.

女子도 政治的, 經濟的 이유로 시집을 늦게 가도록 장려하고 있다.

“너자들이 한창 배우고 일할 나이에 시집을 가면 학습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 정치 생활에도 적극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⑩

金日成의 이 말은 女子의 婚姻年齡을 늦추어 女性들은 勞動階級化, 革命化하고 女性 勞動力을 確保하자는 뜻인 것이다. 婚姻年齡을 늦추는 또 하나의 理由는 1970年代 初부터 産兒獎勵 政策에서 制限政策으로 轉換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結婚年齡은 大體로 男子는 29歲, 女子는 27歲 以上으로 制限되어 있다.⑪

⑧ 中共新화사통신사대포단 방북기, 로동신문(79.10.14)

⑨ 男女平等權法令 第6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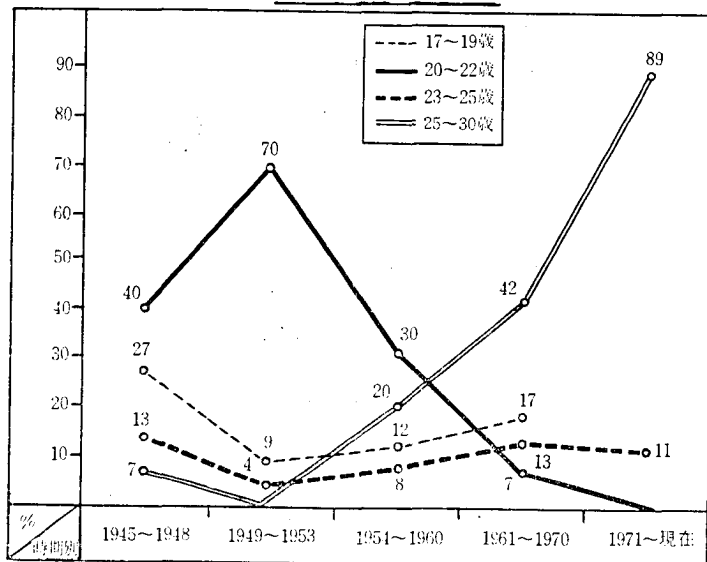
⑩ 김일성 저작선집, 제 6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4), p.14.

⑪ 1979.10.15, 뉴스위크誌 Bernard Krisher 기자 북한 방문기.

“.....女子는 27세까지 결혼하지 못하며 男子는 적어도 29세까지는 결코 결혼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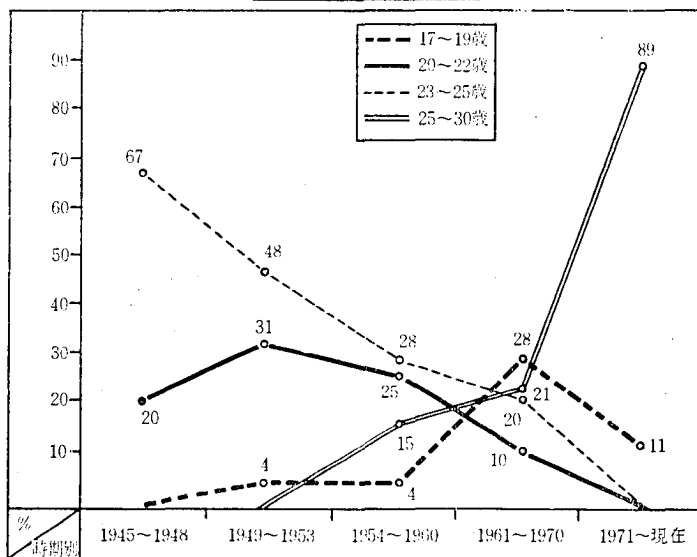
※ 1983.2.19 MiG 19機로 越南歸順한 前北傀軍大尉 이용평(현한국공군소령) 증언에 의하면 여자는 26세 남자는 29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한다.

結婚年齡(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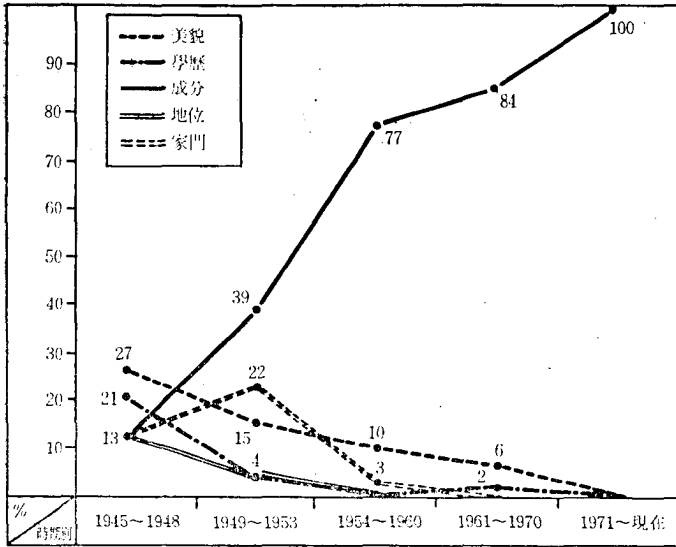
※ 其他は除外

結婚年齡(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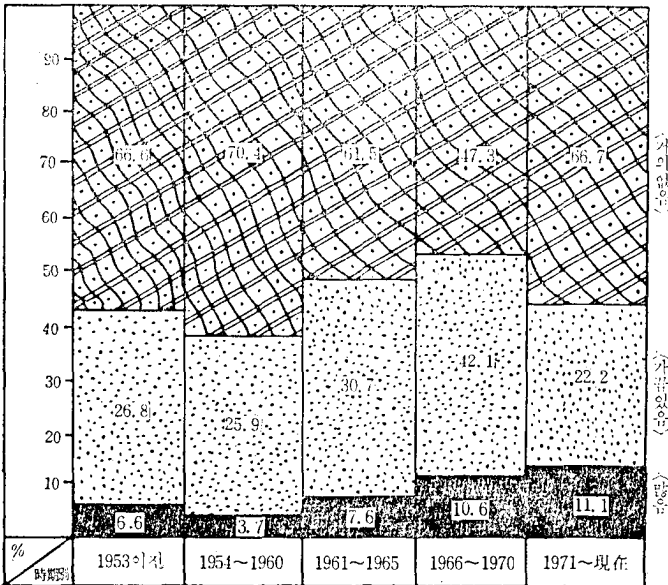
※ 其他は除外

配偶者 選擇條件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離婚率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結婚條件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당성과 계급성(成分)이다.

배우자 선택에서 〈成分〉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결혼〉에 대해 당과 조직에서 깊이 干與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黨과 組織의 成員은 배우자를 決定하기 前에 소속 기관에 반드시 事前 申告하여 承認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에 당사자들의 〈成分〉 문제가 크게 論議된다. 그 밖에 居住移轉의 自由, 職業選擇의 自由, 職場移動의 自由 등이 制限을 받고 있으므로 배우자 선택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

離婚도 婚姻과 같이 政權樹立 初에는 自由 의사의 原則을 法的으로 보장받았다. 즉, 이혼은 첫째 當事者의 合意가 이뤄지고, 둘째 合意離婚者의 意思가 所管 行政機關에서 受理되면 이혼이 성립되었다. 이처럼 男女의 同等한 自由離婚 權利가 표방되면서도 離婚 사유가 受理되어야만 효력을 發生할 수 있게 하는 등 離婚에 대한 간접적 제한을 함으로써 家族과 社會의 安定을 기도했던 것이다.

1956年 3月에는 合議制 離婚을 폐지하고, 재판에 의해서만 離婚을 許容하는 〈內閣〉 決定을 채택하게 되었다. ⑫ 이때부터 事實上 個人的 자유의사에 따른 離婚權은 상실되고, 국가가 허용하는 이혼만이 成立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離婚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出生・育兒

○ 出生: 1946年 6月 24日에 公布된 勞働法에 의하면 農村을 제외한 모든 企業所 및 事務 職場에서 근무하는 勤勞女性은 産前 35日, 産後 42日間의 휴가를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이어서 1958年 8月 農業이 集團化됨에 따라 協同農場에서 일하는 農村 女性들까지도 産前・産後 휴가를 받게 되는 것으로 1978年 4

⑫ 1956年 3月 8日 公布, 同年 4月 1日부터 施行.

月 18日에 채택된 새로운 勞働法 第66條에 의해 해석된다.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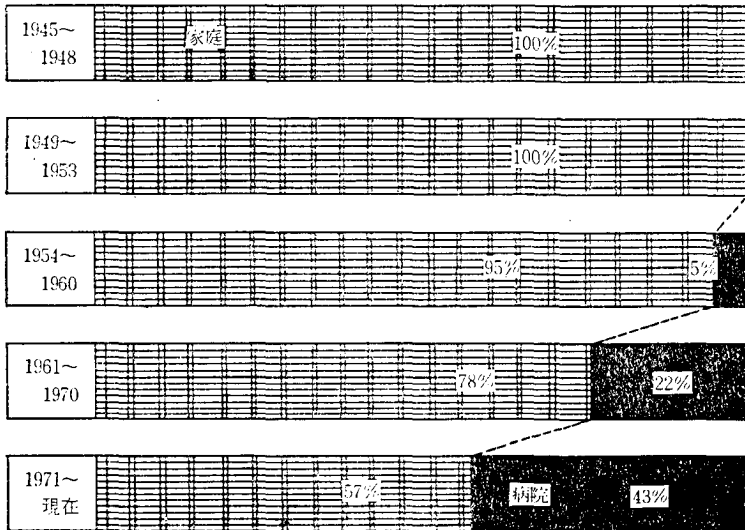
그러나 말은 바 責任量의 完遂와 各種社會主義 競爭運動의 展開로 인해 특별한 경우(產母의 건강 등)를 제외하고는 法定 休暇日을 다 채우지 않고 勞働하는 것이 一般의 現象인데, 특히 協同農場의 女性 農場員이 그러하다.

出產場所는 都市와 農村間에 차이가 있으며, 農村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집에서 助產員의 도움을 받아 出產하며, 都市의 工場地帶는 해당 産業病院의 產室에서 出產한다.

都市 특히 평양의 경우에는 80.3 준공된 平壤產院이 대규모 시설(총 2000室)을 갖추고 있으나 同 產院을 실제 利用할 수 있는 能力이나 실적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農村의 診療所를 病院化하고, 產室과 兒童 病棟의 擴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病院에서의 出產여건을 확대하려는 것

出 產 場 所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⑩『로동신문(1978. 4. 19).』

이다.⑩

○育 兒：어린이 養育은 社會가 集團主義化되고 家族制度의 變化와 가정의 革命化가 강조되고 母性的 立場 진출이 불가피하게 되자 탁아소, 유치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1970年 11月, 黨 5次大會에서는 6個年計劃 期間內에 모든 어린이를 社會的으로 양육할 것을 決定한 바 있는데, 이 결정은 1976年 4月 29日 <어린이 보육교양법>⑪의 공포에 의해 법적으로 制度化되었다.

託兒所·幼稚園의 수는 1982年 現在 約 6萬餘個에 이르고, 여

託兒所·幼稚園 現況

區分 年度	託 兒 所		幼 稚 園	
	託兒所數	收容人員	幼稚園數	收容人員
1946			64	3,918
1949	12	620	116	8,656
1953	63	2,165	19	1,048
1956	224	6,538	173	12,015
1960(1)	7,624	394,489	4,470	295,485
1966(2)	23,251	8,700 (適齡期 兒產 의 70%)	15,218	790,000 (適齡期 兒產 의 60%)
1970(3)	8,600	1,200,000	6,800	950,000
1975(4)	託兒所·幼稚園 6萬餘個所, 託兒所·幼稚園生 350萬			
1978(5)	託兒所·幼稚園 6萬餘個所, 託兒所·幼稚園生 350萬			
1979(6)	託兒所·幼稚園 6萬餘個所, 託兒所·幼稚園生 350萬			
1983(7)	託兒所·幼稚園 6萬餘個所, 託兒所·幼稚園生 360萬名			

出處：(1) 以上은 조선중앙년감(1964년판), p.328, p.204.

(2) 조선중앙년감(1966~1967년판), p.170.

(3) 조선중앙년감(1971년판), p.255.

(4) 最高人民會議 第5期 5次會議 報告(로동신문 1975.4.10).

(5) 평양방송(1978.8.20).

(6) 평양방송 79.2.4 및 중앙방송 79.11.8

(7) 중앙방송(1983.9.26)

⑩ 조선중앙년감(1975년판), p.416

⑪ 로동신문(1976.4.30).

기에 350만의 유아가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託兒所에는 보통 生後 90日이 되면 말기케 되는데, 모범적인 탁아소에서 한 保育員이 3~4名の 어린이를 맡아 본다. ⑥ 一日託兒所는 아침 8時부터 저녁 6時까지 어린이를 맡아보게 되어 있는데 통상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청 소재지와 큰 工場地帶에는 一日託兒所 외에 週託兒所가 있다. 평양의 경우도 구역마다 평균 1개 이상의 週託兒所가 있고, 원산시에는 236개의 日託兒所와 週託兒所가 있다. 또한 農村에서도 모든 農場員들의 어린이들이 託兒所生活을 하고 있으며, 協同農場의 託兒所에 들어온 어린이들의 입고 쓰는 것과 점심은 탁아소에서 공급하며, 연간 분배에서 어린이가 託兒所에서 먹은 食糧을 공제한다. ⑦

週託兒所에 맡겨진 어린이는 일요일에만 집에 갈 수 있으며, 탁아소에서 양육된 유아는 만 4세가 되면 幼稚園에 義務的으로 보내야 한다.

北韓의 이같은 幼兒 集團養育은 世界的인 兒童教育 理論에 逆行하는 것이라는 批判이 있다. ⑧

衣 · 食 · 住

○食生活 : 食糧은 勞動者 · 事務員의 경우, 配給制에 의해 공급받고 있다. 食糧配給制는 해방 후 一部 階層(주로 國家機關의 事務員 勞動者)에만 實施해 오다가 휴전 후부터는 農業의 集團化와 個人商工業의 社會主義化가 完成됨에 따라 協同農場員을 除外한 모든 住民에게 擴大시켰다.

일반 국민들에게 配給되는 식량은 주로 쌀과 옥수수(옥쌀)이며 배합비율은 평양과 지방 그리고 身分에 따라 차이가 있다(3:7~

⑥ 평양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9.15 주 탁아소>의 경우.

⑦ 신화사 통신사 대표단의 방문기.

로동신문(1979. 10. 14).

⑧ 李相琴, 북한의 여성 학술토의 토론(국토통일원, 1979) 중에서,

“소련에서도 현재 만 1세까지는 集團育兒를 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키브츠에서도 母子の 結合을 強調하고 있다.”

4 : 6).

옥수수대신 감자를 雜穀으로 배급할 때에는 4 : 1의 비율이다.

配給은 통상 15日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各里洞단위로 1個所씩의 配給所를 두고 있다.

근래에 와서 平壤을 비롯한 地方都市에서는 <옥쌀工場>들이 설치되어 옥수수를 <옥쌀>로 가공하여 배급하고 있다. <옥쌀>이라는 것은 옥수수를 가공하여 쌀모양처럼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이처럼 食糧에 대한 配給制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 食량은 暗去來 方法으로 충당되기도 한다. 出張 또는 旅行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권>이라는 것을 所持해야만 食事を 할 수 있으며 都市住民들이 食堂을 利用할 경우에도 糧券(一名糧票라고도 하며 150~200g)을 사용한다.

糧券을 發給받으면 다음 쌀 配給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配給받게 된다. 最近에는 每人當 하루 100g 限度內에서 食糧 배급과는 관계없이 국수를 판매하고 있다 한다.

1970年 11月 5次 黨大會에서는 婦女子들의 직장 진출과 관련해서 6個年計劃 期間에 밥工場을 대폭 확장할 것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 決定에 따라 평양을 비롯한 各都市들에서는 主食物을 加工하는 <밥工場>과 半製品 副食物과 국거리들을 배급하는 봉사 시설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婦女子들은 職場에서 퇴근하는 길에 이러한 시설들에서 自己 家族들이 必要한 主, 副食들을 가지고 가 간단히 (약 10분 程度) 加工하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食生活에서 많은 時間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平壤市에서는 各洞마다 <밥工場>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大部分의 住民이 이를 利用하고 있다. ⑩고 하나 음식의 양이 적고 질이 좋지 않아 바쁜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이용하며 통상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⑩ 신화사 통신사 대표단의 방문기, 로동신문(1979. 10. 14).

食量配給基準量

區 分	配 給 量(1日)	混食比率(백미 : 잡곡)
당 및 국가고위간부	700g	백미
일 반 노 동 자	600g	2 : 8
중 노 동 자	800g	3 : 7
일 반 사 무 원	600g	2 : 8
특수군인(경보병)	800g	7 : 3
군 인	700g	2 : 8
대 학 생	600g	2 : 8
고 등 중 학 생	500g	2 : 8
인 민 학 생	400g	2 : 8
유치원이하아동	300~100g	2 : 8
고령, 불구등무직자	300g	2 : 8

出處 : 國土統一院 分析資料.

農民들의 식량은 配給制가 아니며, 年末결산 분배에 의해서 分配받게 된다. 分配量 中에서 年間 食糧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모두 <國家收買>에 응해야 하는데, 農民의 年間 食糧은 公式的으로는 1人當 粗穀의 경우 400kg, 옥수수는 280kg 로 되어 있다.

○衣生活 : 各種 織物生産量은 1年에 約 6億m 인데, 그 中 軍用 및 公共用 그리고 工業用과 輸出用을 제외한 나머지가 住民들의 衣生活에 돌아가기 때문에 絕對量에 있어서 充分치 못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衣服을 自由로이 해 입을 수 없으며, 더우기 대부분의 女性들이 社會主義 건설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作

衣 類 供 給 基 準

對 象	回 數	品 目 및 數 量	備 考
勞 動 者	年1~2回	作業服 1着	無 價
學 生	年 2 回	校 服 1着	廉 價
技 士 · 教 員	3~4年 1回	洋服地 1着	廉 價
4 號 對 象	2年 1回		半 額

出處 : 國土統一院 分析資料.

階層別衣服

區分 職業別	夏 期			冬 期			保有
	外出 및出張	勤務時	平常時	外出 및出張	勤務時	平常時	
勞働者	Y샤스 (테드 롱) 紳士服 下衣 (테드 롱)	混紡織 作業服	남방샤 스 (테드 롱)	麻織 外套 (테드 롱 洋服)	混紡織 作業服	<다우다> 숄 多服 (上衣) 테드 롱 下衣	1~2 着
事務員	Y샤스 (테드 롱) 紳士服 下衣 (毛織)	비날混 紡 作 業 服	남방샤 스 (테드 롱)	毛 織 外 套 紳 士 服, 下 衣 (毛織)	숄 多 報 混 紡 織	<다우다> 숄 多 服 (上 衣) 테드 당 下 衣	1~2 着
學 生	남 방 샤 스 (白色綿織) 비 날 混 紡 下 衣 (黑色)	上 同	上 同	<다우다> 숄 多 服 上 衣, 비 날 混 紡 下 衣	上 同	上 同	1~2 着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業服을 입는 시간이 많아서 유행과 모양보다는 活動的인 옷차림을 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男女할 것 없이 衣服이 매우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

近來에 와서는 옷차림에 대해 종전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平壤에 被服 研究所라는 것이 設置되었으며, 그 研究所에서 만들어낸 <옷 전시회>라는 것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1978年 10月 경에 平壤에서 옷 전시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男女 어른用 옷과 어린이 옷 등 모두 160종이 진열되었으며, 그 女性들의 옷은 연하늘색, 연분홍색, 연회색, 연물색 등 밝은 색깔의 옷이 많았다고 하며^㉔ 70年代 이후에는 옷의 색상에 變化를 가져와 프린트 무늬의 옷감공급이 늘어나고 진분홍, 갈색, 녹색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1980年 2月 平壤에서 개최된 옷전시大會에서는 양복, 양장, 아동복, 편물 등 1만여점이 出品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住生活：住宅은 6.25동란 때 약 60만棟이 소실, 파괴되어 토

㉔ 평양방송(1978. 10. 14).

굴 및 반토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休戰後부터 實施해 온 人民經濟計劃 수립에서 주택건설을 크게 反映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經濟計劃마다 計劃한 주택 건립의 목표이다.

住宅 建立 目標

期 間	目 標
1957年~1960年	都市 1,000萬m ² , 農村 20萬 세대
1961年~1970年	120萬세대(實績 80萬세대)
1971年~1976年	100萬세대
1978年~1984年	年防 20~30萬세대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休戰 直後에는 平壤을 비롯한 都市 建設에 注力했으며, 農村住宅建設은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本格化되었다. 住宅의 양식에 있어서는 아파트와 2~3世帶用 연립식 住宅이며, 組立式 工法을 도입하고 있다.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平壤에는 10층 이상의 현대식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으며, 모든 주택이 一定한 설계에 의해 規格化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은 個人이 건립할 수 없으며, 農村住宅까지도 <국가예산>에 의해 건설토록 되어 있다.② 그러므로 住宅에 대한 個人所有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住宅 構造는 中央과 地方都市와 農村에 따라 差異가 있으며, 都市의 경우는 大體로 방 2, 마루 1, 부엌 1의 아파트로서 계층에 따라 配定을 받고 있다.

노동자 事務員들이 부담하는 주택 사용료는 生活費 支出에서 0.3%이며, 연료 및 其他 使用料를 합해 모두 3%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무상치료제, 무료교육, 식량의 佽가배급 등 이른바 “사회적 추가혜택”을 주민들에게 베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공

② 사회주의 헌법 제26조.

住宅事情(平壤)

區分	住宅型	家屋構造	入 住 者
特號	獨立高級住宅	○獨立式 單層 또는 2層住宅 ○庭園 ○수세식변소 ○냉온방장치	○中央黨 副部長級 以上 ○政務院 副部長級 以上 ○인민군 소장급이상
4號	新型高層아파트	○방 2개 以上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 ○베란다 冷溫水 施設	○中央黨 課長級 以上 ○政務院 局長級 以上 ○大學教授 ○인민군대과 ○文藝人幹部 ○기업소 책임자
3號	중급단독주택 및 新型아파트	○방 2개 ○부엌 · 창고	○중앙기관지도원 ○도단위부부장급 ○기업소부장
2號	一般아파트	○방 1~2, 마루방 1, 부엌 1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장 ○一般 勞動者 ○事務員
1號	集團公營住宅	○방 1~2, 부엌 1	○末端근로자 및 사무원
	農村文化住宅	○單層聯立住宅 ○방 2, 부엌 1, 倉庫 1	○協同農場員
	舊 屋	○방 2~3개의 農村既存舊屋	○변두리農民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산주의는 쌀이다”라는 구호아래 최근에 들어서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北韓 住民의 의식주 生活은 전반적으로 底水準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所得·消費

時期別 政策

北韓에서는 住民들의 物質文化를 계통적으로 向上시키는 것이

<조선로동당>의 最高 活動法則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간 重工業을 우선으로 하는 經濟政策을 實施했고, 軍事力 強化에 注力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計劃한대로 向上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休戰後부터 수차에 걸쳐 計劃經濟를 實施했는데, 그 때마다 주민 생활 향상 문제가 중요한 政策의 하나로 反映되기는 했으나, 向上의 Tempo는 매우 느린 편이다.

經濟計劃을 수립할 때마다 내세운 生活水準의 向上目標은 다음과 같다.

○ 3 個年計劃(1954~1956)

파괴된 經濟를 복구하여 戰前 水準으로 회복하고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 1 次 5 個年計劃(1957~1960)

社會主義 기초 건설을 촉진하고 주민의 衣·食·住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

○ 7 個年計劃(1961~1970)

住民의 物質文化 수준을 決定的으로 提高.

○ 6 個年計劃(1971~1976)

노동자·농민간의 生活水準의 차이와 都市·農村 住民들의 生活 조건에서의 차이 해소.

○ 2 次 7 個年計劃(1978~1984)

住民生活를 한 계단 높이고, 國民所得을 1.9倍로 成長, 生活水準의 平準化 추구.

勞働者 賃金

모든 근로자에게는 勞働의 量과 質에 대한 分配가 實施되고 있으므로 所得에서의 差異가 不可避한 것으로 되어 있다.

性別·年齡別에 관계없이 같은 勞働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으며, 分配에 있어서는 勞働者·農場員·事務員할 것 없이 都給 支拂制와 定額支拂制인 두 가지 形態가 있다.

大體로 勞働者·農民들에게는 都給 支拂制, 그리고 黨 및 <國家機關>과 經濟機關의 事務員들은 定額支拂制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추가적인 것으로서 加給金制와 賞金制가 實施되고 있다. ②

그간 勞働者·事務員·技術者들에 대한 임금 引上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54. 4. 1부터 平均 25%引上

○1958. 1. 1부터 平均 10%引上

階 層 別 賃 金(月給)

區 分	임금(원)	비 고	
事 務 員	部 長 級	300~350	黨政治委員, 政務院 및 黨 部長, 特級企業所支配人, 科學院院士 등
	지방단위	100~150	도간부 및 군단위책임자
	一般사무원	70	
技 術 者	책임자급	150~200	1~2級 企業所·工場등 支配人 및 技師長
	5등급기술자	75~78	
勞 働 者	중노동자	130	鑛夫·製鐵·製練工
	경 "	90	一般機械우전사
	기 타	60~80	일반경노동자
教 員	大 學	200~250	
	一 般	80	
군 인 (장 교)	장 성 급	250~490	
	영 관 급	120~215	
	위 관 급	84~110	
기 타	의 사	120~250	※ 평양산원의 경우
	배 우	200~300	※ 인민배우, 공훈배우 등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② 사회주의 노동법 제 5 조, 노동신문(1978. 4. 18).

○1959.1.1부터 平均 40%引上

○1970.9.1부터 平均 31.5% 引上^㉓

(1976년까지 平均賃金 70에서 90원으로)

이를 休職 直後와 比較해 보면 約 2.5倍가 引上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1974年 2月 26日 中央人民委員會의 政令으로 工產品 가격을 平均 30% 引下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㉔ 同年 4月 1日부터는 稅金制度가 全面 폐지되었기 때문에 實質所得이 그만큼 向上된 것으로 된다.

賃金은 職種 및 技能級數에 따라 隔差가 있는 것으로, 勞動者의 경우를 보면 <賃金技能 等給制>에 의해 등급이 1級으로부터 8級까지로 區分되어 있는데, 가장 낮은 1級の 노임과 가장 높은 8級の 노임을 比較할 때 2배를 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夫婦가 職場生活을 하고 있어 世帶 收入은 平均 約 150원, 程度가 되므로 所得上의 差異는 심한 편이 아니다(83年 현재 1\$ = 북한 화폐로 2.03원, 북한돈 1원 은 한국의 약 390원 상당).

場員 分配

한편, 協同農場員들은 都市의 노동자, 사무원과는 달리 協同農場의 決算分配에 의해 現物과 現金을 分配받는다. 分配의 기준은 每農場員이 1年間 農事 일에 投下한 <勞動의 量과 質>이 되는데, 이는 每日 3~4명으로 구성된 <勞力評價組>에 의해 査定된 勞力 點數의 總計가 되는 것이다. ^㉕

協同農場에서 1年間 生産한 總量에서 國家가 의무적으로 收買해 가는 農産物과 施設費(탁아소·유치원 등) 飼料 및 種子·비료대·農機械賃耕料·水利代 등을 控除한 나머지를 가지고 農場

^㉓ 조선중앙년감(1975년판), p. 407.

^㉔ 조선중앙년감(1975년판), p. 175.

^㉕ 평양방송(78.6.12).

員들의 勞力點數를 기준으로 해서 分配하게 된다.

그러므로 施設費 등이 많이 드는 施設 投資를 하게 되면 分配 몫이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또한 協同農場의 立地條件에 따라 分配量이 差異가 생긴 수밖에 없다. 즉 自然 및 立地條件이 有利한 協同農場은 不利한 協同農場보다 生産量과 現金收入이 많기 때문에 個人에게 돌아가는 몫도 그만큼 差異가 생긴다.

그러므로 一般的으로 山間地帶 農民들은 平野地帶의 農民들 보다 적은 量의 分配를 받고 있다. 그밖에 勞力點數에 따라 分配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勞動力이 많은 農家와 적은 農家 사이에는 分配量에서 많은 差異가 생기게 마련이다.

1970年 11月, 5次 黨大會에서는 6個年計劃期間에 農民 1世 帶當 平均 貨幣收入을 1,800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예상한 바 있는데, 이미 1974年에 이 수준을 능가하여 2,360원 선에 달한 것으로 發表하고 있다.^㉔

이는 都市의 勞働者 사무원의 평균 수입(90원×12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黨에서는 아직도 농장원 생활을 都市의 노동자 生活水準으로 向上시키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는데서^㉕ 北韓이 發表한 數値의 矛盾性이 드러난다.

1979年度의 決算分配에서 公式的으로 發表된 代表的인 協同農場의 例를 들면, 문덕군 통일 협동농장은 戶當分配^㉖가 平均 121

㉔ 로동신문(1975. 9. 23).

㉕ “6개년 계획기간에 세대당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소득은 1.7배,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1.8배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인민의 생활이 6개년 계획에 예견되었던 수준을 훨씬 능가하였으며 로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가 없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라고 농민의 생활수준이 로동자, 사무원보다 미달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6개년계획 수행 총화와 인민경제 발전 제 2차 7개년 계획(1978~1984)에 대하여>

조선 최고인민회의 제 6기 제 1차 회의에서 한정무원 총리 리중옥 보고 중에서('77. 12. 17. 로동신문).

㉖ 로동신문(1979. 11. 30). “……결산분배 모임에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각국 외교 대표들과 부인들 외국 기자들이 참가하였다.”라는 報道內容으로 보아, 이 決算分配量은 一般的인 事例는 아닌 것 같다.

協同農場組合員들에 대한 控除內譯

내역	비율(%)	비고
종자대	2~3	평균치
사료대	0.7~1	"
비료대	2~4	"
농기계 임대료	7	정보당
관개 사용료	7	
농기계 구매료	10	
공동기금	10	계약에 명시
사회문화기금	10	"
원호기금	3	평균치
계	55~60%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500kg, 7호 농장에서 戶當 分配는 平均 11t 700kg^㉘이다.

實際로 分配量에서 1年間의 家族 食糧을 際한 나머지는 國家가 收買^㉙해 가기 때문에 농장원들의 分配量의 增加가 食生活 向上에 별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㉚

物價

生活必須品中에서 工業商品은 單一價格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㉛ 즉, 都市나 山間 벽지할 것 없이 小賣價格에서 차이가 없이 항상 같은 값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休職後부터 수차에 걸쳐 物價 引下를 해 왔는데, 1974年 3月 1日부터는 工業產品 價格을 平均 30%라는 大幅的인 引下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원래 工業 商品의 價格은 高價로 策定되었기 때문에 30%를 引下했다 해되 賃金 水準과 比較해 볼 때는 아직도 높은 편이다.

㉘ 로동신문(1979. 11. 29).

㉙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 370.

㉚ FAO 산하 식량 전문가들은 北韓을 포함한 일부 共產國家와 제 3 세계 주민 4억 5천~5억이 심각한 영양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경고(1979. 11. 15 로이타 통신 보도).

㉛ 1972. 5. 14 김일성의 日本 全國革新市長 代表團과의 對話에서, 조선중앙년감(1973년판), p. 48.

主要物價

구	분	品目別	價格	單位
곡	류	白米	8전	1kg
		밀	8전	"
		콩팥	7전	"
		옥수수	6전	"
육	류	소고기	7원50전	1kg
		돼지고기	"	"
		닭고기	4원55전	"
주류 및 담배		소주	2원50전	1병
		인삼주	5~6원	"
		맥주	1원	"
		담배(금강산, 황별)	1원~20전	갑
의류		신사복	250~300원	着
		내의	35원	"
		Y사쓰	16~40원	"
		학생복	45원	"
일용공산품		자전거	160원	대
		라디오	250원	"
		TV(SONY)	350원	"
		녹음기	350원	"
		손목시계	120원	개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時計·라디오·재봉틀·양복 등의 가격을 보면, 高級官吏의 한 달 봉급을 훨씬 넘는 형편이므로 이런 工產品은 大衆 消費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食料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食糧이 配給制로 되어 있으며, 그 配給價格은 매우 싼 편이다. 이는 國家가 農民들로부터 쌀 1kg 당 62錢, 雜穀은 40錢에 收買하여 소비자에게는 각 8錢과 6錢으로 供給하는 二重價格制를 實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급량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암거래시장에서 부족분을 구입하는 양곡가격은 1kg 당 약 15원으로 배급가격에 비해 월등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風俗

冠婚喪祭

○結婚：結婚年齡은 人力資源의 最大利用으로 勞動과 生産力을 높이기 위해 남자 29歲, 여자 26歲로 제한하고 있다. 배우자의 선택은 중매와 연애가 병행되고 있으나 상대자의 출신성분이 가장 중시되고 있으며 특히 黨·政權機關의 간부 및 군관등의 경우에는 당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다.

結婚의 택일은 중매와 같은 吉甞을 가리는 풍습이 없어지고, 生産에 支障이 없는 公休日 또는 日曜日을 擇한다.

禮式場所는 會議室 아니면 신부의 집에서 擧式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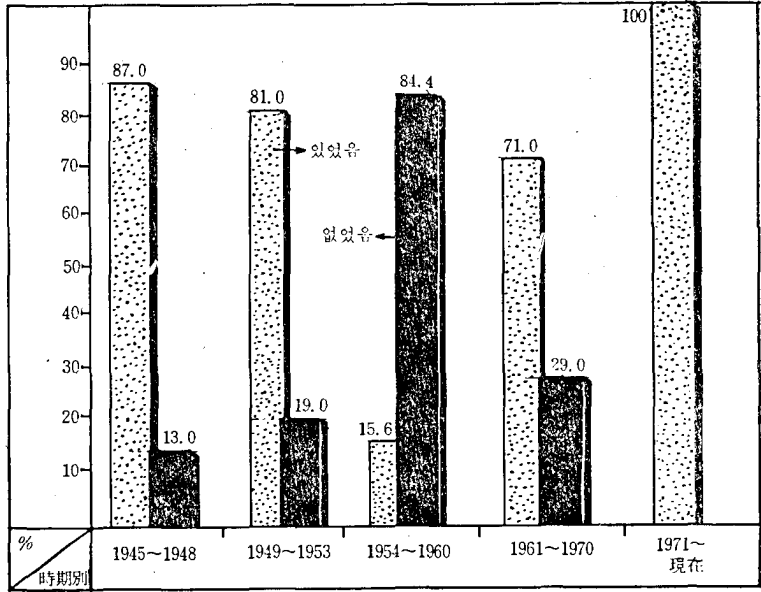
禮服은 특별한 것이 없으며, 平素에 입는 옷차림으로 가슴에 붉은 造花를 단다. 主禮는 대체로 自己가 속해 있는 職場 責任者 協同農場 管理 幹部 또는 黨 및 社會團體 幹部가 서며 간단한 격려사와 선물 교환 및 祝辭로서 式은 끝난다.

式이 끝난 후 신혼 여행은 가지 않고 식당 또는 집에서 간단한 피로연을 가질 수 있으며, 휴가 기간을 利用해서 살림집을 꾸민다.

○回 甲：休戰後 1950年代는 經濟的인 여유가 없을 뿐더러 식량 절약이라는 명분으로 回甲·生日·돌잔치가 모두 금지되었는데, 1960年代 後半期부터 1970年代에 들어와 回甲 잔치 및 돌잔치가 묵인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다시 당의 통제로 인해 거의 回甲잔치를 볼 수 없게 되었는데 60청춘, 90환갑이라는 口號아래 회갑연은 대부분 실시하지 않고 있다.

○葬 禮：葬儀는 普通 1~2日葬이나 3日葬의 경우도 많다. 葬禮式과 埋葬은 都市의 경우는 〈綠化事業所〉〈便宜協同組合〉등이 葬禮 一切을 맡아서 처리해 준다. 農村地域에서는 상여가 없

回甲잔치 有無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어지고, 달구지 또는 트럭에 의해 관이 운반된다. 葬地는 지정된 공동 묘지만을 쓸 수 있으며, 火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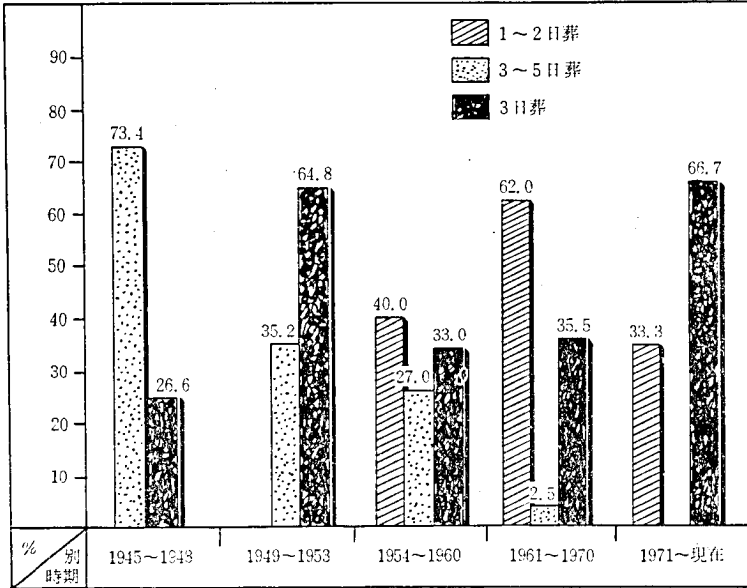
상복은 따로 만들어 입는 것이 없고, 머리에 굴건을 쓰고 팔에 검은 천을 두르는 경우도 있다.

直系 尊屬이 사망했을 때는 상주에게 3일간의 공식 휴가를 주고 사망진단서에 의한 장례 보조금 10원과 쌀 1말을 배급한다.

○祭 祀：祭祀도 다른 風習과 같이 6.25 前까지는 별다른 統制를 받지 않았으나 휴전 후부터는 단속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농촌을 비롯한 一部 家庭에서는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은밀한 方法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그러다가 60年代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私夕날에 <省墓>하는 것과 직계 가족에 대한 탈상까지의 제사는 묵인하게 되었으나 傳來

葬 禮 期 間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的인 祭祀의 뜻과 形式은 사라지고, 새로운 <社會主義的 祭祀>를 지내야 하는데, 그것은 金日成의 다음과 같은 <敎示>에 따른 것이다.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낡은 생활 습성의 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 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 날에 무덤에다 꽃을 갖다 놓든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날의 투쟁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마저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는 결의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㉔

^㉔ 전국 농업자매회 김일성 연설, 로동신문(1974.1.13).

이러한 發言은 살아 있는 사람과 자라나는 子孫들에게 社會主義建設을 위해 사상성을 고취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大部分 배급제도로 인한 식량사정, 勞動과 學習의 참여, 물질적 및 精神的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사를 거의 지내지 못하며 현재 북한에서는 소상 대상의 명칭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

名 節

名節은 첫째,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설정하여 경축하는 기념일>, 둘째, <음력으로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며 민속적으로 즐기는 날>^⑭ 등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현재 첫번째 경우의 名節만이 지켜지고 있을 뿐, 두 번째 개념의 名節은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다.

1946年 6月 24일에 發表된 勞動法令에서는 1月 1日, 3月 1日, 5月 1日, 8月 15日, 12月 31日을 名節로 規定하여 이날을 公休日로 定했다.

그 후 1946年 11月 3日 최초로 실시한 <선거일>을 記念하기 위해 11月 3日을 <永遠한 民族의 名節>로 決定했다.^⑮

그러나 이러한 명절과 함께 一般住民들 속에서는 舊正·8月 秋夕·5月 단오절과 같은 傳來의 음력 名節을 그런대로 지켜져 내려오다가, 休戰後 社會主義 改革이 本格化되자 전통적인 명절은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1950年代 후반기에는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勞動法令에서 규정한 名節中에서 <3月 1日>, <8月 15日>과 그 후에 決定한 <11月 3日>은 없어진 反面에, <2月 16日(金正日生日)> <4月 15日(金日成生日)> <9月 9日(人民共和國 創建日)> <10月 10日(勞動黨 創建日)> <12月 27日(社會主義 憲法 制定日)>등을 새로운 名節로 定하게 되었다.^⑯

⑭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 조선말 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8), p. 427.

⑮ 북조선 법령집(평양: 1947. 11), p. 305.

⑯ 조선중앙년잡(1976년판), p. 360 및(1974년판), p. 108.

민俗

따라서 現在 북한의 명절은 1月 1日설, 2月 16日 金正日 生日, 4月 15日 金日成 生日, 5月 1日 國際勞動節, 9月 9日 政權創建日 10月 10日 黨創建日 12月 27日 憲法節이고 이날은 모두 公休日로 하고 있으며 특히 4月 15日 金日成生日은 이른바 <민족최대의 명절>로 규정, 각종 기념행사와 더불어 住民들에게 特食을 제공하고 있다.

舊名節이 없어지는 것과 함께 傳來의 民俗놀이도 없어지거나 새로운 形態로 變形되었다.

그러나, 民俗놀이와는 달리 民俗的인 資料(복장·그릇·서반·활)등을 保存하는 民俗博物館이 설치되어 있다. 이 민속박물관은 1956年 2月 10日에 開館되었는데 <原始社會>, <노예 사회>, <봉건사회>, <10世紀 以後> 등으로 區分하여 해당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⑦

民俗놀이의 變形

時 期	內 容
6.25前	○傳統 民俗놀이 存續 —그네, 씨름(단오)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구정 초) —농악무(농촌), 북청 사자놀이, 봉산탈춤 등
50年代	○民俗놀이 一部가 생산성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 —농악을 行事に 利用(8.15, 5.1절 등) —노동자의 놀이로써 씨름, 그네, 줄다리기 장려
60年代 以後	○새로운 形態로 變形 —군중적, 集團的인 놀이로 變形 —활쏘기 등을 계급교양과 결부(표적이 美軍) —씨름, 그네를 민족 경기로 채택

※ 세시풍속에 따라 진행 내려오던 고유의 민속은 국방체육명목으로 각종군사 놀이나 씨름공연으로 바뀌어졌다.

⑦ 조선중앙년감(1969년판), p.192.

信 仰

사회주의 헌법 제54조에서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은 反宗教 宣傳의 자유만이 保障되고 있다. 그것은 宗教를 미신으로 보고 있는 金日成의 다음과 같은 宗教觀에서 알 수 있다.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 믿는 것이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여 착취,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또 근래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었다.”^㉔

土俗信仰인 성황당, 기우제, 무당, 푸닥거리 등은 休戰後에 금지령이 내려졌으나 아직도 점, 관상, 푸닥거리는 비밀리에 일부 행해지고 있다.

해방 후 宗教人 團體로서 <北朝鮮 基督教徒聯盟> <北朝鮮佛敎總聯盟> <天道敎 北朝鮮 宗務院> 등이 組織되었으며, 6.25前까지는 宗教人團體를 活用하는 時期였기 때문에 宗教生活에 대한 억제가 별로 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戰爭으로 인한 宗教施設의 파괴와 本格的인 反宗教 政策의 실시로 50年代 후반기에는 모든 종교 행사가 소멸되었고^㉕ 寺刹은 文化財로서 관리되고 있고 敎會는 託兒所와 倉庫로 利用되고 있다.

北韓을 訪問한 한 日本人은 案內員에게 北韓의 基督教 實情을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對答을 얻었다.^㉖

“물론 平壤市에는 敎會가 없다. 全國 어디를 가도 단 하나의 敎會도 찾아볼 수 없다. 산속에는 몇 개의 절이 남아 있지만 그것들도 곧 없어질 것이다. 朝鮮에는 基督教도 佛敎도 금지되고 있

㉔ 김일성 저작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7), p. 173.

㉕ 1958. 4. 29. 전국사법·검찰일군 회의에서 김일성은 이만화 목사를 반혁명분자로 규정했다.

김일성선집 5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0), p. 453.

㉖ 和田洋一, “北朝鮮の印象”, 朝鮮研究月報(東京 No. 14), p. 22.

지는 않다. 信仰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느님에게 정성껏 빌어 보았자 먹을 음식이나 살 집을 얻을 수는 없다. 김일성 수상의 지도 밑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糧食·衣服 및 住宅의 걱정은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基督教徒를 믿는 사람이 없어진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1972年 南北對話가 시작되자, 有名無實했던 宗教團體들을 다시 부활시켜 다음과 같은 左傾宗教人들의 國際會議에 代表를 參加시킨바 있다.

- 1974. 8. 2 <세계 교회협회> (WCC) : 가입 좌절.
- 1974. 11. 1 <아시아 불교도평화회의> (인도)에 조총련대표 참석
- 1975. 1. 8~13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 (인도)에 기독교도 대표(김성률) 참가.
- 1976. 7. 26 <제 4차 아시아 佛敎徒 平和大會>(동경 개최) : 正式會員으로 가입.
- 1976. 11. 2 기독교 평화회의 政治·經濟討論會(체코)에 김성률참가.
- 1981. 11 북과 해외 동포·기독교자간對話(제1차 회의, 비엔나)에 북한측 허정숙 등 15명, 교포측 최덕신 등 45명 참석
- 1982. 12 북과 해외 동포기독교자간對話(제 2차 회의 헬싱키)에 북한측 허정숙 등 47명, 교포측 최덕신 등 50명 참석.

宗教團體 現況

최초창립일	종교단체명 (현재명칭)	조 직	비 고
1946. 11. 28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김성률 ※ 지방조직없음	○ 50~53동란중 소멸 ○ 63~73일체의 활동없이 잠적.
1945. 11. 26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 박태호 ※ 지방조직없음	○ 50~54 동란중 소멸 ○ 65~71 일체의 활동없이 잠적
1946. 2. 1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 정신혁 ※ 지방조직없음	天道教會는 49~73잠적소멸. ※ 정당으로서 천도교청우당은 계속 존속

勞 動 · 保 健

勞 動

北韓에서는 勞動이 個人을 위한 것이 아니라, 共同의 目的과 共同의 利益을 위한 集團勞動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1958年 8月,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的 所有가 唯一的으로 支配하게 되고,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가 철저히 實施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勞動을 集團化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主義的인 集團勞動에 모든 公民은 참가할 의무와 권리가 法的으로 규정되고 있다. 즉 1946年 <勞動者 및 事務員에 대한 勞動法令>이 發表된 바 있으며, 그 후 內閣決定등으로 未備點을 補完해 왔는데, 1978年 4月 18日 最高人民會議 6期 2次會議에서 <사회주의 노동법>이라는 새로운 勞動法이 채택되었다.

이 勞動法에 규정돼 있는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④

○勞動年齡：滿 16歲부터

○勞動時間：8時間

3名 以上の 어린이를 가진 女性勞動者는 6時間

○勞動組織：都市와 農村의 모든 勞力資源을 統一的으로 動員 利用

○休 息：1週日 1日 休息

社會主義 名節日 休息

④ 노동신문(1978. 4. 19).

企業所 등에서 직접 運營하고 있으며, 그 數는 約 300個所 以上으로 推算된다.

1971年 12月 以後부터는 이들 휴양소, 정양소를 協同農場員들에게도 冬季에 限해서 利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年老年金은 男子는 滿 60歲, 女子는 滿 55歲로서 一定한 勤績 勞動年限을 가진 境遇에만 適用되며, 노동 재해·질병·부상으로 勞動能力을 一時的으로 상실한 근로자에게는 社會保險制에 의한 一時補助金을 주며, 만약 그 期間이 6個月이 넘게 되면 勞動能力 상실 연금을 지급한다.⑭

1970年 11月, 5次 黨大會에서는 重勞動과 輕勞動의 差異를 좁히어, 女性을 부역으로부터 解放한다는 3大 技術革命의 과제를 내세운 바 있으며, 그를 위해 각종 설비의 自動化 및 技術革新을 主要 政策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모든 個人은 자기 소질에 맞는 職業을 選擇할 수 없으며, 일원화된 勞動力 배치 계획에 따라 自己의 希望이나 特技와는 관계 없이 직장 배치를 받게 되며, 이러한 勞動力 配置에 따라 各者の 住居地가 비로소 決定되는 것이다.

1979年 9月에 열린 <전국 노동행정 일군대회>에서는 勞動力의 편중 배치와 流動的 現象의 시정책으로서 “勞動을 固着시키며 專門技術分野에 있어서는 代를이어 한 가지 職種에 정통해야 한다”⑮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自己의 職業을 子息에게 까지 물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北韓地域에는 <勞動者區>라는 것이 産業施設이 있는 地域을 擇해서 到處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集團的 勞力動員과 勞動規律 強化 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多目的性을 띤 行政單位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勞動者들은 <노동자구>에서만 살 수 있으며, 그 地域을 떠나서 살 수 있는 自由가 없다.

⑭ 사회주의 노동법 제74조, 동 75조, 노동신문(1978.4.19).

⑮ 전국 노동행정 일군대회에서 한 김일성 연설, 노동신문(1979.9.27).

14日間の 定期休暇

職種에 따라 7日 내지 21日間の 補充休暇

産前·産後 77日間 休暇

- 社會保障：질병·부상은 6個月까지 一時的 補助金 支給, 6個月後부터는 勞働能力 喪失年金 支給
- 年老年金：男子 60歲, 女子 55歲가 되면 근속 年한에 따라 年老年金 支給

勞働年齡을 從前의 14歲로부터 滿16歲로 높인 것은 11年制 義務教育制의 實施와 관련된다. 즉, 16歲까지는 義務教育期間이므로 職業的인 勞働에는 參加할 수 없는 것이다.

勞働時間은 一般 勞働職場에서는 8時間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광산·금속·化學 부문 등의 勞働職場에서는 7時間 또는 6時間制가 實施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는 勞働生活 組織으로서 8時間 일하고, 8時間 쉬고, 8時間 學習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法的 規定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모든 勤勞者는 私生活을 위한 時間이 전혀 없다는 結論이 나온다. 큰 工場·企業所들에서는 3交代가 實施되고 있으므로 8時間制가 自動적으로 지켜 지지만, 그렇지 않은 建設 및 農牧場과 같은 職場들에서는 연장되기 마련이다.

특히 計劃量 達成에 目標을 둔 〈千里馬運動〉, 〈3大革命 붉은旗 爭取動運〉, 〈速度戰〉, 〈80年代速度創造運動〉과 같은 社會主義 경쟁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勞働時間의 절대적 연장이 불가피한 것이다.

休息은 勞働者 및 事務員의 경우 매주 1日間이며, 協同農場員은 10日에 하루씩 쉴 수 있다.

年間 有給休暇(協同農場員 除外)는 14日間인데, 休養所 및 靜養所 施設이 수요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를 利用하는 근로자를 制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休養所 및 靜養所는 國家 또는 工場

保健 · 醫療

保健政策은 <사회주의 헌법> 第48條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첫째로 無償 治療制度의 공고 발전, 둘째로 豫防醫學의 方針 貫철, 셋째로 醫師 擔當區域制 실시, 넷째, 사람들의 生命保護와 健康增進으로 되어 있다.

無償治療制는 점진적으로 實施하게 되었다.

1952年 11月까지는 無償治療 대상 범위가 3歲 未滿의 幼兒 · 革命遺家族 · 孤兒院 및 養老院 收容者 · 精神病者 · 救急患者 · 極貧者들 이었는데, 1952年 11月 <內閣決定 第203號>에 의해 個人 商工業者 · 個人 農民을 除外하고는 모두 無償으로 治療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0年 2月 27日 最高人民會議 決定으로 全般的인 무상치료제가 全地域에서 實施하게 되었다.^④

그러나 越南者 家族 · 反動 宗派分子로 숙청된 사람과 그 家族 등 成分이 좋지 못한 住民들은 아무리 重病에 걸려도 高價의 藥品을 쓸 수 없으며, 市 · 區域 · 郡 病院 이상 시설이 좋은 病院에 入院할 수 없다고 越南者들은 한결같이 證言하고 있다.

그리고 豫防醫學의 方針도 1953年 休戰 後부터 시도했으나 1960年 1次 5個年計劃이 끝나서 保健施設과 保健要員이 어느 程度 確保된 다음부터 實施하게 되었다.

1969년부터 各 都市에서는 小兒科 · 內科 · 產婦人科 醫師 담당구역제와 炭鑛 · 鑛山에서는 職場 · 坑 醫師 擔當區域制가 實施되었는데, 醫師 擔當區域制란 各 醫師가 自己 맡은 責任區域에 나가서 위생 保健 · 예방 接種 · 건강 점검 등을 繼續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醫療擔當區域에서의 住民 한사람당 醫療奉仕回數는 解放前 0.9회에서 1979년에 18.4회로 增加되었다고 發表하고 있다.^⑤

④ 조선중앙년감(1961년판), p. 228.

⑤ 조선중앙년감(1982년판), p. 246.

6 個年 計劃期間에 醫療機關 1 萬個所, 各種 專門病院 및 郡病院 및 專門科 增設, 里診療所의 病院化, 各里마다의 兒童病院 1 個씩 設置 등을 計劃한 바 있으며, 2次 7 個年 計劃期間에는 豫防治療 집단수를 1.3倍, 病院 침대수를 1.2倍, 아동병동의 擴大, 의사·준의사의 증원 등을 計劃하고 있다.

한편, 東醫(漢方)治療에도 큰 比重을 두고 있는데, 東醫治療를 政策的으로 獎勵한 것은 休戰 後부터이며, 그 治療機關도 中央으로부터 里까지 體系化되고 있다.

1954年 6月 4日 內閣決定 第76號<인민보건을 개선강화 할데 대한> 決定이 있는 후, 漢方醫師에 대한 資格 試驗을 實施하고 漢醫院을 開院하게 했으며 1956년부터는 國家治療機關에 漢醫師를 두게 되었고, 큰 病院에는 漢方科가 設置되었다.

그 후 東醫師(漢醫師)의 자질을 向上시킬 목적으로 級數制를 實施했는데, 有能한 東醫師에게는 東醫師 1級·2級이란 資格을 주었다. 1960년에 1級 수여자는 239名, 2級 수여자는 1,495名 이나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東醫 治療體系가 確立되어 平壤에는 東醫中央病院, 各道에는 東醫病院이 설치되고, 市·郡區域病院과 주요 産業病院 및 里人民病院에서 東醫科를 신설했다.④⑥

最近에는 病院마다 藥草를 責任 栽培토록 하여 新藥 대신 東藥(漢藥)에 의한 治療事業을 擴大해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④⑦

防疫機構로서는 中央에는 保健部 산하 중앙 위생방역소, 各道에는 도위생방역소, 市·郡에는 위생방역소가 있으며, 國境과 海岸地帶에는 검역소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

최근 北韓에서 새로 建設된 代表的인 病院으로서는 1978年 7月 頃에 준공된 <해주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들 수 있는데, 그 규모를 보면 총건평이 3萬m²이고, 1,000餘 名의 外來患者와 600名의 入院患者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④⑧

④⑥ 조선중앙년감(1961년판), p.229.

④⑦ 로동신문(1979. 10. 4).

④⑧ 평양방송(1978. 7. 3).

醫 療 機 關 現 況

時 期	病 院 數	寢 臺 數	醫 師 及 準 醫 師 數 (人 口 萬 名 當)
1946	85	2,031	1,009(1.1)
1949	175	6,630	2,131(2.2)
1953	329	13,829	3,009(3.5)
1956	313	18,104	5,650(6.0)
1959	410	28,597	(8.7)
1960	447	32,698	11,919(11.0)
1963(1)	535	48,133	18,241(15.8)
1964(2)	5,321 (診 療 所 包 含)	52,037	(19.0)
1967(3)			(26.3)
1970(4)	1960年보다 病院 및 診療所 數는 1.3倍, 醫師와 準醫師 3倍로 증가		
1975(5)	1971~1975.8까지 病院 數는 70年の 2.8倍, 寢臺數는 1.5倍로 增加		
1979		※ 1萬名當 120臺	※ (23.3)
1980(6)		93,850	17,020()
1981(7)		96,320	18,000()
1982(8)		98,790	19,180 ()

- 出處 : (1) 以上은 조선중앙년감(1964년판), p. 326.
 (2) 조선중앙년감(1965년판), p. 188.
 (3) 조선중앙년감(1968년판), p. 107.
 (4) 5차 당대회 보고, 로동신문(1970.11.3)
 (5) 중앙통신 보도, 로동신문(1975.11.23)
 조선중앙년감(1978년판), p. 294
 (6)~(8) 국토통일원 분석자료 : 의사는 준의사물제외한 의사, 東醫師에 한하여 60~76까지의 북한 발표수치를 근거로 年平均증가수를 추계.
 ※는 최고인민회의 6기 4차회의(80.4.2) 발표수치.

그리고 2次 7個年計劃(78~84)事業으로 착수된 平壤産院(80.3 준공)은 6萬餘m²(13층 6개동)로 총 2千餘個의 室을 가진 비교적 現代的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醫療機關들은 대체적으로 設施이 落後할 뿐 아니라, 醫藥品이 不足하므로 환자들이 治療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民間療法과 같은 前近代的인 治療法이 많이 使用되고 있다.

社會統制의 逸脫

成分 및 階層構造

北韓은 解放以後 數次에 걸쳐 成分 檢討事業을 실시하여 住民들을 成分別로 嚴格히 區分하고, 成分에 따른 階層別 職種 職位를 맡기고 있다.

이는 反黨, 反革命的 勢力の 索出과 思想性을 點檢, 住民들에 對한 政治 社會的 統制를 加하기 위한 措置인 것이다.

서울大學校 崔弘基 교수는 이같은 北韓의 階級政策이 70年代에 들어와 급격히 增大하는 專門的, 技術的 人力需要에 副應하기 위해 社會的 機能과 關連하여 政治 經濟的 均衡主義의 階級政策으로 바뀌었다고 主張하고 그 根據로 김일성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引用했다.④

“사람의 成分은 固定不變한 것이 아니고 늘 끊임없이 變한다.”⑤

“본인이 지금 革命活動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가 어떨까……에 의해서 評價해야 한다.”⑥

成分 分類 및 待遇

區 分	對 象	80年 比率	待 遇
核心階層	○革命戰士 遺家族 ○被殺, 戰死者 家族 ○黨, 行政幹部 家族	28%	○黨, 政權, 軍幹部 登用 ○他 階層과 分離 特惠措置 (進學, 昇進, 配給, 居住, 醫療)

④ 崔弘基, 北韓體制 및 社會豫測(국토통일원, 1978), pp. 5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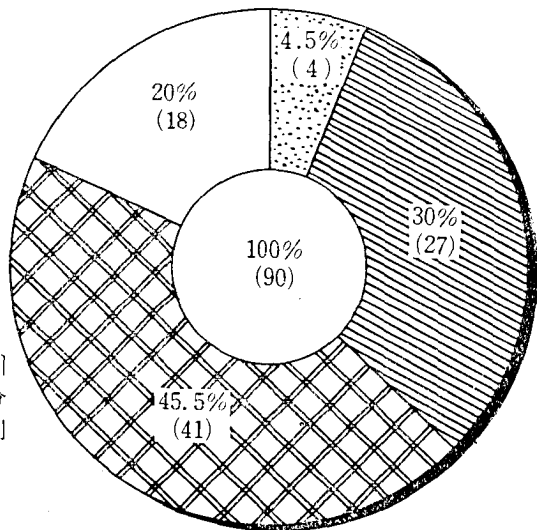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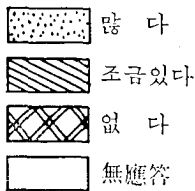
⑤ 김일성 저작선집 6권 (평양: 1974) p. 43.

⑥ 上揭書, p.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幹部 家族 ※ 共產體制 統治階層 		
基本階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一般勞動者, 農民 家族 ○ 一般事務員 家族 ※ 社會主義 體制的 基本群衆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各種 下級幹部 등 技術者 進出 ○ 極少數 核心層으로 昇格
複雜階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主, 資本家 家族 ○ 日帝公職者, 宗教 人 家族 ○ 越南·附逆者 捕虜 家族 ○ 肅清·犯罪者 家族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有害, 重勞動에 從事 ○ 進學, 入學, 入黨, 封鎖彈壓 ○ 制裁, 監視, 包攝對象으로 分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制裁: 強制移住 隔離收容 · 監視: 指名하여 恒時 動態 監視 · 包攝: 集中的 教養, 洗腦 ○ 極少數 基本層으로 再分類 (子女)

出處: 韓國研究機關 B 資料

複雜階層에서 基本階層으로의 移動



※ 1958년부터 1960年代初까지 北韓全域에서 實施된 成分 調査에서 住民들을 成分別로 階層을 分類하고 階層 間의 上向移動은 制限되고 있음

出處: 國土統一院 分析資料

住民統制

政治 思想的 統制

住民統制의 基盤으로서 黨을 頂點으로 모든 住民들을 社勞靑, 職盟, 農勤盟, 女盟 등 各種 社會團體 組織에 義務의으로 加入, 集團化시키고, 黨을 國家權力の 中樞로 삼아 모든 것을 지도 감독, 統制하며 下部는 無條件 上部에 服從케 하고 있다. ㉔

國家保衛部를 별도 설치하여 주민 및 集團의 동태를 비밀 감시시키고 反黨 反革命的 勢力の 색출과 사상적 감시를 통해 「不純分子」를 숙청한다.

“思想的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㉕”하여 김일성 唯一思想體系 確立을 위한 自我 및 相互批判을 통해 劃一의 思想性을 고취시킨다.

經濟的 統制

黨 體制가 人間 生存의 基本手段을 장악하여 住民統制에 利用하고 成分階層에 따라 差別 待遇를 한다.

예컨대 基本 衣服은 열가로 配給하되 기다는 高價로 統制하여 同一階層의 衣生活을 劃一化하는 反面, 高級品の 보편화를 억제한다. ㉖

食糧은 配給制로 하고 勞動者와 非勞動者(扶養家族)와의 지급 기준에 差異를 두어 ㉗ 勞力動員의 기피를 源泉的으로 봉쇄하며, 住宅에 있어서는 職位를 고려 配當하고, 職場 中心으로 아파트 또는 聯立(文化) 住宅型으로 集團化 ㉘, 動員 統制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㉔ 조선로동당 규약 제 4장 33, 제 9장

㉕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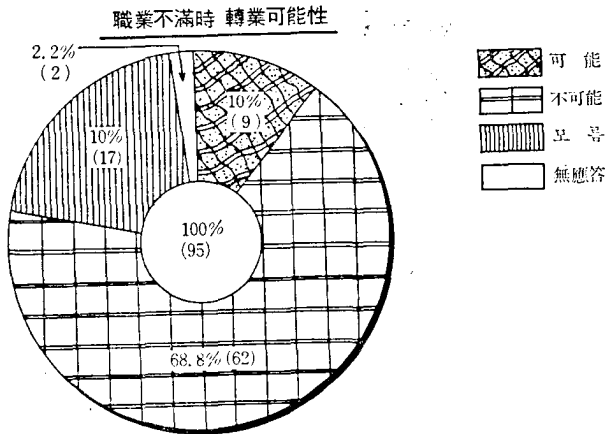
㉖北韓經濟 統計集(國土統一院 1977), p. 868.

㉗ 上揭書, p. 894.

㉘ 사회주의 노동법(1978. 4. 18) 제 69조,北韓經濟 統計集(국토통일원, 1977), p. 903.

社會的統制

〈사회주의 헌법〉은 希望에 따른 職業選擇의 自由를 規定하고 있으나^㉞ 實際는 職業을 區分, 職位를 부여하며 個人의 素質, 能力, 希望, 學力 등은 副次的이며 職場配置를 恣意로 拒否할 수도 없다.^㉟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住居移轉은 職場 移動이 統制되고, 또 家屋이 公有化되어 있어^㊱ 職場 調整, 不純分子 벽지 이주, 都市人 農村 移住 같은 措置가 있을 때만 可能하다.

뿐만 아니라, 住民의 遊休로 인한 勞動力 손실과 心理的 동요 防止를 위해 旅行은 統制되고 公務 旅行만이 許容된다. 旅行時는 職場長이 發行한 旅行證과 糧券, 衛生通過證 등을 所持하고 發着

㉞ 사회주의 헌법(1973. 12. 27) 제56조

㉟ 사회주의 노동법(1978. 4. 18) 제 3조

㊱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 370.

各種 身分 證明書

種 類	對 象 및 用 途
公 民 證	17歲 以上의 全住民
出 生 證	出生兒부터 16歲까지의 全住民
學 生 證	學 生
黨 員 證	黨 員
盟 員 證	聯盟, 女盟, 社勞青等의 盟員
勞 動 手 帖	勞勤者
職 場 身 分 證	職場勤務者
外 出 證	軍人, 職場勤務者
休 暇 證	軍 人
出 張 命 令 書	軍 人
旅 行 證 明 書	旅行時
通 行 證	他道旅行時
衛 生 通 過 證	旅行 및 公務 出張時
信 任 狀	公務 出張時
出 張 證 明 書	公務 出張時

時 各 各 安 全 駐 在 員 에 申 告 하 도 록 되 어 있 다. ⑩

家 庭 生 活 統 制

地方行政 末 端 組 織 인 15~20世 帶 規 模 의 人 民 班 은 班 員 의 家 庭 生 活 로 부 터 個 人 問 題 가 지 討 議 決 定 하 고 相 互 批 判 ⑪ 하 는 役 할 을 한 다.

또 1958年 부 터 시 작 된 5 戶 擔 當 制 는 5 戶 씩 世 帶 別 로 나 누 어 熱 誠 黨 員 1 名 씩 을 配 置, <5 戶 擔 當 宣 傳 員> 으 로 任 命 하 여 이 들 은 擔 當 世 帶 의 各 家 庭 生 活 全 般 과 思 想 的 監 視 指 導 를 擔 當 하 고 있 다.

5 戶 擔 當 制 에 서 는 “ 擔 當 員 이 每 家 庭, 每 人 들 과 의 일 상 적 인 접 촉 을 通 하 여 그 들 의 知 識 正 確 度, 소 질, 취 미, 희 망, 思 想 등 태 를 正 確 히 了解 할 수 있 다…… 매 개 주 민 들 을 혁 명 과 업 실 천 에 적 극 動 員 하 기 위 한 조 직 政 治 事 業 도 同 時 에 수 행 한 다.” ⑫

⑩ 韓 國 研 究 機 關 B 資 料

⑪ 日 報 新 聞 (1972. 6. 22) “…… 인 민 반 들 을 천 리 마 인 민 반 으 로 되 게 ……”

⑫ 日 報 新 聞 1962. 11. (하), p. 30.

社會的逸脫

北韓에서는 唯物史觀의 立場에서 道德의 可變性과 階級性을 주장하고 있다.

“道德은 社會 經濟의 關係를 반영하는 社會的 意識의 한 형태로서 社會 發展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하여 階級 社會에서는 반드시 계급적 성격을 띠기 마련이다.”^㉔

이러한 觀點으로부터 出發해서 1958年 末 社會主義制度가 확립된 것과 때를 같이해서 共產主義 道德問題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다. 그 후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가 더 強化되고 社會主義 建設이 심화됨에 따라 共產主義 道德에서 요구하는 內容도 이에 맞추어 달라져 왔다.

오늘날 共產主義道德에서 重要視되고 있는 것은 “個人的 利益보다 集團의 利益을 더 重히 여기는 集團主義 精神, 力敵 경쟁의 혁명 精神, 勞動에 對한 共產主義의 態度, 社會主義的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共產主義的 人間性과 文化性”등이다.

이러한 共產主義的 道德의 要求와는 달리 그에 위배되는 社會的 逸脫行爲들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逸脫行爲(犯罪)가 輕한 경우에는 법행 행위자가 속해 있는 黨 및 社會團體들에서 비판 또는 責備形式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法的 制裁를 받기 마련이다.

社會 不條理 類型

區 分	內 容
思想的 側面	要領主義, 形式主義, 保身主義, 無事안일주의 主觀主義, 家族主義 個人, 主義, 機會主義, 宗派主義
行爲的 側面	各種 組織生活不誠實, 虛偽報告 公共財產의 濫用, 浪費轉向, 관리소홀, 집행태만, 책임회피 및 전가, 黨 정책의 형식적 접수

㉔ 경치사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58.

한편 非道德的, 反社會的 各種犯罪行爲도 계속 增加추세에 있다고 하는바 이것은 다음 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70年代 以後, 大赦令의 發表가 많아지고 있는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赦免實施現況

日 時	赦 免 對 象	契 機
1948. 10. 12		인공 수립
1952. 11. 18	3년 이하 징역형	전시 관대 정책
1953. 7. 28	3년 이하 징역	후전과 관련
	3년 이상은 형벌을 절반으로 감형	
1968. 6. 6	"	정권 수립 20주년
1972. 1. 25	5년 이하 징역	김일성 회갑
1975. 9. 22		당창건 30주년기념
1978. 7. 19		정권수립 30주년

※ 1978년 7월19일에 발표된 사면 내용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30돐에 즈음하여 국가와 인민 앞에 죄를 진 사람도 우리 당이 이끄는 영광스러운 혁명대열에 다시 들어서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30돐에 즈음하여 범죄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30돐에 즈음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대한 경령시행 세칙을 승인한다.” (로동신문, 978.7.20).

各種 犯罪 類型

區分 種類	內 容	備 考
政治犯	反黨, 反革命 行爲, 金日成 權威毀損, 脫出犯, 思想不純	金日成權威毀損: 金日成 鬭爭歷史 왜곡, 金日成에 關한 各種 出版物 및 초상화 破損 및 교시 비방등
經濟犯	公共財産의 橫領, 糧穀去來 및 橫領, 品貴商品의 不正流出, 物品求入時 價格造作, 定量未達 出庫, 減量販賣, 不正計量器 使用	대다수가 經濟部門에 從事하는 行政機關이나 協同團體幹部에 한함.
人身侵害犯	暴力, 殺人, 強姦, 姦通	強姦, 姦通은 黨 및 協同農場 幹部에 依한 경우가 많음

기 타	깡패, 소매치기, 강도, 절도, 사기, 협잡, 방화	農民들의 절도행태 : 벼가마, 숨기기, 속주머니 만들어 강 냉이 알 따내기, 고구마 덜캐 기, 달걀 훔치기, 강냉이 따 고 흔적없애기 등
--------	---------------------------------	--



教育·文化

教 育

教育政策

北韓의 教育은 그들의 社會主義 建設과 革命發展에 따라 그 內容을 달리해 왔는데, 오늘의 教育政策을 명확히 提示하고 있는 것은 1977年 9月에 發表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강령)>이다.

○ 目標: 건결한 社會主義·共產主義 革命鬪士 및 共產主義의 새人間 養成①.

○ 政策方向: 全般的 義務教育, 일하면서 배우는 教育과 어린이 保育敎養의 強化.

○ 教育內容: 思想教育을 爲主로 하면서 科學技術教育과 勞動教育을 統一的 過程으로 進行.

○ 教育方法: 啓導 啓蒙의 方法, 理論教育과 生産勞動의 結合,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의 結合, 團體 生活의 強化②.

學校教育

教育制度

○ 義務教育: 1956년부터 初等 義務教育制(4年制人民學校)가 實施되어 오다가 1958년부터는 3年間的 中等教育까지 확대하여 義務化했었다.

그러다가 9年後인 1967년에는 <전반적 9년제 기술 의무교육제>가 實施되었었다. 이는 4年制의 人民學校와 5年制의 中學校를

① 사회주의 헌법 제39조.

②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근로자(1977.10호), pp.2-29.

義務制로 한 것이고, 中學校의 5年 過程中 3年間은 一般의인 中學教育을 그後의 2年間은 한 가지 이상의 技術을 습득시키는 技術教育으로 되어 있다.

1970年 11月 黨 5次大會에서는 6個年計劃期間에 義務教育 年限을 1年間 延長하여 10年制 義務教育으로 할 것을 決定했으며, 이 決定에 따라 1972年 7月 黨 5期 4次 全員會議에서 <10년제 고종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 전 의무교육>을, 同年 9月부터 段階的으로 實施할 것을 討議했다.

1975年 9月부터는 이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따라서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이 유치원 고급반 진학나이인 滿 5歲로 1년이 낮아졌다. 11年制 義務教育에는 수업료와 教科書, 校服과 學用品이 무상, 또는 一部 부담으로 支給되고 있다고 하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용품은 양과질에 있어 義務教育制度 變遷 過程

1956. 8	○ 初等義務教育 實施 (1955. 3 最高人民會議 9차회의에서 채택)	○ 1개里 1개校 目標로 4年制 人民學校 확장 추진 ○ 一部 初級中學과 高級中學校를 人民學校와 병합 ○ 56. 8. 1부터 實施
1958. 11(1)	○ 7年制 中等義務教育 실시 (1959. 10. 28 最高人民會議 제2기 제4차 회의에서 법령 집행)	○ 人民學校 4年制와 中學校 3年制 존속 ○ 기술교육 위주의 교육제도
1967. 4(2)	○ 9年制 技術義務教育 制採擇 (1966. 11. 24 最高人民會議 第3期 6次會議)	○ 人民學校 入學年齡을 만 7세에서 만 6세로 인하 ○ 人民學校 4年, 中學校 5年 ○ 一部教育體制 改編
1972. 9(3)	○ 11年制 義務教育 制採擇 (1973. 4. 10 最高人民會議 5期2次會議)	○ 1972. 9부터 段階的 實施, 1975년 이후 完全 실시. ○ 유치원 1년간(만5세)의 학교전 義務教育 實施 ○ 人民學校 4年, 高等中學校 6年の 義務教育 實施

出處 : (1) 조선중앙년감(1961년판), p. 210.

(2) 조선중앙년감(1966~1967년판), p. 132.

(3) 조선중앙년감(1974년판), p. 105.

매우 미진한 상태에 있다.

人民學校 및 中等學校 年度別 學生數 · 學校數

년 도 별	인 민 학 교		중 등 학 교	
	학 생 수	학 교 수	학 생 수	학 교 수
1947	1,183	2,482	103	246
1950	1,474	3,882	411	995
1954	1,391	3,399	328	1,095
1957	1,508	3,777	509	1,374
1960	957	4,145	1,115	3,694
1964(1)	994(3)	3,992	1,166(1)	4,365
1965	1,113	3,985	989(2)	4,361
1975(2)		4,700		4,100(3)
1982(4)	1,753	4,760	2,438	4,150

(1) 以上の 수치는 조선중앙년감 1964년판 p.327.

(2) 조선중앙년감 1965년판, p.167-168.

(3) 최고인민회의의 5기 5차회의 김일성 연설(로동신문, 1975.4.10)

※ (3)의 4,100교는 1949-57까지의 중등전문학교의 초급중학교와의 합계, 1961-65년까지는 초급중학교와 기술학교의 합계.

(4) 한국연구기관 B자료.

○ 高等教育: 北韓에서 처음으로 大學이 開校된 것은 1946年 9月 1日이다.

즉, 1946년에 組織된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는 同年 9月 1日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평양에 建設할 것을 決定함으로써 9月 1日부터 開校를 보게 되었는데, 이때 같이 開校한 大學은 咸興醫科大學이고, 다음 달인 10月에는 興南工業大學·海州敎員大學·清津敎員大學 등이다. 9月 1日 開校한 것은 學年初가 9月이 되기 때문이다.

1948年 7月 7日 <北朝鮮 人民委員會 第157號 決定>에 의해서 高等教育擴張等の 일환으로써 <김일성 종합大學>의 農學部·醫學部·工學部를 分離 獨立시켜 3個의 單科大學을 만들었다.③

1948年 9月 9日 北韓政權이 수립된 후 元山敎員大學을 비롯

③ 조선중앙년감(1949년판), p.128.

한 4개의 大學을 增設하여 6.25 前에는 모두 15個 大學에서 11,984名의 學生이 있었다.④

休戰後 3個年 復舊建設期(1954~1956)에는 開城의 松都政治經濟大學과 平壤人民經濟大學 등이 새로 신설되어 1956年 9月 現在 19個大學에 學生數는 16,592명이었다.⑤ 이는 戰前보다 4個 大學과 4,600명의 學生이 늘어난 것이다. 5個年計劃期間(1957~1960)에는 全般的 中等義務教育을 實施하는데 目標를 두었기 때문에 高等教育부에서는 中等敎員의 大量 養成을 위해 敎員大學과 師範大學을 擴張시켰다.

1960年 8月에는 노동당 擴大全員會議를 開催하고, 7個年計劃 遂行에 필요한 기술자 確保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工場大學>, <夜間大學> 設立을 決定하였다. 同 決定에 따라 큰 工場·企業所

大學 및 學生數의 年度別 現況

年 度	1947	1948	1949	1953	1954	1955	1956			
大學生	4	11	15	15	16	16	19			
學生數	3,000	8,731	11,984	11,268	7,700	12,857	16,592			
年 度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大學生	20	23	37	71	92	97	96			
學生數	20,510	25,640	52,000	97,000	182,000	203,000	214,000			
年 度	1967	1969	1970	1971	1972	1975	1978	1979	1980	1983
大學生	98	100	129	136	140	150	158(1)	162(2)	170	183(3)
學生數	未發表	—	—	—	—	—	—	—	—	—

出處：조선중앙년감. 노동신문에 의거작성.

(1) 노동신문(1978.9.10).

※ 1973년 4월, 11년제 의무교육 결정에 관한 보고에서 大學과 高等기술학교 학생 總수를 24만 명으로 발표.

(2) 노동신문(197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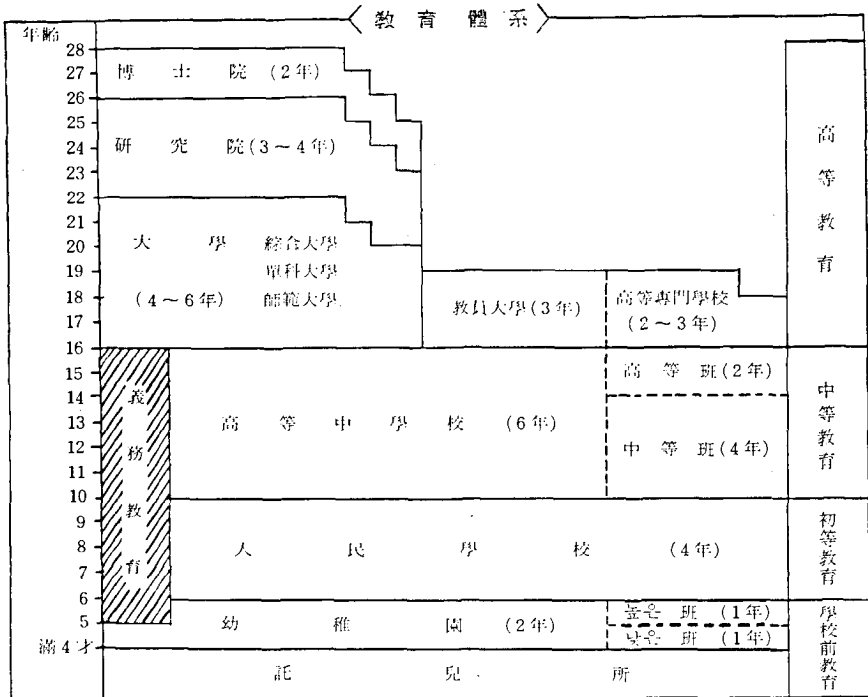
(3) 83.9. 8 중앙방송.

④ 조선중앙년감(1951~1952년판), p.569.

⑤ 조선중앙년감(1958년판), p.141.

에 24개의 工場大學(工業系)이 新設되어, 大學은 76개로 增加되었다.⑥

7 個年 人民經濟計劃 期間(1961~1970)에는 工場大學을 더 많이 增設하여 大學數를 128個校, 學生數를 22만 7 千명까지 成長시킬 것을 計劃하였는데, 1970年 11월에 개최되었던 勞動黨 第 5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註 (1) 1973.4.10 최고인민위원회회의 5기 2차회의 보고, 로동신문(1973.4.11).
 (2) 人民學校 4년 과정이 高等中學校 內 人民班에서 이수되기도 한다(조선중앙년감 1978년판 p.226).

⑥ 조선중앙년감(1961년판), p.212.

次大會 報告에서 大學數 129個로 발표함으로써 계획이 달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6 個年 人民經濟計劃 期間(1971~1976)에는 기술자·전문가와 인텔리를 50萬名으로부터 100萬名으로 養成할 것을 目標하고, 소 규모의 工場大學·通信大學·高等專門學校등을 增設한 결과 1983年 현재 大學 總數가 183個로 增加되었다.⑦

한편, 高等教育 體系에 속하는 것으로서 高等技術學校가 있었는데, 이는 1972年 9月 새로운 學制로 改編됨에 따라 高等專門學校로 그 名稱이 바뀌고 수업 年限도 2年에서 3年으로 되었다. 現在 高等專門學校수는 601개이며 軍단위로 設치되어 있다.⑧

大學 및 高等專門學校 學生들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⑨ 그러나 高等教育은 個人的 希望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黨의 추천에 의해서만 可能하며 學科의 선택에 있어서도 黨의 양성계획에 의해 配定받게 된다. 즉 大學進學은 黨에서 선발되고 추천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教員養成

11年制 義務教育 實施에 따라 이에 要求되는 教員을 充當하기 위해 各道와 市(직할시)마다 2個의 師範大學과 2個의 教員大學이 設置되었으며, 第1師範大學에서는 高等中學 高等班 教員을, 第2師範大學에서는 高等中學 中等班教員을 養成하며, 第1, 2教員大學에서는 유치원 教養員과 人民學校教員을 養成하고 있다.

6 個年計劃期間에 教員 6萬名을 養成해서 各級學校의 教員數가 約 20萬名으로 學生 20名에 教員 1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⑩

⑦ 로동신문(1979.9.9), 공화국 창건 31주년기념 박성철 보고.

⑧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338.

⑨ 사회주의 헌법 제42조.

⑩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p.335—336.

教育內容

教育內容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發表된 바는 없으나 思想教育에 力點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大學에서는 一般科目보다 金日成勞作·金日成 革命活動 歷史·朝鮮勞動黨 政策史 등 思想, 政治部門 科目이 重要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最近에는 一般大學의 外國語教育을 強調, “모든 大學生들이 한 가지 以上の 外國語를 完전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①

金日成은 外國語에 관한 發言에서 “英語·프랑스語·露語·中國語·日本語를 비롯한 여러가지 外國語”로 表現, 英語를 첫째로 들고 있다.②

그리고 高等中學校와 人民學校에서도 金日成 革命活動·金日成 革命歷史·朝鮮勞動黨 政策이 講義되고 있다.③

유치원에서는 “단 5세의 어린이들에게 金日成의 어린 시절을 따라 배우도록 하며, 말을 정확히 하며, 人民學校에 入學하여 교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필요한 어휘를 습득하고, 연필 쥐는 법, 글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자모와 자기 이름을 쓰며, 일정한 수까지 세고 간단한 숫자를 쓸 줄 알도록 배워주고 있다”는 宣傳과 같이 유치원의 교과목은 <金日成 어린시절 이야기>, <공산주의 도덕>, <우리말>, <셈세기>, <노래> <도화·공작> 등 總 1,360 時間의 教育이 實施되고 있다.④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政治思想教育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集團主義體制에 적응시키고 金日成과 黨을 위해 목숨바쳐 싸울 수 있는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9.5).

② 김일성, <전국 교육 일군대회>(1978.10.1)연설.

③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 337.

④ 조선중앙년감(1973년판), p. 259.

黨 教 育

黨教育機關으로는 郡 黨學校·道 共產大學·金日成 高級黨學校 및 人民經濟大學 등이 있다. 郡黨學校는 里級 幹部를 재교육시키고, 道級幹部와 郡級 責任者들은 金日成 高級黨學校나 人民經濟大學에서 1년반 내지 3年間の 보수 교육을 받는다.

政務院 部長을 비롯한 中央級 幹部들은 每週 土曜日 오후마다 학습을 받을 뿐 아니라, 1년에 1個月씩 강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⑮

그밖에 黨 및 行政機關·經濟機關 등의 幹部들 중에서 批判을 받고 現職에서 물러난 사람들을 재교육시키는 短期 洗腦教育도 실시되고 있다.

社 會 教 育

社會教育은 한 마디로 社會人에 대한 思想教育이다. 비록 正規的인 教育은 아니라 하더라도 黨員이나 人民을 막론하고 하루 2시간 이상 學習을 해야 한다.^⑯

學習 과목은 주로 <金日成勞作>이며 黨員과 住民들은 自習會·講演會·講習會 등에도 빠짐 없이 참가해야 하고, <전국 학습경연대회>도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幹部들은 土曜 學習, 水曜 講演이 첨가되는데, 이같은 教育體系가 1977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다.^⑰

이 외에도 作業前 휴식 시간에 실시하는 讀報會가 있으며, 朝會등을 통해서도 思想教育이 실시된다.

黨의 外廓團體인 社勞靑 聯盟·農勤盟·女盟 같은 社會團體들

⑮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 189.

⑯ 로동신문(1975. 11. 10).

⑰ 조선중앙년감(1978년판), p. 300.

의 기본 任務도 組織員들에 대한 共產主義 敎養을 強化하는데 있다. ⑮

1974년 6월부터는 모든 住民들이 언제나 金日成 書籍을 가지고 다니도록 義務化하고, 그 위에 金日成에 대한 學習까지 시키고 있다고 越南者들이 證言한다.

그 밖에 黨政策 宣傳機關인 각종 機關紙(新聞)·라디오·TV·映畫·演劇·雜誌 등 매스 미디어와 각종 文化活動 역시 社會敎育의 일익을 담당한다.

研究機關

科學研究의 最高機關으로서 政務院 直屬의 科學院과 社會科學院이 있다.

科學院은 1952年 10月 9日<과학원 조직에 관한 내각 결정 제 183호>에 의해 創設되었으며, 社會科學院은 1964年 2月 科學院의 一部가 分離되어 別途로 組織되었다. ⑯ 이 두 科學院에는 分野別로 몇 개의 委員會와 研究室 등을 가지고 있으며, 專門의 研究事業外에 全般的인 과학 연구의 指導와 과학자의 養成, 그리고 對外活動 業務를 遂行하고 있다.

그밖에 政務院의 各部·各委員會의 直屬으로 敎育科學院·農業科學院·醫學科學院 등이 있다. ⑰

科學者 養成을 위한 別途의 體系로서 研究院과 博士院이 있으며, 이들은 金日成大學을 비롯한 주요한 大學등에 設置되어 있다. ⑱

研究院은 1949年 4月 6日 敎育省令 第3號에 의해 敎育相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大學에는 언제든지 設置할 수 있게 되어 있

⑮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1972), pp. 132-133.

⑯ 조선중앙년감(1965년판), p. 170.

⑰ 조선중앙년감(1965년판), p. 170.

⑱ 로동신문(1966. 11. 14).

는데, 現在 研究院의 履修年限은 學士論文의 通過를 포함하여 3年으로 되어 있다.

博士院은 1961年 2月 18日 <內閣決定 第19號>에 의해 大學 및 科學研究機關에 設置하게 되었는데, 入籍 對象으로는 學位(學士) 學職(副教授)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2年 以內에 博士學位論文을 作成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文 化

言 語

北韓의 言語政策은 言語가 가지는 革命的 役割을 높이는 것과 함께 共產主義 革命과 建設에 있어 政治思想敎養 및 住民의 組織 動員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①

〈文化語〉라 부르는 標準語 政策이 바로 그것이다. 南北韓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서울 말 중심의 標準語를 거부하고, 平壤 말을 중심으로 한 것이 文化語이다.

北韓은 “서울 標準語가 부르조아 的 要素와 復古主義的 要素가 있기 때문에 이를 使用하면 人民들의 意識 속에 反動的 부르조아 思想과 封建·儒敎思想을 비롯한 온갖 낡은 思想이 머리를 쳐들게 될 것”②이라는 理由로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에 맞고 〈김일성이 몸소 쓰는 우리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③

심지어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도 누가 지었다고 언급함이 없이 김일성이 “찾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文化語”라고 가르치고 있으며④ 평양말이니 文化語라고 이름하여 우리말의 이질화를 심화시켜 왔다.

學者들의 研究 結果에 의하면, 이 文化語는 平壤 말에다 상당수의 威鏡道 사투리가 가미되어, 된소리가 많고 거칠고 공격적이며, 새말은 노동자·농민이 알아듣기 쉬운 말 위주로 만들며 古典 翻

① 김일성,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1964).

② 문화어 학습(평양) 1971' 3호.

③ 上掲書.

④ 북한의 〈국어중급 2〉 p.10.

우리말 異質化의 몇 가지 事例

區 分	改造 또는 新造語	備 考
형용사, 동사, 부사의 변질	얼빠한 숨새다 무어주시고 은을내다 무연하다 이악하게든	얼빠진 조금씩새다 조직하여주시고 효과를내다 무질서하다 악착스럽게
호전적, 선동적 (미제의)용어	각을 뜨다 까부시다 계급투쟁, 비타협적투쟁 모내기전투, 전투적과제등	四枝를 도려내다 쳐부시다 ※운동→鬪爭化 ※일, 과업→戰鬪
적개심고취용어	개, 승냥이, 주구, 원썩 등	
노력 착취 용어	평양속도, 천리마속도 80년도속도 창조운동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한 자 어 改造	교편물 밝힘표 이신각칙 직관물 만부하	교육보조자급 明細表 솔선수범 전시장 집이 가득 실림
도 입 외 레 어	그룹빠 깜빠니아 뜨락뜨르	담 체 군중운동 트랙터

譯에도 固有語 사용을 규제하고, 金日成 偶像化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 ⑤ 1966년 6월 이래 북한은 內閣 직속 국어 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 국어사정지도처 및 언어학 연구소에서 어휘선정, 사전 편찬작업을 하고 있으며, 해방 후 한글과 漢字를 혼용해 오다가 1949년 부터는 한자를 폐지, 學術研究部門에서만 쓰도록 하고 한글을 전용하고 있다.

⑤ 李炫腹 남북한어의 음성학 및 언어학적 비교연구(국토통일원, 북한종교학술토의 주제발표논문 1979).

洪妍淑 남북한 언어 개념의 이질화 연구(국토통일원, 북한종교학술토의 주제발표논문, 1979)

文藝政策

文學 藝術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 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黨의 指導와 領導를 벗어난 순수한 文藝活動이란 있을 수 없다. 文學·藝術의 創作과 活動에서 지켜야 할 原則으로 내세우는 것은,

첫째,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이다.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는 民族의 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革命的인 內容, 階級的인 內容)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創作方法이라고 한다.⑥

둘째, 黨性, 階級性, 人民性의 구현이다.

文學·藝術에서의 黨性에 對해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이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 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해서도 안된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 문학 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 수 있다.”⑦

文藝作品 創作에서의 主題別 比率은 1964年 11月 7日 <文學·藝術 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金日成의 <敎示>에 따라 社會主義 建設과 革命鬪爭에 관한 것을 各各 5對 5로, 其中 革命鬪爭에서는 복한 것을 4, 남한 것을 1로 配定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아 왔다.⑧

文藝創作에서의 주제별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 건설과 革命鬪爭

⑥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2), p. 497.

⑦ 김일성 저작선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p. 579.

⑧ 김일성 저작선집, 4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7), p. 157.

이 많았으나 1960年代 후반기부터는 金日成 個人에 관한 것과 〈革命傳統〉을 內容으로 하는 主題選定에 더 큰 比重을 두고 있다.

文藝小組員 發表作品的 主題別 比率^⑨

主 題 別	比 率
金日成과 黨中央(金正日)	217편(42.7%)
黨과 革命傳統	53편(10.3%)
經濟建設	183편(36.2%)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	55편(10.8%)

또한 文學藝術活動의 大衆化政策下에 群衆文學創作 事業의 개
선, 群衆藝術競演 全國勞動者藝術祝典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
고 있으며 一般大衆의 作品投稿 活動을 年例行事로 組織展開하고
있다.

文藝團體

職業 藝術人の 組織體로서는 〈朝鮮文學藝術總同盟〉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中央 組織과 道 組織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망라된
예술 단체로서는 〈조선작가동맹〉 〈조선 미술가동맹〉 〈조선 음악
가동맹〉 〈조선 영화인동맹〉 〈조선연극인 동맹〉 〈조선무용가동
맹〉 〈조선 사진가동맹〉 등 7개 동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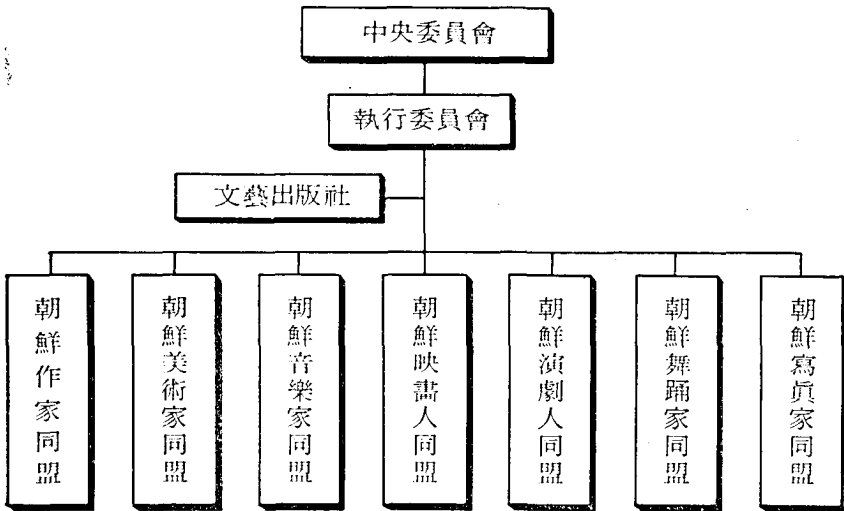
本來 解放後 예술인 단체로서 1946年 3月 〈北朝鮮 文學藝術總
同盟〉이 發足됐는데 1951年 3月 越北한 南韓의 藝術團體와 합쳐
〈朝鮮 文學藝術總同盟〉으로 改編되었다. 그러다가 休戰 直後인
1953年 9月, 文藝總에서 주도적 役割을 해온 林和·李源朝·金
南天·薛貞植 등 南勞黨系의 文藝人들이 숙청되자, 文藝總은 해
산되고, 作家同盟·作曲家同盟·美術家同盟 등 3個 同盟만 남게
되었다.

⑨ 1978.10.10 당창건 30주년기념 「진국문학 예술소조원」 발표작품 기준.

그러다가 1961年 2月 舞踊家同盟·寫眞家同盟 등 몇 개의 藝術同盟을 망라시켜 <朝鮮文學藝術總同盟>을 再組織했다. 作家, 藝術人들은 이와 같은 組織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黨에서 제시하는 作品만을 創作할 수 있으며, 各者의 特技와 藝術的 個性을 살리는 것보다는 集體作이라는 名分下에 活動을 制限하므로 北韓의 作家藝術人은 一種의 匠工에 지나지 않는다.

그밖에 藝術의 大衆化를 위해 工場·企業所 및 協同團體들에는 藝術小組라는 것이 있다. 이 藝術小組는 各分野別로 組織되어 있으며, 이 부문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網羅되고 있다.

朝鮮文學藝術總同盟機構



出處: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698.

※ 各同盟傘下에는 分科委員會들이 있으며, 各道에는 總同盟 支部와 部門別 支部가 있다.

文學은 순수 문학의 의미를 벗어나 黨의 政策을 具現하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武裝시키는 데 服務해야 하므로 主題 선택에서는 勿論, 素材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作品들의 素材를 보면 大部分 現實성과 革命性, 그리고 社會主義的인 것을 담은 內容들이며, 金日成과 黨에 忠直한 英雄의 人物들만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作品 구성에서는 革命的 樂觀主義와, 集團主義의 英雄主義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

最近에는 金日成의 <革命鬪爭과 革命的 家庭>의 形象, 그리고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투쟁을 소재로 한 作品들이 創作되고 있다.

<꽃파는 처녀>라는 장편 소설이 그 代表作이라 할 수 있다.⑩ 이는 金日成이 抗日鬪爭시기에 직접 창작했다는 <꽃파는 처녀>를 그대로 小說化 했다는 것인데 主人公인 <꽃분이>를 통해 日帝下에 壓迫과 착취받는 조선민족의 비참한 生活을 묘사하고 祖國光復, 그리고 自由와 幸福을 위해서는 鬪爭隊列에 參加해야 한다는 內容으로 되어 있다.

이 小說을 <革命的 文學藝術이 지켜야 할 미학적 원칙들을 가르쳐 주는 참된 교과서>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밖에 <불바람>, <젊음을 자랑하라> <영심이> <우리는 이렇게

主要 文學 作品

<小說作品>

區分	作 品 名	內 容	創作年度
長篇	동트는 압록강	金日成의 生長史 美化	1975
短篇	사랑의 길	金日成 革命思想 形象化	"
長篇	忠誠의 한 길에서	金日成에 忠直한 革命鬪士, 典型的 性格 描寫	"
短篇	時代의 흐름속에서	勞動을 통한 金日成과 黨에의 忠誠心 強調	"
"	衷心으로	"	"

⑩ 조선중앙년감(1978년판), p.304.

區分	作 品 名	內 容	創作年度
長篇	철새를 마스라	勞働者들에게 忠誠의 革命觀 確立	1975
"	등대	"	"
短篇	새봄	三大革命 小組員의 모습 形象化	1976
"	보통날 아침	執務에 임하는 金日成의 근면성 描寫	"
"	祖國의 바다	金日成의 漁勞作業 現地指導	"
長篇	꽃파는 處女	階級鬭爭	1977
中篇	젊음을 자랑하라	靑年勞働者들의 勞動과 思想性描寫	"
短篇	영심이	三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과 小組員들의 모습을 形象化	"
短篇	太陽을 따라		"
"	조약돌		"
"	光州의 새벽		1980
"	불타는 마음 속에		"
長篇	해돋는 바다		1981
中篇	치녀운전사		"
長篇	끝은 길		1982
中篇	하늘에서 만나자		"

〈詩作品〉

區分	作 品 名	內 容	創作年度
長詩	永生不滅의 金日成將軍의 노래	金日成의 革命業績謳歌	1975
叙情詩	어머니 수령님께 드리는 새해의 獻詩	金日成에 對한 人民의 尊敬과 喜慕	"
長詩	永遠히 빛나라 忠誠의 해발이여	金日成의 전처 金貞淑 讚揚	"
叙事詩	향도의 해발은 누리에 빛난다	金正日 讚揚과 忠誠謳歌	"
詩集	향도의 해발을 우리러	다함 없는 忠誠의 노래	"
叙情詩	幸福에 겨워 눈물에 젖어	金日成의 現地訪問과 그 감격을 노래	1976
"	회령 고향집	金日成의 전처 金貞淑 追慕	"
叙事詩	山村 마을 꽃 피워	三大革命과 金日成 禮讚	"
"	검덕의 마음	金日成과 金正日에의 忠誠	"
"	인민의 위대한 太陽	金日成의 革命業績과 共產主義의 德性 喜慕	1977
長詩	설레이라 벼바다	金日成偶像化와 社會主義 農村讚揚	"
叙情詩	강내가 바다여 어머니당 앞에	金日成과 金正日에의 忠誠	1980
"	백두산 기슭에서	"	"
歌詞	당중앙의 불빛	"	1980

出處 : 조선중앙연감 및 조선문학.

文 化

자란다〉 등 사회주의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中 短篇小說들이 있다.

詩文學으로서는 〈人民의 위대한 太陽〉을 비롯한 서사시와 〈설레 이라 벼바다, 강냉이 바다여〉 등 서정시가 最近에 창작되었다.①

美 術

北韓의 美術은 해방 이후 6.25動亂까지는 초상화를 비롯한 宣傳壁畫 등 共產主義 宣傳 포스터 등이 大部分이었다. 1945年 한 해에 그려진 金日成의 肖像畫만도 9 만여점이나 된다.②

1950年 初부터 중반까지는 越北한 作家들에 의해서 比較的의 自然主義的인 方法으로 風景이나 花草 또는 人民들의 生活相 등이 등장하고, 또한 古美術에 대한 소개가 빈번히 나타나곤 했다.

50年代 후반부터 1960年初에 걸쳐서는 金日成의 肖像, 工場·企業所들과 戰後復舊 및 千里馬運動 등과 같은 경제 건설이 主題가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金日成이 畫面에 등장하는 비율은 전체 작품의 20% 안팎이었다.

그러나 60年代 중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90% 이상의 作品에 金日成이 登場하여 朝鮮畫의 方法에 의해 美化되고 偶像化된 作品들로 일관하고 있다.③

北韓의 美術은 60年代 以後부터 作家의 主觀이나 個性이 일체 배제된 美術形式으로서 集體畫가 빈번히 등장, 目的畫의 형식으로 전락하여 樣式上에서의 급격한 전통의 왜곡 변질과 內容上 金日成의 偶像化가 오늘날 北韓 미술의 전반적 氣流이다.④

音 樂

解放後 1950年代 中半期까지만 해도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등의 音樂이 연주되었으나 그 後는 金日成 讚美와 革命化, 勞動階級을 위한 선동수단으로 化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거의 完全

① 조선중앙년감(1978년판), p. 303.

② 조선중앙년감(1949년판) p. 144.

③ 尹明老, “북한의 미술”, 학술토의 주제발표문, (국토통일원, 1979).

④ 吳光洙 上揭文.

히 金日成과 金正日 讚揚一色으로 되고 있다.

1977年 평양 문예출판사 발행〈조선음악 600곡집〉을 보면, 600곡 가운데 歌曲 302편, 歌劇에서 나오는 아리아 190곡, 映畫主題歌 108曲 등이 들어 있는데 歌曲편만 분류해 봐도 232곡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전체의 80%를 점하고 있다.

특히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음악 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등 김일성의 70회 生日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作品들이 製作되었고 金正日에의 충성을 다짐하는 노래가 30여곡 製作되어 당기관과 社會團體 및 一般國民 등 전국적으로 노래보급을 組織 擴大하고 있으며 그 代表的인 노래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친애하는 지도자 金正日 동지의 노래〉 등이 있다.

이러한 가곡들은 가사 內容이 가장 重要視되고 있고, 멜로디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져 있다.

1962年 이후에는 음계개조 운동을 벌여 民族 樂器의 制限性(5音 音階)을 극복하고, 어떠한 복잡한 曲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는 條件을 갖춘다는 명목으로 12律 半音 체계를 만들었다.

예컨대, 가야금은 명주실로 끈 줄 대신 철 줄을 사용하고, 부들(染尾)을 없애고 12絃을 13絃과 19絃으로 그 줄을 늘려 가야금의 調律性을 상실하였으며 地方的인 特徵을 가진 唱法도 單一唱法으로 統制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傳統音樂은 크게 變質되어 地方的인 特色은 물론 優雅하고 韻致있고 餘韻을 남기는 전통적 한국 음악은 北韓에서 영영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⑤

映畫·演劇

映畫를 〈直觀藝術〉이라 하여 다른 共產國家와 마찬가지로 어떤 藝術 장르보다 重要視하고 있다.

대부분의 北韓映畫·演劇의 內容은 肯定의 人物과 否定의 人物을 登場시키고, 否定의 人物은 解放前의 素材로는 日人과 地主,

^⑤ 張師勳, “북한의 음악”, 학술토의 주제발표문, (국토통일원, 1978),

그 後에는 美國人이나 南韓人 또는 보수적인 인테리 등이며, 肯定的 人物은 金日成을 숭배하는 勞動者 農民이 大部分이다.

60年代 千里馬運動이 본격화함에 따라 映畫·演劇도 大型化하고 量産되었으며, 千里馬運動의 典型, 그 위에 黨의 唯一思想體系와 革命傳統 教養을 체계화한 金日成 神格化가 主軸을 이룬다.

70年代에 들어 代表的인 作品은 1971년에 製作된 <피바다> (가극 上下篇 映畫化)와 1972年の <꽃파는 처녀>이다. 이들 두 作品이 모두 日帝 植民地 下의 生活을 主題로 한 것으로서 <階級的 怨讐들과는 個別的, 自然 發生的으로 투쟁해서는 悲劇的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⑮든지 金日成이 제시한 武裝鬭爭路線만이 祖國을 광복할 수 있다^⑯는 등 <혁명의 참된 敎課書>로 강조되고 있다.

<피바다>는 金日成이 각본을 직접 쓰고 配役들의 대사와 연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했다^⑰고 한다.

이같은 北韓의 映畫演劇은 新派的 誇張으로서 현실과 무관한 圖式性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⑱ 순전히 인간개조에 목적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最近에 제작된 <월미도>, <군대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 등 4편의 영화(이상 83.1~2 제작)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감상회와 토론회를 개최, 이들 영화주인공들이 지향하는 바의 革命的 犧牲主義, 黨政策貫徹, 忠誠心을 고취하는 思想教養讀本으로 그리고 “群衆性 있는 강력한 思想宣傳手段”으로 이들 영화를 활용하고 있다.^⑳

⑮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2), p. 1016.

⑰ 上掲書 pp. 895-898.

⑱ 上掲書 pp. 895-898.

⑲ 金正鉉 북한학술보의 주지문 “북한영화에서의 예술성과 사상성”, (국토통일원, 1979), p. 9

⑳ 83.2.7 로동신문 사설은 위의 4편의 영화와 인민의 영화사업 과정이 곧 黨의 조직과 사상적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黨中央(김정일)의 확고한 결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

最近製作映畫의 內容

映 畫 題 目	主 要 內 容	主 要 行 事
月 尾 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의 충성심과 희생정신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영화 최초의 혁명적 비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영화 감상회 모임 및 토론회(2.20) ○ 사로청간부 및 청년학생
언제나 한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건설과 수령에의 충성심 ○ 6.25중 김일성의 평북도 현지 지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연구토론회(2.20) — 문화예술 및 사상 교양 사업 담당간부
군당 책임 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원의 경제 정책 관철 태도 ○ 당간부들의 사업작품 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동신문, 민주조선, 로동청년을 통한 동영화관람기개제(83.6)

報 道 · 出 版

新 聞

新聞은 勞動黨의 機關紙로서 <로동신문>, 最高人民會議과 政務院등 政府 기관지로서 <민주조선>, 社會團體 機關紙로서 <로동청년>과 <평양신문> 등 4 개 中央紙와 各道에 10個 신문들이 있다.

그밖에 <교통신문>, <건설신문>, <교원신문>, <인민군신문>과 같은 政務院의 各部에서 發刊하는 신문이 있다.

이러한 신문들은 뉴스의 傳達者나 教養 娛樂 手段이 아니라, 레닌이 규정한 바와 같이 <集約的 宣傳煽動者 및 組織者의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北韓에서 가장 권위 있고 發行 部數가 많은 <로동신문>의 과업에 대해 同紙 創刊 25周年 축하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②

첫째, 全人民을 黨의 유일 사상으로 무장

둘째, 社會의 革命化, 勞動階級化

세째, 文化革命의 추진

네째, 國防力 強化 및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에 대한 5大方針 貫徹

② 로동신문(1970. 12. 21)

다섯째, 金日成의 世界 革命戰略으로 武裝

로동신문의 本身은 1945年 11月 1日 當時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의 기관지로 發刊된 <正路>였는데, 1946年 8月 29日 北朝鮮共產黨, 朝鮮新民黨^㉑과 더불어 北朝鮮勞動黨의 黨報로서 <로동신문>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其他 主要宣傳媒體(정기간행물)

新聞名	發行機關	雜誌名	發行機關
로동자신문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로동청년새날	사로청중앙위원회	천리마	문예출판사
농업근로자	농근맹중앙위원회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문학신문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청년문학	연극인동맹및무용가동맹중앙위원회
조국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선예술	사로청중앙위원회
교원신문	교육위원회	청년생활	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위원회
인민군신문	인민부력부	조선녀성	사회과학출판사
교통신문	철도부	문화어학습	작가동맹중앙위원회
건설신문	건설부	아동문학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평양타임스 (영문·불문)	평양시보사	남조선문제	

通 信

通信機關으로서는 唯一하게 <조선중앙통신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문통신>, <로동통신>, <프랑스문통신>, <에스파니아문통신> 등의 通信과 <조선중앙년감>을 비롯한 대내외 선전물이 편집 발행되고 있다.^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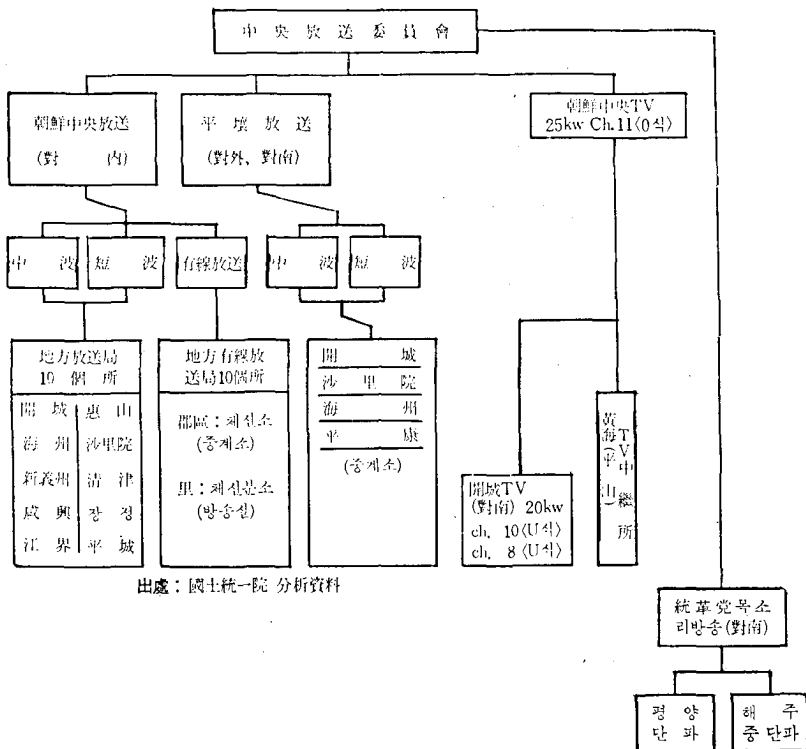
放 送

放送의 임무는 신문과 같이 黨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 되어 있다. 방송은 政務院 直屬 中央放送委員會와 그 산하에 있는 道·市·郡 放送委員會의 一元化된 체계하에서 운용되고 있다. 中央放送委員會는 조선중앙 방송과 텔레비放送, 평양放送 등을, 그리

㉑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3) p.328.

㉒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364.

北韓放送網體系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고 地方放送委員會에서는 中央放送의 중계 및 自體放送 編成業務를 수행하고 있다.②

放送體系에서 特異한 것은 對南心理戰 放送으로서 <平壤放送>이 별도로 설치되어 中央黨의 對南工作 部署로부터 통제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 黑色放送으로서 <統一革命黨 목소리 放送>이 있는데, 이는 1968年 4月부터 <南朝鮮 解放放送>이라는 이름으로 放送을 해 오다가 1970年 6月 1日에 그 名稱을 <統一革命黨 목소리 放送>으로 改稱한 것이다.

② 조선중앙(1976년판), p. 365.

TV放送은 1969년부터 正規放送을 하게 되었다. 1970年 11月 5次 黨大會에서는 6個年計劃 期間에 <全國의 텔레비전化>의 實現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黨決定에 따라 황해 및 마식령·원산·자강도 일대에 中繼塔이 設置됨으로써 全國의 範圍에서 텔레비전 수상이 可能하게 되었다.^㉕ 칼라 TV도 1974年 4月 15日 金日成 62回 生日부터 放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밖에 開城에는 對南心理戰을 目的으로 한 TV 放送局이 設치되어 1971年 4月 15日부터 放映되고 있다.

出 版

出版事業은 黨의 強力한 선전 선동 수단의 하나로서 金日成의 다음과 같은 敎示에 따라서 그 事業 方向을 정하고 있다.

“……혁명 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㉖

주요 出版物로서는 사상 혁명과 관련된 圖書出版을 주로하는 <조선로동당 출판사>, <금성 청년출판사> 등과 科學知識 普及을 위한 <사회과학 출판사>, <과학원 출판사> 및 文藝作品的 圖書만을 取扱하는 <문예 출판사> 등이 있다.

金日成勞作·革命傳統敎養圖書 出版 現況

區 分 年 度	金 日 成 勞 作		革 命 傳 統 敎 養 圖 書	
	種 類	部 數	種 類	部 數
1960~1969(1)		3,900萬		4,550萬
1971(2)	35	1,402萬 5千	81	1,008萬 1千
1972	49	1,816萬 8千	85	1,130萬 9千
1970~1979		1억 1천 7만		

出處 : (1) 조선중앙년감(1971년판) p. 275.

(2) 以下조선중앙년감(1974년판), p. 231.

※ 1972년 1년간의 발행 부수가 1960년대 10년간 발행 부수의 절반에 가깝다.

㉕ 조선중앙년감(1972년판), p. 349.

㉖ 조선중앙년감(1971년판), p. 272.

『圖書』를 出版하는 教育委員會 傘下 <김일성 종합대학
<고등교육 도서 출판사>, <외국문 교육도서 출판사>와
海外宣傳 冊子 出版을 하고 있는 <외국 문출판사>가 있다. ②

主要出版社

黨 및 思想關係	科學 技術 關係	教育文化 및 其他
조선로동당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
근로단체출판사	과학원출판사	외국문출판사
근로자사	공업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의학출판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
사로청출판사	체신출판사	외국문출판사
학생소년출판사	교통출판사	문예출판사
조선인민군출판사	무역출판사	군중문화출판사
여성출판사	농업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
	건설출판사	조선영화창작사
	중앙과학기술통보사	

体 育

體育政策

北韓의 體育은 住民의 思想敎養의 일환으로 또한 勞動과 朝防의 必要性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③

60年代 후반기부터 국방 체육을 위주로 하는 體育의 大衆化 政策으로 轉換했는데 ④ 그 種目으로서 登山, 野營, 行軍, 集團달리기, 사격, 무전통신, 자동차 및 트랙타運轉, 밧줄오르기, 장애이겨내기, 수류탄 던지기,山野 횡단 등이 있다.

때문에 북한은 체육은 체력단련이나 體育人的 養成만을 目的한 것이 아니라 사상교육과 국방력강화 등 다목적을 가지고 강력하게 조직화되고 있는데 특히 사상 교양을 목적으로 한 경기로서는

② 조선중앙년간(1976년판), p. 364

③ 사회주의 헌법 제47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문명리 준비시킨다.”

④ 1969. 11. 3 체육지도 위원장인 강양옥은 전국 체육인 대회에서 “체육사업을 철저히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는 전인민적 체육으로 전환되었다.”라고 강조(1969. 11. 4 로동청년).

〈金日成 同志께 드리는 便紙傳達 이어달리기〉와 〈갓고 集團달리기〉와 〈金日成 원수님께 끝없이 忠直할 近衛隊〉라는 題下의 집단 체조, 그밖에 〈革命戰跡地 달리기〉 등을 들 수 있다.

指導・養成機關

體育의 지도기관으로서는 〈體育指導委員會〉와 中央・道・市・

국제 기구 가입 현황

세 계 기 구		아 시 아 기 구	
기 구 명	가입 년도	기 구 명	가입 년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1957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1982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1965. 8		
(종목별국제연맹)		(종목별아시아연맹)	
육 상(IAAF)	1962. 9	육 상(AAAA)	1974
수 영(FINA)	1964. 1	수 영(AASF)	1980
축 구(FIFA)	1958	축 구(AFC)	1974
농 구(FIBA)	1956	배 구(AVC)	1955. 11
배 구(FIVA)	1956	탁 구(ATTU)	1972
탁 구(ITTE)	1957	핸 드 볼(AHF)	1976
핸 드 볼(IHF)	1974	사 이 클(ACF)	1974
사 이 클(FIAC)	1961	복 상(FAAB)	1974. 9
레 스 링(FILA)	1958	레 스 링(AWC)	1974
역 도(IWF)	1959	역 도(AWF)	1974
복 상(AIBA)	1957	유 도(AJU)	1977
유 도(IJF)	1964	사 격(ASC)	1974
궁 도(FITA)	1966	체 조(AGC)	1974
사 격(UIT)	1956	펜 싱(FCA)	1974. 9
체 조(FIG)	1958	베드민턴(ABC)	1975. 3
펜 싱(FIE)	1968		
베드민턴(IBF)	1974		
조 정(FISA)	1969		
빙 상(ISU)	1957		
아이스하키(IIHF)	1959		
스 키(FIS)	1964		
요 트(IYRU)	1963		
카 누	1964		

出處: 조선중앙년감자료 발췌, 작성.

郡 등으로 一元化 體系로 組織되어 있으며, 中央의 專門의인 體育團體와 함께 工場, 企業所·協同農場 및 各級學校마다 <體育小組>가 운영되고 있다.

體育人 養成機關으로는 최근에 신설한 중앙체육 학원과 평양체육대학(1958.9)과 각도의 체육전문 학교를 비롯한 체육과학 연구기관들이 있으며^㉔, 주요 체육시설로는 평양체육관과 각도 체육관, 지방의 종합경기장, 창광원, 수영장, 빙상관, 스키장 등의 시설이 있다.

競 技

國內競技로서는 季節과 記念日에 따라 冬季에는 氷上, 봄과 가을에는 陸上을 비롯한 一般 體育大會가 開催되는데, 4月에는 金日成의 生日 慶祝의 일환으로서 체육 축전이 거행되고 있다.

每年 갖는 중요한 體育大會는 다음과 같다.

- 1月 : 겨울종목 선수권대회, 청소년학생 빙상 및 스키경기대회
- 2月 : <白頭山상> 체육경기대회
- 3月 : 全國 청소년체육축전, 체육구락부생 종목별 체육경기대회
- 4月 : 全國體育祝典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 4月 : 전국高等體育專門學校 學生 體育競技大會
- 7月 : 전국대학생 <9월 5일> 체육경기대회
- 9月 : 전국체육 구락부생 체육경기대회
- 9月 : 全國民族 體育競技大會
- 9月 : 공화국 창건기념 전국고등 체육전문학교 학생 체육경기대회
- 10月 : 공화국창건체육 종목별 선수권대회
- 11月 : <2월 2일상> 체육 경기대회
- 12月 : 헌법절기념 속도 빙상 및 빙상하키경기

그밖에 소련, 중공 등 共產國家들 뿐만 아니라 中立國 또는 西

㉔ 조선중앙년감(1982년판) p. 267.

對內 主要 競技大會(1981)

大 會 名 稱	參加選手	日 時 및 場 所	備 考
'81년도 속도빙상 단거리 선수권 대회	100	1. 28—30. 삼지연	1개종목 기록경신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3,000	2. 10—28 평양청진동 7개지역	20개종목에서 38명기록경신
전국청소년학생체육 축전(김일성생일기념)	4,000	3. 1—4. 13 평양, 해주등 6개 지역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4,200	4. 9—27 평양, 신의주등 7개지역	
전국청소년학생수영경기대회	600	8. 20—25. 남포	10명 기록 경신
전국 육상 경기대회	1,200	9. 15—20. 함흥	
제 7차 “2월 2일상” 체육경기대회	800	11. 6— 평양, 남포등 4개지역	

出處 : 조선중앙년감 (1982년판)

主要 國際 競技大會(1981)

大 會 名	參加國 및 選手	開 催 國	備 考
국제유술경기대회	17개국 270명	(소 련)	60kg 2등, 무차별급 3등
제 7차 에손 국제마라톤 경기대회	20개국 2,500명	3. 15 (프랑스)	청소년 1, 2, 3등 일반 2, 6등
제 10차 “금며”쟁탈 국제 권투경기대회	15개국 110명	3. 22 (루마니아)	48kg 1, 2등 51kg 1등 63. 5kg 2등
제 36차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	6개국 500명	4. 14 (유 고)	여자단체 3등
제 11차 “황금모래상” 체조경기대회	21개국 100명	6. 5 (불가리아)	체조, 안마 1등 조각, 평행봉 2 종합 1등 1명
제 24차 국제 활쏘기경기 대회	6개국 100명	8. 6 (폴란드)	개인종합 1등 단체종합 2등
제 5차 군인하계 종합체육대회	21개국 1,000명	8. 14 (헝가리)	금 3, 은 5 동 4
제 51차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	15개국 500명	10. 4 (체 코)	3등 5등
제 14차 “킹스컵”대회	12개국 200명	11. 9 (대 국)	2등

出處 : 조선중앙년감 (1982년판)

方朝家들의 선수들을 초청하여 親善競技를 개최하고 있다.

國際競技에 있어서는 1968年 멕시코에서 열린 올림픽大會에 參

加하는 것을 시초로 世界 卓球選手權大會, 사격 선수권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 등 種目別, 地域別 경기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으나 우수종목에 선별적 참가를 하고 있다.

文化施設

文化施設로서는 各 地方마다 群衆文化會館이 있으며, 工場·企業所·協同農場 등에는 <구락부> 施設이 設置되어 있다.

또한 歷史博物館·圖書館·體育館·展示館·競技場·動植物園 등은 大部分 道에 設置되어 있는데, 70年代에 들어와서 이러한 文化施設들이 大型化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主要 文化 施設

區 分	名 稱	規 模	建 立 日
劇 場	○ 평양 대극장	○ 좌석 : 2,300餘席 ○ 무대 : 772m ²	○ 1960.8竣工
	○ 국립 교예극장	○ 座席 : 1,800餘席 ○ 공중 무대와 둥근 바닥무대 設置	○ 1964建立
	○ 모란봉 극장	○ 회전무대와 부설 야외극장 設置	○ 1960.8竣工
會 館	○ 인민문화궁전	○ 총건평 : 5만 2,000여m ² ○ 座席 : 3,000席, 방 500개	○ 1974.4.12建立
	○ 2.8문화회관	○ 총건평 : 8만m ² ○ 座席 : 60,00여석	○ 1975.10.7建立
	○ 평양학생소년궁전	○ 1日 1萬여명 수용	○ 1963.9.10開館
	○ 인민대학습당	○ 총건평 10萬m ² 600개의 방, 12,000명 수용	○ 1982建立
圖 書 館	○ 국립중앙도서관	○ 장서 : 227만권(72未현재)	○ 1946.10.13개관
	○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 장서 : 200만권(72未현재) ○ 좌석 : 1,000席	○ 1970.10.20개관
競 技 場	○ 평양체육관	○ 부지 면적 : 20여정보 ○ 건평 : 70,000m ² ○ 좌석 : 20,000석 ○ 스탠드 높이 : 40m	○ 1973.4.8開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경기장 ◦ 남포체육관 ◦ 빙상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16,000m² ◦ 수용인원 : 10만명 ◦ 스탠드 높이 : 30계단 ◦ 수용인원 : 3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4 모란봉경 기장을개칭 ◦ 1974년 開館
展覽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공업 및 농업전람관 ◦ 어머니전람관 ◦ 3대혁명전시관 ◦ 국제친선전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부분별 진열실 설치 ◦ 3개의 관으로 구성 ◦ 사상혁명관과 기술혁명관 으로 구성 ◦ 묘향산에 위치 연건평 28,000m² ◦ 높이 : 43 m ◦ 각국의 수만점선본 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6.5설치 ◦ 1961.11설치 ◦ 1974.3.8설치
動植物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동물원 ◦ 평양식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면적 : 275정보 ◦ 동물 종류 : 330여종 ◦ 부지 면적 : 120여정보 ◦ 식물 종류 : 2,000여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9.4.30창설

出處 : 조선중앙년감

主要 偶像化 施設

區 分	名 稱	規 模	建 立 日
博物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중앙력사박물관 ◦ 조선혁명박물관 ◦ 조선미술박물관 ◦ 조선민속박물관 (총 1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敷地面積 : 24만평 ◦總建坪 : 5萬 3,700m² ◦展示品 延長길이 : 4.5km ◦建坪 : 1萬 1,000m² ◦진열실 : 26개실 ◦진열품 종류 : 생활 용구류 위주 ◦原始社會, 奴隸社會, 封 建社會 10世紀 이후로 구 분하여 展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12.5開館 ◦ 1948.8.1創設 (1972.4.25새로 建立) ◦ 1954.9.28開館 ◦ 1956.2.10開館 (1970년 김일성 관제자료 위주 로 개편)
記念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창건 기념관 ◦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 만경대혁명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의 진열실 설치 ◦ 전평 : 5만 200m² ◦ 70여개의 진열실 設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設立 ◦ 1953.8開館 (1974.4.11 새 로 建立) ◦ 1974
戰蹟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革命戰蹟地(삼지연, 무산, 보천보, 왕재산, 월현사, 백두산봉화, 회령, 응기 등 9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동상(50m) ◦ 빨치산 동상 ◦ 기념비(높이 40m) ◦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비 ○ 김형진 동상 ○ 김정숙 // ○ 기념탑(높이 49m) 등 	
其 他	○ 萬景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생가 ○ 태형동상 ○ 만경대 혁명 기념관 ○ 만경대 유희장(改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 ○ 1972 ○ 1974 ○ 1982. 4. 8
	○ 개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대동강변 ○ 백색회강암의 4각지라인 ○ 높이 : 60m 	○ 1982. 4. 14제막식
	○ 主體思想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대동강변 ○ 높이 : 170m ○ 백색회강제암 	○ 1982. 4. 8제막식
	○ 김일성銅像 및 석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박물관 건너편 (높이 : 36m) ○ 그외 북한 전역에 약 35,000여개 	

出處 : 조선중앙년감

軍事

軍形成과 性格

形成過程

北韓은 政權樹立을 公式的으로 對內外에 宣布하기도 전인 1948年 2月 8日에 <朝鮮人民軍>이라는 軍隊를 創設하여 內外에 宣布하고, 평양에서 <人民軍>의 열병과 分열식을 거행하였다.①

그러나, <人民軍>의 創設作業은 解放 直後부터 <建黨·建國·建軍>이라는 3大課題가 提示되고 <마르크스·레닌주의思想으로 무장한 正規화된 革命的 軍隊>의 創設 必要性이 強調되었던 狀況에서 평양에 주둔한 소련 25軍司令部의 지도하에 <保安隊>가 1945年 10月 21日에 組織됨으로써 비롯되었다.

당시 소련군사령부는 1945年 10月 12日에 “北韓地域내에 있는 모든 武裝隊를 해산시킬 것, 모든 武器·彈藥·軍用物資들을 軍警務司令官에 바칠 것, 平民중에서 社會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臨時道委員會들은 소련군사령부와의 協議下에 既定된 人員數의 保安隊를 組織함을 許可한다”는 성명서를 發表하였다.② 이 聲明書에 따라 解放直後 北韓地域의 治安을 目的으로 組織되었던 <治安隊>·<自衛隊> 등 기왕의 武裝隊는 解散되고, 9日후인 10月 21日에는 北韓의 各地域에 새로 <保安隊>가 組織되었던 것으로 이 것이 <人民軍>의 母體이다.

그러므로, 1948年 12月말 蘇聯軍이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할③

① “조선인민군창건 열병식에서의 김일성 연설(1948. 2. 8),” 김일성선집, 2권(1964) pp. 73-76.
② “북한 주둔 소련 25군사령관의 성명(1945. 10. 12),” 조선중앙년감(1949년판), p. 58.
③ 소련은 북한의 요청을 받고 1948년 9월 18일부 回答에서 同年 2月末까지 철병을 완료하겠다고 회답, 조선중앙년감(1949년판), p. 49.

때까지 北韓의 〈人民軍〉은 蘇聯軍에 의해 組織되었으며, 蘇聯軍의 직접적인 指導下에 組織·訓練 등이 實施되었으므로 〈人民軍〉의 政治的·思想的·軍事的 起源은 소련군의 軍事思想이나 軍事制度에서 出發한 것이었다.

1946年 1月에는 各道에 〈鐵道保安隊〉가 창설되었고, 軍事政治 幹部の 養成을 위하여 〈平壤學院〉이 2月 8日에 設치되었다. 그 후 보안대 병력의 확충·훈련을 위하여 〈保安訓練所〉(신의주·정주·강계)를 6月 초순경에 設치하였고, 이어 〈中央保安幹部學校〉를 창설하여 軍事幹部和 政治幹部를 〈平壤學院〉에서 각각 양성하였다.

따라서, 보안대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1946年 8月 15日 各地域에 조직된 保安隊를 통합, 지도하기 위하여 평양에 〈保安幹部訓練大隊部〉를 創設하고, 价川·羅南·平壤에 〈保安幹部訓練所〉를, 江西에 〈保安幹部學校〉를 設치하였다.

1個月後인 1946年 9月下旬에는 〈保安幹部訓練大隊部〉를 〈人民集團軍總司令部〉로 改稱하고, 1947년부터는 소련의 군사원조로 新型武器로 무장하기 시작하여 급속한 發展을 하였으며, 1948年 2月 4日에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內에 〈民族保衛局〉을 新設하여 〈人民軍〉創建의 준비를 完了하고, 2月 8日에 〈人民集團軍〉을 〈朝鮮人民軍〉으로 개칭하고 正規軍으로의 創設을 선포하였다.

한편 海軍과 空軍의 創設過程은 다음과 같다.

北韓의 海軍은 1946年 7月에 〈水上保安隊司令部〉를 元山에 創設(東海水上保安隊; 元山, 西海水上保安隊; 南浦)한 데서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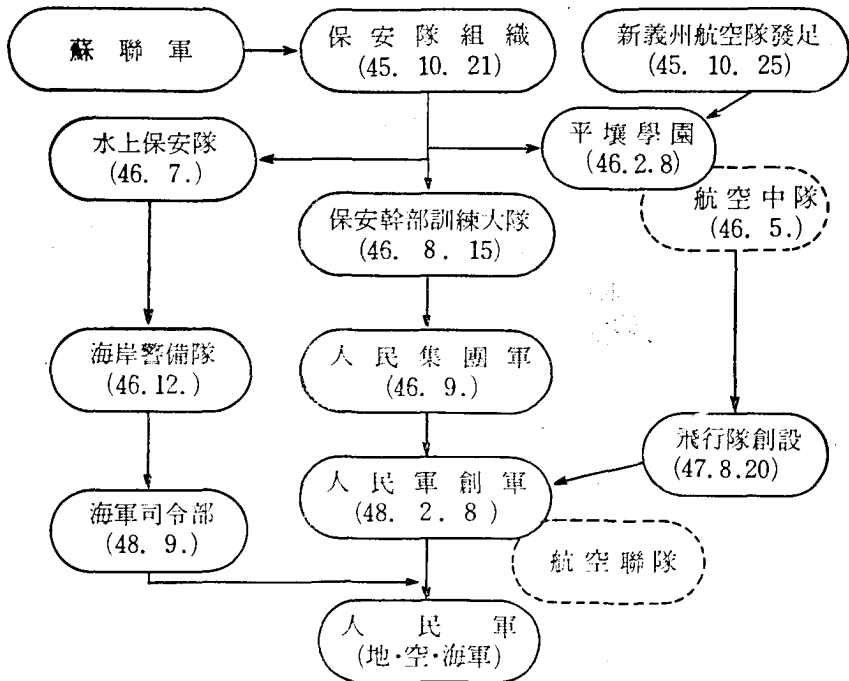
1946年 12月에는 〈水上保安隊〉를 〈海岸警備隊〉로 개칭함과 동시에 元山과 南浦의 〈水上保安隊〉를 〈警備衛守司令部〉로 개칭하고 淸津에 〈衛守司令部〉를 新設하였고, 1947년 6월에는 元山에 〈海岸警備隊幹部學校〉를 두었는데, 이것이 뒤에 〈海軍軍官學校〉로 되었다. 그 후 1948年 8月 北韓 共產政權의 수립으로 〈海岸警備隊〉는 〈海軍總司令部〉로 개칭되고 北韓〈人民軍〉의 海軍으로 發展

하였다.④

空軍은 1945年 10月 25日에 순수한 民間機構로 발족한 <新義州航空隊>가 그 嚆矢로서, 同 機構가 1946년 5월 <平壤學院>에 編入되어 <航空中隊>로 改編됨으로써 北韓 空軍의 正式 教育機關이 되었다.

1947年 8月 20日에는 소련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新義州航空隊>出身(약 300名)을 중심으로 <飛行隊>를 創設하고,⑤ 1948年 2月 8日 <朝鮮人民軍> 創設과 함께 <航空聯隊>로 增編함으로써 北韓의 正規空軍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人民軍形成過程



④ 북한의 <해안경비대>는 내무성 관할에 속하였으나, 1948년 8월 28일부터 민보성으로 이관되었다. 1972.6.3 정령으로 이 날을 海軍節로 정하였다.

⑤ 1972.5.25 政令에 의해 이 날을 空軍節로 정하였다.

北韓의 〈軍〉이 이와 같이 形成된 데 대해 金日成은 “조선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자신의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인민 군대를 창건한 것은 조국의 민주주의적 완전 자주독립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⑥라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1959年 1月 14日에는 民兵組織인 〈勞農赤衛隊〉를 創設하고, 1970年 9月 12日에는 〈붉은青年近衛隊〉를 組織하여 北韓의 全社會를 兵營化하였다.

人民軍의 性格

北韓의 〈軍〉은 〈黨의 軍隊〉, 〈革命的 軍隊〉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黨規約에 〈朝鮮人民軍은 朝鮮勞動黨의 革命的 武裝力〉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⑦

따라서, 〈軍〉은 〈黨〉의 절대적 支配下에 있을 뿐 아니라, 〈黨〉의 지시에 따라서만 行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點에 대해 金日成도 “조선인민군은 오직 조선로동당 앞에 충실하고, 오직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혁명의 길로 전진하여 당이 정취한 혁명의 열매를 보위하며, 혁명적 방법으로 낡은 사회를 전복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유일한 혁명군대.”^⑧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黨軍의·革命的 性格〉은 金日成의 唯一體制와 연결되며 〈金日成의 軍隊〉化하고 있다.

예컨대, 〈人民軍〉이 〈金日成의 軍隊〉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인민군은 수령이 조직해서 현대적 정규 무력으로 강화 발전 시킨 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며, 김일성의 군대”^⑨라는 것이다.

⑥ “인민군 창군 열병식에서의 金日成 演說(1948.2.8),” 김일성선집, 2권(1964), pp.73~76.

⑦ 조선로동당규약 7장 46조.

⑧ “조선인민군 324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의 김일성 연설(1958.2.8),” 김일성선집, 5권(1968), p.319.

⑨ “인민군 창건 47돌 기념보고 대회에서 서철보고(79.4.24),” 노동신문(79.4.25). 이러한 예는 인민군 창건일과 관련, 기념보고연설문과 노동신문에서 언제나 되풀이 되고 있다. 인민군창건 51돌기념 오극렬(총참모장)보고(1983.4.24),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김일성의군대, 당의 군대로서 비할 바 없이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制度的으로도 金日成이 <黨>의 <總秘書>겸 <黨軍事委員會 委員長>으로서 <黨軍事政策 執行方法의 決定, 軍需產業과 人民軍隊와 모든 武力의 強化를 위한 事業의 組織, 軍事力의 指導>를 장악하고 있으며, ⑩ 또한 政權의 <主席>인 동시에 <全般的 武力의 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 委員長>으로서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있다. ⑪

한편, 지난 1977년까지 2月 8日을 <人民軍> 創建日로 정해 기념하던 것을 1978년부터는 金日成이 1932년에 <抗日遊擊隊>를 창설했다는 4月 25日로 <人民軍> 創建日을 변경하여 기념하고 있는 것은 ⑫ <人民軍>의 성격을 <항일 빨치산투쟁 전통>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이며, 김일성에 대한 個人崇拜 運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金日成一金正日 世襲體制的 構築과 관련, 人民軍隊의 강화 發展을 金正日의 業績으로 내세우고 있다. ⑬

이와 같은 <黨의 軍隊>, <革命的 軍隊>, <金日成의 軍隊>로서의 北韓<人民軍>의 성격은 軍事制度나 軍事政策에도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⑩ 조선로동당규약 제 3장 27조.

⑪ 북한헌법 제93조.

⑫ 로동신문사설(1978.2.8), “우리 인민의 정규적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것은 1948년이지만, 우리 인민이 자기의 진정한 혁명무력을 가지게 된 것은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인민 혁명군을 창건하신 그 때부터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민 혁명군의 직접적 계승자인 조선 인민군의 창건일은 1932년 4월 25일이다.”

⑬ 조선로동당 6차대회에서의 오극렬(총창모장)보고, “이 같은 현대적 정규군을 주축으로 한 방위체계를 세워 놓은 것은 오로지 김일성을 받들어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에 의해 이룩한 위대한 건취물이다.”

軍事政策과 戰略

軍事政策

北韓의 軍事政策은 <모든 戰爭은 그 根源이 되는 政治制度와 不可分>하며, <平和 역시 다른 手段으로 하는 戰爭(階級鬭爭)의 계속>이라는 共產主義的 軍事思想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軍隊는 <黨>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黨>의 政治目標를 達成하는 수단이므로 <軍>의 獨自的인 軍事政策은 存在할 수가 없다.

<軍>의 形成以後 그 동안 추구한 軍事政策은 1962年 <國防에서 自衛原則>을 表明한 때를 기점으로 크게 前期와 後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人民軍의 創軍을 蘇聯軍이 직접 지도하였고, 1948年 12月까지 北韓에 주둔했기 때문에 6·25戰爭 때까지는 별다른 軍事政策이 있을 수 없었으므로 休戰 以後부터 61년까지를 前期로 볼 수 있다.

前期의 軍事政策은 戰後再建이란 狀況 속에서 軍事뿐만 아니라 經濟問題로 소련과 中공에 의지하는 依存政策을 基本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후 1958年 中共軍이 완전히 撤收함에 따라 兵力과 火力의 質的·量的 増大가 요구되어 1959년에 <勞農赤衛隊>를 창설하고, 1961 년에는 中蘇와 각각 軍事同盟條約을 체결하여 安全에 대한 보장을 中蘇에 依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依存政策이 自衛政策으로 전환된 것은 1962年 12月 黨中央委員會 4期 5次 全員會議에서 <조성된 경제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 원칙을 결의한 데서 비롯되었다.⑭

이 원칙에 따라 <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全軍의 現代化>라는 <黨>의 自衛的·革命的 軍事路線의 基本內容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963년부터 실천에 옮겨졌다.

4 大軍事路線의 基本內容⑮

全人民의 武裝化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무장시키는 것.
全國土의 要塞化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요새로 만드는 것.
全軍의 幹部化	인민군 대열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모두가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全軍의 現代化	인민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며,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수행하게 하는 것.

金日成은 1966年 10月 5日 黨代表者會議에서 “인민군대의 간부화, 현대화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이며, 전인민무장화, 전국토요새화는 군사전략상 가장 유력한 방위체계”라고 말하고, 이 4大軍事路線의 추진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⑯ 강조했다.

또한, 1970年 11月 黨 5次大會의 總和報告에서 김일성은 “4대 군사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 인민이 총을 쓸 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모든 지역에 철용성 같은 방위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 요새화하였다. 자립적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보위에 필요한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만들 수

⑭ 조선중앙년감(1963년판), pp.157~162.

⑮ 최현, “우리 당의 자주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요새화 하자” (1968.1.8) 및 김일성 저작선집, 4권(1969), p.86, pp.573~574.

⑯ 김일성저작선집, 4권(1969), pp.354~361.

있게 되었다^⑦고 말하였다.

이러한 4大軍事路線으로 表明된 北韓의 軍事政策은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目標로 하고 있는 것으로 4大軍事路線의 채택 이후 北韓의 軍事政策의 주요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다.

軍事政策의 主要 實戰方向

60 年代	70 年代 以後
<p>〈4大軍事路線의 貫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併進⁽¹⁾ ○ 戰爭을 위한 戰略物資의 備蓄⁽²⁾ ○ 全黨과 全人民의 動員된 戰爭態勢確立⁽³⁾ 	<p>〈4大軍事路線의 完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併進⁽⁴⁾ ○ 自立的 國防工業基地를 完成하여 획기적인 自衛力의 育成⁽⁵⁾ ○ 긴장되고 動員된 태세의 견지⁽⁶⁾

- 出處 : (1) 1966, 1967년 로동신문 신년호 사설.
 (2) 1965. 11. 당 4기 12차 전원회의 결의.
 (3) 1971년 김일성 신년사.
 (4) 1970. 11. 2 당 5차회의에서의 김일성 보고.
 (5) 1971년 김일성 신년사.
 (6) 1974, 1976, 1977년 김일성 신년사.

그리고 1980년 10월 黨 6차대회에서의 總和報告에서 金日成은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함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하고, 80年代 人民軍의 當面課業으로서 1) 軍隊內의 唯一思想體系의 確立, 2) 戰鬥政治訓練의 強化, 3) 軍事技術水準의 向上, 4) 部隊의 戰鬥力과 戰鬥準備 強化 등을 強調하였다.^⑧

軍事戰略

北韓의 軍事戰略은 金日成의 戰爭觀에서 出發한다. 金日成의 戰爭觀이란 <마르크스·레닌 主義>에 立脚한 <革命戰爭論>이다. 北韓은 6·25奇襲南侵을 <祖國解放戰爭>이니 <正義의 戰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⑨

⑦ 로동신문(1970. 11. 3); 김일성 저작선집, 5권(1972), pp. 437~475.

⑧ 로동신문(1980. 10. 11)

⑨ 同族相殘의 慘禍를 가져 왔고 아직도 그 상흔이 가시지 않고 있는 6·25 戰爭은 스탈린의 사주와 지원하에 北韓의 奇襲南侵으로 일어난 것인데도, 北韓은 「美帝」의 사주하에 南韓에서 일으킨

北韓의 軍事戰略은 당초 速攻機動攻勢戰略과 包圍殲滅戰略을 內容으로 하는 소련의 野外敎訓에서 出發하였으나, 後 6·25의 경험과 越南戰의 戰法 등을 적용하여 1960年代에 와서 〈現代戰과 革命戰의 配合〉이라는 基本戰略戰術을 설정하였다.

北韓이 韓半島 實情에 맞는 戰略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6·25 動亂의 실패 경험에 대한 反省에서 비롯되었다. 1950年 12月 3次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金日成은 6·25動亂의 失敗에 대한 戰略의 反省에 기초하여 새로운 戰略의 課題를 제시했는데,^㉑ 이것이 오늘까지 北韓 軍事戰略의 근간이 되고 있다.

1958年 中共軍이 주둔하고 있을 때까지는 中共軍과 〈人民軍〉과 의 聯合行動作戰을 전제로 한 戰略이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말에 中共軍이 철수하고, 1960年代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人民軍〉의 獨自의인 戰略을 확립하였다.

金日成은 1969年 1월 人民軍黨 4期 4次 全員會議 때의 結論 演說에서 소위 〈祖國解放戰爭〉의 경험을 되풀이하면서 〈戰爭勝利의 決定的 要因은 現代戰과 遊擊戰을 配合〉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防禦戰과 正規化部隊·遊擊部隊의 配合作戰〉, 〈小部隊와 大 部隊의 必要性〉, 〈輕步兵部隊의 조직과 武器의 輕量化〉, 〈曲射砲와 低空飛行의 증강〉, 〈山岳戰의 重視〉 등을 강조하였다.^㉒

또한, 金日成은 1970年 黨 5次大會에서 “우리 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이다.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을 잘

것이라는 誇示心전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6·25戰爭이 北韓에 의한 南侵戰爭임을 共產圈에서 公開의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한 예로서 유고슬라비아의 「보예스닉」 紙는 6·25戰爭 33주년을 맞아 韓半島 특집기사에서 「38선 侵犯」이란 표제하에 “北韓軍이 38線を 넘어 侵略을 감행함으로써 위급한 韓國戰爭이 일어났다”고 보도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78년 學術院 發刊의 「大百科事典」에서도 “韓國戰爭은 1950년 6월 25일 北韓軍隊가 38線を 넘어 南侵함으로써 발발되었다”고 事實대로 記錄하고 있다(朝鮮日報, 1983. 8. 11 社說).

㉑ 조선중앙년감(1953년판), pp. 23~37, 소위〈別午里會議〉라고 한다. 別午里會議에서의 金日成의 戰略戰術의 再評價는 다음과 같다. (1) 民兵隊와 같은 豫備部隊의 不足, (2) 敵空軍의 優勢에 대한 不適切한 準備, (3) 現代戰 遂行에 있어 軍司令官에 能力있는 指揮力 결핍 (4) 軍裝備의 落後, (5) 部隊의 엄격한 規律를 確立하지 못한 점 (6) 山地戰과 夜間戰鬪에 대한 訓練이 不足하고 準備를 하지 못한 점, (7) 後方供給活動과 防衛를 위한 不充分한 組織, (8) 部隊에 대한 不滿足한 政治敎育.

㉒ 1969. 3. 귀순용사 노관봉 소지문건.

이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행하며,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 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옹계 배합한다면 실령 최선 기술로 무장한 적일지라도 얼마든지 섬멸할 수 있다. 조국해방전쟁 경험과 오늘의 월남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㉔고 주장함으로써 軍事戰略戰術의 구체적 방향을 提示하였다.

김일성의 군사전략전술을 綜合的으로 表現한 것이 1971年 인민군 창건 23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의 韓益洙의 報告이다. 즉, “집중과 분산, 적극적 방어와 배후 교란의 배합, 대소 부대 활동의 결합,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즉시적 반공격전과 연속적 타격전, 적배후의 제 2 전선 형성, 유격전 저격수 및 유동포 활동, 비행기·탱크 사냥운동 등 김일성의 전략전술전법은 현대전과 혁명전쟁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㉕고 강조했다.

요컨대, 北韓의 軍事戰略戰術은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配合戰略戰術>이며, 이에 입각한 大量奇襲 先制攻擊과 速戰速決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은 이와 같은 戰略戰術에 의거하여 <人民軍>의 編制·裝備·配置 등을 修正·補完해 왔다.

㉔ “朝鮮勞動黨 5次大會報告”, 료동신문(1970. 11. 3).

㉕ 료동신문(71. 2. 8).

軍事組織體系

軍事機構

北韓의 軍事機構는 勞動黨 組織을 통한 政治指導體系와 政權機關을 통한 軍事指揮體系로 二元化되어 있다.

모든 <武力>은 사실상 <首領(金日成)>에게 복종하며, 勞動黨의 지도와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軍>에 대한 黨의 指導와 統制는 軍事幹部의 <黨>內의 정치적 지위를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예컨대, 일체의 武力을 지휘·통솔하는 <主席>은 <黨>의 第1人者인 黨 總秘書이다. 그리고 中央人民委員會 國防委員會 副委員

勞動黨內 軍事幹部 變化推移

()안은 정원

區分	期別	1次大會	2次大會	3次大會	4次大會	5次大會	6次大會 ⁽²⁾
政治局	正委員	0(5)	0(8)	1(11)	1(11)	3(10)	7(19)
	候補委員	0(0)	0(0)	0(4)	0(4)	0(5)	3(15)
	計	0(5)	0(8)	1(15)	1(15)	3(15)	10(34)
中央委員會	正委員	7(43)	9(64)	7(71)	19(85)	24(117)	26(145)
	候補委員	0(0)	1(20)	9(45)	8(50)	4(55)	16(103)
	計	7(43)	10(84)	16(116)	27(135)	28(172)	42(248)

註：(1) 1, 2, 4, 5次大會에서는 政治委員會, 3次大會에서는 常務委員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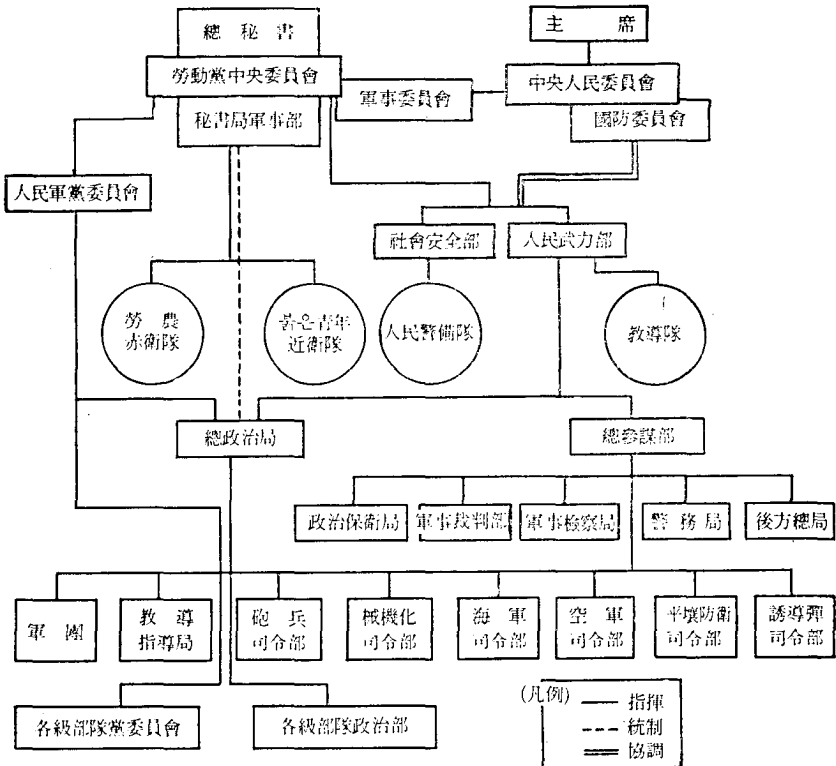
(2) 6次大會에서 선출된 政治局 委員중 軍事人物은 正委員：오진우, 최현, 서철, 오백룡, 전문섭, 오국렬, 백학림; 候補委員：최광, 김철만, 김강한 등임.

軍事組織體系

長, 人民武力部長, 總參謀長, 總政治局長 등 主要 軍事幹部는 黨 政治局 委員 또는 黨 軍事委員會 委員을 겸직하고 있다. ④ 黨 6 次大會에서 選출된 政治委員과 中央委員會 委員중에는 軍事幹部의 比率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政策의 樹立에 있어 軍部の 影響이 크게 作用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1972年 12月 改正된 憲法에 따르면 <主席>은 <全般的 武力의 總司令官>, <中央人民委員會 國防委員會 委員長>인 동시에 <일체의 武力을 指揮 統率>하도록 되어 있어 <主席>으로서의 金日성의 位

軍事組織體系



④ 黨 軍事委員會의 名單은 중례 발표한 적이 없으나, 黨 6次大會에서 처음으로 19명의 名單을 公式 發表하였고, 여기에 金正日을 序列 2位로 포함시켰으므로 그의 軍部 장악을 制度化하고 있다.

置와 地位는 더 한층 강화되었다.②

또한 主權의 最高 指導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의 委員長으로서의 <주석>은 <國防 및 國家政治保衛事業을 지도>하며, <중요 軍事幹部를 임명 및 해임>하며, <將領軍事稱號를 수여>하게 되어 있다.③

따라서, 김일성은 북한의 <武力>의 사실상의 最高 指揮者일뿐만 아니라, 法的으로도 절대적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北韓은 1962年 黨 4期 5次 全員會議 이후 4大軍事路線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中央 및 道(直轄市)·市(區域)·郡 單位的 黨委員會에 <軍事委員會>를 설치하였다.④

<黨 中央委員會 軍事委員會>는 <黨 軍事政策의 執行方法의 決定>, <軍需産業과 人民軍隊와 모든 무력의 강화를 위한 事業의 組織>, <軍事力の 指導> 등 기본적인 軍事政策을 다루게 되어 있으며,⑤ 各級 地方黨委員會의 <軍事委員會>는 <黨 中央委員會 軍事委員會>의 指導를 받아 戰時動員體制의 檢討, 民兵組織의 運營管理, 民兵訓練 등의 임무를 遂行하게 되어 있다.

1972年 12月 개정된 새 헌법에 따라 <中央人民委員會>內에 신설된 <國防委員會>는 委員長을 <주석>이 겸직하게 되어 있으며,⑥ 副委員長은 통상 人民武力部長, 總參謀長, 民兵組織의 책임자 등이 되는데, <주석>의 提議에 의하여 最高人民會議가 <선출·소환>하게 되어 있고,⑦ 기타 委員은 中央人民委員會가 <임명·해임>하게 되어 있다.⑧

<國防委員會>는 形式上으로는 中央人民委員會의 임무를 돕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黨軍事委員會>가 결정한 基本軍事政策을 심의·결정하고 해당부서의 <國防事業>을 지도하며, 유사시

② 北韓憲法 第93條.

③ 北韓헌법 제103조.

④ 1950年 6月 26日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의 <政令>에 의해 조직된 戰時機構인 政權機關의 <軍事委員會>와는 별개의 것이다.

⑤ 조선로동당 규약 제3장 27조.

⑥ 北韓헌법 제93조.

⑦ 北韓헌법 제76조.

⑧ 北韓헌법 제105조.

軍事組織體系

에는 戰時狀態 및 動員令을 宣布하는 등의 任務을 수행하는 <國防>의 最高 指導機關이다.

<人民武力部>는 <主席> 및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下에 軍事業務를 執行하는 政務院의 部署이었으나, 1982년 4월 最高人民會議 第7期 1次會議를 기하여 金正日의 軍部 장악을 위한 方便으로 黨中央委員會 또는 黨秘書局 直屬部署로 移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黨中央委員會의 統制下에 있으며, 人民武力部の 소속하에 조직되는 <朝鮮人民軍 總政治局>은 軍隊內 각 단위의 <政治部> 등 <政治機關>을 통하여 軍隊內 黨 政治事業을 조직·지도하는 機關이다. ㉔

歷代 人民武力部長 및 總參謀長

崔庸健	(48.2)	○김일성과 ○北朝鮮民主黨中央委員長 (48-55) ○노동당中央委員副委員長 (56.4) ○國家副主席 (72)
姜健	(50.6)	○김일성과 ○노동당中央委員 (2차대회) ○전사
南日	(59.5)	○소련과 ○노동당中央委員 (2차대회) ○外務相 ○副首相 ○死亡
金光俠	(57.9)	○김일성과 ○전선사령관 (51) ○副首相 ○黨政治委員 (3, 4차대회) ○속칭 (67.12)
李樞武	(57.9)	○연안과 ○黨中央委員 (2, 3차대회) ○2집단군리송官 (56)
金昌奎	(62.10)	○김일성과 ○2집단군사령관 (58) ○黨中央委員 (4차) ○부수상 (86) 속칭 (68.12)
崔光	(63.2)	○김일성과 ○1집단군참모장 (54) ○黨中央委員 (4차대회) ○속칭 (69.3)
崔賢	(68.12)	○김일성과 ○노동당중앙위원 (3, 4, 5차대회) ○재신상 (58) ○국방위부위원장 (72)
吳振宇	(76.5)	○김일성과 ○노동당중앙위원 (4, 5차) ○총정치국장 (67) 국방위부위원장 (72) ○黨政治委員 및 軍事委員 (6차)
吳克列	(79.9)	○혁명안찰총심 ○공군사령관 (71.8) ○당중앙위부보위원 (5차대회) ○黨政治委員 및 軍事委員 (6차)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1 82 83

人民武力部長(72년에 民保省을 改稱) 總參謀長

軍隊內 政治組織

<黨의 革命武裝力>인 <人民軍隊>內에는 <黨> 組織을 통한 政治 指導體系로서 各種의 政治機構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機構를

㉔ 조선로동당 규약 제 8조 51.

통해서 <黨>이 <軍>을 統制하고 政治事業을 展開하고 있다.

軍隊內 政治組織으로는 <黨>組織과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조직이 있다.

軍隊內 <黨>組織은 6·25動亂 期間에 조직되기 시작했는데, ⑳ <인민군당위원회>로 정식 조직이 完了된 것은 1958년에 와서였다. 이리하여, 1961年 4次 黨大會에 와서는 黨規約에 軍隊內의 <당> 조직에 관한 사항을 明示하게 되었다.

4차 당대회 당시 民族保衛相이었던 金光俠은 보고를 통하여 새로 조직된 <人民軍黨委員會>는 <軍事政治的 指導機關>으로서 <人民軍隊>의 강화 발전에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軍隊內 모든 事業에 획기적인 轉換을 가져 왔다고 말하였다.㉑

軍隊內의 <黨>組織으로는 中央에 <人民軍隊內의 全體 黨組織>을 唯一的으로 망라하는 <朝鮮人民軍黨委員會>가 있고, ⑳ 大隊級 以上에는 黨委員會가, 中隊·小隊 單位에는 黨細胞와 黨分組가 각각 組織되어 있는데 各級 黨組織들은 <地方 黨組織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게 되어 있다.㉒

<朝鮮人民軍黨委員會>는 <조선로동당> 中央委員會에 <直屬>하며, 그 <指導 밑에 事業>을 하게 되어 있다.㉓

軍隊內 各級 <黨>組織은 <黨의 唯一思想體系 確立>, <軍隊列의 擴大 強化>, <軍事事業의 黨指導 強化>, <黨의 軍事路線 貫徹>, <社勞靑組織의 強化 指導>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㉔

軍隊內에는 <黨委員會>와는 별도로 <政治機關>을 조직하고 있는데, 人民武力部 산하에는 <黨>의 政治事業을 <唯一的으로 組織 指導>하는 <朝鮮人民軍總政治局>이 있고, 大隊級 이상의 部隊에

㉑ 1950. 10. 黨中央委員會 決定에 따라 軍隊內의 黨組織이 착수되었다. 조선로동당 역사교과(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4), p. 265.

㉒ 조선로동당 제 4차대회 토론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2. 7. 5), p. 93.

㉓ 조선로동당 규약 제 7장 47.

㉔ 조선로동당 규약 제 7장 50.

㉕ 조선로동당 규약 제 7장 47.

㉖ 조선로동당 규약 제 7장 48.

는 <政治部>가 있다. 政治機關은 <黨의 政策>, <黨의 決定>을 집행하는 <黨>의 부서로서 參謀部와는 關係가 없다.^⑩

1969년부터는 군대내에 <政治委員制>를 도입하였는데, 사단과 연대 단위에는 <政治委員>, 대대와 중대 단위에는 <政治指導員>을 중앙당에서 직접 파견·배치하여 作戰·訓練 등 모든 軍事業務와 군대내 政治事業을 조정·감독하도록 하였다.^⑪

따라서, 軍隊內 <黨>組織은 二重 三重으로 되어 있는데, 예컨대 師團의 경우, 사단 당위원회 責任秘書, 政治委員, 政治部長 등이 있다. 그리고 <軍>의 모든 命令書는 軍事幹部뿐만 아니라 政治委員의 서명이 있어야 效力을 발생하게 되어 있다.^⑫

軍隊內 <軍官(장교)>은 모두 黨員이며, <下戰士(사병)>의 경우도 兵種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육군의 경우 20~30%, 특수부대나 해공군의 경우는 60~70%가 黨員이다.

軍隊內에는 部隊單位에 따라 <社勞靑>이 조직되어 있는데, <사로청>조직은 각급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 밑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⑬ 軍隊內의 非黨員을 <黨>의 指導 밑에 結束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軍事編制

北韓의 <人民軍>은 地上軍·海軍·空軍을 <人民軍總參謀長>이 총괄 指揮하는 單一統合軍體制이다. <人民軍最高司令官>은 <主席>이다.

平時에는 中央人民委員會의 國防委員會, 政務院의 人民武力部를 통해 <人民軍總參謀長>이 <人民軍>全體에 대한 軍政과 軍令權을 행사한다.

戰時에는 中央人民委員會의 國防委員會를 중심으로 <軍事委員

⑩ 1969. 1.6~1.14 조선인민군당 4기 4차 전원회의에서 金日成 發言.

⑪ 상기 회의에서의 金日成 指示.

⑫ 상기 회의에서의 金日成 指示.

⑬ <사로청> 규약 제 7장 48조; 로동신문(1964. 5. 17); 상기회의에서의 金일성 연설.

會)를 조직하고 〈人民軍最高司令部〉가 直接 〈人民軍總參謀長〉을 통해 〈人民軍隊〉와 〈勞農赤衛隊〉 등의 豫備兵力을 포함한 全(武裝力)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人民軍〉의 編制는 〈總參謀長〉隸下에 前後方の 8 個 軍團, 教導指導局(特殊 8 軍團), 砲兵司令部, 機械化司令部, 海軍司令部, 空軍司令部, 平壤防衛司令部, 誘導彈司令部가 있다.

이 가운데서 前後方の 8 個 軍團, 教導指導局(特殊 8 軍團) 砲兵司令部, 機械化司令部, 平壤防衛司令部, 誘導彈司令部는 地上軍에 該當한다.

軍團은 基本戰術司令部로서 戰術 및 支援兵科部隊가 協同된 最大規模의 部隊로서 戰術 및 行政機能을 同時에 遂行하게 되어 있는데, 隸下에는 步兵師團/旅團, 機動化師團, 輕步兵旅團, 狙擊旅團 등이 있다.

特殊 8 軍團은 正規軍과의 配合作戰, 非正規戰인 遊擊戰, 特攻隊作戰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隸下에는 特殊旅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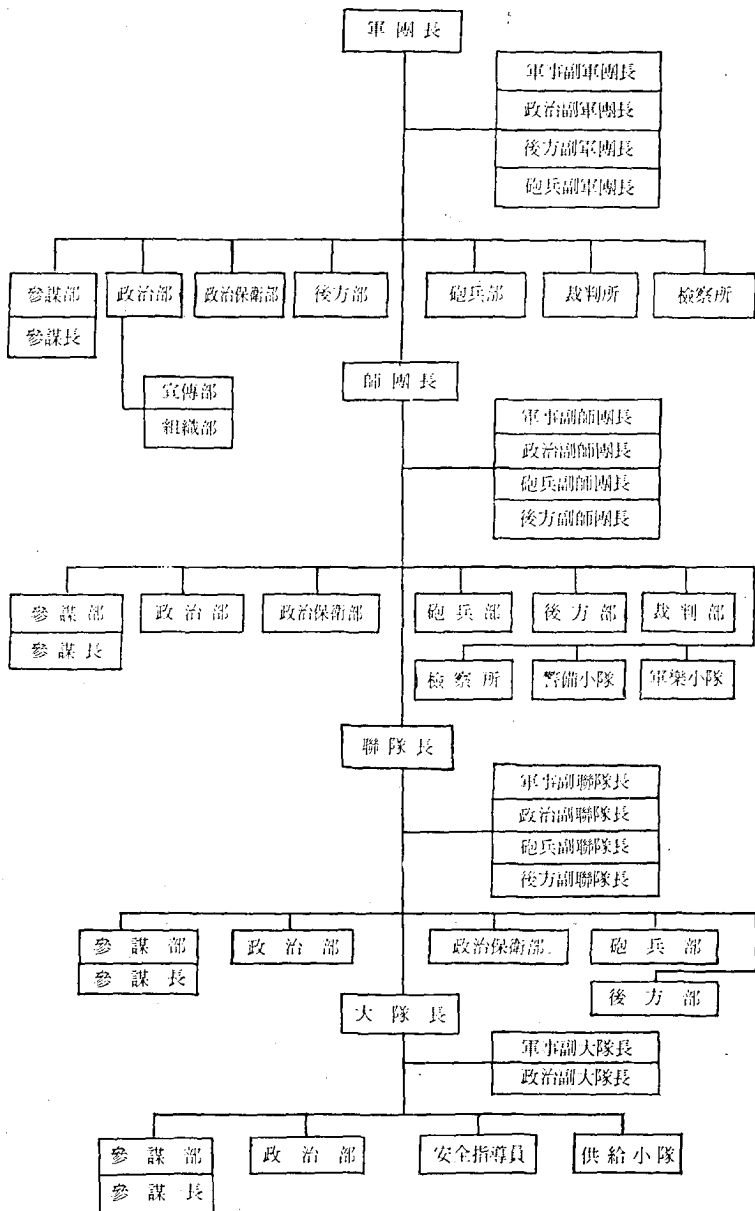
機械化司令部 예하에는 戰車師團/旅團, 獨立戰車聯隊, 機械化步兵大隊 등으로 編成되어 있으며, 戰車部隊는 여러 兵科들로 編成되어 있어서 協同作戰은 물론이고 機動部隊로서의 독자적 作戰遂行이 可能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砲兵司令部 隸下에는 高射砲師團, 女子高射砲旅團, 高射砲聯隊, 砲兵大隊, FROG 大隊 등이 있으며, 誘導彈司令部 예하에는 SAM 旅團, 技術支援大隊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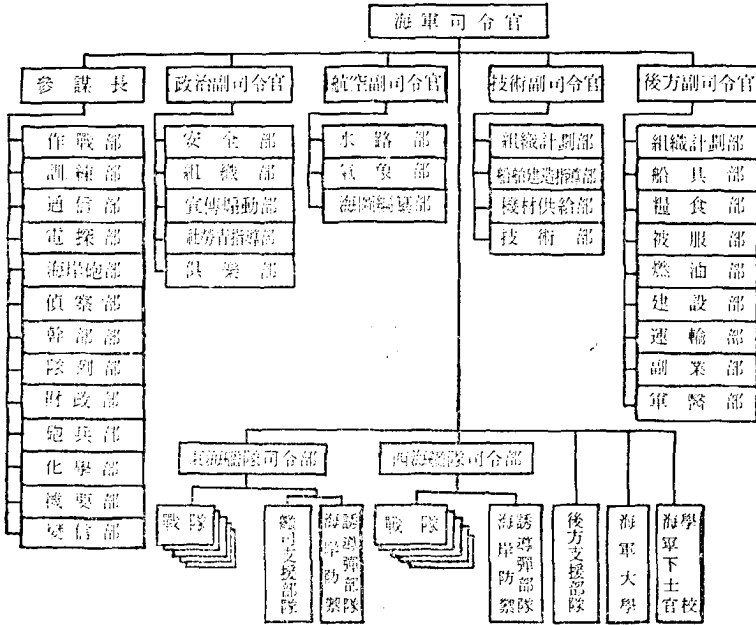
海軍은 海軍司令部 예하에 東海艦隊司令部和 西海艦隊司令部가 있으며, 各 艦隊司令部 예하에는 戰隊와 基地로 編成되어 있다.

空軍은 空軍司令部 예하에 戰鬪機師團, 爆擊機師團, 輸送師團으로 編成되어 있으며, 電波深知機·通信·建設 등의 聯隊와 空軍基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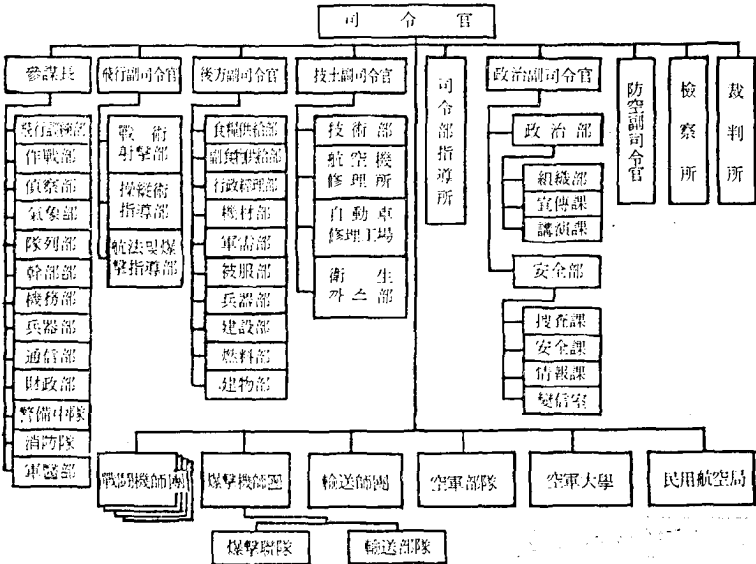
軍團指揮體系



海軍指揮體制



空軍指揮體制



軍事現況

兵役 및 訓練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徵集 연령은 18~20세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14세에 징집대상자로 登錄을 하고, 만 16세가 되면 모든 남자는 軍入隊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17세에 師團 또는 軍團에 現地入隊를 하게 된다.④

그러나, 成分不良者 및 進學하여 특수 분야를 전공하는 者는 징집에서 제외되고 있다.

士兵의 복무 연한은 年齡制로서 兵種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년 (17세~27세)이며, 특수병의 경우는 10년이상으로 연장된다.

軍服務에 있어서는 精神的 武裝과 紀律이 강조되고 있는데, 1975년 2월 5기 10차 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① 강인한 혁명 정신, ②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③ 무쇠같은 체력, ④ 백발 백중의 사격술, ⑤ 강철같은 기율 등 <戰鬪力 強化 5大方針>이 제시 되었다.④

또한 1977년 11월 인민군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은 <人民軍最高司令官>의 이름으로 ① 軍事規程의 철저한 준수, ② 武器의 精通과 철저한 管理, ③ 軍事命令의 철저한 執行, ④ 黨 및 政治組織들에 준 분공의 어김없는 執行, ⑤ 國家機密·軍事秘密·黨組織秘密의 엄숙한 지킴, ⑥ 社會主義의 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⑦ 軍事政治訓練에의 어김없는 參與, ⑧ 人民에 대한 사랑 및 人民財產의

④ 만 16세가 되면 고등중학교를 졸업함으로써 의무교육이 끝나게 된다.

④ 로동신문(1975.2.8).

侵害禁止, ⑨ 國家財産과 軍需物資의 철저한 보호, ⑩ 軍隊 안의 一致團結 등과 같은 <軍務生活 10대 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 ⑤

北韓은 <全黨과 온 社會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우고 <革命 隊伍를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⑥ 人民軍의 철저한 전투태세 강화를 위해 <생산도 학습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 아래 <전투력 강화 5대방침>과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⑦

그리고 최근에는 혁명의 승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 대오>의 통일 단결과 순결성의 유지라고 주장하면서 人民軍內的 <主體的 革命思想>의 確立을 강조하고 있다. ⑧

軍服務를 마치게 되면 除隊와 동시에 職場에 配置를 받게 되며, 배치받은 직장에서 1~2년간 근무를 해야 大學進學이 허용된다.

軍服務 중에는 全 服務期間을 통하여 총 15일 정도의 휴가가 허용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것마저 중지되고 있다.

軍 指揮官은 <김일성 정치대학>·<강건 종합군관학교> 등 각종 軍事學校를 통하여 양성되는데, 이들 軍事學校에는 3~4년간의 정규 군관양성과정 이외에 1년 정도의 단기 군관양성과정도 있으며, 6개월~1년간의 보수교육과정을 두어 지휘관의 再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兵器生産

休戰 후부터 兵器의 自給自足を 위해 많은 兵器生産工場들을 건설해 오다가 1960年代 中蘇 關係가 惡化되자 더욱 兵器産業에 注力하게 되었다.

⑤ 김일성 저작선집, 7권(1978), pp. 418~423.

⑥ “인민군창건 47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서천연설(79. 4. 24)”, 로동신문(79. 4. 25). 인민군 창건일에 즈음하여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⑦ 조선로동당 6차대회에서의 人民軍總參謀長 오극렬의 討論, “70년대는 우리 혁명무력 건설 역사에서 군의 전투력강화 5대방침과 군무생활 10대준수사항의 관철로 새로운 회기적 전환을 가져온 시기이다.……인민군대는 이제 무적의 군대로 강화 발전되었고, 우리의 국방력은 사상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⑧ 로동신문논설(1983. 2. 15).

그리하여 1960年代는 4大軍事路線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군수 공장을 더욱 擴張시키는 한편, 주요 금속공장·공작기계공장·정밀기계공장·자동차공장·트랙터공장·통신기계공장 및 조선소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軍需品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했다.

70年代부터는 새로운 무기의 開發에 주력하는 한편 兵器生産工場을 확대하였는데, 兵器工場들은 주로 輿地帶인 慈江道一帶에 密集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北韓은 現在 航空機나 電子裝備, 火力統制裝備와 같은 高度의 精密兵器를 제외하고는 탱크와 砲를 포함한 모든 軍事裝

主要 兵器工場 現況

工場名	位置	規模	施設	生産品	年間生産能力
13號兵器工場	滿浦市	1級	地上 地下	더블베스 싱글베스爆藥, 小銃彈	
17號兵器工場	與南市	1級	地上	더블베스 싱글베스爆藥, 各種 實彈, 雷管, 導火 線, 다이 나마이트, 砲安 爆彈	
26號兵器工場	江界市	特級	地上 地下	迫擊砲, 高射機關銃, 機 關短銃, 各種 砲彈	
42號兵器工場	長江郡	特級	地下	地雷, 手榴彈, 迫擊砲彈 및 케이스	
65號兵器工場	前川郡	特級	地上 地下	AK 小銃, 小銃用大劍, 迫擊砲, 手榴彈, 地雷, 機關砲, 各種 實彈	○ AK 小銃: 12挺 ○ 對空機關砲: 100門
67號兵器工場	江東郡	特級	地上 地下	重輕機關銃, 高射機關銃, 多發銃, AK 小銃, 手榴 彈, 砲彈, 各種 實彈	○ 機關銃: 2,000挺
81號兵器工場	城干郡	特級	地下	迫擊砲, 無反動銃, 40mm 對戰車로켓트發射器, 機 關短銃, 小銃, 多發銃, 各種 砲身	○ 對戰車로켓트發 射器(未詳) ○ 迫擊砲: 780門 ○ 無反動銃: 350門
93號兵器工場	江界市	特級	地上 地下	地雷, 手榴彈, 小銃砲彈 各種實彈	
龍城機械	與南市		地上	122mm砲 152mm砲 130mm砲	○ 520門
龜城戰車	龜城市	1級	地上	T-59型戰車部品, 組立	
新興裝甲車	新興郡	1級	地上	M-1973型裝甲車部品, 組立	
勝利自動車	德川郡	1級	地上	IK-61型水陸兩用車部品, 組立	

出處: 韓國研究機關資料

備를 사실상 自體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④

兵力 및 裝備

北韓은 지난 10년간 兵力과 裝備를 크게 증강하여 軍事力이 세계 제 4위~5위로서 總兵力이 78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⑤

北韓의 軍事力이 엄청나게 증강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기 시작한 것은 美國의 軍事情報分析機關(CIA, DIA)이 北韓의 軍事力을 再評價하고 있다는 事實이 1979년초에 처음 밝혀진 데서 비롯된다.⑥

당시의 再評價에서도 이미 北韓은 地上軍의 현저한 증강과 동시에 자체 生産한 탱크 및 장갑차와 長距離 自走砲 그리고 各種

79년의 北韓軍事力再評價

區 分	從前評價(77)	새評價(79)	備 考
師 團, 旅 團	28~29개	37개	비정규부대 제외
兵 力	45만~52만명	55만~60만명 (또는60만~65만명)	3개師團을 休戰線에 追加配置
特 攻 隊	5만 8천명	7만 3천명	
戰 車	2,000대	2,600대~2,700대	T-62탱크자체생산
各 種 砲	3,400문	3,800문~4,000문	35%증강
多 로 켓 트 發 射 器 (107미리, 122미리)	1,400대	1,700대	20%증강
裝 甲 車	800대	960대	20%증강

出處：朝鮮日報(1979. 5. 24).

브라운 美國務省代辯人 發表(서울신문 1979. 6. 13).

美下院軍事委員會調查小委員會聽聞錄(1979. 6. 21, 7. 17) p. 5 및 p. 8.

④ 존 워킹 駐韓美軍司令官의 韓美協會 招請 演說(1979. 10. 24).

⑤ 데이비드 존즈 美合參議長은 <美國의 軍事態勢報告>(1979. 1. 25 議會提出)에서 세계 제 4위라 했고, 美下院軍事委員會 調查小委員會 聽聞錄(1979. 6. 21, 7. 17)에는 세계 제 5위라 했다.

⑥ 이 事實을 처음 보도한 것은 美國의 軍事專門 週刊紙인 아미 타임즈(79. 1. 2)와 워싱턴 포스트(1979. 1. 14)이다. 이와 관련, 北韓은 600여개의 機動大隊을 보유하고 있으며, 韓國軍을 休戰線에 묶어둔 채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軍事力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美下院軍事委員會 調查小委員會 聽聞錄 (1979. 6. 21, 7. 17), p. 9.

艦艇과 潛水艦 등 北韓의 經濟力에 어울리지 않는 大規模의 軍事力을 增強하여⁵² 중소의 지원없이도 對南單獨戰爭 挑發이 가능한 能力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³

軍事力의 增強特徵으로는 兵力에 있어서는 奇襲攻擊 및 特攻隊作戰에 알맞도록 編成된 空輸部隊와 輕步兵旅團이 急增하였고⁵⁴, 裝備에 있어서는 戰鬪機動力과 砲火力이 增強되어 戰術的 奇襲攻擊과 先制攻擊의 電擊戰 能力이 強化되었다⁵⁵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의 分析評價에 의하면,⁵⁶ 北韓의 軍事力은 더욱 增強되어 지난 10년간 兵力規模에서는 2배로 增強되어 78만명을 넘고, 地上軍의 武器도 약 2배로 增強되었으며, 또한 攻擊의으로 武裝·訓練되어 休戰線에 前進配置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北韓은 지난 3년간 地上軍의 機械化計劃에 박차를 가하여 소련製 T-62를 모방하여 自體 生産한 탱크가 엄청난 數字로 늘어 났으며, 20여개의 特攻旅團과 特殊部隊의 集中訓練으로 韓國의 後方을 大的으로 공격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空軍力은 MIG-21을 모방한 中共製 F-7戰鬪機를 25~30대를 새로 導入하여 戰鬪機는 700여대로 늘어났고, 海軍力은 500척 이상의 戰鬪艦艇뿐만 아니라 21척의 潛水艦을 保有하고 있어 韓國沿海의 선박 出入을 봉쇄함과 동시에 攻擊用 機雷를 부설할 수 있는 能力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 歸順勇士의 證言에 의하면⁵⁷, 北韓은 全地域을 要塞化하고 主要 軍事施設을 地下化했으며, 10萬名에 이르는 特殊部隊로 前後方이 없는 立體戰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外國支援軍이 韓國에 도착하기 전에 부산까지 내려갈 時間計劃表와 戰爭終

⁵² 카터 美國大統領의 韓國報告書(1979. 1. 25 議會提出).

⁵³ 美下院軍事委員會 調查小委員會聽聞錄(1979. 9. 7), p. 4.

⁵⁴ 美下院 軍事委員會 人力小委員會 太平洋地域研究그룹의 〈駐韓美地上軍 撤收計劃의 中止要求特別報告書〉(1979. 1. 24 議會提出).

⁵⁵ 헤럴드 브라운 美國防長官의 〈年例國防報告書〉(79. 1. 25 議會提出).

⁵⁶ 로버트 W. 세비워드 駐韓 유엔軍司令官 韓美聯合軍司令官의 美下院軍事委員會에서의 韓半島軍事情勢에 관한 證言(1983. 3. 8) 및 The Korea Times와의 記者會見(1983. 11. 3).

⁵⁷ 1983. 2. 25 MIG機를 몰고 일남 귀순한 이용평 용사의 증언

結計劃까지 세워 놓고 있다고 한다.

北韓의 軍事力增強 趨勢(1971~1983년)

區 分	1971년	1975년	1980년	1983년
軍 事 費	\$ 4.43억	\$ 8.78억	\$ 13억	\$ 19.16억
總 兵 力	360,000	410,000	600,000	784,500
탱 크	750	1,350(1976)	2,650	3,200
FROG-5/7 SSM	—	12	39	54
야 포	2,300	2,800	4,000	5,300
장 차	192	783	1,000	1,600
잠 수 함	5	12	16	21
어뢰 경	50	90	165	182
MIG-19	14	72	140	200
MIG-21	126	146	120	160
SA-2 SAM 발사기 (발사대)	180(15)	250(39)	250(45)	250+α(40)

出處 : IISS, *Military Balance*: 1971~1972, 1975~1976, 1980~1981, 1983~1984.

各軍의 主要 裝備는 다음과 같다. 地上軍의 主要 裝備로서는 AK 小銃, SKS半自動小銃, 輕機關銃, 迫擊砲, 對戰車砲, 曲射砲, 高射砲, 放射砲, 自走砲, 裝甲車, 水陸兩用車, 戰車, 水陸兩用戰車, 浮橋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FROG-5/7의 미사일을 保有하고 있으며, 그 基地는 주로 開城, 谷山 등지의 休戰線 가까이 에 配置되어 있다.

海軍의 主要 裝備로서는 潛水艦, 誘道彈艇, 哨戒艦, 潛水艇, 驅逐艦, 砲艦, 魚雷艇, 上陸艇 등을 들 수 있다.

空軍의 主要 裝備로는 主力이 戰爆機와 輸送機인데, 戰爆機는 MIG-19型, MIG-21型이 主軸을 이루고 있으며, 輸送機로는 IL-18型을 비롯해서 TU-154, YS-11, AN-24, AN-2 등이 있다.

豫備兵力

北韓의 住民軍事動員政策은 <人民>을 <武裝力>의 가장 重要한 要素로 보고 “인민이 혁명적 군사사업의 주인이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조직 동원해야 한다”는 김일성

의 軍事思想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北韓은 유사시 軍事力을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하는 동시에 전시 軍需支援 및 戰鬪支援能力을 보장할 수 있도록 全人民을 軍事的으로 組織化하고 있다. ㉔

住民의 軍事動員組織이 本格的으로 強化된 것은 1962年 12月の 勞動黨 4기 5차 全員會議에서 제기된〈전인민의 무장화〉, 〈진국토의 요새화〉 政策에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住民의 軍事動員組織이 여러 형태로 組織·展開되고 있으나, 이미 1958年 中共軍의 撤收를 계기로 1959年 1월에 〈勞農赤衛隊〉가 創設되었다.

그후 1962년에 〈敎導隊〉가 組織되었고, 또한 1970年 9月 金日成의 指示로 學生組織인 〈붉은靑年近衛隊〉가 創設되었다. 1972年 12月 〈社會主義 憲法〉의 채택과 함께 〈國防委員會〉의 설치 등 軍事動員機構의 體制 強化로 住民의 軍事動員과 〈전인민의 무장화〉를 위한 制度的 補完이 가려졌고, 현재 軍事人力 動員의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敎導隊 : Ⅲ급 이상의 工場 및 企業所에 근무하는 종업원 중 軍除隊者 및 大學生을 중심으로 組織되며(17~40세), 正規軍 編制에 준하여 工場·企業所 및 大學의 규모에 따라 師團·聯隊·大隊·中隊로 편성되어 있다. 各級 梯隊의 指揮官과 參謀職은 現役 軍官이며, 師團은 後方軍團에 所屬되어 있다. 指揮系統은 解黨委員會와 人民武力部の 二重 統制를 받는다.

〈敎導隊〉는 平時에는 後方地域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戰時動員令이 하달되면 즉각 除隊 當時의 現役兵 階級으로 正規軍에 編入되어 戰鬪任務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勞農赤衛隊 : 17~60세(女子는 18~35세)의 勞動者·農民·事務員·學生들로 組織되며, 正規軍 編制에 준하여 〈勞動黨〉 秘書局의 軍事部 관장하에 〈勞農赤衛隊司令部〉를 설치하고, 道·直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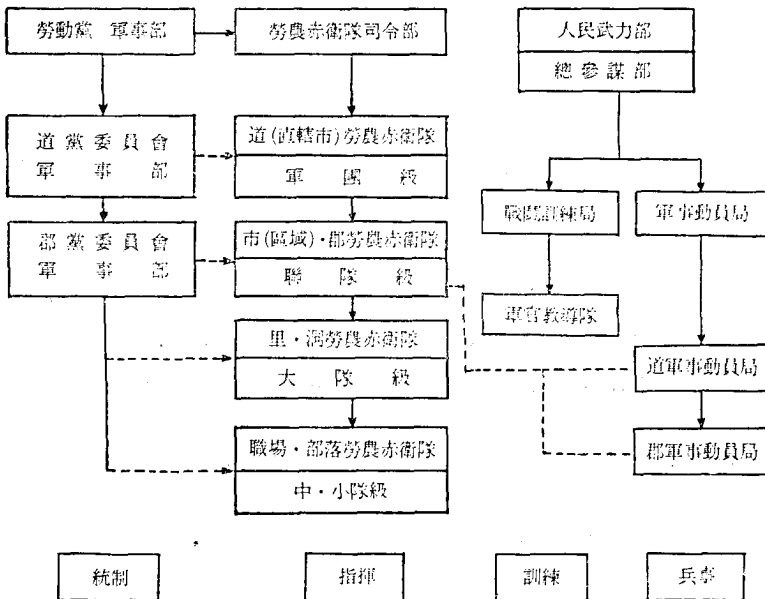
㉔ 1950. 12. 21 慈江道 滿浦市 別午里에서 열린 黨中央委員會 3次 會議에서 金日成은 “예비대원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하였으며”, “후방공급사업들이 잘 조직되지 못하였다”고 함으로써 豫備隊의 組織이 미흡하여 6·25남침이 실패하였음을 자인하였다.

市(軍團級), 市(區域)·郡(聯隊級), 里·洞(大隊級), 部落 및 職場(中·小隊級) 등의 <勞農赤衛隊>로 編成되어 있다.

各級(勞農赤衛隊)는 道(直轄市)·市(區域)·郡黨 軍事委員會의 指導·監督을 받으며, 各級 梯隊의 隊長은 대부분 該當 黨委員會의 責任秘書가 된다.

<勞農赤衛隊>의 基本的 使命은 “수령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수령이 제시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 관철하며, 사회주의 조국과 혁명의 진취물을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든든히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⑤고 規定하고 있는데, 平時에는 對空防衛 등

勞農赤衛隊體系



⑤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0), p. 192.

地域防禦를 담당하며, 戰時에는 豫備兵力으로 動員되어 後方地域의 방어, 軍需品 護送作戰 支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正規軍으로 充당된다.

○붉은 青年近衛隊 : 高等中學 高等班 5~6學年 남녀學生들(14~16세)로 조직되며, 學校 單位別로 中隊級 梯隊로 編成되어 있다. 黨 秘書局 軍事部の 指揮·統制를 받으며, 훈련 동원시에는 政務院 教育委員會의 예하에 있게 된다.

주요 임무는 <反革命的 要素>를 제거하여 北韓 指導層을 死守하는 親衛隊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有事時에는 軍下級幹部 補充을 위한 後備隊·決死隊로서의 任務를 수행한다.

○人民警備隊 : 처음에는 休戰後 解體되어 버린 38警備隊를 母體로 하여 1959년경 각 海岸地域을 비롯한 國境과 島嶼地域의 경비를 강화할 目的으로 軍에서 除隊한 靑壯年 중에서 一定한 人員을 15日間씩 교대제로 동원·조직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下戰士는 正規軍 招募對象者 중에서 선발되어 社會安全部 新兵訓練所에서 3~4個月間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軍官은 경비대 하사관 중에서 선발되어 인민경비대 軍官학교의 正規教育을 이수해야 한다.

<人民警備隊>는 社會安全部に 소속되어 있으며, 鐵道警備處 隸下에는 鐵道警備隊가 있고, 해당 道警備處 隸下에는 海岸警備地區隊 등이 있다. 그 組織은 正規軍과 유사하다.

주요 임무는 重要地域 및 鐵道와 海岸의 警備를 담당하고 있다.

軍事同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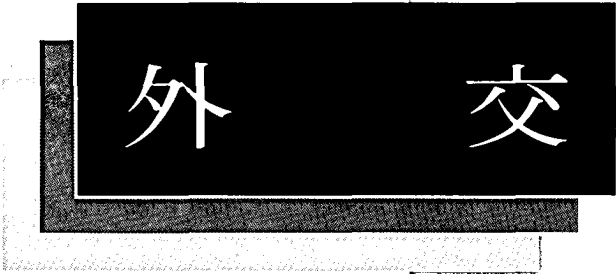

北韓은 金日成 자신이 직접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하여 1961年 7月 6日에는 <朝蘇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을, 同年 7月 11日에는 <朝中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을 각각 체결하였다.

<朝蘇 조약>이나 <朝中 조약>은 다 같이 締約一方이 武力侵攻

을 당하여 戰爭狀態에 처하게 되면, 締約相對國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軍事 및 其他 援助〉를 제공하도록 規定함으로써 軍事同盟條約의 성격을 分明히 하고 있다.

〈朝蘇條約〉은 條約의 效力에 관해서 10年 有效의 時限的 條項을 두고 있으며, 또 締約 一方이 時限滿了 1 年전에 解約 希望을 표시하지 않으면, 5年間 效力이 지속되고, 똑같은 절차로 有效期間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朝中條約〉은 締約 雙方이 修正 또는 廢棄할 것에 관해 合意하지 않는 한 계속 有效하도록 〈無期限 效力〉 條項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外 交

對外政策

政策基調

國際政治觀

古典의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指導理念의 根幹으로 하고 있는 共產主義者들은 “모든 歷史는 階級鬪爭의 歷史다”라는 命題에 따라 國際政治도 階級鬪爭의 視角에서 풀이하고 있다.①

이에 따라 金日成도 “사회주의 나라들은 외교에서도 응당 階級鬪爭의 原則을 견지하여 米제에 압력을 가하며 그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폭로하고 규탄하여야 합니다”②라고 함으로써 國際政治와 外交를 階級鬪爭이론에 의한 世界革命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을 드러냈다.

國際政治를 世界革命의 과정으로 보는 立場은 北韓의 勞動黨規約과 헌법에도 나타나 있다. 즉 “마르크스·레닌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反對하는 世界 모든 나라 人民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民族解放鬪爭과 혁명투쟁을 적극 支援한다”는 것이다.③

政策目標 및 方向

이러한 立場에서 北韓의 모든 政策活動은 韓半島 全體의 共產化라는 궁극目標을 위해 推進되고 있으며, 對外政策도 이러한 범주 내에서 전개되고 있다.④

① 西歐의 共產黨과 日本 共產黨은 이러한 立場을 취하지 않고 있다.

② 金日成 著作選집, 4권(1973), p. 32.

③ 朝鮮로동당 規約 전문 및 북한 헌법 제16조.

④ 1970年 11月 北韓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 金日成은 『남조선혁명은 전조선혁명의 구성부분이다.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國土統一院, 朝鮮勞動黨資料集(제Ⅲ집)(1980), p. 57.

北韓 勞動黨 5次大會에서 外交部長 허담은 北韓의 對外政策의 基本目標은 “미제를 국제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⑤

즉 北韓의 對外政策의 一次的 目標은 北韓政權의 存立을 위한 安全保障의 維持에 두고 있고, 그 最終目標은 <朝鮮革命의 全國的 勝利> (共産化)를 위한 <國際革命力량의 連帶性強化>에 두고 있는 것이다.^⑥

北韓은 특히 對外政策의 基本目標과 관련하여 北韓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문화적 관계를 맺으며,”^⑦ 韓國에 대해 友好的인 國家에 대해서는 非政治的 關係를 통한 「人民外交」方式의 浸透 또는 接近活動을 積極 전개한다는 原則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對外政策의 方向은 對內外狀況 變化에 따라 여러 단계의 變化過程을 거쳐 왔지만, 그 基本的 目標과 原則에는 아무런 變化가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1980年 10월에 開催된 北韓 勞動黨 제 6次 大會에서의 總和報告에서 金日成은 北韓의 對外政策의 基本理念은 “자립, 친선, 평화”라고 표방하면서, 現下의 國際情勢를 “혁명역량과 반혁명역량 및 반제국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지배세력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評價하고, 對外活動의 基本目標은 “반제자주역량의 단결강화와 비동맹운동의 확대발전”과 “사회주의역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對外活動의 方向으로서는 “사회주의 제국과 비동맹국을 비롯한 모든 신흥세력제국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선차적

⑤ 朝鮮勞動黨 제 5차대회에서 허담토론, 로동신문(1970.1.6)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 자료집(제 3집), 1980, p.355.

⑥ 1964.2.27 北韓勞動黨 中央委員會 第 4期 8次 全員會議의 結論에서 北韓의 革命力量強化, 南韓의 革命力量強化, 國際革命力量強化의 3大革命力量強化를 統一戰略의 基本방침이라 하였다.

⑦ 북한헌법 제16조.

인 노력을 경주한다”는 前提下에

- ① 自主성과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原則에 기초한 사회주의 제국과의 團結強化 및 親善協調關係의 發展.
- ② 非同盟國, 第3世界諸國과의 國家關係의 발전 및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分野에서의 團結과 協調의 強化.
- ③ 우호적으로 대하는 資本主義諸國과의 우호관계의 形成 및 經濟 文化交流의 발전.
- ④ 地理的으로 가까이 있는 아시아제국과의 선린관계 발전을 위한 來往과 接觸의 강화 및 經濟 文化交流과 協調의 발전 등을 주장하였다.⑧

地域別特性

이상의 對外政策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推進되고 있는 北韓의 對外活動은 地域과 對象에 따라 그 戰略的 觀點과 特性을 달리하고 있다.

첫째, 社會主義諸國과의 關係에서는 소련, 中共, 東歐, 其他 共產主義國家들을 直接的이고 基本的인 革命支援力量으로 간주하고, 이들 國家들과는 黨의 關係, 政策上的 差異, 이데올로기상의 마찰과는 관계없이 關係維持 및 團結強化에 注力하고 있다. 中蘇間의 理念紛爭에서 中共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소련과의 國家關係는 유지했었고, 東歐 共產國家들의 獨自路線 宣言과는 관계없이 그들 국가와의 國家的 關係를 유지해 왔다.

둘째, 非同盟諸國·第3世界諸國에 대해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間接的이며 補助的인 革命支援

⑧ 로동신문(1980. 10. 11) 참조.

김정일은 김일성 70회 생일기념 主體思想討論會(1982. 3. 31)에 보낸 論文 “주체사상에 대하여”(조선로동당출판사, 1982)에서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내정불간섭, 호상 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지하는 기초위에서 사회주의제국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강화” 및 “영토안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비동맹제국, 신흥세력제국과 단결하며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제국과 협조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力量으로 간주하고, 이들 國家들과는 〈反帝國主義共同戰線〉의 形成과 紐帶強化를 위해 招請訪問 外交活動을 積極 展開하고 있다. 이것이 近者에 와서 北韓의 對外活動의 두드러진 特徵이다.

세째, 資本主義國에 대해서는 美國, 日本, 西歐, 其他 資本主義諸國을 迂迴의이며 豫備의인 革命支援力量으로 간주하고, 該當國內의 共產黨, 社會主義政黨, 其他 左傾團體와 人士 등 親北勢力을 이용하여 文化的·經濟的 關係를 형성하고 그 바탕위에서 政治的 關係改善을 모색하기 위한 「人民外交」方式의 接近活動을 積極 전개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⑨

北韓의 對外活動은 1948年 政權樹立이후 많은 變化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데, 기본적으로 中蘇의 갈등과 대립이 變化的 決定的 要因이었다. 그러나 〈朝鮮革命의 全國的 勝利를 促進〉시키나 위한 國際革命力量과의 連帶性 強化라는 基本路線은 一관하여 견지되고 있다.

政策變化過程

북한 對外政策의 變化過程은 時期別로 4 段階로 구분할 수 있다. ⑩

1) 陣營外交期(1948年 政權樹立~1950年代初): 北韓의 對外關係는 소련의 庇護下에 共產政權이 수립된 때로부터 韓國休戰이 성립될 때까지만 해도 共產陣營內的 外交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당시의 對外活動은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共產國家에 국한된 對外活動을 주로 展開하였는데, 蘇聯, 東歐 共產國, 中共 등 12個國과의 修交에 불과하였다.

특히 6·25의 奇襲南侵 敢行으로 유엔에서 侵略者로 낙인이 찍

⑨: 1972년 12월 1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5기 1차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를 옹호하자”는 題下에 김일성은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해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 5개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⑩ <修交現況>의 時期別·地域別 修交現況表 參照.

한 北韓은 소련에 완전히 追從 同調하면서 中蘇로부터의 戰爭遂行을 위한 軍事的·經濟的 支援과 外交的 支持獲得에 치중한 對外活動을 전개하였다.

2) 多邊外交 開始期(1950年代 中盤~1950年代末): 韓國休戰協定이 成立되자, 北韓은 戰後復舊計劃의 遂行을 위해 中蘇로부터의 經濟的 支援獲得을 위한 協力關係의 發展強化에 注力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1955年 4月 亞阿地域의 新生獨立國 29個國이 참가한 반동會議에서 <平和 5原則>이^⑩ 발표되고, 또한 1956年 2月 소련 共産黨 제20차 大會에서 후루시 초프가 <平和共存政策>을 거론하게 되자, 北韓은 中·蘇·東歐 등의 共産國家에 국한하였던 陣營外交를 탈피하여 多邊外交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北韓이 中立國과의 外交的 接近을 시도한 것은 1956年 4月에 개최된 北韓勞動黨 제3차 大會에서 陣營外交에서 多邊外交로의 전환방침을 천명한 때부터이며,^⑪ 이와 동시에 1956年 4月 <對 外文化連絡協會>라는 人民外交 遂行 담당의 勞動黨 外團團體를 창설하여 對中立國 浸透外交活動을 적극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結果 1958년에는 알제리, 기니 등과 外交關係를 수립하였다.

3) 機會主義的 外交 展開期(1960년대): 1960년대에 들어 北韓은 對中立國 外交活動을 적극 강화하였다. 그것은 亞阿地域의 新生獨立國家들이 대거 유엔에 加入하였고, 1960年 15次 유엔總會에서 南北韓의 同時招請問題가 제기된 데 기인한다.

⑩ ① 領土主權의 相互尊重, ② 相互不可侵, ③ 內政不干涉, ④ 平等互惠, ⑤ 平和의 共存.

⑪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기타 인민민주주의 제국들과 형제적 친선단결을 눈동자같이 고수하며 정치, 경제, 문화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읍니다. 동시에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읍니다”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 주요문헌집(명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6) p.12.
國土統一院, 朝鮮勞動黨資料集(제1집, 1980) p.289 및 p.293.

1961年 9月 北韓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金日成은 ① 社會主義 國家와의 團結 ② 帝國主義陣營에 대한 反對鬭爭 ③ 中立新生國家에 대한 接近 등을 강조 하였으며, ⑩ 그해 6月과 7月に 蘇聯과 中共을 訪問하고 <朝蘇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과 <朝中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을 각각 체결하여 사실상의 軍事同盟關係를 結成하였다. ⑪

그러나, 1962年 中蘇國境紛爭과 쿠바事態 이후 中蘇紛爭이 激化되자, 北韓은 中共에 密着하였다가 1965年 2月 코시긴 소련 首相의 平壤訪問을 계기로 소련 偏向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中蘇 양다리 外交에서 北韓은 그들의 外交의 活路를 찾기자, 1966年 8月 “內政不干涉과 互相平等”을 표방한 <自主路線>을 선언하고 ⑫ 이를 對中立國 浸透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4) 實利外交 追求期(1970년대 이후) : 70年代에 들어 北韓의 對外政策은 自主의이고 實利的인 方向으로 크게 轉換하였다. 北韓이 實利的 外交를 政策路線으로 채택한 것은 1971年 11月 勞動黨 中央委員會 제 5期 3次全員會議에서의 <國際情勢에서 제기된 몇 가지 問題에 대하여>라는 議題의 討議에서 비롯된다. ⑬

北韓이 70年代에 들어 第3世界의 中立諸國에 대한 多邊外交를 확대하고 西方諸國에 대한 接近을 모색하는 實利外交로 方向 轉換을 하게 된 데는 對外的으로는 1971年 9月 中共의 유엔 加

⑩ 특히 김일성은 제 3 세계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적 독립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며 발전시키는 것을 대외정책의 중점 고리로 삼고 있습니다……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국가적 관계를 더욱 확대 강화하여 더 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 4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61.9.11), 김일성 저작 선집, 3권(1968)pp.195~196. 上揭 資料集(제 II 집), p.97.

⑪ <軍事編>의 軍事同盟 參照.

⑫ 로동신문 社說, “自主性を 옹호하자”(1966.8.12), “共產黨 및 勞動黨들의 相互關係는 완전한 평등, 자주,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동지적 협조 등의 原則에 기초하고 있다. 공산당 및 노동당 간에는 어떠한 特權의 黨도 있을 수 없다. 큰 黨과 작은 黨은 있으나, 높은 黨과 낮은 黨, 지도하는 黨과 지도 받는 黨은 있을 수 없다.” <자주로선>이 당노선으로 확정된 것은 1966年 10月 당 대표자회의에서였다고 한다.

⑬ 朝鮮中央年鑑(1972年版), pp.269~270.

入과 1972年 5月 닉슨 美大統領의 中共訪問을 契機로 한 美·中共關係의 改善, 日·中共間의 國交正常化 등 國際的 和解 분위기의 成熟 그리고 유엔 및 기타 國際機構에서의 南北韓對決에 대비한 支持國의 確保 必要性 등이 작용하였으며, 對內的으로는 새로운 6年計劃의 遂行에 필요한 技術·資本의 導入을 위해 西方諸國과의 經濟協力の 必要性 등이 작용하였다.

1973年 6月 韓國의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이 발표되자, 北韓은 南北韓의 共存은 “2개의 韓國을 고정화하고 分斷을 永久化한다”^⑦는 구실로 이를 반대하면서도 西方諸國으로 하여금 南北韓 等距離政策을 유도하는 데 적극적인 外交活動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政策을 통해 일부 西方國家들과 外交關係를 수립하고 經濟協力關係도 發展시켰다.^⑧

70年代 후반에 들어오면서 美國에 대해서도 〈人民外交〉를 시도하는 한편, 1974年 3月에는 對美平和協定을 제기하여 韓美 間的 離間劃策을 企圖하였고, 對中立國 外交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結果, 1975年 8月에는 非同盟會議에 加入하게 되었는데, 1975年 제30차 유엔總會에서는 歷史上 처음으로 西方側案과 共產側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70年代 후반 이후부터는 北韓의 西方諸國과의 關係는 北韓의 好戰的인 對南路線 그리고 外債償還問題, 外交官의 密輸事件 등으로 國際的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별다른 發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⑨

⑦ 로동신문, 1974年 1月 26日 社說.

⑧ 〈修交現況〉의 時期別 修交現況 參照. 北歐諸國 등 中立國들과의 修交關係가 이루어졌다.

⑨ 北韓外交官의 密輸事件의 몇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76年 10月 15日에는 마약·술·담배 密輸事件으로 덴마크주재 北韓大使와 外交官 4名이 駐在國政府로부터 기피 人物로 지목 받아 추방되었고, 1976年 10月 18日에는 노르웨이駐在 北韓大使代理와 外交官 4名이 駐在國政府로부터 밀수관련 혐의로 추방되었으며, 또한 1976年 10月 26日에는 스웨덴駐在 北韓大使 등 4名이 밀수행위에 관련되어 스스로 撤收하였고, 1976年 10月 26日 핀란드駐在 北韓大使 등 4名이 駐在國政府로부터 추방되었다.

이 밖에도 스위스,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이란, 오스트리아, 이집트 등에서도 마약 및 보석등 免稅品 密輸行爲 혐의로 있어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內査를 받은 바 있다.

對外政策

이러한 變化過程을 거친 오늘날 북한의 對外政策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團結>, <反帝·反美 공동투쟁을 위한 불력不加擔 국가들과의 紐帶強化>, <우호적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과의 관계 수립>을 課題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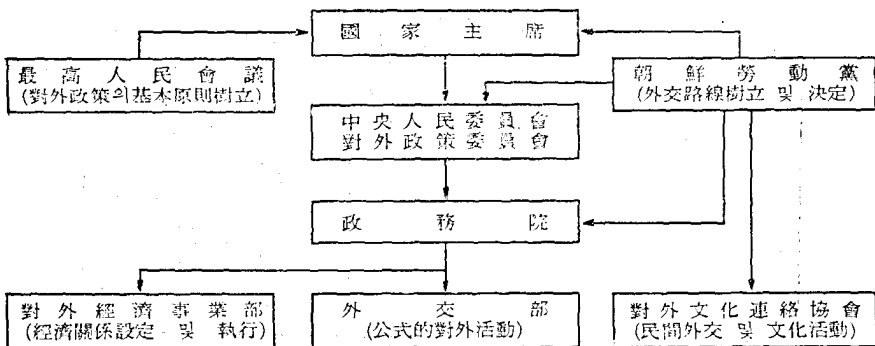
對外活動

政策決定 및 執行機構

北韓 對外政策의 基本原則은 憲法上으로는 立法機關인 <最高人民會議>에서 樹立하도록 되어 있으나^㉑, 실제로는 <朝鮮勞動黨>에서 決定하며, <最高人民會議>는 形式的으로 審의·결정만 할 뿐이다. <黨>에서는 黨中央委員會 政治局이 審의·결정권을 행사하나 對外問題를 관장하는 黨中央委員會 秘書局 國際部가 중심이 되며, 여기서 결정된 문제는 <最高人民會議>에 通告, 追認하는 것이 常例이다.

對外政策이 일단 <黨>에서 결정되면 그 執行은 <中央人民委員會>의 지도와 감독하에 <政務院>을 통하여 행하게 되는데, 北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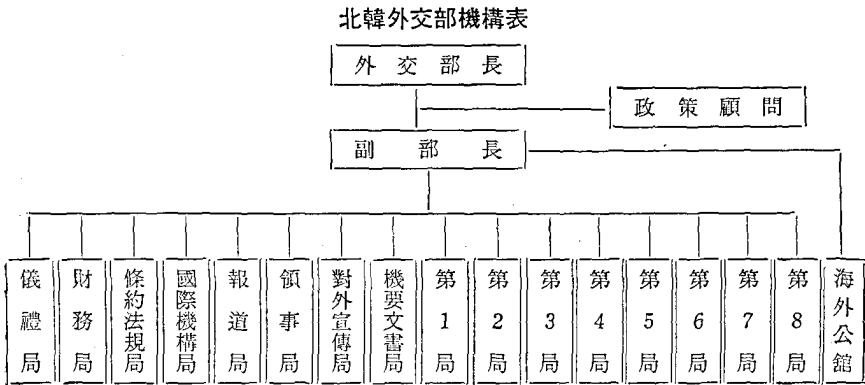
對外政策決定 및 執行過程



㉑ 北韓憲法 第76條 2項.

對外活動의 책임은 <國家主席>의 관장하에 있다. ㉑ 그러나 <국가주석>은 黨의 最高 一人者인 黨中央委員會 政治局員이며 <總秘書>인 金日成이 겸하고 있으므로 事實上 對外政策의 決定이나 執行은 오직 金日成 1人에 의해 指揮監督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外交部>는 北韓의 外交執行의 실무부서로 되어 있으나, 北韓의 對外業務는 매우 다양하게 분담되어 있으며 一元化되어 있지 않다.



北韓의 對外協定締結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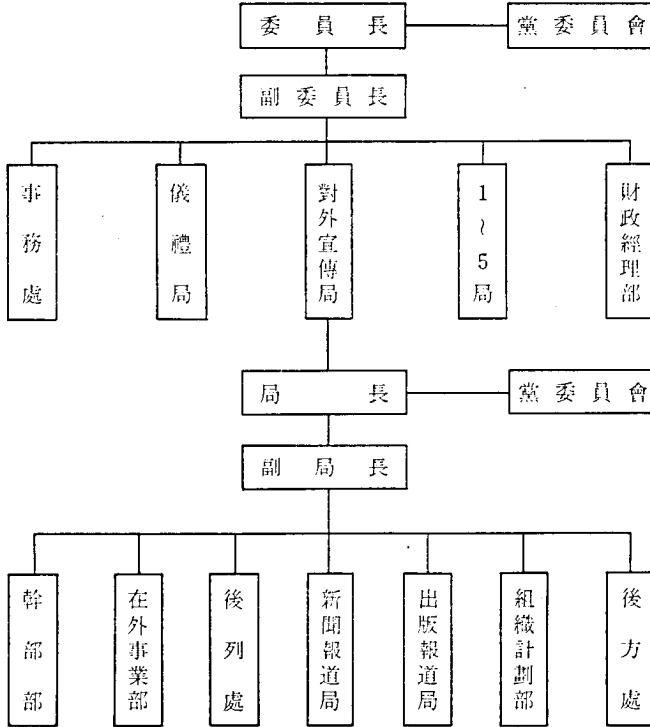
(1982년 10월말 현재: 협정수/국가수)

地域	內容	基本							
		基本	經濟·科學·技術	軍事	交通	通信	文化	保健	
공산권		35/15	819/15	13/5	162/15	289/15	44/9		
중동·아프리카		74/54	178/42	2/2	38/16	124/34	6/4		
아시아		28/17	87/13		17/8	24/9			
서구		14/11	19/9		2/2	2/2			
미주		14/11	15/14			11/4			
계		165/108	1118/83	15/7	183/41	450/64	50/13		

㉑ 北韓憲法 第96, 97, 98條.

〈對外經濟事業部〉도 對外活動의 一部를 담당하고 있으며, 民間外交는 黨所屬의 〈對外文化連絡協會〉가 담당하고 있다.②

對外文化連絡委員會 機構



金日成의 海外訪問

次	時 期	國 家	備 考
1次	49. 3. 4~4. 7	蘇 聯	6.25 挑發 協議, 10年經濟·文化 協調協定 締結
2次	53. 9. 1~29	”	經濟技術援助協定 締結
3次	53. 11. 10~27	中 共	54.4 제네바會談 對備 共同戰略 協議

② 대외관계 주요 외판단체로는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직위원회, 각국과의 친선회의 등이 있고, 기타 사료청·여맹·외맹·농근명·체육지도위·문예총 등도 각각 대외사업에 참여한다.

外交活動

次	時 期	國 家	備 考
4次	56. 6. 7~6.12	東 獨	第1次 5個年 經濟計劃 遂行을 爲한 援助 獲得次
	56. 6.13~17	루 마 니 아	〃
	56. 6.25~29	불 가 리 아	〃
	56. 6.29~7.1	알 바 니 아	〃
	56. 6.17~20	헝 가 리	〃
	56. 6.21~25	체 코	〃
	56. 7. 2~6	폴 덴 드	〃
	56. 7. 6~15 56. 7.16~19	蘇 聯 蒙 古	〃 〃
5次	57.11. 7	蘇 聯	蘇聯 10月革命 40周年紀念式 參加
6次	58.11.28~12.2	越 盟	反美共同戰線 結束
7次	59.1.21~	蘇 聯	蘇聯共產黨 第21次大會 參加
8次	59.10.1~	中 共	中共創建 10周年紀念行事 參席
9次	61. 6.29~7.10	蘇 聯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에 關한 條約 締結(防衛條約)
	61. 7.10~7.15	中 共	
10次	61.10.14~11.1	蘇 聯	蘇聯共產黨 22次大會 參席
11次	65. 4.10~20	印 尼	親善訪問, 共同聲明 發表(反美共同戰線 구축)
12次	66. 5. 7~23	蘇聯 (우라 디보스톡)	「브레즈네프」와 秘密會談 ※ 非公式 訪問
13次	75. 4.18~26	中 共	韓半島에서 第2 印支戰 劃策을 爲한 支援 獲得次
	75. 5.26~30	알 제 리	雙方關係 強化, 공동성명 발표
	75. 5.30~6.1	모리타니아	〃
	75. 6. 2~5	불 가 리 아	〃
	75. 6. 5~9	유 고	〃
14次	80. 5. 7~9	유 고	「티토」 葬禮式 參席
	80. 5. 9~12	루 마 니 아	
15次	82. 9.15~26	中 共	雙方關係 強化

地域外交

對中蘇外交

北韓政權의 樹立 初期에는 對蘇 一邊倒外交를 하다가 中共의 韓國戰 參戰을 계기로 對中蘇關係가 北韓外交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北韓의 對中蘇關係가 항상 安定되고 均衡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른바 三角關係의 均衡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 中蘇간의 紛爭임은 學界의 通說이거니와 北韓의 中蘇 예속으로부터의 脫皮도 中蘇 분쟁의 結果라고 보고들 있다.

1956年 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의 후루시초프의 스탈린格下 運動 전개로 北韓의 대소관계는 以前보다 소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年 7月 6日과 11日에 소련 및 中共과 〈友好協力 및 互相援助條約〉을 締結하였다는 事實은 北韓의 對中蘇關係가 均衡을 이루었음과 中蘇의 對北韓關係에서의 경쟁적 立場을 立證해 주었다.

1962年 10月 쿠바 미사일事件과 中蘇國境紛爭은 中蘇關係를 決定的으로 惡化시킨 계기라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 說이며, 이것은 北韓의 대소관계의 惡化까지 야기시켰다.

1964年 후루시초프의 失脚과 1965年末부터 시작된 中共의 文化革命은 北韓의 對蘇關係가 회복되는 契機가 되었다.

1962年 이후 7年計劃이 차질을 빚어 3年씩이나 계획이 延長되고, 1965年 이후 越南戰이 擴大되는 등 國內外 情勢가 變化하는 가운데, 1965年 2月 코시긴의 平壤訪問 이후 北韓은 親蘇의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親蘇期 동안 中共을 非難 해오던^㉑ 北韓은 1966年 8月 12日 이른바 「자주로선」을 선언 하였다^㉒.

그러다가 1969年 7月 1日 北韓은 로동신문을 통하여 “세계평화 및 안전을 위하여 중국인민들과 하나의 전선에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對中共關係 改善 의사를 表示하였다.

이는 文化革命의 終熄과 第3世界와 國際社會에서의 中共의 役割을 고려하여 취해진 政策의 變化라고 평가되고 있다.

70年代 以後 北韓의 對中·蘇關係는 過去와 같이 不安定해 지지 않고 이른바 〈自主路線〉도 定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北韓은 中共으로부터는 名分支援을 받고, 소련으로부터는 實利를 支援 받는 독특한 對中 蘇關係를 유지해 오고 있다.

北韓의 對中蘇頂上級 外交活動

日 字	北 韓	中 共	北 韓	蘇 聯
1949. 2. 22				김일성(首 相)
1953. 7.		최용건(民保相)		
1953. 9. 1				김일성(首 相)
1953. 11. 10		김일성(首 相)		
1954. 9. 28		김일성(首 相)		
1955. 8. 15	朱 德(副主席)			
1956. 2. 14				최용건(副首相)
1956. 6. 1				김일성(首 相)
1956. 9. 12		최용건(副首相)		
1956. 10. 17				김일성(首 相)
1957. 11. 3				김일성(首 相)
1958. 2. 14	周恩來(首 相)			

② 에컨대 1964. 12. 3 로동신문은 중공의 교조주의노선 추종 압력을 비난하는 사설 게재.

③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사설(1966. 8. 12).

日 字	北 韓	中 共	北 韓	蘇 聯
1958. 5. 3				정일용(副首相)
1958.11.21		김일성(首 相)		
1959. 1.27				김일성(首 相)
1959. 4. 3				최용건 (人民會議常任委員長)
1959. 9.25		김일성(首 相)		
1961. 5.30			코 시 긴 (副 首 相)	
1961. 6.29				김일성(首 相)
1961. 7.10		김일성(首 相)		
1961.10 17				김일성(首 相)
1963. 6. 5		최용건 (人民會議常任委員長)		
1963. 9.14	劉 少 奇 (國 家 主 席)			
1965. 2.11			코시긴(首相)	
1966. 3.29				최용건 (人民會議常任委員長)
1966. 5.				김일성(首 相)
1967. 2.13				김 일 (副首相)
1967. 3			노 비 꼬 프 (부 수 상)	
1967.10.17				최용건 (人民會議常任委員長)
1969. 5.14			포드고르니 (幹部會議議長)	
1969.10. 1		최용건 (人民會議常任委員長)		
1969.12. 8				박성철(副首相)
1970. 4. 5	周恩來(首 相)			
1970. 4.29				최용건 (人民會議常任委員長) 박성철(副首相)
1971. 1. 1			노 비 꼬 프 (부 수 상)	
1971. 3.28				김 일 (副首相)
1971. 7.	李先念(副首相)			
1971. 8.		정준택(副首相)		

對外活動

日 字	北 韓	中 共	北 韓	蘇 聯
1971. 11.				정준택(副首相)
1972. 6.			노 비 꼬 프 (副 首 相)	
1972. 8.				정준택(副首相)
1972. 10. 17				최용건(副首相)
1973. 2.				강양욱(副主席)
1973. 3.		강양욱(副主席)		
1973. 4.				최재우(副總理)
1973. 9. 11			노 비 꼬 프 (副 首 相)	
1973. 9.	李德生(副主席)			
1974. 3.		정준기(副總理)		
1974. 5.		허 담(副總理)		허 담(副總理)
1974. 7.				최재우(副總理)
1975. 1.			노 비 꼬 프 (副 首 相)	
1975. 2.		강양욱(副主席)		
1975. 3.		박성철(總 理)		
1975. 4. 17		金日成(主 席)		
1975. 7.		강양욱(副主席) 허 담(副總理)		
1975. 9. 21	張春橋(副首相)			
1976. 2. 24				박성철(總 理)
1976. 3.				박성철(總 理)
1977. 1. 24				박성철(總 理)
1977. 3.		계응태(副總理)		
1977. 8.			아 르 히 보 브 (副 首 相)	
1978. 5. 5	華國鋒(黨主席)			
1978. 9. 9	鄧小平(副首相)			
1979. 1.				박성철(副首相)

日 字	北 韓	中 共	北 韓	蘇 聯
1979. 5. 26.	등영초 (全人代 常務委 長)			
1979. 8.				공진태(副總理)
1979. 9. 8	鄧 小 平 (黨 副 主 席)			
1980. 1. 18				공진태(副總理)
1980. 2. 13				공진태(副總理)
1980. 3. 22				임춘추 (中央人 民委書記長)
1980. 10. 9	李 先 念 (黨 副 主 席)			
1980. 10.			카 투 세 프 (副 首 相)	
1980. 11.				강희원(副總理)
1980. 12.				박성철(副主席)
1981. 1. 10		이종욱(總 理)		
1981. 2. 21				이종욱(總 理)
1981. 9. 6				이종욱(總 理)
1981. 12. 17				공진태(副總理)
1981. 12. 20	조자양(首 相) 진모화(副首相)			
1982. 3. 16				허 담(副總理)
1982. 4. 15	등소평 (黨軍事 委主席) 호요방 (黨總書 記)			
1982. 5. 25				허 담(副總理)
1982. 6. 1				김복신(副總理)
1982. 6. 25				이종욱(總 理)
1982. 9. 16		김일성(主 席)		
1982. 11. 14				박성철(副主席)
1983. 5. 16			탈 리 진 (副 首 相)	
1983. 6. 2		김정일(黨秘書)		
1983. 9. 6	맹진 (全人代常 務委員長)			

對東歐外交

北韓의 對東歐政策은 中蘇關係의 變化 속에서 對蘇關係와 函數關係를 가지고 변화해 왔다.

中蘇紛爭이전 北韓의 對東歐政策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의 참여와 협조를 名分으로 하여 戰後 復舊를 위한 경제 및 기술원조 획득을 追求하는 方向에서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다.²⁵⁾

中蘇紛爭에서 동구국가들과 北韓이 서로 다른 共產大國을 추종함으로써 北韓의 對東歐關係는 다소 소원했었으나, 北韓의 對中蘇關係가 균형적 관계로 들어서기 시작한 70年代에 北韓과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가 急進展되었고, 中蘇紛爭期부터 對蘇<自主路線>을 추구하고 있던 루마니아와의 관계도 빈번해지기 시작했다.²⁶⁾

1972年 2月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과 때를 같이하여 北韓은 外交部長 許鎔을 團長으로 하는 政府代表團을 소련 및 루마니아·유고·체코·동독·폴란드·헝가리·불가리아에 巡訪시켜 東歐諸國과의 相互 政策 支持를 다짐하였다.

1975年 印度支那가 共產化된 후 金日成은 中共訪問을 마친 뒤 곧 이어 루마니아·불가리아·유고를 訪問하였다.

北韓의 對共產圈招請訪問外交活動

(年度別·地域別)

(초청/방문)

연도 국가	75	76	77	78	79	80	81	82	계
중 공	14/10	7/6	13/11	24/9	15/10	31/14	33/31	43/30	180/121
소 련	21/17	7/6	10/9	20/15	22/10	36/34	35/37	41/40	192/176
동 구	68/43	29/19	46/43	59/56	45/46	71/50	106/67	99/80	523/404
계	103/70	43/31	69/63	103/80	82/74	138/98	174/135	183/150	895/701

²⁵⁾ 동구의 대북한 원조는 소련·중공에 비하면 규모면에서 절대적으로 적은 것이었지만, 동구로부터의 원조의 대부분이 1954~56년간의 전후 복구 3개년 계획기간과 1957~60년간의 5개년 경제 계획기간에 제공되었다.

²⁶⁾ 유고와 북한은 1948.10.30 수교 합의하였으나, 1971.9.2에 대사관 개설을 합의했다. <修交現況>의 地域別·時期別 修交現況表 참조.

(地域別・分野別)

(초청/방문)

國家	分野	外 交	經 濟	軍 事	文 化	社 會	計
중	공	55/44	69/55	12/7	83/57	40/35	259/198
소	련	33/50	54/68	6/1	123/78	56/69	272/266
동	구	139/159	148/148	25/10	281/183	183/528	776/1028
계		227/253	271/271	43/18	487/318	279/632	1307/1492

經濟的인 면에서도 北韓은 루마니아와 1976~1980年間〈長期 貿易協定〉을 체결하였고, 불가리아와는 1976~1985년까지의 〈10個年 經濟 및 科學技術協調議定書〉를 조인하였으며, 유고와는 〈相互經濟協同委員會〉設置에 合意하였다.

70年代 以後 北韓의 對東歐關係는 통상적인 交流關係 그 自體도 하나의 目標이지만, 비동맹 세력권에의 接近과 對西方進출을 위하여 유고 및 루마니아와의 관계 개선에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 特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對第3世界外交

北韓의 第3世界外交의 목표는 〈反帝反美共同戰線〉의 形成과^㉗ 이에 따른 北韓 統一方案의 支持 獲得에 있다.^㉘

이러한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北韓은 第3世界國家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接近하고 있다.

- 1) 平和共存路線 표방
- 2) 反帝·反植民主義 및 民族解放鬭爭 支援 宣傳
- 3) 國際共產主義 宣傳機構 加入
- 4) 人民外交
- 5) 文化 및 經濟交流

1955年 반동會議가 있는 후 1956年 4月 로동당 3次大會를 계기로 第3世界 國家들과의 관계 設定에 눈뜨기 시작하여 〈對外文化連絡協會〉 등 黨 外廓團體를 통한 친선 및 文化交流 形態의 접

㉗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사설(1963.10.28).

“민족해방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 들자,” 로동신문 사설(1964.1.27).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사설(1966.8.12).

㉘ 1974.8.11 로동신문에서는 한반도 공산화통일의 제일 지지세력을 제3세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을 해왔다.

그러나 政治의 性格의 接近은 1961年 9月 로동당 4次大會 이 후였다. 第2次 반등會議를 앞두고 中共 指導者들이 아시아·아프리카 地域을 순방할 때(1963.12~1964.2 周恩來, 1965.9 陳毅)北韓에서는 高位層 代表團을 파견, 中共 代表團들의 뒤를 따라 이 地域을 순방하였다(1964.4, 최원택 최고인민회의 의장, 1964.12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겸 부수상, 1965.5 이주연 부수상)

中共에 文化大革命이 일어나 그들의 對外關係가 硬塞되자, 1966年부터는 친소적 國家들을 향하여 친선사절단을 파견하였다. 例컨대, 1966年 8月 강양옥은 통일아랍공화국·탄자니아·이라크·시리아를 訪問하였고, 1966年 10月 이주연은 버마·파키스탄·캄보디아를 訪問하였다.

訪問과 더불어 北韓은 1964年 11月 나세르 통일아랍공화국 대통령을 招請한 이후 各國의 首腦級 人士들을 大學 平壤으로 招請하였다.

最近 北韓 外交에서는 訪問보다 초청이 많은데, 이것은 訪問하여 說得하는 것보다 招請하여 實物과 現況을 보여 주면서 접근하는 것이 效果가 크다고 判斷한 것으로 推定된다.

한편, 第3世界國家들과의 關係強化는 그들 國家 大部分이 비동맹회의의 구성국가들이라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北韓의 對第3世界招請訪問外交活動

(地域別·時期別)

(초청/방문)

年度	75	76	77	78	79	80	81	82	계
地域									
아 시 아 (일본제외)	51/43	33/31	57/34	75/53	33/27	49/45	78/49	135/61	511/343
중 동 포 합 아 프 리 카	49/64	30/34	64/39	67/32	25/21	42/64	111/54	139/60	527/368
중 남 미	12/15	8/8	21/9	6/3	9/3	34/23	58/42	78/69	226/172
계	112/122	71/73	142/82	148/88	67/51	125/132	247/145	352/190	1264/883

地域 \ 分野	外 交	經 濟	軍 事	文 化	社 會	계
아시아(일본 제외)	263/198	173/118	30/14	154/110	190/84	810/524
중 동 포 합 아 프 리 카	367/266	51/70	37/17	87/61	459/289	1001/703
중 남 미	102/146	36/41	1/0	53/37	134/31	326/255
계	732/610	260/229	68/31	294/208	783/404	2137/1482

즉 한반도문제의 유엔問題化 試圖와 관련하여^㉔ 非同盟會議國家들과의 〈國際統一戰線〉을 形成, 對유엔 攻勢를 취한다는 것이다.

1975年 8月 리마에서 열린 非同盟外相會議에서 正式會員國으로 加入된 이래 北韓은 非同盟會議에 한반도문제를 上程, 그들의 政策에 대한 支持를 받으려 하였다.

1978년부터는 非同盟會議가 열리기 전에 미리 〈黨中央委員會〉와 〈中央人民委員會〉의 連席會議를 열어 비동맹회의에 임하는 北韓 자신의 政策을 整理·確認하는 方針까지 취하고 있다.

그러나, 最近 非同盟會議 會員國 間에 自體의 路線紛糾가 생기는 등 問題가 생기면서부터 北韓은 非同盟國家들의 統一團結과 經濟協力 및 自主性을 強調하면서 鬭爭의 銳鋒을 〈反帝國主義〉 方向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㉕

北韓의 非同盟會議關係 主要動向

會 議 名	日 字 및 場 所	活 動 內 容
第 4 次 頂 上 會 談	73. 9. 5 ~ 9 알 제 리 알 제 이	○ 韓國問題 決議案 採擇 — 南北韓 유엔加入은 統一後 또는 聯邦政府 樹立後 — 駐韓外軍 撤收, 外勢干涉 中止
非同盟外相會議	75. 8. 25 ~ 30 페 루, 리 마	○ 非同盟會員國 加入 ○ 韓國問題 決議案 採擇

㉔ 〈유엔 外交〉 參照.

㉕ 1979. 7. 18 당중앙위·중앙인민위 연석회의 결정 및 “1979. 9. 6 제 6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의 이 중육의 연설”, 노동신문(1979. 7. 19).

會 議 名	日 字 및 場 所	活 動 內 容
		一駐韓美軍 撤收 및 外軍基地 撤廢 一7·4 共同聲明에 規定한 平和統一 3大原則 遵守 一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替 *我國 加入 拒否
第5次頂上會議	76. 8. 16 ~ 19 스 리 랑 카 톨 롬 보	○韓國問題 決議案 採擇 一7·4 공동성명에 의한 南北 韓民의 統一鬭爭 支援 一駐韓外軍 撤收 및 外軍基地 撤廢 一核武器 및 모든 戰爭手段 除去 一UNC 解體 一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替 ※ 박성철(總理) 참석
非同盟外相會議	78. 7. 25 ~ 30 유 고 베 오 그 라 드	○韓國問題 決議案 採擇 一駐韓外軍 撤收 및 外軍基地 撤收 一UNC 해체 一7·4 共同聲明에 規定한 平和統一 3大原則 遵守 및 韓國民의 統一念願 歡迎 一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替 ※ 허담(外交部長) 참석
第6次頂上會議	79. 9. 3 ~ 9 쿠 바 아 바 나	○非同盟調整委員國에 피선 ○韓國問題 決議案 採擇 一駐韓外軍 撤收 및 外軍基地 撤廢 一UNC 해체 一7·4 共同聲明에 規定한 平和統一 3大原則 遵守 一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替 ※ 이종욱(總理) 참석

會 議 名	日 字 및 場 所	活 動 內 容
非同盟外相會議	81. 2. 9 ~ 13 印 度 뉴 델 리	○ 韓國問題 決議案 採擇 企圖좌 절 ※ 食糧 및 農業分野 심포지 움 平壤開催 誘致(81. 8. 26 ~31)
非同盟食糧 및 農業分野 調整 國會議	81. 6. 10 ~ 12 平 壤	○ 非同盟國의 食糧生産을 위한 會員國의 協調問題 討議
開途國 및 非同 盟國의 食糧問 題 심포지움	81. 8. 26 ~ 31 平 壤	○ 食糧增産을 위한 技術 · 經驗 交流 ○ 農業研究센터, 教育機構 등 設 置問題 ○ 食糧 및 農業增産을 위한 '平 壤宣言' 採擇
第7次 非同盟 通信社聯合調整 委員會 會議	82. 5. 12 ~ 14 平 壤	○ 非同盟通信社聯合을 強化 ○ 非同盟國間 報道交換 擴大를 위한 對策 討議
非同盟調整委 外相會議	82. 5. 31 ~ 6. 6 쿠 바	○ 許鈞기조연설 — 經濟協調問題 論議를 위한 非同盟 및 開發途上 國家들 의 '南北 首腦者會議' 開催 提議 — 非核平和地帶 設置 必要性 力說
非同盟調整委 外相會議	83. 1. 12 ~ 15 니 카 라 과	○ 許鈞, 3가지의 非同盟運動課 業 提示 — 反美鬭爭을 위한 非同盟國 들의 行動統一 호소
第7次頂上會議	83. 3. 7 ~ 3. 12 인 도 뉴 델 리	○ 非同盟調整委員國 再選 ○ 韓國問題 條項 — 7·4 共同聲明의 原則에 의 한 統一達成 支持 確認 — 韓半島에서의 外軍撤收 촉 진 希望 ※ 박성철(副主席) 참석

對外活動

會議名	日字 및 場所	活動內容
第1次非同盟 및 發展途上國 敎育 및 文化部長會議	83. 9. 24 ~ 28 平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同敎育機關 및 技術協調機關 創設을 통한 協調體制 具體化 ○ 平壤에 〈民族樂器 博物館〉을 創設하여 〈民族文化〉의 國際的 協調 다짐.

註：北韓은 제 7차 非同盟頂上會議에 副主席 박정철을 團長으로 하는 45명의 代表團을 파견하여 강경한 韓半島問題 決議案 채택을 위한 多角的인 接觸活動을 展開하였음. 그러나, 주미국인 印度가 宣言草案에 韓國條項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政治宣言文起草委員會에서 겨우 上記表의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그쳤고 그들이 의도했던 駐韓美軍撤收 및 外軍基地撤廢, 유엔軍司 解體, 對美平和協定 縮結 등은 관철하지 못했음.

對西方外交

北韓의 對西方 接近이 본격화한 것은 1970년대로서^① 닉슨의 中共訪問, 美中共관계 개선, 美蘇의 平和共存體制의 樹立 등에 자극받아, 1971年 11月 조선로동당 第5期 3次 全員會議에서 〈當面한 諸問題의 戰術的 轉換〉을 결의하면서부터이다.^② 북한은 對西方 外交方式은 民間수준의 〈人民外交〉方式과 政權次元의 外交의 접근을 併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대상 국가의 著名人士를 개별 초청하거나 訪問하고, 民間貿易代表部와 公報館 등을 設置하여 半政府的 次元으로 끌어 올렸다가 公式的인 국교관계까지 發展시키는 方式을 쓰고 있다.^③

최근 북한은 西方側에 대하여 선전활동을 통한 平和攻勢를 強化하고^④ 무역관계를 擴大하는 方向에서 接近을 推進하고 있다.

北韓의 對西方外交의 核心은 對美·對日關係에 있다. 이는 美國 및 日本의 對韓지원이 共產革命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對美·對日外交의 基本목표는 美日의 對韓支援

① 民間 차원의 접근은 이미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음. 1950년대 말부터 북한은 이미 영국·서독·프랑스 등 서방국가로부터 상품, 기술 등을 도입하고 民間차원의 무역협정도 체결하였다.

② 김일성은 이러한 전술적 전환이 〈제국주의와의 타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 저작선집, 4권(1968) p. 338

③ 대표적인 경우가 스칸디나비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중립국에 대한 접근방법이다(經濟外交)·〈修交現況〉 참조.

④ 〈對外宣傳〉 참조.

北韓의 對西方招請訪問 外交活動

(年度別·地域別)

(招請/訪問)

年度 地域	75	76	77	78	79	80	81	82	계
서구	11/10	10/18	31/6	27/19	7/17	29/14	47/41	85/48	247/173
북미	0/0	0/0	1/0	0/1	0/0	5/2	2/4	3/3	11/10
일본	12/2	16/1	13/4	24/8	23/1	106/3	53/4	43/4	230/27
대양주	1/1	2/0	0/1	0/0	1/0	3/1	5/6	7/3	19/12
계	24/13	28/19	45/11	51/28	31/18	143/20	107/55	138/58	567/222

(地域別·分野別)

(招請/訪問)

地域 分野	外 交	經 濟	軍 事	文 化	社 會	계
서구	101/76	31/23	1/0	48/54	169/93	350/246
북미	5/2	1/2	0/0	3/1	7/6	16/11
일본	110/3	124/8	0/0	145/11	222/24	601/46
대양주	11/9	2/2	0/0	2/1	10/2	25/14
소 계	227/90	158/35	1/0	198/67	408/125	992/317

北韓의 西方未修交國內 代表部 設置現況

機 構 名 稱	所 在 地	日 字
UN 代 表 部	美 國(뉴욕)	1973. 9
FAO 代 表 部	이 태 리(로마)	1977. 11
UNESCO 代表部	프 랑 스(파리)	1976. 11

을 弱화시킨다는 정치적 성격의 것이며, 부차적인 目的은 美國과 北韓과의 關係 개선을 통한 기술 및 자본도입 등이라는 경제적 성격의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 北韓은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置시키자는 문제를 내걸고 美國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⑤

日本과는 國交가 없는 狀況에서 北韓은 우선 日本内の 反韓勢

⑤ 이러한 직접접촉 시도로서 북한은 파키스탄의 부토 대통령을 통해 카터에게 친서를 전달한 바 있고(1976.9), 유고의 티토 대통령(1977.8), 루마니아의 초세스쿠 대통령(1978.5)의 북한 방문이 대미 접근책 강구의 일환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輸入超過라는 不利한 狀況에서도 이를 〈國交正常化〉로 發展시키기 위하여 對日 경제관계를 深化시켜 나가고 있다.

UN 外交

北韓은 1948年 유엔 第3次總會에서 한국이 한반도에서 唯一合法政府로 承認되고, 1950年 安保理에서 北韓과 中共을 侵略者로 規定하자 유엔의 權威와 機能을 認定하지 않고 拒否해 왔다. ⑥

1953年 韓國戰 休戰會談에서 유엔軍司令官과 休戰協定을 체결한 뒤 북한은 유엔을 美國과 同一視하면서 統一을 위한 南北韓 포함 有關國會議을 提議하는 등 韓國問題를 유엔으로부터 떼어내려 하였다. ⑦

1960年代 中盤 이후 北韓이 이른바 〈自主外交〉를 強調하면서부터 유엔에 대한 자세는 硬化되어 60年代 中盤 이후에는, 60年代 中盤 이전과는 달리 유엔의 權能을 否認하는 立場을 取하였다.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中共이 유엔에 加入하게 되고 〈南北韓同時招請 提議〉가 나오는 등 狀況이 변하자, 北韓은 1973年 제28차 유엔總會부터 유엔外交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973年 9月 5日 유엔본부에 있는 뉴욕에 常駐代表部를 開設했고, 제네바에 있는 유엔사무국에도 상임 옵서버 代表部와 국제기구 상설대표부를 設置하고 있다.

1973년부터 北韓은 한국이 이미 加入한 유엔산하기구에 加入하기 시작하여 現在 10個의 유엔산하기구에 加入되어 있으면서도 “국제연합에의 가입은 남북한 단일국호에 의하여야 한다”^⑧고 주장하고 있다.

⑥ 한편 북한은 1949년 2월 9일과 1952년 1월 2일 2차에 걸쳐 단독 유엔가입을 신청한 바 있다. 또한 1957년과 1958년에 소련을 통해 〈남북한 동시가입안〉을 제출한 바 있다.

⑦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은 외무성 비망록 형식을 통해 유엔의 한반도 문제 토의시 북한 참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이러한 주장은 이후에도 되풀이되었다.

⑧ 1973. 6. 23 발표한 김일성의 〈평화통일 5대 방침〉, 조선중앙년감(1974), pp. 54~56.

유엔傘下機構加入現況

(1983. 12 현재)

區 分	機 構 名	加 入 日
直屬機關	유엔通商開發會議(UNCTAD)	1973. 7. 23
	유엔開發計劃(UNDP)	1979. 6. 8
專門機構	世界保健機構(WHO)	1973. 5. 19
	萬國郵便聯合(UPO)	1974. 5. 29
	世界地籍財產機構(WIPO)	1974. 8. 17
	유엔教育科學文化機構(UNESCO)	1974. 10. 17
	世界氣象機構(WMO)	1975. 5. 7
	國際電氣通信聯合(ITU)	1975. 9. 24
	國際民間航空機構(ICAO)	1977. 9. 15
	유엔食糧農業機構(FAO)	1977. 11. 14

한편 北韓이 그 동안 同盟國家들에 대한 外交를 強化시킨 結果 유엔내에 北韓 지지세력이 大幅 증가되었고, 1975年 제30차 總會에서는 南北韓 立場을 각각 支持하는 두 개의 決議案이 통과되기 까지 하였다.

최근 北韓은 주한미군철수를 主張할 때 30차 유엔總會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원용하는 등 유엔의 權能을 선별적으로 活用하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㉓

북한이 參加하고 있는 유엔 이외의 기타 國際機構는 非同盟國會議(1975年 리마에서 加入)를 비롯해 6개의 정부간 국제기구 및 각 分野別 국제조직이 있다.

〈人民外交〉를 外交의 主要方式으로 취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半官半民이나 민간 레벨의 국제관계를 強化해 나가고 있는데, 赤十字·스포츠·科學 및 노동조합·靑年學生 등 직업별·계층별 各分野에 걸친 140餘개의 국제조직에 加入되어 있다.^㉔

㉓ 예컨대, 3 당국회담 문제와 관련하여 발트해임의 북한방문을 허용하고 북한 유엔대사가 발트해임과 자주 접촉하는 등의 동향을 보이고 있다.

㉔ 조선중앙년감(1976) p. 470에는 1975년말 현재 총 141개의 국제기구에 가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時期別 對유엔關係 變化過程

時 期	年度	主 要 立 場	備 考
韓半島問題에 관한 유엔干涉拒否期	1948 ~ 53	○ 유엔干涉拒否 ^㉑ — 유엔에 의한 남한지역 단독선거 반대	○ 1949, 1952 유엔가입신청 ○ 1950. 6. 25 安保理, 북한과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 ○ 1953. 7. 27 유엔軍司令部와 휴전협정 체결
韓半島問題의 유엔上程拒否期	1954 ~ 70	○ 유엔을 美國과 同一視 ^㉒ ○ 統一을 위한 남북한 포함 有關國會議 提議 ^㉓ ○ 유엔權能 否認 ^㉔	○ 1960. 8. 14 김일성, 南北聯邦制 提議 ○ 1966. 8. 12 <자주로선> 선언 ○ 1969. 10. 29 서독 할슈타인 원칙 폐기
韓半島問題의 選別的 유엔上程期	1971 ~ 현재	○ 유엔과 미국 분리시도 ^㉕ — 美軍에게서 유엔모자 벗기기 ○ 한반도 문제의 유엔문제화 시도 ^㉖ ○ 「高麗聯邦國」국호로 유엔가입 제의 ^㉗	○ 1971. 4. 12 허담 8개항 제시 ○ 1972. 7. 4 남북한 공동성명 ○ 1973. 9. 5 유엔대표부 개설 ○ 1974. 29차 총회 UNC URK 해체안 결의 ○ 1975. 30차 총회 남북한 지지 두 개의 결의안 동시 통과 ○ 1976. 9. 공산측 결의안 철회 ○ 1977~83 共産側 결의안 불상정

- ㉑ 外相 朴憲永이 유엔 사무총장 트리그브리에 보낸 서한(1948. 12. 10), “조선정부 대표단의 참가 없이 조선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조선정부와 조선인민은 이러한 결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 ㉒ 외상 남일의 대유엔 성명(1957. 1. 12), “미국은 유엔을 자기의 정책수행에 계속 이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침략적 의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미국의 거수기에 의하여 채택된 조선 문제에 관한 일련의 유엔총회 결정들은 조선문제 해결에 계속 방해를 주었다.”
- ㉓ 외상 남일의 대유엔 성명(1955. 7. 12), 1955. 8. 15 김일성 연설, 1957. 9. 20 최고 인민회의 제 2기 1차 회의에서의 김일성 연설.
- ㉔ “국련은 조선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로동신문(1962. 12. 20)
외무성 성명(1963. 9. 25), “국련에서의 조선문제 토의는 불법……”
정권창립 18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의 김광협 연설(1966. 9. 8), “유엔은 미국에 의하여 조선전쟁의 교전 일방으로 전락됨으로써 조선문제에 참여할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유엔은 조선문제 토의를 당장 접어치워야 합니다……조선문제에 대한 비법적인 결정들을 취소하고……”
- ㉕ 최고인민회의의 5기 2차회의에서의 김일 보고(1973. 3. 5), “미국이……북과 남 사이의 대화의 진척을 방해하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유엔의 사명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것입니다.”
- ㉖ 외무성 비망록(1973. 9. 25), “유엔에서 자기들의 지반이 휘흔들리자 미국은 유엔총회 제26차회의와 제27차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토의를 두 번이나 연기시켰다……미국정부도 올해 제28차회의

政府間 國際機構 加入現況

(1983년 현재)

機 構 名	加 入 日
國際電氣技術委員會(IEC)	1963.11.16
亞阿法律諮問委員會(AALCC)	1974. 3. 15
國際法定計量機構(IOLM)	1974. 5. 9
國際標準化機構(ISO)	1974. 7. 8
國際原子力機構(IAEA)	1974. 9. 16
코덱스委員會(CODEX)	

經濟外交

北韓의 經濟外交는 당초 주로 소련으로부터 必要한 經濟적·기술적 支援을 얻어내는 것으로부터 始作되었다. 그후 中共이 國內의 政治經濟的 基盤을 정비하면서부터는 中共을 위시하여 동독과 체코 등 東歐諸國도 受援對象國으로서의 重要性을 갖게 되었다.

戰後復舊가 어느 程度 完成되고, 1957년부터 1次 5個年計劃이 實施됨에 따라 輸出入이 北韓 經濟外交의 重要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나 共產圈만이 주된 거래 대상국이었다.

그러나 1950年 후반부터 中蘇紛爭이 露骨化되자, 北韓의 共產圈 經濟外交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北韓은 西方과의 經濟교류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㉞

1970年代 北韓의 對西方 무역은 급격히 증대하기 시작하여 1974년에는 총 대외 무역량의 40%가 되었고, 1975년에는 對共產圈과 對西方諸國의 무역량이 거의 比等하게 되었다.^㉟

의에서는 조선의 문제를 토의하는데 부족을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환영 오찬에서의 김일성 연설(1979.5.3), “우리는 앞으로 당신이 유엔으로 하여금 조선문제 해결에서 지닌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영구분열을 막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로동신문(1979.5.4)

㉞ 1973.6.23 발표한 김일성의 <평화통일 5대방침>, 조선중앙년감(194), pp.54~56.

㉟ 1958 영국·스웨덴과 민간무역협정, 1959 서독과 무역협정, 1960 오스트리아에 민간 무역대표부 설치.

㉟ E.I.U., Quarterly Economic Review, 4th Quarter (1976).

對外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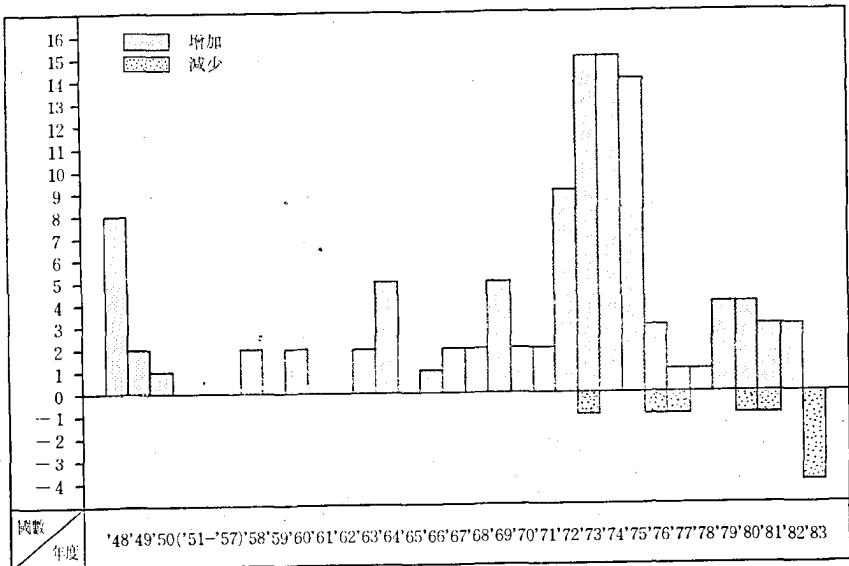
北韓의 對西方 經濟外交는 당초 經濟的 目的보다는 그것을 政治的으로 連結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輸入超過도 不辭하는 무역을 해왔다.

北韓의 對西方 經濟的 通商關係는 擴大되어 가고 있지만, 科學 技術分野에서의 關係는 아직 共產國家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을 볼 수 있다.

修交現況

北韓은 1983年 12月 현재 101個國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으며, 그 중 $\frac{2}{3}$ 이상이 70年代 이후에 關係를 수립한 나라들이다. 1950年代 前半까지는 公산권 一邊倒外交로서 共產國家에 한해서 外交關係를 맺어 왔으나, 1950年代 後半 多邊外交를 전개하기 시작한

年度別 修交國 增減趨勢



이래 中立國을 비롯한 비동맹국·新生國들에 적극 접근하여 修交國을 확장시켜 왔다.

地域別 修交現況을 보면, 아시아 16, 중동 11, 아프리카 40, 미주 11, 유럽 18, 대양주 5개국과 修交를 하고 있다.

칠레, 아르헨티나, 이라크, 도미니카(연), 버마, 코스타리카, 코모로, 서사모아와는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는 外交關係를 개설했었으나 大使館을 칠수하는 등 사실상 外交關係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北韓의 常駐公館 現況 (1983.12 현재)

區 分	大 使 館	總 領 事 館	代 表 部	계
亞 洲	13	6	1	20
美 洲	4	0	2	6
歐 洲	17	2	4	23
中 東	11	0	1	12
阿 洲	30	0	0	30
計	75	8	8	91

※ 韓國과의 對峙公館은 39個國의 41個임

北韓의 時期別·地域別 修交狀況

區分	亞 洲	中 東	阿 洲	大 洋 洲	歐 洲	美 洲	斷 交	增 減	累 計
1948	몽 고 (10.15)				소 련 (10.12) 폴 란 드 (10.16) 체 코 슬 로 바 키 아 (10.21) 루 마 니 아 (10.26) 유 고 (10.30) 형 가 리			+8	8

對外活動

區分	亞 洲	中 東	阿 洲	大 洋 洲	歐 洲	美 洲	斷 交	增 減	累 計
1949	중 공 (10. 6)				(11. 11) 불가리아 (11. 29) 알바니아 (5. 17) 동 독 (11. 7)			+3	11
1950	월 명 (1. 31)							+1	12
累計	3				9				12
1951 ~57									
1958		알제리아 (9. 25)	기 비 (10. 8)					+2	14
1959									
1960			말 리 (10. 31)			쿠 바 (8. 29)		+2	16
累計	3	1	2		9	1			16
1961 ~62									
1963		부 예 멘 (3. 9) 이 집 트 (8. 24)						+2	18
1964	인도네시아 (4. 16) 캄보디아 (12. 20)		모리타니아 (11. 12) 콩 고 (12. 24) 가 나 (12. 28)					+5	23
1965			탄자니아 (1. 13)					+1	24
1966		시 리 아 (7. 25)						+1	25

區分	亞 洲	中 東	阿 洲	大 洋 洲	歐 洲	美 洲	斷 交	增 減	累 計
1967			부 룬 디 (3. 11) 소 말 리 아 (4. 12)					+2	27
1968		이 라 크 (1. 30) 남 예 멘 (2. 7)						+2	29
1969		수 단 (6. 21)	적 도 기 니 (1. 30) 잠 비 아 (4. 12) 차 드 (5. 8) 중 앙 아 프 리 카 (9. 5)					+5	34
1970	말 더 브 (6. 14) 스 리 랑 카 (7. 15)							+2	36
累計	7	7	12		9	1			36
1971				시 에 라 레 온 (10. 14)		말 타 (1220)		+2	38
1972	파 키 스 탄 (11. 9)		카 메 룬 (3. 3) 루 안 다 (4. 22) 우 간 다 (8. 2) 세 네 갈 (9. 8) 어 피 볼 타 (10. 11) 마 다 카 르 스 카 르 (11. 16) 자 이 레 (12. 15)			칠 레 (6. 1)		+9	47

對外活動

區分	亞 洲	中 東	阿 洲	大 洋 洲	歐 洲	美 洲	斷 交	增 減	累 計
1973	말레이지아 (6. 30) 방글라데시 (12. 9) 인도 (12. 10) 아프가니스탄 (12. 26)	이 란 (4. 15)	토 고 (1. 31) 베 닌 (2. 5) 감 비 아 (3. 2) 모리셔스 (3. 16)		스 웨 덴 (4. 7) 핀 란 드 (6. 1) 노르웨이 (6. 22) 덴 마 크 (7. 17) 아이슬란드(7. 27)	아르헨티나 (6. 1)	칠 레 (9. 18)	+15 -1	61
1974	베 리아 (5. 15) 라 오 스 (6. 24)	팔 리 비 아 (1. 23) 요 르 단 (7. 5)	가 봉 (1. 29) 기 니 비 소 (3. 16) 니 제 르 (9. 6) 보츠와나 (11. 27)	호 주 (7. 31)	오스트리아 (12. 17) 스 위 스 (12. 20)	코스타리카 (2. 10) 가이아나 (5. 8) 자마이카 (10. 9) 베네수엘라 (1028)		+15	76
1975	대 국 (5. 8) 버 마 (5. 16) 싱가포르 (11. 8)	튀니지아 (7. 16)	케냐 (5. 12) 이디오피아 (6. 5) 모잠비크 (6. 25) 리베리아 (7. 3) 산 토 메 프린시페 (8. 9) 케이프 베르데 (8. 18) 코모로 (11. 13) 앙고라 (11. 16)	피 지 (4. 14)	포르투갈 (4. 15)			+14	90
1976			나이지리아 5. 25 세이셸 (8. 24)	파푸아 뉴기니아 (6. 1)			모리타니아 (3. 15)	+3 -1	92

區分	亞	洲	中	東	阿	洲	大	洋	洲	歐	洲	美	洲	斷	交	增	減	累	計
1977												바르바 도스 (12.5)	아르헨 티나 (6.14)			+1	-1	92	
1978							서사모아 (6.28)									+1		86	
1979												그라나 다 (5.9)	니카라 과 (8.2)	세인트 루시아 (9.13)	도미니 카(연) (9.18)			+4	97
1980						모리타니 아 (3.19 재 교)	짐바브웨 (4.18)	레소토 (7.19)				멕시코 (9.4)	이 락 (10.10)			+4	-1	100	
累計	17	10 (11-1)	40 (41-1)	4	18	11 (13-2)												100	
1981		레 바논 (2.12)				바누아트 (10.1)						세인트 빈센트 (4.3)	도미니 카(연) (1.28)			+3	-1	102	
1982					말라위 (6.25)	나우루 (2.25)						수리남 (10.11)				+3		105	
1983													버마 (11.4)	코스타 리카 (12.7)	코모로 (12.21)	서사모 아 (12.22)		-3	101
總計	16 (17-1)	11	40 (41-1)	5	18	11 (11-2)												101	

出處 : 조선중앙년감(1982년판) 및 最近報道

※ 北韓은 가나(66.7 대사관철수, 78.7.17 재개), 중앙아프리카(71.3 대사관철수, 77.2.4 재개), 스리랑카(71.3.28 대사관철수, 75.3.19 재개)와는

對外活動

대사관을 철수했다가 재개한 바 있음.

※ 1983. 10. 9 전두환 대통령의 니마방문시 한국의교사절단에 대한 랭군아웅산국립묘지 안장폭발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자, 비마정부는 11. 4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정부승인을 취소하였다. 이어 코스타리카(83. 12. 7)와 코모로(83. 12. 21), 서사모아(83. 12. 23)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 1983. 12 현재 한국의 총수교국은 121개국, 남북한 동시수교국은 66개국, 한국단독수교국은 55개국, 북한단독수교국은 35개국이다.

對外宣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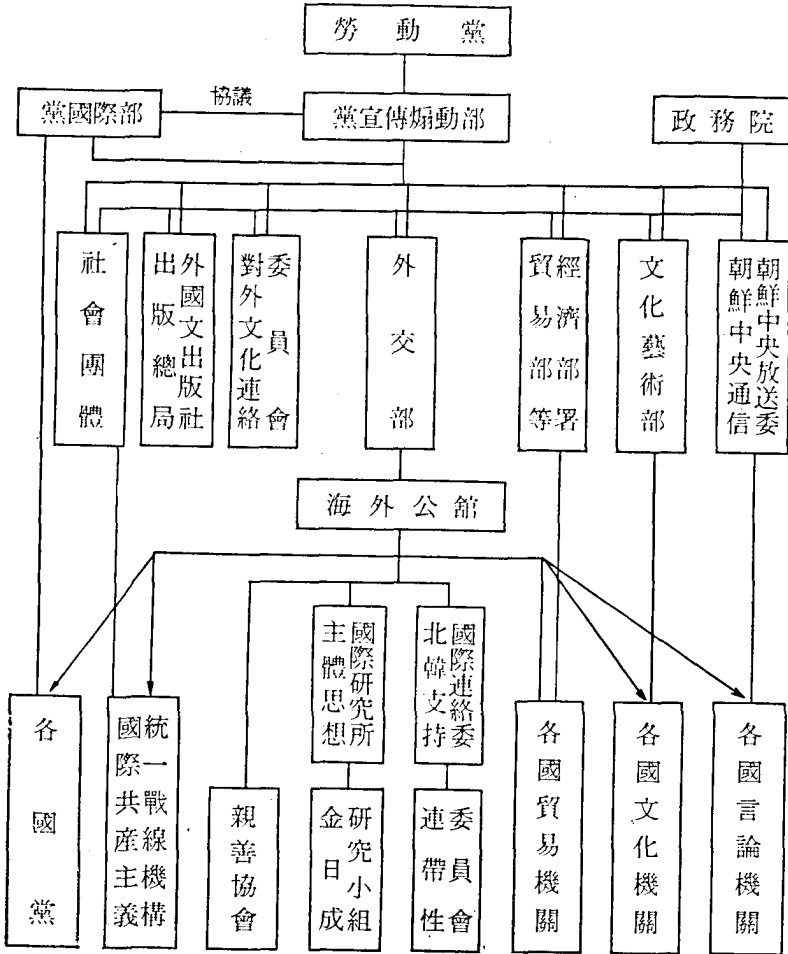
宣傳方向

對外宣傳은 外交活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서, 〈國際革命力量과의 연대성〉을 強化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위업에 적극 이바지〉 하는 것을 基本原則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 아래 ① 韓半島에서의 共產化革命을 위한 國際的 與件 造成 ② 「社會主義 建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國際協力的 強化 ③ 北韓의 國際的 地位 向上과 韓國의 孤立化 劃策, ④ 金日成 寓像化 및 金正日 世襲體制的 當爲性 宣傳 ⑤ 北韓 統一方案의 正當性 主張 등을 對外宣傳의 基本方向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基本方向에 따르는 對外宣傳活動은 陣營別 外交目標에 맞추어 展開되고 있는데, 陣營別 特性을 보면, 共產圈에 대해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純粹性を 표방하면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原則」의 견지와 社會主義運動의 統一團結強化를 주장하고 있고, 非同盟國에 대해서는 「反帝·反植民主義」와 「民族解放鬪爭」에서의 連帶性を 표방하면서 金日成의 「主體思想」과 北韓統一方案의 正當性 宣傳에 注力하고 있으며, 西方圈에 대해서는 「相互平等 및 主權尊重」을 표방하면서 南北韓等距離外交, 韓國의 孤立化를 겨냥한 對韓支援弱화 尤도를 위한 平和 이미지 부각과 對外 認識의 畵新에 주력하고 있다.

北韓의 海外宣傳 機構圖



宣傳機關

前職 勞動黨 高位人士의 證言에 依하면, 對外宣傳活動도 對外活動의 하나인 만큼 黨의 指導·統制下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즉 對外宣傳活動에 관한 計劃은 <黨中央委員會 宣傳煽動部>가

對外活動

담당하며, 執行에 대한 총체적인 지휘·감독은 <國際部>가 맡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實際의 執行은 <宣傳煽動部>의 <外國文出版社>가 주축이 되어 出版을 하고 <朝鮮出版物輸出入商社>와 海外各公館과 親北團體를 통해 普及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對外宣傳機構로는 各種 國際共產主義戰線 機構(世界職業同盟·世界民主青年同盟·世界民主女性同盟 등)에 加入한 黨外廓團體(직업총동맹·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민주여성동맹 등)를 비롯해 政務院 산하의 부서(외교부·무역부·문화예술부 대외경제사업부 등)와 <對外文化連絡協會> 및 그 산하기구를 통해 조직된 各種 親善團體·文化協力·通信放送·出版기관 등을 꼽을 수 있다.

北韓內 主要 共產主義戰線機構連繫機關

國際共產主義 統一戰線機構	本 所 在 地	會 員 國	北 韓 加 入 日	北 韓 內 連 繫 名	結 成 日
世界職業聯盟	프 라 하	60 개국	47. 5.	朝鮮職業總聯盟	45. 11. 30
世界民主青年 聯	부 다 스 페 트	107개국	46. 6.	朝鮮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	46. 1. 17
國際民主女性 聯	베 를 린	109개국	46. 10.	朝鮮民主女性 同	45. 11. 19
世 界 平 和 理 事 會	헬 싱 키	130개국	49. 4.	朝鮮平和擁護 全國民族委員 會	49. 3. 24
亞·阿人民團 結 機 構	카 이 로	74개국	57. 12.	亞 阿 團 結 會 員	56. 5. 31
國際記者同盟	프 라 하	112개국	50. 1.	朝鮮記者同盟	46. 4. 10

宣傳內容 및 方式

宣傳內容은 앞에서言及한 바와 같이, 各對象 地域別로 특성을 달리하고 있으나, 全地域에 걸쳐 北韓社會의 發展相 宣傳, 反帝 反美鬭爭 宣傳, 金日成 宣傳에 注力하고 있는 것이 共通된 現象이다.

宣傳方式은 海外駐在 全公館과 各種 親北團體, 人物을 통한 宣傳物의 發刊配布 이외에도 親北反韓集會 開催, 聲明, 呼訴文 發表, 記者會見, 映畫上映, 圖書 및 사진展示會, 便紙 發送, 現地 매스컴에의 廣告 게재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藝術團의 海外巡訪, 스포츠交流를 통한 宣傳活動도 展開하고 있다. ㉞

北韓의 對外宣傳物의 刊行과 配布動向을 보면, 70年代初까지는 「오늘의 朝鮮」, 「朝鮮貿易」 등 定期刊行物과 金日成 宣傳을 위한 金日成 著作物의 翻譯·出版·普及에 力點을 두었으나, 70年代中盤부터는 定期刊行物을 비롯해서 一般圖書·畫帖·팜플렛 등 다양한 宣傳資料를 製作普及하기 시작하였으며, 80年代에 들어 이러한 宣傳活動을 더욱 積極的으로 展開하고 있는데, 81年度末 기준으로 海外에 流布하고 있는 宣傳資料는 一般圖書·畫帖 등 圖書類 124種, 葉書·팜플렛 등 147種, 新聞·雜誌·畫報 등 定期刊行物 8種 등에 이르고 있다.

北韓의 定期刊行物 現況

區 分	刊 行 物 名	表 記 語	備 考
新 聞	平壤時報	英·佛語	年60回
畫 報	朝 鮮	露·中·英·佛·西班牙語	月 刊
雜 誌	오늘의 朝鮮	露·中·英·佛·西班牙語	月 刊
	朝鮮聯盟	英·佛語	隔月刊
	朝鮮青年學生	英·佛語	隔月刊
	朝鮮女性	英·佛語	季 刊
	朝鮮貿易	露·英·佛·日·西班牙語	月 刊
	朝鮮郵票	英·佛語	季 刊

㉞ 北韓의 藝術團으로는 平壤藝術團, 平壤學生少年藝術團, 萬壽臺藝術團, 平壤巧藝團, 피바다歌劇團, 人民軍協奏團, 國立交響樂團 등이 있다.

北韓의 海外配布刊行物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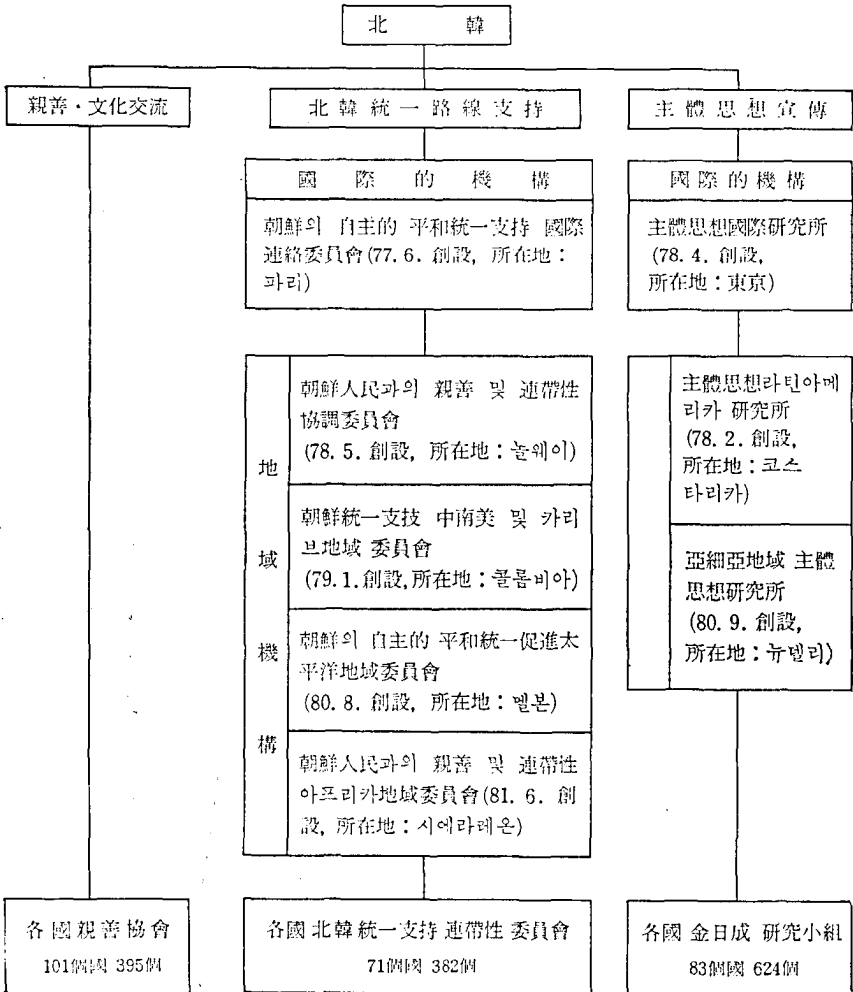
區 分	表 記 語	種 類
一 般 圖 書	露·中·日·英·佛·獨·아랍·西班牙語	金日成著作集, 朝鮮歷史概要, 萬景臺 등 94種
畫 帖	露·中·日·英·佛·西班牙語	偉대한 사랑의 길, 主體藝術, 不滅의 革命傳統 등 48種
葉 書	露·中·日·英·佛·獨·아랍·西班牙語	平壤, 萬景臺, 꽃파는 處女, 人民文化宮殿 등 21種
판 플 레트	露·中·日·英·佛·獨·아랍·西班牙語	萬景臺案內, 金剛山案內 등 15種
美 術 集	露·中·日·英·佛·西班牙語	朝鮮優秀藝術, 江西 三古墳 등 3種
立 體 그 립	英 語	金日成花, 金剛山玉流川 등 57種
카 세 트	國 語	「피바다」, 「밀립아! 이야기하라」 등 21種
칼라슬라이드	英 語	黨創建紀念館, 白頭山 등 30種

親北團體

北韓은 海外 親北團體들을 動員하여 韓國에 대한 眞相 왜곡과 反政府鬭爭 煽動에 중점을 둔 모략선전을 전개하여 反韓輿論을 造成케 하는 한편, 각종 國際會議를 開催케 하여 韓國非難 決議文을 채택하는 등 國際的으로 韓國의 이미지를 손상코자 하는 선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北韓의 海外 親北團體 組織은 ①〈親善協會〉, ②〈金日成研究小組〉 ③〈連帶性委員會〉로 大別할 수 있는데, 「親善協會」는 相對國의 左傾 또는 親北人士들로 구성된 〈人民外交〉의 前衛團體로서 集會·聲明·展示會 등을 통해 北韓의 우월성 선전, 駐在國의 親北政策 유도 등에 活用하고 있고, 〈金日成研究小組〉는 〈金日成勞作〉에 대한 學習과 討論會를 중심으로 해서 金日成 선전과 소위 〈主體思想〉의 海外傳播에 活用하고 있으며, 〈連帶性 委員會〉는 親北反韓

(北韓的海外親北組織體系圖)



地域別 海外親北團體 組織 現況 (國數/團體數)

地域	國體 金日成研究小組	親善協會	連帶性委	計
亞洲	8/218	13/218	7/239	13/675
中東	11/88	13/23	9/16	13/127
阿洲	24/129	22/27	20/29	31/185
西歐	16/124	17/54	16/56	18/234
美洲	17/48	22/48	16/35	25/131
共產圈	7/17	14/25	3/7	15/49
計	83/624	101/395	71/382	115/1,401

出處：韓國研究機關資料

(82년말 현재)

活動을 위한 政治團體로서 集會·聲明 등을 통해 北韓의 統一路線 宣傳과 支持 獲得에 이용하고 있다.

〈親善協會〉는 1951년 6월 〈日朝協會〉의 結成을 시발로 하여 組織되기 시작하였는데, 組織初期의 50年代는 아시아주와 共產圈 地域의 5個國 13個에 불과하였으나, 60년대 들어 全地域에 걸쳐 45個로 擴大되었으며, 70년대·80년대에 급격히 팽창하여 1982년말 현재 101個國 395個에 이르고 있다.

〈金日成研究小組〉는 1969년 4월 말리에서 처음 組織되어 〈金日成 勞作研究小組〉, 〈金日成 勞作研究所〉, 〈金日成 革命歷史研究室〉, 〈主體思想研究小組〉 등의 형태로 組織되고 있는데, 北韓이 70년대초의 國際的 平和共存 무드에 편승하여 外交活動을 強化하였던 시기인 70년에 66個, 71년에 105個로 新設 急增하였고, 暴力 革命輸出, 外交官 密輸, 도끼蠻行事件 등으로 北韓의 國際的 威信이 실추되었던 70년대 中盤까지는 그 組織結成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1977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主體思想〉에 관한 國際討論會〉를 계기로 그 組織結成이 다시 활발하여져서 1982년 말 현재 83個國 624個에 이르고 있다.

〈金日成研究小組〉는 아시아·아프리카·中南美地域 등 주로 非

年度別 親善協會 組織 現況

年度	地域						計
	亞洲	中東	阿洲	西歐	美洲	共產圈	
1950							
1951	3						3
1952							
1953							
1954	1						1
1955	2						2
1956	1						1
1957	3						3
1958	2					2	4
1959							
1960						2	2
1961	4			2		1	7
1962	2				1		3
1963	4				2		6
1964	1						1
1965	2					1	3
1966	2						2
1967			1	1			2
1968	3		2	2	2		9
1969	6	3		1			10
1970	8	7	6	1	2		24
1971	7		1	5	1		14
1972	17	2	2	1	1		23
1973	7			3	2	1	13
1974	2			3	3	1	9
1975				1	4		5
1976	1			7	1		9
1977	3	2		1	1	1	7
1978	3						3
1979	5	1		1	1		8
1980	11		3	3	1		18
1981	6	1	2	1	4		14
1982	2		1	3	2		8
年度未詳	112	7	9	19	20	16	182
總計	218	23	27	54	48	25	395

出處：韓國研究機關資料

年度別 金日成研究小組 組織現況

年度 地域	亞 洲	中 東	阿 洲	西 歐	美 洲	共產圈	計
1969	1		1				2
1970	16	22	14		3	11	66
1971	26	13	24	36	2	5	105
1972	14		2	6	1		23
1973	3		1	2			6
1974	4	1	2	3			10
1975	1	3	2	3	2		11
1976	1		1	7			9
1977	5	1	5	4	2		17
1978	4	3	4	3	4		18
1979	4	8		8			20
1980	11	3	18	10	6	1	49
1981	14	3	12	22	8		59
1982	7		11	10	3		31
年度未詳	107	31	32	10	17		197
總 計	218	88	129	124	48	17	624

出處：韓國研究機關資料

同盟圈에 組織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며, <金日成 研究小組>가 가장 많이 組織되어 있는 나라는 <主體思想國際研究所>(1978년 正式發足)가 설치되어 있는 日本이나 中蘇와 東歐 등 共產圈地域에는 제 3世界國家의 留學生들로 구성된 <研究小組> 이외는 <金日成 研究小組>가 없다는 것이 興味있는 일이다.

<連帶性委員會>는 1971年 모리셔스에서 처음 조직되었는데, 그 目的은 統一問題에 대한 對外宣傳을 더욱 強化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서 1982년末 현재 71個國 382個 組織에 이르고 있다.

<金日成研究小組>가 非同盟圈을 중심으로 組織되어 있는데 반해서 <連帶性委員會>는 아시아·西歐·美洲 등 韓國과 緊密한 聯繫을 갖고 있는 西方圈地域에 중점적으로 組織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

主要 主體思想研究所 現況

名 稱	設 立 日	場 所	活 動 狀 況
主體思想 國際研究所	1978. 4. 9	日本東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의 勞作 普及 ○ 主體思想에 관한 討論會, 講演會, 發表會 開催 ○ 機關誌「主體思想研究」發刊(英·佛·日·西 등 4個 國語, 1982.12 현재 19호 發行) ○ 各國의 主體思想研究費 支撥
라틴아메리카 主體思想研究所	1978. 2. 17	코스타리카 산 호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틴아메리카 지역내의 主體思想 세미나 등 계획 조직 ○ 國際研究所와의 連絡 및 協力 ○ 各國에 「주체사상연구소」 조직 ○ 「主體思想研究」發刊(스페인어)
아시아地域 主體思想研究所	1980. 9. 6~7	인도 뉴 델 리	○ 아시아地域內 主體思想의 普及

※ 主體思想研究組織現況은 조선중앙년감(1981년판) pp. 380~382 참조

主體思想 國際討論會 開催現況

回 數	日 字	開 催 地	參 加 規 模
第 1 次	1976. 9. 28~30	마다가스카르타 나 나 리 보	50個國
第 2 次	1977. 9. 14~17	평 양	73個國
第 3 次	1979. 4. 14~16	인도 뉴델리	70個國
第 4 次	1982. 4. 9~11	인도 뉴델리	107個國

出處: 조선중앙년감(1981년판) pp. 379~380

그리고 各國에 散發的으로 組織되어 있는 <朝鮮統一支持連帶性 委員會>의 活動을 調整·統制하고 國際的 規模의 北韓支持活動을 展開할 目的으로 1977年 6月 프랑스 파리에 <朝鮮의 自主的 平和 統一을 위한 國際連絡委員會>를 設立하였다. 이 <國際連絡委員會>는 1977年 2月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朝鮮의 自主的 平和

年度別 連帶性 委員會 組織現況

年度	地域						計
	亞 洲	中 東	阿 洲	西 歐	美 洲	共產圈	
1971	2	2	3	2	2		11
1972	1			2	1		4
1973							
1974							
1975		1		1			2
1976	7	5	7	17	12	3	51
1977	30	1	6	3	1		41
1978	24		2	1	1		28
1979	14		1	4	2		21
1980	17		1	7	5		30
1981	13		1	7	5		26
1982	7		1	2	1		11
未 詳	124	7	7	10	5	4	5
總 計	239	16	29	56	35	7	382

出處：韓國研究機關資料

朝鮮의 自主의 平和統一支持世界大會

回 數	日 字	場 所	參加規模	備 考
第 1 次	1977. 2. 21~22	벨기에 브뤼셀	50個國 ¹⁾ 27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決議文 採擇 — 駐韓美軍 撤收 — 北韓의 “1, 25南北 政治 協商會議” 支持 • 各國政府와 UN에 보내는 便紙 채택 • 「國際連絡委員會」 創設 決議
第 2 次	1978. 11. 27~29	日本 東京	60個國 ²⁾ 50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決議文 採擇 — 駐韓美軍 撤收 — UN軍司令部 解體
第 3 次	1981. 3. 26~28	알제리 알제이	80個國 ³⁾ 20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世界人民에 보내는 呼訴文 채택 — 고려연방안 지지 — 주한미군 철수

出處：1) 로동신문(1977. 10. 26)

2) 로동신문(1978. 12. 6). 일본정부가 한일관계를 비난하는 의제와 관련, 입국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실제로는 40여개 국에서 77명만 참석하였다.

3) 조선중앙년감(1982년판) p. 293

統一支持를 위한 世界大會)에서 그 設立決議文이 채택되고, 이 決議에 따라 1977年 6月 25~26日 알제리 알제이에서 개최된 <國際連絡委員會 제1次會議>에서 規約이 채택되어 상설사무국의 설치가 결정됨으로써 발족하였다.

그 活動狀況을 보면, 北韓의 背後 操縱下에 親北反韓活動을 위한 駐韓美軍 撤收와 北韓의 聯邦制 支持를 促求하는 내용의 呼訴文·聲明·談話 등을 發表하는가 하면 “朝鮮은 하나다”라는 機關誌를 發行하여 韓國에 대한 왜곡선전을 하고 있다.

朝總聯

1955年 5月 25日에 組織된 <조총련>은 日本에 居住하는 60萬 在日 교포들을 북한 支持로 轉向시키고, 한반도에서의 共產革命을 達成하기 위한 前進기지로써 조직된 것이다.

金日成이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제일 조선인 운동은 비로소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그에 基礎한 대오의 사상 의지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융성 발전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애국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朝總聯>은 제일교포들에 대한 포섭공작과 한반도의 共產化를 위한 革命力量強化에 目的을 두고 있다.

北韓은 <朝總聯>에 대하여 積極的인 支援活動을 하고 있다고 宣傳하고 있다. 例컨대, 1957년부터 1983年 사이에 89회에 걸쳐 <朝總聯>에 對하여 教育援助費 名目으로 346억 5천엔(日貨)을 送金했다고 한다.^⑤

그러나 <朝總聯>에서 北韓에 갖가지 名目으로 資金을 다시 獻納하는 것은 在日 韓人社會의 常識이 되어 있다. 例컨대, 1979年 4月 完工된 <평양애국옥당(玉糖)공장>은 <조총련>의 設備 寄贈으로 建設된 工場이며, 이 以外에도 몇 個의 工場이 있다고 한다.

또한 1979年 8月 28日 北韓의 對日負債 償還延期 交渉이 妥結

⑤ 평양방송, 1983.9.8

되면서 對日 總支拂額 1,260억엔 중 1979年末까지 支拂해야 할 60억엔을 <朝總聯>系 <朝鮮人信用協同組合>(資産額 80억엔)에서 代納해야 할 것이라는 說이 있었다.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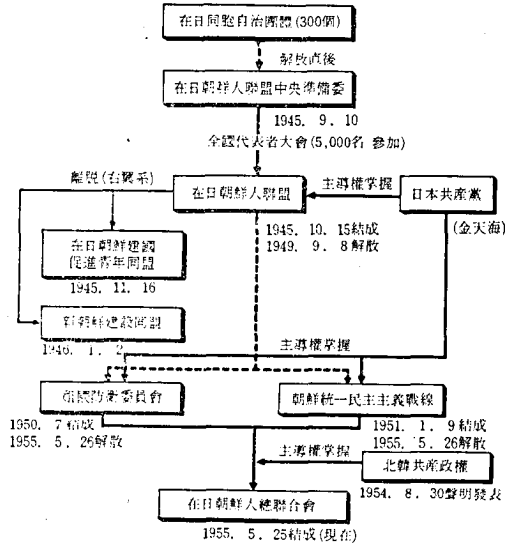
그리고 1983년 10월 9일 韓國外交使節團에 대한 버마 랭군 아웅산 국립묘지의 暗殺爆發 事件의 北韓 테러범 輸送에 사용된 <애국동건호>도 <朝總聯>에서 기증한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北韓의 <朝總聯>에 대한 支援은 單純한 支援이 아니라 獻納을 誘導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는 對南工作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經濟的 관계와 아울러 北韓은 <朝總聯>을 <黨의 唯一思想, 主體思想으로 一色化>하기 위하여 思想教養事業을 強化해 나가고 있다. ㉕

1959年 12月 14日부터는 在日同胞들을 北送시키기 시작하여 19

朝總聯의 結成過程



㉔ 統一日報(1979. 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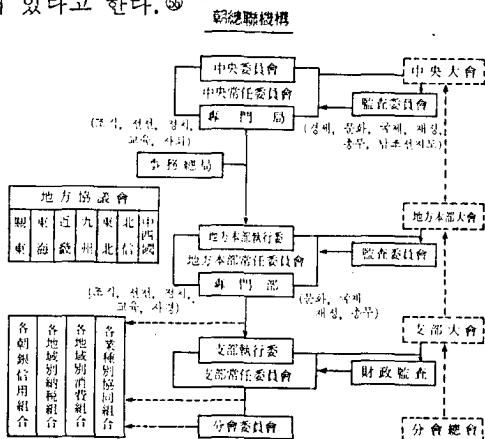
㉕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 439.

83年末 現在까지 186회에 걸쳐 총 93,310명을 北韓地域으로 送還시켰으며, 1962年 3期 最高人民會議부터는 <朝總聯>代表를 代議員으로 參加시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北韓과 政治·思想·經濟的으로 連繫을 맺고 있는 <朝總聯>은 北韓의 對外宣傳機構로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조총련>을 통한 대외선전 활동에 대하여 北韓은 “총련은 출판물을 통한 일상적인 선전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요한 시기마다 기자회견·강연회·가두선전과 시위·서명운동·조국통일 촉진대행진 등 여러가지 형태로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힘있게 벌렸다”⁵⁴라고 評價하고 있다.

<朝總聯>은 <김일성 저작 선집>과 <혁명전통교양> 자료들을 各國語로 번역 出版하고, 신문·잡지·경기 간행물들을 발행하여 세계 각국을 상대로 宣傳活動을 하고 있다.⁵⁵

<조총련>은 1981年 현재 49개의 地方本部와 300여개의 支部, 1,800여개의 分會와 그리고 청년·상공인·교육자 등 14개의 傘下團體들이 있다고 한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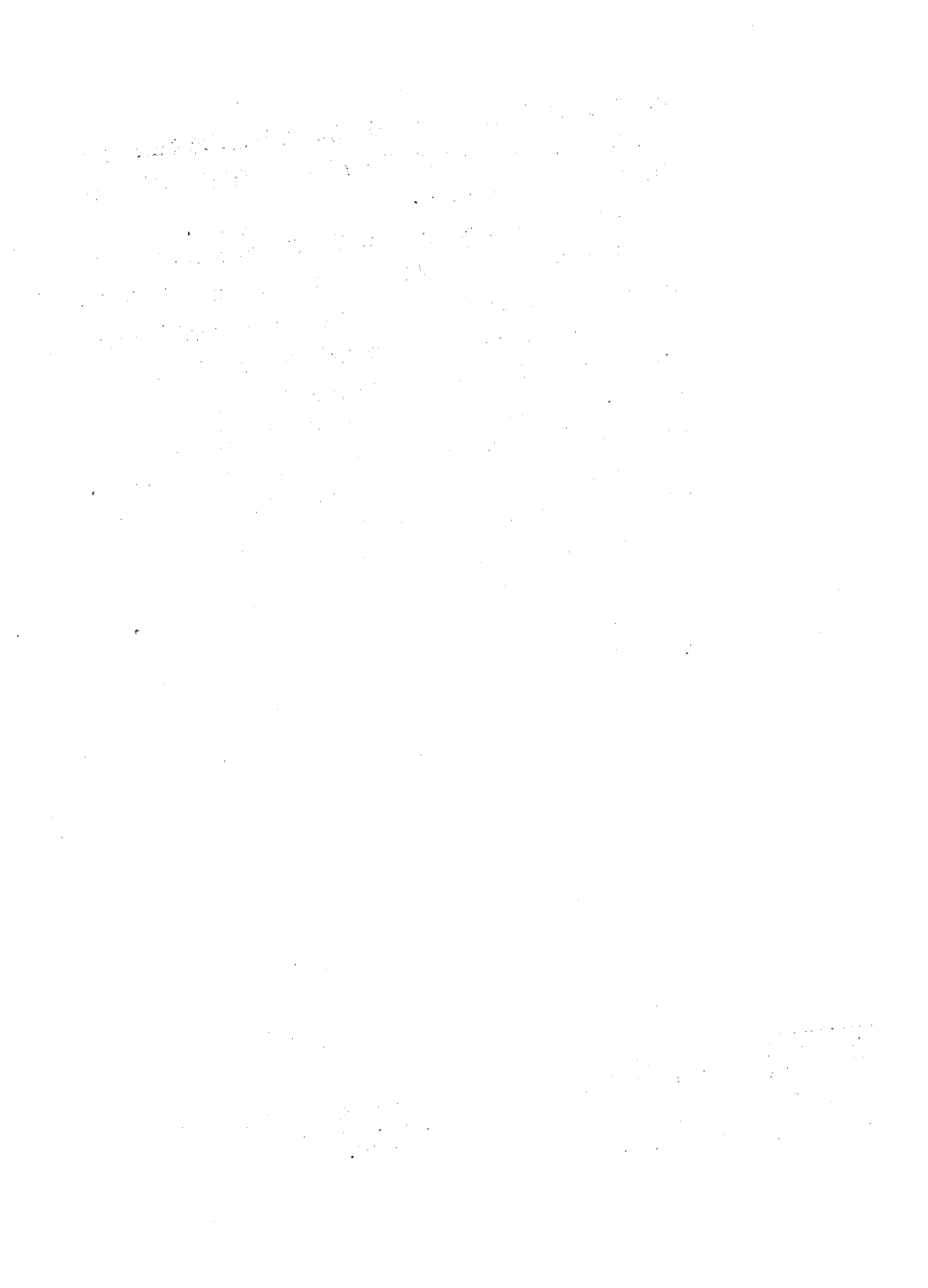


※ 朝總聯規約 근거 작성

⁵⁴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439.

⁵⁵ 조선중앙년감(1981년판), p.361. <조총련>은 한글판으로는 조선선보(신문)·조국(잡지) 등을 발행하고 있고, 일본어로는 조선시보·조선화보 등이 있으며,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는 인민조선 등의 경기간행물을 발행하여 140여개국에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⁵⁶ 조선중앙년감(1981년판), p.361.



統

一

統一政策

統一政策의 基調

南韓觀

北韓은 新聞·放送 等 모든 宣傳媒體를 통해 韓國社會가 “外國軍의 強占下에 있으며, 經濟는 植民地 隸屬經濟로서 모든 利潤을 搾取당함으로써 國民들은 餓빈고 굶주리고 있다”고 一貫하여 宣傳해 오고 있다.

그러나 韓國에 있는 外國軍은 占領軍이 아니라 韓美相互防衛條約 遵守를 위한 駐屯軍이며, 外國人企業家들은 合作企業 關係人士들이고, 經濟의 高度成長 속에 分配面에서 생긴 마찰 등 몇 가지 問題는 있지만 國民들이 餓빈고 굶주리는 것이 아님은 再言을 要하지 아니하는 問題들이다.

北韓의 統一觀과 統一戰略은 이러한 非現實的이고 造作된 〈南朝鮮觀〉 위에서 수립되고 展開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南韓의 實情을 事實대로 알리는 것보다는 歪曲하여야만 비로소 〈唯一思想的 統制〉가 可能해지며, 北韓住民들을 〈南朝鮮解放 思想〉으로 武裝시켜 體制內的 挑戰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勿論 北韓社會의 閉鎖性도 여기에서 緣由한다고 볼 수 있다.

對內 統治를 無難하게 하기 위한 〈南朝鮮觀〉 造作과 거기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北韓의 統一觀·統一戰略이다. 때문에 北韓은 밖으로는 全民族大會, 聯邦制, 合作·交流를 主張하면서도 韓國이 막상 交流·對話를 하자면 相對方이 應하기 어려운 새로

은 條件을 내세우는 것이다.

1970年代初 한때 열렸던 南北對話의 門이 여러 구실로 遮斷되고만 것이 이러한 연유에서였음은 이미 美·日 등지의 第三者의 分析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要컨대, 北韓은 <南朝鮮解放>의 論理에서 統一問題에 接近하고 있기 때문에 對話와 交流는 關心 밖의 일로 되어 있는 것이다.

統一觀

北韓政權은 黨規約에서 “當面目的是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이룩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民族解放과 人民民主主義의 革命과업을 完遂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是 社會의 主體思想化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①라고 함으로써 共產化 統一의 立場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立場은 古순한 前職 勞動黨幹部가 記憶하고 있는 金日成의 秘密敍示(1968. 7. 8)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다.

“조국통일은 分斷된 國土와 民族의 단순한 재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南朝鮮革命을 前提로 하는 全國的 範圍에서의 反帝·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 革命을 完遂하기 위한 舉族的인 事業이다.

南朝鮮革命은 祖國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全朝鮮革命의 一部分으로서 祖國統一과 南朝鮮革命은 서로 不可分離의 連關性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一定한 共通點과 差異點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金日成은 統一과 <南朝鮮革命>의 共通點으로서는

- 1) 兩者가 다같이 朝鮮革命에 이바지한다는 點,
- 2) 兩者가 다같이 勞動黨의 主體思想을 指導的 指針으로 삼고 있다는 點,
- 3) 兩者가 다같이 <美帝>와 地主·買辦資本家·反動官僚를 主 打擊對象으로 하고 있다는 點을 들었다고 한다.

① 6次黨大會(80. 10. 13)에서 採擇된 黨規約

또한 兩者의 差異點으로서는

- 1) 兩者의 目的과 理念은 같지만, 그 包括하는 地域的 範圍와 指導者가 다른 點,
- 2) 力量編成 關係가 다른 點,
- 3) 統一은 平和的인 方途와 非平和的인 方途가 있을 수 있으나 南朝鮮革命은 오직 暴力的인 方途 밖에는 없다는 點을 들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北韓의 統一觀은 統一方式이야 어떻든 간에 <南朝鮮革命>을 전제로 한 <先 暴力革命 · 後 共產化統一>이라는 것으로 要約될 수 있다.

對南革命의 基本戰略：統一戰略

북한은 全韓半島의 共產化라는 最大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 <3대혁명 역량강화>라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1964년 2월에 노동당의 방침으로 確立^② 되었는데, 그 내용의 根幹은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조국의 통일, 즉 조선혁명의 전국적인 승리는 결국 3대역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革命基地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더 強化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覺醒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세째로 조선인민과 國際革命力量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③

이를 통해서 볼 때 <3대혁명역량>을 強化한다는 것은, 첫째 북한인민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강화하여 對南革命 支援力量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둘째 남한내의 모순을 최대한 尖銳化시켜 社會混亂으로

② 64.2 노동당 중앙위 4기 8차회의 결론

③ 65.4.14 김일성,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원 연설(김일성 저작선집 4권, 239페이지).

誘導함으로써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與件을 造成・強化해 나간다는 것이고, 세계로는 남북한의 소위 혁명역량의 활동을 容易하게 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혁명 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북한이 〈3대혁명역량〉강화 라는 것을 1960년대 對南戰略의 기본방침으로 확립한 것은 〈先 남조선혁명, 後 공산화통일〉이라는 기본 구도아래 6.25동란의 실패, 4.19혁명이용 기회의 逸失, 5.16이후 반공정권 강화, 주한미군의 계속주둔과 대외적 連帶性 강화 및 국제환경의 중요성등 〈남조선혁명〉에 대한 북한 나름 대로의 中・長期的 情勢 判斷에서 나온 새로운 대남전략의 구체적 實踐指針인 것이다. 〈3대혁명역량〉강화 지침은 狀況에 따라 權力基盤강화, 군사력 증강, 대남도발 및 煽動, 反韓外交行脚 등 여러형태의 進술적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3대혁명역량〉강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社會主義 基地建設 強化

〈社會主義基地〉라는 것은 공산주의 혁명이 진행되는 나라에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혁명이 승리하여 혁명정권을 세우고 공산주의식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全國的 공산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基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혁명을 더욱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혁명에서 이미 爭취한 성과를 鞏固・發展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外來帝國主義者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가장 옳은 길은 먼저 인민들이 이미 主權을 틀어쥔 북반부를 혁명의 강력한 基地로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④

요컨대 北韓에서의 〈社會主義基地建設〉이라는 것은 모든 측면에 있어서 北韓의 역량을 강화하여 全韓半島 공산화의 기지로 삼

④ 김일성 저작선집 4권, p. 82.

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北韓에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라는 3대혁명을 對內的으로 強行하고 있다. 주로 金正日의 主導下에 推進하고 있는 3대혁명은 政治的으로는 金日成·金正日 世襲 權力體制를 確立하고, 經濟的으로는 重工業 爲主의 命令經濟體制를 強化하고, 社會的으로는 혁명에 의한 공산주의 인간개조를 통해 金日成主義로 一色化하고, 軍事的으로는〈4大軍事路線〉을 추구하고 있다.

南韓內의 革命力量 強化

〈南韓內의 革命力量強化〉라는 것은 남한내에 地下黨組織을 擴大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勤勞大衆과의 〈통일전선〉을 수립함으로써 南韓의 〈反革命勢力〉을 약화시켜 기존정권을 打倒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政治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北韓은 두가지의 혁명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民族解放革命〉이라는 것으로서 美軍撤收를 주장하는 것이 그 核心으로 되어 있다. 北韓共產集團이 〈民族解放〉이라는 名分을 내걸고 미군철수를 煽動하는 것은 對南國際的 支援力量을 弱화시킴으로써 北韓에 대한 국제적 지원역량을 相對的으로 강화시킨다는 戰略的 意圖의 產物이다. 民族主義的 感情에 便乘하여 南韓內部的 軍事적 역량에 損失을 가져오려는 目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既存政權을 타도하고 容共政權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北韓은 南韓內의 기존정권을 封建的이고 〈反動的인 政權〉이라고 非難하면서 勞動者·農民 등 〈전인민〉이 이를 暴力的으로 〈타도〉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北韓은 〈南韓內의 革命力量〉 강화를 民族矛盾과 階級矛盾 조장이라는 側面에서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하여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南朝鮮革命은 美帝國主義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民族解放革命 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地主, 買辦資本家, 反動官僚들과 그들의 狹小통치를 반대하는 人民民主革命이다. 이 혁명의 기본

임무는 南朝鮮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쇼독재를 뒤집어엎고 先進의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南朝鮮 社會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다.”^⑤

國際的 力量과의 連帶性 強化

金日成은 북한의 對南赤化를 支持하고 支援할 수 있는 국제적 條件을 造成하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朝鮮革命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朝鮮勞動黨과 朝鮮人民의 혁명투쟁의 승리는 南北朝鮮에서 혁명역량을 강화·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國際革命力量과의 단결을 강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國際革命力量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支持와 同情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革命發展에 유리한 國際環境을 마련할 수 있다. 국제혁명역량과의 團結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平和的 統一을 實現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⑥

이러한 性格을 가진 〈國際革命力量과의 團結強化〉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對共產圈 外交를 強化하는 것을 들 수 있다. 對共產圈 外交에서는 북한의 對南赤化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中·蘇의 友好的 立場을 誘導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다음으로는 中立의인 第3世界에 接近하여 親北韓 勢力을 형성하는 것이고, 親韓의인 서방세계에 침투하여 反韓무드를 造成한 다음 그것을 親北韓성향으로 改變시키는 工作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北韓이 해외에 親北단체를 造成케 하고 이를 基盤으로 當該國家의 한반도 정책까지 변화시키려는 工作을 벌이고 있는 것은 소위 〈國際革命力量과의 團結強化〉를 위해 취해지는 公작들인 것이다. 해외동포 사회에 反韓·親北 교포 단체들을 結成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가진 이른바 統一戰線을 형성하는 것이다.

⑤ “우리나라 경제와 재일본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pp. 26~27.

⑥ 上揭書.

結論적으로 북한은 한반도의 統一問題를 革命의 問題로 보고 “북조선을 <全朝鮮革命>의 基地로 하여 남조선 人民들의 혁명을 지원해야 하며 南朝鮮革命을 완수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實現할 수 있다”^⑦고 주장하고 있으며, <南朝鮮革命>은 “남조선에서 <反帝民族解放革命>과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수행하는 것이다.”^⑧라고 說明하고 있다. 이같은 北韓의 통일전략은 이른바 <3大革命力量>의 강화를 통해 (1) 남한혁명의 여건조성, (2) 聯共政權 수립 (3) 南北合作, (4) 공산화 통일을 實現하는 이른바 <人民民主主義革命> 전략인 것이다.

統一戰略構圖

區 分	南朝鮮革命	祖國統一
順 位	先	後
方 法	暴 力 的	平 和 的
推 進 勢 力	南韓의 革命力量	北韓의 革命力量
包 括 地 域	南 韓	南 北 韓

出處: 근로자(1974. 4호) 및 노동신문(1972. 4. 28).

統一方案

統一方案의 變遷

그간 北韓의 統一方案은 時代的인 적응성과 환경적인 융통성을 가지고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休戰以後 1950年代 後半에는 <平和統一論>, 1960年代는 <聯邦制主張>, 1970年代는 <5大方針>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50年代: 北韓은 休戰以後 公式的인 統一方案으로 平和統一論을 1954年 4월에 개최된 제네바 회의에서부터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平和攻勢를 늦추지 않고, 最高人民會議 1기 8차

⑦ 김일성 저작선집 4권 p.190.

⑧ 노동당 5차대회 김일성 사업총화보고(1970. 11. 3 노동신문)

회의(1954.12)에서 또다시 <政黨·社會團體 代表者 連席會議>를 통해 統一問題를 토의하자고 제의했으며, 이어서 <南北朝鮮間的 經濟·文化交流와 通行, 書信交換을 위한 南北代表者會議>를 召集하자고 주장했다.⑨

1955年 8月 14日, 8.15解放 10주년 기념경축대회에서 金日成은 <外軍撤收, 軍隊의 縮少, 平和보장을 위한 國際會議召集, 武力不行使 協定締結>등을 方案으로 제안했으며, 1954年 6月 <朝鮮勞動黨> 3次大會에서도 <常設委員會의 設置, 韓美相互防衛條約의 폐기, 國際會議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7年 9月 20日 最高人民會議 2期 1次會議,⑩ 1959년의 最高人民會議 2期 6次會議⑪에서도 外相인 南日의 報告를 통하여 <平和統一方案>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1950年代는 <平和統一論>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그 內容은 時期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 1) 外軍撤收 및 減軍
- 2) 南北代表者會議와 國際會議 開催
- 3) 經濟·文化交流 및 通行, 書信交換
- 4) 自由選舉 實施

이상과 같이 北韓이 1950年代에 <平和統一論>을 주장한 것은 戰後狀況에서 自體力량을 길러 나가기 위해 一定期間의 平和維持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金日成이 “나라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외부 조건을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5년 내지 1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소련은 물론이고 6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중공의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대해질 것이며,

⑨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994-995.

⑩ 조선중앙년감(1958) pp.30-36.

⑪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999-1000.

전체사회주의 진영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⑫라고 한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의 연설은 1950년대의 평和統一 제의가 지니고 있는 저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60年代：南北聯邦制가 〈統一方案〉의 主流를 이루었던 時期로서 이것은 金日成이 1960年 8月 14日, 8.15解放 15주년 기념 연설에서 남북 총선거를 주장하면서 “아직 南朝鮮當局이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過渡의 措置로서 南北朝鮮의 聯邦制를 提議한다”고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당시 제의한 연방제는 “南北朝鮮에 現存하는 政治體制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獨自의인 活動을 보장하는 동시에 兩政府代表로 構成되는 「最高民族委員會」를 組織하여 主로 南北朝鮮의 經濟·文化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한다”는 內容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聯邦制를 提議한 데에는 同年 4月 19日 韓國에서 惹起된 一連의 政治的 變革이 重要 要因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한편 1961年 9月 4次黨大會에서는 〈自主·平和·民主〉라는 세 가지 原則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여하튼 1960年 11月, 最高人民會議 2期 8次會議에서는 金日成의 8.15 聯邦制 提議를 具體化시켜 다시 提示했다.^⑬ 그후 1962年 10月 23日에 개최된 最高人民會議 3期 1次會議에서 金日成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의 當面 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연방제를 再次 提議하였다.

그러나, 이 때는 1960年 8月の 提議와는 달리 〈外軍撤收와 南北間의 交流와 相互協調〉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⑭

1963年 12월에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合同會議〉에서는 南北聯邦制 실시를 위해 實務的 問題를 해결키 위한 〈南北朝鮮代表者會議〉를 개최하자는 제의를 마지막으로 하여 1960年代에는 聯邦制 제의가

^⑫ 김일성저작전집,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575.

^⑬ 조선중앙년감(1961) pp. 27-42.

^⑭ 조선중앙년감(1963) pp. 32-34.

없었다. 그 후 1960年代 後半期에는 對南武力 도발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특기할 만한 統一提議가 없었다.

○70年代: 平和的 統一論을 다시 부활시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집약해 볼 때, <3大原則과 5大綱領>을 統一方針으로 표방한 시기라 하겠다.

3大原則은 종전의 <自主·平和·民主>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1972年 7月 4日 南北共同聲明에서 남북한간에 合意한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을 뜻하나, 종전의 3大原則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⑤

<5大綱領>은 1973年 6月 23日 金日成에 의해 발표된 <고려연방 공화국> 수립을 내용으로 한 5個項目에 걸친 제의를 말한다.^⑥

이러한 방침을 내세우기까지 過程을 살펴보면, 1970年 11月 5次 黨大會에서 1960年代初의 연방제안을 다시 확인하였으며,^⑦ 1971年 4월에 개최된 最高人民會議 4期 5次會議에서는 <現國際情勢와 祖國의 自主의 統一을 促進시킬데 대하여>라는 보고를 통해, 外相인 許鎔이 統一方案을 제시했다.

8個項으로 제안된 內容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外軍 철수, 減軍, 外國과의 조약 폐기, 남북 총선거, 각정당 사회단체의 활동 보장, 과도적 조치로써 남북 연방제 실시, 광범위한 交流 주장과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同年 8月 6日에 金日成은 캄보디아 民族統一戰線 委員長인 「노르돔 시아누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南北協商 제의와 더불어 종전의 8個項을 재확인했다.^⑧

이러한 北韓의 平和功勢에 대응하여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는 <이산가족 찾기운동>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이 그에 응

⑤ 조선중앙년감(1976) p.45에서는 <자주·평화·민주>를 들고 있으나 p.83에서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지칭.

⑥ 조선중앙년감(1976) p.91.

⑦ 조선중앙년감(1971) p.27.

⑧ 조선중앙년감(1972) p.12.

함으로써 1971年 9月 20일부터 南北赤十字會談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고, 나아가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南北調節委員會가 개최되었다.

南北會談(南北調節委, 南北赤十字會談等)이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許鈞 8개항등 중전에 제의하던 통일방안을 綜合하여 1973年 6月 23日 체코슬로바키아 共產黨 總書記 「구스타프 후사크」 歡迎大會에서 金日成 演說을 통해 (1) 南北韓間 軍事的 對峙 및 緊張解消 (2) 南北間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實現 (3) 各界各層人民들이 參席하는 大民族會議召集 (4) 高麗聯邦共和國을 國號로 하는 남북연방제 실시 (5) 고려연방 單一國號에 의한 유엔 가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平和統一 5大綱領>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北韓의 소위 <5大綱領>은 그 構成面에서 許鈞 8개항을 單純化시킨 것이며 새로운 內容이라는 것은 60年代 연방제에 <高麗>라는 國號를 첨가하였다는 점과 單一國號에 의한 유엔가입 주장이라 하겠다.

○80年代初: 70年代까지 <5大綱領>을 통해 <統一까지의 過度體制>로 연방제 실시를 主張해 오던 北韓은 1980年 10月 노동당 제 6차대회에서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는 관을 내걸고 또다시 <聯邦制> 統一方案을 내놓으면서 이번에는 <통일까지의 과도체제>로서의 <연방제>가 아니라 <完成된 統一國家의 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라고 주장하였다.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北韓이 提示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다음의 기본 전제 위에서 그 內容을 구성하고 있다.

첫째로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立方案>에 의한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大韓民國이 다음 要旨의 <前提條件>들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大韓民國의 反共法과 國家保安法등을 廢止하고 이른바 <社

會의 民主化)가 실현되어야 한다.

(2) 소위 〈統一革命黨〉(北韓이 造作한 實體없는 유명지하단체)를 포함하여 大韓民國內의 모든 정당·사회단체 및 個別人士들의 〈聯共〉活動을 合法化해야 한다.

(3) 現 大韓民國 政권이 소위〈民主主義的 政權(人民政權)〉으로 交替되어야 한다.

(4) 大韓民國이 除外된 가운데 美國과 北韓間에 휴전협정을 代替할 平和協定이 締結되고 이에 依據하여 駐韓美軍이 철수되어야 한다.

(5) 美國의 〈分裂主義者的 두개朝鮮 造作 策動〉을 沮止시키며 大韓民國에 대한 〈美國의 內政干涉〉을 中止해야 한다.

둘째로, 北韓은 大韓民國 政府를 대화 상대방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拒否하고 있다.

北韓은 비록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하나의 통일방안으로 내놓기는 했지만 同 方案發表 다음달인 1980年 11月 國內의 人士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들의 當面 目標은 우선 연방제 통일을 위해 大韓民國의 當局者를 배제한 가운데 “南北과 해외의 各黨·各派·各界各層을 망라한 적당한 數의 代表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앞에서 열거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실현의 〈前提條件〉을 충족키 위해 鬪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상의 基本前提 위에서 北韓은〈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남북이 같은 權限과 義務를 지니고 各各 地域自治制를 實施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聯邦國家의 國호를 〈高麗民主聯邦共和國〉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방국가의 統一政府로서 “북과 남의 같은 數의 대표들과 적당한 數의 해외 동포들로 〈最高民族聯邦會議〉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聯邦常設委員會〉를 組織하여 北과 南이 共同議長과 共同

委員長을 각각選擇하여 운반제로 운영하고 이 기구들이 北과 南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全般의인 사업을 管轄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은 이같은 기구를 통해 “민족의 統一的 發展을 위한 사업을 推進하고 모든 분야에서 北과 南의 團結과 合作을 실현해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고려민주연방 공화국>이 樹立된 후 施行할 정책으로서 이른바<10大 施政方針>이라는 것을 내놓았다.⑩

北韓이 聯邦制가 실현되었을때 실천에 옮기겠다는<10大 施政方針>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國家 活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自主政策 實施
- 2) 全地域, 全社會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大團結 圖謀
- 3) 經濟的 合作과 交流를 實施하여 민족경제를 自主的으로 발전
- 4) 科學, 文化, 教育分野에 있어 교류와 협조를 실시하여 民族文化, 傳統, 民族教育을 발전
- 5) 北과 南의 交通, 遞信을 連結하여 전국적 範圍에서 자유로운 交通·遞信施設을 活用
- 6) 勞動者, 農民을 비롯하여 全體 勤勞者들의 생활안정 圖謀와 福祉를 集中的으로 增進
- 7) 北과 南의 군사적 對峙 狀態를 解消하고 民族聯合軍을 組織하며 外來侵略으로부터 민족을 保衛
- 8) 海外同胞의 民族的 權利와 利益을 옹호, 보호
- 9) 統一以前의 대외관계의 올바른 處理와 두지역 정부의 對話 活動을 통일적으로 調整
- 10) 統一國家로서 友好的, 平和愛好的인 대외정책 실시등이다. 以上과 같은<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의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實際로는 眞正한 의미에서의 <平和統一方案>이 아니라 하나의 <赤化統一策略>임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提示하고 있는 <前提

⑩ 조선중앙년감(1981)

條件〉들이다. 과거의 南北對話가 북한의 一方의인 〈前提條件〉들 때문에 빈번히 失敗로 돌아가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80年代初 세로이 제기된 聯邦制 方案도 여전히 종래와 같이 大韓民國이 도저히 受諾할 수 없는 〈前提條件〉들을 提示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南北間의 合作과 交流를 운운한 이른바 〈10大 施政方針〉
從前 聯邦制 주장과 比較

區分	60年代	70年代	80年代	備考
前提條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主主義의 政治 및 政黨 活動(容共 또는 共產黨組織) 保障 ○ 外勢干涉排除 및 美軍撤收 ○ 南北韓 軍隊 減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間 武力 增強 및 軍備 競爭 中止 ○ 韓半島에 모든 外國軍隊 撤收 ○ 南北韓 軍隊 減縮 및 外國 武器 返入 中止 ○ 美國의 內政 干涉 中止 ○ 南北韓 平和 協定 締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南韓政府 打到에 의한 〈民主主義의 政權〉樹立 및 反共政策 拋棄 ○ 對美平和協定 締結에 의한 駐韓美軍 撤收 및 戰爭 危險 防止 ○ 〈2個朝鮮〉 策 動 沮止 및 外勢 干涉 排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韓 平和 協定을 對美 平和協定으로 轉換
國號	言及없음	高麗聯邦共和國	高麗民主聯邦共和國	〈民主〉用語追加
性格	民族의 緊急問題 解決을 위한 過渡的인 對策	統一中央政府 樹立을 위한 過渡方案	完全한 統一 聯邦國家	對外的 非同盟 中立路線을 公式化
機構	最高民族委員會	最高民族會議	最高民族聯邦會議 및 聯邦常設委員會	
構成	南北政府代表들로 構成	南北政府가 任命하는 代表	南北同數 代表와 海外同胞代表	〈政府〉用語削除
機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韓의 經濟 文化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 ○ 平和的 統一 與件 造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共同關心 事 協議 調整 ○ 統一問題 論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聯邦政府로서 南北地域政府 指導 ○ 聯邦國 創設 後 10大 方針에 全盤的 事業 管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調節機能에서 地域政府로 指導轉換
現南北韓政府	獨立的 活動 保障	獨立的 機能 遂行	地域自治制 實施	地域政府로 格下

의 欺滿性이다. 즉 <10대 시정방침> 주장에서 南北間의 합작과 교류를 云謂하고 있으나 이의 실천은 연방제가 이루어진 뒤에라야 考慮될 수 있다고 못을 박음으로써 연방제가 이루어지기 前에는 南北間에 어떠한 交流와 協力도 하지 않겠다는 態度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1982年 2月 1日 대한민국의 <20個 示範實踐事業> 提議에 대한 북한의 각종 宣傳團體와 機關名義로 발표된 거부 성명에서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북한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固執하는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은 거의가 1960年代 이후 그들이 내놓은 散發的인 주장을 손질해서 體系化시켜 놓기는 했으나 그 眞意는 통일대화를 거부한 채 그들의 對南赤化 목적을 達成할 수 있는 여건을 造成하려는 戰術의 또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主要 統一方案 提議

日 時	內 容	形 式	備 考
1950. 6. 19	北韓의 最高人民會議 와 韓國國會를 統合單 一立法機關構成	最高人民會議 非常任委員韓國 國會에 提案	
1954. 4. 27	統一政府 形成을 爲한 總選舉實施	제네바會議에 서 南日外相 提案	5. 22, 제네바會議에 서 韓國의 卞榮泰外 務長官, 自由總選舉 提案拒否
1955. 8. 15	國際會議召集과 全外 軍撤收, 南北政黨·社 會團體代表者會議召集	8. 15 解放 10 周年 金日成 演說	
1956. 4. 18	總選으로 統一政府樹 立, 統一 및 平和維持 를 위한 國際的 協定 締結	勞動黨 3次大 會 宣言文	
1960. 4. 21	南北政黨·社會團體連 席會議構成, 南北聯合 經濟委員會構成, 南北 總選舉實施	政黨·社會團 體指導者連席 會議	
1960. 8. 14	外勢 干涉없는 南北總 選. 南北聯邦制實施(雙方 政府代表로 最高民族 委員會組織)	8. 15 解放 15 周年, 金日成 演說	

1970. 11. 3	自由總選舉로 統一政府樹立, 南北聯邦制實施	5次黨大會 金日成報告	8.15, 朴正熙大統領의 平和統一構想宣言에 대한 拒否
1972. 1. 10	南北韓間平和協定締結, 南北政治協商會議召集	日本〈讀賣新聞〉記者와의 金日成 會見	
1973. 6. 23 (午後 6時)	統一을 위한 5大 方針 提案. ○大民族會議召集 ○南北聯邦制實施(高麗聯邦共和國)	제국黨·政府 代表團歡迎연회에서 金日成 演說	6.23(午前 10時) 朴正熙大統領의 和平統一 外交政策에 대한 拒否
1974. 3. 25	對美平和協定 체결	最高人民會議 5期 3次會議 許鈞報告	1.18 朴正熙 大統領의 南北 相互不可侵 協定提議에 대한 拒否
1975. 10. 9	對美平和協定 締結 南北聯邦制實施 大民族會議召集	黨創建 30 周年 金日成 演說	1.14, 朴正熙 大統領의 南北對話 속과 正常化 促求에 대한 拒否
1977. 1. 25	南北 政治協商會議 召集, 긴장상태 완화와 핵전쟁 위험의 제거	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 採擇便紙	1.18 朴正熙 大統領의 對話場所 변경 용의, 不可侵協定締結後 미군철수 不反對, 食糧원조 제의 拒否
1979. 1. 23	全民族大會召集, 7·4 共同聲明 遵守, 相互 비방 中傷 中止, 軍事行動 中止.	祖國統一 民主主義 戰線 中央委 聲明	1.19 朴正熙 大統領의 南北當局間 對話 提議에 대한 拒否
1979. 7. 10	對美 平和協定 締結會談에 韓國代表의 出席을 自거 參加, 當局者·各政黨·社會團體·海外同胞 代表들과의 對話와 協商	外交部 代辦人 聲明	7.1 三當局 會談을 提議한 韓·美 共同 聲明
1980. 10. 10	高麗民主 聯邦共和國 創設, 最高民族聯邦會議 및 聯邦常設委員會 構成	勞動黨 6次大會 金日成 事業 總和 報告	
1980. 11. 11	〈高麗民主〉聯邦 創立 準備委員會 構成	諸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 對南便紙	
1981. 8. 6	〈民族統一促進大會〉召集 高麗聯邦制 등 모든 統制 一方案 討議 國際 競技 單一팀 참가도 論議	祖戰中央委 第7次會議, 諸政黨·社會團體 聯合聲明	6.19 南北韓 體育交流 및 國際競技 單一팀 構成 拒否 反應

1982. 2. 10	南北韓 100人 政治人 聯合會議 召集 南北代表 各 50名, 任意로 指名	祖國平和統一 委員會 委員 長 聲明	1.22 <民族和合 民主 統一方案>闡明에 對 한 拒否 反應
1983. 1. 18	美軍撤收를 위한 南北 諸政黨·社會團體 席會議 召集	諸政黨·社會 團體 聯合聲明	1.18 大統領 國政演 說時 南北韓 當局 最高 責任者 會談 再促求 拒否反應
1983. 9. 9	最高民族聯邦會議와 聯邦常設委員會의 議 長과 委員長을 南北이 자자 共同議長과 共同 委員長을 選擇하여 輪 番制로 運營	政權創建35周年 紀念 金日 成 慶祝宴會 演說	大規模的인 記念行 事를 통해 70次 IPU 서울總會 意味 退色 化試圖로 나온 窮與 之策

南北對話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가 〈南北韓離散家族찾기〉운동을 제의한데 대하여 北韓赤十字會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分斷 4半世紀 단에 最初의 南北對話인 〈南北赤十字會談〉이 시작되었다.

그후 1972年 7月 4日 천명된 〈南北共同聲明〉의 합의 사항에 따라 南北對話는 人道的次元에서의 〈南北赤十字會談〉과 併行하여 政治的次元에서의 〈南北調節委員會會議〉가 서울과 평양에서 교대로 進行되었다.

그러나 南北調節委員會會議는 1975年 3月 14日 第10次 〈南北調節委員會副委員長會議〉를 그리고 남북적십자회담은 1977年 12月 9日 제25차 〈南北赤十字者實務會議〉를 끝으로 북한측에 의해 一方的으로 中斷되었는바 事實上 이들 두갈래의 남북대화는 1973年 8月 28日 북한측의 〈南北對話中斷聲明〉 발표 이후 이미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와 같은 南北對話斷切狀態를 打開하기 위해 韓國側은 1979年 1月 19日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는 〈南北韓當局間對話〉를 提議하였으나 북한측이 한갓 대남통일전선기구인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남북 대화의 상대로 내세움으로써 결국 〈남북번칙대좌〉 형식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北韓側은 〈남북번칙대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時期에 평양에서 개최되는 第35次 卓球選手權大會를 계기로 韓國側의 〈남북한탁구 단일팀구성〉에 의한 참가를 제의함에 따라 〈南北韓卓球協會代表會議〉가 進行되었으나, 북한측의 한국선수단 참가 沮止術策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승의를 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그후 北韓側은 <10.26 사태> 이후 한국의 國內政局過渡期에 便乘하여 대화공세를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韓國側이 南北韓總理會談을 위한 實務代表接觸>을 제의하자 北韓側은 마지못해 이를 수락하였으나 그후 韓國의 政治安定이 鞏固化됨에 따라 <남북한 총리 회담실무대표접촉>을 또다시 결렬시켰다.

韓國은 제 5 공화국 출범이후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從來 그들이 主張해온 <前提條件>을 계속 내세워 이를 外面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종래 主張한 바 있는 <政治協商會議> 형태를 受容한 한국측의 積極의이고 포용적인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提議마저도 거부하면서 全面的인 南北對話忌避態度를 堅持하고 있다.

南北赤十字會談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의 <남북한이산가족찾기운동>에 의해 시작된 南北赤十字會談은 25회의 예비회담을 開催하여 <이산가족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確認하며 알려주는 문제> 등 5개 항목의 本會談議題에 合意하였다.

그후 南北赤十字本會談은 예비회담에서 합의한 절차에 따라 서울과 평양을 往來하면서 도합 7회가 開催되었으나 北韓側은 1973年 8月 28日 들연 <남북대화중단성명>을 發表함으로써 서울에서 開催될 第8次 本會談을 일방적으로 流産시켰다.

이같은 北韓側의 일방적인 <南北對話中斷> 성명에 의해 第8次 본회담이 流産됨에 따라 大韓赤十字社는 第8次 本會談開催 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連絡責任者會議>를 提議(73.11.15 電話 通知文)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이루어진 7차례의 南北赤十字 代表會議과 그후 개최된 25차례의 南北赤十字 實務會議를 통해 南北赤十字會談의 正常化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끝내 이를 外面하였을 뿐만 아니라 第26次 南北赤十字 실무會談 개최를 하루 앞둔 1978年 3月 19日 同 會談의 일방적인 無期延期를 通告함으로써 南北赤十字會談을 완전히 決裂시키고 말았다.

한편 北韓側은 南北赤十字會談에서 “人道主義의 最高目標은 祖國統一”이라는 억지주장하에 赤十字精神과 原則을 유린하면서 人道主義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의 性格을 政治會談으로 변질시키려고 기도하였다.

北韓側은 이같은 基本立場에서 출발하여 반공법규철폐, 반공단체해체, 반공활동중지등 소위 〈法律的·社會的條件, 環境改善〉을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先決要件〉으로 제시하여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實質的인 진전을 교착시켰으며 그 후 進行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에서도 이러한 대남강탈적인 〈先決要件〉을 비롯하여 <6.23 선언〉 철폐, 주한 미군철수 등의 政治的 問題를 본회담 정상화 조건으로 계속 固執함으로써 人道主義會談을 事實上 외면하였다.

이러한 北韓側의 立場과 태도는 政治以前, 法律 以前의 崇高한 人道主義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마저도 南北韓離散家族의 인도적 고통을 解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요한 對南赤化戰略 實現을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서 活用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하겠다.

더우기 北韓側은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한 이러한 立場과 態度는 오늘날까지도 아무런 變化가 없이 계속되고 있는 바, 特別 KBS의 〈離散家族찾기 特別 放送〉이 進行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한 大韓赤十字社의 남북적십자회담재개촉구(83.7.6)와 관련하여 〈北韓赤十字會〉가 從來의 주한미군철수와 大韓民國政府退進 등의 상투적인〈前提條件〉들을 고집하고(83.7.24)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南北赤十字會談〉 경과

區 分	回數	日 字	內 容
提 議		1971. 8. 12	大韓赤十字社 崔斗善 總裁 〈離散家族 찾기 運動〉 提議
受 諾		1971. 8. 14	北韓赤十字社 孫成弼委員長 受諾發表
派 遣 員 燭 接	5	1971. 8. 20 ~9. 16	장소 : 판문점
豫備會談	25	1971. 9. 20 ~72. 8. 11	合意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1次 本會議은 平壤, 第2次는 서울 開催 ○ 代表團과 記者의 身分安全保障 ○ 携帶品 不可侵 ○ 總20回線의 有線電信·電話線保障 ○ 南北赤十字社 中央機關間 直通電話 ○ 代表 7名, 諮問委員 7名, 隨行員 20名, 報道陣 20名
議題問題 實務會議	13	1972. 2. 21 ~6. 5	議題合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家族, 親戚)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는 問題 ○ 離散家族의 自由로운 訪問과 相逢을 實現하는 問題 ○ 自由로운 書信往來를 實施하는 問題 ○ 自由意思에 依한 再結合問題 ○ 其他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
進行節次 實務會議	3	1972. 6. 27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1次 本會議 開催場所 ○ 本會議 其他 進行節次
本 會 議	7	1972. 8. 29 ~73. 7. 13	主要合意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南北赤十字 板門店共同事業所 設置 ○ 4次 會談부터 雙方 記者數 5名씩 增員
代表會議	7	1973. 11. 28 ~74.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務會議運營 및 節次問題
實務會議	25	1974. 7. 10 ~77. 12. 9	26次 會議을 78年 3月 20日 開催키로 合意하였으나 北韓側이 팀 스프리트訓練을 理由로 拒否, 中斷

南北調節委員會

1972年 7月 4日 韓國의 주도적인 發議에 의해 闡明된 〈南北共同聲明〉의 합의사항에 따라 3차례 進行되었던 南北調節委員會 공동위원장회의에서 南北調節委員會가 正式 發足된 후 南北調節委員會 회의는 3차례가 進行되었다.

그러나 1973年 8月 28日 北韓의 일방적인 〈南北對話中斷聲明〉 발표로 南北調節委員會회의가 流産됨에 따라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은 第4次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면서 南北調節委員會 改編을 비롯한 운영 재개문제를 南北調節委員會 평양측에 討議할 것을 提議(73.11.15 전화통지문)하였다.

이에 따라 南北調節委員會副委員長 會議가 도합 10회가 開催되었으며 동회의에서 서울측은 南北調節委員會의 運營正常化를 촉구하였으나 평양측은 〈南北政治協商會議〉 개최 主張을 내세우다가 결국 第10次 南北調節委員會 부위원장회의를 끝으로 一方的으로 중단시키고 말았다.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에서 평양측은 南北韓間의 理念과 體制의 相異와 상호적대감과 不信의 常存이라는 한반도의 現實을 무시한 채 무력증강, 군비 경쟁중지, 군대감축, 군비축소, 무기·군수물자 반입중지, 평화협정체결 등 소위 〈軍事問題 優先解決〉을 主張하면서 韓國만의 一方的인 防衛力弱화를 招來시키기 위해 劃策하였다.

또한 평양측은 60—70個 政黨·社會團體에서 각각 5~20명의 代表와 各계各층의 個別人士로 구성되는 南北調節委員會의 擴大 改編案을 들고 나왔으며 南北調節委員會 회의와 併行하여 〈南北政治協商會議〉 및 〈南北 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 소집을 주장함으로써 南北調節委員會의 變質을 기도하였다.

〈南北調節委員會 會議〉經過

區 分	回	日 字	內 容
豫備接觸	1	1972. 5. 2 ~5. 5	韓國 李厚洛部長 平壤訪問
	2	1972. 5. 29 ~6. 1	北韓 朴成哲 第2副首相 서울訪問
共同聲明		1972.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統一은 外勢排除하고 自主的 解決 ○武力不行使, 平和의 方法으로 統一 ○사상과 理念 超越하고 民族의 大團結
共 同 委 員 會 長 議 會	1	1972. 10. 12 (板門店)	<ul style="list-style-type: none"> ○南北間의 諸問題 協議, 共同聲明精 神 再確認 ○第2次會議를 10月하순경 開催키로 合意
	2	1972. 11. 2 ~11. 4(平壤)	<ul style="list-style-type: none">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 한 合意書 署名交換 ○1972. 11. 11. 00 : 00부터 相互비방 放 送 및 뼈라살포 中止키로 合意
	3	1972. 11. 30(서울)	○雙方調節委機構 構成發表
調 節 委 員 會 議	1	1972. 11. 30 ~12. 1(서울)	○幹事會議의 構成, 共同事務局 設置 調節委運營細則 作成
	2	1973. 3. 14 ~3. 16(平壤)	合意없음
	3	1973. 6. 12 ~6. 14(서울)	合議없음
幹事會議	1	1973. 3. 10	○南北調節委員會 運營細則 및 共同事 務局 運營細則 草案討議
	2	1973. 4. 24	
	3	1973. 5. 23	
副委員長 會 議	總 10回	1973. 12. 5 ~75. 3. 4	北側의 一方的 拒否로 중단

한편 평양측은 南北調節委員會副委員長會議에서 주한미군철수, 반공정책중지, 6.23 선언취소, 구속자석방, <5대강령>② 受諾등을 <前提條件>으로 내세워 南北調節委員會의 運營正常化를 기피해 오다가 끝내는 1975年 5月 29日 第11次 南北調節委員會부위원장회의 開催를 하루 앞두고 一方的으로 중단시키고 말았다.

더우기 평양측은 1979年에 進行된 <南北變則對座>에서 南北共

② 통일방안항의 '통일정책의 변천' 참조.

同聲明 第6項과 南北調節委員會구성 및 運營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發足된 南北調節委員會의 존재의의 상실을 宣言하면서 그 存在마저 일체 부정함으로써 南北韓間的 공식적인 合意文書마저 一方的으로 파괴, 유린하는 行爲를 서슴치 않았다.

南北變則對坐

1979年 1月 19日 南北韓間的 대화단절상태를 打開하기 위한 韓國側의 〈南北韓當局間對話〉 제의에 대해 北韓側은 1月 23日 그들의 책임있는 當局의 反應을 留保한 채 그들의 對南統一戰線機構인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②을 내세워 南北共同聲明의 理念과 原則의 遵守를 擧論하면서 종래 그들이 主張해 오던 非當局間對話인 政治協商會議의 變種에 不過한 〈全民族大會〉소집을 위한 〈實務級代表豫備會談〉제의를 들고 나와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韓國側은 정부대변인 성명을 發表(1.26)하여 북한측의 責任 있는 當局의 회답을 촉구하면서 〈南北韓當局間豫備會談〉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責任있는 當局의 反應을 유보한채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書記局성명〉(1.27)을 통해 〈全民族大會〉召集을 위한 〈實務級代表豫備會談〉을 계속 主張하였다.

이와같이 북한측은 對南統一戰線機構인 〈祖國統一 民主主義 戰線〉을 내세워 南北韓間 對話를 拒否하면서 정치협상회의 形式의 〈全民族大會〉소집을 主張함으로써 南北對話를 정치선전 手段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姿勢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韓國은 南北韓當局間對話 제의를 기점으로 南北韓間的 불필요한 聲明戰을 終息시키고 早速한 南北對話再開를 위해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代理 성명을 發表(1.13)하여 南北韓이 이미 합의하여 發足시킨 對話機構인 南北調節委員會의 운영정상화를 北韓側에 提議

^② 北韓은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南半部の 反帝愛國力量을 團結시켜 朝鮮革命的 全國的 勝利를爲한 鬪爭에 적극 이바지하는 團體”라고 定義하고 있다. 政治辭典 1972年版 pp. 771~772.

하였다. 이같은 제의는 北韓側이 남북공동성명의 理念과 原則을 거론하고 있는 狀況下에서 남북공동성명의 基本精神을 履行하기 위해 발족, 운영했던 南北調節委員會에 대한 그들의 거부태도를 철회시켜 南北共同聲明을 말로서가 아니라 實踐과 行動으로 履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北韓側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書記局 성명을 發表(2.5)하여 남북조절위원회는 그 存續意味를 상실하였다고 主張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 대신에 <民族統一準備委員會>를 발족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爲한 南北連絡代表接觸을 제의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韓國側은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聲明을 發表(2.5)하여 북한측의 一方的인 南北調節委員會의 廢棄主張을 공박하면서 南北調節委員會의 운영정상화문제를 協議하기 위한 南北調節委員會副委員長會議을 2月 17日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서기국 대변인 聲明>을 發表(2.13)하여 <민족통일준비위원회> 結成을 위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 연락대표를 2月 17日에 파견할 것을 通告해 옴으로써 結局 南北韓間에 대표의 性格과 資格이 서로 다른 변칙적인 對坐가 3차례 이루어지게 되었다.

南北調節委員會서울측 대표와 北韓側의 소위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 연락대표 사이에 이루어진 남북변칙대좌에서 北韓側은 남북조절위원회의 存續意義 상실과 그 존재를 否定하면서 <전민족대회> 召集을 爲한 <민족통일준비委員會> 結成을 주장함으로써 南北韓當局間의 공식적으로 合議한 南北共同聲明과 합의사항,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運營에 關한 합의서를 一方的으로 파기하였다.

또한 北韓側은 韓國側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對話의 상대방으로 認定할 수 없다는 基本立場을 明白히 밝히면서 남북조절위원회문제, 남북한당국간회담문제, 其他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등을 協議하기 爲한 <남북한 당국 실무대표회의>를 提議하자

南北調節委員會의 代表 취소조건하에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명칭을 不使用하겠다는 용의를 表明하면서 〈민족통일준비위원회〉 構成을 위한 政黨·社會團體 및 당국연락대표 接觸을 제의함으로써 우리측의 〈南北韓當局間對話〉 제의를 계속 拒否하였다.

따라서 韓國側은 非生産的인 〈남북변칙대표〉를 止揚하고 實效性이 있는 남북한당국간대화의 實現을 위해 남북한당국 실무대표회의를 1979年 3月 28日에 開催할 것을 제의하고 國토통일원차관을 首席代表로 하는 大韓民國當局 實務代表團을 派遣하였으나 북한측의 不參으로 〈남북한 당국실무대표회의〉는 유산되고 말았다.

〈南北變則對坐〉 經過

區 分	日 時	韓 國	北 韓
提 議	1979. 1. 19	朴正熙大統領：〈時期, 場所, 水準〉등 일체의 前提 조건 없이 무조건 책임있는 당국간 對話 再開	
	1. 23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7.4共同聲明理念과 原則준수 및 全民族大會 9月初 開催 提議(서울 또는 평양), 실무급대표회담 6월(평양) 개최 제의
	1. 25	김성진 문화공보부장관：當局間 會談을 위한 예비 회담 6月 前 개최 제의(서울 또는 평양)	
	2. 5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書記局：協商 예비구로 〈民族統一 準備委員會〉발족 및 이를 위한 연락대표회의 2月 20日 판문점 개최 제의
	2. 12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제4차 조절위 회의틀 위한 부위원장회의를 2月 17日 개최 제의(판문점)	祖統서기국：20日 개최 제의를 수정, 서울측 조절위 17日에 연락대표단 참석 발표
제 1 차	2. 17	남북조절위 대표참석：남북조절위 정상화와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 제의	조국전선：민족통일 준비위 연락대표 참석, 전 민족대회 소집 주장

제 2 차	3. 7	남북조절위대표 참석 : 남북조절위 정상화와 책임 있는 당국간의 대화제의	참석자, 제의내용 上同 ※평양에는 <調節委>가 없다고 주장
제 3 차	3. 14	참석자 上同 쌍방 새로운 3명의 당국실무대표로 3월 28일 남북한 당국간 대화문제 논의제의	참석자 上同 : 기존주장을 되풀이하면서 祖戰이름대신 <정당·사회단체·당국연락대표단>으로 명칭 변경 용의 표명
제 의	3. 26	김성진 문화공보부장관 : 실무대표 명단 발표	
	3. 27		4월2일에 <정당·사회단체당국연락대표단>회의제의
流 産	3. 28	실무대표 3명 판문점과견	불 참
	4. 2	불 참 ※실무대표단 董勳수석대표 : 조절위 및 당국자간 대화추진과 비생산적 변칙대표 거부	연락대표단 4명 판문점과견 ※<남북연락 실무대표단>으로 개정용의 표명

南北韓 卓球協會代表會議

北韓側은 1979年 2月 20日 평양에서 개최되는 第35次 世界卓球 選手權大會의 對陣表確定時限日인 3月 14日을 불과 3주일 앞두고 그들의 <體育指導委員會>와 <卓球協會>가 大韓體育會와 韓國卓球協會에 보내는 방송서한을 통해 同大會에 <남북한탁구단일팀>을 구성하여 出戰할 것을 協議하기 위한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회의>를 제의해 왔다.

이에 대해 大韓體育會와 韓國卓球協會는 북한측에 보내는 방송통고문을 통해 이미 우리가 여러차례 南北韓體育 교류를 비롯한 南北韓間的 제반 교류, 협력을 提議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努力해 오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北韓側의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회의를 수락하면서 우리측의 대표단과견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4차례의 <南北韓 卓球協會代表會議>가 개최되게 되었다.

南北韓卓球協會代表會議에서 우리측은 남북한탁구단일팀 構成

問題가 늦어도 第35次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의 대진표추첨일의 이틀전인 3月 12일까지는 합의되어야 하며 만일 이때까지 南北韓卓球單一팀 구성문제가 지연될 境遇에는 북한측은 韓國選手團이 국제탁구연맹의 會員國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同大會의 참가기득권을 존중하여 韓國選手團의 參加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남북한탁구단일팀 構成에 대한 소위 原則的合意를 우선적으로 要求하면서 韓國選手團의 참가보장에 대해서 계속 外面함으로써 그들의 南北韓卓球單一팀 구성제가 南北韓體育交流의 일환으로서 眞正한 意味에서의 남북한 탁구단일팀을 構成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북한탁구단일팀 구성에 대한 原則的合意만을 유도해 놓고 이에 따른 諸般實務問題로의 과정에서 남북한탁구협회대표회의를 교착시켜, 결국 韓國選手團의 개별 참가는 물론 단일팀에 의한 參加마저도 봉쇄시키기 위한 것임을 드러내 놓았다.

이와 같은 北韓側의 韓國選手團의 참가저지 술책으로 인하여 남북한 탁구 단일팀구성 問題에 대한 아무런 進展이 없는 狀況下에서 대진표추첨일을 이틀 앞두고 3月 12日 第4次 남북한탁구대표회의가 開催되었으나 아무런 合意를 보지 못한 채 끝이 남으로써 南北韓卓球協會代表會議는 막을 내렸다.

이날 會議에서 韓國側은 남북한탁구단일팀 構成問題는 앞으로 단일팀의 選手선발 및 共同訓練을 비롯하여 수반되는 諸般問題가 山積되어 있음에 유의하여 남북한탁구단일팀 구성문제의 繼續的인 協議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함을 밝히면서 韓國選手團의 參加保障을 거듭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끝내 이를 外面하면서 會議를 지연시키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또한 韓國側은 모처럼 마련된 남북한탁구협회대표회의를 南北韓間의 全般的인 체육교류실시로 誘導하기 위한 契機로 삼기 爲해서 同會議에서 南北韓卓球親善競技大會 개최문제를 협의할 것도 提議하였다.

〈南北韓卓球協會代表會議〉 經過

區分	日字	韓	國	北	韓	合意事項
動機 提議 受諾	1979. 2. 16 2. 20 2. 24	國際卓球聯盟을 통해 비자 신청				
		단일팀 구성 수락 통보 와 더불어 대표단 4명 구성 발표		同大會에 남북한 단일 팀 구성을 위한 2월27 일 판문점회담 제의	대표단 4명 발표	1차 회의 개최일시 및 대표
會談 過程	제 1 차 (2. 27)	○대진추첨일(3월14, 15 일)이전인 3월12일까 지 단일팀 구성 ○국제탁구연맹(ITTF) 에 單一팀 구성의 위 약 여부 조희 ○3월 12일까지 未合意 時 판문점 통한 참가 보장		○세계랭킹에 따른 선 수선발 및 팀 구성문 제 ○공동훈련을 평양에서 실시 ○선수단 호칭문제(고 려)		2차 회의 3월 5日 개최
	제 2 차 (3. 5)	○한국선수단의 대회참 가에 대한 기대권 인 정 요구 ○3월 12일에 단일팀 구 성에 합의		○공동훈련 장소 : 평양 체육관 ○한국선수단에 대한 생 활조건 무료제공 ○ITTF총회 대표 각각 1명 ○국기없이 휘장만 사 용하고 복장과 선수 기용은 쌍방합의		3 차회의 3월 9日 개최
	제 3 차 (3. 9)	○한국선수단의 참가기 득권 인정되고 참가 가 보장된 상태에서 단일팀 논의 ○단일팀·체육교류 동 시 협의		○1, 2차회의 주장 반복		4차 회의 3월 12日 개최
	제 4 차 (3. 12)	上 同		○기득권과 통일팀구성 은 별개문제 ○통일팀 구성 전제한 기득권 인정		

한편 韓國側은 南北韓卓球單一팀 구성을 위한 南北韓卓球協會
代表會議가 아무런 成課없이 끝나자 第35次 世界卓球選手權大會
에 參加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爲해 제네바로 향발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韓國選手團의 비자발급을 끝까지 拒否함으로

씨 그들의 南北韓卓球單一팀 構成提議가 한국선수단의 參加를 저지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았다.

南北韓 總理會談實務代表接觸

1979年 10. 26事態 이후 北韓은 韓國의 國內政局 過渡期에 편승하여 1980年 1月 11日 그들의 <政務院>總理 이종욱과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委員長> 金一의 名義로 된 對南便紙攻勢를 각각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韓國政府는 北韓의 <정무원>總理 이종욱이가 大韓民國總理 신현확에게 南北韓總理接觸을 제의한 편지를 選別的으로 收容하여 1980年 1月 24日 국무총리 서한을 통해 南北韓총리 회담을 위한 實務級代表接觸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실무접촉이 成立되었다. 물론 이러한 北韓의 정무원總理 이종욱 편지에 對한 選別的인 收容은 그간 우리의 南北韓當局間 對話 제의 정신에 立脚하여 남북한 총리會談을 實現시키기 위한 努力의 일환이었다.

그간 南北韓實務代表接觸은 1980年 2月 6日부터 8月 20日까지 10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던 중 北韓은 1980年 9月 24日 그들의 實務代表團 聲明을 통해 이틀 후에 開催기로 합의된 第11次 남북한실무대표접촉을 一方的으로 중단시키고 말았다.

北韓은 南北實務代表接觸 과정에서 韓國의 남북한총리회담이라는 號稱使用제외에 대해서 굳이 외면하면서 南北韓實務接觸이라는 用語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남북한총리 접촉은 政黨·社會團體의 다각적 접촉의 일환이라고 主張함으로써 南北韓의 책임있는 當局間會談이 아닌 軍중접회식의 政治協商會議의 일환으로 이끌어 가려는 저의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北韓은 韓國의 남북한총리회담의 議題合意提議에 대해 拒否 태도를 取해오다가 ози못해 그들의 態度를 철회하고 議題

합의에 原則적으로 同意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平和統一을 爲한 現實적이고 實質적인 문제를 協議하기 위해 (1) 남북한간 信賴造成문제, (2) 한반도의 平和安着문제 (3) 조국의 평화통일문제 등 3項의 議題를 提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韓國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對南強奪의인 정치적 意味를 그들이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合作〉과 〈團結〉을 주내용으로 한 單一議題를 固執함으로써 남북한실무대표 접촉의 進展을^㉔ 교착시키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北韓은 남북한실무대표접촉을 中斷시키기 위한 구실을 찾기에 급급하였다. 1980年 8月 20日 개최된 第10次 〈南北韓實務代表接觸〉 席上에서 북한은 韓國의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總理資格과 의제토의의 전제조건 主張에 의한 韓國의 內政問題를 是非하면서 同 실무접촉을 9月 30日로 연기하여 開催하자는 엉뚱한 主張을 하다가 마지못해 9月 26日에 다음번의 南北韓實務代表接觸을 개최할 것에 同議하였다.

그러던중 북한은 韓國의 新任國務總理에 대한 任命同議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그들의 議題討議 거부 的主要한 구실의 하나가 사라지게 된 이틀후 이듬 次期の 南北韓 實務代表接觸이 개최되기 이틀전인 9月 24日, 남북한실무대표접촉의 無期延期를 일방적으로 發表함으로써 또다시 南北韓의 對話窓口를 폐쇄시키고 말았으며 韓國의 계속적인 남북한실무 대표접촉의 續開提議를 끝끝내 外面하였다.

㉔ 북한은 공식문헌을 통해 〈합작〉은 “군중을 계급적으로 작성시켜 그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수령께서 가르키는 길을 따라 조국통일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 주요한 조건”이라고 함칭함으로써 그들의 〈합작〉이라는 개념이 주체사상기치하의 통일 즉 공산화통일의 수단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합작과 관련하여 정치협상회의와 대민족회의 개최, 〈남북연방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단결〉을 주장하면서 남조선사회민주당, 반공정책증지, 외세배제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더한 〈합작〉과 〈단결〉을 의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남북대화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조건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南北韓總理會談 實務代表接觸〉經過

區分	日 時	韓 國	北 韓
제 1 차	1980.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총리간 대화의 진전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 ○ 실무접촉에서 의제문제 합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접촉은 정당·사회단체의 다각적 접촉의 일환. ○ 실무접촉에서 의제문제 합의 불필요
제 2 차	1980. 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간 대화의 성과를 위해 실무접촉에서 의제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접촉에서 의제설정 불필요
제 3 차	1980.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총리회담〉이라는 공동 호칭 용어 사용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총리접촉〉으로 하여야 함. ○ 의제설정에 대해 고려할 용의가 있음.
제 4 차	1980. 3.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항의 제제의 : 1) 남북간의 상호 신뢰성 문제 2)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 3) 조국의 평화통일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의제 제의 : 북과남이 합작하고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제 5 차	1980.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3.23 및 3.27 무장간첩추무사건 및 3.25 무장선박추무사건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발뺌.
제 6 차	1980.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의도포함된〈합작〉과〈단결〉용어의 부당성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과 〈단결〉의 정당성 강변
제 7 차	1980.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의도포함된〈합작〉과〈단결〉용어의 부당성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과 〈단결〉의 정당성 강변
제 8 차	1980.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과〈단결〉에 내포된 정치적요구를 거론치 않을 것임을 확약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7 비상계엄에 대한 모략비난 전개
제 9 차	1980.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의제제 의 : 1) 교류, 협력으로 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2) 조국의 평화통일문제 ○ 총리회담의 첫일시·장소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총리의 자격시비 및 총리 임명후 의제토의 주장 ○ 실무대표 접촉장애 제거 위한 〈전제조건〉 제시 : 1) 계엄령해제 2) 한국정부퇴진 3) 민주화 4) 민주인 사석방

제10차	1980. 8. 20	○ 9. 26 11차 접촉 개최 제의	○ <전제조건> 관철과 <총리자격>을 시비하며 10차 접촉을 9. 30 연기 개최할 것을 주장 ○ 남한의 9. 26 개최제의 동의
*북한 80. 9. 24, 제11차 접촉의 무기연기성명 발표			

80年代以後 北韓의 南北對話態度

北韓은 韓國이 第5共和國출범과 더불어 기울여온 일련의 南北對話提議를 계속 거부해 오고 있다. 韓國은 제 5공화국 출범 첫 해인 1981年 1月 12日 <南北韓當局最高責任者相互訪問>을 북한 측에 제의하였고 같은 해 6月 5日에는 <南北韓最高責任者會談>을 제의하였다.

韓國은 이같은 提議가 중단된 南北對話의 재개를 위한 決定的轉機를 마련함으로써 남북한간에 民族的 信賴를 회복하고, 同族間의 전쟁재발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서 民族全體의 통일 의지를 연결하는 契機와 通路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㉔

北韓은 韓國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 對話相對方의 資格을 시비하면서 구속자석방, 반공정책포기, 주한미군철수 등 從來 그들이 주장해왔던 <前提條件>들을 내세워 거부하였다. ㉕

1981年 한해동안 北韓은 大韓民國의 대화제의를 拒否하면서 <고려연방안>에 대한 宣傳으로 一貫하였다. 다만 同年 8月 6日에는 이른바 <정당·사회 단체연합성명>을 통해 <고려연방안>을 討議하기 위한 <민족통일촉진대회>를 召集할 것을 提議하였으나 이

㉔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제의는 전두환대통령의 새해 국정 연설에서 제의 되었으며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은 전두환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사에서 제의되었 다.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刊, 통일대화, 1982의 附錄演說文參照.

㉕ 북한은 <남북한당국자상호책임자상호방문> 제의에 대해 81년 1월 19일자 이른바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성명을 통해 거부하였으며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제의에 대해서는 1981년 6월 9일 <노동신문>의 글의 형식을 통해 거부하였다.

제의는 大韓民國의 政府當局의 참가를 배제시키고 있어 事實上 南北韓間의 대화제의로 보기는 어렵다.

第5共和國출범 2年째인 1982年 1月 22日 대한민국은 全斗煥 대통령의 새해 國會施政演說을 통해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을 천명하였다.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에서 대한민국은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의 호응을 북한측에 거듭 촉구하면서 이의 實現에 따른 節次問題를 협의하기 위해 자료급을 首席代表로 하는 〈남북한 고위대표예비회담〉 開催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北韓은 4日후인 1月 16日 이른바 祖國平和統一委員長이며 副主席인 金一 명의의 담화를 통해 종래의 前提條件을 내세워 거부하였으며, 2月 1日 孫在植 國土統一院長官이 남북한 교류협력, 사회개방, 긴장완화등 民族和合을 위한 實踐的措置로서 제의한 〈20개 시범실천사업〉에 대해서는 北韓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를 拒否하면서 이른바 〈南北韓 100人 政治人聯合會議〉의 召集을 주장하고 나왔다.

同年 2月 10日 〈조국평화통일위원장〉 名義의 聲明으로 나온 북한의 〈南北韓 100人 政治人聯合會議〉提議는 북한측이 협상의 相對側인 한국측의 參加人員 50名을 일방적으로 指名하여 명단을 發表하였다. 더우기 同 提議는 북한측이 서명한 韓國側人士 50名 중에 최덕신, 최홍희 등 이미 北韓을 방문 하여 金日成과도 만난 바 있는 海外親北僑胞人士와 北韓의 대남흑색위장단체로 알려진 〈統革黨〉의 대표 이정상이라는 유명인물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南北韓 100人 政治人聯合會議〉 召集提議에 대해 同年 2月 25日 孫在植 國土통일원장관은 對北聲明을 통해 북한측이 1982年 2月 10日 제의한 〈남북한 100인 정치인연합회의문제〉를 討議議題의 하나로 包含시켜 〈南北韓高位代表會談〉을 開催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다.^②

②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남북한고위대표회담〉 제의에서 “북한측이 그릇된 자세를 하루속히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남북 쌍방간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 민족의 영원인 조국의 평

이 提議에 대해 북한은 同年 3月 1日자 이른바 <祖國 統一民主主義戰線書記局長> 이름의 기념집회 보고에서 “백번해도 협상에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를 내세운채 거부하였다.

第5共和國 출범 3年째인 1983年 1月 18日 大韓民國은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에서 協議, 解決할 <당면과제 4개항>의 提示)를 통해 北韓이 主張하고 있는 統一方案도 수용하여 討議할 수 있음을 표명하면서 <남북한최고책임자회담>의 수락을 강력히 촉구하였다.²⁵ 이에 대해 北韓은 2時間後인 이날 오후 소위 <南北諸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 召集을 제의하면서 여기에서 종래 北韓이 南北 對話의 주요한 <전제조건>의 하나로 提示해오던 駐韓美軍撤收問題만을 토의하자고 主張하였다.

北韓은 同 提議에서 주한미군철수문제만을 토의 의제로 못박음으로써 南北韓最高責任者會談等 일련의 大韓民國의 남북대화제의를 事實上 거부하였다.

北韓의 이같은 南北對話忌避態度는 同年 2月 1日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이 北韓이 제의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의 對話方式을 수용한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提議에 대한 北韓의 거부 자세에서 더욱 明白히 뒷받침되고 있다.

孫在植 國土統一院長官은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開催를 北韓側에 제의하면서 “平和的統一을 위하여 南北雙方이 제기하는 문제”를 討議議題로 포함시키면서 남북한 자기 當局代表 2名과 政黨代表 3名으로 구성되는 예비회담을 83年 3月 중 판문점 또는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提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同年 2月 5日자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한이 主張해 온 방안에 대해서는 일체 합구한채 駐韓美軍撤收 問題만을 協議하기 위한 連席會議 소집 주장을 反復하였다.

뿐만 아니라 北韓은 大韓民國이 KBS-TV의 <이산가족찾기운동>

화적통일을 앞당기고자 하는 일념에서 제의한다”고 전제하고 대한민국측 대표 9인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② 동 제의는 '83년도 전두환대통령의 국외시정연설에서 제의되었다.

展開를 계기로 하여 大韓赤十字社총재가 7月 6日자와 8月 12日자의 대북성명을 통해 남북한간의 이산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人道的인 남북한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²⁹한데 대해서도 주한미군철수를 前提條件으로 내세우거나 아니면 駐韓美軍撤收問題만을 토의하기 위한 協商만을 주장하면서 거부하였다.

金日成은 韓國側의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과 이에 따른 거듭되는 對北平和統一提議가 內外的으로 크게 共鳴을 받고 北韓에 주는 壓力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 마침내 1983年 9月 9日 소위 北韓政權創立 35週年에 즈음하여 同記念行事に 116個國에서 270個의 代表團을 초청하여 대규모적으로 行事を 벌리면서 北韓의 統一努力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한 聯邦制案에 대한 批判的 要因과 未備點을 一部 補完하여 10월에 서울에서 開催되는 國際議會聯盟(IPU)總會에서 豫想되는 韓國統一問題 學論에 先手를 치기 위하여 종전에 주장해 오던 高麗民主聯邦制案을 약간 追加·補完시킨 聯邦制案을 다시 提起하였다.

여기에서 金日成은 統一政府인 最高民族聯邦會議과 聯邦常設委員會는 北과 南이 共同議長과 共同委員長을 各各選擇하여 그들이 輪番制로 運營하자고 補充的 提議를 하였다.

이에 대해 韓國側의 孫在植 國土統一院長官은 9月 24日 國土統一顧問會議席上에서 北韓側이 對話에 呼應해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과 함께 그들이 주장하는 統一方案에 대해서도 討議할 餘의가 있다고 하면서 南北對話再開를 다시 한번 促求하였으나 北韓은 이에 대해 아무런 公式的 反應을 보여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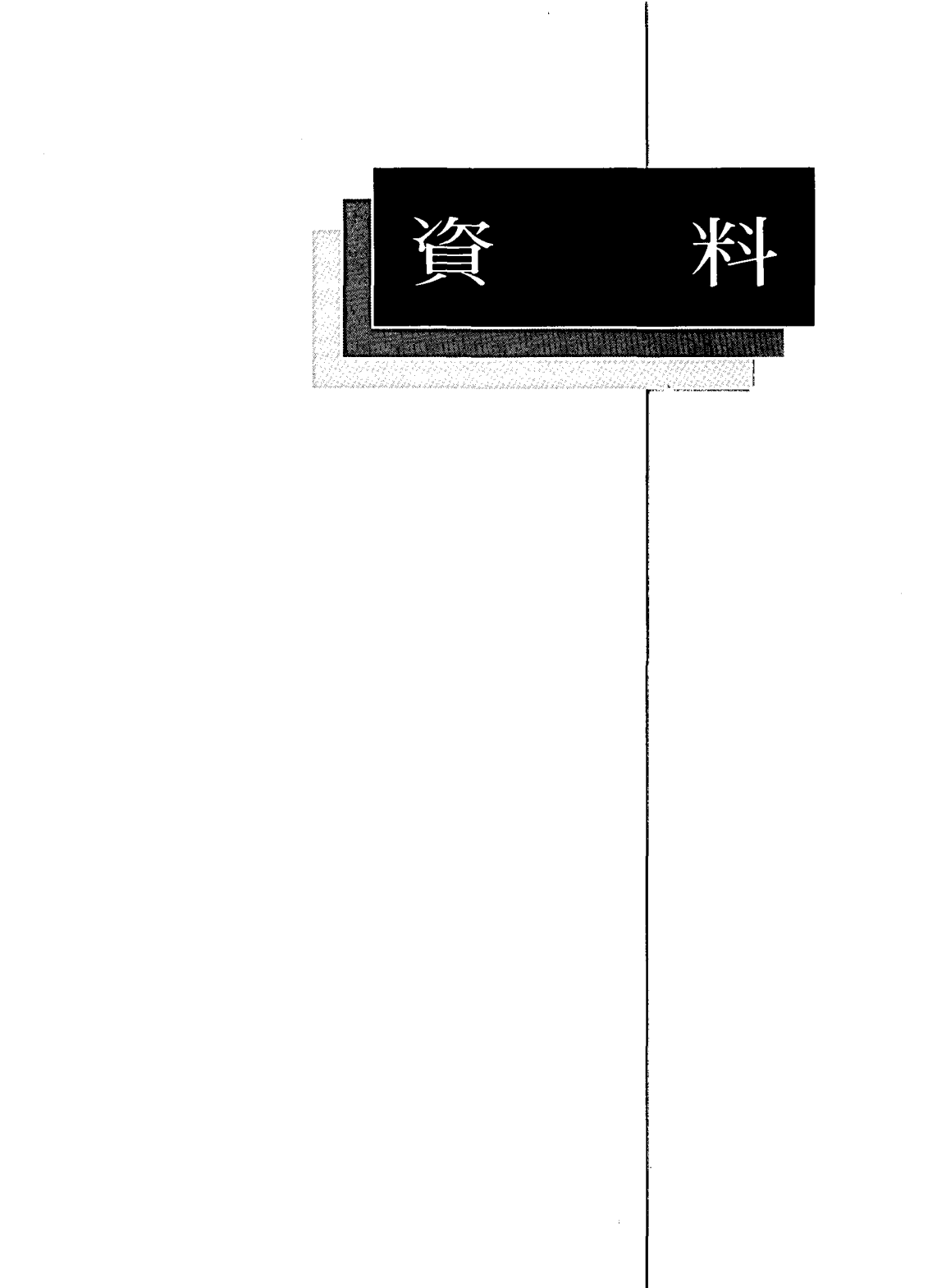
²⁹ 북한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유광순 대한적십자사총재의 7월 6일자 담화문에 대해 7월 24일 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성명을 통해 대한적십자가 주한 미군철수와 대한민국헌정권회진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면 대화를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最近 北韓의 南北對話 拒否反應

對 北 提 議	北 韓 反 應
<p><81. 1. 12 전두환대통령 국정 연설> ○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의 *부담 조건없는 김일성 서울방문 초청</p>	<p><81. 1. 19 조국평화통일위원장성명> ○ '전제조건' 제시, 거부 — 구속자석방 — 반공정책포기 — 6. 23 선언취소 — 주한미군철수</p>
<p><81. 6. 5 전두환대통령 '평통'개회사> ○ '남북한당국 최고 책임자회담'제의 *북한에 회담장소, 시기일입 및 쌍방 통일방안 논의</p>	<p><81. 6. 9 노동신문글> ○ '전제조건' 제시, 거부 ○ 81. 8. 6 '민족통일촉진대회' 주장 *남한당국자 배제</p>
<p><82. 1. 22 전두환대통령 국정연설>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천명 ○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수락 촉구</p>	<p><82. 1. 26 부주석겸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담화> ○ '전제조건' 제시, 거부</p>
<p><82. 2. 1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 '20개항 시범실천사업'제의</p>	<p><82. 2. 10 '남북한정치인연합회의'제의> ○ 남한당국자 및 정당·사회단체 인사 배제</p>
<p><82. 2. 25 국토통일원장관대북성명> ○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제의 ○ 의제: 북한이 82. 2. 10 제의한회의 등 3개항</p>	<p><82. 3. 30 노동신문 논평> ○ '전제조건' 제시, 거부</p>
<p><83. 1. 18 전두환대통령 국정연설> ○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회담'에서 협의·해결할 당면과제' 제시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북한통일 방안 협의등 4개항</p>	<p><83. 1. 18 '정당·사회단체성명'> ○ '남북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제의 ○ '주한미군철수 문제'만을 의제로 제시 *남한당국자 배제 및 주한미군철수 주장자만 회의참가.</p>
<p><83. 2. 1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제의 ○ 의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문제 및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등 2개항</p>	<p><83. 2. 5 노동신문 논평> ○ '전제조건' 제시로 비난, 거부 ○ 주한미군 철수 문제만을 협의하기 위한 '연석회의' 소집촉구</p>
<p><83. 6. 1 '평통' 제2차전체회의 전두환대통령 개회사></p>	<p><83. 6. 5 노동신문 논평: '추잡한 연극'></p>

南北對話

<p>○ 내용 : IPU 서울총회에 북한 대표 참가시 모든 편의제공, 남북대화 호응촉구</p>	<p>○ 내용 : 주한미군철수요구, 유엔등 시가입, 교차승인 등 분열의 국제적 고정화 회색</p>
<p><83. 7. 6 대한적십자사 총재 답화문> ○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촉구</p>	<p><83. 7. 24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성명> ○ 적십자회담재개 '전제조건' 제시</p>
<p><83. 8. 12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산가족의날 치사> ○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촉구</p>	<p><83. 8. 15 노동신문논평 : '갈지않은 말과행동'> *83. 7. 24 적십자회 중앙위 성명 내용 반복</p>



資料

朝鮮勞動黨規約

(1980. 10. 13 6次黨大會 改正)

朝鮮勞動黨은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에 의해 創建된 主體型的 革命的 맑스-레닌 主義黨이다.

偉대한 首領 金日成 同志는 1926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共產主義의 革命組織으로서 打倒帝國主義同盟을 結成했으며 오랜 抗日革命鬭爭을 통해 黨創建을 위한 組織의 思想的 基盤을 마련했으며 이에 基礎하여 榮光스러운 朝鮮勞動黨을 創建하였다.

朝鮮勞動黨은 우리나라에서 勞動階級과 全體 勤勞大衆의 先鋒的 組織의 部隊이며 全體 勤勞大衆 組織體 中에서 最高形態의 革命組織이다.

朝鮮勞動黨은 朝鮮民族과 朝鮮人民의 利益을 代表한다.

朝鮮勞動黨은 勞動者, 農民, 勤勞 「인테리」를 網羅하는 勤勞人民들 가운데서 勤勞大衆의 利益과 社會主義, 共產主義 運動의 勝利를 위하여 獻身的으로 服務하는 先鋒的 鬭士들로서 組織한다.

朝鮮勞動黨은 오직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의 主體思想, 革命思想에 의해 지도된다.

朝鮮勞動黨은 抗日革命鬭爭時期에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에 의해 이룩된 榮光스러운 革命傳統을 繼承 發展시킨다.

朝鮮勞動黨은 資本主義思想과 마찬가지로 國際共產主義 運動과 勞動階級運動에서 나타난 修正主義, 教條主義를 비롯한 온갖 機會主義를 反對하고 맑스-레닌主義의 純潔性을 固守하기 위하여 堅決히 鬭爭한다.

朝鮮勞動黨의 當面目的은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이룩하며 全國의 範圍에서 民族解放과 人民民主主義의 革命課業을 完遂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

朝鮮勞動黨은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우는 것을 黨建設과 黨活動의 基本原則으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主體思想에 基礎한 全黨의 思想意志의 統一團結을 繼續 強化한다.

朝鮮勞動黨은 프로레타리아 獨裁를 實施하며 社會主義, 共產主義建設의 總路線으로서 千里馬運動과 思想, 技術, 文化革命을 推進한다.

朝鮮勞動黨은 勞動階級の 領導的 役割을 높임으로써 勞農同盟을 基礎로 한 全朝鮮의 各界各層 愛國의 民主力量들과의 統一戰線을 強化하기 위하여 鬭爭한다.

朝鮮勞動黨은 人民들의 物質的 및 文化的 水準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最高의 活動

朝鮮勞動黨規約

原則으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사람과의 事業을 黨事業의 基本으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모든 黨事業의 基本原則으로서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貫徹한다.

朝鮮勞動黨은 抗日遊擊隊式 事業方法; 靑山里精神 및 靑山里方法을 徹底히 貫徹한다.

朝鮮勞動黨은 온 社會의 革命化, 勞動階級化, 인테리化를 促進하고 社會主義의 物質, 技術的 土台를 鞏固히 하며 나아가서 社會主義制度를 強化하고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促進시키기 위한 鬭爭에서 思想, 技術, 文化革命을 活潑히 遂行한다.

朝鮮勞動黨은 南朝鮮에서 美帝國主義 侵略軍隊를 몰아내고 植民地統治를 清算하며 그리고 日本 軍國主義의 再侵企圖를 挫折시키기 위한 鬭爭을 展開하고 南朝鮮人民들의 社會民主化와 生存權鬭爭을 積極 支援하고 祖國을 自主的 平和的으로 民族大團結의 原則에 基礎하여 統一을 이룩하고 나라와 民族의 統一의 發展을 이룩하기 위해 鬭爭한다.

朝鮮勞動黨은 自主성과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原則에 基礎하여 社會主義 나라들과의 團結과 國際共產主義 運動과의 連帶性을 強化하고 世界의 모든 新興勢力나라 人民들과의 親善, 協調關係를 發展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人民들의 反帝民族解放運動과 資本主義 나라들의 勞動階級과 그밖의 人民들의 革命鬭爭을 支持하고 廣範한 聯合戰線을 實現하여 美國을 우두머리로 하는 帝國主義와 支配主義를 反對하며 平和와 民主主義, 民族의 獨立과 社會主義 共同偉業의 勝利를 爭取하기 위하여 鬭爭한다.

第1章 黨 員

1. 朝鮮勞動黨 黨員은 黨과 首領, 祖國과 人民을 위하여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를 위하여 獻身하는 주체형의 共產主義 革命투사이다.
2. 朝鮮勞動黨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體系로 確固히 武裝된 朝鮮公民으로서 黨의 路線과 政策을 擁護, 貫徹하기 위하여 堅決히 鬭爭하며 黨規約를 遵守하는 勤勞者들이 될 수 있다.
3. 朝鮮勞動黨 黨員은 規定된 候補期間을 마친 候補黨員가운데서 받아 들인다.
그러나 特別한 경우에는 入黨請願者를 候補期間을 거치지 않고 直接黨員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滿 18歲부터 入黨할 수 있다.

入黨節次는 다음과 같다.

- 1) 候補黨員으로 入黨하려는 사람은 入黨請願書와 黨員 2名의 入黨保證書를 黨 細胞에 提出하여야 한다.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員이 入黨할 때에 市(區域)·郡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 委員會의 入黨保證書는 黨員 1名의 保證書를 代身할 수 있다.

候補黨員이 入黨할 때에는 入黨請願書와 入黨保證書를 黨 細胞에 提出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黨細胞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다른 入黨 保證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2) 入黨保證人은 최소한 2년이상의 黨年限을 가져야 한다.

入黨保證人은 被保證人의 社會, 政治生活를 잘 알아야 한다.

入黨保證人은 保證의 眞實性에 대하여 黨앞에 責任을 진다.

3) 入黨問題는 個別的으로 審査하며, 黨細胞總會에서 入黨請願者의 參加밑에 討議결정하며 그 決定은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入黨保證人은 入黨問題를 討議하는 會議에 參加하지 않아도 된다.

市(區域)·郡黨委員會는 入黨問題에 대한 黨細胞의 決定을 1個月內에 審議 解決하여야 한다.

4) 特殊한 環境에서 일하는 사람의 入黨問題는 黨中央委員會에서 特別히 制定한 規定과 節次에 따라 審議한다.

5) 他黨에서 黜黨한 사람이 入黨하려면 최소한 3년이상의 黨年限을 가진 黨員 3名의 保證이 있어야 한다.

他黨에서 平黨員으로 있었던 사람의 入黨은 市(區域)·郡黨委員會가, 市(區域)·郡級의 委員 및 幹部로 있었던 사람의 入黨은 管轄道(直轄市) 黨委員會가, 道(直轄市), 中央委員會委員 및 幹部로 있었던 사람의 入黨은 黨中央委員會가 各各 最終的으로 批准한다.

6) 候補黨員의 候補期間은 1年으로 한다.

黨細胞는 候補黨員에게 黨員의 資格을 갖추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黨細胞는 候補黨員의 候補期間이 끝남에 따라 黨員審査總會에서 그의 入黨資格與否를 審議 決定한다.

特別한 경우에는 候補黨員의 候補期間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黨員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만일 候補黨員의 入黨 準備程度가 不充分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候補期間을 1年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에서 延期할 수 있다.

候補黨員이 候補期間을 마친 후에도 資格이 없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候補名簿에서 削除된다.

候補期間을 延期하거나 候補黨員을 名簿에서 削除시키는 黨細胞의 決定은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7) 候補黨員이나 候補期間을 거치지 않고 直接 黨員이 된 자의 入黨日時는 黨細胞總會에서 入黨을 決定한 날로 한다.

4. 黨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體系가 確固히 서 있어야 한다.

黨員은 黨과 首領에 무한히 忠誠하고 우리 黨의 唯一思想體系로 確固히 武裝하며 黨의 要求에 따라 生覺하고 行動하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接受하고 擁護하며 이를 徹底히 貫徹하여야 한다.

朝鮮勞動黨規約

黨員은 黨의 革命傳統을 깊이 研究體得하고 그것을 擁護하며 勞動과 生活에 適用해 나가야 한다.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資本主義思想, 封建的儒敎思想, 修正主義, 敎條主義, 事大主義, 宗派主義, 地方主義 및 家族主義를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며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노동자와 같이 固守하여야 한다.

- 2) 黨員은 黨性을 무단히 鍛鍊하기 위한 높은 組織意識을 가지고 黨 生活에 自發的으로 參加하여 自身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하여야 한다.

黨員은 黨會議과 黨學習을 비롯한 黨의 組織 및 思想生活에 充實히 參加하고 黨 組織의 決定과 自己에게 부여된 任務을 正確히 遂行하며 自身の 黨生活을 定期的으로 總和하며 批判과 思想鬪爭을 통하여 自己를 革命家로 鍛鍊시켜야 한다.

黨員은 職位와 功勞에 關係없이 全體 黨員들에게 다같이 適用되는 黨의 規律을 自發的으로 遵守하고 規律 違反에 대하여는 堅決히 鬪爭하여야 한다.

- 3) 黨員은 革命的인 學習氣風을 確立하고 自己의 政治, 思想, 文化 및 技術水準을 不斷히 向上시켜야 한다.

黨員은 主體思想, 黨의 路線과 政策 및 革命傳統을 깊이 學習하며 經濟 및 先進 科學技術 知識을 習得하고 現實狀況을 了解하며 自身の 文化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

- 4) 黨員은 革命的 群衆路線을 貫徹하며 日常的으로 大衆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黨員은 大衆에게 黨의 路線과 政策을 日常的으로 解說하여 주며 그들을 敎養 改造하여 黨 주위에 굳게 結束시키고 革命課業의 遂行을 위하여 그들을 動員하며, 大衆의 意見을 正確히 接受하여 그들의 要求를 제때에 解決하여 주어야 한다.

- 5) 黨員은 勞動과 生活에서 大衆의 模範이 되며 모든 事業에서 先鋒의 役割을 하여야 한다.

黨員의 集團의 革命化鬪爭을 指導하며 自身과 家族의 革命化에 模範을 보여야 한다. 黨員은 勞動을 사랑하고 勞動法律을 自發的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서며 自己가 맡은 事業에 精通하며 맡은바 任務을 模範的으로 遂行하여야 한다.

黨員은 保守主義와 消極性을 反對하며 技術革新運動에 積極的으로 參加하여 勞動 生産 能率을 不斷히 提高하고 企業管理運營에 率先 參加하며 國家와 社會財産을 愛護하여 나라의 經濟를 節約해야 한다.

- 6) 黨員은 高尚한 共產主義의 道德性을 所有하고 組織과 集團을 사랑하며 組織과 集團의 利益을 위하여 個人的 利益을 犧牲할 覺悟가 있어야 한다.

黨員은 높은 革命的 自立精神을 發揮하고 모든 隘路에 대하여 果敢히 鬪爭해야 한다.

黨員은 恒常 素朴, 率直, 謙遜하여야 하며 私利와 功名을 탐내지 말고 黨과 함께 率直하며, 人間性이 豊富하고 文化的이어야 하며 國法과 社會秩序 및 公衆道德 遵守에 模範이 되어야 한다.

- 7) 黨員은 社會主義祖國을 튼튼히 保衛하여야 한다.

黨員은 日常的으로 緊張된 動員 態勢를 갖추고 軍事知識을 배워 敵의 侵略으로부터 戰取物을 튼튼히 保衛하며 祖國統一의 革命的 大事變에 對備할 覺悟가 되어 있어야 한다.

- 8) 黨員은 革命規律과 秩序를 遵守하고 어느 때 어느곳에서나 安逸과 나태함이 없이 革命的인 警覺性을 높이고 黨, 國家 및 軍事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 9) 黨員은 事業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問題에 대하여 黨組織에 報告하여야 한다.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現象뿐만 아니라 事業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모든 缺陷과 否定的인 傾向을 反對하여 鬪爭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黨中央委員會에 이르기까지 各級 黨委員會에 迅速히 報告하여야 한다.

- 10) 黨員은 規定된 黨費를 매달 納付하여야 한다.

5. 黨員의 權利는 다음과 같다.

- 1) 黨員은 黨會議과 黨出版物을 통하여 黨의 路線과 政策 遂行 및 黨事業 發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意見을 發表할 수 있다.
- 2) 黨員은 黨會議에서의 投票權과 各級 黨組織의 指導機關 選舉에서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진다.
- 3) 黨員은 黨會議에서 正當한 理由와 根據가 있는 限 어떤 黨員을 莫論하고 批判할 수 있으며,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限 어떠한 指示의 遵守도 拒絕할 수 있다.
- 4) 黨員은 自己의 事業과 生活에 대한 問題를 討議·決定하는 黨會議에 參加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 5) 黨員은 黨中央委員會에 이르기까지 各級 黨委員會에 어떤 申訴나 請願을 提起하고 그에 對한 審議를 要求할 수 있다.
- 6) 候補黨員의 義務는 黨員의 義務와 같다. 候補黨員의 權利는 選舉權과 被選舉權 및 決議權이 없는 以外에는 黨員의 權利와 같다.
- 7) 黨의 規律을 違反하는 黨員은 黨의 責罰을 받는다.

- ①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行動을 하거나 黨의 路線과 政策을 反對하여 破壞적 行爲를 하거나 敵과 妥協하는 등 黨에 嚴重한 損失을 끼친 黨員은 黜黨시킨다.
- ② 黨員의 稱號를 剝奪하지 않을 程度의 過誤를 犯한 黨員에 대하여는 過誤의 輕重에 따라 譴責, 嚴重警告, 또는 權利停止나 候補黨員으로 강등하는 責罰을 適用한다.
- ③ 黨 責罰의 目的은 過誤를 犯한 黨員을 教養하는데 있다.

黨의 責罰은 過誤를 犯한 動機와 原因 및 그 過誤의 結果를 詳細히 糾明한 후 에 신중하게 科해야 한다.

- ④ 黨 責罰은 本人의 參加下에 그가 屬한 黨 細胞總會에서 討議決定한다. 特別한 境遇에는 本人이 參加하지 않아도 責罰을 討議·決定할 수 있다.

中央委員會, 道(直割市), 市(區域)·郡黨 委員會는 黨規律을 違反한 黨員에게 直接責罰을 내릴 수 있다.

黨員에게 責罰을 適用할데 대한 黨細胞의 決定은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하고 黨員資格 剝奪에 대한 黨細胞의 決定은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批准을

朝鮮勞動黨規約

받아야 한다.

黜黨에 대한 黨細胞의 決定이 批准되기 前에는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黨員의 黨證을 回收하지 못하며 黨生活 參加를 許容해야 한다.

⑤ 黨中央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에 대한 責罰은 黨中央委員會全員會議에서, 道(直轄市), 市(區域)·郡 黨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에 대한 責罰은 該當 黨委員會의 全員會議에서 決定한다.

黨細胞는 中央委員會, 道(直轄市), 市(區域)·郡黨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이 黨規律을 違反한 境遇에 違反黨員에 대한 責罰을 該當 黨委員會에 提議할 수 있다.

그러나 黨細胞는 道(直轄市)·市(區域)·郡 黨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이 犯한 過誤가 該當 委員會事業과 直接的인 關聯이 없을 때에는 嚴重警告까지의 責罰을 決定할 수 있으며 그 決定은 該當 黨委員會의 批准를 받아야 한다.

6. 宗派 및 기타 다른 分派에 參加한 黨員에 대한 黨規律 問題의 審議는 다음과 같은 規定에 의하여 進行된다.

平黨員 또는 市(區域)·郡機關의 幹部로 있던 黨員의 問題는 道(直轄市) 黨委員會에서, 道(直轄市) 또는 中央黨機關의 幹部로 있던 黨員의 問題는 黨中央委員會에서 審議한다.

7. 黨中央委員會, 道(直轄市), 市(區域)·郡黨委員會는 黨規律問題와 關聯된 黨員의 請願을 기체없이 審議 解決하여야 한다.

8. 黨細胞는 항상 責罰을 받은 黨員을 幫助하여야 하며, 만일 責罰을 받은 黨員이 自己의 過誤를 改正하고 그것을 是正하기 위하여 努力하고 있으며 實際로 行動이 改善되고 있는 境遇에는 그 責罰을 解除하는데 대한 問題를 總會에서 討議 決定하여야 한다.

黨員이 받은 責罰을 解除하는데 대한 黨細胞의 決定은 該當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批准를 받아야 한다.

黨中央委員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이 받은 責罰의 解除는 그 責罰의 適用을 最終的으로 決定한 該當 黨委員會에 의해서 決定된다.

9. 正當한 理由없이 6個月以上 黨生活에 參加하지 않는 黨員에 대하여 黨細胞는 總會에서 除名을 決定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決定은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批准를 받아야 한다.

10. 黨員의 登錄과 移動은 黨中央委員會가 制定한 規定과 節次에 의하여 處理된다.

第2章 黨의 組織原則과 組織構造

11. 黨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 原則에 의하여 組織한다.

- 1) 各級 黨組織의 指導機關은 民主主義의 으로 選舉하고, 選出된 黨指導機關은 選舉한 黨組織에 對해 自己의 事業에 對하여 定期的으로 總和·報告한다.
- 2) 黨員은 黨組織에 服從하며 少數는 多數에 服從하며 下級黨組織은 上級黨組織에 服從하며 모든 黨組織은 黨中央委員會에 絕對服從한다.
- 3) 모든 黨組織은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擁護 貫徹하며 下級黨 組織은 上級黨組織의 決定을 義務의 으로 執行하여야 한다.

上級黨 組織은 下級黨 組織의 事業을 系統的으로 指導 檢閱하며 下級黨 組織은 上級黨 組織에게 自己의 事業에 對하여 定期的으로 報告한다.

12. 各級 黨組織은 地域 또는 生産 및 勞動單位에 따라 組織한다.

어느 한 地域을 擔當한 黨組織은 그 地域의 一部分을 擔當한 모든 黨組織들에 對하여 上級 黨組織으로 되며, 어느 한 分野의 全體事業을 擔當한 黨組織은 그 分野의 一部分을 擔當한 모든 黨組織들에 對하여 上級 黨組織으로 된다.

13. 各級 黨委員會는 各 該當 單位의 最高 指導機關이며 政治的 總參謀部이다. 集團의 指導는 모든 黨委員會의 基本活動指針이다.

各級 黨委員會는 새로운 重要的 問題들을 集團的으로 討議 決定하여 그것을 執行하여야 하며 이에 個人的 責任性과 創發性을 嚴密히 結合시켜야 한다.

各級 黨 組織은 該當地域 또는 分野에서 提起되는 問題들을 自立的으로 討議 決定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決定들은 黨의 路線과 政策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4. 各級 黨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다음과 같다.

- 1) 全黨의 最高指導機關은 黨大會이며 黨大會가 없을때는 黨大會가 選出한 黨中央委員會가 最高指導機關이 된다.

道(直轄市)·市(區域)·郡黨의 最高指導機關은 該當 黨代表會이며, 黨代表會가 없을때는 黨代表會가 選出한 該當 黨委員會가 最高指導機關이 된다.

初級黨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黨總會(黨代表會)이며, 黨總會(黨代表會)가 없을때는 黨總會(黨代表會)가 選舉한 該當 黨委員會가 最高指導機關이 된다.

- 2) 黨大會 또는 黨代表會의 代表者는 次下級 黨組織의 黨代表會 또는 黨總會에서 選舉한다.

黨大會 代表者의 選出比率는 黨中央委員會가 決定하며, 道(直轄市)·市(區域)·郡黨 組織의 黨代表會 代表者의 選出比率는 黨中央委員會가 作成한 規定에 따라 該當 黨委員會가 決定한다.

黨中央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의 數는 黨大會가 決定한다.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數와 初級黨委員會의 委員數는 黨中央委員會가 規定한 基準에 根據하여 該當 黨代表會 또는 總會에서 決定한다.

黨中央委員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의 準候補委員은 生産勞動에 直接 參加하는 核心黨員中에서 選出된다.

各級黨 組織의 指導機關 選舉는 黨中央委員會가 規定한 選舉細則에 따른다.

15. 黨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準候補委員의 除名 또는 補選은 該當 黨委員會 全員會議에서 實施된다.

黨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委員 가운데서 缺員이 생겼을 境遇에는 그 缺員된 數만큼 該當 黨委員會 候補委員 가운데서 補選한다.

만약 必要時는 黨委員會 缺員은 委員會의 候補委員이 아닌 다른 黨員으로 補選될 수 있다.

初級黨組織 執行機關委員의 除名 및 補選은 該當 黨總會(黨代表會)에서 施行된다.

初級黨이 下級黨의 規模가 大하거나 널리 分散되어 있고 또 業務의 特殊性으로 인해 黨總會(黨代表會) 召集이 不可能한 境遇에는 初級黨委員會가 缺員補充을 위한 補選을 實施할 수 있다.

上級 黨委員會는 缺員된 下級 黨委員會의 責任秘書(秘書) 또는 秘書(副秘書)를 任命할 수 있다.

各級 黨機關의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은 該當 黨委員會 全員會議에 參加하되 發言 權만 가진다.

16. 黨會議는 該當 黨組織에 所屬된 黨員(黨委員 또는 代表者) 總數의 3分之2 以上이 參加하여야만 成立될 수 있고 提起된 問題의 決定은 該當 黨會議 參加者의 過半數 贊成을 要한다.

17. 各級 黨委員會內에는 必要한 部署를 設置한다.

部署의 設置 및 廢止의 權限은 黨中央委員會가 가진다.

18.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및 그들과 同等한 機能을 遂行하는 黨委員會의 組織과 解散은 黨中央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하며, 初級黨委員會 및 分初級黨委員會의 組織과 解散은 道(直轄市) 黨委員會가 批准하고 小數 黨員을 가진 初級黨委員會 또는 部門黨委員會 및 黨細胞의 組織과 解散은 市(區域)·郡黨委員會가 批准한다.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는 黨組織의 組織과 解散에 대하여 黨中央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19. 黨中央委員會는 어떤 黨組織을 莫論하고 黨의 路線과 政策 및 黨規約를 嚴重하게 違反하거나 實踐을 怠慢이 한 境遇에 그 黨組織을 解散하고 所屬黨員을 個別的으로 審議하며 그들을 再登錄하여 새로운 黨組織을 組織할 수 있다.

20. 黨中央委員會는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重要한 地域과 部門 및 特殊한 環境에 適合한 黨組織의 構成, 黨組織의 活動方法과 其他黨 建設의 諸般問題에 關해 다르게 決定할 수 있다.

第3章 黨의 中央組織

21. 黨의 最高指導機關은 黨大會이다.

黨大會는 5년에 1回 黨中央委員會가 召集한다.

黨中央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黨大會를 規定된 期間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 있다.

黨中央委員會는 黨大會의 召集期日과 議程을 3個月前에 公告하여야 한다.

22. 黨大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 1) 黨中央委員會 및 黨中央檢査委員會의 事業 總和
- 2) 黨綱領과 規約의 採擇 또는 修正補充
- 3) 黨路線과 政策 및 戰略戰術에 관한 基本問題 決定
- 4) 黨中央委員會 및 黨中央檢査委員會 選舉

23. 黨中央委員會는 黨大會와 黨大會 사이에 모든 黨事業을 組織指導한다.

黨中央委員會는 全黨에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樹立하고 그 遂行을 組織 指導하며 黨과 革命隊列을 鞏固히 하고 行政 및 經濟事業을 指導, 調整하며 革命的 武力을 組織, 그들의 戰鬥能力을 높이고 기타 政黨 및 國內外機關의 活動에서 黨을 代表하며 黨의 財政을 管理한다.

24. 黨中央委員會는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을 6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한다.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은 該當時期에 黨이 直面한 重要問題 등을 討議 決定하며 黨中央委員會 政治局과 政治局 常務委員會를 選舉하며 黨中央委員會 總秘書와 秘書를 選舉하고 黨中央委員會의 秘書局과 軍事委員會를 組織한다.

黨中央委員會는 黨中央委員會 檢閱委員會를 選出한다.

25. 黨中央委員會 政治局과 政治局 常務委員會는 全員會議과 全員會議 사이에 黨中央委員會 名義로 黨의 모든 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26. 黨中央委員會 秘書局은 必要時, 黨人事 및 當面問題등 黨內問題를 討議, 決定하며 그 決定의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27. 黨中央委員會 軍事委員會는 黨軍事政策 遂行方法을 討議 決定하며 人民軍을 包含한 全武力強化와 軍需産業發展에 관한 事業을 組織, 指導하며 우리나라의 軍隊를 指揮한다.

28. 黨中央委員會 檢閱委員會는 反黨·反革命的 宗派行爲 및 其他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行爲를 하거나 黨의 路線과 政策 및 規約을 遵守하지 않아 黨 規律을 違反한 黨員에게 責任을 追窮하며 黨規律問題와 關聯된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提議 및 黨員의 申訴를 審議 해결한다.

29. 黨中央檢査委員會는 黨의 財政經理事業을 檢査한다.

30. 黨中央委員會는 黨大會와 黨大會 사이에 黨代表者會를 召集할 수 있다.

黨代表者會의 代表者 選舉節次와 代表者 選出比率는 黨中央委員會가 決定한다.

黨代表者會는 黨의 路線과 政策 및 戰略戰術에 관한 緊急한 問題들을 討議 決定하며 자기의 任務를 遂行하지 못한 黨中央委員會委員, 候補委員 또는 準候補委員을 除名하고 그 缺員을 補選한다.

第 4 章 道(直轄市)의 黨組織

31. 道(直轄市) 黨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道(直轄市) 黨代表會이다. 道(直轄市) 代表會는 3 年에 1 回 道(直轄市) 黨委員會가 召集한다.

道(直轄市) 代表會는 必要에 따라 規定된 期間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 있다.

道(直轄市) 黨委員會는 道(直轄市) 黨代表會議 召集日자와 議程을 2 個月前에 下級黨組織들에 通知하여야 한다.

32. 道(直轄市) 黨代表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道(直轄市) 黨委員會와 道(直轄市) 黨檢査委員會의 事業 總和

2) 道(直轄市) 黨委員會 및 道(直轄市) 黨檢査委員會 選出

3) 黨大會에 派遣할 代表者 選出

33.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確立하는 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黨員과 勤勞大衆을 黨의 唯一思想으로 굳게 武裝시키고 그들이 黨路線과 政策을 徹底히 擁護 遂行하며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資本主義思想, 封建儒敎思想, 修正主義, 敎條主義, 盲從主義, 宗派主義, 地方主義 및 家族主義에 대해 堅決히 鬪爭하도록 監督하고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繼續 強化해야 한다.

幹部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後備隊을 育成하며 黨力量을 合理的으로 配置하고 黨生活을 組織, 指導하며 下級黨組織을 強化하고 그들의 活動을 監督한다.

黨員 및 勤勞大衆에 대한 主體思想, 黨政策, 革命傳統敎養 및 階級敎養이 主內容인 共產主義敎養과 社會主義的 愛國敎養을 強化해야 하며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通해 그들을 黨 두리에 結束시켜야 한다.

勤勞大衆의 組織을 強化하고 그들이 自己 基本課業을 成功的으로 完遂할 수 있도록 指導, 調整하며 行政 및 經濟事業을 적절히 指導하여 革命課業遂行을 保障한다.

勞農赤衛隊를 強化하고 그 戰鬥力 向上을 組織的으로 指導하며 軍事動員事業을 保障한다.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財政을 管理하며 소관 事業에 關해 黨 中央委員會에 定期的으로 報告한다.

34. 道(直轄市) 黨委員會는 道(直轄市) 黨 全員會議을 4 個月에 1 回以上 召集한다.

道(直轄市) 黨委員會 全員會議는 黨의 路線과 政策의 遂行方法을 討議 決定하며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責任秘書 및 秘書를 選舉하며, 秘書處를 組織하고,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軍事委員會와 檢閱委員會를 選舉한다.

道(直轄市) 黨委員會 執行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道(直轄市) 黨委員會名義로 黨內事業을 組織, 執行하며 行政 및 經濟事業을 指導한다.

道(直轄市) 黨委員會 會議는 1 個月에 2 回以上 召集한다.

道(直轄市) 黨委員會 秘書處는 人事行政 등 黨內問題에 대해 必要時마다 討議 決定 하고 그 決定事項을 執行한다.

道(直轄市) 黨委員會 軍事委員會는 黨의 軍事政策 遂行方法을 討議 決定하며 그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35. 道(直轄市) 黨委員會 檢閱委員會는 反黨 또는 反革命的 宗派行爲 등 黨의 唯一思想 體系에 어긋나는 行爲를 하거나, 黨 路線 및 政策과 規約을 遵守하지 않아 黨規律을 違反한 黨員에게 責任을 追窮하며, 黨規律問題와 關聯된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提議 및 黜黨에 對한 決定을 最終적으로 批准하며 黨規律問題와 關聯된 黨員의 申訴를 解決한다.

第 5 章 市(區域)·郡의 黨組織

36. 市(區域)·郡 黨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市(區域)·郡 黨 代表會이다.

市(區域)·郡黨 代表會는 市(區域)·郡黨委員會가 3년에 1회 召集하고 必要에 따라 市(區域)·郡黨代表會는 規定된 期間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 있다.

市(區域)·郡黨委員會는 市(區域)·郡黨代表會의 召集日자와 議程을 1個月前에 傘下 黨組織들에 通知하여야 한다.

37. 市(區域)·郡黨代表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 1) 市(區域)·郡黨委員會와 市(區域)·郡黨檢査委員會의 事業總和
- 2) 市(區域)·郡黨委員會와 市(區域)·郡黨檢査委員會 選舉
- 3) 道(直轄市) 黨代表會에 派遣할 代表者 選舉

38.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는 事業을 組織遂行 한다.

黨員과 勤勞大衆을 黨의 唯一思想으로 武裝시키고 그들이 黨路線과 政策을 徹底히 擁護 遂行하며, 黨의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資本主義思想, 封建的 儒教思想, 修正主義, 教條主義, 盲從主義, 宗派主義, 地方主義 및 家族主義를 反對하여 堅決히 鬭爭할 것을 保障하며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繼續 強化한다.

幹部隊列을 強化하고, 그들을 教養하며 幹部後備隊를 育成하고, 그들을 組織的으로 訓練한다.

黨員의 黨生活을 組織, 指導하며 黨의 核心을 研究 周知시키고 그 隊列을 擴大시키며 黨員擴大事業을 定期的으로 組織·遂行하며 黨의 力量을 적절히 配置하고 黨員과 候補黨員을 登錄한다.

黨員과 勤勞大衆에 대해 主體思想, 黨政策과 革命傳統教養 및 階級教養이 主內容인 共產主義教養과 社會主義의 愛國教養을 強化하며 革命化·勞動階級化를 통해 그들을 黨뒤리에 結束시킨다.

朝鮮勞動黨規約

黨 基層組織을 合理的으로 組織하며 初級黨組織의 執行機關을 強化하며 그들의 機能과 役割의 不斷한 向上을 爲하여 매일같이 指導·幫助한다.

勤勞大衆의 組織들을 強化하고 任務를 正確히 遂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事業方向과 方法을 提示하며 그 履行을 監督한다.

行政 및 經濟事業을 正確히 指導하여 革命課業의 成果의 遂行을 保障한다.

勞農赤衛隊를 強化하고 그들의 政治思想敎養과 軍事訓練을 強化하여 戰鬥態勢를 完備하며 軍事動員事業을 保障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의 財政을 管理하며 自己의 事業에 關해 上級黨委員會에 定期的으로 報告한다.

39. 市(區域)·郡黨委員會는 全員會議을 3個月에 1回以上 召集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全員會議는 黨의 路線과 政策의 執行方法을 討議, 決定하며, 市(區域)·郡黨委員會의 執行委員會·責任秘書 및 秘書를 選舉하고, 秘書處를 組織하며, 市(區域)·郡黨委員會의 軍事委員會와 檢閱委員會를 選舉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의 執行委員會는 全員會議과 全員會議 사이에 市(區域)·郡黨委員會의 名義로 黨內事業을 組織하고 行政 및 經濟事業을 指導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執行委員會는 1個月에 2回以上 會議을 召集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秘書處는 問題提起時마다 人事行政 等 黨內事業에 關한 問題를 決定하며 그 決定을 執行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軍事委員會는 黨의 軍事政策 執行方法을 討議 決定하며 그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40. 市(區域)·郡黨委員會 檢閱委員會는 反黨·反革命的 宗派行爲 等 黨의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行爲를 하거나 黨의 路線과 政策 및 規約을 遵守하지 않아 黨規律을 違反한 黨員에게 責任을 追窮하며, 黨規律問題와 關聯된 黨員의 申訴를 審議 處理한다.

第 6 章 黨의 基層組織

41. 黨의 最下基層 組織은 黨細胞이다.

黨 細胞는 黨員生活의 據點이며 黨周圍에 大衆을 集結시키고 大衆속에서 黨의 路線과 政策을 直接 遂行하는 黨의 戰鬥單位이다.

42. 黨의 基層組織의 組織方式은 다음과 같다.

1) 黨細胞는 黨員 5名에서 30名까지의 單位에 組織한다.

黨員 5名未滿의 單位에는 黨細胞를 두지 않고, 그 單位의 黨員 또는 候補黨員은 隣接 黨細胞에 所屬시키거나 作業性格과 隣接關係를 考慮하여 2個以上 單位의 黨員을 合併하여 1個의 黨細胞를 組織할 수 있다.

特殊한 境遇에는 黨員 3~4名이 있는 單位 또는 30名 以上の 單位에도 黨細胞를 組織할 수 있다.

黨員 3名未滿의 單位에는 市(區域)·郡黨委員會가 推薦하는 黨員을 責任者로 하
는 黨小組를 組織할 수 있다.

2) 黨員 31名 以上이 있는 單位에는 初級 黨組織을 둔다.

3) 初級黨組織과 黨細胞 사이에 黨員 31名 以上이 있는 生産單位나 其他 活動單位에
는 部門(마을) 黨組織을 둘 수 있다.

4) 初級黨, 部門黨 또는 黨細胞의 組織形成만으로는 黨基層 組織構成이 不適當한 境
遇에는 初級黨組織과 部門黨組織 사이에 있는 生産單位나 其他 活動單位에 分初級
黨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5) 以上의 모든 黨 組織形態가 現實에 符合되지 않는 境遇에는 黨中央委員會의 批准
을 얻어 實情에 맞는 다른 黨組織形成을 取할 수 있다.

43. 黨基層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該當組織의 總會(代表會)이다.

1) 黨細胞總會는 1個月에 1回以上 召集한다.

2) 初級黨, 分初級黨, 部門(마을) 黨의 總會(代表會)는 3個月에 1回以上 召集한다.
初級黨組織이 500名 以上の 黨員 또는 候補黨員으로 構成되어 있거나 그 傘下組
織들이 널리 分散되어 있을 境遇에는 初級黨組織의 總會를 1년에 1回以上 召集할
수 있다.

44. 黨의 基層組織은 1年任期的 該當組織의 執行機關을 選舉한다.

1) 黨細胞는 總會에서 秘書와 副秘書를 選舉한다.

2) 初級黨委員會, 分初級黨委員會, 部門(마을) 黨委員會는 各各 黨總會(代表會)에서
選舉하며 秘書와 副秘書는 各各 黨委員會 會議에서 選舉한다.

初級黨 및 分初級黨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各各 執行委員會를 選舉할 수 있다.

初級黨委員會는 1個月에 3回以上, 分初級黨委員會와 部門(마을) 黨委員會는 1
個月에 2回以上 會議을 召集하며 執行委員會가 組織된 初級黨 및 分初級黨委員會
는 1個月에 1回以上 委員會會議을 召集하며 執行委員會 會議은 1個月에 2回以
上 召集한다.

3) 中央機關의 黨組織은 黨指導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45. 黨基層組織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1)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며 그들을 黨의 唯一
思想으로 튼튼히 武裝시키며 그들이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接受하여 끝까지 擁
護貫徹하도록 하며,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資本主義思想, 封建的儒教思想, 修
正主義, 教條主義, 盲從主義, 宗派主義, 地方主義 및 家族主義에 對해 堅決히 鬭爭
하며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끊임없이 強化한다.

2) 下級幹部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組織的으로 訓練시키며, 黨核心을 周知, 教
養하며 不斷히 그 隊列을 擴大, 強化한다.

3) 黨員들의 黨生活를 強化하고 그들의 黨性을 鍛鍊한다.

黨員들 속에 黨規約 學習을 定期的으로 組織하며, 그들에게 항상 革命을 위한 思
考와 行動을 하도록 하고, 모든 活動에서 先鋒的인 役割을 하도록 黨의 任務를 賦

朝鮮勞動黨規約

與하며, 높은 政治 思想의 水準에서의 黨會議과 黨生活 總和를 遂行하며 黨員의 黨生活를 徹底히 把握하고, 그들을 教養하며, 黨員들을 革命家로 改造하고 批判을 통한 思想鬭爭을 強化한다.

黨員이 過誤를 犯했을 境遇에는 責任을 追窮하고 그 過誤를 是正하도록 그를 幫助한다.

4) 黨員 適任者를 發見 登錄하며 그들을 組織的으로 教養하여 審査後資格者를 入黨시키며 候補黨員과 새로 入黨한 黨員들을 教養 訓練시킨다.

5) 黨員들과 勤勞大衆의 思想教養事業을 強化한다.

黨員들과 勤勞大衆에 對해 主體思想, 黨政策, 革命傳統教養 및 階級教養이 主內容인 共產主義教育과 社會主義的 愛國教養을 強化하며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통해 그들을 黨 斗리에 結束시킨다.

6) 勤勞大衆의 要求와 意見을 謙遜히 接受하고 그것을 時機에 解決하여 주며 그들의 物質文化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不斷히 努力하며 모든 單位와 職場에서 系統과 秩序를 確立하며 反革命的 分子들에대한 鬭爭을 強化한다.

7) 勤勞大衆의 社會組織을 強化하고 그들에게 事業方向과 方法을 提示하며 그들이 自己의 義務를 正確히 遂行하도록 監督한다.

8) 모든 事業活動에서 抗日遊擊隊式 事業方法 및 靑山里 精神과 方法을 適用하고 政治事業을 先行시키며 行政 및 經濟事業에 對한 效果的인 指導를 통해 革命課業을 成果的으로 保障한다.

모든 黨員들과 勤勞大衆이 그들의 革命課業을 忠實히 遂行하고 生産과 建設에서 끊임없이 革新을 일으키며 3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과 社會主義 競爭運動에 積極 參加하여 技術革新運動을 促進하며 勞動生産能率을 提高하고 勞動規律을 強化하며 法令을 遵守하고 國家와 社會財産을 愛護 節約하도록 그들을 組織, 鼓舞한다.

9) 勞農赤衛隊를 強化하고 그들의 政治, 思想, 教養 및 軍事訓練을 強化하여 黨이 부를 때 恒時 動員할 수 있도록 準備한다.

10) 黨員과 候補黨員을 登錄하며 黨費를 賦出하여 自己 事業에 關해 上級 黨委員會에 定期的으로 報告한다.

第 7 章 朝鮮人民軍隊內 黨組織

46. 朝鮮人民軍은 抗日武裝鬭爭의 榮光스러운 革命傳統을 繼承한 朝鮮勞動黨의 革命的 武裝力이다.

47. 朝鮮人民軍隊內의 各級 單位에 黨組織을 構成하며 朝鮮人民軍의 全體黨組織을 網羅하는 朝鮮人民軍 黨委員會를 組織한다.

朝鮮人民軍 黨委員會는 道(直轄市) 黨委員會와 같은 機能을 遂行한다.

朝鮮人民軍 黨委員會는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에 直屬하며 그 指導 밑에 事業하고

자기 事業에 대하여 黨中央委員會에 定期的으로 報告한다.

48. 朝鮮人民軍隊內 各級 黨組織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全軍을 主體思想으로 教養하기 위해 鬭爭한다.

黨員들과 軍人들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鞏固히 確立하며 그들이 黨과 首領, 祖國과 人民을 위해 서슴없이 生命을 바칠 수 있는 眞正한 革命戰士가 될 수 있도록 鍛鍊한다.

幹部隊列을 強化하며 幹部後備隊를 育成하고 그들의 黨性을 끊임없이 鍛鍊하도록 黨員의 黨生活를 組織, 指導하며 黨隊列을 擴大, 強化한다.

黨員과 軍人들에 대해 主體思想, 黨政策 및 革命傳統教養과 階級教養을 主內容으로 하는 共產主義教養과 社會主義的 愛國教養을 強化하며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통해 그들을 黨두리에 結束시킨다.

朝鮮人民軍隊內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組織들을 強化하고 그들의 機能과 役割을 높이도록 指導한다.

黨軍事路線과 主體的 戰略戰術을 遂行하기 위해 軍事事業에 관한 黨委員會의 集團的 指導를 強化하며 人民軍을 一當百의 革命的인 武裝力으로 強化, 發展시키기 위해 3大革命 불은旗爭取運動과 불은旗中隊 運動을 積極展開한다.

黨員과 戰士들이 언제나 遲滯없이 行動할 수 있도록 警戒態勢를 堅持토록하고 恒常 完壁한 戰鬪態勢를 갖도록 鼓舞한다.

黨員과 戰士들에게 높은 革命的 同志愛 및 軍官과 戰士, 軍隊와 人民間의 高貴한 傳統的 團結精神을 發揮하도록 誘導한다.

49. 朝鮮人民軍隊內 各級 黨組織들은 朝鮮勞動黨의 規約과 黨中央委員會가 批准한 指示와 規定에 따라 組織되고 事業을 遂行한다.

50. 朝鮮人民軍隊內 各級 黨組織들은 地方 黨組織들과 緊密한 連繫를 가져야 한다.

朝鮮人民軍隊의 黨 委員會는 黨中央委員會의 批准을 얻어 政治 및 軍事幹部를 駐屯 地域의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및 工場 企業所의 初級黨委員會委員으로 推薦할 수 있다.

第 8 章 政治機關

51. 黨 中央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政治, 經濟 및 軍事分野의 重要한部門에 政治機關들을 組織한다.

中央機關에 組織된 政治局(政治部) 및 그들에게 所屬한 政治機關들은 該當部門에서 黨員들과 勤勞大衆에게 政治思想教養 事業을 組織 遂行하며, 該當單位內에 組織된 黨委員會 執行機關으로서의 機能을 遂行한다.

朝鮮人民軍 總政治局과 그 所屬政治機關은 該當 黨委員會의 執行機構로서 黨政治事業을 組織하고 遂行한다.

朝鮮勞動黨規約

52. 朝鮮人民軍 總政治局과 中央機關內에 組織된 政治局(政治部)은 黨中央委員會 直屬이며 그 指導下에 事業을 遂行하고 擔當事業에 關해 黨中央委員會에 定期的으로 報告한다.
53. 中央機關內에 組織된 政治局(政治部)들은 下級政治機關들을 指導함에 있어서 該黨 地方黨委員會들과 緊密한 連繫를 가져야 한다.
54. 政治機關들은 黨의 路線과 政策을 遂行함에 있어서 黨員들과 勤勞大衆을 動員키 위하여 黨熱誠者 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55. 政治機關들은 勞動黨의 規約과 黨中央委員會가 批准한 指示와 規定에 따라 組織되고 事業한다.

第 9 章 黨과 勤勞大衆의 組織

56.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廣範한 勤勞大衆의 政治組織이며 抗日革命鬪爭의 榮光스러운 傳統을 繼承하는 黨의 外廓組織이다.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廣대한 大衆의 思想教養組織이며, 黨과 大衆을 連結하는 引傳帶이며 黨의 忠實한 補助者이다.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우리의 革命課業을 直接 繼承하는 青年들의 革命的 組織이며 黨의 戰鬪의 後備隊이다.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黨의 指導下에 自己의 事業을 遂行한다.
57.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同盟員들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本토히 꾸리며 同盟隊列을 強化하며 組織生活와 思想教養事業을 強化하고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通해 同盟員들을 黨 두리에 結束시키며 3大革命붉은旗爭取運動과 社會主義競爭運動을 展開하며 同盟員들을 革命과 建設에 積極 動員한다.
58. 各級 黨組織들은 勤勞大衆의 幹部隊列들을 強化하고 勤勞大衆組織의 媒體를 通하여 大衆과의 事業體系를 樹立하며 勤勞大衆이 特性에 맞게 事業方向과 方法을 正確히 提示하며 그들이 自發的으로 自己 任務를 遂行하도록 監督하여야 한다.

第10章 黨의 財政

59. 黨의 財政은 黨員들의 黨費, 黨이 運營하는 機關들과 企業所들로 부터의 收入 및 其他 收入으로 充當된다.
60. 黨員 및 候補黨員의 黨費는 月收入의 2%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 12. 27)

제 1 장 정 치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노동연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승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 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의세를 몰리치고 민주주의적기초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 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8 조 근로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 1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 11 조 국가는 내외적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한다.

제 11 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치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제에 의거하며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의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 2 장 경 제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부립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협동경영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의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높아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물질적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역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들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7조 근로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로동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에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 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의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 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제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을 관찰하여 생산성장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 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 3 장 문 화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8조 국가는 모든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 교육과 기술교육,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 10년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45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6조 국가는 우리 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8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 4 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5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1조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만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3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5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 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5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58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를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9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 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2조 너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64조 공민은 인민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 수 없다.

제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 다

제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제67조 국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8조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조국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제69조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자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2조 조국보위는 국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국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 5 장 최고인민회의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제75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외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8조 최고인민회의의는 대의원전원의 반수이상인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79조 최고인민회의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1조 최고인민회의 제 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하에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가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돕는다.

제84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이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현행법령을 수정하고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 6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제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제9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 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법령, 중앙인민위원회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99조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 7 장 중앙인민위원회

제10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외정책을 세운다.
2. 정부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 기관 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령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부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부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부장, 그밖의 정부원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 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8장 정 무 원

제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이익 보호 및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11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2조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13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4조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제9장 지방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제11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1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17조 도(직할시) 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0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반수이상 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2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22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제12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 기관이다.

제12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제12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집행기관이다.

제129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30조 지방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이익보호 및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33조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4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3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쫓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37조 재판소는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3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4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4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4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4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중앙인민위원회 명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범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4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4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제1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닳아 울려잡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 별이 있다.

제14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등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는 1 : 2이다.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

(1977. 4. 29)

제 1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전체 농민들이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의 현명한 령도밑에 <밭갈이하는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에서 실시한 위대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어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 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영원히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

국가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룩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전국적 농업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에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선열들의 붉은 피가 스며 있으며 외래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 있다.

국가는 산란의 온갖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4 조 국가는 토지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 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 발전시키며 국토를 보호개발하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 5 조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 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 있게 조직 진행한다.

제 6 조 국가는 우리나라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토를 개발하고 농촌을 기계화, 현대화하며 특히 토지를 개량하며, 그 리용율을 높이기 위한 과학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전망성 있게 양성한다.

제 7 조 국가는 토지를 리용하는 데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륝수토지로 가르고 관리한다.

토지 관리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자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 및 행정위원회의 지도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 8 조 토지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 밑천이며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들과 농업 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토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알뜰히 다루도록 한다.

제2장 토지 소유권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제10조 국가 소유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협동단체 소유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국가는 협동단체 소유토지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2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관리제도의 발전과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 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법으로 리용할 수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발 리용은 협동농장 규약에 의하여 20~30명으로 한다.

제3장 국토 건설 총계획

제14조 국토건설 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 리용하고 정리 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건설 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한다.

제15조 국토건설 총계획을 세우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도록 한다.
2.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 형태로 많이 건설하도록 한다.
3. 나라의 자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나라의 인민경제 발전방향과 자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 전망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한다.

제16조 국토건설 총계획의 전망기간을 30~50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망기간을 이보다 짧게 정할 수도 있다.

제17조 국토건설 총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
2. 토지를 정리 개량하고 보호하며, 새땅을 얻어 내며 간석지를 개간 이용하기 위한 방향과 대책
3. 산림조성 방향과 보호 및 그 리용과 리로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강하천, 호소, 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 방향,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의 배치 및 물의 종합적 리용 대책
5.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과 그 시설물의 합리적 배치
6. 지하자원의 개발구역과 공업, 농업, 기업소들을 배치할 위치와 규모
7. 도시와 마을, 휴양지, 요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유적물의 보호대책
8. 연안, 령해를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9.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

제18조 전국 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지역 국토건설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4장 토지보호

제19조 국가는 강하천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토지유실을 막으며, 나라의 물질적 부를 늘리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리용기관은 국토건설 총계획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강하천 정리사업은 큰물 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강하천건설을 해당 지대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특성에 맞게 관계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큰 강과 중소 하천 정리를 다같이 밀고 나간다.

제21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강하천 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큰 강과 중요 강 하천의 정리와 관리는 국토관리기관이 하며, 중소 하천의 정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강하천 정리는 큰물 피해가 심한 중요산업지구, 주민지구, 농경지보호 면적이 많은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해마다 국가가 정한 시기에 담당하고 있는 강하천의 변동정형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 등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제를 세우고, 강하천 보수관리

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강하천과 조방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점검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무더기 비에도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바닥파괴와 강줄기 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 연제공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강하천의 제방과 그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조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에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내려 보내거나 오물을 버릴 수 없다.

제27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관 및 지방행정기관은 강하천의 종합적인 리용계획을 세우고 물을 관개용수, 수력발전, 공업용수, 음료수, 강하운수, 담수양어, 류벌 등 인민경제부문과 근로자들의 문화 휴식에 다방면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논밭이 물에 잠길 수 있는 지대에 고인물빼기 시설을 완비하며, 그에 대한 유지 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영 및 협동농장은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기슭의 논밭머리에 버들을 심거나 돌담을 쌓으며, 산 경사지의 밭머리에는 돌림물질을 만들어야 한다.

제30조 산림건설사업은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며, 나라의 부강 발전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 개조사업이다.

국가는 토지류실을 방지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기 위한 산림건설사업을 전망성 있게 조직 진행한다.

제31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 조건에 맞게 제지림, 기름나무림, 섬유원료림, 산과실림, 뿔나무림 등을 조성하여 립상을 개조하며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수종을 배치하고 밀식하며, 침엽수 및 활엽수의 혼성림을 만드는 등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한다.

제32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조직진행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의 담당구역을 설정한다.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 및 공민들은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여 산림을 잘 보호 관리하여 온 나라의 산을 푸른 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목재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목재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산공업림과 기관, 기업소의 자체림을 설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여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잘 관리하여 튼튼한 목재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농촌 주변의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며, 산림자원과 뿔나무에 대한 협동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농장림과 뿔나무림을 설정한다. 협동농장은 여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관리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리용한다.

제35조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 전망계획에 맞게 양묘장을 꾸리며 나무모 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양묘장에는 인민경제적 의의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제36조 산림은 인민경제 발전을 인민생활 향상의 요구에 맞게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산에서 나무를 벨 때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먹은 나무, 다자란 나무, 여러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야 하며, 통나무와 순환시 채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무를 벨 구역과 끌어내린 길에는 나무를 제때에 심어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림을 정한다.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연보호림구를 정할 수 있다.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 안에서는 나무를 벨 수 없다.

제38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불에 대한 감시사업을 강화하여 필요한 곳에 산불막이선을 치거나 인원과 설비의 동원체제를 세우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국토관리기관은 송충이를 비롯한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때에 소독하며,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을 보호 증식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4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촌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며 사방야계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 개발에서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의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럭처리장과 미광침전지를 먼저 건설하여야 하며, 농경지 또는 건물과 시설물 밑에서 지하자원을 캐 때에는 땅이 내려 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탄광, 광산들에서는 버럭과 박토를 버린 자리와 지하자원을 캐 자리를 제때에 정리하여 농경지 또는 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 건설

제43조 국가는 토지건설사업을 전망성 있게 조직 진행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고 농업생산을 높이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한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건설사업을 국토건설 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수리화의 역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국가는 논수리화체계를 공고 발전시키면서 발판체계를 완성한다.

제45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국토 건설총계획에 따라 저수지를 건설하고, 저수지제방을 더욱 보강 완비하며 지하수를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으로 더 많은 물을 확보하며, 관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토지정리사업은 새 땅을 많이 얻어내어 알곡생산을 늘이며, 농촌정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 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사업을 년차별 토지정리계획과 토지정리설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산기슭으로 규모있게 옮기며, 필요없는 논두렁과 밭회푹을 없애고 논밭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여기에 맞게 관수로, 배수로, 모전도로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8조 논밭을 기름지게 개량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군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비옥도 및 매 토층에 대한 분석사업과 토양조사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필지별 토층 표본과 토양분석표, 토지대장을 갖추고 과학적 리치에 맞게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협동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탈진 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여기에 반드시 관수체계와 배수체계를 세워야 하며, 집나르기를 적극 기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새로운 경지면적을 늘이며, 나라의 면모를 크게 전변시키는 간석지개간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지리적 조건이 좋고 개간이 유리한 지대의 간석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야 한다.

개간된 간석지에는 시루식 관수체계, 화학적 방법 등을 적극 도입하여 불갈아 넣기를 하여 소금기를 빨리 없애고 농작물을 심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물에 의하여 농경지와 소금밭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지대의 특성에 맞게 해안 방조제를 건설하며, 그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준다.

지방행정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 생활문화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마을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

치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방면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53조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문화 휴식터를 곳곳에 잘 꾸리며,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훌륭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마을과 그 주변에 과일나무, 기름나무 등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54조 지방행정위원회는 도시와 마을을 어지럽히거나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이 완공되거나 건설 재료의 채취가 끝나는 데 따라 파헤친 자리를 알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도로는 인민경제 동맥의 중요 구성부분이며,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연계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6조 도로는 그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 도로와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나눈다. 도로의 건설과 보호관리는 도로의 등급과 사명에 따라 국가관리기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제57조 나라의 모든 도로는 세멘트, 아스팔트, 돌 등으로 포장하여 로면의 강도를 높이고, 전반적 도로의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도로의 문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8조 도로관리기관은 도로 양옆에 주의표식, 지시표식, 금지표식, 거리표식 등 여러가지 표식물을 문화성 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길가에 생활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며 쓸모 있는 나무와 과일나무 등을 심으며, 잔디를 입히고 꽃밭 문화 휴식터를 꾸려 길을 항상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제59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도시경영기관은 계절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교통량의 변화상태를 정확히 조사 장악하여, 도로와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일정한 구간의 길을 정해 주어 책임적으로 늘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도로와 그 구조물 및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길가의 나무를 마음대로 찍는 등 도로 보호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제61조 국가는 연안, 령해를 개발하고 정리하며, 항만을 새로 건설하고 확장하며, 수로를 개척하는 등 연안, 령해 건설을 추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수상 운수를 발전시킨다.

연안 령해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 총계획에 따라 연안, 령해 건설을 전망성 있게 조직 진행하며, 연안, 령해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

며, 바다 기슭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62조 연안 경해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안, 령해의 수산자원을 보호 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토 지 관 리

제63조 토지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농업토지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토지를 리용하는 협동농장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4조 농업토지에는 오지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속한다.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65조 논밭은 허가 없이 묵이거나 버릴 수 없으며, 논밭을 묵이거나 버리며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동의 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항의 경우에 대토 확보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할 수 있다.

제66조 논밭을 농업생산 밖의 목적에 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해에 쓸수 있는 면적을 타산하여 토지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밭을 농업생산 밖의 목적에 리용하던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토지를 더 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파종시기 전까지 논밭으로 정리하여 해당 농장에 넘겨 주어야 한다.

제67조 기관, 기업소, 단지가 논밭을 부업지로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지목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협동농장은 논밭을 경작에 편리하게 서로 바꾸어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급 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주민지구토지에는 시, 읍, 로동지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리용지와 농촌건설대지가 속한다.

주민지구 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가 한다.

주민지구 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행정위원회 또는 정무원의 토지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산림토지에는 산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산야와 그 안에 있는 여러가지 리용지가 속한다.

산림토지의 관리는 국토관리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무원 또는 해당국토관리기관의 토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

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국토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속에서 산림을 남벌하거나 화전을 일구는 일이 없도록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72조 산업토지에는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그 부속지가 속한다.

산업토지의 관리는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73조 산업토지를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와 산업시설물의 부지를 필요 이상 넓게 잡아놓고 토지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산업토지의 보호관리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4조 수역 토지에는 연안, 령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 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가 속한다.

수역 토지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수역토지를 개발 이용하거나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대상에 따라 정무원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특수 토지에는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 문화 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 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이용되는 토지가 속한다.

특수 토지의 관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 부대가 한다.

제76조 토지 이용을 허가하여준 기관은 새로운 국가적 요구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 국토관리기관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하며, 토지관리 및 이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토지를 국토건설총계획에 의하여 전망성 있게 이용하도록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농업지도기관은 새로 일군 땅과 토지를 정리하여 얻은 땅을 제때에 등록하며, 토지를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변동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79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토지 문건을 갖추고, 그것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전체 인민들과 농업 근로자들, 국가기관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전체 인민들과 농업 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꾼들은 토지를 보호하고 건설하여 관리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토지 보호 건설 및 관리 질서를 어긴 경우, 책임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

(1978. 4. 18)

제 1 장 사회주의 노동의 기본 원칙

제 1 조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

제 2 조 노동은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천이며, 자연의 사회화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 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된다.

제 3 조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노동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

제 4 조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노동력 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 노동에 참가한다.

제 5 조 사회주의하에 모든 근로자들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의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제 6 조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을 기초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제 7 조 노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노동이 즐거운 것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상 요구로 되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점차 줄여 나간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

제 8 조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 9 조 노동생산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 요구이다.

국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고 천리마운동을 심화 발전시키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 노동생산 능력의 높은 성장과 생산의 빠른 발전을 보장한다.

제 10 조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전일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분화 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 모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한다.

제 11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노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는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노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인다.

제 12 조 노동과 휴식을 옹계 결합하며, 근로자들의 노동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노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제 13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적 노동정책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제시된 혁명적인 노동강령을 구현하며,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노동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적 범위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노동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2 장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제 14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들이다.

노동을 사랑하고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국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공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보람찬 노동에 자원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노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

제16조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제17조 근로자들은 노동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주인답게 일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회주의 노동규율은 자각적 규율이며, 사회주의 노동규율을 철저히 지키는 근로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제19조 기술혁명을 힘차게 벌리는 것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본분이다.

근로자들은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단위시간 안에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제20조 근로자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발휘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어 맞겨진 계획 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근로자들은 알뜰한 일본새로 일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 조작법을 정확히 지켜 생산물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22조 근로자들은 자기가 맡은 기대와 설비를 노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설비 리용율을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로자들은 자기의 일터를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며, 경각성 있게 지키며, 노동보호법규를 엄격히 지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지위는 노동의 성실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동에서 모범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

노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노력적 위훈을 세운 근로자들은 노력영웅칭호의 명예칭호를 비롯한 국가적 표창을 받는다.

제 3 장 사회주의 노동조직

제25조 사회적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나라의 로력자원을 남김 없이 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의와 재능을 적극 발양시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모든 로력자원을 통일적으로 동원 리용한다.

제26조 국가는 사회적 노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공장,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노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노동조직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노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

제27조 노동계획화는 노동조직을 바로 하며,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가는 나라의 로력원천과 수요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린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노동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제28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기본 생산부문과 보조 생산부문 사이에 로력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노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생산부문 로력자 수의 우선적 증대를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 로력자 수를 규정하는 원칙에서 로력을 배치하며, 직접부문 로력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29조 국가는 나라의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로력후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인민경제의 로력수요를 계획적으로 충족시킨다.

각급 경제기관과 노동행정기관은 국가의 경제정책의 요구에 맞게 로력보충 조절계획을 세워 인민경제 발전계획에 예견된 로력수요를 제때에 보장하며, 인민경제부문들과 지역들에 로력을 정확히 조절 배치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여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장,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생산공정의 특성, 기술장비수준, 작업조건 등에 맞게 노동조직을 바로 하며, 로력관리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노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로력낭비를 없애고 근로자들이 480분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노동과 휴식의 학습을 옹계 배합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국가기관, 기업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을 때에는 제때에 다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생산적 작업에 대한 임시 지원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는다고 하여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제적할 수 없다.

제35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로력을 마음대로 다른 일에 동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장, 기업소의 생산로력은 국가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동원할 수 없다.

농번기에는 그 누구도 농사와 관련이 없는 일에 농장원들을 동원할 수 없다.

제36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관리 일꾼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 생산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 4 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제37조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이며, 로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고 생산력 발전을 다그치는 힘 있는 수단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 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근로자들은 성별, 연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

제38조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 등급제를 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 등급제와 생활비 지불원칙에 입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제39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의 기본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며, 생활비의 추가적 형태는 가급제와 상급제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며, 그들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킬 수 있도록 생활비지불형태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의 현물지표별 생산계획과 원가 계획실행을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들에게 생활비 자금을 분배한다.

공장, 기업소는 생산계획 실행정형, 제품의 질, 설비, 자체의 리용정리 등을 바로 평가하여 일을 잘한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1조 로동정량은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로동정량 사업에서 균중토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기술기능 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등을 정확히 타산한 데 기초하여 로동정량을 제정하는 원칙을 관철한다.

제42조 국가는 인민경제 부문별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가 정규화, 규범화되고 생산이 정상화된 표준공장을 꾸리고, 거기서 측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가표준로동정량을 제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국가 표준로동정량을 자료 하여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로동정량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적용하며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

제43조 로력일은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결과를 평가하고 분배몹을 규정하는 척도이다.

협동농장은 로력일 평가를 정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로력일에 따르는 분배를 바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분조관리제와 작업반 우대제는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며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분조관리제와 작업반 우대제를 실시하여 로력일 평가사업을 정확히 하며, 추가적 로력보수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농업과 농업의 발전, 노동생산 능력의 제고에 기초하여 모든 부문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각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입을 높르게 높이며, 전반적으로 노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 5 장 노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향상

제46조 노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기술혁명의 중심과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며, 그들에게 노동생활에서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7조 국가는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고열로동과 유탄로동을 없앤다.

제48조 국가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화학화와 종합적 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앤다.

제49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은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창의 고안, 합리화운동을 적극 장려하며 창의 고안과 합리화안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인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발명가 및 창의 고안자, 생산혁신자에게 국가적 배려를 돌리며 기술 자격을 준다.

제50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함께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공장 고등전문학교, 농장고등전문학교 야간 및 통신 교육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최신 과학기술을 체득하고 현대적 기계설비를 잘 다루며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키운다.

제5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기술기능 학습체제와 기능 전승체제를

바로세워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현대기술을 소유하고 자기가 다루는 기계설비와 자기 부문 기술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향상을 위하여 기사급수, 기능등급판정시험제를 실시한다.

국가 과학기술기관과 노동행정기관 기사급수, 기능등급 판정시험을 정기적으로 조직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로 동 보 호

제53조 노동보호사업을 잘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며,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노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한다.

제54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노동안전 교양사업체제를 세우고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정책과 노동안전 기술지식을 체득시켜 노동보호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정책과 해당 부문의 노동안전 기술지식을 체득시키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들을 일 시킬 수 없다.

제55조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들의 첫째가는 사업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노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등을 잘 보장하는 산업위생 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여 노동재해와 직업성 질환을 미리 막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 및 작업 조직에 앞서 노동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개소들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생산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위험한 개소를 정비한 다음에 생산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57조 건설 및 설계 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의 건설과 기계설비의 제작에서 근로자들의 노동보호 조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신설, 확장, 보수한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과 새로 제작한 기계설비는 해당 검열, 감독 기관의 준공 검사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조업하거나 돌릴 수 없다.

제58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제59조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의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여성들에게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아기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야간 노동을 시킬 수 없다.

제60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 연구를 보장하여 주며,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근로자들은 작업할 때 지정된 노동보호 용구와 작업필수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노동보호 물자를 극력 아껴 써야 한다.

제6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생산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표준조작법과 노동보호규정을 만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 증진에 엄중한 후과를 끼치는 현상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제 7 장 노동과 휴식

제62조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8시간 노동제, 유급 휴가제, 국가 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려가지 문화시설 등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호한다.

제63조 근로자들은 하루 노동시간이 끝나면 휴식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의 노동을 시킬 수 없다.

제64조 근로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 날로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근로자들을 노동시킨 경우에는 한 주일 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제65조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제66조 여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 휴가 외에 근속 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 휴가를 받는다.

제67조 국가는 정양소, 휴양소당을 여러가지 형태로 늘이고 그 시설을 현대화하며, 관광, 탐승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문화적 휴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직장 정양소를 잘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충분히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제68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

제69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쓸모 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협동농장원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70조 국가는 노동자, 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낮은 값으로 식량을 공급한다.

제71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72조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 자녀들에게 의무교육을 주며, 그들을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에게 무료로 공부시킨다.

모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생복과 교과서를 낮은 값으로 공급받으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다.

제73조 국가는 로동장애, 질병, 부상으로 로동 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 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 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 년금을 준다.

제74조 국가는 남자 만 60살, 여자 만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 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

제75조 국가는 로동과 사회 정치활동에서 공헌을 세운 국가 근로자들이 로동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

제76조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는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 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 로력일을 주며, 산전·산후 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 또는 평균로력일을 준다.

제77조 국가는 로동장애,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 년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

제78조 국가는 로동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 준다.

제79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 혜택을 준다.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료양에방, 해산 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

(1976. 4. 29)

제 1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제 2 조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교육학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 3 조 어린이들이 비록 탁아소에 갈 나이라 하더라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것은 그들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법이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력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

제 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이 배려는 우리 나라에 세워진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사회주의적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증대된다.

제 8 조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보육원, 교양원들과 양육기관부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의 균중보신을 관철한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

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10조 이 법에서 어린이라 함은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 2 장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제11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찰한다.

제12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들은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제13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훌륭한 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 꾸려준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등을 갖춘다.

제14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거리와 마을, 어린이들이 있는 곳곳에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여러가지 놀이 시설을 갖추어 준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어린이들은 태어나서 부터 식량을 공급받는다.

제16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젓, 고기, 알, 과일, 남새 등과 당과류를 비롯한 여러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보장한다.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제17조 국가는 어린이 옷, 신발과 여러가지 어린이용품들 제일 좋게 만들며 그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값을 정하고 그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18조 국가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없는 어린이들을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키운다.

제19조 국가는 혁명렬사, 애국렬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그들의 보육교양에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20조 국가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은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한다. 산전산후휴가 기간의 로임과 식량, 분배액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산원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모든여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그에 맞는 혈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

계는 로동시간안에 짓먹이는 시간을 보장한다.

국가는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시간을 줄이고 옹근로임을 준다.

제21조 국가는 한꺼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한꺼번에 둘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준다.

삼태자에게는 옷과 포단, 1년분의 젖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본다.

제 3 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 보육

제22조 나라의 꽃봉오리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게 키우는 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3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피며 집단 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키운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고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한다.

어린이들을 위생적으로 거두어 주고 공기, 햇빛, 물과 의료기구, 체육기구에 의한 몸 단련을 나이와 체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켜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24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영양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인다.

제25조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준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의료봉사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에 따라 무료로 한다.

탁아소, 유치원마다 의료일군들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공급하며 전문의료기관들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병을 제때에 예방치료한다.

제26조 국가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가 있는 모든 곳에 아동병동을 둔다.

아동병동에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앓는 탁아소의 어린이들을 받아 치료한다.

제27조 국가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들에 어린이들을 위한 로양시설들을 잘꾸려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28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상태를 종합분석하고 해당하는 대책을 세우며 어린이 보육사업을 과학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제 4 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제29조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 것은 조국의 통성발전과 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육교양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

제30조 국가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휘황한 공산주의 미래를 사랑하도록 교양한다.

제31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한다.

제32조 국가기관과 보육기관들은 어린이들이 일하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일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한다.

제33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이 나라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한다.

제34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이 레질바른 품성을 가지며 문화위생적으로 생활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한다.

제35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을 키워주며 그들의 지능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킨다.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고 노래와 춤, 악기타는 법을 배워주며 놀이를 다양하게 조직한다.

제36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의 높은 반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준다.

국가는 학교전의무교육기간에 어린이들에게 혁명적인 조직생활기풍을 키워주며 문화어, 글자쓰는 법, 셈세는 법 등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준다.

제37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하도록 한다.

제 5 장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혁명가인 보육원, 교양원

제38조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체형의 새세대로 키우는 영예로운 혁명가이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키우는 중요하고 보람찬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보육원, 교양원들은 인민의 높은 존경과 신임을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인들이 보육원, 교양원들을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어 그들이 어린이를 잘 키우고 가르치는데 모든 정력을 다바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린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 교양법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공로가 있는 양육기관 복무자들에게 명예칭호를 비롯한 배려를 돌린다.

제39조 보육원, 교양원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긍지를 가지고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어린이양육사업에 자기의 온갖 정열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부, 진정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제40조 보육원, 교양원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제41조 보육원, 교양원을 비롯한 양육기관의 모든 일꾼들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정통하며 해당한 국가적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42조 보육원, 교양원은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어린이들의 참다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제43조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명랑하고 품성이 바른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워야 한다.

제 6 장 어린이 보육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자라나는 세세대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양육기관이다.

제45조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는 탁아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이 속한다.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전 시기의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유치원은 만 4살~만 5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기관의 하나이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제46조 국가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주택지구와 여성들의 일터가까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국가는 여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주, 월 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은 곳과 건물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두는 것을 금지한다.

제47조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지도와 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지도는 중앙의 교육 및 보건행정기관과 지방정권기관들을 통하여 실현한다.

제48조 중앙의 교육 및 보건행정기관들은 어린이보육교양에 대한 전반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1. 어린이보육교양강령과 탁아소, 유치원 사업규범을 만들며 보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완성한다.
2.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 한다.
3. 보육원, 교양원 양성과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4. 탁아소, 유치원을 운영하는 중앙기관에 대한 기술방법적인 지도를 한다.

제49조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안의 탁아소와 유치원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1.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도록 지도한다.
2.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의료봉사를 주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 한다.
3. 탁아소, 유치원을 건설하고 보육교양설비를 갖추며 식료품을 비롯한 물질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 한다.

제50조 국가는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실정을 료해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정치사업을 알세우고 이신착적의 모범으로 걸린문제를 풀어주도록 지도한다.

제51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 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어린이관리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보육교양일군양성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보육원, 교양원들을 수요에 맞게 질적으로 양성한다.

제53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국가는 문예기관들에서 어린이 교육교양을 위한 영화, 노래, 춤, 동시, 동화등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많이 만들도록 지도한다.

제54조 국가는 어린이용품과 식료품의 생산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어린이용품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에게 어린이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그 질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국가는 중앙과지방에 탁아소, 유치원 물자공급기관을 둔다.

탁아소, 유치원 물자공급기관은 어린이용품, 식료품 등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물자를 책임적으로 내리공급하여야 한다.

제56조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조건을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닭, 염소, 젖소등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과일과 남새를 잘 저장하여 농장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식료품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57조 육아원과 애육원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사업도 이 법에 따른다.

제58조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9. 5)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야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모든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어느 시대,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도 민족적번영도 이룩할 수 없다. 교육문제는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신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날부터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옳은 교육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교육사업에 전담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왔다.

우리 당의 올바른 교육정책과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수립되었으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어 모든 세세대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마음껏 공부하고 있으며, 100만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나 국가, 경제, 문화기관들을 훌륭히 관리 운영하고 있다. 현대문명에서 밀리 뒤떨어져있던 우리 근로자들이 모두다 중학교졸업정도 이상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다. 지난날 무지와 몽매가 지배하던 이 땅우에 사회주의적문명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중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전면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 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다그치고 기술혁명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1.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사람은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때에만 자주적으로 창조적인 사회적존재가 될 수 있다. 사람의 자주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타고난 사상과 지식이란 없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 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운다.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복무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이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적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모이며 자질이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겸비하여야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요구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기본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의식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오랫동안 남아 있으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된다.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을 수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습을 막아낼 수 없다.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온갖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 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는데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조절한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적인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을 키우는데서 기본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공산주의적인간의 품모를 갖출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 수 있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공부도 잘하고 배운 지식을 혁명과 건설에 더 잘 써먹을 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를 배워도 쓸모 있는 지식을 배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칠수 있다. 공산주의혁명사상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마땅히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상혁명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상교양에 기본을 두어야 하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교육 조건과 수단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복종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적인간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과학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인간의 전면적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며 과학적세계관수립의 기초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활동은 과학지식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 한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대적기술로 무장시키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람들에게 인류가 이룩한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세계를 깊이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건강한 체력은 인간의 지적 및 물질적 활동의 육체적담보이다. 건강한 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람의 사상과 지식과 체력은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을 키우기 위한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통일적과정으로 다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계급사회에서의 교육은 언제나 계급적성격을 띤다. 사회주의교육은 그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이다.

당성, 로동계급성은 사회주의교육의 제일생명이며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만이 사람들을 당과 혁명에 충직한 혁명인재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키울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직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이바지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교육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의 지도사상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교육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된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며 사회주의 교육의 발전방향을 가르쳐준다. 사회주의 교육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의 의도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사업전반을 당의 로선과 정책이 기초하여 조직진행하여야 하며 교수를 당정책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은 당의 지도밑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당의 명도를 떠나서는 교육사업에서 당의 의도와 정책적 요구를 관철할 수 없다. 당의 명도를 강화하여 교육사업에서 《자유주의》와 무규율성을 없애고 모든 교수교양사업을 당의 방침대로 진행하는 혁명적규율을 세워야 한다.

교육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들을 당에 끝없는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데 있다. 사회주의 교육의 모든 공간들은 사람들을 당에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복무하여야 하며 교육사업의 전과정은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교육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교육분야에 비당적인 사상요소와 불건전한 경향이 침습하지 못하게 하며 그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로동계급적 선을 세워야 한다.

교육에서 로동계급적 선을 배운다는 것은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계선을 명확히 가르고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과 요구를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이 계속된다. 만일 교육사업에서 로동계급적 선을 똑똑히 세우지 못하고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계선이 모호한 범벅교육을 한다면 사람들은 범벅사람으로 되고 사회는 범벅사회로 될 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교육사업에서 언제나 계급적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튼튼히 지키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로동계급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교육에서 로동계급의 리익과 요구를 옹호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온갖 비로동계급적 요소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봉건주의, 자본주의 잔재를 철저히 극복함으로써 사회주의 교육을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과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분야에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퍼뜨리는 반동적인 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르조야사상과 퇴폐적인 생활풍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특히 부르조아교육리론이 스며 들지 못하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교육의 당성, 노동계급성을 부인하고 교육의 무사상성과 《자유화》를 설교하는 수정주의교육리론을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적사상조류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교육의 당성, 노동계급성을 고수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순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매개 나라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다. 나라마다 처하여 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르며 혁명임무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교수교양사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인민의 리익에 맞게 진행하며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 키우는 주체적인 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교육사업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은 구체적환경에서 살며 활동하는 산인간을 키우는 창조적사업이다. 모든 나라의 구체적 환경과 조건에 다 들어맞는 교육 리론이나 경험은 있을수 없다. 우리는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현실과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사람들이 자기의 것에 정통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하며 우리나라 혁명과 건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면 조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조선혁명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우리의 교육에서는 사람들을 우리 당의 정책과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지리에 대하여 잘 알려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 나라와 우리 혁명에 대하여 잘 알아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용케 풀어나갈수 있으며 우리 당의 영도밑에 조선에서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수 있다.

교육에서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주체적 립장에서 우리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선진적인 과학기술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혁명과 건설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도리어 나쁜 후과를 끼칠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것을 더잘 알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교육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가 허용되면 온갖 기회주의적이며 반동적인 교육리론과 사상조류가 들어올수 있으며 교육사업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발전시킬수 없다. 우리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을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로,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교육은 실천의 요구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실천을 위하여 복무한다. 실천과 결합된 교육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노동계급의 혁명실천과 결합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이 노동계급의 혁명실천과 결합되어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이바지할 수 있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하는 것은 사람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실천은 인식의 출발점이며 진리의 기준이며 리론발전의 추동력이다. 혁명실천은 사람들에게 실천능력을 키워주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킨다. 사람은 세계에대한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된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하나를 가르쳐도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가르칠수 있으며 사람들을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울수 있다. 우리 사회에 혁명실천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 리론을 위한 리론, 지식을 위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반 원리와 리론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가르치며 모든 리론과 지식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푸는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을 현실에 끊임없이 접근시켜야 한다. 교육사업에 우리 나라의 들끓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넷째로, 사회주의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주의국가의 사상문화교양의 무기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통하여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육성하는 사업을 다그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사람과의 사업이다. 인간개조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다른 사업에 앞세우는 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조직진행하는데서 언제나 교육사업을 첫차리에 놓아야 하며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교육을 잘하여 다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교양하는 원칙에서 교육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인 교육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교양하여 그들을 모두다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사회적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 요구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하여야 사람들 사이의 사상, 기술, 문화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온 사회를 모동계급화, 혁명화, 인텔리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질적인 교육제도와 합리적인 교육체계를 세우고 후배교육사업과 성인교육사업,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이 국가와 사회의 소유로 되어있고 교육기관을 국가가 지도하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책임적인 보장에 의해서만 교육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원을 양성하고 학교를 세우며 교육시설을 꾸리고 교재와 교구비품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하여 교육사업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교육의 내용

교육내용은 교육의 성격과 질을 특징짓는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사람들을 혁명화 모동계급화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울수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혁명성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과학성과 현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정치사상교양

정치사상교양은 사회주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 사상교양을 잘 하여야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 인간의 사상도덕적품모를 갖춘 혁명 인재로 키울 수 있다. 또한 정치사상교양을 잘하는 기초우에서만 과학기술교육과 체육 교육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치사상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학생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인재로 될 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하며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어 모든 학생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뚜렷히 깨닫고 당정책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하는데 필요한 사상적 내용을 풍부히 담고 있으며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부리를 뚜렷히 알게하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주체의 사상체계,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은 당에대한 충실성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사상교양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로동계급의 혁명 의식과 공산주의도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는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고상한 정신적풍모이다.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 공산주의 앞날의 전망을 뚜렷히 알려주어 그들이 공산주의의 승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과 계속 혁명의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이며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로동계급의 입장에 튼튼히 서서 로동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혁명의 원수들을 미워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적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수 없으며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다. 학생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는 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계급적 원수들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이다.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로동을 사랑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모든 학생들이 로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즐겨하고 로동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주의는 로동계급의 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모든 학생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주의조국의 융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자기의 책상과 결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귀중히 여기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간지게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그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역세계 싸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적 준법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생활규범이다. 모든 학생들이 국가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학생들이 공산주의도덕과 사회주의생활양식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남은 도덕관념과 생활인습을 철저히 없애고 공산주의적 도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혁명적으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은 그들의 성장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그러므로 정치사상교양은 낮은 나이로부터 높은 나이로, 낮은 교육단계로부터 높은 교육단계로 올라가면서 점차 심화시켜야 한다. 유치원교육에서 어린이들에게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을 주고 정치사상의식을 싹틔워주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성장하고 교육단계가 높아지는데 따라 점차 사회현상의 본질과 원리를 깊이 인식시키도록 사상교양을 심화시키며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

2) 과학기술교육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인류가 달성한 선진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다.

과학기술교육에서는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먼저 일반지식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일반지식은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누구나 다 알아야 할 필수적 지식이다. 학

교에서 일반지식교육을 잘하여야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며 전문분야의 현대 과학과 기술을 체득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을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학생들에 대한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교육은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체계를 통하여 실시된다.

일반지식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기초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초등교육과 중등일반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사물현상의 일반적 개념과 본질, 그 변화발전법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며 특히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을 가르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또한 기초기술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에게 생산과 기술의 기초원리와 전기, 기계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기초기술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중등일반교육단계에서 모든학생들이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현대적 생산과 결부된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 기술교육을 소홀히 하고 일반기초지식을 주는데만 치우침으로써 학생들을 생산실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도 안되며 일반기초지식교육을 소홀히하고 기술교육을 지나치게 내세움으로써 중등일반교육을 직업교육화하여도 안된다. 중등일반교육에서는 반드시 일반 기초지식을 충분히 주면서 거기에 기초기술교육을 옹기 배합하여야 한다.

일반교육단계에서 예능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들에서 예능과목들의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문학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다룰수 있는 예술적기량과 풍부한 미학적 정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지식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전문지식교육은 완성된 중등일반지식을 준 기초우에서 고등교육단계에서 주어야 한다 전문지식교육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로 키울수 있으며 온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자연과학분야의 전문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연과학의 기초원리와 이론, 자연과학분야에서 이룩한 최신행과들을 깊이 체득시키며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사회과학분야의 전문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과 계급투쟁에 관한 이론, 혁명의 전략전술에 관한 이론을 깊이 체득시키며 우리 당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이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석선전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옹기 해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전문기술교육에서는 현대적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에게 현대 생산의 기술의 공학적 원리를 깊이있게 가르치며 일정한 분야의 전문기술지식을 체득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자동차설비를 비롯한 현대적 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기능을 키워주어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한다.

과학기술교육의 내용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끊임 없이 보충하고 풍부히 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은 철저히 당정책화하여야 한다. 모든 과목의 교수내용을 당정책으로 일관시키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부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를 배워도 우리 혁명에 철실히 필요한 것을 배우며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혁명실천에 능숙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체육 교육

체육교육의 사명은 청소년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그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있다.

청소년들의 튼튼한 체력은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 건설의 기초이다. 체육교육을 잘 하여 청소년의 체력을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으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 수 있다.

체육교육은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시킬뿐 아니라 그들의 사상의지를 단련하며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용감성과 대담성, 강의한 투지와 인내성을 키우며 체육기교와 문화적소양을 높인다.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체육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특히 신체발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초등학교들과 중등학교들에서 체육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교체육교육의 중심은 학생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체육교육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민족적 체질의 특성, 청소년학생들의 성별, 나이, 인체생리학적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학생들의 키를 크게 하고 골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체육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며 국방체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 광범한 학생들을 망라하는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과외체육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 업간체조, 집단달리기, 집단체조,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널리하고 여러가지 체육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학생들이 체력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사회주의교육의 방법

사회주의교육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할 때에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교육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깨우쳐주는 교수 교양

학교교육의 기본형태는 교수이며 교수의 기본방법은 깨우쳐주는 교수이다. 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정확히 소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사회주의교육의 본성과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교수방법이다.

사회주의교육은 그 본성으로부터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는 교수방법을 요구한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학생들 자신이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교수내용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자립과 창발성을 적극 조장발전시킨다.

인식의 주체는 사람들 자신이다. 사람은 자체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서만 사물현상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학생들의 사유활동을 추동하여 그들의 사물현상의 본질을 쉽게 파악하고 깨닫도록 한다.

우리의 학교들에서는 반드시 모든 과목의 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깨우쳐주는 교수에서는 학생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며 교수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 순차성을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학생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을 옹계 적용하여야 한다.

깨우쳐주는 교수수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 담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잘하는 것이다. 설명은 생동하고 설득력있고 논리정연하게 하여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사고를 적극 계발시키기 위하여서는 토론과 논쟁을 널리하며 특히 문답식방법을 옹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답식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으로서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증명되었다. 문답식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키기 위한 담보로 된다.

직관교육 실물교육은 학생들에게 사물 현상과 과학적 원리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고 그들의 능동적 사고를 계발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학교들에서는 학과목의 특성에 맞게 교수내용을 직관화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현대적인 직관수단들을 널리 리용하여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은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사상은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공감할 때 비로소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교양은 강압적 방법이나 들이먹이는 방법으로가아니라 반드시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선진사상을 스스로 깨닫고 공감하게 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거나 뒤떨어진 사람에 대하여서도 잘 타일러 그가 자기의 결함과 부족점을 스스로 뉘우치고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과 설복은 매개 학생들의 구체적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그리고 꾸준하고, 참을성 있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것은 사상교양의 기본방법의 하나이다.

긍정적 모범은 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 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며 생활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가르쳐준다. 따라서 긍정적모범은 사람들속에서 부정을 이겨내고 새것, 진보적인 것을 조장발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청소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본따기 좋아한다. 그러므로 긍정적 모범은 청소년학생들 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일으키며 널리 일반화될 수 있다.

항일혁명선열들의 영웅적투쟁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참된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구감이다. 학교들에서는 항일혁명선열들의 빛나는 모범으로 학생들을 감화시켜 교양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학생들속에서 창조되는 모범은 그들의 실생활과 직접 잇닿아있는 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학생들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 모범을 제때에 찾아내고 널리 일반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학습과 생활에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조장발전시켜 부정적 측면을 스스로 이겨내도록 하여야 한다.

2)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의 결합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 것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이다. 책에서 배운 리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응용능력과 결부되어야 혁명실천에 써먹을 수 있는 산 지식으로 된다.

학교교육에서 강의와 실험실습을 옹계 결합하여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충분히 소화하며 그것을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특히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생산실습은 현대생산의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기계설비, 로동도구를 다루는 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하며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은 전문분야의 과학적원리와 현대적인 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데 중시를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숙련과 기량을 요구하는 학과목들에 대하여서는 연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연습은 과학적인 리론과 원리에 기초하여야 하며 체계성과 순차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현실속에서 생동하고 폭넓은 지식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사회문화교양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대한 견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과 생산로동을 옹계 결합하여야 한다.

사회적실천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 생산로동은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람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변화하며 자신의 사상의식과 풍모를 개조한다. 생산로동에서 유리되어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 것은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교

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생들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사상을 단련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본받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그 응용력을 키우며 현실에 대한 체험과 로동에 대한 숙련을 쌓는다.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데서 교육학적으로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교육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생산로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과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지나치게 많이 참가시키는 경향을 다같이 경계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생산로동은 교육교양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3)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청소년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며 그것을 교수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청소년학생들은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적교양을 받고 혁명적단련을 쌓으며 조직성과 규율성을 키운다. 높은 사상성과 강한 조직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는 오직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다.

학생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학생들이 조직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직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며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는 과정이다. 청소년학생들은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에 참가하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겨야 하며 조직의 규약상 의무와 위임분공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에서는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비판을 강화하여야 한다.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 조직생활만이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학생들속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며 특히 조직생활총화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학교 소년단, 사로청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학교 소년단, 사로청 조직은 학생들의 정치적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적으로보호자이며 그들의 친근한 교양자이다. 학교 소년단조직과 사로청조직들은 학생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학교 소년단, 사로청 조직들은 학생들의 나이와 준비정도, 심리적특성에 맞게 분공을 주고 그것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며 분공실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 다시 새로운 분공을 주어 모든 학생들이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정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활동이며 사회주의건설에 직접 이바지하는 혁명활동이다.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킴으로써 그들을 어려서부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줄 아는 참다운 사회의 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체계

인으로, 균형을 교양하고 조직동원 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워야 한다.

학생들로 당정책선전대, 과학선전대, 위생선전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대를두어 대중속에서 당정책도 해설하고 과학기술지식과 문화위생지식도 널리 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속에서 위생근위대, 녹화근위대 활동과 소년단립, 사료청림을 조성하는 운동, 사회주의건설지원 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 일하기 운동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대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들을 3대혁명조직운동에 적극 참가시키는 것이다. 대학생들을 3대혁명소조운동에 계획적으로 참가시켜 그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며 그 과정에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학생들은 학교에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것과 함께 사회관계속에서 생활하면서 교육교양을 받는다. 그러므로 후대교육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교육적 영향을 주는 모든 곳에서 학생들을 옳바로 교육교양하여야 하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의 중요한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근로자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 있고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후대교육에 대하여 학교와 사회가 공동된 지향과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것은 후대교육을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며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옹계 결합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의 결정적 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사회교육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교육은 학생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교육은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속에 과학기술지식과 문예술지식, 체육기술을 보급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사회교육을 잘하여 학교교육을 안받침하며 학교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보충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사회교양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사회교양시설들과 선전교양수단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도서관을 비롯한 사회교양시설들은 학생교양의 믿음직한 기지이다. 사회교양 시설들을 거점으로 하여 정치사상강연, 과학토론회발표모임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여러가지 소조활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학교와 사회교양기관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며 교원들과 사회교양기관일꾼들이 학생교육에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교원들과 사회교양기관 일꾼들은 학생교육문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토론하고 경험을 나누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에서 공동보조를 취하

여야 한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교육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정을 혁명화 하고 가정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 가정생활 자체가 학생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학부모들은 사회정치생활과 사회주의건설에 모범적으로 참가하여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고 예절바르게 행동함으로써 한마디한마디의 말과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 아들딸들에게 교양이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교육적영향은 매우 크다. 방송, 출판사, 영화의 내용을 혁명적인 것으로 일관시키며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 학생들이 사회에서 보고듣는 모든 것이 다 교육이 되고 교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생동안 교육하는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사람의 사상과 품격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며 일생동안 공고발전된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날을 따라 깊어지며 인류의 지식과 경험은 계속 풍부해진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 세계관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적 모든 성원들을 일생동안 끊임없이 교육하는 방도는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병진시키는 것이다.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은 사람들의 성장기에 따르는 순차적인 교육단계이며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교양의 연속적과정이다.

학교전 교육은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교양의 첫공정이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상이 형성되고 지적발전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어린 시절에 올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전 교육의 중심은 학교교육의 기초를 닦는데 두어야 한다. 유치원들에서는 혁명사상교양과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적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잘 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의 문화적소양을 높이고 몸을 튼튼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유치원교육은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직관물의 실물을 통한 수업, 노래와 춤, 놀이를 통한 교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잘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교육이다. 청소년시기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탐구력과 인식 능력이 왕성하고 육체적으로 팽리발육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세계관확립과 품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학교교육의 기본과업은 자라나는 모든 세세대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현대적과학기술을 가진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중등교육을 통하여서는 혁명적세계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의 골격이 서고 완성된 중등일반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며 고등교육을 통하여서는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키워야 한다.

성인교육은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다. 성인교육은 근로자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공고발전시키며 그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끊임 없이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할수 있으며 과학기술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학교 교육을 통하여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고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 교육하지 않으면 혁명적세계관을 공고발전시킬 수 없으며 현실발전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성과를 공고발전시켜야 하며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성인교육은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각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오늘 우리 나라 성인교육의 대상에는 지난날 정규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인교육체계를 통하여 중학교졸업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진 사람, 정규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성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지식수준이 각이한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성인교육 체계를 내 오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교육교양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간부들을 여러가지 교육체계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재교육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토요일학습 수요강연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매일 2시간학습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밑에 온 나라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우고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모든 성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

사회주의교육사업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토대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력사적뿌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인 교육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구현하여 독창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혁명인재육성의 고귀한 경험이 창조되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 교육전통이 이루어졌다.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창조된 새로운 교육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원형으로 되었다.

우리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새조국 건설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의 한 고리로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창설하였다. 민주주의 교육제도는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점차 사회주의 교육제도로 발전하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완수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이르러 교육체제와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사회주의 사회의 요구에 맞게 개편되었으며 사회주의 교육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우리는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된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완성하여야 한다.

1) 전반적 의무제도

사회주의 교육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전반적 의무교육제도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일부 소수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면교육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교육체제의 구성과 교육기관들의 배치, 무료교육제의 실시를 비롯하여 우리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시책들은 모두 전체 인민들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의무교육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학교의무교육이다.

우리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자급 학교들을 널리 설치하고 정연한 민주주의 교육체제를 세운 기초우에서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전반적 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1956년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데 이어 1958년에는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72년부터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과 10년 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은 모든 세대들에게 노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주는 무료의무교육이다.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은 과학적인 교육체제와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결합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세대들을 위한 정규학교들에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교육체제에 망라되어 의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당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함께 여러가지 형태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내오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운영하여 학령기의 세대들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공부하도록 하였다. 당의 현명한 방침에 따라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길을 잃었던 성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비제

누구나 다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밑에 모든 근로자들이 문화기술수준과 정치리론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학습을 정상화하고 있다.

전반적 의무교육제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하여야 한다.

전반적 의무교육제도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더욱 공고히 한 기초위에서 전망적으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훨씬 높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정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려면 고등교육도 의무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야 사회주의 교육제도로서의 전반적 의무교육제가 완성된다.

당면하게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원만히 실시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여야 하며 앞으로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고등교육 기관들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점차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로 넘어가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을 늘이는데서 기본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로력전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마친 모든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전반적의무교육을 더욱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교육기관들의 지역적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들을 지역적으로 옹계 배치하는 것은 전국적범위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의 지역적특성과 전반적균형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 공업지대와 농업지대에 교육기관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민족간부에 대한 국가적 수요를 보장하며 각 도에 종합적 간부양성기지를 꾸리는 원칙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을 배치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들의 과학부분별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 시간 민족간부에 대한 국가적수요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과학부분별로 대학들과 대학의 학부학과들을 옹계 편성하고 학생규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자연과학기술이 높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문학계통에 비한 자연과학기술 계통의 비중을 훨씬 높여나가야 한다.

2) 전반적 무료교육제도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만 참다운 것으로 될 수 있다. 무료교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의무교육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이른바 《의무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점은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준

다는데 있다.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은 생산수단과 교육시설이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되어 있고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와 인민들의 리해관계가 일치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으로 부터 출발하여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해방직후에 벌써 가난한 집 어린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하여 주고 전문학교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후시기에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을 무료교육으로 보장하였다. 그리고 1959년부터는 우리 나라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 무료교육제를 실시하였다.

오늘 우리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철저한 무료교육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다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도 무료로 하며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성인교육사업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예산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그것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 무료교육제도는 후대교육과 민족간부양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과 날로 더욱 튼튼하여지는 나라의 자립적 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

교육사업이 발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국가는 교육기관과 교육시설을 더 잘 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 학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집단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3)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생산활동과 본신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공부하는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세대들뿐 아니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전체 인민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에 따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내왔으며 그것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다. 오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근로자고등중학교,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 통신 및 야간 교육당,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계와 같은 교육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민교육의 성과적실현을 보장한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우지 못하였던 근로자들이 있고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의 규모와 교육기간이 제한되어있으며 교육사업과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동시에 밀고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에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만으로는 전민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동시에 전체 인민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뿐 아니라 교육은 중단하는 사람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일생동안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교육방침의 정당성이 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리론과 실천을 다각춘 유능한 민족간부를 많이 키워낼 수 있게 하며 교육사업과 사회주의건설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된 사람들은 학생이자 생산자이며 현직일군이다. 실천활동을 위주로 하는 그들은 혁명적실천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리론을 배우며 배운 리론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직접 적용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학습과 실천활동을 서로 뱉 수 없는 통일적과정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한 교육사업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 것이며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 있는 혁명인재를 키우는 매우 좋은 방법도 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기관들은 거의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들과 생산기업소들에 병설되어 있으므로 교육일군과 교육시설, 실험실습조건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서는 학생들이 생산활동과 본진사업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하기때문에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로력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조건에서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근로자고등중학교 체계는 필요없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서는 고등교육체계와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계가 기본형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모든 사회성원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려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공장대학을 늘이고 그 교수사업을 개선하며 농촌지역들에는 농장대학들을 내오고 농촌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고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국가적 어린이 보육교양제도

어린이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어릴때부터 문화적인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우면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규률생활에 비롯되고 집단주의사상과 공산주의 도덕품성이 빠르게 되며 지적발전과 육체적발육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 언제나 큰 힘을 넣었다. 우리는 해방후에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도시와 공장, 기업소, 국영농장들에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내오고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보육교양하는 체제를 세웠다.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수많은 육아원과 애육원들을 내오고 전쟁고아들을 받아서 키우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전후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가 다져지고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국가는 계획적인 투자와 전사회적운동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의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시설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대대적으로 꾸려졌으며 그 운영사업이 체계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으로 키우는 사회주의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었다.

우리 나라의 국가적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은 어린이양육에서 공산주의적 원칙을 구현한 가장 선진적인 어린이 보육교양제도이다.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집단적인 교육은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의 근본형식이다.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사회적관계속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참다운 공산주의적품격을 가진 인간으로 키울 수 있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는것도 공산주의적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은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매 어린이들에게 들려지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부모의 직업과 노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게 적용된다.

국가적 어린이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기관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며 사회주의교육학에 기초하여 어린이보육교양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어린이들을 더 잘 보육교양하며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주 및 월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 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더 잘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들에 대한 국가적인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어린이교육교양에 필요한 식료품, 놀이감, 교구비품, 의약품, 양육설비들을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5. 교육기관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사업은 교육기관들과 교육일군들에게 맡겨진 영예롭고도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사업은 당적, 국가적인 사업이며 전사회적인사업이다. 사회주의교육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교육기관들의 기능과 교육일군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며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국가적 보장, 사회적지원을 확고히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현시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사명과 임무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는 혁명화의 본거지이며 문화혁명의 거점이다. 학교는 교수교양사업을 통하여 사상혁명, 문화혁명 수행에 이바지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의 사명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며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 있다.

세대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것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조국의 앞날과 혁명의 전도는 결국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민족간부를 키우는 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민족간부가 없이는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 수 없으며 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수 없다.

학교는 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잘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학교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행정사업을 훌륭히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사업에서 기본은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에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학적과정에서 첫공정은 교육강령을 만드는 사업이다. 교육행정기관들과 대학들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의 사상의 식발전과정과 과학기술 습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게 교육강령을 잘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학교교육행정에서는 교원들이 교수준비를 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수준비에서 기본은 교수안을 잘 만드는 것이다. 학교교육행정은 교원들이 만든 교수안을 반드시 검열하여야 하며 집체토론을 거쳐 그것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과목에 대한 교수사업을 할 때와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강의할 때에는 반드시 방식상학이나 시범상학을 조직하여야 한다.

학교교육행정은 교원들이 교육들이 교육강령에 제시된 내용을 학생들에 충분히 가르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수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중심으로 틀어쥐고나서야 할 문제는 교수의 정치사상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행정은 교원들이 교수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교수를 당정책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르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최신성과들을 제때에 받아들여 교수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고 교수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에서 교원들이 교수방법을 개선하며 강의, 학과토론, 실험실습, 학과논문 작성을 비롯하여 과정안에 예정된 모든 형태의 교수를 다 정확히 진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은 학생들의 교수내용에 대한 소화정도를 정상적으로 요해강악하여 그들의 학과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학교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요한 과업이다.

학교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한다는 것은 교육사업을 과학적으로 맞물려진 교육학적 과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학교안에 혁명적인 제도와 규률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안에 과학적인 교육행정지도 체계를 세우고 교육사업을 철저히 교육학적 과정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며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행정의 전반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학교안에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엄격한 교육규률을 세워야 한다.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 것은 학교에 맡겨진 법적과제이며 첫째가는 교육규률이다. 학교들에서는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고 과정안, 교수요강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과외생활, 정치조직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는 학생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교육교양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교수사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과외생활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며 학생들의 학과학습 뿐 아니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도 옹기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잘 꾸리고 학교를 알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환경을 잘 꾸리고 학교를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은 사상교양기관,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학교의 사명과 역할을 옹기 수행하며 학생들을 지식있고 문명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짚지게 하는 훌륭한 일꾼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교, 교육환경을 사상혁명의 기관답게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게 꾸려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모든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꾸려야 한다. 또한 학교를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되도록 꾸려야 한다.

학교를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꾸리고 알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교실과 연구실, 실험실을 비롯하여 학교의 모든 시설들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군중적인 관리체계를 세우고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학교를 알뜰하게 거두는데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원의 위치와 역할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교원들이 자기의 영예로운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계승자이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질적상태가 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정된다. 교원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다.

교원의 첫째가는 임무는 교수사업을 잘하는 것이다. 교수사업은 교원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이다. 교원은 교수사업을 잘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후대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수 없으며 교원들이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다.

교원들을 혁명화하는 기본방도는 그들속에서 정치조직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원들속에서 당조직생활, 근로단체조직생활을 강화하며 특히 비판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혁명적 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교원들의 중요한 실천활동은 교수교양사업이다. 교원들은 교수교양사업에 모든 지혜와 교련을 다바쳐야 하며 그 과정에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로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면서 사회정치활동과 과학기술보급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교원들은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교육의 길을 결정한다. 교원들이 교수교양사업을 잘하려면 정치사상적으로는 견실할뿐 아니라 과학리론적자질이 높아야 한다. 하나를 가르치려면 열을 알아야 한다.

교원들은 무엇보다도 당정책을 잘 알아야 하며 자기의 전공과학분야에 정통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또한 기초과학지식을 비롯한 여러분야의 지식을 알아야 하며 국내의 정세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 그리고 교육 이론과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대학교원들은 반드시 전공분야의 학위학직을 가져야 하며 보통교육부문교원들은 다 자격 교원이 되어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워야 한다. 모든 교원들이 학습을 생활화하고 정면적으로 학습하며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원들속에서 방식상학, 시범상학, 학술토론회, 경험발표회를 자주 조직하며 교원들의 자질을 검열평정하는 국가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지도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지도원은 학생들의 사로청조직생활과 소년단지조직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키우고 보호하여야 한다.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지도원은 학생들의 과외생활을 지도하는 과외교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보육원, 교양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의 사회적양육자이며 교육자이다. 보육원, 교양원들은 어

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하며 혁명전 어린이들에게 학교교육의 기초를 닦아주어야 한다.

교원양성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범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원양성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은 후대교육사업을 위한 《원종장》이다. 교원양성기관들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하여야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훌륭한 교원이 나올수 있으며 그대야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교원을 키워내는 대학들에 좋은 학생들을 골라넣으며 이 대학들의 교수교양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사범교육기관들에서는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들고 보육원. 교양원들을 양성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현직교원들을 끊임없이 재교육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재교육하는 체계를 세우고 현직 교원들을 계획적으로 재교육하여 그들의 수준을 언제나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세워야 한다. 사범강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교수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교수의 질을 끊임 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을 철저히 당적인 교육,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책적지도이며 정치적지도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중심은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당의 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옳게 장악지도하는 것이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학교들에서의 교육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진행되는 기본거점은 학교이다. 당조직들은 학교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교수교양사업이 당의 요구와 혁명의 이익에 맞게 진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교육행정 기관들의 사업을 잘 지도하여야 한다. 당의 교육정책은 교육행정기관들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집행된다. 당조직들은 교육행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며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대열을 튼튼히 꾸리며 교원들과의 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하며 과학리론적 자질이 높은 좋은 사람들로 교원대열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교원대열에 당에 유일사상체계가 서지 않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않된다.

당조직들은 교원들속에서 정치적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교원들이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과학리론적 자질을 높이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후대교육사업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은 학습을 잘하는 것이다. 당조직들은 학생들이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정력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대학생들이 전공분야의 학과목에 정통하고 한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완전히 소유하며 대학기간에 민족간부의 자질을 원만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학생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교양하여 조직적으로 단련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학교 사로청 조직과 소년단조직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들을 좋은 사람으로 꾸리고 그들을 일상적으로 잘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사로청조직들이 주되는 힘을 학생청소년들과의 사업에 돌리며 학교 사로청조직과 소년단조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대학생모집사업을 당적, 로동계급적 원칙에서 옹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대학에는 중등교육을 마치고 로동생활과 군대생활에서 단련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상적각오가 높으며 학습성적이 우수한 청년들을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대학에는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당원들이 집결되어있으며 학부와 강좌 그리고 학생들속에 당조직들이 있다. 대학에서는 교육강령을 만드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육행정사업을 자립적으로 조직진행한다. 그러므로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대학의 모든사업을 옹계 지도하는 것은 고등교육사업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대학당위원회의 기본임무는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모든 학생들을 당이 요구하는 훌륭한 민족간부로, 공산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우는데 있다. 대학당위원회는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 진행하며 대학앞에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대책을 세우고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대학당위원회는 대학안의 당조직들과 사로청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교직원, 학생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일상적으로 장악지도 하여야 한다.

4)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

사회의 모든 성인들을 공부시키는 사회주의교육의 물질적수요는 매우 방대하다. 또한 사회주의교육은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요구한다. 튼튼한 사회주의적자립경제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교육의 방대한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는 교육사업을 위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모든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늘어나는 학생수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사진설을 앞세우고 학교들에 실험실과 실습기지를 잘 꾸려주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와 학용품, 여러가지 교구비품을 충분히 보장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현대화하여야 한다. 교육기자재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교육기자재들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교양시설을 잘 꾸려야 한다.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현대적인 사회교양시설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교육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온 사회가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새 세대에 대한 교육자, 교양자가 되어야 하며 교육사업의 보장자로 되어야 한다.

근로자들은 학부모로서 아들딸들의 학습을 정상적으로 지도방조하며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교육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학교들의 물질적 토대를 꾸리기 위한 사회적 지원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은 후원단체가 되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출판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새로 출판하는 도서들과 새로 생산하는 기계설비들 가운데서 교육사업에 필요한 것이라면 학교들에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

北韓主要年表

(1945.8~1982.12)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45. 8		25日 : 소련軍 平壤進駐, 司令部設置	
10		10~13日 : <朝鮮共產黨 西北5道責任者 및 熱誠者大會> 非公開裡開幕, 金日成 正式으로 出現, 基調演說,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設置. 14日 : <金日成歡迎 平壤市群衆大會> 開催. 28日 : <北朝鮮 5道行政局> 正式發足.	
11		3日 : <北朝鮮民主黨> 結成. 28日 : <北朝鮮 5道行政 10局> 設置.	
12		17日 : <朝鮮共產黨 北部朝鮮分局> 第3次 擴大會議開催. 責任秘書에 金日成을 正式으로 選任 發表.	27日 : 모스크바 三相會議閉幕. <朝鮮問題에 關한 決定> 發表.
1946. 1		2日 : <北朝鮮共產黨>과 各社會團體, 모스크바三相會議決定 支持 共同聲明 發表.	
2		8日 :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樹立 (委員長 金日成, 副委員長 金科奉, 書記長 康良煜). <天道教青友黨> 結成大會. (黨首 : 金達鉉). 16日 : <朝鮮獨立同盟>, <新民黨>으로 改編	
3		5日 :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 土地 改革法令 公布.	20日 : 第1次 美蘇共同委開催.
6		24日 : 勞動者 및 事務員에 대한 勞動法令 公布. 27. : 農業現物稅에 關한 決定書 公布. 現物稅率 收穫高의 25%.	
7		30日 : 男女平等權에 關한 法令公布.	
8		10日 : 重要産業, 交通, 遞信, 運輸, 銀行 등의 國有化法令 公布. 28~30日 : <北朝鮮勞動黨> 創立大會.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46.	11	3日：北韓의 <道·市·郡人民委員會> 選舉.	23日：左翼政黨, <南朝鮮勞動黨> 으로 統合(委員長 許憲).
	12	19日：社會保健法 公布.	
1947.	2	17~20日：<北朝鮮道·市·郡 人民委員會> 開催.	
	5		21日：第2次 美·蘇共同委開催.
	10		30日：韓國에 유엔委員會團 派遣案 可決.
	11		14日：유엔總會, 韓國總選舉案을 可決(유엔委員會團 構成. 유엔監視下 韓國 全域에서 1948年 3月까지 總選舉實施, 統一政府樹立後 兩軍撤退 등).
1948.	1	23日：소련側, 유엔韓國委의 北韓入境 拒否通告.	
	2	8日：<朝鮮人民軍> 創建.	26日：유엔小總會, 可能な 地域 單獨選舉案(美國案) 31:1로 可決.
	3	27~30日：<北朝鮮勞動黨> 第2次大會 開催.	
	4	29日：<北朝鮮臨時人民會議 特別會議>憲法草案 採擇.	
	5		10日：유엔監視下 南韓總選舉
	8	25日：<人民共和國>樹立을 위한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選舉.	15日：大韓民國政府樹立 宣言, 李承晚大統領 就任.
	9	2~9日：<最高人民會議> 第1次會議 開催. 第1日會議, 議長團選出(議長：許憲, 副議長：李英·金連鉉). 憲法委員會 選出. 第6日會議(9日), 金日成 內閣成員을 發表(首相：金日成, 副首相：朴憲永·金策·洪命慈,	

北韓主要年表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48.	9	閣僚全員 19名).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樹立.	
	12	26日: 소련軍 撤收完了.	
1949.	1	28~31日: <最高人民會議> 第2次會議 開催. <1949~50년 2個年計劃에 關한 法令>採擇.	
	2	22日: 金日成 소련訪問.	
	3	17日: 朝·소間 <經濟 및 文化 協助에 關한 協定> 調印(總 21億 1,200萬루블의 借款을 約定).	
	6	25~27日: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結成大會 開幕.	
	11	25日: 里人民委員會 代議員選舉.	
	12	3日: 面人民委員會 代議員選舉.	
1950.	6	25日: 04時, 北韓軍 38線 全域에서 南侵開始. 26日: 北韓<軍事委員會>組織 (委員長: 金日成, 委員: 朴憲永·洪命燾·金策·崔府健·朴一禹·鄭準澤).	
	7		7日: 유엔安保理, 유엔군 派遣 決定.
	9		15日: UN軍, 仁川上陸作戰.
	10	25日: 中共軍 韓國戰爭 介入.	
1951.	1	1日: 中共軍 6個軍團 38線 넘어 南下.	
	7		10日: 開城에서 休戰會談 開始.
1953.	6		18日: 反共捕虜 食糧.
	7		27日: 休戰協定 調印.
	8	6日: 이승엽(사법상·당비서) 사형판결. 12日: 소련政府의 10億루블援助決定接受.	
	9	1日: 金日成 소련訪問.	
	10		1日: 韓·美相互防衛條約調印.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53.	11	10日：金日成을 團長으로 하는 北韓代表團 中共訪問.	
1954.	4	20~23日：〈最高人民會議〉第1期 第7次會議開催. 人民經濟戰後復舊 3個年(54~56年)計劃에 對한 法令 承認. 27日：南日 外相, 제네바政治會議에서 統一方案提議.	
1955.	3	31日：中共軍 6 個師團 撤收開始.	
	5	25日：朝總聯 結成.	
	12	15日：朴憲永에게 死刑判決.	
1956.	2	2~3. 13日：소련 共產黨 第20次大會에 參加次 北韓 黨代表 모스크바 訪問 (團長：崔庸健).	
	4	23~29日：〈朝鮮勞動黨〉第3次大會 開催.	
	6	1日~7. 19日：金日成을 團長으로 한 北韓代表團 소련·東歐訪問.	
	12	11日：〈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12日全員會議開催. 討議事項：〈1957년 인민 경제계획에 대하여〉.	
	8	27日：〈最高人民會議〉 2期 選舉.	
1957.	11	3~23日：10月革命40周年記念式 參加代表團(團長：金日成) 소련 방문.	
1958.	2	14~21日 周恩來 北韓 訪問.	
	3	3~7日：勞動黨 第1次代表者大會開催 ① 5 個年 人民經濟發展計劃에 對하여 ② 黨의 統一과 團結을 더욱 強化 할데 對하여 ③ 黨組織問題 討議.	
	6	9~11日：〈最高人民會議〉第2期 第3次會議 開催. 第1次 5 個年(57~61年)計劃에 對한 法令 採擇.	
	9	1日：中共軍 9月 25日까지 撤收를 公布.	
	11	1日：全般的 中等義務教育制 實施.	

北韓主要年表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58.	11	21日～12. 9日：金日成 中共訪問.	
1959.	1	14日：〈勞農赤衛隊〉創設.	
	8	13日：僑胞北送協定調印(켄커타)	
1960.	4		19日：4. 19革命.
	6		15日：第2共和國 成立.
	8	14日：〈聯邦制〉提議.	12日：第2共和國 大統領에尹 潛善 선출. 16日：國會, 張勉國務總理를 認 准.
1961.	5		16日：5. 16 軍事革命.
	7	6日：朝・中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締結. 10日：朝・소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締結.	2日：朴正熙少將, 最高會議 議 長에 就任.
	9	11～18日：〈朝鮮勞動黨〉4次大會 開催.	
	10	14日：全共產黨 第22次大會 參席次 勞動 黨 代表團(團長：金日成) 出發.	
1962.	1		13日：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 劃(1962～1966)成案.
	10	8日：〈最高人民會議〉第3期 代議員選舉 實施. 22～23日：〈最高人民會議〉第3期 1次會 議 開催.	
	12	10～14日：〈勞動黨〉第4期 第5次會議 開 催 ① 造成된 情勢와 關聯하여 國 防力을 加一層 強化할 데 대하여 ② 1962年 人民經濟實行 總和와 19 63년 人民經濟發展計劃 討議.	
1963.	2		17日：第3共和國 發足, 新憲 法 發効.
1964.	2	25日：〈勞動黨〉4期 8次 全員會議〈社會主 義農村問題에 관한 테제〉 채택.	
	6	11日：AA會議에 代表團 派遣.	
	11	1～4日：수카르노 印尼大統領 북한 訪問.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65.	2	11日 : 코시킨 소련首相 北韓訪問.	
	4	10日 : 金日成 인도네시아 訪問.	
	5		22日 : 韓日協定 正式調印.
1966.	2	10日 : 北韓 民族保衛相 命令 第5號 發令 (現情勢를 正確히 認識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全般的 戰鬪備備를 完成할 것 등 6個項).	
	3	26日 : 北韓 勞動黨代表團(團長 : 최용진) 소련 共産黨 第23次 大會에 參加次 平壤 出發	
	4	29日 : 北韓 <最高人民會議> 農業現物稅制 廢止에 關한 法令 公布.	
	7		9日 : 韓·美行政協定 調印. 29日 :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1967~1971) 發表.
	8	12日 : 勞動新聞 사설을 통해 <자주노선> 宣布.	
	10	5~12日 : <朝鮮勞動黨> 代表者會議 開催.	31日 : 존슨美大統領 한국방문.
1967.	1		19日 : 韓國海軍警備艇 56艦, 北韓砲火에 의해 침몰.
	2	13日 : 北韓代表團(단장 : 第1 副首相, 金一) 소련항발.	
	3		22日 : 北韓 中央通信社 副社長 李總根 板門店에서 僞裝 歸順.
	5	20日 : 소련 副首相 노비코프, 평양 도착.	
	9	23日 : 經濟代表團(단장 : 이주연), 소련 방문.	
1968.	1		21日 : 1.21무장공비 사건발생. 23日 : 푸에블로號 拉北.
	2	20日 : 소련軍 創軍 50주년 참가 북한 대표단(단장 : 金昌奉) 평양 출발.	

北韓主要年表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68.	8		24日 : <統一革命黨> 地下間諜團事件 發表.
	11		2日 : 蔚珍·三陟 地區에 武裝共匪 사건 발생.
	12		23日 : 푸에블로호 승무원 82명 과 시체 1구 귀환.
1969.	4		15日 : 美情報機 EC-121, 東海上空서 北韓에 의해 被擊.
	5	14日 : 소련 最高會議 幹部會議長 포드고르니 북한 訪問.	
	10	1日 : 崔庸健 중공창건 20주년 기념식 참가.	
	12	6日 : 北韓外相 朴成哲, 소련 訪問	11日 : KAL旅客機 拉北.
1970.	2		14日 : KAL機 승객 판문점으로 送還.
	4	5日 : 中共首相 周恩來 평양 방문. 25日 : 소련軍 代表團 평양 방문.	
	7	26日 : 北韓·中共間 軍事會談(北京).	
	8		15日 : 朴大統領 8.15 紀念式서 <人爲의 障壁 단계적 除去> 선언.
	11	2~13日 : <朝鮮勞動黨> 第5次大會 開催. 6개년 인민경제계획(1971~1976) 채택.	
	12		29日 : 國會 非敵性 共産國과 交易을 爲 貿易去來法改正案 通過.
1971.	2		9日 : 第3次 經濟開發5個年計劃(1972~1976) 發表.
	4	12日 : <最高人民會議> 第4期5次會議 開催.	
	5	6日 : 朴成哲, 포드고르니 會談(모스크바).	
	6	10日 : 초세스쿠 루마니아 大統領 北韓訪問.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71.	8	6日: 金日成, 시아누크訪問歡迎 席上에서 韓國의 共和黨을 包含한 모든 政黨, 大衆團體 人士와의 接觸 用意 示唆. 14日: 北韓赤十字, 韓赤의 家族찾기 運動 提議에 板門店서 會談 열자고 提議. 18日: 軍事代表團(團長: 吳振宇) 中共訪問.	12日: 韓赤, <南北離散家族 찾기 會談> 갖자고 北赤에 提議. 20日: 南北赤 연락관, 分斷 26 年만에 첫 대면.
	9		20日: 南北赤 離散家族찾기 에 비회담 開催(관문점).
	12	11日: 金日成, 土最高會議 代表團과 會談.	
1972.	1	23日: 日 議員團, 平壤에서 北韓과 貿易 擴大覺書에 調印.	
	2	25日: 許鈸·브레즈네프 會談(모스크바).	
	5	26日: NYT紙 슬즈베리記者 북한 방문.	
	7		4日: 7.4 南北共同聲明 發表.
	8		30日: 南北赤 本會談 開催(평양).
	12	12日: <最高人民會議> 5期代議員 選舉 25~28日<最高人民會議> 5期 1次會議開幕 27日: <社會主義憲法> 채택.	27日: 維新憲法 公布.
1973.	2	9日: 許鈸 (外相), 中共 訪問(11日, 周恩來와 面談)	
	4	9日: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2次 會議 開催.	
	5	22日: 世界保健機構(WHO) 加入.	
	6	23日: 金日成 <祖國統一 5大綱領> 發表.	23日: 朴大統領, 平和統一外交 政策 發表(6. 23宣言).
	8	28日: 金英柱, 南北調節委員會 會談拒否 聲明.	
	9	10日: 黨 5期 7次 全員會議 개최(金正日조직·사상 담당 비서 등용설).	

北韓主要年表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73.	10		1日 : 유엔政治委, 南北韓 無條件 同時招請案 可決.
	11	16日 : 祖戰, <大民族會議> 召集 提議.	
1974.	1		18日 : 朴大統領, 年頭會見에서 南北不可侵協定締結提議.
	3	20日 : <最高人民會議> 5기 3차회의 開催. 美國에 <平和協定 締結>제안. 稅金 制度 완전 폐지(4月 1일부터 실시 결정).	
	5	29日 : 萬國郵便聯合(UPU)加入.	
	8		15日 : 朴大統領狙擊未遂事件發生. 平和統一 3大原則發表.
	11		15日 : 非武裝地帶의 땅굴 첫 발견.
1975.	1	18~26日 : 金日成·毛澤東 會談(北京) <南朝鮮人民蜂起 積極支援> 演說	
	5	22~6.10日 : 金日成, 東歐, 아프리카諸國 (루마니아·알제리아·모리타니아·불가리아·유고)訪問.	
	8	30日 : 北韓, 非同盟會議加入(리마).	
	9	21日 : 中共政府 代表團(단장 : 張春橋), 평양 訪問.	
	10	30日 : 濠洲 駐在 北韓大使館員 撤收.	29日 : 유엔 政治委, 對立된 두개 韓半島案 可決(西方案: 贊59·反51·棄權29·共產案(贊51·反38·棄權50).
1976.	1	29· : 經濟使節團(단장 : 공진태), 모스크바 向發.	
	2	22日 : 黨代表團(단장 : 朴成哲), 소련共產黨 제25차대회 참가차 모스크바 着.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76.	6		18日：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1977~1981) 發表.
	8	19日：金日成 全軍에 戰鬪態勢令.	18日：판문점 美軍 警備將校 살해사건 발생.
	9	19日：崔庸健 死亡.	
1977.	1	1日：金日成, 新年辭에서 <對美平和協定> 促求. 24日：朴成哲·코시킨 會談(모스크바). 25日：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 對南提議 採擇. <人民間政治協商> 또는 <大民族會議> 早速 開催.	1日：朴大統領, 新年辭에서 南北對話 正常化 및 門戶開放을 促求. 12日：朴大統領 年頭記者會見. 相互 不可侵協定後 美軍 撤收 不反對, 對北食糧 援助提議. 28日：張基榮 調節委員長, 調節委 再開促求(不可侵協定 推進).
	2	1日：平壤放送, 韓國의 對北食糧 援助提議 拒否. 21~22日：<조선통일을 위한 제 1차 세계대회> 개최(브뤼셀).	
	4	20~29日：最高人民會議 5期 7次會議 開催. 土地法 採擇.	
	6	21日：經濟水域 200海里에 관한 <政令> 採擇. 25日：<조선 통일 지지 국제연락위원회> 결성(알제리).	
	7	12日：P.L.O. 代表團 北韓訪問.	15日：外務部, 北韓 200海里 經濟水域 不認定宣言.
	8	1日：200海里 經濟水域, 東海 50海里. 西海 200海里·軍事水域 發效. 24日：유고 디토티大統領 北韓 訪問.	
	9	14~17日：<主體思想에 관한 國際討論會> 開催(平壤).	23日：國務會議, 12海里 領海法案 議決.
	10	23日：許鈹 外相 유고 訪問. 31~11月 9日：소련 10月革命 60週年 記	

北韓主要年表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念行事 參席代表團(團長：林春秋) 모스크바 向發.	
1977.	11	11日：〈最高人民會議〉6期代議員 選舉. 14日：세계 식량농업기구<FAO> 加入.	
	12	10日：金日成, 호네크 歡迎宴에서 獨逸式 統一方法 韓半島 適用 拒否. 13日：勞動黨中央委 5期 15次 全員會議 開催. 15~17日：〈最高人民會議〉, 第5期 1次會 議開催. 第2次 7個年計劃(1978~ 1984) 採擇.	
1978.	3	20日：20次 赤十字實務會議 拒否.	7~17日：팀스피리트 '78작전 실시
	4	9日：〈주체사상 국제연구소〉설립(東京).	
	5	5~9日：華國鋒 북한 방문. 20日：초세스쿠 루마니아大統領 북한 방문	
	8	18日：中共 軍事代表團(단장：國防省 副相 栗裕) 평양 訪問(~9.1).	
	9	8~13日：鄧小平 北韓訪問 10日：〈人共〉樹立 30주년 기념.	2日：申鉉禧保社部長官, WHO 會議 參加次 소련向發.
	11	27~28日：〈勞動黨〉 중앙위 제 5기 17차 전원회의 개최. 27~29日：〈조선통일을 위한 제 2차 세계 대회〉 개최(東京).	7日：韓·美聯合司 發足.
1979.	1	23日：〈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전민족 대회〉 소집 위한 南北會談 제의.	19日：朴대통령 〈南北當局間對 話〉 제의. 2. 17~3. 14日：南北 變則 對話 개최(1~3차).
	2	20日：北韓 卓球 協會, 제35차 평양 세계 탁구 대회에 〈남북 통일〉팀 구성출 전 제의.	27~3. 12日：南北 卓球協會 대 표 회의 개최(1~4차).
	3	27~29日：〈最高人民會議〉 6기 3차회의 개최.	

區分 年月	內 容	備 考
1979. 4	14~16日 : <主體思想에 관한 國際討論會> 개최(인도 뉴데리).	
4	25日 : 제35차 平壤 世界 卓球選手權大會 개막.	
5	2~3日 :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平壤 방문.	4~5日 :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서울 방문.
5	26~6. 1日 : 中共「全人代」 상무위부위원장 등영초 북한 방문.	
6	13日 : 黨 中央委 5기 18차 전원회의 개최.	
7	10日 : 外交部 대변인 성명(3당국 회담 거부).	1日 : 韓·美 共同聲明 발표 : 三當局 會談 제의.
10		26日 : 朴大統領 逝去.
12	10~12日 : 黨 中央委 5기 19차 전원회의 개최. 80.10 黨 6차대회 소집 결정. 20日 : 제22차 올림픽(모스크바)에 <민족 유일 팀>구성 참가 제의.	21日 : 제 4 공회국 10대 崔圭夏 大統領 취임.
1980. 1	3日 : 副總理 노태석 장례식 7~10日 : 作家同盟 제 3차 대회. 11日 : 總理 이종욱, 남북총리 회담제의. 19~22日 : 聯盟中央委員會 제18차 전원회의. 21日 : 제22회 올림픽 競技大會 남북한 단일팀 구성 제의 관련 韓國側에 2차 편지. 28日 : 社勞靑 中央委員會 제21차 전원회의 30日 : 農勤盟 中央委員會 제15차 전원회의(~31日) : 總理 이종욱,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受諾 回翰.	24日 : 申鉉碯 國務總理, 南北 總理會談 실무대표 접촉 제의.
2	21~22日 : 全國鐵道 일꾼대회.	5日 :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 남북총리회담실무대표에 김영주 外務部本部大使, 정중식 국토통일원 정책

北韓主要年表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p>기획실장, 이동복 南北 會談 사무국장을 임명. 6日: 實務代表 1次 接囑. 7日: 남북 직통전화 3년만에 개통. 18日: 국정자문회의 발족. 19日: 실무대표 2차 접촉. 23日: 나이지리아와 大使級外 交관계수립.</p>
3		<p>21~22日: 全國 水産 일군 대회. 23日: <建築家 同盟> 제 3차 대회.</p>	<p>4日: 실무대표 3차 접촉. 18日: 실무대표 4차 접촉.</p>
4		<p>2~4日: <最高人民會議> 제 6기 제 4 차회 의 <人民保健法> 채택. 5~9日: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 잠비아 大統領 北韓 訪問. 27~29日: 全國 里<人民病院> 원장 및 <진 료소>소장회의.</p>	<p>1日: 실무대표 5차 접촉. 18日: 실무대표 6차 접촉. 21日: 舍北鑛夫 700명 유혈난 동.</p>
5		<p>5日: <中央人民委員會>, 4月 5日을 <보 진절>로 제정. 12~16日: 學校教育和 社會教育의 결합에 관한 유네스코 아시아지역 協商 會 議.</p>	<p>6日: 실무대표 7차 접촉. 11~15日: 최규하大統領, 사우 디와 쿠웨이트訪問. 17日: 비상계엄 전국에 확대. 19日: 光州 事態擴大 22日: 實務代表 8차 접촉. 31日: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 회신설.</p>
6		<p>9日: 外交部長 허담, 韓國情勢 관련<플 럭不加擔國家> 외교부장들에게 편 지 발송. 11日: <黨 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와 <中 央人民委員會> 연합회의, <현정세 에 대처하여 플럭불가擔運動을 강 화·발전시킨데 대한 문제> 토의. 23日: <最高人民會議>, 전쟁을 방지하고 통일을 하루속히 實現하는데 努力할 것을 호소하여 世界 各國國會에 편 지 발송.</p>	<p>21日: 瑞山 西方 40마일 해상 에서 무장간첩조격침. 24日: 실무대표 9차 접촉.</p>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28~30日 : <全國 地方産業 일군대회>	
7		9~20日 : 社會主義 나라 청소년 친선국제 축구경기대회. 15日 : 「스티븐 솔라즈」 美下院議員, 북한 방문.	
8		12~13日 : 職總 中央委員會 제19차 전원 회의. 22~27日 : 社會主義 나라 靑少年친선 국제 여자 농구 경기대회. 31日 : 農勤盟 中央委員會 제16차 전원회의	16日 : 崔圭夏大統領 辭任. 20日 : 실무대표 10차 집족. 27日 : 11代大統領에 全斗煥 候補 當選.
9		4日 : 멕시코와 大使級 외교관계 설정. 18日 : <祖國戰線 中央委員會>와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연합회의. 19~23日 : 「프린스 알버트레네」 세이셀大統領 북한 방문.	11日 : 大韓赤十字社, 북한적십자회에 서한. 26日 : 서울측 실무대표단, 첫 남북 총리회담을 11.3~8일에 개최할 것을 北韓側에 공개 제의. 29日 : 全斗煥大統領 새 헌법안 발의 공고.
10		8~12日 : 「아흐메드 세쿠 투레」 기네 大統領北韓 訪問. 9~13日 : 「로버트 지 무가베」 짐바브웨수상北韓 訪問. 10日 : 이라크와 斷交. 당 6 차대회(~14日) 11日 : 기네와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12日 : 짐바브웨와 친선 및 협조에 관한條約과 科學技術 및 文化協助에 관한 一般協定締結. 14日 : 黨 中央委員會 제 6기 제 1차 全員會議.	22日 : 새 헌법에 대한 國民投票 실시. 27日 : 제 5 공화국 憲法發效.
11		11日 : <高麗民主聯邦 共和國 창립방안 실현을 위한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20日 : <祖國戰線中央委員會>,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高麗	3日 : 정치풍토쇄신 특별법 통과. 12日 : 拉北 해왕 6.7호 귀환.

北韓主要年表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p>民主聯邦共和國 창립 방안〉 실현을 위한 內容의 편지를 南韓의 政治人들과 各界 人事들에게 발송.</p> <p>24日 : 祖國戰線 中央委員會, 諸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에서 채택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립 방안〉 실현을 위한 內容의 편지를 海外 各界 人事들과 同胞들에게 발송.</p> <p>25日 : 〈祖國戰線 中央委員會〉, 諸政黨·社會團體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高麗聯邦共和國 창립방안〉 실현을 위한 內容의 便紙를 南韓의 政治人들과 各界 人事들에게 2차로 발송.</p> <p>27日 : 〈祖國戰線 中央委員會〉, 諸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에서 채택된 〈高麗聯邦共和國 창립방안〉 실현을 위한 內容의 편지를 해외의 각계 인사들과 동포들에게 2차로 발송.</p> <p>30日 : 〈祖國戰線中央委員會〉, 諸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에서 채택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립방안〉 실현을 위한 內容의 편지를 남한의 政治人들과 各界 人事들에게 3차로 발송.</p>	
12		<p>1日 : 짐바브웨와 貿易協定締結.</p> <p>5日 : 〈祖國戰線 中央委員會〉, 諸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에서 채택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립방안〉 실현을 위한 內容의 편지를 海外 各界 人事들과 同胞들에게 3차로 발송.</p> <p>7日 : 〈祖國戰線中央委員會〉, 諸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에서 채택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립방안〉 實現을 위한 內容의 편지를 矯導所에 있는 〈民主人事〉들과 各界 各층 人事들에게 발송.</p> <p>8~10日 : 全國 醫學科學討論會.</p> <p>10日 : 黨中央委員會 政治局 擴大會議(합흥) 〈물고기 가공에서의 혁명적 진</p>	<p>1日 : 칼러TV 방영.</p> <p>26日 : 반공법 폐지.</p> <p>29日 : 리비아와 修交合意.</p>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p>환과 새로운 化學纖維工場 建設을 다그칠데 대한 問題) 討議.</p> <p>19~20日: 黨中央委員會 제 6기 제 2차 全員會議, <80년도 인민경제 계획 실행 총화>와 <81년도 인민경제 계획에 대하여> 討議.</p> <p>21日: 音樂家 同盟 제 4차 대회.</p>	
1981.	1	<p>10日: 튀니지와 貿易協定 締結.</p> <p>16日: 카메룬과 貿易協定 締結.</p> <p>19日: 祖國平和統一委員長 金一, 全斗煥 大統領의 南北韓 當局 最高 責任者 相互訪問提議 拒否聲明.</p> <p>28~29日: <朝鮮民主黨> 제 6차 대회.</p> <p>29~30日: 全國品質 監督 일꾼대회.</p>	<p>5日: 리비아와 大使級 外交關係 修立.</p> <p>12日: 全斗煥 大統領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相互 訪問 提議.</p> <p>14日: 李範錫 國土統一院長官, 남북한 當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실현을 위한 실무 접촉제의.</p> <p>28日: 全斗煥 大統領 訪美.</p>
	2	<p>4日: 印度와 農業科學 研究 및 養成과 關係分野에서 협조할데 대한 일반 의정서 조인.</p> <p>12日: 레바논과 대사급 外交關係 설정.</p>	<p>11日: 12代 大統領을 選出할 選舉人 投票.</p> <p>25日: 12代 大統領에 全斗煥 候補 當選.</p>
	3	<p>5日: 道·市·郡 <人民會議> 대의원선거.</p> <p>28日: <工業技術總聯盟> 제 3차 대회.</p> <p>29~31日: 全國科學者·技術者大會. <진국문화예술인열성자대회>(~4.1)</p>	<p>3日: 12代 大統領 就任.</p>
	4	<p>3日: 세인트빈센트 그레너딘즈와 外交關係 설정.</p> <p>14日: 짐바브웨와 文化 協助에 관한 協定 締結.</p> <p>25일: <만경대賞> 국제마라톤경기 대회.</p>	<p>11日: 11代 國會 開院.</p> <p>28日: 제 13차 한미 연례 안보 회의.</p>
	5		<p>19日: 페스토와 경제협정 체결.</p> <p>20日: 拉北 제 2 남진호 귀환.</p>
	6	<p>10~12日: <뿔러불가담국가> 식량 및 농업 부문 조절국 제 2차 회의.</p> <p>23日: 6.25~7.27 <反美 共同鬭爭 월간예 즈음하여> <外交部 비망록> 발표.</p>	<p>5日: 全斗煥 大統領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會談 提議. 평통자문회의 출범.</p>

北韓主要年表

區分 年月	內 容	備 考
		19日 : 조상호大韓體育會長, 올림픽을 비롯한 國際競技大會에 단일팀을 構成하여 參加한 것과 南北韓體育人會談 提議. 25日 : 全斗煥大統領 亞細亞 5 個國 巡訪(~7.9).
7	1日 : 어퍼블타와 文化協助에 관한 協定 締結.	4日 :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 7.4 南北共同聲明 發表 9주년을 맞아 南北對話 再開촉구. 27日 :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 체육회, 남북한 체육인 회담촉구.
8	6日 : 祖國戰線 中央委員會 제67차 회의. 30日 : 第1回 平壤 國際탁구 招請競技大會.	12日 : 金容植 大韓赤十字社總裁, 이산가족찾기運動提議 10주년에 맞아 남북적십자총계會談 開催 促求. 20日 : 친관우 民族統一 協議會 議長, 祖國戰線 명의의 統一促進大會 개최 주장 반박성명. 24日 : 국토통일고문회의, 민족 통일중앙 협의회의의 8.20 대북성명 지지. 29日 : 北韓, SR-71 미국 정찰기에 미사일 공격.
9	20~22日 : 自然保護聯盟 제 2 차 대회. 28日 : 日시리아와 航空運輸에 관한 協定 締結.	15日 : 제36차 유엔총회. 30日 : 88올림픽 서울개최 확정.
10	1日 : 바누아투와 大使級 外交關係 設定. : 몽고와 보건분야 협조 協定 締結, 4日 : 토고와 친선 및 협조에 관한條約締結 20~24日 : <사로칭> 第 7 次 大會.	30日 : 休戰監視委員會 체코 병사, 미국 망명요청.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1	3日: 民用 航空局과 國際 民用航空國機 構理社會 理事長 사이에 北韓 領空 을 통과하는 북경—동경간 직선항 로 개설의 승議. <祖國統一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 독자간의 대화>(~6日). 16~17日: 全國 勞農通信員 열성자회의. 27~30日: 聯盟 第6次 大會. 29日: 平壤國際 여자배구 경기대회 폐막.	8日: 「프렘」태국수상 방한. 17日: 이광포 문화공보부장관, 남북한 문물교환전 제의. 18日: 「페이전」美國大統領, 0 의 선택 제의. 25日: 86아시아 競技大會 서울 開催 결정. 리비아 대사관 개설.
	12	10日: 總理 李鍾玉, 방글라데시訪問. 11日: 방글라데시와 농업공동위원회 창설 에 관한 협정체결. 18~19日: 全國 鐵道 일군대회.	11日: 유엔 사무총장에 「게야 르」 선출. 15日: 국회, 통금해제 결정.
1982.	1	26日: 祖國 平和統一委員會 위원장 김일, 1.22 제의 거부 답화.	5日: 國務會議, 通禁解除議決. 22日: 全斗煥大統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제의. 23日: 軍事停戰委員會 유엔軍 측 首席代表 「제임스 스 톰스」少將, 군사훈련 상 호 참관제의.
	2	2~16日: 總理 李鍾玉, 인도네시아 및 태 국, 말레이시아 방문. 9日: <전국 법무 해설원 열성자대회>. 10日: <祖國平和統一委員會>, <100인 연 합회의> 소집 주장 성명. 11日: <祖國戰線 中央委員會>제68차회의. 20~24日: 부주석 박성철, 모잠비크 및 잠 비아, 짐바브웨, 앙골라 방문. 28日: <최고인민회의>제 7기 대의원선거.	1日: 孫在植 國土統一院長官, 20개 示範實踐事業제의. 13日: 「팀스퍼리트」'82 發進. 25日: 손재식 국토통일위원장, 남북한 고위 대표 會談 提議. 캐나다경찰, 全大統領危 害陰謀事件 擧發.
	3	7~20日: 黨 및 政府 代表團(團長: 總理 李鍾玉), 가이아나 및 그레나다, 니과라과, 큐바 방문. 25~31日: 金日成 70회 생일기념 <전국주 체 사상 토론회>. 29日: 「제이 에이 사라만치」 IOC 위원장 北韓 訪問. 31日: <祖國戰線 中央委員會> 第69次 擴 大會議.	19日: 통금추가 해제.

北韓主要年表

區分 年月	內 容	備 考
4	3日 : <黨中央委員會> 第6期 第5次 全 員會議, 最高人民會議第7期 1次會 議에 提出된 의정토의 및 決定採擇. 5日 : <最高人民會議> 第7期 第1次會議, 主席選舉, 國家指導機關選舉, 81年 度 國家豫算執行 決算과 82년도 국 가 예산에 대한討論. 9日 : 최현 사망. 13日 : 「세쿠트레」기베 대통령, 「사모라 모 이세스마셀」모잠비크 대통령, 「켄 네스 다비드 카운다」잠비아 대통령, 「카나안 바나나」짐바브웨 대통령, 「아가타바르바라」말타 대통령 북한 방문. 14日 : <黨中央委員會>와 <最高人民會議> 合同會議. 15日 : 第70回 金日成생일. 17~21日 : 「차우세스쿠」루마니아 대통령 북한 방문. 25日 :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	2日 : 아르헨티나, 영령 포클 랜드 점령. 25日 : 「부시」미국부통령 방한. 26日 : 의령 경찰관 난동사건.
5	9日 : 「아리스 피데스 페레이라」케이프 베르데 대통령 북한 방문. 12~14日 : 非同盟 通信社 聯合調整 委員 會 第7次 會議.	1日 : 영국, 아르헨티나開戰. 9日 : 「새무엘 케이도」라이베 리아 국가원수 방한. 24日 : 한국. 호주 정상회담.
6	4~9日 : 제 2차 국제 여자배구 경기대회. 17日 : 친도교 청우당 中央委員會 第5期 第7次 全員會議. 21日 : 「에드워드 사우마」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 北韓 訪問. 25日 : 말라위와 대사급 外交關係 設定 : 第3次 國際 예술체조 경기 대회 (~28일) 27日 : 副主席 朴成哲 토고 방문. 30日 : 도미니크 민토프 말타총리 北韓訪問	7日 : 「모부투 세세 세코」자 이레대통령 방한. 14일 : 아르헨티나군 영국에 항 복. 24日 : 국무총리에 김상협씨 임 명.
7	2~8日 : 第2次 平壤國際卓球大會 6日 : 職盟 中央委員會 第6期 第3次 全 員會議.	13日 : 울릉도 동북방 170마일 공례상에서 제 5 마산호 남북.

區分 年月	內 容	考 考
	16~18日 : 사회주의 국가 청소년 유도대회 31日 : <천도교 청우당> 中央委員會 第5期 第8次 全員會議.	16日 : 김용식 大韓赤十字社 總裁, 제5마산호 남북 관련 送還促求放送 通知文 發送.
8	7~12日 : 사회주의 나라 국제 무선전파 探索 競技大會. 14~24日 : 사회주의 國家 청소년 國際 蹴球大會. 18日 : <最高人民會議> 議長 황장엽, 쓰련 방문. 23~24일 : <천도교 청우당> 第6次 大會. 24日 : 「리샤르 페스타르」씨 페국제적십자사 부위원장 北韓 訪問. 29日 : <黨 中央委員會> 第6期 第6次 全員會議. : 第2次 國際 권투경기대회(~9.3).	1日 : 全斗煥大統領, 태평양頂上會談 基本原則提示. 5日 : 「세이웅」 불란서외상 한 국방문. 12日 : 유창순 大韓赤十字社 總裁, 南北赤十字社 會談 무조건再開 요구. 15日 : 全斗煥大統領, 공산권거주 동포들에게도 문호개방 선언(37주년 광복절 경축사). 16日 : 全斗煥大統領, 아프리카, 캐나다, 방문등정.
9	3日 : <全國 청년 일성자회의>. : 세계발명 및 저작권 所有權機構 代表團 北韓訪問(~24일). 7日 : <全國都市 經營事業 일군大會>. 10日 : 「리에이정보」 世界 保健機構 第1部 總局長 北韓 訪問. 15日 : 「農勤盟 中央委員會」 第20次 全員會議. : 金日成 中共 訪問(~26일). 17~21日 : 「잠빠르 스바도 빨로크」 유엔식량 및 농업총국장 특사 北韓 訪問. 20日 : 큐바와 보건의학 협정 체결. 23~29日 : 「스달조 토도르보」 불가리아 人民會議 議長 北韓訪問. 28日 : 聯盟 中央委員會 第4次 全員會議 <全國 열관리원 대회>.	9日 : 초음속 전투기 國內生産 29日 : 남북 제5 마산호 귀환.
10	7日 : <全國체신 일군대회>. : 이란 체육지도위원회와 체육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協定締結.	16日 : 「수하르트」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19日 : 中共 MIG 19기 망명.

北韓主要年表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p>8日 : 中共〈全國人民代表大會〉代表團 (團長 : 상무위 부위원장 습중훈) 北韓訪問.</p> <p>11日 : 수리남과 외교관계 설정. : 「마누엘 멘포다 코스타」 산토메 프린시페 대통령, 北韓訪問(∼15일).</p> <p>14日 : 산토메 프린시페와 경제 및 기술협조 합의서 조인.</p> <p>15日 : 最高人民會議 代表團(團長 : 議長 황장엽), 이란 방문.</p> <p>22일 : 社勞靑 中央委員會 第3次 全員會議.</p> <p>23∼26日 : 「무하마드 지하울 하크」 파키스탄 대통령, 北韓 訪問.</p> <p>25일 : 〈全國 청년 열성자회의〉.</p> <p>26∼29日 : 불란서 공산당 대표단(단장:총비서 「조드류 마르세」), 北韓訪問.</p> <p>29日 : 「무하메드 엘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北韓 訪問.</p>	
11		<p>6∼10日 : 「앙드레 콜링바」 中央 아프리카 대통령 부처, 北韓 訪問.</p> <p>9∼14日 : 사회주의나라 청소년 친선 국제 아이스하키대회.</p> <p>12日 : 「포병대회」. : 「잔스리하지 모하마드 가잘리빈샤피헤」 말레이시아 외상, 北韓 訪問. : 〈철타마運動 선구자대회〉(∼14일).</p> <p>14日 : 〈全國文化通信員 열성자대회〉.</p> <p>15日 : 〈全國 수산부문 열성자대회〉.</p> <p>22日 : 「프랑소와 드부르스부르」 불란서 대통령 특별임무 담당대표, 北韓 訪問.</p> <p>23日 :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代表團(團長 : 議長 황장엽), 태국, 말레이시아 방문(∼12.7日).</p> <p>29日 : 〈소금공업부문 열성자회의〉.</p>	<p>19日 : 제 9 회 아시아게임개막. 30일 : 韓 · 日 電話頂上會談.</p>
12		<p>15∼17日 : 〈農勤盟〉 第 7 次 大會.</p>	<p>20日 : 「에브렌」 터키대통령 방한.</p>

北韓人名錄

<參考>

- ① 北韓 主要人物 189名을 收錄
- ② 姓名·地名·機關名 등을 韓
수록 漢字로 表記
- ③ 年月은 事件發生時期 또는 確
認時期임
- ④ 現職은 물론, 可能性이 있는
職責을 末尾에 表示
- ⑤ 1983年 12月 現在

7

강 석승(康錫崇·男) 1912 출생·본명
강 석상 ○57.10 勞動黨中央委 副部長 ○
61.1 內務省 정치국장 ○61.8 勞動黨 檢
査委員會 위원(제 4 차 당대회) ○68.10
松都政治經濟大學 학장 ○69.7 慈江道黨
책임비서 ○71.6 金日成 高級黨學校 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代의원(咸
北清津) ○74.9 朝·中親善協會 상무위원
○74.9 朝·中親善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5.7 黨歷史研究所 소장 ○77.4 勞
動黨 代表團 단장으로 이라크 방문 ○77.8
勞動黨 代表團長으로 가이아나 訪問 ○
79.2 勞動黨 代表團長으로 말리 訪問 ○
80.10 勞動黨 中央委員會 候補委員(第6次
黨大會 1/103) ○81 勞動黨代表團長으로
소말리아 訪問 ○82.2 산토메 프린시페 訪

問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3.2 勞
動黨代表團長으로 PLO 第16次大會 參加,
○83.5 勞動黨中央委員會 委員 ○83.9.
9.9節에 참가한 콩고대표단 환영 ○현재
勞動黨中央委員會委員. 黨歷史研究所長.
朝·中親善協會常務委員, 탐스-레닌 주
의 學校校長. 最高人民會議 第 7 期代議員.

강 성산(姜成山·男) ○69.8 黨 慈江
道委 책임비서 ○69.11 黨平壤市委 책임
비서 ○70.11 黨中央委 위원 ○72.12 最
高人民會議 제 5기 代의원 ○73.4 平壤市
人民委 위원장, 平壤市黨 책임비서 ○73.
10 黨政治委員會 후보위원 ○75.1 交通·
遞信委 위원장 ○77.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代의원 ○77.12 政務院 부총리 ○79.9
政務院 부총리 겸 철도부장 ○80.10 黨中
央委員, 黨 政治局委員 ○82.2 最高人民
會議 第 7 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8.31 第 1 副總理에 임명됨 ○
82.12 農勤盟 第 7 次大會參加 ○83.7 예
멘 總理 特使接見 ○83.9. 9.9節主席團 序
列 10位로 參加 ○현재 政務院 第 1 副總
理. 黨政治局委員. 黨 中央委員. 最高人
民會議 第 7 期代議員

강 점구(姜漸求·男) 咸南 출생. 製鐵
所 노동자 출신 ○60.10 輕工業委員會 부
위원장 ○61.12 水産省 부상 ○63.3 水産
相 ○63.7 國旗勳章 제 1급 수여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代의원 ○67.12 수

北韓人名錄

산상 유입 ○68.11 수산상 해임 ○78.12
江原道 行政委 위원장 ○79.2 政務院 水
產委 위원장, 水產代表團長으로 日本訪問
○80.8 水產代表團長으로 國際水產展示會
에 參席(蘇聯) ○80.10 黨 中央委員會 檢
査委員(第6次大會)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代議員 ○82.4 水產委員長解任 ○
現在 黨中央委 檢査委員, 最高人民會議 第
7期代議員.

강 점숙(女) ○75.5 女盟中央委員會秘
書, 女盟代表團長으로 자이레訪問 ○77.3
女盟副委員長, 女盟 第4期 全員會議에서
報告. ○79.2~3 女盟代表團長으로 이라
크·이란訪問. ○83.6 女盟副委員長留任
(現在).

강 처한(男) ○72.12 第5期代議員 ○
73.6 朝鮮建築家同盟中央委 副委員長 ○
81.10 建築家代表團長으로 蘇聯訪問 ○
82.6.1 平壤市黨秘書(現在).

강 현수(康賢洙·男) ○56.6 松都政治
經濟大學 출신, 맑스·레닌주의 강좌장
○62.12 소련 駐在大使館 무관(소장) ○
66.7 人民軍 소장 ○68.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 ○70.7 社會安全省 정치국
장 ○70.11 黨5次大會代表者資格審査委
위원 ○70.11 黨中央委 위원 ○70.12 社
會安全部 정치국장 ○73.12 黨 平壤市委
책임비서 ○74.3 平壤市 人民委 위원장
겸 黨 책임비서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最高人民會議 豫算
審議委 위원 ○78.5 平南道 人民委 위원
장 ○78.5 平壤市黨 책임비서 해임 ○78.9
平南道人民委위원장. ○80.10 黨中央委員
(130/145 第6次大會) ○82.2 最高人民會
議 第7期 代議員 ○82.7 黨中央委 檢閱委

員會 第1副委員長 ○83.5 印度 共產黨代
表團과 會談時 參席(平壤) ○83.9 現在 黨
中央委 檢閱委員會 第1副委員長, 黨 中
央委員, 最高人民會議 豫算審議委員.

강 희원(男) 1916 咸北 출생·맑스·
레닌주의學院 출신 ○37. 共產黨 組織事
件에 관련 투옥 ○58.7 電氣省 副相 ○
58.7 勞動黨 中央委員會 經공업부장 ○
61.9 勞動黨中央委員會위원(제4차 당대
회) ○62.8 平壤市 人民委員會 위원장 ○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 ○67.
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역포) ○
68.12 最高人民會議 豫算委 위원 ○70.11
黨中央委員會위원 ○71.9 咸興市 人民委
員會위원장 ○72.9 平壤市 人民委員會위원
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2.12 平壤市 行政委員會 위원장 ○78.
9 政務院 부총리(第6次內閣) ○80.7 咸
北道黨責任秘書 ○80.10 黨 第6次大會 代
表者 資格審査委員, 黨 中央委員(75/145)
○81.2 黨代表團(團長:李種玉)으로 蘇聯
共產黨 第26次大會 參席 ○81.3 咸北道黨
責任秘書解任 ○82.2 黨 政治局 候補委員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82.4 金日成勳章
받음, 中央人民委員 ○82.7 清津市黨責任
秘書 ○82. 平壤市 經濟指導委員長 ○83.
3 틱스퍼리트 '83 糾彈清津市 群衆大會 參
席 ○83.8 金策製鐵所 600萬屯 강철 生産
能力造成을 위한 清津市 群衆大會 參席 ○
現在 黨 政治局 候補委員, 黨 中央委員,
清津市 黨 責任秘書, 清津市 經濟指導委
員長, 最高人民會議 第7期代議員.

계 응태(桂應泰·男) 咸北 출생. ○57.
5 黨 中央委 國際部 부부장 ○57.8 最高人
民會議 제2기 대의원 ○60.12 外務省 부

상 ○60.11 貿易代表團 단장으로 越盟 방문 ○62.3 貿易省 부상 ○67.4 國際貿易推進委員會 부위원장 ○67.10 貿易省 제 1 부상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兩江道 甲山) ○67.12 貿易相 ○70.11 黨中央委 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72.12 政務院 貿易部 부장 ○73.5 朝·칠레 親協 위원장 ○75.4 黨 및 政府代表團 단원으로 中共 방문 ○76.12 政務院 부총리 ○77.1 부총리 겸 무역 부장, 黨政治委 후보 위원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77.12 黨 政治委 위원(78.4 무역부장 해임) ○78.12 벨라라데시 訪問 ○80.10 黨 中央委員(16/145) 黨 政治局委員(第 6 次 大會) ○81.2 불가리아 訪問 ○81.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訪問 ○81.9 政務院經工業委員長 ○81.10 黨政治局 候補委員으로 강등 ○82.2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7 모잠비크, 부룬비 訪問 ○83.5 폴란드 방문 ○83.6 헝가리 訪問 ○83.9.10 平南道 黨責任秘書 ○現在 黨 政治局 候補委員, 黨 中央委員, 中央人民委員, 政務院副總理,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平南道黨 責任秘書.

계 형순(桂亨淳·男) 咸北 출생 ○55.7 平壤市人民委 農業部 부부장 ○62.7 農業省 부상 ○65.2 機械工業省 부상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 ○69.12 第 1 機械工業相 ○70.11 黨中央委員會 후보 위원 ○72.1 工業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새길) ○73.7 政務院 機械工業委員會一般機械工業總局 국장 ○73.8 機械工業委員會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77.12 最高人民會議 豫算 審議

委 위원 및 政務院 機械工業部 부장 ○80.10 黨 中央委 候補委員(86/103) ○82.5 大安重機械工場에서 열린 光州事態 2 周年 記念 從業員集會에서 연설, 당시 大安重機械工場支配人 ○83.9 黨 中央委 第 6 次 全員會議 決定 貫徹위한 大安重機械工場從業員들기대회 참석 ○現在 黨 中央委 候補委員, 大安重機械工場支配人,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공 진태(孔鎭泰·男) 平南 출생 ○54. 人民經濟大學 교관 ○58. 對外經濟總局 2 부장 ○63.6~64.7 對外經濟總局 부총국장 ○66.12 石炭工業省 부상 ○67.12 對外經濟委員會 부위원장 ○71.6 對外經濟委員會 위원장 ○71.10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越盟 방문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비현) ○72.12 政務院 對外經濟事業部 부장 ○73.2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스웨덴 방문 ○74.10 政務院 사무장 ○75.6.17 부총리 ○76.7.15 黨中央委위원 ○76.11 黨 中央委 政治委 후보위원 ○78.10 金日成 특사(경제 대표단장)로 루마니아·유고 방문 ○79.3 金日成 特使로 말타 訪問 ○79.8 리비아 방문 ○79.12 부룬다 방문 ○80.1 이란 방문 ○80.2 東獨訪問 ○80.4 루마니아 訪問 ○80.10 黨 中央委員(24/145) 黨 政治局 候補委員, 政務院副總理, 國家計劃委員長 ○82.2 수단 이집트 기네 訪問 ○82.2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82.3 金日成 特使로 예멘·탄자니아·이집트·아랍공화국 訪問 ○82.4 金日成勳章 받음 ○82.4 政務院 貿易委委員長 ○82.10 東獨訪問 ○83.1 北韓-몽고 間 83年 商品 交流에 관한 협정조인(평양) ○83.9 9.9節記念式參加(21/32)

北韓人名錄

○現在 黨 中央委員 政治局候補委員 政務院 副總理, 貿易委員長, 最高人民會議 第7期代議員.

권 민준(權敏俊·男) 1962.9 平壤출생
○57. 모스크바 共產靑年學校 1년수료 ○62.9 民靑副委員長 겸 學生委員會 부위원장
장 ○64.5 社勞靑 中央委員會 위원 ○67.3 國際學生同盟 제9차 대회 단장으로 蒙古 방문 ○73.7 外交部 부부장 ○73.7 유엔 常駐 อนุ서버 수석대표, 제28차유엔 總會 대표 ○74.10 제29차 유엔 總會代表團 부단장 ○75.10 제30차 유엔 總會代表團 부단장 ○79.2 黨中央委 부부장 ○79.2~3 黨代表로 南北連絡代表들의 板門店 1~3차 접촉에 참석 ○현재 黨 中央委連絡部 副部長.

권 희경(權熙京·男) 1928.2 慈江道출생.
○53~56 勞動黨 中央委 근무 ○65~72.1 外務省 부상 ○69.7 政府 代表團 단장으로 싱가포르 방문 ○72.2 소련 駐在 大使(76.8 해임) ○72.1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代의원(咸北 화대) ○73.6 스웨덴 주재 겸임 대사 ○73.10 제28차 유엔總會 代表團 대표 ○74.9 제61차 IPU 總會 대표(동경) ○75.9 제62차 IPU 總會 참가(런던) ○76.7 대사직 해임 소환. ○76.8 政務院 外交部副部長 80.2 駐蘇大使 再任 ○80.10 黨 中央委 候補委員(64/103 第6次黨大會).

길 재경(吉在京·男) 1924 출생. ○53~61. 金日成大學 敎수(역사학부장) ○74.3 駐 스웨덴 大使館 대사 ○74.4 駐 아이슬란드 大使館 대사 겸임 ○77.7 外交部 부부장 ○78.8 리비아·나이지리아·가나 방문. ○79.8. 북에멘·시리아 방문 ○80.

10 黨 中央委 候補委員(47/103) 黨 中央委 國際事業部 副部長 ○81.2 소련共產黨 第26次大會에 參加 ○82.2~3 東獨, 체코, 소련 방문 ○82.4 金日成勳章 받음 ○83.2 소련共產黨國際部代表團間 會談에 參席(평양) ○현재 黨 中央委候補委員, 黨 國際事業部副部長, 政務院 外交部副部長.

김 강환(男) ○80.10 黨 中央委員(33/145) 黨政治局候補委員, 黨軍事委員, 人民軍中將 ○82.2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11 人民軍 포병 대회 참석. 人民軍 副總參謀長. ○83.9 9.9절 참석(26/32) ○現在 黨 中央委員, 黨政治局候補委員, 黨軍事委員, 中將, 人民軍副總參謀長.

김 경련(金景鍊(敬連)·男) 1925.9 咸北 출생 ○49. 모스크바大學 學敎 ○54 人民經濟大學 經濟학 부장 ○60.5 內閣書記局부국장 ○61. 國家計劃委員會 계획 국장 ○62.11 黨中央委 財務部 부부장 ○64.11 勞動黨 中央委員會 부부장 ○70.11 勞動黨 中央委위원 ○71. 朝·中親善協會 中央委 위원장 ○71. 朝·시리아 親善協會 위원장 ○71.6 財政相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代의원 ○73.12 政務院 財政部부장 ○76.4 케냐 개최 UNCTAD 제4차 회의 참가 ○77.12 政務院 財政部부장 ○78.7 經濟代表團 단장으로 中央 아프리카 諸國 순방 ○80.1 政무원 부총리. 80.7~8 니카라과·가이아나·자메이카 방문 ○80.8 파키스탄·말레이시아·베네텔訪問 ○81.4 黨代表로 체코訪問 ○81.7 몽고 訪問.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現在).

김 관섭(金寬燮·男) 1922.5 平北출

생. ○1939년 新義州 敎員大學 부학장.
 ○57.12 勞動黨 慈江道 委員會 위원장 ○
 61.9 勞動黨 中央委員會 후보위원(제 4 차
 당대회) ; ○61.12 蒙古駐在大使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 기 代의원(平南 신양)
 ○64.5 기니아駐在大使 ○67.7 對外文化
 連絡委員會 부위원장 ○68.9 朝·越盟 親
 善協會 부위원장 ○68.10 朝·中友好協會
 부위원장 ○70.11 勞動黨 中央委員會 후
 보위원, 對外文化連絡委 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代의원 ○74.9~10
 第61次 IPU總會 참가(동경) ○74.8 世界
 人民들과의 連帶性 朝鮮委員會 위원장 ○
 75.10 勞動黨 中央委 위원 ○77.11 最高
 人民會議 제 6 기 代의원 同 常設會議위원
 ○78.9 朝·中親善協會 위원장 ○79.2~3
 勞動黨代表團 단장으로 노르웨이·스웨덴·
 덴마크·핀란드 방문 ○80.10 黨中央委
 員(50/145 第 6 次大會) ○81.3 멕시코 방
 문 ○81.10 朝·中親善協會團長으로 中共
 訪問, ○82.1 世界言論大會 參加(핀란드)
 ○82.2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82.4 最高
 人民會議 第 7 期 第 1 次 會議 常設委員
 ○83.7 朝·中友好 協調 및 相互援助條約
 締結 22돌즈음 영화감상회 개최. ○ 現在
 黨 中央委員, 對外文化連絡委員長. 朝·
 中親善協會委員長.

김 광진(金光鎭·男) 1918년생·平南
 출생. ○50.6 民保省 後方總局 참모장 ○
 70.3 人民軍 소장 ○70.7.25 砲兵 사령관
 (중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代
 의원 ○72.7 김일성 훈장수여 ○73.4 砲
 兵司令官(中將) ○80.10 黨 中央委候補委
 員(19/103 第 6 次大會) ○82.2 最高人民會
 議 代議員 ○83.8 人民軍副總參謀長. 現在
 黨 中央委候補委員, 砲兵司令官, 中將

人民軍 副總參謀長.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김 국삼(男) 64.10 職總 中央委組織部
 長 ○66.5 中共 5.1節參席 ○72.12 最高
 人民會議 代議員 ○73.4 사리원 市黨責任
 秘書 ○83.5 鑛業 및 動力 勞動者 聯盟 中
 央委員長(現在). {職總中央委 副委員長으
 로 中共訪問

김 국태(金國泰·男) 1918 咸南 출생.
 모스크바大學 출신. ○62.10 朝鮮勞動黨
 學校 지도부부장(중장) ○66.10 黨 代表
 者會議 집행부임원, 勞動黨 中央委 國際
 部 부부장 ○67.7 社會安全省 政治局 국
 장(상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대
 의원(載寧) ○68.2 勞動黨 中央委 宣傳煽
 動部 부장 ○68.5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
 겸 中央委 부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
 원(제 5 차 당대회) ○71.10 黨中央委員會
 文化藝術部 부장 ○72.11 勞動黨 中央 委
 員會 宣傳煽動部 부장 ○73.2 金東奎政府
 代表團 단장을 수행 소련 방문 ○76.6 金
 日成高級黨學校 교장 ○77.5 咸南道 人民
 委위원장 ○77.10 이디오피아 駐在大使 ○
 80.10 黨 中央委員(42/145) 黨 6 次大會
 黨大會代表者 資格審査委員 ○82.2 最高
 人民會議 代議員 ○82.4 김일성 훈장 받
 음 ○83.3 黨部長. 現在 黨 中央委員, 黨
 中央委部長, 金日成 高級黨學校長, 最高
 人民會議 第 7 期 代議員.

김 국훈(金國薰·男) 1925(1919?) 咸
 北 출생 ○50. 中央黨學校 黨委員會 부위
 원장 ○58.12 中央黨學校 부교장 ○61.5
 金策工業大學 학장 ○61.5 祖國平和統一
 委員會 위원 ○61.9 黨中央檢査委員會 위
 원(제 4 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 기 代의원(平壤외성) 同 法制委員會

北韓人名錄

위원 ○64.1 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 부위원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성천) 同法制委員會 위원 ○69.10.23 中央黨學校 교장 ○70.11 黨 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2.3 中央放送委員會 위원장 ○2.8 朝鮮議會 구루파서기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형봉) ○73.2 쿠바 駐在 특명전권대사 ○74.6 유엔 海洋法 회의 참석(베네주엘라) ○74.12 가이아나 대사 겸임 ○77.3 朝·리비아親善協會 위원장 ○77.8 獨駐在 대사. ○79.11 駐東獨大使解任 ○80.10 黨 中央委員(122/145 第 6次大會) ○82.2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82.4 라오스革命第 3次大會參加. ○現在 黨中央委員, 最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

김 기남(金基南·男) 1926.8 江原道 출생 ○48.8 最高人民會議 제 1기 대의원 ○54.1 外務省 제 2 부장 ○57.6 駐中共大使館 임시 대리 대사 ○57.12 外務省 의례부장 ○61.8~65.1 朝鮮勞動黨中央委員會 科學 및 學校教育部 부부장 ○61.3 外務省 의대국장 해임 ○72.4 勞動新與社 부주필 ○73.4 박사 ○76.5 記者同盟 中央委員會 위원장 ○76.10 勞動黨 中央委 후보위원 ○77.8~8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제 8차 國際記者 機構(IOJ)總會 참가 및 同機構 부의장 피선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同 常設會議 의원 ○78.9 勞動黨 中央委 위원 ○78.9~10 로동신문 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8.11 로동신문 代表團 단장으로 日本 방문 ○79.4 멕시코 방문. 80.10 黨 中央委員(49/145) 勞動신문 責任主筆 ○80.12 루마니아 방문. 81.10 蘇聯訪問 ○81.10 國際記者同盟 副委員長으로 被選(第 9次大

會) ○82.2 시리아訪問 ○82.2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82.3 리비아·튀니지 방문. ○82.4 金日成勳章 받음. ○82.4 最高人民會議 常設委員. ○82.5 세이셸 國慶節 參加 ○83.1 말라가시 訪問 ○83.2 앙골라 訪問 ○83.7 反帝 親善平和를 위한 世界記者大會 參加(平壤)

김 기선(金基善·男) ○54.5 黃南道 黨組織部副部長 ○56.3 勞動黨 中央黨學校卒 ○57 林業勞動者 同盟委員長 ○59.1 延安郡黨委員長 ○62.10 第 3期 代議員 ○67.11 第 4期 代議員 69.9 黃北道人民委員長 ○70.7 黨 中央委候補委員(第 5次大會) ○71.7 黃北農村經理委員長 ○72.12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77.8 平南行政委員長 ○79.6 南浦市人民委員長 ○80.7 江原道 黨責任秘書 ○80.10 黨 中央委員(74/145) ○82.2 第 7期 代議員 ○82.4 金日成勳章 받음 ○82.6 開城市黨責任秘書 ○현재 黨 中央委員, 開城市黨責任秘書, 最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

김 길현(金吉賢·男) ○60. 黨中央委科學 및 學校教育部 부부장 ○71.9 黨 中央委員會 부부장 ○72.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書記局 부국장, 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 부위원장 겸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위원 ○72.8 南北赤十字本會談자문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3.2 政府代表團 단장 金東奎를 수행 모스크바 방문 ○74.10 黨 中央委國際部 부부장 ○77.4 親善參觀團 부단장으로 中共 방문 ○78.5 네델란드·서독·벨기에·스위스 방문. ○78.6 中共訪問 ○79.10 駐東獨大使 ○80.8 政務院 外交部 副部長(第 6次 內閣) ○現在 不出.

김 남교(男) ○53 勞動黨 中央黨學校卒
 ○56.10 咸北道人民委計劃委員長 ○61.8
 咸北道 人民委副委員長 ○64.11 黨中央委
 副部長 ○67.8 清津市 人民委員長 ○67.11
 第4期 代議員 ○70.10 清津市 人民委員長
 解任 ○81.2 社會主義國家 청소년 속도빙
 상경기대회 조직위원장 ○81.11 兩江道人
 民委員長 ○82.2 第7期代議員 ○82.6 보
 천보전투승리 45주년 기념보고회 참석 ○
 83.6 보천보전투승리 46돌기념 양강도 보
 고회 참석 ○현재 兩江道 人民委員長, 最
 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김 남윤(男) 64.5 社勞育 中央委員(民
 靑 第5次 大會) ○77.12 政務院 전제 공
 업부장(第6次內閣) ○81.5 同 전제공업부
 장 해임 ○83.6.15 黨中央委員(144/145補
 選) ○83.9.8 9.9절에 참가한 탄자니아
 대표단 영접및환영, 당시 黨部長 ○현재
 黨中央委員, 黨部長.

김 대홍(金大弘·男) 1919.12 東滿洲
 출생 ○40. 소련군 소위로 임관되어 獨·
 蘇戰爭에 참가 ○46. 人民軍 第1師團
 第1聯隊 참모장 ○47. 南浦旅團 참모장
 ○48. 第1軍官學校 군사부장 ○51.2 第10
 師 사단장 ○51.9 第32師 사단장 ○60.11
 民族保衛省 부상 ○61.9 勞動黨中央委 위
 원(제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沙里院 경암) ○63.2 空軍
 司令部 사령관 및 民保省 부상 ○64.12
 軍事代表團 단장으로 越盟방문 ○67.6 民
 族保衛省 부상 계임 ○67.11. 最高人民會
 議 제4기 대의원(은산 승화) ○70.1 勞
 動黨 中央委 위원(제5차 당대회) ○72.2
 人民武力部 부부장, 人民軍 總參謀部 교
 육국장 겸임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3.5 人民武力部副部長 ○75.7 人民武
 力部副部長 겸 總參謀部 教育局長 ○77.3
 지령학 장례위원(5/21) ○81. 人民武力部
 副部長, 上將(現在).

김 덕현(金德賢·男) 1929 平北 출생
 ○53.7 中央通信 소속 판문점 출입 기자
 ○63.5 제18차 울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회담 참가(홍봉) ○64~69 印度 駐在大使
 館 駐在 中央通信社 통신원 ○71.9 赤十
 字會 보도부장, 勞動黨 組織指導部 부부
 장 ○71.9 中央通信社 부사장 ○71.9 南北
 赤十字 豫備會談 대표(단장) ○72.1 北赤
 代表團부단장 겸 대변인 ○72.9 黨 中央
 委 정치책임지도원 겸 組織部 부부장 ○
 72.10~11 南北調節委 공동위원장, 제
 1~3차 회의 대표 ○73.3~6 南北調節委
 員會 제2~3차 회의 간사위원.

김 동국(男) ○50 金日成綜合大卒 ○
 54.3 職業總同盟 出版社편집국장 ○57.10
 「勞動青年」 편집국장, ○61.3 「勞動青年」
 副主筆 ○64.9 「勞動青年」 責任主筆 ○
 71.10 社勞靑 執行委員 ○71.11 탄자니아
 방문 ○72.2 루마니아방문 ○73 勞動新聞
 社主筆 ○76.4 시리아방문 ○78.11 日本
 방문 ○79.2 中共訪問 ○79.12 「勞動青年」
 責任主筆 및 金星出版社社長 ○81.4 金星
 出版社 創立 35周年 記念報告 ○82.2 金
 日成 70回生日 「忠誠의 祝典」 개막식 참
 가. ○83.3 金星青年出版社 社長 및 同社
 責任主筆(現在).

김 두남(男) ○80.10 黨 中央委員(124
 /145) ○82.2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수여. ○82.8 黨政治局候補
 委員 ○83.1 黨軍事部長, 黨軍事委員 ○現

北韓人名錄

在 黨中央委員, 黨政治局候補委員, 黨軍事部長, 黨軍事委員,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김 두영(金斗榮<永>·男) ○48.3 北勞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 ○59.8 長津江發電所 지배인 ○60.8 赤十字社 조직기획부 부부장(중장) ○71.5 社會安全省부상 ○72.12 社會安全部 부부장 ○77.12 政務院 부총리 ○78.4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80.10 政務院 石炭工業部長, 黨中央委員(39/45) ○81.5 同 石炭工業部長解任 ○81.9 同 건재공업위원장 ○82.2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받음. ○82.12 清津市 人民委員長. 現在 黨中央委員, 清津市人民委員長.

김 두환(男) ○51.12 第 5軍團 정치위원 ○65.8 朝鮮科學院 부원장 ○65.11 清津市 新岩區域 人民委 부위원장 ○71.2 民族保衛省 부상 ○74.4 軍事停戰委代表 ○79.7 軍停委代表(大佐) ○現在 軍停委代表(大佐)

김 득준(金得俊·男) ○1924.2 咸南출생 ○1950 모스크바大學 유학 ○56.11 民靑中央委 상무위원 겸 부위원장(제 4차대회) ○61.12 內閣直屬 體育指導委 부위원장 ○64.1 朝鮮 올림픽委員會서기장 ○65.9 朝鮮 라틴·아메리카 親善協會 위원장 ○68.10 平壤體育大學 학장 ○73.4 國際貿易促進會 부위원장 ○73.4 朝鮮體育指導委 부위원장 ○77.12 올림픽委 부위원장 ○78.5 제35차 世界 卓球選手權大會(평양) 조직위 위원장 ○79.3 南北卓球單一팀 構成問題로 韓國代表와 4次에 걸쳐 접촉 ○81.1 北韓. 가나 親善協會委員長 ○83.1 이란 訪問(國際올림픽委聯合會議

參加) 당시 朝鮮올림픽委副委員長 ○83.5 第37次 世界 卓球選手權大會參加(日本) ○現在 朝鮮體育指導委副委員長, 朝鮮올림픽委 副委員長.

김 룡연(金龍淵·男) ○63.2 人民軍구분대 사령관 ○67.11 最高人民會議代議員 ○68.6 人民軍中將 ○70.11 黨 中央委候補委員(第 5次大會) ○76.1 英雄칭호국기훈장 1급 받음 ○77.10 평양방위사령관 ○80.10 黨中央委候補委員(67/103)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代議員(現在).

김 만금(金萬金·男) ○1905 平南 安州郡 출생. 日本 明治大學졸업. 소련 幹部學校 유학 ○53 勞動黨 中央委 조직부장 ○56 黨 平南道委 위원장 ○56.4 黨中央委 위원(제 3차 당대회) ○56.4 黨中央委 농업부장 ○57.8 最高人民會議 제 2기 대의원 ○58.2 朝·소親善協會 中央委위원 ○59.9.1 農業相 ○61.6 黨中央委 위원, 黨農業部 부장(제 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板門) ○70.7 부수상, 農業委員會 위원장 사임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1.12 黨中央委員會 政治委 후보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연안) ○72.12 中央人民 委員會 위원, 政務院 부총리 겸 農業委員會 위원장 ○73.9 政務院 부총리 및 農業委員會 委員長 해임 ○73.10 朝鮮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 위원장,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의장단 의장 ○78.4.26 平壤市人民委 위원장 ○78.9 黨 정치위원 ○80.10 黨中央委員, 黨 第 6次 大會 執行部成員 및 大會決定書 初案作成委員. ○81.11 中共訪問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및 同 資格審查委員(第7期 第1次 會議) ○82.4 金日成 特使로 단자니아 방문. ○83.2.16 평양시 소년단 연합단체대회 참가. ○83.6.15 平壤市 人民委員長解任 ○83.7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擴大會議 參席 ○現在 黨中央委員,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長,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김 병률(金炳律·男) ○67.11 普通教育部 제1부상 ○69.11 黨平北道委員會 책임비서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5차 당대회) ○72.9 社會安全省 부상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代의원 ○72.12 最高人民會議 法案審議委員會 위원 ○74.9 平北道 人民委 위원장 ○74.11 社會安全部 부부장(중장) ○77.12 平北道 黨 책임비서. ○79.11 中共訪問. ○80.10 黨中央委員(70/145)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現在 黨中央委員 平北道黨 責任秘書.

김 복신(金福信) ○54. 勞動黨 中央黨學校卒 ○57.8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58.6 吉州 펄프공장 支配人 ○58.9 輕工業省 副相 ○60.7 輕工業部 副部長 ○61.5 輕工業委 副委員長 ○66. 平壤市 地方産業總局 副局長 ○71. 방직공업상 ○72.7 朝·이라크 親善協會委員長. ○72.12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73.4 輕工業委 紡織 및 皮服 工業 總局長 ○82.1 副總理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5 輕工業委員長으로 소련 방문 ○83.1 강랑옥사당 장래위원 ○83.12 現在 政治局候補委員, 政務院 副總理, 輕工業委員長.

김 병률(男) ○19.11 平北 新義州 출생 ○30.9 소련유학 ○36.9 레닌그라드大學 文學部 졸업 ○45 소련軍 입대 ○45.8 新義州安全參謀學校 통역 ○46 第1師團 포병부장(대좌) ○47 砲兵部 참모장 ○48.3 勞動黨 平北道委 조직부장 ○50.9 소장 진급 ○50 砲兵司令官 ○52.4 중장 진급 ○53.7 제1급 自由獨立勳章 ○56.4 勞動黨 中央委 후보위원 ○56.8 人民軍 最高司令部 공병국장(중장) ○60.10 人民軍 상장 ○61.2 砲兵司令官 겸 民族保衛省 부상 ○61.9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에서 탈락(제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代의원 ○66. 民保省 부상 ○67. 제4기 最高人民會議 代의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代의원 ○73.5 人民武力部 부부장 ○75.7 人民武力部 부부장 겸 겸열국장 ○77.5 中共軍 友好參觀團과 會見(평양) ○80.10 黨 中央委 候補委員(17/103 第6次大會)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現在 人民武力部 副部長(上將) 黨中央委 候補委員.

김 병주(金鳳柱·男) ○76.11 금성政治大學 학장 ○77.6 職總 위원장 ○77.12 最高人民會議 제6기 代의원,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의원 ○78.11 職總代表團 단장으로 헝가리·유고슬라비아 방문 ○79.6 職總 단장으로 東獨 방문 ○80.3 中共訪問 ○80.5. 소련방문 ○80.6 체코방문. ○80.10 黨中央委 候補委員(73/103 第6次大會) ○81.10 日本訪問 ○82.3 소련방문 ○82.4 最高人民委 第7期 第1次會議 常設議員 ○82.12 朝鮮—PLO 親善協會委員長 ○83.1 朝鮮—印度親善協會委員長 ○83.8 職總中央委 第6次 全員會議 參席 ○現在 黨中央委 候補委員 職總 中央委員

長,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김 상호(男) ○70.6 人民軍 소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6 人民軍 總參謀部 부총참모장 ○83.12 現在 人民軍副總參謀長(上將)

김 석준(金碩俊·男) ○73.9 北傀 유엔 옴서버代表部(제네바) 대표 ○76.7 國際保健機構(제네바) 北傀 代表部 부대표 ○79.2 (현재) 民主黨 中央委 부위원장 ○79.2~3 南北連絡代表 단원으로 1~3차 남북접촉시(板門店) 참가. ○81.1 社會民主黨 中央委 副委員長, 同黨政治委員 ○現在 社會民主黨 副委員長.

김 석형(金錫亨·男) ○1912 慶北 出生 ○1939년 京城帝大 史學科 졸업(고려사) ○56.1 金日成大學 교수(역사학 박사) ○56.3 科學院歷史學研究所 소장 ○56.10 루마니아 방문 ○58.11 科學院 상무위원 ○59.5 科學院 社會學部門委員會 위원장 겸 歷史學研究所長(과학원 원사) ○60.8 제25차 國際 東方學者大會 참가차 소련 방문(모스크바 종합대) ○61.5 祖國 平和統一委員會 위원 ○64.4 맑스·레닌주의 放送大學 부총장 ○62.10.8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3.8.23 古考學者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同豫算委員會 위원(平北 운산) ○72.4 社會科學院歷史學研究所 소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3.2 金日成 綜合大學 부총장.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 ○82.2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副委員長 ○現在 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長 祖國平和統一委 副委員長.

김 성걸(金成杰·男) ○65.5 勞動黨兩江道委 위원장 ○70.10 中央通信社 사장 ○71.8 中共 방문 ○72.12 제 5기 대의원(노학) ○78.9 朝鮮記者代表團 단장으로 東南亞 방문 ○78.10~10朝鮮通信社 代表團 단장으로 헝가리 방문. ○78.12 黨 中央委候補委員 ○80.10 黨 中央委 候補委員(40/103 第 6次 大會) ○80.12 인도방문 ○81.6 中共訪問 ○81.11 소련·체코 방문. ○82 非同盟國 通信社 聯合調整委員會副議長으로 被選 ○83 現在 黨中央委 候補委員, 中央通信社長解任.

김 성애(金聖愛·女) 1924 平南 出生. 平壤師範 졸업. 金日成大學英文科 졸업. 金日成의 처 ○65.9 女盟中央委員會 부위원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구척) ○72.1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의원 ○75.5~6 김일성 수행 루마니아·알제리·모리타니아·불가리아·유고 등방문 ○77.11.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同 常設會議 의원 ○80.10 黨 中央委員(105/145)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 및 同 常設會議委員 ○82.4 金日成 勳章 受贈 ○83.6.27 女盟 第 5次大會 事業 總和報告 ○現在 黨中央委員, 女盟委員長.

김 순일(男) ○76.2.9 金日成 軍事大學 副總長 ○78.9 金日成軍事大學 第 1 副總長(少將). ○81.3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83.3 中將, 왕제산회의 50돌기념 보고회 참석 ○現在 金日成 軍事綜合大學 第 1 副總長, 中將, 博士.

김 시학(金始(時)學·男) ○56.11 朝鮮 作家同盟 外國文學 분과위원 ○70.11 黨

中央委員會위원, 同中央委員會 부장(제 5 차 당대회) ○72.12 社勞靑中央委員會 위원장 ○72.12 中央放送委員會 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73. 5 朝·파키스탄 親善協會 위원장 ○74. 9 朝·아르헨티나 親善協會 위원장 ○75. 3 朝·토고 親善協會 위원장 ○75.11 朝鮮 記者同盟 中央委員會 위원장 ○75.3 平壤 市 行政委員會 위원장 ○79.2~2 中央 放送委員會 代表團 단장으로 東獨·체코·헝가리·루마니아 방문. ○80.7 불가리아 日本訪問 ○80.9 中共訪問 ○80.10 黨中央委員(103/145) ○81.5 소련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 7 期 代議員 ○82.4 金日成勳章 받음 ○83.5 덴마크 방문 ○83.6 金正日 政治大學 實務指導時 수행 ○현재 黨中央委員, 黨中央委員長,

김 연주(金連周·男) ○67.4 카이로 駐在大使館 참사관 ○69.3 예멘 駐在大使館 참사 ○72.9 제 2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 수행원 ○73.5 北韓赤十字社中央委員會 참사 ○73.5 제 6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代表團 단장.

김 영남(金永南·男) 咸北 출생. ○52 中央黨學校출신, ○53 모스크바 유학 ○56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국제부 서기장 ○60.8 對外文化連絡委員會 위원장 ○61. 6 소련 및 中共 방문(김일성 수행원) ○61.9 黨中央委 國際部 부부장, 黨咸北道 委부위원장 ○62.10 外務省 부상 ○63.4 黨中央委員會 부부장 ○67.10 職總 中央 委 부위원장 ○68.5 黨中央委員會 부부장 ○70.11 勞動黨 中央委員會 위원(제 5 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同 常設會議 의원, 勞動黨 中央委국제

부장 ○73.2.19 對外文化連絡委 위원장 ○74.6 黨政治委 후보 위원 ○74.9 中央人民委員會 대외정책 위원, ○75.2 黨秘書 局 비서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 의원 同 常設會議 의원 ○78.8 勞動黨 정 치위원 겸 비서 ○78.12 쿠바 방문 ○79. 6 소련·헝가리·이탈리아방문 ○80.10 第 6 次黨大會 집행부성원 同大會 決定書 草案 作成委員, 黨政治局委員, 黨秘書, 黨 中央委員(12/145) ○80.11 스페인방문 ○81.1 페루방문. ○81.3 알제리 訪問 ○81.5 덴마크 訪問 ○81.10~11 프랑스·서독·동독·오지리·中共순방 ○82.2 태 국·방글라데시 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82.4 金日成勳章 받음. ○82. 5~6 핀란드·덴마크·불가리아 순방 ○82.7 루마니아방문 ○82.9 金日成 訪中時 수행 ○83.6 金正日 政治大學實務指導時 수행 ○83.8 체코·불가리아·폴란드 방문 ○현재 黨政治局委員, 黨國際部長, 黨秘書 黨中央委員, 最高人民會議 第 7 期 代議員.

김 영순(金英榮·男) ○60.1 江原 道 人民委員會 부위원장 ○69.6 元山市 人民委員會 위원장 ○70.8 UAR 주재대사 ○73.5 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 부위원장 ○73.8 朝·루마니아 親善協會 부위원장 74.1 朝·中親善協會 부위원장 ○74.4 民主法律家協會 부위원장 ○76.4~6 페루·파나마·라이베리아 방문 ○77.2~3 朝·中親善協會 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7.5~6 親善文化代表團 단장으로 이디 오피아·리비아방문 ○78.9~9 朝·루마 니아 親善協會代表團 단장으로 루마니아 방문 ○78.9 朝·콩고 親善協會 위원장 ○79.8 駐헝가리 大使 ○80.2 헝가리 首相 面談 ○83.4 83~84年 헝가리와의 事

北韓人名錄

業計劃書 조인 ○ 現在 駐韓加里 大使

김 영전(金榮全) ○ 62.8 平南 順川郡 黨委員長 ○ 70.6 平南 人民委員長 ○ 72.12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 72.12 平南 行政委員長 ○ 80.6 開城市 人民委員長 ○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 83.5 光州 人民蜂起 3돌기념 개성시 군중집회 연설 ○ 현재 開城市 人民委員長.

김 영채(金永采·男) ○ 62.6 南浦 通信機械工場 지배인 ○ 65.2 平壤 電氣工場 지배인 ○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平南 평화) ○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 73.7 遞信部 代表團 단장 으로 蒙古 방문 ○ 77.12 政務院 체신부장 ○ 78.9 蘇聯 방문 ○ 80.8 체코 방문 ○ 82.9 東獨訪問 ○ 83.8 朝鮮 親善協會 中央委員長 ○ 현재 黨 中央委員, 政務院 遞信部長, 朝蘇 親善協會委員長,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김 영화(男) ○ 75.10 建材工業部 副部長 (第5次 成閣) ○ 77.1 소련 방문 ○ 78.1 政務院 建材工業部長 (第6次 內閣) ○ 79.6 소련 방문 ○ 81.6 政務院 林業部 副部長 ○ 83.3 소련 방문 ○ 현재 政務院 林業部 副部長.

김 응순(男) ○ 60.1 江原道 人民委 副委員長 ○ 69.6 元山市 人民委員長 ○ 70.8 駐이집트 大使 ○ 73.3 對外文化連絡委 副委員長 ○ 73.5 헝가리·불가리아 방문 ○ 74 民主法律家協會 副委員長 ○ 76.12 파키스탄 방문 ○ 77.2 中共 방문 ○ 77.7 알제리 방문 ○ 78.4 루마니아 방문 ○ 78.12 日本 방문 ○ 80.10 黨 中央委員(115/145) 黨 中央委 國際部 副部長. ○ 81.1 유고 방문 ○ 82.1~2 프랑스·그리스·벨기에·네

덜란드 방문 ○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 82.4 金日成 勳章 받음 ○ 82.3 포르투갈·핀란드·오지리·에스파니아·덴마크 방문 ○ 83.9 9.9節 관련 자국 대표단 환송 ○ 現在 黨 中央委員, 黨 國際部 副部長.

김 용운(男) 소련 스페스코 空軍士官學校 졸업 ○ 58.4 第2師團 58聯隊 飛行部 연대장, 第2師團 56聯隊 飛行部 연대장 ○ 73.3 人民軍 中장 ○ 74.7 飛行區分隊長 ○ 현재 空軍 司令部 부사령관 ○

김 유순(男) ○ 71.3 朝鮮體育指導委 委員 ○ 76.4 朝鮮體育指導委員長 ○ 78.5 第80次 IOC 委員 ○ 78.12 第8次 아시아 경기대회 참석(태국) ○ 79.3 IOC 第81次 總會參加(우루과이) ○ 80.7 대련도위원장 ○ 80.10 黨 中央委 候補委員(41/103) ○ 82.2 체코·소련 방문,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 82.11 쿠바 방문 ○ 82.12 조선·말레이시아 親善協會委員長 ○ 83.3 第86次 IOC 總會參加(인도) ○ 83.6 中共 방문 ○ 현재 黨 中央委 候補委員, 朝鮮體育指導委員長, 올림픽 委員長.

김 윤상(金允相·男) ○ 60. 江原道 人民委員會 어업부장 ○ 72.8 水産相 ○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 72.12기 구 개편 水産部 부장 ○ 77.7 漁業代表團 단장으로 소련 방문 ○ 77.12 政務院 水産部 부장. ○ 78.10 政務院 水産委員長 ○ 80.10 黨 中央委員(127/145) ○ 82.4 김일성 훈장 받음.

김윤혁(金潤赫·男) ○ 77.12 政務院 사무장, 最高人民會議 제6기 대의원, 同 法案審議委 위원 ○ 80.3 政務院 金屬工業

部長(第6次 內閣) ○80.5 루마니아 방문
○80.10 黨中央委員(59/145 第6次大會)
○81.5 金屬工業部長 解任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11 黃南 經濟指導委員長 ○현재 黨 中央委員, 黃南經濟指導委員長.

김 응삼(金應三·男) ○67.12 勞動黨中央委 후보위원 ○67.12 科學技術委員會 위원장 ○70.10 제3 기계공업상 ○70.11 勞動黨中央委 후보위원(제5차 당대회) ○71.5 科學技術委員會 위원장, 工業科學院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8.2 科學院長 ○80.10 黨 中央委候補委員(72/103).

김 응상(金應相·男) 東滿洲 출생. ○53.10 勞動黨 中央委 부부장 ○55.12 化學工業大學 부학장 ○57.10 敎育文化省 부상 ○61.9 勞動黨中央委 후보위원(제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 國家建設委員會 제1부위원장 ○63.9 自然保護聯聯부위원장 ○63.11 內閣 제6 사무국장 ○65.1 建材工業相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 ○71.5 內閣 事務局 국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7.12 最高人民會議 제6기 대의원, 國家建設委員會 위원장 ○80.9. 소련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3.5 第2次 世界建築展示會參加(불가리아) ○현재 黨 中央委 候補委員 國家建設委員長.

김 이훈(金二勳·男) 65.6 淸津市 農勤盟委員長 ○68.12 聯盟 副委員長 ○69.6. 이탈리아 방문 ○70.6. 兩江道 黨責任秘書 ○70.11 黨中央委員 ○71.10 農勤盟

委員長 ○72.4 이라크 訪問 ○中央選舉委員 ○72.12 第5期代議員 ○73.7 루마니아 訪問 ○74.7 시리아 방문 ○76.11 北韓·방글라데시 友好文化協會 委員長 ○78.2 駐몽고 大使 ○82.4 最高人民會議 第7期 1次會議 事務長·同會議常設委員 ○83.1 農勤盟中央委員長 ○83.4 朝鮮 집바브웨 親善協會委員長 ○현재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農勤盟委員長, 朝·집바브웨 친선협회위원장.

김 익현(男) ○51.1 第2師團6 聯隊長 ○69.11 人民軍 구분대장 ○70.11 勞動黨中央委위원(제5차 黨 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옥동) ○74.11 第4軍團군단장 ○75.3 人民軍부총참모장(중장) ○77.7 人民武力部 부부장(상장). ○現在 人民武力部 副部長(上將).

김 일(金一·男) 1912 滿洲 間島省 안도縣 출생. 43~45 金日成 부관(해방전 소련군 총위) ○45.11 勞動黨 平北道委비서 ○48.4 中央委員會 위원(제2차 당대회) ○48.8 最高人民會議 제1기 대의원 ○50.10 遞信省 정치국장 ○50.12 民族保衛省 부상 ○52.8 黨中央委員會 부위원장, 상무위원, 정치위원, 군사위원, 平南道黨 위원장 ○53.3 軍團정치 강교(중장) ○54.3 부수상 겸 농업상 ○56.4 黨中央委員會 상무위원 ○57.8 最高人民會議 제2기 대의원 ○57.9 농업상 해임 부수상 유임 ○57.12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중앙위원 ○59.1 제1 부수상 겸 北勞黨부위원장 ○60.2 歐洲 社會主義國家 共產黨代表會議 참가차 소련 방문 ○61.9 黨 中央委員會 부위원장 겸 政治委員會 위원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黃北운곡) ○

北韓人名錄

64. 11 社會主義 10月革命 行事 참가차 소련 방문 ○66. 10 黨中央委 政治委員會 상무 위원 겸 秘書局 비서 ○67. 3 軍事·經濟技術援助 조인차 소련 방문 ○67. 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勝湖) ○70. 11 정치위원 겸 비서(제 5차 당대회) ○71. 3 제24차 소련共産黨大會에 대표단장으로 참가 ○72. 11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咸北 雙浦) ○72. 12 政務院 총리 겸 中央人民委 위원 ○74. 7 루마니아 요양 후 귀국 ○76. 4 부주석 ○77. 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9. 12 祖國平和 統一委員長 ○80. 10 黨中央委員 (2/145)政治局 常務委員 ○82. 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 4 金日成 勳章 받음 ○82. 8 루마니아 방문 ○83. 4 봉화갑문 준공식 參席. ○現在 副主席, 黨中央委員, 政治局委員 겸 常務委員, 中央人民委員, 祖國平和統一委員長.

김 일성(金日成·男) 1912. 4 平南大同郡 古平面 南里 출생. 본명 김성주(金成柱) ○29. 東滿地區 共産主義 青年同盟委員會 서기 ○29. 9 毓文中學 中退 ○31. 中國共産黨 입당 ○32. 中國共産黨 朝鮮人部隊 지대장 ○35. 본명 金成柱로부터 金日成으로 개명 ○42. 소련 입국 ○45. 8 소련軍 소좌 ○45. 10 소련에서 平壤 귀환 ○45. 12 朝鮮共産黨 北朝鮮組織委員會 책임비서 ○46. 2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위원장 ○46. 7 北朝鮮勞動黨 부위원장 ○47. 2 北朝鮮勞動黨 위원장 ○48. 3 北朝鮮人民委員會 부위원장(제 2차 대회) ○48. 8 最高人民會議 제 1기 대의원 ○49. 9 內閣수상 ○48. 6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위원장,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 상무위원 ○50. 6 軍事委員會위원장 ○50. 6 人

民軍 최고사령관 ○53. 2 元帥 稱號 수여 ○53. 8 英雄稱號 國旗勳章 제 1급 수여 ○53. 9 소련 방문 ○53. 11 中共 방문 ○56. 4 黨中央委員會 위원장, 상무위원, 조직위원 ○57. 8 最高人民會議 제 2기 대의원 ○57. 9 제 2차 內閣 수상 ○57. 10 소련 10月革命 40주년 記念式에 黨 및 政府 代表團 단장으로 참가 ○59. 1 소련共産黨 제21차 대회 참가 ○59. 9 中共政權 創建 10週年記念式 참가 ○61. 7 友好協助 및 相互 援助條約 체결을 위해 소련·中共 방문 ○61. 9 黨中央委員會위원장 및 政治委員會 위원장 ○61. 10 소련共産黨 제 2차 대회참가 ○62. 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2. 10 제 3차 內閣 수상 ○65. 4 수카르노 대통령초청으로 인도네시아 방문 ○66. 10 黨中央委員會 총비서 ○67. 1 비공식으로 소련 방문 ○67. 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松林) ○70. 11 총비서 겸 정치위원(제 5차 당대회) ○72. 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慈江道 熙川) ○72. 12 國家主席,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겸 國防委員會 위원장 ○74. 9 토고 대통령과 회담(평양) ○74. 9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회담(평양) ○74. 9 시리아 대통령과 회담(평양) ○74. 11 예멘 대통령과 회담(평양) ○74. 12 시하누크와 회담(평양) ○74. 12 자이페 대통령과 회담(평양) ○75. 4 中共방문 ○75. 5~6 루마니아·알제리·모리타니아·불가리아·유고 순방 ○77. 12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안주) ○77. 12 最高人民會議 제 6기 제 1차 회의에서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 재선 ○78. 5 세이셀 대통령과 회담(평양) ○78. 5 모잠비크대통령과 회담(평양) ○78. 5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대통령과 회담(평양) ○78. 6 루안다 대통령과 회담(평양)

○78.9.9 北傀創建 30돌 慶祝大會 참석 보고 ○78.9.12 鄧小平과 회담(평양) ○78.9.14 말가슈 대통령과 회담(평양) ○78.9 등소평과 會談(평양) ○79.5 발트하임 UN 사무총장과 회담(평양) ○79.10 기니 大統領과 회담(평양) ○79.11 기네비사우 대통령과 회담(평양) ○80.1 이집트 副統領과 회담(평양) ○80.4 잠비아 大統領과 회담(평양) ○80.9 세이셸 大統領과 회담(평양) ○80.10 黨中央委員(1/145) 政治局委員, 常務委員, 黨總秘書, 黨軍事委員長. ○81.2 프랑사사회당 黨首 “미테랑” 접견 ○81.9 토고 大統領과 회담(평양) ○81.10 앙골라 大統領과 회담(평양) ○81.12 우간다 大統領과 會談(평양) ○82.4 國家主席 再選. 英雄칭호 ○82.9.15~26 中共訪問 ○82.10 산토메 프린시페 大統領과 회담(평양) ○82.10 파키스탄 大統領과 회담(평양) ○82.10 중앙아프리카 大統領과 회담(평양) ○83.3 콩고 大統領과 회담(평양) ○83.4 이집트 大統領과 회담(평양) ○83.4 세이셸 大統領과 회담(평양) ○83.5 루안다 大統領과 회담(평양) ○83.7 中央아프리카 大統領과 회담(평양) ○83.8 짐바브웨 大統領과 회담(평양) ○83.8 말디브 大統領과 회담(평양) ○現在 國家主席 黨總秘書, 黨中央委員, 政治局委員, 常務委員, 黨軍事委員長, 中央人民委員, 最高司今官, 元帥·最高人民會議 代議員.

김 재봉(金在奉<鳳?>·男) 1925 출생 ○52. 勞動黨 中央委 근무 ○60.4 루마니아 駐在大使館 대리대사 ○61.2 쿠바 駐在大使館 입시 대리대사 ○62.6 同 참사 ○65.9 外務省 부장 ○70.11 黨中央委 위원(제 5 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72.12 外交部 부부장(73.

4 확인) ○74.6~7 外交部 代表團 단장으로 라오스·월명 방문 ○76.8 소련 駐在大使館 대사 ○81.2~3. 中近東·요르단. 소말리아 순방 ○81.4 요르단·튀니지·소말리아·예멘아랍공화국·에집·지브티 공화국 방문. ○81.9 우간다방문 ○82.2 적도기네 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 7 期代議員 ○82.3 시에라레온, 리베리아, 적도기네·가봉·中央아프리카·니제르 방문. ○83.2 말라가시 방문 ○83.3 루안다·모라시어스·잠비아·모잠비크·우간다·짐바브웨 방문 ○83.8 적도기네·토고·콩고·말리·베닌순방. ○現在 政務院 外交部 副部長.

김 정일(金正日·男) 1940.2 출생 平壤 南山高級中學校, 김일성大學 졸업. 김일성 전처 김貞淑의 소생(장남) ○48.9 平壤南山學校 人民班 입학 ○50~52 中共 吉林學院에 수학 ○64. 김일성大學 졸업 ○64 黨中央委 조직지도부 지도원 ○69. 黨中央委 조직 지도부 부부장 ○70中共黨 문화예술후장 ○73.9 中央黨 조직 및 선전 비서, 政治委員會 후보위원 ○73.12 中央黨 非公開 會議에서 김일성 후계자로 결정 ○74.2 黨中央委정치위원회 ○74.4 人民軍 소장 ○75.9 黨對南工作 총책 ○79.6 黨政治委員. 思想擔當秘書 ○80.10 黨政治局委員, 常務委員·黨軍事委員·黨秘書 ○81.5 묘향산지구 實務指導 ○81.8 보통강기습 빙산관과 천석식당 實務指導 ○81.9 人民大學習堂建設事業 實務指導 ○81.12 모란봉경기장 擴場工事 實務指導 ○82.2 英雄칭호 받음. ○82.2 모란봉 경기장 改建 工事 실무지도 ○82.2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83.4 남포잠문 건설사업 실무지도 ○83.6 政治大學實務指導 ○83.

北韓人名錄

6 중공 방문 ○83.8 옥류관 改建擴長工事 實務指導 ○83.9 9.9節에 主席團序列 2位 로 등장. ○現在 黨 政治局委員, 常務委員, 秘書局秘書, 黨中央委員, 黨 軍事委員,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김 좌혁(金佐赫·男) 1903 滿洲間島출생·中央黨學校 졸업○33 共產黨地下組織 工作에 종사 ○48.8 人民軍 연대장 ○50.6 政治 부연대장 ○52.8 人民軍 第4 師團 정치부장 ○58.10 民族保衛省偵察局 부장(소장) ○61 總政治局 부국장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 겸사위원(제 4 차 당 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江原 백부) ○64.12 民族保衛省총참모 부 차장 겸 정찰국장, 朝鮮赤十字會 상무 위원장 ○65.2 人民軍 중장 ○65.2 民保省 정찰국장 ○66.9 民保省 특별작전국장 ○66.10 黨代表者會代表者 資格審査委員會 위원 ○67.12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겸 법제위원 ○68.7 黨平壤市委 책임비서(70.2 해임)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 차 당대회) ○71.1 勞農赤衛隊 사령관 ○72.4 中將 ○80.10 黨 中央委員 (119/145) 黨 中央委 檢閱委 副委員長 ○82.4 金日成 勳章 받음. ○現在 黨中央委員, 黨檢閱委 副委員長.

김 주영(金珠榮·男) ○65.5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國際部長 ○70.8 朝鮮 海外同胞援護委 副委員長 ○73.5 對外 文化 連絡委 副委員長 겸 朝鮮平和擁護全國民族委 副委員長 ○80.10 黨 中央委 候補委員 (42/103) ○81.4 朝鮮海外同胞援護委副委員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6 僑胞事業總局長 ○현재 僑胞事業總局長, 海外同胞援護委副委員長.

김 중린(金仲麟·男) ○1924(22?) 平北碧潼郡 출생·본적 咸北 ○45.8 이전 民族解放同盟 소속 공산주의자 ○54.3 黨中央委 부부장 ○59.4 赤十字會 中央委員會 상무의원, 제일교포 北送 협의차 제네바 회담 참석 ○61.9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 (제 4 차 당대회) ○62.10 黨中央委員會 문화부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慈江道時中) ○65.1 黨中央委수산 부장 ○66. 中央黨 南朝鮮局 문화부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칠판산) ○67. 黨中央委 對南事業 비서 ○69.4 黨中央委政治委員會 비서 ○70.11. 黨中央委員會 비서 겸 정치위원(제 5 차 당대회) ○70.6 政府代表團부단장으로 中共 방문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中央人民委員會위원 ○76.9 對南 工作 機構의 南韓研究所 소장 ○78.3 中央黨 政治委員으로 任命 ○80.10 黨 中央委 事業總和에 대한 決定書 初案作業委員會委員, 黨秘書, 黨中央委 政治局委員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代議員 ○82.4 金日成勳章 받음 ○83.4 칼팍스 사망 100 周年 즈음 國際 社會科學討論會 參加.

김 창룡(男) ○77.1 社勞靑副委員長 ○77.1 튀니지 방문 ○77.3 쿠바·가이아나 방문 ○77.5 알제리 방문 ○78.1 이라크 방문 ○78.3 동독·일본·방문 ○78.12 동독방문 ○79.4 동독방문 ○80.1 이라크 튀니지·불가리아·소련순방 ○80.6 헝가리 방문 ○81.6 朝鮮學生委員長 ○81.12 에스파니아·키푸르스 방문 ○82.1 인도 방문 ○82.4 오지리방문 ○82.6 소련·체코방문 ○82.9 일본방문 ○83.5 동독·프랑스 방문 ○現在 社勞靑 副委員長, 朝鮮 學生委員長.

김창주(男) ○69.7 平南 人民委副委員長 ○72.11 內閣 第8事務局長(第4次內閣) 中央選舉委員 ○75 駐 이라크 임시대리 대사 ○80 平北 구성市 黨責任秘書 ○82.2 第7期 代議員 政務院副總理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4 政務院 農業委員長, 最高人民委 第1次會議 豫算審議委員 ○82.9 FAO 事務次長과 會見(평양) ○83.4 김일성의 이집트 大統領과 會談時 배석 ○現在 政務院 副總理겸 農業委員長.

김창호(男) ○59.1 慈江道黨委員長 ○59.2 黨 中央委 社會教育部 副部長 ○63.7 中央圖書館 副館長 ○63.11 中共訪問 69.11 평양진설大學 材料學部長 ○72.12 朝鮮中央 放送委 副委員長 ○73.10 日本訪問 ○73.5 中共訪問 ○80.10 黨 中央委 候補委員(88/103)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代議員 ○82.4 政務院 國家科學技術委員長 ○82.4 인도방문 ○82.10 朝鮮工業 技術總聯盟中央委員長 ○83.5 政務院 建材工業委員長(現在).

김철만(金鐵(哲)萬·男) 1918 滿洲 출생. ○50.7 人民軍 연대장(대좌) ○55.4 人民軍 第37師團 사단장(소장) ○62.7 人民軍 중장 ○62.1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江原 양지) ○64. 民保省 작전 국장(중장) ○65.1 人民軍 제2군단장(중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도화) ○68.2 人民軍 부총참모장(상장) ○68.9.17 共和國 영웅칭호 수여 ○70.7 人民軍 제1부총참모장 ○70.7 軍事代表團 단장으로 中共방문 ○70.11 勞動黨 中央委 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平壤 찬진) ○78.2~3 國際非政府 組織軍縮會議(NGO)에 北韓 대표로 참가

○80.10 黨大會決定書草案作成委員 黨 中央委員(26/145) 政治局 候補委員, 黨軍事委員 ○81.9 정권창건 33주년 기념보고회 참석 ○현재 不出.

김충일(金忠日·男) 1938.6 출생 ○55~61. 平壤外國語大學 영어학부 北京大學 영어학부 3년 유학 ○70. 쿠웨이트駐在 貿易代表部 통역 ○73.7 유엔駐在 北傀傭서버代表團 1등 서기관 ○73.9~11 第28次 유엔 總會 代表團 고문 ○74.9~12 제29차 유엔 總會 代表團 전문위원 ○75.9~12 제30차 유엔 總會 代表團 전문위원 ○77.8 유엔駐在 傭서버代表部 공사 ○78.6 外交部 부부장 ○78.9 非同盟 外相會議(뉴욕) 參加 ○79.1 모잠비크 방문 ○80.4 오스트리아·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이슬란드 방문. ○80.11 인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순방 ○81.9 UN 食糧 및 農業機構民族委員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2 인도 방문 ○82.7 UNESCO 民族委員長으로 동독방문 ○82.9 非同盟 外交部長會 議 參加(뉴욕) ○83.8 現在 外交部副部長 UNESCO 民族委員長.

김태극(金泰極·男) ○77.12 政務院 資材供給部 부장 ○80.10 黨 中央委 候補委員(第6次大會)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政務院 資材供給部長, (第7次內閣)

김하중(男) ○71.5 建築家同盟 中央委 常務委員, 國家建設委 副委員長 ○73.5 建設部 設計總局 副總局長 ○80.11 日本 방문 ○81.6 建築家 同盟代表團長으로 國際 建築家同盟 第14次 大會 및 15次總會參加.

北韓人名錄

○82.8 시리아방문 ○82.9 체코방문 ○83.4 現在 國家建設委副委員長, 建築家同盟副委員長.

김 학인(男) ○57.5 駐불가리아大使 ○58.12 駐화판大使 ○64.9 財務省副相 ○70.10 財務省副相 解任 ○83.5 財政部局長

김 형우(男) ○77.9 政務院 外交部副部長 ○78.7 캄보디아·아프가니스탄 순방 ○78.10 UNESCO 第20次總會(프랑스)참가 ○80.11 金日成 特使로 세네갈·중앙아프리카 방문 ○81.10 니제르·오트볼타 방문 ○82.3 그레나다·세인트루시아·가이아나순방 ○82.6 도쿄·베넌방문 ○82.12 세인트루시아·니카라과·바베이도즈·안티구아바부다방문 ○83.4 말레이시아방문 ○83.8 가이아나·그레나다·수리남·멕시코·니카라과방문 ○現在 政務院 外交部副部長.

김 형정(男) ○77.12 第6期 代議員 ○78.12 咸南道人民委員長 ○81.4 咸南行政委員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3.8 現在 咸南行政委員長.

김 환(金煥·男) ○61.5 重工業省 化學工業研究所 부연구원, 國旗勳章 제3급 ○63. 咸興工業大學 分析化學 강좌 교관 ○67.7 科學院 咸興分局 高熱化學研究所 織物研究室 연구원 ○68.10 紡織 製紙工業省 부장 ○72.12 政務院 化學工學部 부장 ○75.5 勞動黨 代表團 단장으로 기니비사우, 가봉 방문 ○77.12 最高人民會議 제6기 代의원, 同 代의원 자격 심사위원 ○78.12 勞動黨 中央委 위원, 政治委정치위원, 秘書局 비서, ○79.1 金日成 特使

로 말라가시 방문 ○79.5 프랑스·에스파니아·탄자니아·잠비아방문 ○79.7 中共 방문 ○80.2 폴란드·알제리·튀니지방문 ○80.10 黨大會決定書草案作成委員, 黨中央委員(14/145) 政治局委員, 秘書局秘書 ○81.4 동독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10 불가리아 訪問 ○83.3 왕재산 회의 50돌 기념 보고 ○83.6 政務院副總理(黨 第6期 第7次 全員會議) ○現在 政務院副總理, 黨 政治局委員, 黨 中央委員, 中央人民委員.

김 희일(金會一) ○53.7 鐵道相 ○53.9 소련·중공방문 ○53.12 交通相(第1次 內閣) ○56.4 黨中央委員 ○57.8 第2次 代議員 ○62.10 第3期 代議員 ○66.9 鐵道相 解任 ○67.11 第4期 代議員 ○70.9 鐵道相 ○80.10 黨 中央委員(117/145) ○81.9 副總理·鐵道部長 ○82.2 第7期 代議員 ○82.4 김일성 훈장 받음 ○82.4 政務院副總理·交通委員長 ○83.1 강랑욱 장래위원(24/39) ○現在 政務院副總理·交通委員長.

김 희준(金熙俊·男) ○62.8 咸南道人民委員長 ○62.10 第3期 代議員 ○64.7 인도네시아·캄보디아·세이론방문 ○64.3 黨 國際部 副部長 ○67.11 第4期 代議員 ○65.12 北韓·라틴아메리카 親善協會 副委員長. ○70.6 元山市 人民委員長 ○2.4 平北道 人民委員長 ○72.12. 第5期 代議員 ○74.3 平北道行政委員長 ○81.3 江原道 行政委員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6 江原道 人民委員長 ○83.9 平北道 人民委員長(現在).

ㄴ

남 재환(男) ○80.11 社勞靑 副委員長
北京訪問 ○81.8 콩고방문 ○82.6 불가리아
共産主義 靑年同盟 第14次大會 參加 ○
83.5 소련 방문 ○現在 社勞靑 副委員長.

ㄹ

맹 태호(男) ○80.2 與南肥料 聯合企業
所 支配人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代
議員 ○82.4 最高人民會議 第7期 第1次
會議 豫算審議委員 政務院化學工業部長
(現在)

문 병록(文炳錄·男) ○71.7 社勞靑 副
委員長 ○71.9 칠레訪問 ○72.6 朝鮮學生
委員長 ○73.1 職總 副委員長 ○73.3 朝·
시리아 親善協會委員長·알제리아·칠레
방문 ○78.6 체코·이라크방문 ○75.3 黨
中央委 副部長 ○75.11~77.7 駐 자이레
大使 ○79.4 中共訪問 ○79.11 東獨 방문
○80.3 朝·요르단 親善協會委員長 ○80.
6 몽고 방문 ○80.10 日本訪問 ○80.12
東獨·헝가리 방문 ○81.1 日本訪問 ○81.
6 헝가리 방문 81.9체코·소련·동독·루
마니아 방문 ○81.11 朝·우간다 親善協
會委員長 ○81.12 프랑스 방문 ○82.2 第
10次 世界聯盟大會 參加(쿠바) ○82.10
駐 유네스코大使(現在).

ㄷ

박 명구(男) ○81.7 外交部 副部長 ○

83.1알제리·튀니지·이집트·北에멘·南
에멘 시리아 순방 ○83.5 레소토 總理 방
문시 영접 ○현재 政務院 外交部 副部長.

박 명빈(朴明彬·男) ○74.6 政務院 保
健部 부장 ○75.6 保健代表團 단장으로
社會主義國家 保健長官會議에 참가(東獨)
○78.3 保健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8.10 東獨 및 소련訪問 ○79.7 유고방
문 ○80.1 불가리아·폴란드 방문 ○80.
10 黨 中央委 候補委員(14/103) ○81.2
保健代表團長으로 가이아나 방문 ○82.2
第7期 代議員 ○82.4 政務院 保健部長
金日成 勳章받음. ○83.9 일차의료 봉사
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회의 참
가(평양) ○現在 政務院 保健部長.

박 성철(朴成哲·男) 1912 威北 출생·
34.3 日本共産黨黨員 ○48. 人民軍 第3
師團 참모장(대좌) ○50.3 人民軍 第15師
團 사단장(중장) ○54.9 불가리아 주재
공사 ○55.5~56.8 駐불가리아 大使館 대
사 ○56.8 黨中央委員會 국제부장 ○56.
10 外務省 부장 ○57.8 最高人民會議 제2
기 대의원 ○59.10 外務相 ○61.5 祖國平
和統一委員會 委員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제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
議 제3기 대의원(平南 德川) ○64.6 黨
中央委 政治委員會 후보위원(補選) ○65.
7 아프리카·아시아 제2차 外相會談 참
석(알제리아) ○66.3 소련共産黨 제23차
大會 참석 ○66.10 黨中央委 정치위원 ○
66.10 부수상 ○67.11 最高人民會議 제4
기 대의원 ○70.4 레닌誕生100돌 記念行
事に 참석(소련) ○70.6 政府代表團 단장
으로 中共 방문 ○70.7內閣 제2 부수상
(외상해임) ○70.11 黨中央委員會 정치

北韓人名錄

위원회위원(제 5차 당대회) ○72.5 韓國 방문(비공식) ○72.10 南北調節委 공동위원장 배리(제1~3차 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부총리 겸 人民奉仕委員會 위원장 ○74.4 中共 방문 ○76.2~3 소련 共產黨 제26차 大會 참석 ○76.4 政務院총리 ○76.8 스페인 카탈루냐 비동맹 頂上會議 참석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부주석, 중앙인민위원장 ○78.2 黨·政代表로 예멘·잠비아·모잠비크·말라가시·탄자니아·파키스탄순방 ○80.1 黨 中央委員·副主席 ○80.6 말라가시 방문 ○80.11 黨 中央委 政治局委員 ○81.6 기네·토고·베냉방문 ○82.2 金日成 特使로 모잠비크 방문 ○82.11 黨 政代表로 브레즈네프 장례식 참가 ○83.5 金日成 特使로 리비아 방문 ○83.8 루마니아 방문 ○83.9. 9.9월 關連 各重大會 參席(4/32) ○現在 國家副主席, 黨 中央委員, 黨 政治局委員, 中央人民委員.

박 수동(朴守東·男) ○68.6 黨 兩江道委 책임비서 ○70.11 黨 中央委 위원 ○72.9 黨 조직지도부 제 1부 부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黃南 향족) 同 資格審査委員會 위원 ○74.2 勞動黨 조직부장 ○75.9 黨 中央委 비서 ○77.9 黨 政治委 후보위원 ○78.2~3 社勞靑 中央委 제17차 전원회의 참석 ○80.10 黨 中央委員(36/145) 秘書局秘書, 黨 6次 大會 決定書 草案作成委員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代議員 同第 7期 第 1次會議 法案審議委員 ○82.7 黃南道 人民委員長 ○現在 黨 中央委員, 黃南道 人民委員長, 代議員.

박 승일(男) ○67.11 最高人民會議 第 4期 代議員 ○74.6 駐수단大使 ○79.9 80.6 慈江道行政委員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代議員 同第 7期 1次會議 豫算審議委員 ○수단大使 解任 ○83.5 慈江道行政委員長(現在).

박 영순(朴英淳·男) ○48.8 勞動黨 威南委 부장 ○56.10 黨 中央委員會 통신부장 (67.7 재임) ○61.9 黨 中央委員會 위원 (제 4차 당대회) ○62.10 逓信相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4.9 中共 政權創建 15週年紀念式 참석 ○66.10 勞動黨 代表者會議 資格審査委員會 위원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나훈), 同常任委員會 부위원장 ○70.11 黨 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1.6 체신상 해임, 勞動黨 中央委 행정부장 ○72.12 最高人民會議 資格審査委員會 위원,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威南 덕성) ○73.5 革命博物館 관장 ○75.10 영웅칭호 및 國旗勳章 제 1급 ○78.8 革命博物館 創立 30돌 紀念報告 참석. ○80.10 黨 中央委員(82/145) ○82.20 最高人民會議 第 7期代議員 ○82.4 金日成勳章 받음 ○現在 革命博物館長.

박 영순(女) ○67.11.20 女子高射銃旅團 女단장 ○74.4 女子高射銃旅團 女단장 (대좌).

박 영시(男) ○71.9 朝鮮平和 擁護 全 國民族委員會書記長 ○71.9 朝鮮·핀란드 親善協會副委員長 ○78.2 아시아·아프리카 連帶性 委員會 代表團長으로 아시아·아프리카 人民連帶機構 常任委 第 6次 會議 參席 ○8.11 對外文化連絡委員會 副委

員長 ○80.11 아시아·아프리카 團結委副
委員長 ○81.7 赤十字會 中央委 副委員長
○82.10 朝·에스파니아 親善協會 委員長
○82.12 朝·히랍 親善協會委員長 ○83.
5 朝鮮民主法律家協會副委員長 ○現在 對
外文化連絡協會 副委員長, 民主法律協會
副委員長, 平和擁護委副委員長 朝·히랍
親善協會委員長.

박 용준(男) ○50~63 空軍大學 야크
第11大隊 대대장, 空軍大學 미그 第15大
隊 대대장 ○63~70.12 第1 戰鬥機사단장
(소장) ○73.5.16 第1 追擊機師團 사단장
○75.5 空軍 第1 戰鬥機師團 사단장(중
장·현제).

박 임태(男) ○66.5 兩江道 建設委員會
委員長 ○72.10.9 建設相 ○72.12 最高人
民會議 제5기 대의원(平北 남흥) ○72.
12.28 政務院 建設部 부장 ○77.11 最高
人民會議 제6기 대의원 ○77.12 政務院
建設部 부장(第6次 內閣) ○80.10 黨 中
央委 候補委員 ○81.4 政務院 國土 및 都
市 管理委員會 委員長 ○81.5 政務院建設
部長解任 ○82.4 政務院 國土 및 都市 管
理委員長(第7次 內閣).

박 재로(朴在魯·男) 1923.1 慶北義城
郡 比安面 山堤洞 834 출생. ○39.3 日本
입국 ○47.7 民靑 中央委外務부장 ○53.
日共 中央對民部 부원 ○53.2 民靑中央書
記局 서기국장 ○55.5 總聯 中央事務局국
원 ○57 總聯 中央事務局차장 ○58.6 總
聯 中央事務局 선전부장 ○66.10 南朝鮮
報道委 소속 대남공작원 ○66.12 總聯 中
央事務局 국장 ○72.12 總聯부의장(총련
제5차 중앙 상임위) ○73.3 제5차 南北

赤十字會談 자문위원 ○74.5~6 總聯 단
장으로 北韓 방문 ○75.5~6 總聯 대표
단장으로 北韓방문 ○76.9 總聯부의장(연
론 보도 부문). ○82.4 金日成 勳章 받음
○現在 朝總聯 副議長.

박 중국(朴重國·男) 1918 咸北 출생.
中央保安幹部學校 졸업 ○1949년 소련유
학, 中央黨連絡部 근무(상과) ○54. 중앙
委 노동과장 ○58.10 外務省 참사관 ○
63.1 外務省 제1 국장 ○64.9 軍事停戰委
員會 수석대표(소장) ○1.3 軍事代表團
단장으로 기네 방문 ○71.6 人民軍 부참
모장(중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江原원동) ○74.8 駐루마니아 대
사 ○77.8 人民軍 중장 ○77.10 黨中央委
후보위원, 人民武力部 부부장 ○78.9 金日
成, 잠비아 共和國 軍事代表團 接見에 同
席 ○79.9 軍事代表團長으로 모잠비크·
알제리 방문 ○80.10 黨 中央委 候補委員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代議員 ○現
在 黨中央委 候補委員, 人民軍 中將, 人
民武力部副部長.

박 태호(朴泰鎬·男) ○80.9 佛敎道聯
盟委員長 ○80.11 佛敎道聯盟 第7期3次
全員會議에서 金日成의 연방제 통일안 지
지연설 ○83.3 佛敎道聯盟 第7期 第8次
大會에서 報告. ○現在 佛敎徒聯盟委員長

방 기영(方基永·男) ○48. 모스크바大
學 留學 ○54.5 商業省 部長 ○60.7 貿易
省 副局長 ○62.12 貿易省 參事官 ○64.3
內閣對外經濟連絡總局長 ○66.6 國際貿易
促進會 副委員長 ○68.8 貿易省副相(第4
次內閣) ○70.10 通商代表團長으로 루마니
아·불가리아·체코 순방 ○72.3 통상 대

北韓人名錄

표단장으로 소련·쿠바 순방 ○73.1 政務院 貿易部 副部長(第5次 內閣) ○74.6 貿易銀行 總裁 ○75.4 貿易銀行 代表團長으로 蘇聯방문 ○77.12 中共訪問 ○80.10 黨中央委 檢査委員(第6次 大會) ○81.9 朝·日友好 促進 親善協會副議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11 中共訪問.

방 철갑(男) ○68. 勞動黨 中央委員會 대남 사업부 과장(대좌) ○70. 海軍司令部 부사령관(소장) ○73.5 海軍司令部사령관(중장) ○75.2 유교 방문 ○80.10 黨中央委 候補委員(30/103) ○82.2.28 最高人民會議 第7期代議員 ○82.4 政務院 陸海運部長 ○83.5 陸海運部長解任 ○現在 黨 中央委候補委員.

방 태율(方泰律·男) 咸北 출생 ○54. 5 朝鮮職業總同盟 中央委員會 부장 ○54. 8 外務省 2등 서기관 ○59.2 中共駐在大使館 상무 참사 ○62. 貿易省 부상, 朝鮮國際貿易促進委員會 부위원장 ○72.9 國際貿易促進委員會委員長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黃南 삼천) ○72.12 貿易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2.12 貿易部 부부장 ○74.8 貿易代表團 단장으로 불가리아 방문 ○78.6 貿易代表團 단장으로 이집트·소련 방문 ○78.11 政府貿易代表團 단장으로 폴란드 방문. ○79.6 貿易代表團長으로 시리아 방문 ○79.9 파키스탄·루마니아 방문 ○80.1 헝가리·소련 방문 ○81.7 貿易部 副部長 소련 방문 ○82.2 헝가리 방문 ○82.4 소련 방문 ○83.7 몽고 방문 ○83.8 시리아 방문 ○現在 貿易部副部長 國際貿易促進委副委員長.

방 학세(方學世·男) 1912 소련에서 성장, 해방 전 소련軍 출신 ○48.3 北勞黨 中央委員會 위원(제2차 당대회) ○48.8 最高人民會議 제1기 대의원 ○49. 內務省 정치보위국장 ○51.3 社會安全相 ○52.10 內務相 ○56.4 黨中央委員會 위원(제3차 당대회) ○57.8 最高人民會議 제2기 대의원(江原 通川) ○60.11 最高裁判所 소장 ○66.10 黨代表者大會 집행부 임원 ○66.11 黨連絡局정보부장 ○67. 7 對南事業總局 조사부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明川)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5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江原 伊川) 同 法案審議委員會 위원 겸 中央裁判所 소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6기 대의원 ○77.12 最高人民會議法案審議委員會위원 中央裁判所 소장 ○77.12 第6期 代議員 ○80.10 黨 中央委員(68/145)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中央裁判所長, 最高人民委 法案審議委員, 金日成 勳章 받음 ○83.1 강랑옥 장례위원, ○現在 中央裁判所長, 最高人民委 法案審議委員.

백 범수(男) ○67.6 中央選舉委 委員 ○67.9 咸南道黨責任秘書(70.9.28 解任) ○67.9 職聯中央委 副委員長 ○68.9 黃南道黨 責任秘書 ○68.12 소련 방문 ○70.7 黃北道黨責任秘書 解任 ○70.11 黨 中央委候補委員 ○80.7 黃南道黨責任秘書 ○80.10 黨 中央委員(71/145)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3.4 現在 黃南道黨責任秘書

백 학림(白學鶴)林·男) 滿洲 間島 출생. ○48.8 中央 호위대장 ○50.6 人民軍聯隊長 ○52.3 民保省 政治安全局 국장(상좌) ○58.5 第3師團 사단장(소장) ○

○60. 軍事停戰委員會 위원 ○61.9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제 4 차 당대회) ○61.10 內閣事務局 護衛處 처장 ○62.5 民族保衛省政治安全局 국장(중장) ○67.8 社會安全省 警備局 국장(중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송호), 법제위원 ○68.2 安全護衛處 사령관 ○70.3.19 社會安全省 제 1 부장 ○70.11 黨中央委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평양 냉천) ○73.4 社會安全部 부부장 ○73.5 人民警備隊 대장 ○78.8 人民武力部 부부장(중장) ○79.9 政務院 人民武力部 副部長(第 6 次 內閣) ○80.5 軍事代表團長으로 訪中 ○80.10 黨中央委員(32/145) 政治局委員, 黨軍事委員會委員 ○81.10~12 軍事代表團長으로 루안다·탄자니아·모잠비크·잠비아·말라가시 순방 ○82.2.28 最高人民會議 第 7 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받음 ○83.9.9.9 節 關聯 各種 行使 參席(15/32) ○現在 人民武力部 副部長, 政治局委員.

人

서 관히(男) 平南 出生. ○1950 모스크바大學 유학 ○54.5 平壤市 人民委員會 농업부장 ○63.9 平壤市 農業管理委員會 위원장 ○64.1 平壤市 農村經理委 위원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豫算 審議委員會 위원 ○73.6 政務院 農業委員會 제 1 부위원장 ○73.9.20 農業委員會 위원장 ○76.7 黨中央委 위원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同 豫算 審議委員會 委員 ○79.1 農業委員會 위원장 해임 ○80.10 黨中央委員(38/145 6次大會) ○

80.12 탄자니아 방문 ○81.2 인도 방문 ○81.6 政務院, 副總理 農業委員長 ○81.12 말디브 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 7 期 代議員 당시 秘書局 秘書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10 탄자니아 방문 ○82.11 南예멘 방문 ○83.9.9 行 事 參席(29/32) ○83.10 탄자니아 방문. ○現在 黨秘書

서 윤석(徐允錫·男) 70.8.28 黨 海洲 市委 책임비서 ○70.12 黨 黃南道 委 책임비서 ○70.11 黨 中央委 후보위원(제 5 차 당 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 원(黃南載寧) ○751.0 黨 中央委 組織部 第 1 부부장. ○78.5 平壤市黨 책임비서 ○80.4 黨 中央委員(補選) ○80.10 黨 中央委員(29/145) 政治局 候補委員 ○82.2 最高人民會議 第 7 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9 政治局委員 ○83.4 中共 訪問 ○現在 平壤市黨 責任秘書.

서 철(徐 哲·男) 1907 東滿洲 出生. 45年前 共產主義 운동 가담 ○55.1 外務 省 제 2 국장 ○55.6 越盟駐在 대사 ○56.4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제 3 차 당대회) ○58.7 人民軍 總政治局長(중장 60.5 해임) ○61.5 祖國統一委員會 위원 ○61.9 黨 中央委員會 委員(제 4 차 당대회) ○62.8 黨中央委員會 부장 ○62.10 最高人民會議 第 3 기 대의원 ○66. 朝鮮對外文化部 連絡協會 위원장 ○67.11 最高人民會議 第 4 기 대의원 ○67.12 最高人民會議 外交委 위원장(69.12 해임) ○69.12 黨中央委 비 서 ○70.8 最高人民會議 常任委 부위원장 ○70.11 黨中央委 政治委員會 위원(제 5 차 당대회) ○71.12 黨代表團長으로 폴란 드 방문 ○72.11 中央選舉 管理委員會 위 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第 5 기 대의

北韓人名錄

원, 常設會議 의원 ○73.6 黨 中央檢閱委
위원장 ○73.7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의장
○77.10 人民軍 總政治局長(대장) ○77.11
最高人民會議 대의원 ○80.10 黨政治局委
員, 黨中央委 檢閱委員長, 中共訪問, ○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4 最高人民會議
資格審查委員 ○現在 黨 檢閱委員長.

손 성필(孫成弼·男) 黃海道 松禾郡 연
경면 고양리 출생 ○64.11 中央黨學校 학
부장 ○69.8 人民經濟大學 총장 ○70.7
高等教育相 ○70.11 黨中央委 후보위원
(제 5차 당대회) ○71. 赤十字會 中央委
員會 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73.5 政務院 教育部 高等教
育總局長 ○74.6 高等教育部長 ○75.5 黨
中央委 위원 ○76.2 黨代表團長으로 유럽
순방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
원 ○78.4 포루투갈 방문 ○78.8 서독방
문 ○78.9 북한·모잠비크 親善協會 委員
長 ○체코방문 ○80.10 黨 中央委 候補委
員(38/103) ○80.4 赤十字會 中央委員長
○80.11 人民經濟大學 總長 ○81.9 朝·
日 友好 促進 親善協會 副會長 ○81.10
쿠바·필리핀 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最高人民會議 常設
委員 ○83.4 最高人民會議 副議長. (現在)

송 관조(宋寬祚·男) ○59.9 平南道 人
民委員長 ○60.5 平南道 黨 1선전선동부
장 ○62.7 平南道 農村經理委 副委員長
○67.11 第4期 代議員 ○67.12 平南道
農業委員長 ○70.3 알바니아 大使 ○72.1
2 最高人民會議 第5期 代議員 ○74.2 赤
十字中央委 副委員長으로서 루마니아 방
문 ○74.2 對外文化連絡協會 副委員長 ○

74.2 이라크 訪問 ○77.3 駐나이지리아대
使 ○77.3 平南道行政委員長 ○80.10 黨
中央委 檢査委員 ○82.9 平南道人民委員
長(現在).



안 승학(安承鶴·男) ○1948 北勞黨
咸南委 組織部員 ○1956 咸南道 黨組織委
員 ○61.8 咸南道 黨委員長 ○61.9 黨 中
央委候補委員 ○62.10 第3期 代議員 ○
63.5 黨 中央委 輕工業 및 商業部長 ○
67.11 第4期 代議員 ○67.12 商業相 ○
69.7 이라크 방문 ○69.12 朝·수단 親善
協會委員長 ○70.9 수단방문 ○70.11 黨
中央委員 ○77.12 第5期 代議員 ○77.12
第6期 代議員 ○78.12 黃南道 行政委員
長 ○80.4 平壤市 行政委員長 ○80.10 黨
中央委員 ○80.11 平壤市 行政委員長 ○
82.2 第7期代議員 ○82.4 最高人民委 第
7期 第1次會議 法案審議議員 ○82.7 平
壤市經濟指導委員長 ○83.6 黨 輕工業擔
當秘書. ○83.12 現在 政治局 候補委員

양 형섭(楊亨燮·男) 1950년 소련 유
학. ○54.5 人民經濟大學 교육학부장 ○
61.10 中央黨學校 교장 ○62.10 最高人民
會議 제 3기 대의원(咸南 교읍)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삼천) ○67.
12 高等教育相 ○70.6 中共 방문 ○70.1.
27 黨中央委 비서 ○70.11 政治委員會 후
보위원(제 5차 당대회) ○71.12 最高人民
會議常任委員會 위원 ○72.12 最高人民會
議 제 5기 대의원 ○72.12 中央人民委 위
원 ○73.4 黨代表 단장으로 시리아·이라
크·프랑스 방문 ○75.7 國家檢閱委員會

위원장 ○77.4 中央人民委員會 法制委員會 위원장 ○78.12 黨代表團 단장으로 기네·부룬디·루안다방문 ○79.2 포루투갈 방문 ○79.11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議長 ○79.11 토고·베닌·가나 방문 ○80.6 社會科學院長 ○80.8 나이제리아 방문 ○80.10 黨中央委員(51/145) ○81.5 핀란드방문 ○81.12 프랑스·기네·비싸우 방문 ○82.2 베네수엘라 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代議員 ○82.12 朝·英親善協會 委員長 ○83.4 最高人民會議議長 ○83.4 핀란드 방문 ○現在 最高人民會議議長.

여 연구(女) ○81.6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 書記局 副局長 ○81.9 朝鮮 海外 同胞 援護 委員會 副委員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6 불가리아·헝가리·체코·동독 순방 ○83.1 祖國 統一民主主義 戰線 中央委 書記局長 ○83.4 最高人民會議 副議長(現在).

연 형묵(延亨默·男)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5차 당대회) ○70.11 黨 中央 委部長 ○71.12 黨中央委비서 ○72.1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黃北 鳳山) ○72.12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74.12 黨 中央政治委員會 위원 ○77.12 最高人民會議 제6기 대의원 ○78.7 黨 平北道 全員 會議학대회의 참석 ○80.10 黨 中央委員 (19/45) 政治局委員 秘書局秘書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現在 黨中央委員, 政治局委員, 秘書局秘書, 中央人民委員.

오 극열(吳克列·男) 1928 中國 吉林省汪清縣 석현 출생. 萬景臺學院, 소련空軍 大學 졸업 ○64.11 朝鮮人民軍 空軍聯

隊司令官(소장) ○67.10 人民軍 中將, 空軍司令官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 ○70.11 勞動黨中央委 후보위원(제5차 당대회) ○71.8 中共 방문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5.4 김일성 수행원으로 中共방문 ○78.8.7. 中共방문 ○78.7 人民軍 副總參謀長(중장) ○79.9 人民軍 總參謀長, 政治局候補委員 ○80.9 人民軍 上將 ○80.10 黨中央委員 (15/145) 政治局委員, 黨軍事委員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3.8 쿠바 방문 ○現在 人民軍總參謀長.

오 백룡(吳白龍·男) 1909 東滿洲省 生. ○53.9 제7軍團 부군단장(소장) ○58 護衛局長(중장)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제4차 당대회) ○61.9 民族保衛省 부상(상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명복 대진)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원남) ○68.2 共和國 英雄 稱號·금성메달·國旗勳章 제1급 ○68.11 水産相 (69.3 해임) ○69.1 黨 軍事委員會 부위원장 ○69.12 勞農赤衛隊 총사령관(대장) ○70.7 黨 軍事部長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5차당대회) ○72.12 陸運 및 海運相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江原고산) ○72.12.28 中央人民委員會 國防委員會 부위원장 ○75.9 黨中央비서 ○76.4.27 黨政治委員會 후보위원 ○77.3 黨政治委員會 정치위원 ○77.12 中央人民委員 겸 國防委 부위원장 ○78.12 政治局委員(補選) ○80.10 黨 中央委員(10/45) 政治局委員, 黨軍事委員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받음. ○現在 黨中央委員, 政治局委員, 國防委 副委員長, 勞農赤衛隊司令官, 大將.

北韓人名錄

오 진우(吳振宇·男) 1910 咸南 北靑 출생. ○54 人民軍 3師사단장(소장) ○56.4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제3차 당대회) ○57.10 人民軍 군단장 ○58.3 空軍司令部 참모장(중장) ○60.8 第1集團軍 사령관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제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 ○63.10 民族保衛省 제1부상 ○66.10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 ○67.5 人民軍 總政治局長(대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文川), 同 常任委員會 위원 ○68.9 黨中央委 비서 ○72.12.28 中央委員會위원, 國防委員會 부위원장,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함남 용성) ○75.4 김일성 中共 방문 수행 ○76.5.14 人民武力部長 ○77.11 最高人民會議 제6기 대의원 ○78.2 소련방문 ○80.5 유고 티토 장례식 參席 ○80.10 黨 中央委員(3/145) 政治局 常務委員, 黨軍事委員, 人民武力部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金日成 勳章 받음. ○現在 人民武力部長.

윤 기복(尹基福·男) 1926.8 咸南道출생. 서울 壽松國民學校 졸업. 京畿中4年 중퇴(41회). 滿洲醫學學校 졸업. 48년 소련 유학. ○56.4 人民經濟大學 부교수 ○62.8 普通教育相 ○62.12 朝鮮·쿠바 團結委員會 위원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 ○65.12 朝·라틴 아메리카 親善協會 위원장 ○66.6 朝·쿠바 團結委員會 위원장 ○66.6 中東지역(아랍·탄자니아·이라크·시리아) 순방, 財政相 ○69.7 黨中央委員會 위원 ○59.9 國家計劃委員會위원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 ○71.11 黨中央委員會 科學教育部長 ○72. 對外文化連絡委員會 부위원장, 平

壤市 人民委員長 72.8~11 제1~4차 南北赤十字會談 자문위원 ○72.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2.1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위원 겸 法案審議委員會 위원장 ○73.2~5 제5~6차 南北赤十字 平壤側 자문위원 ○73.7 萬壽臺 藝術團 단장으로 日本 방문 ○74.9~10 國際 IPU 제16차 東京大會 참석 ○77.3 中央人民委經濟委員會 부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6기 대의원, 同 常設會議 의원 및 법안심의 위원장 ○78.12 中央人民委 經濟委員會副委員長 ○80.10 黨 中央委員(19/145) 政治局 候補委員, 秘書局秘書 ○81.8 콩고·앙골라 방문 ○81.10 포르투갈 방문 ○81.11 이탈리아 방문 ○82.1 베네티·나이지리아 방문 ○82.2 祖國平和統一委副委員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代議員 ○82.4 金日成勳章 받음 ○83.6 平壤市 人民委員長(黨第6期 第7次 全員會議).

윤 기정(尹基貞·女) ○80.4 政務院 財政部長(第6次 內閣) ○80.10 黨 中央委 候補委員(第6次大會) ○81.6 朝·시리아 親善協會委員長으로 시리아 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9 朝一달리 親善協會 委員長. ○現在 政務院 財政部長.

윤 치호(男) ○66.7 朝鮮人民軍 金剛山地區 사령관 ○71.4.28 人民軍出版社 주필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성북) ○76.5 人民武力部 總政治局 부국장(중장) ○79.10 소련 방문 ○79.12 「朝鮮人民軍」 責任主筆 ○80.10 黨 中央委 候補委員(30/103) ○80.11 中共 訪問 ○81.10 불가리아 방문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5 헝가리 방문 ○82.10 中

共訪問 ○83.2 人民軍 中將(現在)

이 건일(李健一·男) 1935.11 咸北 鏡城 출생. ○32~45.9 東滿洲 일대에서 고아생활 ○66. 內閣 護衛局(김일성 후위부관) ○70.11 黨中央委 위원 ○74.1 黨中央委 농업부장 ○82.9 氣象水文局長 소년방문 ○83.4 世界氣象 機構 第9次大會參加(제네바). ○現在 氣象水文局長.

이 계백(李季白·男) 1906.1 濟州道涯月面 新巖里 출생 ○55.5 總聯 中央事務局 국장 ○56.5 總聯 大阪府 본부위원장 ○60 朝總聯 中央委員會 부의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代의원(新北靑) ○68.11 朝總聯 中央歸國對策委 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代의원(증산) ○74.9~10 제61차 IPU 總會 참석(동경) ○75.9~9 제62차 IPU 總會참석(영국)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代의원 ○80.9 總聯 副議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現在 總聯 副議長.

이 근모(李根模·男) 南滿洲 출생. ○52.10 黨 중앙조직부장 ○58.5 同 中央委員會 부부장 ○61.9 黨中央委 후보위원(제 4차 당대회) ○66.10 黨代表者會議 집행부 임원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代의원(股票) 黨中央委員會 문화 예술부장 ○68.7 第2機械工業相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 정치위후보위원(제 5차 당대회) ○71.6.20 黨政治委員會 후보위원 겸 平南道委 책임비서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代의원 ○72.12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73.9.17 黨中央委 정치위원 ○73.9.20 政務院 부총리 ○75.9 黨

中央委 비서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代의원 ○77.12 平南道人民委 위원장 ○78.2 黨 政治委員 ○78.4 中共訪問 ○78.10 平南道黨責任秘書 ○80.7 南浦市黨責任秘書 ○80.10 黨 中央委員(30/145) 政治局候補委員 ○81.3 副總理 겸 採取工業部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南浦市經濟指導委員長 ○現在 南浦市 黨責任秘書.

이 기영(李箕永·男) 1894.5 忠南 天安 출생. 日本 正則英語學校 유학, 文學 碩士 ○25.8 朝鮮 프롤레타리아 藝術同盟員 ○34. 2년간 복역 ○45.11 朝·소文化協會 中央委 위원장 ○46.2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중앙위원 ○46.8訪蘇 사절단장 ○47.2 北朝鮮人民會議 常任委員會 위원 ○48.8 最高人民會議 제 1기 代의원 ○48.9 最高人民會議 상임위원 ○55.10 朝鮮作家同盟 中央委員會 상무위원 ○54.6 最高人民會議 代의원, 選舉委員會 위원장 ○57.8 最高人民會議 제 2기 代의원, 同 부의장 ○58.1 朝·蘇 親善協會 위원장 ○58.5 朝鮮平和擁護 全國民族委員會 상무위원 ○61.5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위원 겸 상임위원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代의원 ○62.10 最高人民會議 부의장 유인(제 3기 1차 회의) ○64.11 朝·소 親善協會 중앙위원장 재임 ○66.12 文藝總中央委員會 위원장 ○67.11.25 最高人民會議 제 4기 代의원 겸 부의장 ○68.1 <祖國統一> 편집위원 ○70.5 소년 最高會議상임위 정령으로 붉은旗 勞力勳章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代의원, 朝·소親善協會 위원장 ○80.10 文藝總 委員長 ○現在 朝鮮文學藝術同盟 中央委員長.

北韓人名錄

이 길송(李吉松·男) 68.8 勞動黨平南道委 책임비서 ○70.11 勞動黨중앙위원(제 5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同 예산심의위원회위원 ○72.12 勞動黨 兩江道委 책임비서 ○73.2 勞動黨 咸南道委 책임비서 ○74.12 咸南人民委員會委員長 ○79.8 咸南道黨 책임비서 ○80.10 黨 中央委員(76/145)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現在 咸南道黨 責任秘書.

이 두찬(男) ○63.11 平壤師範大學 學長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 의원 ○73.2 金日成 軍事綜合大學 총장(중장) ○80.10 黨 中央委員(101/145) ○80.12 人民武力部副部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現在)

이 면상(李冕相·男) 咸南道 咸興 德山 출생. 日本音樂大學校 졸업. 作曲家 ○46.3 朝鮮音樂家同盟 위원장 ○46.3 北朝鮮文學藝術總聯盟 중앙위원회 상임위원 ○53.9 作曲家同盟 위원장 ○56.5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상임위원 ○57.2 平壤音樂大學 學長 ○57.8 最高人民會議 제 2기 대의원 ○57.9 最高人民會議 상임위원 ○58.6 朝·불 親善協會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58.7 對外文化連絡委員會 중앙위원 ○61.1 朝鮮音樂家同盟 중앙위원장 ○61.5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위원 겸 상무위원 ○61.11 文藝總 中央委員會 부위원장 ○61.9 勞動黨 中央委員會 후보위원(제 4차 당대회) ○62.10.8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同 상임위원회위원 ○64.12 歌劇代表團 단장으로 越盟 방문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70.11 黨 中央委員會위원 ○73.10 김일성賞, 人民藝術家 작곡가 ○79.12 音樂家同盟委員長 ○80.10 黨 中央委員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現在)

이 성록(李成祿·男) 78.8 貿易部 부부장 ○78.9 朝·알바니아間 1979年度 商品相互納入 및 支拂에 관한 議政書 조인 ○78.12 貿易部 副部長, 中共 방문 ○79.1 콜롬보방문 ○79.10 몽고 방문 ○82.2 日本 방문 ○82.6 리비아 방문 ○現在 貿易部 副部長.

이 성희(李成熙<希>·男) ○63.9 黃北人民委員會 부위원장 ○67.6 黃南人民委員會 부위원장 ○68.8 시리아 주재 대사 ○72.8 外務省 부상 ○72.12 外交部 부부장 ○74.12 外交部 代表團 단장으로 오스트리아 방문 ○77.10 金日成 특사로 토고·카메룬 방문 ○78.7 金日成 특사로 루마니아 방문 ○83.8.5 現在 外交部副部長.

이 세응(男) 78.10 貿易部 부부장 ○78.10 政府 貿易代表團 단장으로 말레이시아 방문 ○78.11 朝·방글라데시 貿易議定書 조인 ○80.4 政務院 貿易部 부부장. ○80.4 貿易代表團長으로 불가리아·이라크 방문 ○81.5 國際貿易促進委 代表團長으로 日本방문 ○82.1 루마니아 방문

이 시원(男) ○70.7 人民軍 소장 ○70.7 人民軍 總政治局 부국장 ○70.11 黨 文獻編輯委 위원장 ○70.11 黨 中央委 후보위원 ○75.5 人民武力部 總政治局 부국장(少將) ○現在 軍總政治局副局長.

이 영수(男) ○72. 工業技術總聯盟 副委員長 ○78.3 체코 방문 ○78.12 유고 방문 ○80.12 社勞靑 中央委員長 ○81.3 일본방문 ○81.10 黨中央委 候補委員 ○82.1 루마니아·불가리아·東獨·짐바브웨 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同 常設委員 ○82.10 유고 방문 ○現在 社勞靑 中央委員長.

이 용익(李勇益·男) ○58. 루마니아 방문 ○69.8 黨 中央委 副部長 ○69.10 黃北道黨責任秘書 ○70.11 黨 中央委員 ○72.12 最高人民會議 第5期 代議員資格 審査委員 ○73.7 이라크 방문 ○73.10 勞動新聞 責任主筆 ○74.10 루마니아 방문 ○75.1 記者同盟委員長 ○75.12 이라크 大使 ○80.7 淸津市 人民委員長 ○80.10 黨 中央委員(131/145) ○81.11 朝·기네 親善協會委員長, 朝鮮中央放送委員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同 常設委員 ○82.10 中共訪問 ○82.12 朝·이란 親善協會委員長 ○83.4.7 中央人民委書記長(最高人民會議 第7期 2次).

이 재윤(李載允·男) ○50.10 黨 中央委 組織部 書記長 ○56.5 黨 中央委 組織部 副部長 ○60.4 咸北道黨委員長 ○61.9 黨中央委員 ○62.10 第3期 代議員 ○67.11 第4期 代議員 ○69.11 收買糧政相 ○70.7 이라크 방문 ○72. 第5期 代議員 ○80.7 平南道黨責任秘書 ○80.10 黨 中央委員 ○82.2 第7期 代議員 ○82.6 江原道 黨責任秘書 ○82.4 金日成 勳章받음 ○現在 江原道黨責任秘書.

이 증목(李種穆<木>·男) 1938.7 兩江道 出生. ○69.6 外務省 8국장 ○72.9 外

務省 부상 ○72.12 外交部 부부장 ○73.10 제28차 유엔 총회 참석 ○74.10 제29차 유엔總會 代表團단장 ○75.10 제30차 유엔總會 代表團 단장 ○78. 外交部 제1 부부장 ○78.4 알제리·유고·스리랑카·아프가니스탄 방문 ○78.5 쿠바 非同盟外交部部長 會議參加 ○79.7 東獨·헝가리 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0.10 黨中央委員(137/145) ○80.11 소련·루마니아 방문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4 소련방문 ○現在 外交部 副部長.

이 증옥(李鍾玉·男) 1911 咸北 出生. 滿洲 하르빈에서 工業大學 졸업. ○48.8 最高人民會議 제1기 代의원 ○49.10 産業省 국장 ○50. 産業省 부상 ○54.3 輕工業省 부상 ○55.1~11 輕工業相 ○56.1 黨中央委員會 公업부장 ○56.1 國家計劃委員會 위원장 ○56.4 黨中央委員會위원, 同 常務委 후보위원 ○57.8.27 最高人民會議 제2기 代의원, 國家計劃委員會 위원장 유입 ○60.1 부수상 ○60.4 重工業委員會 위원장 ○61.9 黨中央委 정치위원 ○62.8.19 金屬化學工業相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代의원 ○62.10 부수상겸 金屬化學工業相 유입 ○65.10 科學院 院長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代의원 (중성) ○67.12. 4차 內閣 부수상 ○71. 鑛業相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代의원 ○2.12 重工業委員會 위원장 겸 中央人民委 위원 ○76.12 政務院 부총리 ○77.3 黨政治委 후보위원 ○77.12 中央人民委 위원 및 政務院 총리 ○78.5 黨中央委 政治委員, 총리 ○79.8 非同盟頂上會談 參席(아마나)·루마니아 방문 ○80.10 黨 中央委員(5/145) 政治局 常務委員 ○81.1 중공·버마 방문 ○81.2 소련 방문 ○81.6

北韓人名錄

탄자니아·짐바브웨·말라가시 방문 ○
81.9 시리아 방문 ○81.12 네팔·벨글라
데시 방문 ○82.2 인도네시아·말레이지
아·태국 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7
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收受 ○82.
3~6 가이아나·쿠바·이란·파키스탄·
유고 방문 ○82.12 소련 방문 ○83.12 現
在 政務院 總理.

이 지찬(李智燦·男) 平北 出生. ○
48.3 北勞黨 中央委 候補위원(제 2차 당
대회) ○48.8 最高人民會議 제 1기 대의
원 ○55.12 電氣省 部長 ○59.6 電氣石炭
工業省 部長 ○70.11 黨中央委員會위원
(제 5차 당대회) ○76.9 電力工業省 部長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
77.12 전력 公업부장 ○78.3 勞力英雄 칭
호 및 國기 훈장 제 1급 ○78.7 經濟代
表團 단장으로 루마니아·헝가리 방문 ○
78.8 經濟代表團長으로 폴란드 방문 ○
80.10 黨 中央委員 ○81.8 電力工業部長
으로 캐나다 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同 第7期 第1次會議 資
格審查委員. 現在 政務院 電力工業部長.

이 진규(李珍圭(珪)·男) 1917.12 京
畿道 龍仁郡 基興面 農西里 出生. ○55.5
朝總聯 中央委 교육부장 ○58.5 同 教育
문화부장 ○60.6 總聯 中央委 의진실장
○67.11 總聯 朝鮮大學 부학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69.10 朝
鮮大學 학장 ○72.12 朝鮮大學校 총장 ○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3.1
朝總聯 中央委員會 부의장 ○77.9 總聯
부의장으로 재선 ○77.11 勞力勳章 ○77.
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8.9
김일성 훈장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收受 ○現在
總聯副議長.

이 진수(李鎭洙·男) 咸北 出生 ○50.
10 朝鮮職業同盟 中央委 부장 ○55. 最高
檢察所 검사 ○57.9 最高檢察所 부소장
○62.11 朝鮮民主法律家協會 부위원장 ○
65.7 社會安全省 部長, (중장) ○70.7 社
會安全省 제 1부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社會安全部 부부
장 ○73.2.21 社會安全部 部長 ○76.12
中央檢察所 소장 ○77.11 最高人民委 第
6期 代議員 77.12. 中央檢察所所長 ○80.
6 社會安全部長(第6次 內閣) ○80.10 黨
中央委員(48/145)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 同 第7期 第1次會議 法案
審議委員, 社會安全部長(現在).

이 창선(李昌善·男) 48.10 朝鮮文學
藝術家總同盟 중앙위원회 候補위원 ○58.
教育文化省 문화국장 ○60. 文化省선전
국장 ○61.7 勞動黨 中央委員會 宣傳煽
動部 부부장 ○62.1 內閣 物資總局 資材
管理局 부국장 ○62.10 最高人民會議 예
산 위원회 위원 ○63.10 文化省 部長 ○
63.10 平北道 人民委 위원장 ○63.12 對
外文化連絡委 문화부장 ○65.8 朝鮮·越
南親善協會 부위원장 ○68.5 朝·라틴 아
메리카 親善協會 부위원장 ○70.3 문화부
제 1부장 ○71.11 萬壽臺藝術團 단장으로
싱가폴·버마·방문 ○72.8 文化相 ○
1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
12 文化藝術部 部長 ○74.9 제61차 IPU
總會 참가 ○76.3 金日成 特使로 페루·
쿠바·파나마·가이아나 방문 ○76.9 불가
리아 방문 ○77.1 우간다·모잠비크 방문
○77.3 朝·말라가시 親善協會委員長,

○77.4 朝·말레이시아·親善協會委員長
 ○77.9 IPU 第6次 總會 參席(불가리아)
 ○77.12 文化藝術部長, 黨 中央委候補委員
 ○78.3 金日成 特使로 가봉 방문. ○78.7
 쿠바 방문 ○79.9 아시아 축구연맹 副委
 員長 ○80.4 버마방문 ○80.7 金日成 特
 使로 기네·토고·베닌·콩고 방문 ○80.
 10 黨中央委員, 文化藝術部長 ○81.9 朝·
 애급親善協會委員長 ○82.2 第7期 代議
 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6 체코
 방문 ○82.10 소말리아 방문 ○82.12 朝·
 말라가시 親善協會委員長 ○83.5 中共·파
 키스탄방문. 現在 朝鮮國家體育指導委員
 長 文化藝術部長.

이 태백(男) 71.8 北朝鮮 金屬品 輸出
 入會社 사장 ○72.9 貿易部 부상 ○73.4
 國際貿易促進委員會 부위원장 ○76.3 朝·
 印間 1976年 商品流通에 관한 議政書 조
 인차 무역대표로 인도 방문 ○76.9 通商
 機關 協力에 관한 協定 代表로 멕시코 방
 문 ○77.12 朝·이집트間 商品流通에 관
 한 議政書 조인 대표. ○78.1 貿易部副部
 長(第6次 內閣) ○83.1 機械工業代表 團
 長으로 中共訪問.

이 태호(男) ○79.7 總政治局 宣傳部
 副部長(大佐) ○82.10 人民軍出版社 社長
 ○83.8.5日字 停戰委 北側首席代表로 임
 명됨.

임 수만(男) ○67.10 勞動黨 咸南道委
 책임비서 ○68.9 勞動黨 咸南道委 제1비
 서 ○70.11 勞動黨 中央委員會위원(제5
 차 당대회) ○73.5 勞動黨兩江道委員會
 책임비서 ○79.8 黨兩江道책임비서 ○80.
 10 黨 中央委員(77/145) ○81.9 兩江道代

表團長으로 訪中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現在 兩江道黨責任秘書.

임 춘추(男) 咸北 出生. 高卒. ○50.6
 黨江原道委 위원장 ○51.4 人民軍 第7師
 團정치부장 ○55.10 黨連絡部 부부장 ○
 56.12 勞動黨 統一大學 교장(소장) ○57.
 5 알바니아 駐在大使 ○58.12 불가리아
 駐在大使 ○61.9 黨中央檢事委員會 위원
 (제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代의원 ○62.10 最高人民會議 常
 任委員會 서기장 ○66.10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5
 기 代의원 ○72.12 中央人民委員會 서기
 장, 위원 ○73.4 金日成放送大學 학장 ○
 76.4 黨中央委員會 政治委 위원 및 비서
 ○77.3 黨中央委員會 정치위원장 ○77.9 最
 高人民會議 代의원 中央選舉管理委 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6기 代의원 ○
 77.12 中央人民委 서기장, 最高人民會 議
 資格審査委 위원장 ○78.9 全國 教育일군
 大會 참석 ○80.3 黨代表團長으로 헝가리
 방문 ○80.10 黨 第6次 大會 決定書草案
 作成委員 黨中央委員(8/145) 政治局 委員
 ○82.1 中央選舉組織委員長 ○82.2 루안다
 방문, 第7期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82.3
 영웅칭호 ○83.3 金日成 放送大學長 ○83.
 4 副主席(最高人民會議 第7期 2次).

임 형구(男) ○55. 朝鮮民主青年同盟
 黃北道委 위원장 ○56.11 同 中央委 위원
 ○57.11 民青 中央委 위원 ○61.11 黨黃
 北道委 선전선동부장 ○65. 民青 黃北道
 委 위원장 ○67.3 勞動黨 黃北道委 책임
 비서(신천)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北韓人名錄

대의원 ○67.12 最高人民會議 대의원, 資格審査委 위원 ○70.11 黨中央委 후보위원(제 5차 당대회) ○73.12 人民奉仕委員會 위원장 ○75.6 黨中央委員會 부장 ○78.3 全國 都市經營部 熱誠者會議에서 보고 ○80.10 黨 中央委員(56/145) ○80.12 人民奉仕委員長 ○81.2 政府代表團長으로 사하라·아랍 民主共和國 선포 5돌 記念 行事參加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11 人民奉仕委員長(第7次 內閣) ○82.4 金日成 勳章 받음. ○現在 人民奉仕委員長.

ㄸ

장 철(張 徹·男) ○1926 慶北 義城郡 출생. 明治大學 政經學部 졸업. 同 大學院 1년 수료 ○46.5 愛知縣 朝鮮 第4小學校교원 ○48.3 北勞黨 中央委 위원(제 2차 당대회) ○48.8 最高人民會議 제 1기 대의원 ○57.5 在日朝總聯 中央教育部 차장 ○61.5 同 教育部長 ○65.2 文化省 부장 ○70.11.13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제 5차당대회) ○72.12 文化藝術部 부부장 ○75.5 萬壽臺藝術團 단장으로 소련 방문 ○77.11 巧藝團長으로 유럽 國家 방문 ○78.7.26 國立交響樂團 단장으로 中 共 방문 ○78.9 萬壽臺藝術團 단장으로 東歐 共產團 순회 ○80.7 平壤學生藝術團長 으로 태국 방문 ○80.10 黨 中央委候補委員(59/103) ○文化代表團長으로 프랑스·리비아 방문 ○83.3 朝鮮公演協會 會長 ○現在 文化藝術部 副部長.

전 금철(全今哲·男) ○72.11 제 3차 南北赤十字會談 대변인 ○73.3 南北調節

委員會 제 2차 幹事會議 참석 ○73.5 南北調節委員會 제 3차 幹事會議참가 ○74.6 南北調節委 대변인 ○80.12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副委員長 ○83.1 第2次「祖國統一을 위한 北과 海外 同胞·기독교간의 對話」에 參席(헬싱키).

전 명수(全明洙·男) ○1952 모스크바 綜合大學 修了 ○56.10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과장 ○59.11 和蘭駐在 대리 대사 ○60.5 外務省 3국 부국장 ○61.9 폴란드 駐在大使館 1등 서기관 ○63.4 外務省 제 3국장 ○69.3 外務省 국장 ○72.3 外務省 부장 ○72.12 外交部 부부장 ○73.2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불가리아 등 순방 ○74.4~5.10外交部 代表團 단장으로 잠비아·브룬디·루안다·리비아·니제르 親善 방문 ○75.2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잠비아·세네갈·자이레 방문 ○75.5~6 金日成을 隨行, 루마니아·알제리·모리타니·불가리아·유고 등 순방 ○75.7~8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쿠웨이트·레바논·카타르·아랍추장국·키프러스 방문 ○75.10 金日成 특사로 예멘·아랍共和國·카메룬·차드 방문 ○77.3 中共駐在 대사 ○80.10 黨 中央委 候補委員(65/103)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받음 ○83.11 駐中 大使 解任.

전 문섭(全文燮·男) 兩江道 보천 출생. 中央黨學校 졸업. ○56.4 人民軍 第10 師團 사단장 ○60.8 人民軍 第2軍團 長 ○60.11 開城區域 駐屯軍 사령관(중장) ○61.6 第2集團軍 사령관(상장)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4. 社會安全省 호위국장 겸 社會安全省

부상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69.11 영웅칭호·금메달및 國旗勳章 제 1급 ○70.8 軍事警務局長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4.4 黨中央委 政治委員會 후보위원 ○75.4 黨 및 政府 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김일성 수행) ○75.9 勞農赤衛隊 총책임자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黨政 治委 위원 ○80.5 티토 장례식에 金日成 수행 ○80.10 黨中央委員(13/145) 政治局 委員, 黨 軍事委員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 ○82.4 金日成勳章 받음.

전 문옥(男) 咸鏡道 출생 ○64.4 第 1 集團軍 부사령관(소장) ○66.4 第 5 集團 軍 부사령관 ○70.11 勞動黨 中央委위원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 73. 姜健軍官學校 교장(중장) ○80.10 黨 中央委員(101/145)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現在).

전 병호(全炳浩·男) ○70.11 黨 中央委 員(第 5 次大會) ○71.10 黨 中央委部長(輕 工業 및 商業) ○80.10 黨中央委員(109/ 145, 第 6 次大會)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 82.9.9 당시 黨 政治局 候補委員(現在).

전 인철(全仁徹·男) 南韓 출생. 모스 크바大學研究院 수료. ○58.5 外務省 3 등 서기관 ○64.12 外務省 참사 ○67.8 在日 僑胞 北送協定연장 모스크바會議 참가(대 표단장) ○67.8 赤十字會 中央委 부위원장 ○72.12 外交部 참사 ○73.3.10 外交 部 정책고문 ○74.6.8 外交部 부부장 ○ 74.11 北韓赤十字會 부위원장 ○77.1 모 스크바 방문 ○78.1 外交部 副部長(第 6

次內閣) ○83.4 中共 방문 ○現在 外交部 副部長.

정 경희(鄭敬姬·女) 1928출생. ○51. 6 越北 ○53. 초. 中央黨學校 수료 ○53. 10 開城 松都政治學校수료 ○60~66 咸 南道黨 宣傳部 지도원, 黨教育部 부부장 ○97~73 連絡部 공작원 ○70.11 黨中央 委 위원(제 5차 당대회) ○71.10 黨 中央 委 부장 ○73~74.5 文化部 부부장 ○76. 9 對南工作機構 연락부장 ○80.10 黨中央 委員(27/145) ○政治局 候補委員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代議員 ○82.4 金日 成 勳章 받음 ○現在 黨連絡部長.

정 동철(鄭東喆·男) ○58.5 兩江道 人民委員會 위원장 ○61.9 黨中央委 檢査 委 위원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 의원 ○62.10 林業相 ○67.11 最高人民 會議 제 4기 대의원 ○70.9 最高檢察所 검사총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平南 내남) ○72.12 中央檢察 所 소장 겸 最高人民會議法案審議委員會 ○77.10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 의 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의원 및 法案審査委員會 위원 ○80.10 黨中央委員 (41/145)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代議 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4 最 高人民會議 常設會議 議員.

정 송남(鄭松南·男) ○1926.5 咸南咸 興市 盤山洞 출생 ○63.5 國家科學技術委 員會 대외과학기술협조국장 ○68.3 對外 經濟委員會 부위원장 ○69.10 對外科學技 術交流協會 부위원장 ○70.7 政府代表團

北韓人名錄

단장으로 루마니아 방문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함남 해방) ○72.12 政務院 對外經濟事業部 부부장 ○75.4 黨中央委員會 위원 ○79.9 對外經濟事業部 부장 ○80.5 리비아 방문 ○80.6 金日成 特使로 南예멘 방문 ○8.10 黨中央委 候補委員(10/103) ○81.4 가이아나·그레나다·니카라과·멕시코 방문 ○82.2 말레이시아 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7 朝-쿠바 團結委員長 ○現在 政務院 對外經濟事業部長.

정 신혁(男) ○79.3 天道教靑友黨中央委員會 위원장 ○82.1 中央選舉委員(임시직) ○82.2 第7期 代議員 ○82.8 天道教靑友黨 中央委員長(同黨第6次大會 現在)

정 준기(鄭準基·男) ○1924 출생 ○62.1 黨中央委員會 宣傳煽動部 부부장 ○63.4 勞動新聞 책임 주필 ○63.4 黨出版社 사장 ○64.2 記者同盟 中央委員會 위원장 ○65.8 朝·인도네시아 親善協會 위원장 ○65.8 朝·베트남 親善協會 부위원장 ○66 黨代表者會議 집행부 성원, 同文獻編輯委 위원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1.1 記者團 단장으로 쿠바 經濟記者同盟 제 7차 大會에 참가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黃南은친) 常設會議 위원 ○73.9 政務院 부총리 ○73.10 黨中央委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75.9 議會代表團 단장으로 제 62차 IPU 總會 참가(런던) ○77.9 平壤 개회 主體思想에 관한 國際討論會議 組織委 부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政務院 부총리(재임명) ○78.2 政府代表團長으로 말리·기니·기니비사우·콩고·사우투메프린시페·앙골

라 순방 ○78.3 平壤市 人民委員長 解任 ○79.10 알제리 방문 ○79.11 시리아 방문 ○80.1 이라크·자이레·北예멘·이디오피아 순방 ○80.4 짐바브웨·말라카시·말라카 순방 ○80.10 黨中央委員(25/145) 政治局 候補委員 ○80.4 副總理 ○81.2 우간다 방문 ○81.5 몽고 방문 ○81.7 니카라과 방문 ○81.10 祖國 平和統一委 副委員長 ○82.2 金日成 特使로 모잠비크 방문 ○82.2 第7期 代議員 ○82.3 자이르·콩고·말타·말리·세네갈 방문 ○82.4 副總理 겸 科學院長(第7次內閣), 金日成 勳章 받음 ○82.7 루안다 방문 ○83.4 짐바브웨 방문 ○83.85~10 이집트·예멘 방문 ○現在 副總理.

조 명록(男) ○76.519 이집트 代表團 平壤 訪問時 영접(중장) ○77.10 空軍司令官 ○80.10 黨中央委員(90/145) ○黨軍事委員 ○82.2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現在 中將, 空軍司令官.

조 명선(男) ○59~61.4 第47師團 사단장(대좌) ○75.6 人民軍 總參謀部 부총참모장(중장) ○76.12 人民武力部 副部長 ○78.9 副總參謀長 ○80.10 黨中央委員(108/145)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조 명일(趙明日·男) 1932.1 兩江道 甲山郡 출생. 53~71 金日成大學 교원, 祖國統一委員會 부장 ○71.9 赤十字會 문화선전부장, 赤十字會中央委 참가 ○72.8 赤十字會 中央委 서기장 겸 상무위원 출판보도부장 ○71.6~73.5 제1, 3, 5, 6차 南北 赤十字會談 대표 ○74. 中央人民委 참가 ○75.1 祖國平和統一委員會 부위원장,

南北調節委 부위원장.

조 세웅(男)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서화) ○72.12 起陽뜨락또르工場 初級黨 비서 ○73.7 金星뜨락또르工場 初級黨 비서 ○78.3 김일성 훈장 ○80.9 김일성 大安重機械工場 현지지도시 浮上黨 中央委員(22/145) 政務院 副總理, 政治局 候補委員 ○81.10 平南道 黨責任秘書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4 最高人民會議 第7期 第1次 會議 資格審査委員 ○83.8 당서 咸北道黨責任秘書(現在).

조 창덕(趙昌德·男) 69.3 鎭業省부상 ○72.12 鎭業技術總同盟 中央委員會 위원장 ○73.1 重工業委員會 광업총국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政務院 鎭業委員會 위원장 ○80.10 黨 中央委員(59/145) ○80.12 經濟代表團長 으로 김바브웨 방문 ○81.12 咸南 經濟指導委員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10 朝鮮工業技術總聯盟 鎭業協會委員長(現在), 소련 방문.

주 도일(男) ○1907 출생. ○50.2 第2師團政治部 주임 ○51.5 第4軍團 교도 연대장 ○57. 第26旅團 군수부장 ○58.5 第26步兵旅團 여단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4.12 第5師團 사단장 ○65.2 第6訓練所 소장(중장) ○65.9 第6軍團 군단장 ○66.9 第3集團軍 참모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69.2 第3集團軍 사령관(상장) ○70.11 黨 5차 대회 중앙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4.4 第3軍團長(상장) ○75.10 第2軍團長 ○79.5

英雄 칭호 금별메달 국기훈장 2급수여 ○80.10 黨 中央委員(86/145) 黨 軍事委員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勳章 받음. 現在 區分隊長

주 창준(朱昌俊·男) 咸北 출생 ○57.12. 對外文化連絡委員會 부위원장 ○58.1 黨中央委員會宣傳煽動部 부부장 ○59.4 軍事停戰委員會 수석 대표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3.2 버마 駐在 총영사 ○72.5 對外文化連絡委員會 국장 ○72.8 赤十字會中央委 서기장 및 상임위원 ○72.8 南北赤十字會談 부단장 ○73.8 對外文化連絡委 부위원장 ○74.2 平和擁護 全國民族委員會 부위원장 ○74.5 朝·壕 親善協會 위원장 ○76.3 朝·파키스탄 親善協會 부위원장 ○76.5 朝·뉴질랜드 親善協會 위원장 ○76.7 民主法律家協會 부위원장 ○76.10 赤十字 대표단장으로 國際赤十字聯盟 理事會 참가(제네바) ○78.9 제64차 IPU 總會 참가(西獨). ○80.4 駐유고 大使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3.10 駐유고 大使 해임.

주 화증(男) ○61.6 科學院 化學工業研究所 소장 ○63.6 科學院 부원장 ○63.12 科學者 代表로 東獨 및 소련 방문 ○77.12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위원장 ○78.9 朝·세네갈 親善協會 위원장 ○80.10 黨 中央委 檢査委員 ○81.3 東獨과 81~82 科學協助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인.

지 재룡(池在龍·男) ○1940.5 咸南 출생. 金日成綜合大學 출신 ○72.12 社勞靑 중앙위원 ○73.5 社勞靑 中央委부위원장 ○73.4 社勞靑代表團 단장으로 풀란

北韓人名錄

드·핀란드 방문 ○75.1 朝鮮學生委 위원장 ○75.2~2 社勞靑代表團 단장으로 日本방문 ○76.6 社勞靑中央委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8.10 ~11 社勞靑 代表團 단장으로 소련 방문 ○79.2~3 社勞靑 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9.7 勞動黨 中央委 후보위원, 社勞靑 中央委위원장 ○81.1 社勞靑委員長 解任, 政務院 外交部 순회 대사 ○82.3 말타 보리타니 방문 ○82.12 駐체코大使(現在).

진 충국(陳忠國·男) ○1922.12 咸南 五老郡 출생 ○40 咸南中學校 졸업 ○43 東京外國語大學 中語科 졸업 ○46. 咸興 中學校 영어 교사 ○48 民靑 咸興市委위원장 ○49. 外務省 中國部 職員 ○50. 外務省 中國部 부장 대리 ○62.2 外務省 제 4 국 부국장 ○63.9 同 제 4 국장 ○67.8 印度駐在 大使館 영사 ○68.6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東南亞 순방 ○69.6 外務省 국장 ○73.7 外交部 부부장 ○73.7 유엔 歐洲事務局 상임 옵서버 대표(제네바) ○73.10 제28차 유엔總會 北韓代表團 대표 ○75.10 제30차 유엔總會 北韓代表團 대표 ○76.3 스위스駐在 大使 겸임 ○78.8 西獨 社民黨 訪問 ○現在 스위스 大使

六

채 희정(蔡喜<熙>正·男) ○58 科學院 社會科學部門委員會 위원 ○60.5 人民經濟大學 교무부장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4 차 당대회) ○61.9 黨中央委 부부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위원(黃北 瑞興) ○65.4 內閣 참사 ○66.12 黨

中央委員會 부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政務院 노동행정부장. ○78.1 朝·루마니아 親善協會委員長 ○80.7 헝가리·동독·폴란드 순방 ○80.10 黨 中央委 候補委員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 ○82.7 니카라과 방문 ○83.6 黨秘書局計劃財政擔當秘書(現在).

천 세봉(千世鳳·男) 1901 咸南 高原 출생. 普通學校 4년 졸업. 50년 소련 유학 ○42. 咸南 高原驛 운송부 근무 ○45. 咸南 高原郡 人民委員會 근무 ○54.8 朝鮮作家同盟 中央委員會 위원 ○58.10 朝鮮文學藝術總同盟 중앙위원 ○61. 朝鮮作家 同盟 中央委員會 소실분과 위원장 ○64. 文藝總 中央委員會 위원장 ○70.11 勞動黨 中央委員會 후보위원(제 5 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과산) 同 常設會議 위원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委員 ○80.10 黨 中央委員(10/145) ○82.2 朝鮮作家同盟 委員長. 最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 겸 同 第 7期 第 1次 會議 常設委員(現在)

최 광(崔光·男) ○48.2 人民軍 第 1 師團長 ○48.8 第 1期 代議員 ○50.6 人民軍 第 13師團長 ○52.10 姜健軍官學校 長 ○53.10 人民軍 第 5軍團長 ○54.1 第 1軍團參謀長(中將) ○56.4 黨 中央委 候補委員 ○57.8 第 2期 代議員 ○58.6 軍事團長으로 소련·체코 방문 ○58.10 空軍司令官 ○61.9 黨 中央委員 ○62.9 民族 保衛省 副相(上將) ○62.10 第 3期 代議員 ○63.2 人民軍 總參謀長 ○65.5 소련방문 ○66.10 政治局 候補委員 ○67.11 第 4期 代議員 ○67.12 最高人民會議 常

任委員 ○68.2 英雄칭호 ○69.2 總參謀長
解任 ○69.3~77.4 잠적 ○77.4 再등장과
함께 黃南道 人民委員長 ○80.10 黨 中央
委員(21/145) 政治局 候補委員 ○81.3 政
務院 副總理, 黃南道人民委員長解任 ○82.
2 第7期 代議員 ○82.4 政務院 副總理,
水產委員長(現在).

최 문선(男) ○70.3 黃南道 黨秘書 ○
74.9 黃北道 人民委員長 ○76.6 黃北道黨
責任秘書 ○80.10 黨中央委員(72/145) ○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現在 黃北道 黨責任
秘書.

최 영림(崔英林·男) ○67.10 黨 中央
委副部長 ○70.11 黨 中央委員(第5次大
會) ○71.6 黨 中央委員長 ○72.12 第5
期 代議員 ○80.10 黨 中央委員(28/145)
政治局 候補委員 ○81.8 政治局 委員 ○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3.4 中央人民 委員
(最高人民會議 第7期 2次).

최 운학(男) ○69.8 少將 ○70.4 平壤
市 駐屯部隊 사령관 ○74.11 平壤防衛司
令官(소장) ○76.12 平壤市 警備聯隊 政
治部 聯隊長, 영웅칭호 ○83.5 陸海運部
副部長(현재).

최 익규(男) ○70.4 藝術映畫攝影所
연출가 ○72.10 <꽃파는 처녀>연출 ○72.
12 最高人民會議 第5기 代의원(상장) ○
77.9 黨中央委 宣傳部 부부장. ○現在 黨
副部長.

최 인덕(男) ○67. 最高人民會議 第4

기 代의원 ○70.2 勞動黨 中央委 위원(중
장) ○72.3 동해지구 사령관(중장) ○72.
12 最高人民會議 第5기 代의원 ○73.5
제1집단군 사령관 ○74.4 제1군단장 ○
79.5 中共 等영조成興 방문시 영접 및 동
행(상장) ○80.10 黨中央委員 ○82.2 最
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최 재국(崔宰<載>國·男) ○69.7 財務
省 부장 ○72.12 財政部 부부장 ○78.9
財政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80.3
財政代表團長으로 中共 방문 ○81.11 職
總中央檢査委員長(現在).

최 재우(崔載羽·男) ○1913 咸北 출
생. ○48. 黨 咸北道委 간부과장 ○57.8
國家計劃委員會 부위원장 ○57.8 機械工
業省 부상 ○58.2 機械工業相 ○60.4 重工
業委員會 부위원장 ○60.5 金日成 綜合大
學 물리학 부교수 ○61.8 科學院 측지 및
지구 물리학 위원회 위원장 ○61.9 勞動
黨 中央委 후보위원(제4차 당대회) ○62.
4 內閣 第1사무국장 ○62.1 最高人民會
議 第3기 代의원 ○66.10 黨代表者會議
문헌 편집국장 ○67.11 最高人民會議 第
4기 代의원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
○71.3 부수상 ○72.12 最高人民會議 第
5기 代의원 ○72.12 中央人民委員會 위
원, 정무원부총리 겸 國家計劃委員會 위
원장 ○73.6 黨中央委政治委 후보위원 ○
73.6 체코 백사자 훈장 2급 수여 ○74.6
經濟 및 科學技術委員會 대표단장으로 소
련 방문 ○74.10 부쿠메시터·바르샤바방
문 ○75.2 유고·말타 방문 ○79.6 副總
理(第6次內閣) ○80.10 黨中央委員 政治
局 候補委員 ○81.5 金屬工業部長 ○81.9
金屬機械工業委員長 ○82.2 最高人民會議

北韓人名錄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現在 政務院 機械工業部長.

최 정근(崔正根·男) ○50. 金日成大
學 졸업 ○54.5 商業省 公업품 관리국 부
장 ○58.10 貿易省 제 1국 부국장 ○65.1
通商代表團 단장으로 헝가리 방문 ○78.4
貿易部 부장 ○78.10 말레이시아 방문 ○
중앙 문교국장 ○55.5 總聯中央委 議長團
78.11 貿易代表團長으로 버마, 태국 방문
○79.3 貿易代表團長으로 소련 방문 ○79.
8 貿易代表團長으로 中共·이라크·동독·
알제리 방문 ○80.10 黨中央委員(67/145)
○80.11 貿易代表團長으로 폴란드·불가
리아 방문 ○81.2 貿易代表團長으로 中共
訪問 ○81.3 이집트 방문 ○81.9 시리아·
알제리 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11 이란 방문 ○82.12 中共
방문 ○83.1 經濟代表團長으로 파키스탄
방문 ○83.9 알바니아와 '84 상품상호 납
입 및 지불의정서 조인 ○現在 貿易部長.

최 진성(崔鎭成·男) ○70.9 降仙製鋼
所 당비서 ○70.11 黨中央委 후보위원(제
5차 당대회) ○72.8 日用品工業相 ○72.
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신곡) ○
73.12 黨 中央委 부장 ○78.8 체코, 소
련 방문 ○78.8 黨中央委 위원, 제 1경제
부 부부장(현재). ○79.12 黨代表團長으
로 불가리아·유고 방문 ○80.10 黨 中央
委員(118/145) ○82.2 最高人民會議 第7
期 代議員 ○82.7 咸北道 經濟指導委員長
(現在 解任).

최 치선(男) ○68.12 國家計劃委員會
副委員長, 第5期 代議員 ○71.6 資材供給
委員長 ○72.12 第6期 代議員 ○80.7 南

浦市行政委員長 ○80.10 黨 中央檢査委員
○83.9 9.9節에 참석한 말리·가이아나·
유고·보즈와나 代表團 환영, 당시 南浦
市人民委員長(現在).

최 태복(男) ○80.12 政務院 敎育委員
長(第6次內閣) ○81.9 敎育代表團長으로
수단방문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
議員 ○82.3 말타 國경절 참가 ○82.11
最高人民會議 代表團長으로 프랑스 방문
○現在 敎育委員長.

E

태 병렬(太炳烈·男) 1913 咸北 출생.
○56.10 黨 中央委부부장 ○61.9 黨中央
委 후보위원(제 4차 당대회) ○62.10 最
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平壤 전승) ○
65.1 黨中央委員會 부장 ○67.11 最高人
民會議 제 4기 대의원(석봉) ○70.3 영웅
칭호 및 금별 메달, 국기훈장 제 1급(중
장) ○70.9 黨 中央委員會 부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2.
9 黨中央委員會 군사부장 ○72.12 最
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평양) ○73.7 黨
中央委部長 ○75. 政治保衛局長 ○80.12
黨中央委員(43/145) 黨軍事委員 ○82.10
最高人民會議 第7期代議員 ○82.4 金日
成勳章 받음.

ㅎ

한 덕수(韓德銖·男) 1907.6 慶北 慶
山郡 安心邑東湖洞 27 출생. ○47.1 總聯

수석 의장 ○57.4 朝鮮大學 학장 겸임 ○67.7 朝鮮大學 이사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선명) ○72.2 노력영웅칭호 ○77.2 국기훈장 제 1급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 ○現在 朝總聯中央議長.

한 창만(韓昌滿·男) ○59 開城紡織工場支配人 ○68.11 開城市黨責任秘書 ○72.12 第 5期 代議員 ○73.5 開城市 農村經理 委員長 ○80.7 黃北道 行政委員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 ○83.2 黃北道人民委員長(現在).

한 천추(男) ○65.12 社會安全省 體育指導委 위원장 ○69.5 人民軍 中將 ○70.1 社會安全省교화국장 ○76. 特殊 8軍團 中隊長.

허 담(許鎔·男) 咸北(경남) 출생. 모스크바大學 유학 ○48.10 모스크바大學 유학 후 外務省 참사 ○56.6 外務省 儀禮局 부국장 ○60.4 同 국장 ○62.1 外務省 부장 ○65.4 김 일성의 수행원으로 인도네시아 방문 ○69.12 外務省 제 1부장 ○70.7 外務相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3.2 中央委員會 위원 겸 外交部 부장 ○73.2 政務院 부총리 ○75.5 黨政治委 후보위원, 부총리 겸 외교 부장 ○77.9~10 非同盟 外交部長 非常會議참석(뉴욕)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8.7 非同盟國 外相會議 참석(유고) ○78.10 아프가니스탄·네팔 방문 ○79.3 유고·말레이시아 방문 ○79.8 第 6次 非同盟 頂上會議(아바나)參席 ○

80.1 副總理 겸 外交部長 ○80.5 金日成을 수행하여 유고 방문 ○80.7 金日成 特使로 기니·탄자니아·모잠비크·잠비아·앙골라·루안다·南예멘·유고 방문 ○80.10 黨中央委員, 政治局候補委員, 副總理, 外交部長 ○81.2-3 非同盟國 外交部長會議參加次 印度 방문 ○81.8 소말리아 방문 ○82.2 金日成 特使로 알제리 방문 ○82.3 金日成 特使로 오트볼타·쿠바·헝가리·유고 방문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4 PLO에 관한 非同盟國 調整委 部長級 特別會議 參加(쿠웨이트) ○82.5 체코방문 ○87.6 非同盟國 調整委員會 外交部長會議 參加 ○82.6 金日成 特使로 잠비아 방문 ○83.1 非同盟國家調整委 外交部長 非常會議參加 ○現在 政務院 副總理, 外交部長, 黨中央委員, 政治局 委員(83.12월 1日卒)

허 순(許淳·男) ○56.3 輕工業省 綿紡織 管理局 부국장 ○61.8 平壤紡織工場 지배인 ○63.8 輕工業委員會 부위원장 ○67.8 紡織 및 製紙工業省 부장 ○77.12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同 豫算審議委 위원, 政務院 輕工業部 부장 ○79. 輕工業委員會 위원장 ○80.10 黨 中央委 候補委員(7/103).

허 정숙(許貞淑·女) 1903.6 咸北경전 출생. ○45.10 朝鮮共產黨 宣傳煽動部 부 부장 ○46. 北朝鮮勞動黨 幹部部 부장 ○47.2 北朝鮮人民 委員會 선전부장 ○48.3 北勞黨 中央委 위원, 同委員會 부장(제 2차 당대회) ○48.8 最高人民會議 제 1기 대의원 ○48.9 文化宣傳相 ○49.6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중앙위원 ○56.4 黨 中央 委위원(제 3차 대회) ○57.5 對外文化連

北韓人名錄

締協會 中央委 위원장 ○57.8 司法相 ○
 57.8 最高人民會議 제 2기 대의원 ○58.5
 朝鮮平和擁護 全國民族委員會 상무위원
 ○58.6 국가훈장 제 1급 수여, 朝·불親
 善協會중앙위원 ○58.10 朝中共親善協會
 중앙위원 ○59.10 最高裁判所 소장 ○61.
 9 黨中央委員 탈락(제 4차 당대회) ○72.
 11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서기
 국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同 부의장 겸 常設會議 부위원장 ○73.1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서기국장 ○73.10 同
 委員會 부위원장 ○75.11 女盟 中央委비
 서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
 원 ○77.1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부의
 장 ○78.2 祖國戰線代表團長으로 폴란드·
 유고·루마니아 방문 ○78.12 黨中央委員
 ○80.1 祖戰 書記局長 ○81.7 祖國平和統
 一委員會 副委員長 ○81.8 朝鮮海外同胞
 援護委員長 ○82.1 中央選舉委 副委員長
 ○82.2 第 7期 代議員 ○82.3 黨秘書, 祖
 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長 ○82.4 金
 日成勳章 받음 ○82.4 最高人民會議 第 7
 期 第 1次會議 常設委員 最高人民會議 副
 議長 ○82.5 中共 방문 ○83.2 이탈리아
 共產黨大會 參加 ○83.9 9.9節各種 行使
 參席(28/32) ○現在 黨中央委員, 祖國戰線
 中央委 書記局長,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副
 委員長.

현 무광(玄武光·男) 1913 咸興 출생.
 ○57.12 黨咸南道委 위원장 ○61.7 黨中
 央委員會 重工業部 부장 ○61.9 黨中央委
 위원 겸 政治委員會 후보위원 ○62.5 黨
 咸北道 委員會 위원장 ○62.10 最高人民
 會議 제 3기 대의원 同 常任委員會 위원
 ○63.9 機械工業委員會 위원장 ○67.11 最
 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낙원) ○67.

12 제 1기 機械工業相 ○70.4 黨代表團
 단장으로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방문
 ○70.11 黨 中央委員, 당비서, 政治委 후
 보위원 ○71.2 黨中央委員會 重工業部 부
 장 ○71.4 黨咸南道委 책임비서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咸南 端川),
 中央人民委員會위원 겸 交通遞信委員會
 위원장 ○77.4 咸北道 人民委 위원장 ○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9.
 8 淸津市黨 책임비서 ○80.10 黨 中央委員
 (31/145) 政治局 候補委員 ○81.9 黨秘書
 ○82.2 最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 ○82.
 4 金日成 勳章 받음 ○82.4 中央人民委員
 ○83.6 黨 第 6期 7次 全員會議에서 報
 告 ○現在 黨秘書, 政治局候補委員.

현 준극(玄峻極·男) 咸南道 출생. ○
 56.5 로동신문 편집국장 ○59.4 로동신문
 社 부주필 ○59.11 로동신문社 부사장 ○
 60.10 記者同盟 中央委員會 부위원장 ○
 60.10 記者代表團 단장으로 오스트리아
 제 2차 世界記者會議 참가 ○62.7 黨出版
 社 사장 ○66.12 中共 駐在大使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平北용천)
 ○75.4 黨中央委 후보위원 ○77.5 對外文
 化連絡委 부위원장 ○77.12 黨中央委 부
 부장 ○78.5 黨代表團長으로 日本社會黨
 대표와 회담 ○79.6 黨中央委員(補選) 黨
 國際事業部 副部長 ○79.6 日本 방문 ○
 80.1 南北總理會談을 위한 實務首席代表
 ○80.2 政務院 參事 ○80.3 第 4次 實務
 協議會代表 ○80.4~5 第 5次 및 8次 南
 北實務會談 首席代表 ○80.9 朝鮮對外文
 化連絡協會 副委員長 ○80.10 黨 中央委
 員(114/145) ○81.9 朝·日友好促進親善
 協會會長 ○81.10 멕시코 방문 ○82.2 最
 高人民會議 第 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4 中央人民委員 ○83.6 黨 第6期 7次 全員會議에서 報告 ○現在 黨 中央委 第1 副部長

홍 기문(洪起文·男) 1906(1912?) 忠北 槐山 출생. ○47.10 民主獨立黨 상부 위원 ○45.8 最高人民會議 제 1기 代의원 ○48. 金日成大學 교수 ○61.5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위원장 ○64.4 社會科學院 부원장 ○65.6 民主科學者協會 부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代의원, 同 부의장 겸 常設會議 부의장 ○37.4 社會科學院 원장 ○73.9 김 일성 훈장 ○74.9~10 제61차 IPU總會 참가(동경) ○77.1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의장 제 8차대회 참가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代의원 ○77.1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위원 및 부의장 ○80.1 祖國平和統一委 副委員長 ○80.10 黨 中央委員(134/145)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代議員 ○82.3 社會科學院 副院長 院士, 博士, 教授 ○82.4 最高人民委 第7期 第1次會議 副議長, 同 常設委員(現在).

홍 성룡(洪成龍·男) ○77.12 最高人民會議 제 6기 代의원, 政務院 國家計劃委員會 위원장 ○78.11 勞動黨 中央委員會 제 5기 제17차 전원회의 참석 ○78.12 黨 中央委員 ○79.11 國家計劃 委員長 解任 ○80.5 中共訪問 ○80.10 黨中央委員(116/145) ○81.9 副總理兼國家計劃委員長 ○82.2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現在 副總理, 國家計劃委員長, 黨 中央委員.

홍 시학(洪時學·男) ○58.5 勞動黨 咸北道委 위원장 ○62.9 黨 清津市委 위

원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代의원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代의원 (동립) ○68.9 黨 平北道委 책임비서 ○69.10 鑛業相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대회) ○72.5 黨 江原道委 책임비서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代의원(江原 鐵原) ○73.3 江原道人民委 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代의원 ○77.12 中央人民委 위원, 最高人民會議 豫算審議委위원장 ○80.10 黨 6次大會 執行部成員 同 決定書草案 作成委員, 黨中央委員(35/145), 秘書局 秘書 ○81.4 政務院 副總理, 最高人民會議 豫算審議委員長 ○81.9 체취공업위원장 ○82.2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中央人民委員, 政務院 체취공업위원장(現在).

황 순희(黃順姬·女) ○56. 女盟 兩江道委員長 ○61.9 黨 中央委 候補委員 ○62.10 第3期 代議員 ○65.10 朝鮮革命博物館黨委員長 ○67.11 第4期 代議員 ○70.8 女盟 中央執行委員 ○71.10 女盟 中央委 秘書 ○72.12 第5期 代議員 ○73.6 朝鮮革命博物館黨秘書 ○77.12 女盟 副委員長 ○80.10 黨 中央委員(83/145) ○82.7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황 장업(黃壯<長>輝·男) 1925 咸南 출생. 소련 留學 ○54.10 金日成大學 철학 강좌장 ○58. 科學院 社會科學部門委員會 위원 ○59.12 黨 宣傳煽動部 부부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代의원 ○64.10 內閣 참사관 ○65.6 金日成大學 총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代의원(平南삼봉) 同 의장 겸 상설회의 위원장 ○7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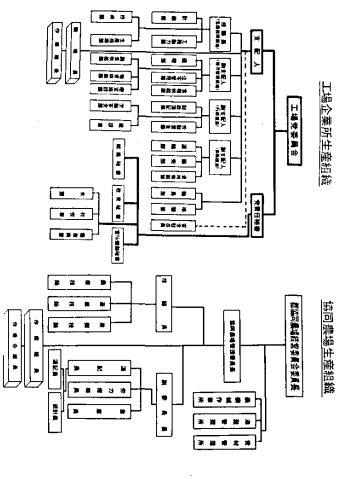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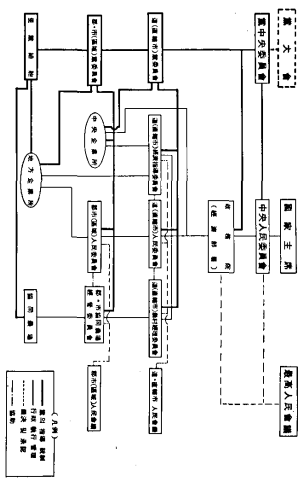
北韓人名錄

最高人民會議 代表團 단장으로 쿠웨이트·
레바논 방문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同 의장 및 상설회의 위원장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79.4 主體思想에
관한 國際討論會議 參席(인도네시아) ○
79.5 인도 방문 ○79.7 요르단·포르투갈·
불가리아 訪問 ○80.3 最高人民會議 議長
○80.8 金日成 特使로 방글라데시·버마·
中共 방문 ○80.10 黨 中央委員(37/145)
第 6 次黨大會 決定書 草案作成委員 ○80.
11 黨秘書局 秘書 ○81.6 인도·방글라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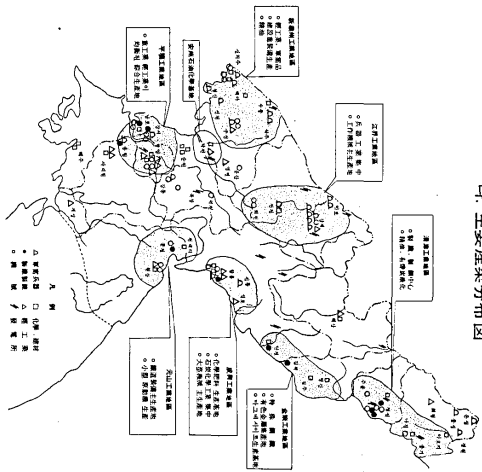
시 방문 ○81.11 루마니아·유고 방문 ○
82.2 第 7 期 代議員 ○82.4 金日成 勳章
받음 ○82.4 最高人民會議議長(第 7 期 1
次會議) ○82.5 오스트리아 방문 ○82.8
소련방문 ○82.10 이란 방문 ○82.11 태국
방문 ○82.12 말레이시아 방문 ○83.3 黨
代表團長으로 시리아·헝가리·알제리 방
문 ○83.3 말타 國慶節 參加 ○83.4 最高
人民會議常設會議議長 解任 ○現在 黨 中
央委員, 黨秘書.

北韓經濟現況

1. 經濟管理與行政體系



4. 主要產業分布圖



主要經濟指標

項目	1981年	1982年	1983年	1984年	1985年
國內生產總值 (GDP)	1,140 億元	1,210 億元	1,280 億元	1,350 億元	1,420 億元
人均GDP	1,140 元	1,210 元	1,280 元	1,350 元	1,420 元
工業總產值	3,400 億元	3,500 億元	3,600 億元	3,700 億元	3,800 億元
農業總產值	1,100 億元	1,150 億元	1,200 億元	1,250 億元	1,300 億元
林業總產值	100 億元	110 億元	120 億元	130 億元	140 億元
漁業總產值	50 億元	55 億元	60 億元	65 億元	70 億元
其他	100 億元	110 億元	120 億元	130 億元	140 億元

5. 經濟變遷過程

年度	事件	基本目標	經濟變遷
1948-1952	建國初期	○ 恢復生產力 ○ 穩定物價 ○ 發展輕工業	○ 經濟恢復 ○ 糧食短缺 ○ 物價波動
1953-1957	第一個五年計畫	○ 發展重工業 ○ 增加農業產量	○ 工業基礎建立 ○ 農業生產提高
1958-1961	大躍進	○ 超額完成工業產量 ○ 增加農業產量	○ 經濟增長 ○ 糧食短缺
1962-1971	第二個五年計畫	○ 發展重工業 ○ 增加農業產量	○ 工業基礎鞏固 ○ 農業生產提高
1972-1976	第三個五年計畫	○ 發展重工業 ○ 增加農業產量	○ 工業基礎鞏固 ○ 農業生產提高
1977-1981	第四個五年計畫	○ 發展重工業 ○ 增加農業產量	○ 工業基礎鞏固 ○ 農業生產提高
1982-1986	第五個五年計畫	○ 發展重工業 ○ 增加農業產量	○ 工業基礎鞏固 ○ 農業生產提高
1987-1991	第六個五年計畫	○ 發展重工業 ○ 增加農業產量	○ 工業基礎鞏固 ○ 農業生產提高

北韓概要 (增補版)

1983年 12月 15日 印 刷

1984年 1月 1日 發 行

發行處 國 土 統 一 院

〈非賣品〉

